

서문

INTRO

아프리카·중동 지역에는 거대 규모의 개도국과 천연자원 부국 그리고 저개발 후진국들이 혼재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석유자원에 대해 이 지역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또한 건설·인프라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서비스 진출이 유망한 지역으로 그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별 보고서 아프리카·중동 편에서는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레바논, 르완다,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메룬,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DR콩고, 쿠웨이트, 튀니지, 가봉, 오만 28개국의 통상환경을 다룬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1위의 인구 대국으로 2017년부터 “경제회복 및 성장 계획”, 경제지속가능 계획“ 등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경제는 2017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 경제구조 개편 등을 통해 경제성장이 회복세를 보였다. 2020년에는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2021~22년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하였다. 나이지리아는 수입·수출 금지 품목을 지정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수입 25개 품목, 수출 8개 품목이다.

남아공은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통해 아프리카 내 경제적 위상이 가장 높은 국가로, 아프리카 그룹의 주도국이자 BRICS의 회원국이며,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한 G20 회원국이다. 남아공은 타이어, 중고제품, 방사성화학물질, 도박기기 등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중고자동차에 대한 수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2022년에는 지식재산권, 탄소세, 최저임금 등에 대한 정책 변화가 있었고, 페트(PET)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5년 연장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으로서 석유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우디는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며, 수입 전 SABER (수입안전관리 프로그램) 등록이 필수이다. 최근에는 환경, 디지털무역 등과 관련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20년 정부의 재정 확충을 위한 관세 인상 조치를 시행한 바 있는데, 2022년에도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재차 관세를 인상했다.

UAE는 개방적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여 정치적 안정, 친기업적 시장 환경, 양질의 인프라, 주변국 시장으로의 접근 용이성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UAE 정부는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다각화 정책과 동시에 중동지역의 무역, 금융, 통신, 교통, 관광의 중심지(hub)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을 적극 구사하여 지난 10여 년 간 비석유 부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

에티오피아는 주변 국가에 비해 석유 등 자원은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인구 약 1억1천만(아프리카 2위)의 거대 시장이자, 동부 아프리카 물류의 거점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2021년 재신임된 아비 총리가 주변국과의 관계 안정, 경제개발을 위한 외화 확보 등에 집중하고 있어 향후 경제개발정책 추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속적인 재정적자, 만성적인 무역적자, 환율 상승, 외환 부족, 높은 물가 상승률 등은 향후 경제 성장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라크는 코로나 확산 및 국제유가하락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2021년부터 시작된 유가회복으로 경제성장이 회복되고 국가재정도 크게 개선,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나 신정부 구성 등 정치적 현안의 안정적 해결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란 정부는 2022년 9월 제7차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2022~26년)까지 지난 1990년부터 경제·사회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나친 석유 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산업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란은 자국 제조업 보호 및 육성 차원에서 관세 및 비관세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내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제품, 기계류, 부품,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5% 이내의 저관세 및 수입완화 정책을, 반면 완제품, 자국 내 생산 가능 품목, 사치성 소비재인 경우 55% 이상의 고율 관세 혹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022년 12월



아프리카 · 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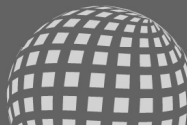
www.motie.go.kr

가 나	003
나이지리아	035
남아공	061
레바논	093
르완다	126
모로코	142
바레인	167
사우디아라비아	191
수 단	223
아랍에미리트연합(UAE)	237
알제리	285
앙골라	324
에티오피아	350
요르단	362
이라크	408
이 란	430
이스라엘	453
이집트	478
적도기니	523
카메룬	550
카타르	591
케 나	622
코트디부아르	641
DR콩고	652
쿠웨이트	681
튀니지	709
가 봉	748
오 만	769

2022 외국의 통상환경



VI Part



아프리카 · 중동

가 나	이라크
나이지리아	이 란
남아공	이스라엘
레바논	이집트
르완다	적도기니
모로코	카메룬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케 나
수 단	코트디부아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DR콩고
알제리	쿠웨이트
앙골라	튀니지
에티오피아	가 봉
요르단	오 만



가 나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가나 경제 구조

가나는 1992년 이후 직접선거에 의한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보수 성향의 신애국당(NPP: New Patriotic Party) 소속 나나 아쿠포아도(Nana Akufo-Addo)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산업화 및 금융부문 개혁을 위한 일련의 경제 개혁 정책에 집중했던 집권 1기에 이어 집권 2기에는 「대외원조극복정책(Ghana Beyond Aid)」 하 △경제회복 및 현대화 프로그램(Ghana CARES), △1군 1공장(1D1F) 설립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산업화 정책,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국을 활용한 해외투자 유치 확대,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 △자동차 제조업 발전 등을 중심으로 각종 사회 인프라 구축 및 산업 육성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2022년 가나의 총 GDP는 738.8억 달러, 1인당 GDP는 2,30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EIU, WB, IMF, 2022)된다. 가나 각 부문별 GDP 기여도는 2022년 2분기 기준 ▲서비스 부문 45.8%, ▲산업 부문 32.1%, ▲농업 부문 22.1%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5.2%, 4.4%, 4.6% 성장하였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 속에서 ▲만성적인 재정적자,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가나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가나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21년 76.6%를 기록하였고 2022년에는 90.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9년까지 가나의 jubilee(유전과 TEN(Tweneboa-Enyenra-

Ntomme) 유전에서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현재 DTC/TP (Deepwater Tano Cape Three Points) 유전이 개발 중이며 곧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수년간 가나 경제가 5~7%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 경기 회복 동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

국가부채 누적 및 IMF 구제금융 협상 개시

최근 가나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 과정에서 재정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관련 정부지출은 증가하였다. 특히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성 사업 지출이 확대되면서 GDP 대비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가나 정부 및 국회는 정부 부채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정부 지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가 급등, ▲가나 세디화 평가절하, ▲국가부채 지속 증가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는 악화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전자금융거래 부담금(E-Levy) 부과’ 등 추가적인 세수 확보 노력도 좌절되며 가나 정부는 2022년 7월 IMF와 구제금융 지원 협상을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가나는 1957년 독립 이래 17차례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으며, 2019년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래 3년 만에 다시 신청한 것이다.

경제회복 및 현대화 프로그램 지속 추진

가나 정부는 2020년 11월부터 약 1천억 세디(약173.5억불) 규모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제회복 및 현대화 프로그램(Ghana Covid-19 Alleviation and Revitalization of Enterprise Support)」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나 정부는 ▲상업 영농 지원 및 청년 농업인 양성 ▲ICT/디지털 경제 구축을 통한 경제 관리 역량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취약계층 지원 ▲주택 및 건설 산업 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파트너십 및 민간 부문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나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 국내 기업들의 조속한 기업 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6월 ‘국가개발은행(National Development Bank in Ghana)’을 설립하여 민간 부문 자금 조달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럽투자은행(EIB)과 1억 7천만 유로 규모의 차관 계약을 체결하여 가나의 은행에 장기 대출을 제공하는 등 경제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나 정부의 2022년 경제운용 목표

- ◇ 경제성장률: (2021년 실질) 5.4% → (2022년) 5.8%
 - * 원유부문 제외시: (2020년 9월) 6.9% → (2022년) 5.9%
- ◇ 인플레이션: (2021년 실질) 12.6% → (2022년 말까지) 8% 목표 달성
- ◇ 재정적자: (2021년 실질 GDP 대비) 11.4% → (2022년) 7.4%
- ◇ 총외환보유고: (2021년) 수입액의 4개월분 이상 → (2022년) 수입액의 최소 4개월

출처: 가나 재무부(<http://www.mofep.gov.gh/>)

산업화 및 경제구조 개혁 정책 추진

가나 정부는 △가나의 216개 군(District)마다 공장을 1개 건설한다는 ‘1군 1공장 (One District, One Factory)’ 정책 △자동차 조립공장 국내 유치를 포함한 제조업 진흥정책 △식량 자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업 프로그램(Planting for Food and Jobs) 등을 통해 산업화 및 경제구조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가나 정부는 금, 코코아, 원유, 목재, 알루미늄 등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는 기존의 무역구조를 개선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제조업 산업 기반을 다지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숙련 노동력과 인프라 부족 및 비즈니스 환경의 취약성 등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산업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잇는 기본적인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 도로의 70%가 여전히 열악한 수준으로, 기본적

인 경제 성장 및 사회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가나 정부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을 “도로의 해”로 명명하여, 항만·도로·교량 등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적인 위생시설, 상하수도, 전력 시설 등 기본적인 사회 기반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서부선 철도 건설을 통해 국내 원자재 수송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보크 사이트 및 알루미늄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동부선 철도 및 보안크라 내륙항(Boankra Inland Port) 착공을 통해 테마(Tema)항에 집중된 화물 운송 및 교역을 분산시키면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등 인근 내륙국가와의 교역을 확대하고, 동시에 국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기 사회 기간망 구축 사업들은 향후 몇 년간 집중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류 시스템 구축 사업이 향후 우리 기업의 유망 진출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최근 들어 가나 정부는 국가 정책적으로 화력 발전에 대한 전력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나 정부는 국내 에너지 산업 구조상 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여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가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북서부(Upper West)주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등 에너지 구조 재편을 통한 사회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가나 내에서 연간 3백만 톤 가량 발생하는 도시 폐기물 및 생활·농업·산업 유기·무기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 및 사업 개발을 지속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 육성

가나 정부는 ‘자동차산업 육성정책(GADP, Ghana Automotive Development Policy)’을 정부 주도 10대 발전 계획의 하나로 수립하고, △글로벌 자동차 생산 기업의 가나 현지 자동차 조립공장 유치, △자동차 운행 및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의무 강화, △전반적인 산업 인프라 접근 개선, △기술훈련 강화, △국내부품 생산체계 확립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가나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자동차 분야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확대하고, 자동차 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현재 가나에는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닛산 등의 조립공장이 운영되고 있다. 현대차 조립공장은 2022년 8월 완공되어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기아차 조립공장은 2022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는 55개 아프리카연합 회원국을 단일시장으로 통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18년 3월 본격 출범하였다. 이는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경쟁, 지적재산권 등 전방위적 차원의 자유무역지대 탄생을 목표로 관세 철폐,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 등을 통한 아프리카 대륙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는 동 협정을 통해 현재 15%에 불과한 아프리카 역내 교역이 2022년까지 2010년 대비 52.3%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5~15년간 최대 90%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AfCFTA의 1차적 목표로, 회원국들은 FTA를 통해 1차 자원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존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제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을 다각화하고, 실업률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됨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외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신산업 육성을 통한 현지 생산능력을 높일 필요성에 주목하게 된바, 아프리카 국가들은 AfCFTA의 본격적 이행을 통해 국내 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아프리카 전체 GDP 성장률 감소폭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의 약 2/3가 식품과 의약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식량 안보 관련 산업인 농산물, 식료품, 석유, 화학제품 등에서 AfCFTA의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산업들은 공급망이 붕괴될 경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fCFTA를 통한 지역 내 가치사슬이 안정적으로 구축된다면, 역내 국가들이 이를 통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AfCFTA가 2021.1.1. 공식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예외품목 설정, 원산지 규정 등 세부 분야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가 지연되고 있고, 각 분야에 대한 회원국간 세부 규정 관련 협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 외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 극복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AfCFTA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간 상이한 규정 조정 및 표준화 필요성, △상품 및 서비스의 안정적 품질 유지, △기존 경제협력체와의 중복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간 이동 제한, △도로 및 항만 등 아프리카 내 물류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EIU).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2022년 7월 일부 AfCFTA 회원국 간 상품교역을 개시한다는 ‘Guided Trade Initiative’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 7일부터 가나를 포함한 8개국이 AfCFTA 협정에 따른 상품교역을 시범적으로 시작하였다. 시범무역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국내 수출기업, 수출 품목, 수출대상국을 선정한 후, 참여국 간 협의를 통해 국가별 수출입 품목을 선정하였다.

가나 정부는 AfCFTA 사무국을 유치하고 2020년 8월 17일 공식 개소식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가나가 인구 12억 명, 총 GDP 3조불 규모의 아프리카 단일 시장 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가나 정부는 AfCFTA를 통해 아프리카 역내 경제가 통합됨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외원조 극복(Beyond Aid)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의 산업(의류, 섬유, 의약품, 자동차 조립, 자동차 부품 제조 등)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나 정부는 AfCFTA 사무국 유치 이후, 범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들이 무관세·무쿼터(Duty Free Quota Free)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 및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AfCFTA 출범 초기 단계에서 우리 기업들은 각 국가별 산업화 전략에 맞춘 현지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협정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역 환경 조성을 위한

통관·물류·교통 시스템 등 기본 인프라 구축 관련 수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아프리카 주요 역내 교역품목이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이 용이한 식품, 섬유, 의복 등 경공업 제품들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직까지 기술 인력과 제조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현지 상황을 감안하여, 이와 관련한 기술 교육을 동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또한, AfCFTA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가나 내 외국 투자 확대, 현지 내수시장 성장 등을 통해 아프리카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현지 중산층 소비자를 목표로 한 소비재 진출도 기대해볼 만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환경

가나 중앙은행(Bank of Ghana)은 2022년 10월 물가상승 압력 및 세디화 가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2%에서 24.5%로 인상하였다.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기준금리는 2022년 3월부터 3차례 인상되었으며,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25.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EIU).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2년 10월 40.4%를 기록하여 17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2001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가나 통계청). 또한, 가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높은 식료품 가격을 기록하였으며, 가나의 식료품 가격은 2022년 1월에 비해 122% 상승하였다(WB, 10월). 내년 물가상승률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20%대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EIU).

한편, 가나 세디화의 달러 대비 가치가 올해 들어 50% 하락하여 2022년 10월 기준 달러당 환율이 15세디를 기록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의 가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국가채무 지속 확대 우려, ▲국제 자본시장 접근 제약 등으로 가나 세디화는 지속적으로 평가절하되었다. 수입에 의존하는 가나 경제 구조 특성상 세디화 평가절하는 국민 체감 물상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3년 IMF로부터 30억불 규모의 국제금융 도입 및 유로본드 시장 접근이 가능해진다면 환율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낮은 외환보유액과 높은 수입 의존도로 인해 2023년 말 세디화는 달러당 10.25세디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장벽

가나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와 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의 회원국이다. 가나 정부는 2018년 3월 1일부터 ECOWAS의 공동역외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시행하여, △의약품, 의료부자재 등 필수재는 0%, △원자재, 기계·장비류 등 자본재는 5%, △가축, 보석류, 부품류 및 중간재는 10%, △건설자재 및 최종 소비재는 20%, △역내 산업보호를 위한 특수재(육류, 과자류, 코코아 가공품 등)에 대해 3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가나 정부는 2017년 가나의 수입 상위 5대 품목 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폐지하였지만, 2019년 8월 국내 자동차 제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시 자동차 부품에 대해 35%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각 상품별 관세율 정보는 가나 국세청 웹사이트(<http://www.gra.gov.gh/>)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나는 2016년 8월 3일 EU와 임시 경제동반자협정(Interim EPA)을 체결하여, EU 수출시 관세나 쿼터를 부과 받지 않게 되었으며, 2013년부터 향후 15년간 EU에서의 수입 80%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되었다. 아울러, 2000년 10월부터는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수혜국가로 지정되어, 2025년까지 직물, 의류, 원자재 등 HS Code 8단위 기준 7,000여개 품목 미국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2021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는 역내 상품 90%에 대한 단계적 관세 철폐(△개도국은 5년내, 최빈국은 10년내, △기타 민감품목(7%) 및 예외품목(3%)에 대한 관세 철폐는 국가별 경제 환경에 따라 유예(일반 5년내, 개도국 10년내, 최빈국은 13년내))를 시작으로 향후 완전한 관세 철폐 및 단일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후 완전히 관세가 철폐될 시, 아프리카 대륙 내 역내무역은 약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보호조치(Protection and Contingency Measures)

가나는 2014년 WTO와의 제4차 무역정책검토회의(Trade Policy Review)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반덤핑(anti-dumping), 상계관세(countervailing),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도 발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ECOWAS의 공동역 외관세(CET) 적용에 따라 역내 차원에서 향후 최대 10년의 세이프가드, 최초 5년에서 연장가능한 반덤핑, 상계관세 적용 및 추가적인 무역 보호조치들(Import Adjustment Tax, Supplementary Protection Tax)의 발동이 가능하다.

세금 및 수입부과금

가나에서는 수입품이나 자국생산품에 관계없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VAT) 12.5%, 건강보험부담금(NHIL) 2.5% 및 교육신탁 기금부담금(GETFL) 2.5%가 부과된다. 또한, 2019년 10월부터 7%의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7월부터 상품 도소매업자 대상 부가가치세(VAT) 고정요금제(3%)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2021년 코로나19 회복 부담금법(Act 1068)’에 따라 코로나19부담금(COVID-19 HRL) 1%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가나에서는 상품 수입시 비(非)ECOWAS 원산지 상품에 대한 부담금 0.5%, 비(非) AU 원산지 상품에 대한 부담금 0.2%, 수출입부담금 0.75%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는 0.4%~3.45% 범위 내의 행정 수수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등 특정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2%의 특수 수입 부담금이 2017년부터 부과되었으나, 국내적 저항에 따라 2024년 폐지될 예정이다.

담배(175%), 병 생수(17.5%), 맥주(10~47.5%), 증류주(0~17.5%) 등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0~175%의 소비세(excise duties)가 부과되고 있다. 아울러, 2018년 11월부터 중고 전자부품 및 타이어 수입에 대하여 사전환경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일부 국내 생산 및 수입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도 환경세 10%가 부과된다.

가나에 수입되는 일반차 및 중고차 관세는 Ghana Trade Hub 웹사이트에서 필요 정보 입력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확인이 가능하다(www.ghanatradinghub.gov.gh). 특히, 수입 차량에 대해서는 1%의 검사비용 및 2%의 특수 수입 부담금이 부과되며, 10년 이상 된 중고차에 대해서는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CIF 금액의 5%~100%의 중고차 부과금 (over-age penalty)이 부과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중고차는 가나 수입업체가 가장 선호하는 품목 중의 하나이다. (www.gra.gov.gh)

세금 및 부담금 현황

구분	세율(%)	과세기준
Import Duty	0 5 10 20 35	Cost + Insurance + Freight (CIF)
VAT	12.5	CIF + Import Duty + NHIL + GETFL
NHIL	2.50	CIF + Import Duty
GETFL	2.50	CIF + Import Duty
COVID-19 HRL	1	CIF + Import Duty
ECOWAS Levy	0.50	CIF
AU Levy	0.20	CIF
EXIM Levy	0.75	CIF
Examination Fee	1	CIF
Special Import Levy (자동차 등)	2	CIF(2024년 까지)
Excise Duty (주류, 담배)	0-175	CIF
Environmental Tax (플라스틱)	10	CIF
Advance Eco Levy (중고 전자부품, 타이어)	품목별	CIF
Administrative Charges	0.4~3.45	
Over-age Penalty (10년 이상 중고차량) * 앰불런스 와 농업용 트랙터 제외	5~100% (승용차, 버스, 밴, 트럭, 로리)	CIF

통관절차상의 장벽

가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도착지 검사(destination inspection)를 받게 함으로써, 수입업자들의 불만이 증가하자, 가나 항만청은 2017년 9월 1일부터 무서류 통관 시스템 (Paperless Port System)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가나의 모든 공항 및 항구 세관에서 전산화된 항만통관 절차가 진행되며, 통관 품목에 대해 관련 기관이 공동 검사(joint examination)를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장벽과 지연을 줄여나가고 있다. 가나 정부는 2020년 5월부터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을 도입하여 가나 내 통합관리시스템(ICUMS)을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https://external.unipassghana.com/>), 가나 정부는 동 무서류 통관시스템을 통해 조세수입증대 및 투명성 제고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가나 정부는 2018년 10월 15일부터는 화물추적노트(CTN) 시스템을 도입하여, 매년 36 TEUs를 초과하는 물류에 한해 추적노트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가나 항만청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입항료, 하역 관련 요금, 크레인 사용료, 화물 처리료 등에 대한 요율을 15~19%로 인상한 바 있다.

아울러, 가나 정부는 2019년 6월 항구에서의 컨테이너 개장검사 (physical examination) 비율을 90%에서 10%로 축소하여, 수입 물류를 촉진하고 세관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겠다고 발표하고, 관련 검사기관들이 요주의 컨테이너에 대한 공동 단일검사를 실시하여 화물처리를 효율화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현재까지 우리 기업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 가나는 ECOWAS 협약에 따라 동 기구 회원 국가에서 전체가 생산되었거나 충분히 변형된 상품(30% 이상 ECOWAS 역내 자원 활용)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국을 원산지로 간주하고 있다.

수입규제

가나는 공공위생과 안전을 위해 중고 손수건, 속옷, 매트리스 및 위생용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커피 원료, 음란물, 전염병에 걸린 동물 및 동물 사체, 일부 의약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몬트리올 협약, 위험폐기물에 관한 바젤협약 등 국제 협약에 따른 위험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가나에서 화폐, 주류, 다이아몬드, 영화 필름, 도박기계, 열쇠 복사기계, 항공 우편 용지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화폐나 여행자수표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가나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며, 다이아몬드의 수입 역시 킴벌리 프로세스 (Kimberly Process)에 따른 증명서가 요구된다(www.gra.gov.gh).

품목명	허가처
금화, 미가공 다이아몬드	재무부 장관
무기·탄약, 다이너마이트·기폭제, 수갑, 열쇠 복사 기계, 도박 기계	내무부
통신 장비	국립통신위원회(NCA)
약품	보건부 및 식약청
영화촬영기, 영화	가나 관세청(CEPS) (Kotoka 공항, Tema, Takoradi 항구 이외 장소에서 촬영된 경우에 한함)
8% 이하 유지를 함유한 농축 연유, 26% 유지 이하 우유 분말가루	가나 관세청(CEPS)
동물 사냥용 그물, 밧, 올가미, 스프링건	식품·농업부
식물, 분토, 화분용 흙, 감염병 또는 해충 보유 가능성이 있는 원예 제품	식품·농업부
수은	에너지부
직물, 옷감 등	Takoradi 항구를 통해 유입되는 품목에 한정 (소규모 항구로, 수입 전 사전 허가 필요)

수산분야 조업 규제

가나에서는 1970년대부터 우리 원양어업 업체들이 참치조업, 수산가공업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업체 등의 진출로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조업경쟁이 심화되어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EU의 엄격한 규제 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4년부터는 가나 정부는 가나 연안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조건(조업장소, 어종별 조업 방식)에 따라 연안의 경우 5~6월, 일부 참치조업방식의 경우 1-3월 중 금어기(close season)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현지 진출 수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어료(licence fee)를 인상하는 등 가나 정부는 현지 진출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5년간(2017~21년)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 내 해적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 해당 수역 내 항해 및 조업시 안전에 대한 선사 및 선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준, 검사, labelling, 인증관련 장벽

표준 및 기술 규제

가나기술표준청(GSA: Ghana Standards Authority)은 가나 국내 기술 표준의 제정, 내수시장 및 수출입을 위한 제품, 서비스의 표준, 품질 보증, 안전 인증제도로를 담당하고 있다(gsa.gov.gh). 현재 가나기술표준청은 약 2,500개의 국내 표준을 제정하고 44,500개의 국제표준을 채택하였으며,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 전통적으로 영국 표준을 따라왔으나 최근에는 유럽연합 및 남아공 표준도 선호하는 추세이다.

GSA는 국제공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어류(fish) 분야에서는 유럽연합, 식품(food) 분야에서는 일본과 표준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가나는 아프리카 지역표준화기구(ARSO: African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회원국으로서 2010년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KATS)과 표준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가나 정부는 모든 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가나기술표준청(GSA) 등록 및 세관에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식품, 의약품, 전자제품, 화학제품, 건설자재, 중고품, 자동차 부품, 무기류, 장난감 등 고위험 품목(high risk goods)을 수입하려면 수출국 공인기관의 분석 인증서(CoA, Certificate of Analysis)나

적합성 인증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GSA에 제출하고 도착지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아래 제품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합성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장난감 및 운동용품, △전자제품, △화학제품, △기계재료 및 가스용품, △펄프 및 종이류, △가구류, △건설자재, △석유제품, △섬유 및 가죽의류, △광업기기 및 부품, △유리제품 등

식약청 등록제도

가나 식약청(FDA: Food and Drugs Authority)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등의 제조, 판매를 규제한다. 모든 관련제품은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FDA에 등록되어야 하며, FDA의 등록허가는 2012년 제정된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Act, 2012)」에 따라 의무화되었다.

의약품 수입업자의 경우 FDA로부터 사업 허가를 승인받아야 하며, 유통 또는 판매를 위한 수입의약품의 유통기한은 60%를 초과하여야 하고, 남은 유통기한이 80% 미만 또는 24개월 이하인 의약품은 수입이 불가하다. 아울러, 가나에서는 정식 인가를 받은 기업만 상업적 목적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으며, 가나 약국위원회(Ghana Pharmacy Council)에서 인가를 받은 제약회사는 소매업 판매만을 위해 한정적인 수입이 가능하고, 의료종사자는 업무중 사용하는 목적에 한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다.

가나 식약청은 국내 의약품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7년 5월 49개의 의약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규제 대상 의약품 49종과 관련된 새로운 등록 및 갱신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가나 국회도 ‘의약품 라벨’ 수입 금지를 촉구하는 등 최근 들어 관련 품목의 추가 수입 금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Marking, Labelling 규제

1992년 제정된 GSA 표기(Labelling) 규정에 따라 모든 식약품은 영문으로 제품의 종류, 원산지, 원료, 무게, 용도, 유효기간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에어컨, 배터리, 램프, 페인트, 사료, 화장품 등도 영문 표기가 되어야 한다. 표기가 잘못된 제품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판매 28일 전까지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환경 관련 규제

가나에서는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환경 보호정책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가 가나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는 ‘영향 없음’, ‘일부 영향 있음’, ‘영향 있음’ 중 하나이며, ‘영향 있음’의 경우 사업 추진이 불허될 수도 있다.

가나 정부는 기후변화, 위생, 폐기물 처리 등 국가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통합적인 환경보호 및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과 기업인들의 친환경적 생활 및 기업운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세금을 징수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일부 국내 생산 및 수입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세 10%가 부과되며, 2018년 11월부터는 중고 전자부품 및 타이어 수입에 대하여는 품목별로 사전환경부담금(advance eco levy)이 부과되고 있다.

품목별 장벽

2021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對가나 수출액은 298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6% 증가하였으며, 對가나 수입액은 37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다. 무역수지는 261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다. 한국의 對가나 수출은 중고차량 및 부품을 중심으로 합성수지, 섬유제품, 기계류 및 화학제품 위주이며, 대부분의 품목에서 2022년 7월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입의 경우 전년과 유사한 가운데 동공 · 스크랩 제품 및 기타금속 광물류의 수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 그림류의 수입은 대폭 증가하였다.

주요 수출 품목의 하나인 중고차의 경우 10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는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CIF 금액의 5~100%의 중고차 부과금(over-age penalty)이 부과되고 있다. 아울러, 2020년부터 신규 26개 자동차부품 기술표준을 수입 신차와 중고차 모두에 적용하기 위한 관련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중고자동차 시장 및 부품 관련, 가나 국회가 2020년 3월 사고 차량 및 10년 이상 된 중고차량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관세법(Act 891)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0년 10월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현지 사업자들의 반발로 시행을 2021년 상반기로 한 차례 연기하였다. 2022년 9월부터 다시 시행하였으나, 현재 유예기간이 운영되고 있으며 가나기술표준청은 유예기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가나 정부는 가나를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가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GADP)’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도요타·닛산·현대·기아 자동차의 조립공장이 세워질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2020년 하반기부터, 폭스바겐 등 일부 수입 자동차 업체가 현지에서 자동차 직접 조립생산을 시작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중고차 수요 중 일부가 신차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차량 수입금지, 중고차 연식 규제 및 완성차의 현지 조립 생산 증가로 인해 향후 중고차량의 수입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고 차량이 여전히 현지 수입 차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당분간 새 부품 보다는 중고부품의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가나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은 아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을 통한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을 제정하였다(2016년 개정). 동 법은 경쟁 입찰, 제한 입찰,

수의계약 등 다양한 입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입찰 절차는 발주기관이 공공 조달법에 따라 내부적으로 시행하며, 가나 조달청(Public Procurement Authority)은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ppa.gov.gh)에서 얻을 수 있다.

입찰방법 중에는 국제·국내 경쟁 입찰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10만~1,000만 세디 상품 구매, △20만~1,500만 세디 규모 공사, △5만~500만 세디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국내경쟁입찰을 시행하여야 하며, △1,000만 세디 이상의 상품 구매, △1,500만 세디 이상의 공사 또는 △500만 세디 이상의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국제경쟁입찰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한 입찰 및 수의계약의 경우 조달청 심사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행하며, 조달 성격상 일부 업체만 지원 가능한 특수성이 인정되거나 시간 또는 금액이 제한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세계은행/IMF, 아프리카개발은행, 프랑스 개발청 등 해외 원조기관의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입찰과는 달리 가나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과정의 투명성이 높지 않고 수주하더라도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부의 제한·독점 무역(금 및 코코아)

가나는 국가적으로 금 및 코코아 수출에 다음과 같은 일부 제한을 두고 있다. 과거 귀금속마케팅회사(PMMC: Precious Mineral Marketing Company)는 소규모 광산업체의 금 수출에 관한 독점권을 가졌으나, 현재는 PMMC의 승인을 받은 민간업체도 수출이 가능하다. 단, 금 수출액 대비 0.526% 상당의 수수료를 PMMC에 지불해야 한다.

가나의 금 수출은 다음 2개 경로를 통해 진행된다. 첫째, 아산티 골드 등 다국적 기업이 국제 금시장을 통해 수출하는 경로이다. 둘째, PMMC를 통해 수출하는 경로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다국적 기업이 아닌 소규모 광산업체도 금 수출 자체는 가능하나 반드시 PMMC의 중개를 통해서만 합법적 수출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행 제도하에서 외국인이 국제 금시장 또는 PMMC를 통하지 않고

가나산 금을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개인, 광산업체, 공인증개상 등이 PMMC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금을 수출하겠다는 제의는 모두 사기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금과는 달리 가나코코아위원회(COCOBOD, Ghana Cocoa Board) 산하의 코코아마케팅회사(CMC)는 아직까지 코코아 수출에 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가나코코아위원회와 코트디부아르 커피-카카오위원회 (CCC: Le Conseil du Café Cacao)는 협의를 통해 코코아의 최저 세계시장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공기업 관련

가나는 1980년대 말 300여개에 달하던 공기업을 1990년대 Rawlings 정부부터 민영화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수도, 석유, 전기, 광물 등의 분야에 약 30여 개의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력분야 공기업의 경우 인프라 투자 부족 및 비효율적 운영으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가나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핵심으로 한 전력분야 구조 조정을 추진하였다. 가나 정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간 미국정부로부터 4.98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는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 Compact를 체결하고, 국영가나전력회사(ECG: Electricity Company of Ghana)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계약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간 마찰로 인해 국내적으로 사안이 쟁점화되자, 가나 정부는 관련 계약 추진을 일방 종료한 바 있다. 이후 가나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독립발전사업자(IPP)들과 개별 전력구입협정(PPA)을 체결하였으나, 전력구입협정(PPA) 과잉 체결로 인해 전력 생산 과잉 문제가 발생하자 가나 에너지부는 2020년 10월부터 독립발전사업자(IPP)들과의 추가 PPA 체결을 중단하였으며, 추가 전력 생산 관련 신규 투자자는 2023년부터 다시 모집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석유 분야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나 현지에 진출한 주요 석유기업들의 자금난이 이어지면서 2020년 추진할 예정이었던 유전 탐사계획들이 연기됨에 따라 가나 정부가 가채 연수 증대를 위해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던 사업들이

중단되었다. 아울러, 당초 예정되었던 기업들의 시추 및 기존 생산시설의 유지·보수 활동도 연기 또는 취소되어 많은 국내 기업들이 도산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

가나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및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 회원국이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등록업무는 등록청(Registrar General's Department)에서, 저작권은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에서 담당하고 있다. 각 상표의 등록료 및 절차는 저작권청 홈페이지(<http://www.copyright.gov.gh>)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장벽

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s)

가나에서는 Vodafone, MTN, AirtelTigo, Glo 등의 이동통신사가 활동하고 있다. 2022년 1분기 기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약 4,148만 명으로 가나 인구 대비 약 134.71%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통신사별로는 MTN 사용자가 약 2,556만 명으로 61.61%의 최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으며, 그 외에 Vodafone(약 773만 명, 18.64%), AirtelTigo(약 740만 명, 17.85%) 등의 순이다.

신규 통신사업자의 허가, 주파수 할당, 불공정 경쟁 감시 등 통신시장 규제는 통신청(NCA: National Communications Authority)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은 경쟁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어 가나 정부는 추가 사업자 선정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한편, 현지기업인 Surflin Communication이 2014년 8월 아크라 및 테마에서 4G LTE 모바일 광대역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MTN, Surflin, Broadband Home, Blu 등의 업체가 가나에서 4G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1분기 기준 데이터 서비스 가입자 수는 약 2,369만 명이며, 통신사별로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마찬가지로 MTN 사용자가 약 1,692만 명으로 71.41%의 최대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으며, 그 외에 AirtelTigo(약 337만 명, 14.20%), Vodafone(약 307만 명, 12.97%)에 집중되어 있다.

가나 통신부는 국내 전기통신 시장의 독과점 상황을 우려하여 2020년 6월 전기통신법(Act 755) 및 국가통신정책(NTP) 상의 독점 규제를 통해 현재 통신 서비스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서비스부문에서 단일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40% 이상일 때 시장 지배력(SMP)을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바, 가나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MTN측에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적정가격 보장 및 전기통신 산업의 전반적 성장 등을 위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가나는 유선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으나 광케이블 상용화 및 최근 인터넷 데이터 사용 확산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데이터 통신 분야에서 많은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일반 우편 서비스는 가나 우정공사(GPC: Ghana Post Company Ltd)에서 독점하고 있으며, 나머지 택배업 분야는 민간에 개방되어 있다. GPC는 사서함 서비스만 제공하고 End-to-End 배송은 하지 않는다. 그 외 민간사업자로 UPS, DHL 등 글로벌 회사들이 택배 및 특송 분야에 진출해 있다.

관광서비스(Tourism Services)

가나의 관광 인프라는 여전히 낙후된 상태로 2019년 여행·관광 경쟁력보고서에서 140개국 중 115위를 기록하였다(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4개국 중 15위). 가나의 관광 진흥업무는 관광부 산하 관광청(Ghana Tourism Authority)에서 담당하고 있다. 가나의 주요 관광자원은 과거 노예무역 거점으로 사용되었던 해안의 성(castle), 일부 국립공원과 축제 등이며, 아프리카계 미국인, 영국인, 나이지리아인 등을 주고객층으로 하고 있다.

호텔, 게스트 하우스 등 숙박시설(약 2천 여 개 추정)이나 여행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광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광업체 설립 시 가구, 차량 등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18년 수도 아크라(Accra)에 위치한 코토카 국제공항 (KIA: Kotoka International Airport)의 제3터미널이 완공된 이후, 현재 가나에는 22개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으며, 27개 지역에 대한 항공편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3월 국제공항협의회(ACI: Airport Council International)는 가나의 코토카 국제공항을 2020년 상반기 순위평가에서 유사 규모 공항 중 아프리카 내 1위(2019년 4위)로 평가하였다. 참고로, 코토카 국제공항은 국내선 항공료의 17.5%의 부가가치세를 폐지하여 국내선 승객 수가 2배로 증가하였다. 가나 정부는 이 외에도 국내공항인 타말레(Tamale) 공항과 쿠마시(Kumasi) 공항을 국제공항화 하여 가나를 서아프리카 항공 허브로 발돋움시키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바, 향후 항공 및 관광산업 분야 투자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나 국내총생산(GDP)에서 여행·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8억불에서 2019년 38억불로 증가하면서 매년 5%~8% 증가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약 80억불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2020년 5월말 기준 총 숙박업소 중 25%(979개)의 숙박업소가 폐업 하였으며, 11,558명이 가나 방문을 취소함으로써 가나 정부로서는 관광부분에서 막대한 세수 손실이 발생하였다. 서비스 및 요식업 관련 업종이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2022년 관광산업 수입은 2021년보다 2억불 증가한 23억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서비스 : 유통, 건설 등

도소매업 등 유통산업 진출의 제도적 장벽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인도, 레바논 등 이민 역사가 길고 현지화에 성공한 나라들의 도소매기업 층이 두텁다는 점이 우리기업 진출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Accra Mall, Westhills Mall, Achimota Shopping Center 등 대형 쇼핑몰을 앞세운 남아공계 유통업체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가나 주택시장은 주택 구매력을 가진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투자자금 회수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부 제한된 외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타운 하우스 개발이 붐을 이루고 있다. 향후 가나 경제 성장 잠재력(매년 6~9%) 등을 감안할 때 가나 주택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지나치게 과열된 주택경기가 조정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가나는 2010년 석유생산을 계기로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유, 발전 등 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이후 생각보다 저조한 원유 생산량 및 발전 연료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잦은 단전 및 채무 누적 등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갈수록 심화되어 현재 GDP의 80%에 육박하는 정부부채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가나 정부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에너지 분야 채무 변제를 위해 정기적으로 정부채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2021년 3월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30억 달러 상당의 유로화 채권(Eurobond)을 발행하여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나 인프라 분야 진출의 제도적 장벽은 크지 않으나, 자금조달 부족, 가나측 정부절차의 지연, 세금 과다 부과 등이 사업 진행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제도 개요

가나정부는 1994년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본법이라 볼 수 있는 “투자진흥청법(GIPC Act)”을 제정하였다. 2013년에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중소 및 영세 가나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한다는 목표를 표방하면서 기존의 GIPC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은 투자진흥청(GIPC: Ghana Investment Promotion Centre)에서 담당하며, 석유, 광물, 주식 등의 투자에 대해서는 석유부, 광물위원회, 가나주식거래소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이 가나에서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의 형태는 합작법인, 외국인소유회사, 무역회사로 구분되며, 회사 형태에 따라 최소 자본금 규모가 달라진다. 외국인의 최소투자금액은 단독투자의 경우 50만 달러 이상 투자가 필요하며, 가나인과의 합작투자(joint venture)는 외국인이 2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가나인의 지분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무역회사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1백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가나인 20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유가증권 및 수출무역 관련 투자의 경우 최소자본금 요건은 없다(GIPC Act).

투자절차 (법인·사무소 설립 절차 등)

회사설립 및 투자승인 절차는 (1)등록청(Registrar General's Department)에 회사설립 신고 (2)투자진흥청(GIPC)에 투자승인요청 (3)이민국에 이민쿼터 신청(GIPC가 대행) (4)국세청(GRA) 및 VAT사무국 등 세무당국 신고 (5)필요시 환경영향평가 요청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www.gipcghana.com). 등록청에서는 회사 설립 신고 후 회사 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및 회사 개업증(Certificate to Commence Business)이 발급된다.

투자진흥청은 광업과 석유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다. 신규 투자 승인 이후 2년마다 투자 등록 갱신이 필요하며, 등록 갱신 및 등록증 교체 작업 역시 투자진흥청에서 처리한다. 외국인 투자 관련 승인 신청 비용은 투자 형태 및 업종에 따라 다르며, 현재 합작투자는 10,500 세디, 외국인 단독 투자는 16,800 세디, 연락사무소는 42,000 세디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기타 관련 비용 및 상세 내용은 투자진흥청(GIPC) 웹사이트 (<http://www.gipcghan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회사설립 및 투자승인 절차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가나에서 외국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는 10개, 소요시간은 72일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가나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내외 투자자 유치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제도·관행 개선 및 세제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었다.~~

그 결과, 가나는 서아프리카 국가 중 비교적 좋은 기업환경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데,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9에 따르면 가나는 190개국 중 118위로(단, 2018년 순위에서 4계단 하락) 토고와 코트디부아르에 이어 서아프리카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의 경우 가나가 서아프리카 중 최고의 기업환경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았으나, 금년 순위 하락은 가나 정부가 교육신탁기금(GETFund) 부담금 2.5% 및 건강보험 부담금(NHIL) 2.5%를 신설하는 등 조세환경을 악화시킨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받고 있다.

투자 혜택

가나는 외국인 투자유치 권장 업종인 농업, 농가공업, 제조업, 관광업 등에 대해 법인세 감액,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 법인세율은 25%이나 가나의 비전통적 수출상품(Non-Traditional Export)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8%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단, 광업 분야에는 3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업종에 따라 세금 감면(tax holiday)은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가능하며, 자유무역지대(Free Zone) 입주기업은 최대 10년까지 법인세 면제가 가능하다(www.gipcghana.com). 특히, 자유무역지대(Free Zone)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입 및 수출품에 대해서는 100%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품의 30%까지 국내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 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수도 아크라(Accra) 및 항구도시 테마(Tema)지역에 외국인 투자자가 몰리고 있는 점을 고려, 저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다.

법인세 제도

구 분	세율(%)
기본 세율	25%
비전통적 수출상품 수출업체	8%
호텔 및 가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22%
금융기관(농민 대출, 장비임대회사 대출)	20%
광업 분야	35%
광업 로열티	5%

법인세 감면(Tax Holiday) 제도

구 분	기간(운영 개시일로부터)
부동산(Real Estate)	5년
지방은행(Rural Bank)	10년
농업(Agriculture)	
- 코코아 재배	10년
- 소 방목	5년
- 유실수 재배(커피, 팜오일, 시어버터, 코코넛 등)	10년
- 가축업(소, 가금류 제외)	5년
- 수산양식업, 가금류, 환금작물	5년
농가공(Agro-processing)	5년
폐기물처리(Waste processing)	7년
자유무역지대 기업	10년
	(10년 이후 8% 법인세 부과)

법인세 환급 제도

구 분	적용 내용
제조업체 세금 환급	
- Accra/Tema	25%
- Accra/Tema를 제외한 주도(regional capital)	18.75%
- 기타 지역	12.5%
농가공업체의 법인세(5년 tax holiday 이후)	
- Accra 및 Tema	20%
- 북부(Northern)주, 북동부(Upper East)주, 북서부(Upper West)주	0%
- 기타 주의 주도(regional capitals)	10%
- 기타 지역	0%

투자진출 제한 및 지분소유 제한

일부 유통업의 경우에는 외국인만의 단독투자가 불가하며, 가나인과의 합작투자만 가능하다. 합작투자시 외국인은 2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가나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추후 가나인이 외국인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수출업과 제조업 전문기업에게는 외국인 최소 투자금액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GIPC Act). 중소 및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외국인 참여가 제한되는 유통업 분야(Negative List)는 다음과 같다.

- 노점상 및 가판대 상품 판매
- 25대 미만의 차량을 보유한 기업의 택시 및 차량대절 서비스
- 미용실 및 이발소
- 휴대전화 충전용 스크래치 카드 제작
- 연습장, 노트 등 기초 사무용품 생산
- 의약품제품 소매
- 봉지 포장된 생수(sachet water)의 생산, 공급 및 소매
- 복권 및 도박업(축구 베팅 제외)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가나는 많은 토지가 구획되어 있지 않고 토지 소유 문서 자체도 없는 경우가 많다. 수도 아크라를 제외할 경우 대부분의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단일화된 토지 이전절차도 없어 거래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공무원 부패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토지 등록기간이 대개 1년 넘게 소요되었으나, 가나 국토자원부는 2020년 10월부터 토지위원회의 토지 인허가 관련 디지털화 및 현대화 등으로 토지등록 소요 기간을 기존 평균 3년에서 아크라 지역은 120일 및 그 외 지역은 14일로 단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최근 가나 국토자원부는 디지털화를 통한 국토행정을 추가 개선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국유지 관리를 위해 모든 공공 토지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등록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가나는 헌법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불허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최대 50년의 임차권(연장 가능)만을 가질 수 있다. 가나의 토지는 국가, 추장, 개인 소유로 분류되며 70% 이상의 토지가 추장 소유인 것으로 추정된다. 족장으로부터 토지를 임차 시 족장에게 ‘stool money’라고 불리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다. 일반적으로 투자개발을 위한 외국인 장기 임차 토지의 경우, 산업용 토지 이용료는 50년동안 에이커 당 1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선이며, 농업용 토지 이용료는 연간 에이커 당 2달러에서 50달러 선이다.

가나는 토지 소유권 및 임차권 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테마 지역의 경우 테마개발회사(TDC)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 기타 지역의 경우 자유무역지대 토지 등 국가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금융상의 제한

가나는 외국투자자의 투자 수익, 배당금 등에 대한 송금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모든 해외 송금에 대하여 거래은행이 가나중앙은행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10년부터는 가나중앙은행에 자금세탁 모니터링 부서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업자들의 경우 2014년부터 관련서류 사전 제출 없이 최고 2.5만 달러를 직접 해외송금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외국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 배당금을 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송금액의 10%를 ‘지점이윤세’ 명목으로 별도 납부해야 한다.

한편, 30~40%에 이르는 높은 대출이자율로 인해 현지 금융 조달의 실익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가나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세제상의 제한

가나 국세청(GRA)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 국가별로 개인소득 추정액을 정해 놓고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 1인당 월 3,000달러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사회 보장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지는 않다.

가나 국세청(GRA)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를 추정매출액에 기반하여 사전 징수하고 차후 정산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GRA가 과다 징수된 법인세에 대한 정산을 미루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가나 세제당국은 징세 실적이 낮을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경쟁 정책

가나는 독점적 지위남용 및 가격담합 등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통신, 은행 등 분야별 입법을 통해 해당 분야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고 있다. 가나통신청(National Communications Authority)에서 방송, 통신 분야를, 가나중앙은행 은행감독부서(Department of Banking Supervision)에서 은행 분야를 각각 감독하고 있다.

총래 휘발유 등의 석유가격을 가나석유공사(National Petroleum Authority)가 가격산정공식에 따라 결정하였으나, 2015년 7월 16일 석유시장 내 경쟁 촉진을 위한 석유가격 자율화 시행 이래, 30개 석유배급사(Bulk Oil Distribution Companies)와 88여개 석유마케팅사(Oil Marketing Companies)들이 국제유가, 환율, 수입관세, 세금 등 요인을 고려하여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석유제품 가격을 자율 산정하고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및 체류비자 발급

우리나라와 가나 간에는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즈니스 목적상 가나 입국을 원할 경우 사전에 상용비자를 받아야 한다. 주한가나대사관은 단수 비자의 경우 최대 3개월, 복수 비자의 경우 최대 1년까지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비자는 월요일~수요일 오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를 미리 구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상용비자의 경우 비자 신청서, 여권 사진, 출장명령서(직원일 경우) 또는 사업등록증(대표일 경우), 은행 잔고증

명서(5,000달러 이상), 초대장, 황열병 접종증명서, 비행기 일정표, 비자비용이 필요하다. 서류접수 후 근무일 기준 약 14일이 소요되며, 체류비자 신청시 가나 이민국에서 국내 '무범죄 경력증명서'도 요청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서류를 발급받아가는 것이 좋다.

가나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별로 이민 쿼터를 제한하고 있으며, 2019년 대비 이민 쿼터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1만~10만 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1명, 10만~50만 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2명, 50만 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4명까지 거주 허가를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투자금액별 이민쿼터가 최대 4명으로 제한됨에 따라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인력의 파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회사들은 필요한 인원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갖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단, 자유무역지대 투자 및 입주 기업에는 노동 허가(work permit) 및 체류증(resident permit) 발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거주허가는 보통 1년, 2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가나에서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는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국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3개월간 운전이 가능하다. 가나는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올 경우 가나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운전자 차량등록청(DVLA: Driver Vehicle and Licensing Authority)은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3개월 마다 갱신이 필요한 임시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느장 행정 처리로 인해 카드형태의 정식면허증을 발급받기까지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금융기관의 가나 진출과 관련된 사항

은행 부문

가나에서 은행 부문의 규제는 가나 중앙은행(Bank of Ghana)이 담당하고 있다.

현재 아쿠포아도(Akufo-Addo) 행정부는 국내은행 개혁을 실시하여 은행 수를 기존 대비 3분의 1인 23개로 축소하였다. 특히, 가나 중앙은행은 2017년 8월 자기자본 침식으로 부실화된 2개 시중은행(UT Bank, Capital Bank)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으며, 2018년 8월에는 높은 부채비율 및 부정확한 자산비중 보고 등을 이유로 5개 은행(Sovereign, Royal, the Beige, Construction, Uni Bank)을 1개 은행(Consolidated Bank)으로 통합하였다. 아울러, 2019년 8월에는 347개 소액대부금융기관(MFI)의 면허를 취소하고 공식 폐쇄를 공고하였으며, 지불불능 및 경영구조 부실 등을 이유로 23개 저축대부업체와 비은행 금융기관의 면허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2017년 8월부터 진행된 부실 금융부문 정리가 완료된바, 그간 시중은행 9개, 소액금융기관 347개, 소액대출업체 39개, 저축대부업체 15개, 할부금융업체 8개, 비은행 금융기관 2개의 면허가 취소되었다.

현재 가나에서는 상업은행 23개 및 4개 은행사무소가 운영중(2020년 기준)으로, 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초기 자본금 요건은 2017년 9월 기준 1.2억 세디에서 4억 세디로 인상되었으며, 지방은행(RCB) 및 소액대부금융기관(MFI)들에 대한 최소자본금 요건은 2백만 세디이다.

한편, 2019년 10월 소액예금자 보호 및 금융부문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금보호 공사(DIPC)가 출범했으며, 금융기관 파산이나 면허 취소 등으로 손해를 입은 예금자를 개인은 6,250 세디, 특수 신탁예탁(deposit-taking) 기관은 1,250 세디까지 보호하고 있다.

가나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2022년 10월 22%에서 24.5%로 인상하였으며, 일반 상업은행의 대출금리는 22.53% 수준이며, 예금이자율은 7.63%이다.

보험 부문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는 2006년 보험법(Insurance Act 2006, ACT 724)에 의거, 보험위원회(NIC)에서 담당한다.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중개사는 법인격을 보유하고 NIC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 가나에서는 27개 비생명보험사(손해보험

사), 21개 생명보험사, 3개 재보험사, 116개 중개사 및 5개 손해사정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www.nicgh.org).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은 2006년 폐지되었으나, 모든 보험사는 다른 업종 진출이 제한되어 있으며 동일 회사가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을 겸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자동차, 상업용 건물(건설중인 건물 포함)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증권 시장

가나는 1990년 가나증권거래소(GSE)를 개장하여 주식, 채권, 국채 등을 거래하고 있으며, 증권위원회(SEC)에서 증권시장 성장 촉진 및 규제와 투자자 및 시장보호 등을 담당하고 있다.

가나증권거래소는 2009년 초부터 전자거래를 시행하여, 현재 22개 기업이 상장되었다. 2019년 코로나19 대유행의 부정적 영향 속에서도 GSE는 개장 이후 30년 만에 역대 최고 이익을 기록(2019년 843만 세디→2020년 2,346만 세디)하였고, 2021년 아프리카 역내 2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한편, 2022년 10월 GSE 종합지수(CI)는 연초대비 11.8% 감소하였다.

아직까지 가나 주식시장은 상장기업수가 매우 적고 유동성도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2013년 상반기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Ghana Alternative Market)을 개설하는 등 주식시장의 저변 확대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SEC의 허가가 필요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외국인도 가나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시스템 및 주식거래 면허를 보유한 주식중개사가 활동하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 현황

Ecobank, Zenith Bank, Barclays Bank, GT(Guarantee Trust) Bank, GCB(Ghana Commercial Bank) 등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나, 사용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으며 선불카드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현금인출기(ATM)의 고장이 잦고 현금 위주의 현지 거래관행에 따라 신

용카드 이용이 활발한 편은 아니나, 수도 Accra 지역의 호텔,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에는 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어 카드 이용은 차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가나에서는 2009년 MTN사가 모바일머니(MTN MoMo)를 처음 도입하여, 현재 아프리카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모바일머니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MTN MoMo는 2022년 현재 10개 이상의 파트너 은행을 두고 있고, 2022년 1월 기준 15세 이상 인구의 38.9%가 모바일머니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2년 9월 기준 가나 내 모바일 머니 사용자는 작년에 비해 16.3%가 증가하여 1,240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MTN 서비스 매출도 27.9% 증가하여 71억 세디를 기록했다. 높은 휴대전화 보급률과 결제의 신속 편리성에 힘입어, 모바일머니는 가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현금 결제수단으로 등극한바, 향후에도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가나 모바일머니 시장은 정부 및 공기관과의 협력도 전개하고 있다. 가나 정부는 현금화폐를 대체하고 빠르고 편리한 결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자국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가나 은행간 지급결제 시스템(GhIPSS: Ghana Interbank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Limited)을 설립하였다. GhIPSS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GIP(GhIPSS Instant Pay) 거래량은 35만 6,66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5만 7,301건) 대비 512% 증가하였다. 아울러, 가나의 전자거래 규모는 2016년 780억 세디에서 2020년 5,000억 세디로 대폭 증가하였다.

정부는 GIP뿐만 아니라 NPS 스마트카드 결제시스템인 e-zwich, Automated Clearing House 등 전자결제채널을 도입하고 모바일머니 상호운용 체계를 출시하여 디지털 결제시스템을 진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가나 중앙은행은 2020년 3월 QR코드 간편결제 시스템 및 전화번호 연동 지급결제 플랫폼(Proxy Pay)을 출범시켰으며, 동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결제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경제 동향

나이지리아는 2020년에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제성장률이 -1.92%를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에 직면하였으나, 2021년은 3.4% 성장으로 반등하였다. IMF는 나이지리아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전망하였다.

2021년 기준 나이지리아의 명목 GDP는 약 4,407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지만, 1인당 GDP는 2021년 기준 2,628달러로 2015년 2,563 달러를 기록한 이후 2천 달러대 초·중반에서 정체되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강력한 긴축 통화정책과 경상경비 축소 등으로 2013년 이후 한 자릿수 물가상승률을 달성하였으나, 달러 부족, 수입물가 상승, 식료품 값 상승 등으로 2016년 이후 다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2년은 8월 기준 20.5%를 기록하는 등 높은 물가상승률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율은 원유생산량 감소, 무역수지 적자 심화 등으로 인해 2016년 이후 1달러당 305나이라로 유지되던 중앙은행(CBN) 공식 환율이 2020년 3월에 360 나이라로 조정되었고 2022년에는 447.37 나이라까지 상승하였다. 이와 함께 오픈 마켓(parallel market) 환율도 2022년 11월 기준 770 나이라 수준까지 급등하였다. 나이지리아의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수출입 기업들의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환보유고는 2019년 6월 약 45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21년 12월 기준 451억 달러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나 교역 동향

'21년 한-나이지리아 교역규모는 총 19.37억 달러로 전년(12.66억 달러) 대비 53% 증가하였으며, 2017년 26.22억 달러 달성 이후 감소추세에 있던 교역규모가 2021년 상승 추세로 전환하였다. 무역수지는 '20년 대비 수출이 86.7%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전년 2.3억 달러 적자에서 0.1억 달러 적자로 개선되었다.

'21년 對나 수출은 총 9.6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5.16억 달러) 대비 86.7%(4.47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출 품목인 합성수지(110.8%), 알루미늄가공품(226.3%) 등이 호조를 보였고, 경유 수출(1,246.9%)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주요 수출품 : 합성수지, 경유, 기타석유화학제품, 축전지, 기타섬유제품, 승용차 등

'21년 對나 수입은 총 9.7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7.5억 달러) 대비 29.8%(2.24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원유 수입(5.17억 달러)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천연가스 수입(3.84억 달러)이 196% 대폭 증가하였다.

*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약 92.5%를 차지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상품 수입 시에 부담해야 하는 관세와 세금은 수입관세(Import Duty), 부가 가치세(VAT) 그리고 각종 SurCharge(Levy, Excise Duty, 관세연동 부담금 등)로 구분된다. 수입관세(Import Duty)는 CIF 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며, VAT는 CIF 가격과 Import Duty, 일부 SurCharge (excise, 관세 연동 부담금 등)를 합한 금액의 7.5%를 부과한다. SurCharge는 특정 품목에 부과되는 Levy, Excise duty, 관세 연동 부담금 및 수수료 등으로 구분된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igeria Customs Service)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세부 품목별 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v.ng)에서 검색 가능하다.

- Category 0(관세율 0%) : 필수품(교육자재 등)
- Category 1(관세율 5%) : 기초 원자재와 자본재
- Category 2(관세율 10%) : 중간재
- Category 3(관세율 20%) :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완제품(TV 등)
- Category 4(관세율 35%) :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어 보호가 필요한 완제품

Levy는 CIF 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부과 항목 및 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주요 항목으로는 자동차 최대 50%, 쌀 최대 50%, 담배, 소금 및 설탕 최대 60%, 변압기 최대 35%, 주사기 65% 등이다. 나이지리아에 등록되어 상업적인 항공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의 경우 항공기, 엔진, 부품등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경우 면세로 진행할 수 있다.

소비세(Excise duty)는 CIF 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5~20%를 부과하며, 부과항목(11종) 및 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주요 항목으로는 향수 및 화장품 5%, 비알콜성 음료 5%+N10(리터), 비누 및 세제 5%, 맥주 20%+N50(리터), 와인 20%+N50(리터), 담배 30%+N4.2(개피) 등이다.

나이지리아는 2022년 세법개정안(FPM 2022)을 통해 담배에 대한 관세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였으며 2024년까지 담배 1개피당 부과되는 세금을 N4.2에서 N5.2까지 매년 상승시킬 계획이다.

맥주에 대한 소비세도 인상하였는데 기본 세율 20% 외에 리터당 N40나이를 추가로 지불하여야하며, 2024년까지 N50로 인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와인의 경우 리터당 N50가 추가 부과되며 2024년까지 N70까지 인상, 증류주의 경우 리터당 N50로 시작하여 2024년까지 N65로 인상시킬 예정이다. 비알콜성 음료는 리터당 N10를 초과 부과하며, 영향을 받는 품목에 대한 CET 코드를 명시한다.

관세에 연동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및 수수료 등은 아래와 같다.

- 항구 개발비(Port Development Fee) : Import duty의 7%
-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부담금(ECOWAS Levy) : CIF 가격의 0.5%
- 검역비(Inspection Fee) : FOB 가격의 1%

관세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전체 재정 수입에서 약 10%를 차지하여 원유 수출 다음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재정 수입원이다. 나이지리아의 현행 관세율은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관세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완제품에 대한 관세는 강화하고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은 완화하여, 해외기업의 현지화와 현지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빈번한 수입정책 변화와 일관성 없는 관세 징수로 인해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종종 심각한 상업적 병목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나 완성품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여 해외 수출업체나 국내 생산 업체들에게 많은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나이지리아의 고질적인 부두 악습관행(port practices)이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장기간의 통관 절차로 인한 정박 및 하역 비용이 매우 높으며, 통관 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CS)은 수입품 밀수나 고의적인 저평가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100% 직접 검사 프로그램의 시행을 한층 더 강화하였으나, 사실상 모든 반입 컨테이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만한 시스템이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스항의 경우 2009년 하역설비를 개량하여 하역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속적인 적체현상으로 통관은 최대 60일까지 소요된다. 라고스항의 물류 적체가 현지에 진출해있는 기업들의 큰 애로사항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나이지리아 정부는 48시간내 통관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목표아래 항구 통관에 관여하던 15개 기관 중 관세청 등 꼭 필요한 기관만 남기고 표준원(SON), 식약청(NAFDAC) 등 10여개 정부기관을 모두 철수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수입 규제

나이지리아 정부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육성, 국민 건강과 안전 등을 위해 2005년 4월 이후로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현재 25개 품목이 수입금지 물품으로 고시되어 있다. 아울러 공기소총, 항공우편 인화지, 중고 의류 등 절대 수입 금지 세부 물품 27개도 함께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제조되는 제품은 대부분 품질이 조악하여 고급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인근 국가를 통해 밀수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나이지리아 정부는 관세수입 증대를 위해 수입금지 예외규정을 두어 수입을 허용하기도 한다. 2022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압축 또는 액화 가스용 강철용기는 수입금지 목록에서 삭제되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수입규제 초기에는 8년 초과 된 자동차 수입을 금지하였으나, 현재는 15년으로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2015년부터 시행된 신자동차 정책에 의해 완성차 수입관세(Levy 포함)를 최대 70%까지 올리는 정책을 2015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대 나이지리아 최대 수출 품목이었던 자수직물의 금지는 계속 유효하다.

수입금지 품목 (25개, 2022년 11월 기준)

1. 살아있거나 죽은 조류(냉동가금 포함)
2. 돼지고기, 소고기
3. 새의 알(계란 등)
 - * 부화용 알 제외
4. 정제된 식물성 기름과 지방
 - * 식물성 기름은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
5.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 설탕, 그리고 순수 자당(첨가된 향미 또는 착색 물질을 함유한 고체 형태)
6. 코코아(버터, 분말, 케이크)
7. 스파게티, 라면
8. 과일주스(소매포장)
9. 물(생수 및 설탕,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탄산수를 포함), 기타 알코올 미함유 음료 및 맥주류
 - * 에너지, 건강음료는 제외
10. 포대 시멘트
11. 표제 3003 및 3004에 해당하는 의약품

12. 폐기 의약품
13. 비누 및 세제
14. 모기퇴치제
15. 플라스틱 위생용품, 아기 젖병을 제외한 플라스틱 용품
16. 재생 및 중고 공압 타이어
 - * 트럭용 중고 타이어(사이즈 11×20 이상)는 제외
17. 골판지, 골판지 상자, 화장지, 티슈
 - * 아기 기저귀, 어른용 기저귀는 제외
18. 전화기 충전카드 및 바우처
19. 카펫 및 기타 섬유 바닥 커버
20. 신발 및 가방(가죽제 또는 플라스틱제 여행가방 포함)
 - * 석유산업에서 사용하는 안전화, 스포츠화 등은 제외
21. 빈유리병(150ml 이상으로 음료, 주류 회사에서 사용되는 제품)
22. 중고 컴프레서, 중고 에어컨, 중고 냉장고, 냉동고
23. 중고차(제조년도 기준 15년 초과)
24. 가구 (유아용 보행기, 실험실 용품 등 일부 제외)
25. 볼펜 및 리필 제품

출처: https://customs.gov.ng/?page_id=3075

2009년 10월에 새로운 시멘트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핵심은 자국내 시멘트 산업 육성을 위해 포대 시멘트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시멘트 설비기계와 석고와 같은 원재료에는 면세혜택까지 주어 수입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전력·농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2012년 1월 31일부터 이 부문 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나이지리아는 자국의 식량안보, 산업진흥, 자원보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출금지 품목을 지정하여 단속하고 있다. 2022년 11월 기준 수출금지 품목은 옥수수, 원목, 생가죽, 고철, 처리되지 않은 생고무, 유물 및 골동품,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제품(악어, 코끼리, 도마뱀, 독수리, 원숭이, 얼룩말, 사자 등), 모든 수입물품 등 8개 품목이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인을 상대로 한 국제무역사기의 대상이 되어 문제를 야기하는 품목이 고철(폐철도레일 포함)이다. 나이지리아로부터 폐철도레일

또는 고철 수출을 미끼로 한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수출 금지품목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비료, 옥수수, 유제품 등 44개 물품의 수입을 위한 환전을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목록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홈페이지(www.cbn.gov.n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특기할 사항은 없으나, 나이지리아는 WTO 회원국으로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지양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 관련 장벽

SPS 기준/시험/라벨링 관련 규정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여 수입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물, 약품, 화장품 및 살충제는 제조업체와 적절한 국가기관이 발행한 분석확인증(certification of analysis)을 구비
- 특정 동물 제품이나 식물, 씨앗, 토양 등은 반드시 적절한 검사 확인증을 수반
- 나이지리아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미터법(the metric system)으로 표기된 라벨을 부착

고관세와 일관성 없는 수입 및 라벨링 규제 적용은 고부가가치의 시한성 제품(perishable products) 수입에 막대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으며(규정의 해석에 관한), 빈번한 부처 간 분쟁 및 통관 가이드라인의 변경은 나이지리아에 입항하는 물류의 지연원인이 되고 있다.

2006년 1월 1일부터는 나이지리아로 수입되는 개인사물, 중고자동차와 병아리, 백신, 이스트 등 상하기 쉬운 품목과 잡지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도착지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1) https://customs.gov.ng/?page_id=3079

이와 더불어 나이지리아 표준국(SON)은 2005년 9월 1일부터 필수제도의 하나로 표준품질검사(SONCAP 증명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중요 공산품 및 기계류 제품들은 출발지에서 나이지리아 표준국이 지정하는 검사기관(나이지리아 표준국 해외사무소)으로부터 SONCAP 증명서를 발부 받아 도착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이지리아 표준국은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판매되는 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공식 명칭은 Standard Organization of Nigeria(SON)이다. 표준 품질 검사의 대상 품목, 절차 등 주요 정보는 동 기관 홈페이지(<https://son.gov.ng>)에서 얻을 수 있다. 현재 표준 품질검사가 적용되지 않는 수입품은 식품, 약물, 의료품(장비 및 기계 제외), 화학물질(원재료), 군용품 및 군장비, 밀수품으로 분류된 상품, 자동차 이외의 중고품 등이 있다.

나이지리아 수입상들은 은행을 통해 Form M을 작성하여야 하고, 은행은 나이지리아가 지정한 검역기관에 Form M을 송부해야 한다. 은행을 통하여 검역기관에 전달된 Form M과 제반 서류들은 외환송금여부에 따라 ‘Valid for Forex’ 혹은 ‘Not Valid for Forex’로 명시된다(Not Valid for Forex의 경우는 수입상이 외환송금을 책임지고 은행은 서류대행). Form M과 Proforma Invoice에는 수입물품의 정확한 명칭 및 세부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Form M은 선적 전 검역기관, 수입상 은행, 나이지리아 세관 및 나이지리아 해운협회(NMA)에 각각 1부씩 보내져야 한다. Form M은 선적 전 검역기관 사무소나 나이지리아 대사관, 국내은행, 나이지리아 은행 해외 지점 및 관련 은행에서 구할 수 있다. 외국에서 작성된 Form M은 외국소재 선적 전 검역기관을 통해 나이지리아의 지정은행 혹은 수입자 은행에게 보내지게 된다. 검역제 외품목과 재무장관 승인품목 이외의 모든 수입품은 검역기관의 CRI(Clean Report of Inspection)의 발행이 필수적이다.

수입상은 선적전 검사기관이 검사를 종결 후 CRI(Clean Report of Invoice)를 발급 할 수 있도록 수출상에게 72시간 내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선적전 검사기관에 제출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수출상은 선적 전 검사기관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고 선적 전 검사 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할 때는 최소한 3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검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순수 검사수수료 제외)은 수출상이 부담하여야 한다. 검사통지를 받은 선적전 검사기관 요원이 검사를 하고자 했을 때 검사준비가 미흡하여 검사할 수 없어 검사시점을 연기하거나 다시 검사해야 할 경우, 추가로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출상이 부담하여야 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나이지리아 공공조달 부문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2007년 공공조달법이 제정되었으며, 공공조달 사업 전반을 규율하기 위한 주무 기관으로 공공조달국(Bureau of Public Procurement)을 설립하였다. 공공조달국 홈페이지(<https://www.bpp.gov.ng>)에서 조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아래와 같은 개별 서비스 접근이 가능하다.

- 조달정보 공개
- Contractor 등록 및 조회
- Procurement Officer 데이터베이스 현황
- Price checker(공급자 가격 확인)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나이지리아는 각 기관별로 사전에 등록된 CONTRACTOR제도를 운영해 왔다. 입찰시에는 동 CONTRACTOR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응찰자격을 제공하는 제한경쟁입찰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이로 인해 실력자의 요청에 따라 수의계약형태로 구매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국영석유공사(NNPC), 국영전력공사(PHCN) 등 주요 정부기관 구매 입찰은 최고 실력자의 의향에 따라 계약자가 선정되어 왔다.

그러나 1999년 5월 29일 출범한 민선 정부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구매에 공개경쟁입찰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실제로 전력공사, 석유공사 등의 입찰이 신문에 공고되고 있다. 하지만 공고 후 입찰준비기간이 약 2~3주일

이내로 매우 짧아 발주처에서 기존의 CONTRACTOR들에게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형식적인 공개입찰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제입찰 공고 후 입찰서류는 건당 약 200~300달러에 달하며 대형 입찰은 10,000달러 이상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제도의 불이익을 타파하고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지사 및 법인 설립을 하고 정부기관에 관련제품 납품자로 등록을 하거나 정부기관에 납품자로 등록된 현지 회사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하는데, 현지에 근거지가 없을 경우 시장 개척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외국업체 입찰참여 제약

상기의 입찰자격이나 사전자격검사(P.Q) 심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일단 선정대상에 들어갈 수 있으나, 최근에는 낙찰자의 자체 Financing (공급자 금융) 제공여부가 매우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현지 유력인 또는 관련 업체와의 합작이나 컨소시엄 구성이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발주의 프로젝트는 자국 산업의 보호육성 측면에서 현지인과의 합작투자가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

일례로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등 특정 은행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입찰 공고시 이슬람국가의 기업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나이지리아가 이슬람 국가에 포함되어 나이지리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한국 기업의 경우 입찰참여가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현지인이 현지법인의 지분 50%이상을 보유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주재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 지상사는 대부분 법인 지분의 50%이상을 현지인(법인)이 보유하도록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 지분 구조를 변경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현지화(Local Contents) 정책 추진

석유 및 가스 생산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나이지리아 정부 및 국영석유회사는 2010년 4월 시행된 The Nigerian Oil and Gas Industry Content Development

Act 2010(Local Content Act)에 따라 국산화(현지화) 강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공사비를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인력·장비·설비·서비스를 나이지리아 내에서 조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은 석유 및 가스 관련 사업에서 인력, 구매, 조달, 건설, 설계뿐만 아니라 법률, 금융, 보험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국영석유회사 및 합작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안내 또는 사전자격심사초청 등의 공고에 있어서 현지화 정책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인력채용에 있어서 자국인을 우대하기 위하여 다국적 석유기업의 경우 모든 직위에 대하여 자국인 채용가능성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자국인 채용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채용기간을 명시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현지화개발 감독위원회(NCDMB, Nigerian Content Development & Monitoring Board)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체 경영진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5%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이민법상 외국 인력 1명 고용시 현지 나이지리아인 2명(Understudy)을 고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많은 인력을 고용해 이로 인한 인건비 지출, 성과물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석유 및 가스관련 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자국화 비율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해양석유가스시설의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 90%
- 가스액화시설(LNG)의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 50%
- 가스수집시설의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 90%
- 심해석유시설의 상부구조물 기본공정설계 및 세부설계 : 80%
- 부유식 콘크리트 구조물 : 80%

※ 100% 국산화 분야 : 강철 합판, 파이프라인, 각종 쓰레기 처리, 운송서비스, 뱅킹·보험 서비스, 케이터링, 세탁 서비스, 크레인, 감사 서비스, 지질·해양 탐사 등

또한, 다국적 석유기업이 발주하는 건설공사(1억 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공사에 참여하는 자국민의 최소한도를 명시한 노무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원청자 및 하청자 그리고 물품구매실적을 감독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건설공사 입찰시 응찰자는 입찰금액의 1%를 감독위원회에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의 현지화(국산화)정책은 자국 내의 설계기술 및 제조업 기반의 취약한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되는 것이어서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지화정책을 둘러싸고 외국계기업과 나이지리아 정부 및 국영석유회사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도 무리한 현지화추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한편 EU와 미국은 나이지리아의 Local Content Act에 대하여 요구하는 국산화 비율(특히 파이프라인 및 판넬, 감사서비스 등은 100%의 국산화 비율 요구)과 현지인 채용비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U 등은 본 정책을 해외자본의 자유로운 투자를 저해 하는 대표정책(Local Content Requirements)으로 판단하고, 본 규정이 WTO 규범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나이지리아 정부 측에 해명을 요청하고 있다.

2013년 12월부터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 Local Content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하드웨어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서비스제공, 자료·정보 관리, 정보통신 인력 개발 등의 분야별로 생산기업, 정부기관, 나이지리아 정보기술진흥원(NITDA) 등의 역할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재국 정부에서 구매하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 하드웨어 제품은 주재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부 납품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향후, 주재국내에서 Local Content 정책은 건설, 항공, ICT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나이지리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의 발생과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2018년 5월에 Buhari 대통령은 현지화 정책을 장려하는 대통령령 5호에 서명한바있다.

한편, 2021년 석유 및 가스분야 이해당사자들의 요청으로 Local Content 인정범위 확대, 부담금 도입 등을 내용으로한 Local Content Act 개정법안

이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심의 중에 있다. 나이지리아 상원이 검토 중인 Local Content Act 개정안은 이를 확장하여 제조, 정보 통신 기술, 건설분야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협약 가입현황

나이지리아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국제기구 및 조약에 가입하고 있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제도는 외형상으로 잘 갖추고 있다.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세계저작권 조약(UCC)
- 베른협약
- 로마협약
-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상표법(2004), 저작권법(2004), 특허 및 디자인법(2004) 및 상품표기법(Merchandise Marks Act, 2004) 등이 제정되어 법적 기반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이를 실행할 행정역량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동차부품, 약품,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및 기타 소비제품의 복제품이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서적류의 불법복제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특허권 및 상표 관련 법집행도 미약한 상황이고 법절차의 진행도 느리며 부패의 개연성도 상존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방송법은 국내 방송사가 외국 방송사와 제휴 관계(joint venture)를 맺지 않더라도 외국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으며 나이지리아 방송강령

(Nigerian Broadcasting Code)은 나이지리아 정부정책에 반하지 않는 한 외국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오일가스, 무기제조 등 일부 분야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에 투자가 가능하며, 50% 이상의 지분 확보도 가능(은행, 보험, 광산업 포함)하다. 오일가스부문은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와의 합작투자가 필수적이다.

※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 무기 및 탄약 제조,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물질 제조

오일가스 부문의 제한

오일가스 부문에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지만 특히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장벽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오일가스 회사가 나이지리아인이 아닌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석유투자관리사무소 (NAPIMS)에 이에 대한 소명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지분소유 제한

1995년까지 나이지리아는 자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기업진흥법(Nigerian Enterprises Promotion Decrees)’에 따라 기업의 중요도 등을 고려, 외국인 투자지분을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1995년 9월 ‘외국인 투자진흥법 (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Decree)’에 따라 무기 생산 등 일부 ‘negative list’ 업종을 제외하고는 100% 외국인이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투자범위 및 지분
 - 석유가스와 일부분야(무기, 마약 등)를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에 투자가 가능

- 은행, 보험, 광산업을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 투자사업에서 50% 이상의 지분 확보도 가능
-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식매매 가능
- 자유로운 양수, 양도 보장
- 합작투자
 - 외국인이 현지 투자가와 합작 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여야 하며 현지 파트너의 지분은 자본금의 5% 이상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외국회사는 나이지리아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 및 계약 행위를 할 수 없으며, L/C 개설 및 협상도 불가하다. 대표사무소는 오직 홍보 및 연락 기능만 할 수 있으며, 현지 운영경비는 해외 본사로부터 적절한 절차에 의거 반입되어야 한다.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기업등록위원회(CAC: Corporate Affairs Commission)에 등록해야 한다.

현지화 정책

석유 및 가스산업 분야는 Local Content Act 2010에 따라서 현지화 비율이 강제된다. 이외에 다른 분야에 대한 특기사항은 없다. 최근 상원에서 심사중인 Local Content Act 개정안은 적용범위를 제조, 정보 통신 기술, 건설분야 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허가 등 절차상의 문제

나이지리아에 대한 외국인의 현지 투자를 관장하는 기관은 Nigerian Investment Promotion Commission(NIPC)이며, 투자제한 대상이 아닐 경우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 진출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 투자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 절차가 필요하다.

- 사전심사 제출서류

- 설립자/주주 및 보유지분 현황
 - 회사명 및 설립자본금, 설립목적
 - 100% 외국인 투자가 아닐 경우 합작투자 계약서
 - 회사정관
 - 이사회 구성현황 및 명단
 - 이사회 이사 선임 증명서
 - Notice of Address of Registered Office(회사 위치 통보서)
 - CAC 등록 수수료 영수증
 - TAX Clearance Certificate
- 심사 후 제출서류
- NIPC 소정 양식 기재 후 사본
 - NIPC 소정양식 구매 영수증 사본
 - 회사 설립 등록증 사본
 - TAX Clearance Certificate 사본
 - 회사정관 사본
 - 회사지분 구성확인 서류 발급 시 Stamp Duty 지급 영수증 사본
 - 합작투자계약서 사본
 - 사업계획서 사본(필요설비 목록 포함)
 - 회사위치 확인서(공장 또는 사무실 임대계약서로 대체가능) 사본
 - 이사 구성 현황 및 명단(성명, 주소, 국적, 직책)
 -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직위 현황표
 - 외국투자회사의 카탈로그 및 브로슈어 사본

상기 구비서류를 절차에 따라 NIPC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제출하면 심사 후 허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 Business Permit and Expatriate Quota
- Pioneer Status and Other Incentives

이상의 절차를 통해 NIPC로부터 투자승인 및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해외로부터 자본금 송금 및 납입
- 은행으로부터 자본금 송금관련 증명서(Certificate of Capital Importation) 발급
- Work Permit(근로허가) 발급 및 체류비자 발급

투자 유망 분야

나이지리아는 청량음료, 섬유, 신발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산업의 다양성이나 기술수준이 아직도 초기 단계에 있다.

합작투자 유망분야는 나이지리아 투자촉진위원회법(NIPC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향유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나이지리아 기업진흥법(Nigerian Enterprises Promotion Act, 77)에서 정의한 투자 유망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 한국에서 점차 사양화 되는 노동집약산업(섬유, 신발)
- 생산기지의 이전이 시급한 산업(금속가공, 석유화학)
-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는 산업(인프라, 전력)
- 자원 개발, 확보에 필요한 농·임·광업 분야
- 유럽 등 선진국시장을 겨냥한 수출산업 등

투자촉진위원회(NIPC)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확대를 위해 홈페이지에 노동 조건, 세금, 인센티브 등 투자 기업이 관심 있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하에 외국 자본의 나이지리아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윈스톱 투자센터(OSIC)를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투자자를 위해 각종인허가와 민원을 48시간안에 처리하고, 전자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패 없는 조직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나이지리아는 1998년 3월 27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고,

1999년 2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나이지리아는 2019년 10월 현재 한국,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약 30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와 나이지리아 간의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내국인 대우, 최혜국 조항 및 투자회수와 과실송금이 보장되고 있다.

사업 환경(doin business)

2019년 10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2020)’에 의하면 조사대상 190개국 중 나이지리아는 131위로 전년(146위) 대비 15계단 상승하였다. 분야별로는 자금조달(15위), 소액투자자 보호(28위)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재산권등록(183위), 통관행정(179위), 전력공급(169위), 세금납부(159위), 퇴출(148위) 등이 기업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2021년 4월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국내 총생산의 최소 50%, 고용률의 80%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주요 분야별 순위

분류	순위	분류	순위
창업	105	소액투자자 보호	28
건축 인허가	55	세금납부	159
전력공급	169	통관행정	179
재산권 등록	183	법적분쟁해결	73
자금 조달	15	퇴출	148

나이지리아의 총 37개 주(36개 주 + 수도 FCT)에 대해 4개 분야(창업, 건축 인허가, 재산권 등록, 법적분쟁해결)를 평가한 세계은행의 ‘나이지리아 기업 환경평가 보고서(Ease Doing Business in Nigeria 2018, 2018년 9월 발표)에 따르면, 주별 순위는 Kaduna주가 전체적으로 가장 기업환경이 좋고, Cross River주가 가장 기업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수도인 FCT(Abuja)는 9위, 경제수도인 Lagos주는 28위로 나타났다.

투자 인센티브

나이지리아 투자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와 적용 대상 등은 투자촉진위원회(NIPC)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다.

세금 인센티브는 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자본이득세, 소득세, 관세 등과 관련하여 인정된다. 법인세(30%)는 선도기업(pioneer industries)에 최대 5년(시작 3년, 추가 최대 2년)간 면제되며,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20%), 농촌 투자 세액감면(15~100%) 등이 적용되며, 매출이 작은 회사의 세율은 20%이다. 부가가치세(7.5%)는 의료용품, 교육 자료, 유아용품, 비료, 농장비, 의료 서비스 등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서 면제된다. 자본이득세(10%)는 기업 인수합병, 재투자 수익금 등에 면제되며, 소득세는 회사 자본금의 10%이상 소유자 등의 배당금에 대해 면제된다.

업종별 주요 인센티브는 농업에는 투자 초기년도 자본공제(95%) 등이 있으며, 오일&가스 산업은 차별화된 로열티(0~20%), 생산물분배계약 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50%) 등이 적용된다. 광업은 초기 3년간 법인세 면제, 초기년도 자본공제(95%) 등이 인정된다.

수출자유지역은 외국인 쿼터 면제, 각종 세금 면제, 건설단계에서 토지 임대료 면제 등의 일반적 인센티브 이외에 플랜트 등에 지출된 비용에 대한 100% 자본 세액감면 등 광범위한 인센티브가 인정된다.

토지 취득상의 제한

1978년 제정된 토지이용법(Land Use Act)에 따라 모든 토지는 국유지에 속하며, 각 주의 주지사가 토지 규제 조치 및 관리를 담당한다. 따라서,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는 없으나 주지사의 허가를 얻어 법정 확인서(statutory certificate)를 취득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권(use), 점유권(occupy), 개발권(improve) 형식으로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법정 확인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판매, 양도, 전대의 권리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지사의 추가적 동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99년까지 점유(occupancy)하는 것은 가능하며, 점유기간 만료 후 갱신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정부마다 외국인의 토지 점유에 대해 상이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해 토지가 위치한 주정부의 규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지 임차 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8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느린 행정과 부패 등으로 인해 각종 비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 토지 대장 확인
- 임차증명서(Deed of Assignment) 발급
- 토지권리증서 사본 및 토지 지적측량 계획 사본 발급
- 수수료 지불
- 주지사 허가서 신청 및 토지권리증서 수령
- 토지 측량 소관청 심사 및 등록
- 등기수수료, 허가수수료, 환경개선비용 납부에 관한 통지서 수령
- 인지세 납부 통지서 수령

나이지리아 정부의 토지 수용 시, 수용에 따른 보상액 지불 범위는 해당 토지 취득자가 개발 중인 범위로 한정되며 나대지(bare land)는 수용 보상 대상이 아니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이 사업을 통해 얻은 과실송금 관련하여 송금액, 송금세, 재투자 등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다(단, 과실송금에 대하여 자금의 출처에 대한 증빙이 필요). 그리고 본국 또는 제 3국의 자금차입에 대한 한도나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금융서비스의 범위 제한)은 없으며, 수출대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외환 구좌의 보유제한 등도 없다. 다만, 외환 부족시 중앙은행이 해외 송금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경향이 심해져 수출을

하고도 대금을 송금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거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환율은 중앙은행(CBN)의 외화경매에 따라 결정되는 환율이 공식 환율로 인정되어 오다가 2016년 6월 20일부터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중앙은행 공식환율(약 447.37나이라/\$)과 오픈마켓 환율(2022년 11월 기준, 약 770나이라/\$)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기존의 고정환율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회보장세 납부를 요구하는 등의 세제상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부가세 및 사치세 등의 과세 강화 및 국제청의 탈세에 대한 조사,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세원 확대를 위해 1999년 1월 1일부터 25%를 환급해주던 관세 환급금 제도를 폐지하고 담배 및 주류에 대한 이행관세를 부활시켜 시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주요 산업 부흥을 위해 세금우대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석유 및 가스 개발 관련 기업체에 대한 세금 우대조치
- 외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통한 투자 유치 강화

* 우리나라는 나이지리아와 2006년 11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 4월 국회비준을 완료하였으나, 나이지리아는 2021년 10월 현재까지 국내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동 협정이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 천연가스 개발 사업자에 대한 세금 우대
- 광물개발 사업자에 대한 세금 우대
- 2004년부터 국내 제조 산업과 관련된 기계류, 플랜트,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및 한시적 면세 제도 시행

기타 장벽

외국인 쿼터 및 비자-현지법인 설립관련 비자 쿼터제도

투자촉진위원회(NIPC)가 현지법인 설립을 허가하면, 외국인 채용을 위한 외국인 쿼터(EQ, expatriate quota)를 내무부에서 결정한다. EQ에 대해서는 업종마다 특별한 기준이 없으며 해당직위에 외국인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justify)하여야 한다. EQ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후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오일&가스 분야에서는 EQ를 위해 현지화개발감독위원회(NCDMB)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추가적인 제약이 있다.

STR(Subject to Regularization) 비자는 나이지리아에 등록된 회사의 EQ를 토대로 발급되며, 입국 후 거주허가(Residence Permit)와 외국인 신분증(Aliens Card)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STR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현지 나이지리아에서는 불가능하며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

금융기관의 나이지리아 진출과 관련된 사항

나이지리아 금융시장 현황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Nigeria)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5년까지 89개가 난립하던 은행들을 통폐합하여 현재 상업은행은 24개가 활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중 상업은행의 최소자본금은 250억 나이라(약 2억 달러)로 확대되어 은행의 건전성이 강화되었다. 기준 금리는 2016년 7월 이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14%로 유지하다가, 2019년부터 경제성장 촉진 및 경기침체 방지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인하하여 2020년 9월 11.5%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금리를 다시 3차례 인상, 15.5%로 유지하고있다.

나이지리아 외환 오픈마켓(Parallel Market)은 수입금지 품목 수입업자 들의 달러 수요와 상업은행을 통한 외환 확보의 복잡성으로 인해 번성을 하였으며,

나이지리아 금융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해 왔다. 이에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오픈마켓을 없애고 외환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은행 구조개혁을 단행하였지만, 외환당국이 환율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픈마켓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시중 외환거래는 오픈마켓 가격이 통용되는 상황이다.

금융기관의 나이지리아 진출과 관련된 장벽

외국 금융기관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하는데 있어 특기할 만한 장벽은 없다. 다만, 금융기관 진출을 위해서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소 자본금 및 부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이지리아 금융기관의 주 고객은 기업이며 개인들의 경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현금거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2015년 7월 1일부터 Cashless Policy를 추진하고 있고 인터넷 환경이 개선되면서 많은 은행들이 온라인·모바일 거래와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국적 은행들은 기술우위에 있는 온라인 거래, 인터넷 뱅킹 등의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여 대규모 자금력을 가진 현지 로컬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사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사례는 없으며, 현재 Standard Chartered, City Bank, Stanbic IBTC 및 Ecobank 등이 진출해 있다.

디지털 무역 장벽

나이지리아 정부는 최근 핀테크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을 다양한 법령을 통해 규제 또는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핀테크 등을 활용한 전자 지불 솔루션의 경우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이 제시하는 결제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칙과 관련 법령은 준수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아울러, 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등 IT 기술을 활용한 사업의 경우 나이지리아 국가정보기술 개발원(NITDA)에 등록하여 부처 및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 이 경우에도 CAC 등록, 나이지리아 국적 기업의 과반수 이상 지분 확보 등의 제한이 따른다.

한편, 나이지리아 정부는 정보 통신 및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장려 정책도 시행 중에 있으며, 연간 매출액 2,500만 나이라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세, 자금대출, 연구개발 자금 세액공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ICT 분야 기업의 법인세는 총매출액 2,500만 나이라 이하 기업은 면세, 2,500만~1억 나이라인 기업은 20%, 1억나이라 이상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법인세와 같은 과세 기준으로 2.5%의 고등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아울러, 연간 매출액이 1억나이라 이상의 기업은 기업 이익의 1%를 정보기술 세로 납부를 해야하며, 이 금액은 납부 과세년도 다음해에 법인세 공제가 가능 하다.

전자 지불과 관련하여 나이지리아의 경우 민간기업을 통한 전자지불수단을 장려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이 직접 2021년 10월 E-Naira라는 이름의 전자화폐를 발행하여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

개선실적 및 정책동향

원스톱 투자 서비스

1995년 나이지리아의 기업진흥법 제정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였으며, 이로써 그전에 존재하던 외국인 투자한도 규제 및 진출금지 분야에 대한 규제가 석유산업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면 철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은행, 운수업, 전력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되었다.

2006년 나이지리아 투자 촉진위원회(NIPC)에 ‘원스톱 투자센터’를 설치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원스톱 투자센터에는 외국인의 법인설립과 관련된 26개 기관의 관계자가 근무하면서 즉각적인 현지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부정부패 추방

부하리(Buhari) 정부는 부정부패 추방을 국정 운영의 기초로 삼아 EFCC (경제 재정범죄위원회) 및 회계감사반 등에 강력한 힘을 부여하여, 이전 정권 및 모든 부문의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과거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 바 있는 국가 수입계정을 정리하여, 모든 국고 수입, 즉 석유에서 발생하는 수입, 세수 등을 1개 계정으로 단일화(TSA, Treasury Single Account) 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2015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각종 개혁정책 추진

부하리 정부는 경제 회복 및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2017년 3월초 “경제회복 및 성장 계획(2017~2020년, ERGP)”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ERGP의 주요 내용은 ①경제회복과 안정(재정/금융/대외수지), ②성장세 회복(6개분야 중심 경제 다각화), ③경쟁력 강화(인프라 확충, 기업환경 개선), ④포용적 성장(보건, 교육, 일자리 창출 등), ⑤거버넌스 구축 및 집행력 확보(계획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12개 우선추진 정책 설정 등)이다. 이를 통해 4년(2017~2020년)간 평균 4.6%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12개 우선 추진 정책 : ①조속히 오일 증산, ②국가자산 민영화, ③비오일 수입 증대, ④예산의 효율적 활용 및 비용 절감, ⑤재정, 금융, 수출 정책 조화, ⑥전력 등 인프라 확충, ⑦정유공장 개보수, ⑧기업환경 개선, ⑨사회보장책 시행, ⑩농업 개혁 정책 시행, ⑪제조업 개혁정책 시행, ⑫ERGP 집행조직 신설 및 집행

최근에는 2020년에 마무리된 ERGP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21년 11월 2021-2025 국가발전전략(NDB)에 따라 348조7천억나이라 규모의 5년단위 재정투자 포트폴리오를 마련하여 승인한바 있다. .

부하리 정부는 인프라 부족과 함께 제조업 육성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심각한 전력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7년 3월 “전력 활성화 정책(2017~2021년)”을 발표하고 전력 분야 투자 확대, 전력 공급 능력 확대, 전력 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주기적인 휘발유 공급 파동에 대응하고 정유 수입 대금으로 지급할 부족한 외환 절약 등을 위해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국내 정유공장의 현대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남아공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통상환경 개관

남아공은 1993년 UN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통해 세계 경제에 편입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제 동참 및 각종 양자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남아공의 대세계 무역

2021년 기준, 남아공은 대세계 수출 1,238억 달러, 대세계 수입 935억 달러를 기록하여 약 303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²⁾. 2021년도 남아공의 상위 5대 수출 대상국은 중국(11.3%), 미국(10.6%), 독일(7.6%), 일본(6.72%), 영국(6.68%), 순이며, 남아공의 상위 5대 수입 대상국은 중국(20%), 독일(8.16%), 미국(7.04%), 인도(5.34%), 사우디아라비아(4.83%) 순이다³⁾. 2022년 9월 기준 남아공의 對한국 수출은 0.2%(48위), 수입은 0.5%(31위)이며, FTA는 미체결된 상태이다⁴⁾.

2021년 기준 남아공의 주요 수출품은 백금, 금, 은 등 귀금속 및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 (22%), 크롬, 망간, 백금류 등 광물 원석(ore) 등(15.1%), 차량 및 부품품(8.72%), 석탄 등 광물성 연료 및 석유제품 등 (8.41%), 기계 및 부품 등 (5.41%), 철과 강철(5.16%), 과일 및 견과류(3.61%) 등의 순이다.

주요 수입품은 석유, 가스 등 연료(16.5%), 중장비 및 기계류 등(12%), 전기·

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자료원 : Trend Economy (<https://trendeconomy.com/data/h2/SouthAfrica/>)

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해외통계, 남아공)

전자 장비(9.21%), 미분류 상품(8.1%), 차량 및 부속품(6.81%), 의약품(3.72%), 플라스틱(3.12%), 안경/사진/의료기기(2.36%) 등 순이다⁵⁾.

한·남아공 간의 무역·투자 관계

2021년 기준, 한-남아공 교역액은 약 36.09억 달러로, 한국의 對 아프리카 교역(158억 달러)의 약 22.84%를 차지하였으며, 대남아공 수출은 9.89억 달러(차량류, 기계류, 플라스틱, 전자기기 등), 수입은 26.21억 달러(크롬, 망간, 백금류 등 광물 원석(ore) 등, 철과 강철, 곡물 등)를 기록했다⁶⁾

한·남아공 간의 상품 무역은 2011년 53.6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12년(43.2억 달러)과 2013년(44.3억 달러)에는 다소 감소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2013~16년 동안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7년 32.8억 달러로 반등한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⁷⁾. 감소의 주요 요인은 우리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해외 법인에서 생산된 수출품목들이 해당 국가의 이름으로 남아공에 수출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남아공의 교역 대상 아시아 국가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아공은 한국의 교역 대상 아프리카 국가 중 최대 교역국이다⁸⁾.

한편, 한·남아공 간의 투자는 한국의 대남아공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0~2021년 한국의 대남아공 투자(투자 기준)는 총 1억6천1백만 달러이며, 남아공의 대한국 투자(도착금액 기준)는 2010~2021년 동안 41만 달러이며, 2018~2021년 동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⁹⁾.

남아공의 다자무역 및 자유무역협정 관련 정책

아프리카 대륙내 경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남아공은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아프리카인 그룹(African Group)의

5) 자료원 : Trend Economy (<https://trendeconomy.com/data/h2/SouthAfrica/>)

6)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7)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8)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9)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한국→남아공), 산업통상자원부(남아공→한국)

주도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남아공은 BRICS의 회원국이자, 아프리카 국가중 유일한 G20 회원국으로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남아공은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등의 경제협력체 창설을 주도하였다. SACU 5개 회원국(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에스와티니, 나미비아)은 2002년 개정된 SACU 협정문에 따라, 역외공동 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적용하고 있다. SACU 회원국간에는 공동통화지역(CMA: Common Monetary Area)이 설립되어 나미비아, 레소토 및 에스와티니의 통화가 남아공 통화인 란드(Rand)화와 1:1로 연계되어 통용된다. 남아공 GDP는 SACU 회원국 전체 GDP의 90%를 차지한다.

SACU 5개 회원국은 또한 제3의 당사국과 새로운 특혜무역협정 협상을 출범 하거나 기존의 특혜무역협정을 개정하는 경우, SACU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는 내용의 SACU 협정문 제 31조를 근거로, 여타 국가와의 특혜무역 협정 추진 또는 기체결 특혜무역협정 개정을 검토한다.

남아공은 SACU 역내 무역원활화 및 아프리카 대륙내 무역자유화를 통한 지역경제 통합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SACU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과의 자유무역협정을 2008년에 발효 하여 남아공을 비롯한 모든 회원국은 공산품과 농산품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ing Area)이 2016년 10월 21일 공식 발효되어(특혜 마 진: 10%~100%) 남-남 협력 증진이 가능해졌다.

SADC는 남부아프리카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을 위해 1992년 창설되었으며 역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여 자유무역지대 형성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8월 남아공에서 개최된 SADC 정상회의에서는 코모로가 새롭게 가입하여 회원국 수가 총 1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남아공은 1996년 협정 서명 후 2000년부터 관련 협약을 이행하고 있으며, SADC FTA 는 2012년 이래 전면 시행되어 전체 생산라인의 90% 이상에 대해 수입 관세 가 면제되고 있다.

2016년 6월 10일, 보츠와나 카사네에서 SADC와 EU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했다. EU는 SADC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해 불균형 관세제도를 도입하여 SADC 국가들은 EU로 100%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반면, EU는 대 SADC 국가 수출품 중 86%만 무관세로 수출한다. SADC-EU EPA 회원국들은 자국 산업의 위협이 있다고 판단 시, 대 EU 수입품에 대한 5개의 세이프가드 규제를 발동할 수 있으며(양자 세이프가드 협정), SADC산이 아닌 수입 원단으로 제작한 의류의 수출도 EU 무관세 혜택(원산지 규제 유연성)을 받을 수 있다. 남아공은 2016년 10월 10일부로 동 EPA 시행이 발효되었으며, 타 SADC 회원국과 달리 남아공의 대 EU 수출시 관세 면제율은 98.7%이다. 기존 남아공은 EU와 교역, 발전 및 협력 협정(TDCA: 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1999년 타결한 바 있으나, SACU-EU 간 EPA 시행으로 보다 발전된 수준의 EU 시장 접근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농수산물 분야에서 EU의 시장개방 확대를 달성하였다.

2015년 6월 10일 이집트 엘세이크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26개국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SADC-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남동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간 3자 자유무역협정(TFTA: Tripartite Free Trade Area) 출범에 합의했다. TFTA는 2017년 9월 기준 남아공을 포함하여 총 20개 국가가 서명을 완료하였고 14개국에서 비준할 경우 발효하게 된다. 2018년 6월 기준 이집트, 우간다 등 2개국만 비준한 상태이나, TFTA는 2019년 AfCFTA의 발효로 인하여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가 되었다.

2012년 1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아프리카연합(AU) 총회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설립에 합의하고, 2015년부터 AfCFTA 협정 및 의정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이 AU 의장직을 수임한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2018년 3월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AU 특별총회에서는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설립 협정문에 총 44개 AU 회원국이 서명하므로 본격 출범을 선언하였다¹⁰⁾.

10) 자료원 : 아프리카연합(AU) (<https://au.int/en/cfta>)

2018년 7월 모리타니아 아프리카연합 총회에서 남아공, 시에라리온, 레소토, 부룬디, 나미비아 등 5개국이 추가로 AfCFTA 협정문에 서명하였고, 2019년 4월 29일 기준 총 22개국이 자국 비준을 거쳐 AU에 비준서 기탁을 완료한 바, AfCFTA 합의문 23조항에 따라 30일이 지난 2019년 5월 30일 공식 발효 되었다¹¹⁾. 당초 2020년 7월 1일부터 교역 공식 개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사태로 6개월 연기하여 2021년 1월 1일 부터 AfCFTA에 따른 교역 공식 개시하였다.

2019년 7월 7일 니제르에서 개최된 AU 특별총회에서 나이지리아와 베냉이 합류하면서 아프리카연합(AU) 55개 회원국 가운데 AfCFTA에 참여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는 에리트레아이다. 2022년 10월 기준 국회 비준을 득한 후 AU에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는 44개국이다¹²⁾.

이외에도 2008년 7월 16일 남아공이 참여하는 SACU-미국 간 TIDCA (Trade,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on Agreement)이 체결되었고, SACU-인도간 PTA는 협상에 참여 중이나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¹³⁾.

이외에도 남아공은 SACU-인도간 PTA 및 SACU-미국간 FIDCA 등협상에 참여 중이나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¹⁴⁾.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남아공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수입대체 정책에 따라 높은 관세율과 수입쿼터 제도 등을 통해 섬유, 자동차 등 주요 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왔으나, 1994년 민주정부 수립과 1995년 WTO 가입 이후 시장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세장벽을 꾸준히 철폐해 오고 있다.

11) 자료원 : 아프리카연합(AU) (<https://au.int/en/cfta>), Trade Law Centre (TRALAC, 남아공 무역법률연구소)

12) 자료원 : 아프리카연합(AU) (<https://au.int/en/cfta>)

13) 자료원 : 남아공 통상산업경쟁부(www.thedti.gov.za)

14) 자료원 : 남아공 통상산업경쟁부(www.thedti.gov.za)

남아공은 WTO 가입 당시 전체 상품의 96.1%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는 양허안을 제출하였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실행관세율(Simple Average, MFN 적용 기준)을 1996년에 13.82%에서 2019년에 7.7%로 인하했다. 농산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은 2021년 기준, 8.8%, 비농산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은 7.6%가 적용되었다¹⁵⁾

우리나라의 대남아공 최대 수출 품목인 승용차에 대한 수입관세는 인하되는 추세로, 1999년 50.5%에서 2006년 32.2%, 2007년 30%, 2008년 29%, 2010년 27%로 인하하였으며, 2022년 기준, 차량 수입시 가치에 따라(ad valorem) 20%의 수입관세와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VAT) 15%를 납입해야 한다¹⁶⁾.

이러한 관세인하 추세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정부가 제조업 육성, 고용창출 등 국내경제정책의 수단으로 관세정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정품목의 실행관세율을 WTO 양허관세율까지 인상시키는 등 특정산업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는 2015년 2월 18일 우리나라 등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5%에서 WTO 양허세율범위 내인 15%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¹⁷⁾, 2017년 8월 11일 자국 내 철강업계 보호를 목적으로 열연코일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도 하였다¹⁸⁾.

수입규제 및 금지

남아공 정부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바젤 협약,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1998 UN 협약 등 국제 협약이 규정하는 품목 및 중고품의 수입을 국민보건, 환경보호, 안전 등의 이유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다.

15) 자료원 : WTO (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tariff_profiles20_e.pdf)

16) 자료원 : 남아공 국세청 (SARS)

17) 자료원 :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www.itac.org.za)

18) 자료원 :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대표적인 수입 규제 품목으로는 차량용 신품 압축타이어, 중고 전자제품, 중고 의료기기, 중고차량, 중고항공기, 폐기물, 방사성 화학 물질, 사행성 도박 기기 등이 있다.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에 따르면, 통관분류대상 총 6,650개 품목 가운데 276개 품목이 수입 통제 대상이며, 구체적인 목록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 홈페이지(www.itac.org.z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입통제 대상 품목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의 특별허가를 얻을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 ITAC는 177개 품목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되는 품목은 주로 ▲호안석(Tiger's eye) 등 희귀 광물 ▲제조업을 위한 원자재 ▲범죄예방을 위한 전략 지원을 위한 품목 (도난 차량 수출을 예방하기 위해 중고차량의 수출 금지 등) 등임

◦ 남아공 수입통제대상 품목 예시

품 목	수입 규제 사유
방사성 화학물질(Radioactive Chemical Elements)	국민보건
신품 압축타이어(New Pneumatic Tyres)	안전기준
1998년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Chemicals listed in the 1998 Convention)	협약 준수
화석연료(Fossil Fuels)	효율적 제조 필요성, 소기업 보호
무기 및 탄약(Arms and Ammunition)	국민안전
도박기기(Gambling Services)	사회질서 유지
중고품(전자제품, 의료기기, 자동차, 항공기, 폐기물 및 스크랩 등)	국내산업 보호 및 환경 보호

자료원: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통관절차상 장벽

남아공 국세청 홈페이지(www.sars.gov.za)는 항공 화물통관은 약 1일, 해운 화물통관은 약 2~3일이 소요된다고 공지하고 있으나, 공항 및 항구에서의 통관 지연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또한, 남아공 세관은 수입 화물이 남아공 표준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별하기 위해 해당 물품을 반출대기 할 수도 있다.

남아공에서 특정 공정, 수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된 품목이나, 수출용으로 수입된 품목의 경우, 관세 및 기타 세금이 면제되며, 산업개발지역(IDZ: Industrial Development Zone) 유입물품의 경우에도 관세 및 기타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남아공에 수입되는 물품중 SACU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 보세구역이나 세관통제구역에서 사용될 수입 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이 가능하며, 관세환급 신청절차는 약 4개월가량 소요된다.

한편, 세관수입신고 과정에서 인보이스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세관 직원들에 의한 절도행위, 까다로운 수입허가 절차, 불필요한 전수검사, 과도한 규제 등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여 통관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입에 필요한 국가규제기관(NRCS)의 인증서(LoA, Letter of Authority) 발행이 지연되는 문제도 있다. 정상 소요기간은 규정상 최대 120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발행까지는 약 6개월에서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해당 인증서는 제품 통관을 위해 수입업자들이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로 절차가 지연되면 제품을 항구에 보관하면서 보관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다른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¹⁹⁾.

무역구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남아공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검토를 거쳐 통상산업경쟁부(DTI) 승인을 통해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를 취한다.

남아공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가 WTO에 통보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30일 기준 남아공은 37건의 반덤핑 조치가 발동 중이며, 국별로 보면 중국(9건), 인도(3건), 인도네시아, 아랍 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대만,

19) 자료원: NRCS (www.nrccs.org.za)

태국, 영국, 미국(이상 각 2건), 이집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튀르키예, 네덜란드, 브라질, 한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이상 각 1건)에 대해 수입 규제가 발동되고 있다.²⁰⁾

2022년 10월 기준, 남아공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1건으로, 페트(PET)에 대해 2006년 5월 30일부터 반덤핑관세 19.7%를 부과하였고 반덤핑 조치를 5년 마다 연장 적용하고 있다. 2021년 7월 7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연장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 다시 5년 연장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2022.9.9.).²¹⁾

2020년 6월 수입산 철강 부문(U, I, H, L 및 T 부문)에 대한 세이프 조사를 시행하였다. 수입산 철강 부문(U, I, H, L 및 T 부문)에 대한 세이프 조사는 최근 해당 제품의 수입물량이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피해와 수입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2021년 9월 17일 세이프가드 조사를 종결하였다.²²⁾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는 2021년 5월 21일부터 육각형 헤드(hexagon head) 강철 나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착수하였고, 2021년 7월 26일 해당 품목에 대해 2021.8.2.-2022.8.1.까지 35.6%, 2022.8.2.-2023.8.1.까지 30.6%, 2023.8.2.-2024.8.1.까지 25.61%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²³⁾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 검사

남아공 표준청(SABS)은 국내물품이 표준 · 검사관련 규제를 받는 경우 동종 수입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농업부, 보건부, 노동부,

20) 자료원: WTO 홈페이지 → WTO membership → South Africa → Notification (by Agreement → anti-dumping click)

21) 자료원: WTO, ITAC

22) 자료원: Government Gazette Notice 563 of 2021 (2021.9.17.)

23) 자료원: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http://www.itac.org.za/>)

수자원위생부, 환경부, 교통부, 통상산업경쟁부가 각종 기술관련 규제가 포함된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남아공 표준청 산하 필수규격규제기관(NRCS)은 국민의 공공보건 및 안전, 환경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필수규격 관련 법령의 이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필수규격규제기관법에 근거하여 2008년 설립되었다. 모든 수입품과 남아공 현지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은 필수규격규제기관이 정한 필수규격에 부합해야 하며, 각종 필수규격에 관한 정보는 필수규격규제기관 홈페이지(www.nrscs.org.za)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수규격규제기관은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부품(브레이크 라이닝, 헤드라이트 등), 모터사이클 헬멧 관련 품목, 전자제품, 전선, 전기플러그, 건축용 자재 등 다양한 품목에 걸쳐 필수규격을 정하고 있다.

위생 검역

농축산물, 농수산물가공품, 주류 등이 위생·검역 규제의 대상이다. 농축산물 수입에 있어서 까다로운 규제를 하고 있으며, 방사선 처리를 거친 육류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사과, 체리, 배 등의 과일류를 남아공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밟아야 한다.

남아공은 유전자변형식품(GMO)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99년 ‘유전자변형식품법(The GMO Act)’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은 2006년 개정되어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유전자변형식품이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생명공학 제품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생명공학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남아공은 2003년 8월 14일부터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의 회원국이며, 동 의정서에 따라 남아공 농업산림어업부가 주무관청으로 동 의정서 준수를 위한 정책 이행을 책임지고 있다.

라벨링(labeling), 포장 등

모든 제품의 라벨링 및 포장 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수입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함유물의 중량표기는 남아공의 측정 시스템에 맞추어야 한다. GM 재료가 함유된 제품은 반드시 그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新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수입된 직물 원재료를 남아공에서 가공해서 만든 제품은 'Made in South Africa from imported material'이라고 라벨에 표기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섬유제품 라벨에 표시되는 원산지 표시(예: Made in South Africa)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필수규격규제기관(NRCS)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2014년 11월 28일 에어컨, TV, 셋톱박스 등 시청각 기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및 냉장고, 전기오븐, 세탁기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 필수규격 및 라벨링 제도 도입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해당 가전제품들은 제품군별로 최저 에너지효율 등급을 만족해야 하며 그에 따른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동 발표일 이후 품목별로 6개월(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9개월(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18개월(에어컨 등) 순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²⁴⁾.

품목별 장벽

남아공 정부는 국내 자동차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고 자동차 및 중고 자동차 부품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외국인의 남아공으로 이민 시, 해외거주 자국민의 영구 귀국 시 중고차량 반입, 경주용 자동차, 수집용 빈티지 자동차 등 특정 용도의 중고 자동차 등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수입이 허가된다. 한편, 좌측 핸들 자동차는 도로교통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4) 자료원: NRCS

남아공은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산업개발계획(MIDP: Motor Industry Development Program)을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하였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생산개발계획 (APDP: Auto Prod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으로 대체 시행하였다.

2015년 11월, 자동차생산개발계획(APDP)의 내용을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 내용은 ①APDP 수혜 자격 완화: 국내 자동차 최소 생산량 연간 5만대 이상 → 1만대 ②자동차조립보조금에 차등제 적용 ③부품공급회사에 대한 자격 강화 (비핵심 자동차 제품의 APDP 혜택 수혜 방지) ④자동차 톨링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2017년 6월 남아공 자동차제조사협회(NAAMSA, National Association of Automobile Manufacturers of South Africa)는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2035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연간 생산 규모를 60만대에서 140만대, 현지 생산 부품 사용 비율을 38%에서 60%로 높이는 계획을 발표하며 자국 내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²⁵⁾.

남아공 전기자동차 산업은 초기 단계로 메르세데스-벤츠 남아공 법인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를 유럽 수출을 위해, 도요타 남아공 법인이 내수 및 수출을 위해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생산을 시작하였고²⁶⁾, 미국 포드자동차 또한 새로운 레인저 픽업 라인업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2022년 생산을 시작하였다.

남아공 정부는 미국, 중국, 한국 등과 달리 전기자동차 구입 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없으며, 일반 자동차 수입 시 부여되는 18% 관세보다 높은 25%의 관세를 전기차 수입 시 부과함에 따라 전기자동차가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전기자동차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환경 마련, 잦은 정전 등과 관련한 전력수급 안정화 그리고 전기차량 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25) 자료원: 남아공 자동차제조사협회(www.naamsa.co.za)

26) 자료원: Engineering News (2021.11.05)

남아공은 특허법, 디자인법, 저작권법, 상표권법, 위조품단속법 등을 통하여 특허, 등록디자인, 저작권, 상표, 노하우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각각의 특성, 등록 절차, 지적 산물의 보호 범주 등을 가지고 있으며, 지식재산권법은 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지적 산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남아공의 특허, 등록된 디자인,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법의 전반적인 이행은 통상산업경쟁부 산하 회사 및 지식재산 위원회(CIPC)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허권(Patent)은 발명을 뒷받침하는 아이디어 혹은 원칙을 보호하는 바, 발명의 형태는 신규 기제, 상품, 방법 혹은 절차를 포함하며 발명가와 해당 국가 정부 간 협정에 의하여 발효된다. 등록 디자인(Registered Design)은 산업적으로 생산된 물품들의 외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상표(Trade Marks)는 타 상품들로부터 구분되는 상품의 원산지와 본래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상품 고유의 혹은 사용을 통하여 획득된 특수성(distinctiveness)을 보유하여야 한다. 저작권(Copyright)은 아이디어가 아닌 물질적인 형태로 구현된 상품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²⁷⁾.

2018년 5월 31일, 남아공 내각은 통상산업경쟁부(DTI)가 제출한 '남아공 지식재산권 정책 1단계(Intellectual Property Policy of South Africa Phase 1)'를 승인함에 따라, 향후 남아공 의회의 입법절차를 거쳐 실행에 들어갈 것 전망이다. 지식재산권 정책 1 단계는 공공보건(public health)과 관련된 지식재산권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협력(International IP cooperation) 등을 다루며, 주요 내용은 △ 특허 관련 실질적인 검사 및 조사 제도 도입(Substantive Search and Examination for Patents), △ 이의신청제도 개선, △ 병행수입 전면허용, △ 의약 특허와 관련하여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 도입 등 이다²⁸⁾.

현 제도는 특허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특허등록이 종료된 이후 법원 소송을

27) 남아공 지식재산법 및 운용 현황 (주남아공 대사관, 2017년 12월 출판)

28) 남아공 통상산업경쟁부(DTI)

통해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의 제기가 까다롭고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하며 사전에 특허등록을 반대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있어, 제3자가 특허 심사과정이나 특허 등록 이후 법원이 아닌 특허심의위원회에 직접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전/사후 특허 이의신청제도’ 도입하여 이의신청을 쉽게 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한 빈곤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 제공을 위한 특허법의 의약 특허 관련 부분 개정을 위한 입법작업이 2018년부터 추진 중이나, 아직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남아공 의회에 의약품관련 특허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적극적인 반대 로비 또한 예상된다.

남아공 통상산업경쟁부는 현 저작권법(1978년 제정)을 디지털화에 따른 세계적 추세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해 2015년 7월 ‘저작권법 개정안 2015(Copyright Amendment Bill 2015)’를 발표하고 같은 해 하반기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이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특히 동 개정안에 포함된 공정사용(fair use)에 대하여 전통적 저작권 보호를 옹호하는 작가, 음악인, 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예술인을 중심으로 개정안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현재의 남아공 저작권법에 따르면, 사적 복제, 교육과 연구목적, 평론, 비평, 언론보도 등과 같은 특정목적 가운데 소량의 저작내용 인용 시 공정취급(fair dealing)으로 저작권자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하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공정취급을 공정사용(fair use)으로 대체하고 공정사용 개념 정의를 생략하고 8가지 공정사용(예를 들어 리서치, 사적 공부 및 개인용도, 저작물에 대한 비평 및 리뷰, 학문(scholarship), 수업(teaching), 교육(education)용, 최근 사건에 대한 보도 등)의 경우 저작권자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남아공 통상산업경쟁부는 ‘2015 개정안’을 수정한 ‘2017 개정안 (Copyright Amendment Bill 2017)’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사 과정에서 다시 이해관계자들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일어나, 의회는 발의안을 남아공 통상산업경쟁부로 돌려보내었다. 통상산업경쟁부의 재수정안이 의회에 다시 제출되었고, 2018년 12월 하원 승인, 2019년 3월 상원을 통과²⁹⁾하여 최종단계인 대통령령의 재가만을 남겨두었다.

29) 남아공 의회 (<https://pmg.org.za/bill/705/>)

그러나 2020년 6월 16일 라마포사 대통령은 두 법안의 합헌성이 의심이 되고 개정 법률이 기존법률보다 저작권자들의 지적재산권 덜 보호한다는 등의 의견과 함께 남아공 의회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남아공 하원 “통상 산업 상임위원회(Portfolio Committee on Trade and Industry)”는 해당 법안을 통상산업경쟁부로 돌려보냈고, 통상산업경쟁부는 재수정안을 2021년 6월 1일 하원 통상 및 산업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하였고, 2022년 9월 1일 하원에서 찬성 163표, 반대 45표로 통과하여 현재 상원에서 상정된 상태입니다. 상원을 통과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되면, 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파테이트 당시 제정된 것으로 남아공 저작권법을 온라인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기존의 공정취급(fair dealing) 조항을 공정사용(fair use)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동 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현 저작권법이 규정한 공정취급 규정으로도 충분히 저작권화된 저작물의 부분 이용이 가능하며, 공정사용을 인정할 경우 전통적으로 보호받았던 저작권의 보호 범위가 좁아져 창작활동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남아공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이지만 저작권과 관련하여 베른협약에만 가입하고 있고, WCT 및 WPPT에 대해서는 서명만 한 상태이다.

서비스 장벽

남아공은 대부분의 서비스 시장을 자유화하고 있으나 WTO/GATS에 의한 구속력 있는 시장 개방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서비스 시장은 과거 인종차별정책 및 무역제재 조치의 영향으로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어 있어 외국 기업이 신규로 진입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편, 남아공 정부는 2013년 9월 SADC 서비스 무역자유화 의정서(SADC Protocol on Trade in Service)를 비준하였다. 동 의정서는 SADC 회원국간 서비스 분야 개발, 투자 촉진 및 건설, 교통, 에너지, 관광 분야 등의 서비스 무역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

유선통신서비스 시장은 국영전화회사(Telkom)가 독점하고 있으며 텔콤의 최대주주인 남아공 정부는 51%의 지분[직접 39.8%, 여타 지분은 공공투자공사(PIC)를 통한 간접 방식]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의 남아공 유선통신시장 진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유선통신시장 독점으로 인해 통신비용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은 보다콤(Vodacom), 엠티엔(MTN), 셀씨(Cell C) 등 민간기업들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이 외에 위성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도 투명하지 않아 외국계 위성통신 사업자에게 매우 높은 사업면허 취득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무선통신업체인 레인(Rain)은 2019년 9월 남아공에서 최초로 5G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2020년 5월에는 보다콤이 임시 스펙트럼 할당을 통해 모바일 및 고정 무선 서비스를 위한 상업용 5G 네트워크를 하우텡 및 웨스터케이프의 20개 5G 사이트에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20년 6월 30일 엠티엔이 요하네스버그, 케이프타운, 블룸폰테인, 포토 엘리자베스 등 100 사이트에서 5G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남아공 통신규제위원회(ICASA)는 2020년 4월 17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조치로 급속히 증가한 데이터 사용량으로 인한 통신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700, 800, 2,300, 2,600, 3,500MHz를 이동 통신업체인 엠티엔, 텔콤, 보다콤 등에 임시 할당함에 따라 보다콤과 엠티엔의 5G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2020년 10월부터 남아공 통신규제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4G와 차세대 5G 네트워크에 대한 주파수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소송 등으로 지연되었다. 2022년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텔콤, 보다콤, 엠티엔, 셀씨, 레인, 리퀴드 텔레콤(Liquid Telecom) 등 6개 업체에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을 할당하였다.³⁰⁾

30) 자료원: 남아공 통신규제위원회(<https://www.icasa.org.za/news>, 2022.03.17.)

유통 서비스

유통서비스 시장은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내 및 유럽계 외국기업 (Makro, SPAR, Woolworth 등)이 구축하고 있는 유통망 이외에 새로 유통망을 구축하여 참여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과점 구조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유통 마진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아공 온라인 쇼핑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2018년 남아공 인터넷 쇼핑 시장 규모는 9억 9,310만 달러 규모였으나, 2019년에서 2020년 약 66% 성장하여 18억 불, 2021년 약 50억불 규모로 성장하였다. 남아공 온라인 쇼핑 시장은 2028년 약 250억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1).

남아공의 높은 인터넷 및 모바일 보급률은 온라인 쇼핑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2017년 전체 인구의 약 30%에 불과했던 인터넷 보급률은 2019년 59.7%, 2022년 1월 기준 인터넷 사용자는 4,119만 명 (전체인구의 68.2%)이다.32).

남아공 주요 온라인 쇼핑물에는 Takealot, Superbalist, One day only 등이며, 아마존, 알리바바 등 다국적 기업, 남아공 소매업체인 Woolworths, Pick n Pay, Shoprite 등 유통업체 또한 온라인 시장에 참여하여 약 40여개 회사가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남아공 온라인 시장 매출에서 1위는 Takealot으로 2021년 기준, 6억 2백만 달러, Superbalist가 2위로 8,500만불, 3위는 Woolworths로 5,700만불 순이다33).

정부조달 관련 장벽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

남아공 정부는 1994년 민주정부 수립 이전 인종차별정책(apartheid)으로 불

31) 자료원: South Africa E-Commerce market and Forecast 2022-2028

32) 자료원: Digital 2022 Report

33) 자료원: ecommerceDB Country Report 2021

이익을 받았던 역사적 소외집단(Historic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으로 분류된 흑인, 인도인, 혼혈인 등과 백인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흑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 Broad-Based Black Economy Empowerment Act) 등을 제정하여 흑인경제육성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흑인경제육성정책 준수 여부는 흑인경제육성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흑인경제육성(B-BBEE) 등급은 하단표와 같이 (1) 소유권, (2) 경영권, (3) 기술 향상, (4) 기업 및 공급자 개발, (5) 사회 경제 발전 등 5개 평가요소에서 부여된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평가 요소의 총점은 109점이며, 추가적으로 보너스 9점 획득이 가능하여 총 118점 취득이 가능하다. 등급은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등급(100점 이상), 2등급(99점-95점), 3등급(94-90점), 4등급(89-80점), 5등급(79-75점), 6등급(74-70점), 7등급(69-55점), 8등급(54-40점)과 미준수(40점이하)로 구분한다.

B-BBEE 등급의 증명은 인증업체(SANAS Accredited B-BBEE Verification Agency)의 평가를 받거나, 자체 평가를 한 후 ‘B-BBEE Codes of Good Practice’에서 제시한 ‘진술서(affidavit)’로 대체할 수 있다.

일반 점수표(Generic Scorecard)’는 아래와 같다³⁴⁾.

평가요소	배점
흑인의 지분소유권 (Black Ownership)	25점
경영권(Management control))	19점
기술 향상 (Skills development)	20점 + 보너스 5점
기업 및 공급자 개발 (Enterprise & supplier development)	40점 + 보너스 4점
사회 · 경제적 발전(Socio-economic development)	5점
총점	109점 +보너스 9점

위의 일반 흑인 경제육성점수 채점표는 농업, 정보산업, 부동산, 건설 등 독자적으로 점수표를 갖고 있지 않는 업체에 적용이 되며, 독자적 산업군 점수표를

34) 자료원 : 남아공 통상산업경쟁부

갖고 있는 경우 업종에 따라 점수 배정이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산업군 점수표를 확인해야 한다.

남아공의 정부조달은 사회적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하나의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남아공 정부는 “흑인 우대 구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입찰 심사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 심사는 서류 심사로, 공고된 대로 입찰 서류 및 정보 제출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기업의 등록 정보 및 등록 서류 사본 제출, B-BBEE 등급 관련 서류 제출, 세금 관련 서류 등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

2단계는 해당 업체가 수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무 능력, 인적 능력, 기술적 경험 보유 여부 등을 파악하는 기능성 심사이다. 최종 경합에서 동점이 발생할 경우 기능성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유리하다.

3단계는 가격 및 B-BBEE 등급 점수를 계산하는데, 입찰 가격에 따라 80/20 점수제(80% 가격 +20% B-BBEE점수) 또는 90/10 점수제(90% 가격 +10% B-BBEE점수)를 통해 입찰 점수를 계산하여 이 점수를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입찰 업체를 선정한다.

구매 대금에 따라 B-BBEE 등급 점수가 적용되며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가 격	절 차	참 고 사 항
R2,000 미만	소액 결제	견적 불필요
R2,000-R10,000	최소 3개 견적	구두 견적 가능
R10,000-R30,000		서면 견적
R30,000-R200,000		서면 견적, 7일 이상 조달 공고 80/20점수제 (80%가격+20% B-BBEE 점수)
R200,000-R50 m	공공 입찰을 통해 구매, 공급 조달	80/20 점수제 최소 14일 이상 광고.
R50 million 이상		90/10 점수제 (90%가격+10% B-BBEE 점수) 최소 30일 이상 광고

남아공 '우대구매시행령 2017'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입찰 공고 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제'를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B-BBEE 1등급 또는 2등급만 참여 가능하다는지, 면제된 영세 기업(EME) 또는 소규모 기업(QSE)만 참여할 수 있다는지, 또는 입찰 참여자는 전체 공사에 대하여 적어도 30% 하청계약을 흑인·흑인청년·흑인여성·흑인장애인·흑인퇴역군인이 51%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면제된 영세 기업(EME)' 또는 '소규모 기업(QSE)'과 체결해야 한다는지 등을 요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우대 구매 시행령 2017'에 따르면 발주처는 남아공 통상산업경쟁부와 협의하여 특정 산업군에 대해 현지 생산품이나 현지 부품(로컬 콘텐츠) 사용을 의무요건으로 할 수 있다. 입찰 금액이 3,000만 란드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30% 하청업체 고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지정된 그룹(designated groups)을 하청업체로 선정해야 하는데, 지정된 그룹에는 면제된 영세 기업(EME) 또는 소규모 기업(QSE), EME 또는 QSE로서 흑인 보유 지분이 최소 51% 이상인 기업, EME 또는 QSE로서 흑인 청년(14-35세) 보유 지분이 최소 51% 이상인 기업 등이 있다.

또한 수주 금액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B-BBEE 등급보다 동등하거나 높은 하청업체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들 중 하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없는 경우 B-BBEE 등급과 상관없이 하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보유한 EME를 하청업체로 사용할 수 있다. 하청업체는 남아공 재무부(National Treasury)에 서비스나 물품 공급업체로 등록이 된 업체 가운데서 선정해야 한다. 입찰 시 하청업체를 미리 지정해야 하고, 수주 후에는 발주처 동의 없이는 하청업체를 임의로 바꿀 수 없다.

투자 장벽

지분소유 제한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은 기업의 흑인지분 비율, 흑인 간부 및 종업

원 비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남아공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려 시 흑인경제육성정책은 필수 고려 사항이다. 특히, 남아공 정부입찰이나 정부로부터 사업면허(통신, 광업 등)를 발급받아야 하는 기업은 반드시 BBBEE 정책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BBBEE 정책상 흑인/흑인기업의 지분소유권 (Black Ownership)에 배정된 점수는 2015년부터 20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남아공 광물자원부가 2017년 6월 15일 제3차 광업헌장을 발표하였으나 동헌장이 광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남아공 광업회의소 등의 반대로 인해, 2018년 2월 라마포사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였다. 만타셰(Mantashe) 광물자원부 장관은 7개월간 광업기업, 투자자, 광산 노동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제3차 광업헌장(Mining Charter 2018)을 2018년 9월 27일 관보에 게재하였다.

제3차 광업헌장은 흑인 지분 강화, 고용평등 의무화, 남아공 제품 구매 의무화, 주거 및 생활환경 계획 제출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신규로 광업권을 신청하는 기업은 제3차 광업헌장에 따라 흑인 지분 최소 30% 포함하여야 한다. 3차 광업헌장 시행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광업권을 취득한 후 5년 이내 30%로 상향조정 하여야 한다³⁵⁾.

이처럼 흑인경제육성정책은 남아공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려중인 외국기업에게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남아공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 활용해야 할 정책 중 하나이다.

외국계 기업의 자금차입 제한

합작투자 기업 중 외국인 지분이 75% 이상인 경우는 남아공 국내은행으로부터의 대출시 대출 가능 금액에 제한이 있으며, 외국계 기업들이 자금차입을 통해 투자 진출할 경우에는 남아공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35) 자료원: 남아공 광물자원부 (<https://www.dmr.gov.za>), 2019년 5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남아공 광물자원부와 에너지부를 통합하여 광물자원 및 에너지부(Department of Mineral Resources and Energy)로 통합되었으나, 홈페이지는 여전히 분리 운영.

외환관리

외환관리는 매우 엄격하며 모든 외환거래는 공인 딜러(은행)만이 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딜러를 통해서만 외환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 국적의 기업이나 거주자는 외환 취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인 딜러에게 매각해야 하는 등 외환보유에 제한이 있다. 수입대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남아공으로 반입되어야 하나, 자본재 수출 등 특수한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 동 기간을 12개월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남아공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금 지불은 별도의 승인이 필요 없으며, 사업 청산이나 폐업 등에 따른 배당금 지불은 사실 입증 후 송금이 가능하다. 2022년 11월 2일 기준, 남아공 거주자(임시비자 보유자 포함)의 경우 남아공 출입국 시 1년에 총 백만 란드(R1 million)까지 신고를 요하지 않으며, 남아공 기업의 경우 남아공과 ‘공동통화지역(Common Monetary Area)³⁶⁾ 이외의 국가 투자 시 천만 란드까지 승인 없이 란드 반출이 가능하며, 천만 란드 초과 시 남아공 중앙은행 재정감독부(Financial Surveillance Department)의 승인이 필요하다³⁷⁾.

과실송금 보장제도

해외 투자자가 남아공에 설립한 법인 또는 지사의 영업이익이나 자산매각 차익의 해외송금에는 일부 제한이 있다. ‘배당금/수익분배금 해외송금 이전 자본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불능력 및 유동성 (solvency & liquidity) 테스트’를 통과한 경우에만 해외송금이 가능하며, 자산매각시는 양도소득세(CGT)의 적용을 받는다. 배당금 또는 수익분배금이 선언되어 이를 남아공 비거주자가 받게 될 경우, 해외송금은 시중 외환거래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³⁸⁾.

지적재산권의 해외 이전 또는 양도시는 외환거래 시중 은행의 승인을 득하여야 해외송금이 가능하다(과거에는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

36)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37) 자료원: 남아공 중앙은행(South African Reserve Bank), Currency and Exchange guideline for Individuals)

38) 자료원: 남아공 국세청(SARS)

지적재산권 관련 라이선스 비용이나 로열티의 해외송금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남아공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된 라이선스 비용의 해외송금은 남아공 통상산업경쟁부(DTIC)³⁹⁾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⁴⁰⁾.

경쟁 정책

인종차별정책 기간 동안은 경제제재로 인해 외부와의 교역에 제한을 받았으므로 경쟁이 없는 국내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독점기업이 많이 생겨났다. 그러나 인종차별정책 철폐 이후 외국 기업의 남아공 진출, 흑인기업 출현 등으로 남아공에도 경쟁 체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에너지, 물류, 교통, 통신부문은 아직도 사실상 독점시장으로 남아있다.

남아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기업의 반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노력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산업 전반의 공정거래정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남아공 공정거래위원회 2021/22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담합(cartel) 관련하여 35건을 조사하고 이 가운데 14건을 공정거래 위반으로 법원에 제소하였다. 공정거래위반으로 2021/22 회계연도에 진행된 소송이 건수는 총 116건이며 담합관련하여 소송이 80건으로 가장 많다. 116건 중 26건은 관련 업체와 합의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하였으며, 합의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은 2,464만 란드이다.⁴¹⁾

환경 정책

국가환경관리법이 남아공 환경관련 법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동 법은 협력적

39) 남아공 정부는 2019년 6월 통상산업경쟁부(DT)와 경제개발부(EDD)의 통합을 발표하고, 2020년 1월부터 통상산업경쟁부로 체제로 운영

40) 자료원: 남아공 국세청(SARS)

41) 자료원: 남아공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Annual Report 2021/22

인 의사결정, 포괄적 환경관리, 환경관리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범규약, '오염유발자 부담' 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립환경관리법에 규정된 위반사례 적발시, 5백만 란드 미만의 범칙금 또는/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남아공은 기후변화문제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2015년 파리협약에 서명 및 비준하였고, 2015-30년 기간 동안 398-614 메트릭톤 CO₂ (MtCO₂e)를 감축하겠다고 자발적 공약을 발표하였다.

남아공의 탄소세법은 2010년에 입안되었지만, 탄소세 도입에 따른 전기세·유류세 인상과 광산업과 철강 산업 기업들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도입이 지연되었다가 2019년 5월 26일 최종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시행되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탄소세의 기준 세율은 이산화탄소 1톤당 134란드에서 144란드(R144/tCO₂e)로 인상하였다⁴²⁾.

2017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대기질법은 주요 대기오염물질을 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물질을 연간 0.1 메가톤 이상 발생시키는 업체는 환경부 장관에게 대기오염방지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남아공 국영전기회사 Eskom의 발전 중 90%가 화력발전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환경단체 등은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남아공 에너지부는 환경과 관련하여 향후 석탄발전소 개발을 자제하고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2018년 4월 4일 27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발전용량 2,300MW, 53개 신재생에너지 IPP 프로젝트)에 대해 국영전력회사 에스콤(Eskom)과 IPP사업자의 계약이 체결하였다. 총 102개 신재생에너지 IPP 프로젝트를 운영을 통해 총 17,000MW의 발전용량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⁴³⁾.

42) 자료원 : 남아공 재무부(National Treasury), 2021 예산발표 (Budget Review)

43) 자료원: 남아공 에너지부, 2019년 5월 이후 '광물자원 및 에너지부(Department of Mineral Resources and Energy)'로 통합됨

2019년 10월 남아공 광물자원에너지부는 ‘통합자원계획 2019’ (Integrated Resource Plan 2019)를 발표하여 신재생에너지 증가를 목표로 2030년까지 화력발전 12GW, 2050년까지 35GW까지(2019년 당시 42GW) 폐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남아공 정부는 석탄화력 의존율을 71.31%(2019년)에서 2030년까지 43%로 감소하고, 2030년까지 풍력발전은 3.8%에서 22.53%, 태양광 발전은 2.82%에서 10.52%, 양수발전 6.35%, 수력발전 5.84%, 원자력발전 2.36%, 집중태양력 0.76% 으로 구성할 계획이다⁴⁴⁾.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2050”이 규정하는 배기가스 범위, 목표 성취 등과 관련하여 남아공 환경산림어업부는 ‘기후변화 법안(National Climate Change Bill)’을 기안하고 2018년 6월 8일 고시를 한 후 2019-2020년 대중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하였다. 대중 의견을 반영한 법안이 내각에 제출되었고, 남아공 내각은 2021년 9월 22일 기후변화법안을 최종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산림어업부는 동 법안을 2022년 2월 18일에 남아공 하원에 제출하였고, 2022년 10월 기준 남아공 하원에서 공청회 등 심의가 진행 중이다⁴⁵⁾.

남아공 내각은 2020년 8월 18일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환경부가 제출한 ‘국가기후변화대응전략(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y)’ 10년 계획안을 승인하였고, 동 전략은 안정적 식량 생산, 탄력적인 인프라,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5년 마다 동 전략의 진행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⁴⁶⁾.

2020년 9월 14일 남아공 내각은 대통령직속 기후변화조정위원회(P4C) 설립, 장기 저탄소 배출전략(LEDs), 국가폐기물 관리전략(NWMS 2020) 등을 승인하고, 향후 5년간 약 5천만 란드의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며, 대통령직속 기후변화조정위원회는 남아공 의회에 상정할 기후변화법안(Climate Change Bill)이 통과될 경우 설립될 예정이다⁴⁷⁾.

44) 자료원: 남아공 에너지부, IRP 2019

45) 자료원: 남아공 환경산림어업부(<https://www.environment.gov.za/>)

46) 자료원: 남아공 환경부,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y (NCCAS)

47) 자료원: 남아공 대통령실부 (<http://www.thepresidency.gov.za/>)

장기저탄소배출전략(LEDs)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기한인 금년 12월 이전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가폐기물관리전략은 2011년 전략을 개정한 것으로 폐기물 발생 방지 및 매립되는 폐기물 중 5년 내 40%, 10년 내 55%, 15년 내 70%를 재활용 및 회수하여 궁극적으로 폐기물 매립 0% 달성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디지털 무역장벽

전자통신거래법

남아공에서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는 2002년 제정된 전자통신거래법(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 Act, 2002)에 의해 규율된다. 동 법 제55조에 따르면 통신부 장관은 국가안보 또는 경제 및 사회 중요 정보를 주요데이터베이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주요 데이터베이스의 전반적인 관리, 접근, 이전, 통제, 인프라, 데이터 저장, 재해복구계획 등을 규제할 수 있으며, 통신부 사무차관은 동 데이터베이스의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동 법의 제80조에 따르면 통신부 사무차관은 통신부 공무원을 사이버 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웹사이트 감시 및 사찰, 암호화모듈 제공업체 조사, 인증 서비스 제공업체 조사, 주요데이터베이스 감사를 할 수 있으며, 영장 없이도 정보 시스템 수색이 가능하다. 또한 동 법 제29와 제30조에 따라 모든 암호화기술 서비스 제공업체는 남아공 통신부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시 남아공내에서 암호화기술을 제공할 수 없다.

남아공의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는 전자통신거래법 제43조 1항 및 2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웹사이트에 명시해야 하며, 안전한 결제 시스템(전자서명)을 사용해야 한다(동 법 제43조 5항).

개인정보보호법

남아공의 개인정보보호법(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ct)은 2013년 11월 대통령이 서명하였고, 2018년 12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제정된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 부로 시행되었다. 다만, 관련 법률조항 준수에 1년간 유예기간(grace period)를 갖고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기관들은 1년 내(2021년 7월 1일 이전)에 고객 및 근로자 정보취급과 관련하여 정보담당자 임명, 회사나 기관에 적용되는 개인정보정책 마련, 근로자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실시 등의 규정 준수를 이행해야 하며, 미준수 시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 징역 및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피해자에게 경제적 보상 등의 처벌을 받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에서는 ① 정보를 제공 받는 해외기관, 기업 또는 정보수령자가 남아공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한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어 효과적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경우, ②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③ 정보제공이 계약의 이행 또는 계약 전 조치의 이행을 위한 경우, ④ 정보제공이 계약 종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⑤ 개인의 동의를 구할 수 없으나 정보이전이 해당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동의를 득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남아공 기업이 고객이나 근로자의 개인 정보를 해외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21년 8월 27일 남아공 법무부 장관은 기존 시행령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PAIA Regulations)을 발표하였다. 신규 시행령에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법인들이 내부적으로 임명한 정보담당관(Information Regulator)이 동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양식, 정보제공 요청 시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 정보제공 시 부과할 수 있는 비용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⁴⁸⁾.

디지털세

남아공은 2014년 부터 온라인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구분 없이 온라인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48) 남아공 법무부 홈페이지

디지털직접세 도입과 관련하여 남아공 재무부는 2013년 7월 Davis Tax Committee를 구성하여 2017년 10월 13일 디지털직접세 도입관련 최종 보고서를 받았으나, 현재 까지 추진을 미루었다. 남아공 재무부는 2020년 6월 남아공 의회 재무 및 세출위원회(Finance and Appropriations Committees)에서 “세금 개요: 디지털경제와 세금 정책 고려사항(Tax Brief: Digital Economy and Taxation Policy Considerations)”⁴⁹⁾을 소개하였다.

2020년 8월 26일 데이빗 마손도(David Masondo) 남아공 재무부 차관은 “OECD의 디지털세 관련 종합 보고서 발표 또는 다자간 합의가 확립될 때까지는 디지털세 국제논의 관련 독자 정책(unilateral policy) 수립 또는 디지털세의 직접 도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노동환경 및 최저임금

남아공의 노동법 수준은 세계 최상으로 프랑스, 영국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 노동법은 과거 인종차별정책이 종료된 이후에 제정되어, 투자유치나 소규모 사업자의 입장보다는 근로자 지위 향상과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⁵⁰⁾. 세계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남아공 노동시장은 채용 및 해고가 까다로워 141개국 중 129위로 하위권에 있고, 노사협력 관계는 원만치 않아 139위, 노사임금 협상 타결 또한 134위로 채용이나 해고가 까다롭고, 임금협상에 있어서 자주 파업 등 노사분쟁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⁵¹⁾.

또한 남아공 노동시장은 강성 노조로 인하여 임금 인상 요구 등과 관련된 파업 등이 자주 발생한다. 남아공의 노조원의 수는 전체 근로자의 25% 정도에 해당한다. 남아공의 노조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며, 남아공전국노총(COSATU) 출신들이 집권당(ANC)과 남아공 공산당의 연립정부에 참여하여 노동정책 수립 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49) 자료원: 남아공 의회예산실(Parliamentary Budget Office)

50) 자료원: A Global Employment Guide to Redundancies and Reductions in Force

51) 자료원: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남아공은 ‘최저 임금법’ 입법을 통해 국가최저임금제도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첫 시행되었던 최저임금은 시급 20란드 (예외적으로 농장 근로자는 시급 18란드, 가사근로자는 시급 15란드, 확장된 공공사업 프로그램 참여 근로자는 시급 11란드)가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된다.⁵²⁾

2020년 3월 1일 부로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인상이 되어 시급 20란드에서 20.76란드로, 농장근로자는 시급 18란드에서 18.68란드, 가사근로자는 시급 15란드에서 15.57란드, 확장된 공공사업 프로그램 참여 근로자는 시급 11란드에서 시급 11.42란드로 아주 미미하게 인상되었다.

2022년 3월 1일부로 전체 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23.19 (2021년, 시급 21.69란드)로 작년도 대비 약 6.9% 인상되었다.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되었던 농장 근로자와 가사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4조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농장근로자에게 동일한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하였다. 남아공 최저임금위원회는 가사근로자의 시급 또한 국가최저임금과 동일하게 하도록 제안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2022년 3월 1일부터 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 또한 국가최저임금과 일치되었다. 확장된 공공사업 프로그램(Expanded public work programme)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또한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시급 12.75란드 (2021년 11.93란드)이 적용한다⁵³⁾.

기타 장벽

투명성 부족, 부패, 범죄

남아공 통상산업경쟁부 산하 국가브랜드 위원회(Brand SA)가 2017년 4월 발표한 투자자 인식조사에 따르면⁵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투자자들이

52) 남아공 최저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Act, No. 9 of 2018)

53) 남아공 고용노동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Labour) 홈페이지

54) Brand South Africa Research Update (February 2017)

남아공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로는 불안정한 정치와 불안한 치안 및 높은 범죄율을 들었고, 투자대상으로의 장점으로선 선진화된 인프라 및 경제, 활용가능한 풍부한 광물자원, 아프리카 진출의 지리적 이점 등을 지목하였다.

남아공 정부는 공무원들의 부패척결을 위해 법률제정, 사정기관 확충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높은 범죄율 해소에 대다수의 사법기관이 매달리고 있어 부패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아공의 높은 범죄율은 부패나 정치스캔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며 남아공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남아공 경찰은 경험 미숙과 교육 부족으로 인해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강화된 이민법

2014년부터 시행된 남아공 개정 이민법은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엄격히 하여, 기존에는 방문자 비자로 입국하여 남아공 내에서 취업 비자 또는 학생 비자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였으나, 개정 이민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민 관련 비자 신청 등을 직접 이민국 사무실을 방문하여 접수하지 않고, 비자 업무 대행 아웃소싱 업체인 VFS를 통해서만 접수 받는다. VFS는 비자 신청서류 접수 대행업체로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므로, 신청자는 비자 신청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서비스료를 부담해야 한다.

개정 이민법은 비자 기간 만료 이전에 출국하지 않고 체류한 경우 불법체류자로 규정하고, 1~30일 불법체류한 경우 12개월간, 24개월 내 2회 불법체류가 적발된 경우 2년간, 30일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 5년간 재입국을 금한다⁵⁵⁾.

남아공 이민법은 개정을 거듭할수록 강화되고 있어 외국 투자자 또는 이민 사업가의 경우 노동 비자 또는 사업비자 취득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사업비자(business visa)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지, 남아공 경제에

55) 자료원: 남아공 내무부(홈페이지)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등을 포함하여 남아공 통상산업경쟁부의 추천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주재원 비자는 2014년 개정을 통해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기간을 연장하였으나,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비자 갱신이 불가하다. 또한 주재원 비자 신청인은 최소 6개월 본사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되었다.

일반 노동비자 신청 또한 남아공 노동부 추천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노동부로부터 추천서 발급에 6개월 이상 소요되거나 추천서 신청 후 부정적 견해가 발급되어 노동비자 신청 자체하기도 하다.

남아공 내무부 출입국관리국은 2015년 6월 1일부터 미성년자(남아공 출입국관리법상 18세 미만)의 남아공 출입국 시 부모가 동반하는 경우에도 여권 외에 출생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소지토록 하였다. 이러한 요건이 관광산업 및 투자유치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남아공 내무부는 2019년 11월 11일부로 일부 요건을 변경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 부모 모두 동반, 또는 부모 중 한쪽 동반, 부모 아닌 제3자(성인) 동반 출입국시 외국인 미성년자의 경우 유효한 비자가 소지 시 유효한 여권 소지만으로 출입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일부 개정하였다.⁵⁶⁾

남아공 출입국관리국은 2019년 11월부터 남아공 오알 탐보(OR Tambo) 국제공항과 란제리아(Lanseria)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케냐 방문자들에 대해 이비자(E-Visa)를 시범적으로 운행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인도, 중국, 나이지리아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비자(E-visa)는 현재는 방문자(visitor's visa)에게만 적용되며, 5일 안에 비자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한국처럼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들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e-Visa 발급대상국에서 제외했으며,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 10개국(카메룬, DR 콩고, 이집트, 에티오피아, 멕시코, 우간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필리핀, 파키스탄)이다. 그러나 2022년 10월 현재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이비자(E-visa)를 통한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

56) 자료원: 남아공 내무부 홈페이지 (Updated advisory November 2019: New requirements for children travelling through South African ports of entry)

2022년 1월 남아공 내무부 이민국은 부정부패를 이유로 각국 대사관 및 국경 이민국 사무소 등에서 자체 심사하여 발급하는 모든 장기 비자에 대해 내무부 본부 직접 심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가, 비자 발급 지연 및 적체 현상이 심해지자, 금년 9월 1일부터 다시 각국 대사관 및 이민국 사무소 등에서 심사하도록 전환하였으나 여전히 주재원 비자, 노동 비자 등의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⁵⁷⁾.

57) 자료원: 남아공 내무부 홈페이지



레바논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레바논은 지중해에 위치한 조그마한 나라로서 우리나라 경기도 면적과 비슷한 크기(10,452km²)에 약 480만의 인구(시리아 및 팔레스타인 난민 포함 약 680만 추정)가 거주하고 있다. 십여 년 전까지는 우리나라와의 지정학적 원거리 등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레바논 남부지역에 UNIFIL 소속 우리 동명부대가 주둔하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의 절반이상이 해발 1천 미터 이상의 산악지형으로 경제성 있는 광물은 거의 없으며, 제조업 또한 전무한 실정으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레바논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1천5백만 재외동포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송금과 관광수입으로 적자를 해소해 왔으나, 2019년 10월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로 인해 최근 레바논의 경제 상황은 매우 비관적이며 전망 또한 어둡다. 2021년 레바논의 GDP는 전년 대비 최소 8%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레바논 경제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레바논의 경제위기는 19세기 중반 이후 세계 상위 3위 안에 들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되었다. 2019년 10월 경제위기가 시작되고 나서 은행들은 달러의 해외 송금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금융 및 통상환경은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

레바논 경제는 지난 1980~1990년대 내전 및 2006년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과의 전쟁 등으로 인한 심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 2009~2010년 기간 동안 연 7~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1년부터 시작된 인근 시리아 사태의 영향으로 대규모 시리아 난민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사회 인프라가 현저히 약화됨에 따라 경제 전반이 위축되면서 2012~2018년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이 1~2%에 머물렀다. 2019년도 중동정세 악화, 미국의 대이란 및 헤즈볼라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고질적인 국내

정파정치의 영향으로 정세 불안정이 심화되어 경기침체를 겪고 있으며, 일부 기관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예상하고 있다.

레바논 전후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는 레바논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다. 2007년 1월 개최된 Paris III 원조국 회의 개최 이후, 11년 만인 2018년 4월 파리에서 프랑스 및 레바논 공동 주관으로 레바논 경제재건 국제회의(CEDRE)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레바논 Hariri 총리는 연설을 통해 △레바논에 대한 공공과 민간투자의 증대, △재정안정을 통한 대외신인도 확보, △구조적 개혁의 지속 추진, △산업 다변화를 위한 전략 입안의 4개 중점 분야를 통해 정국의 안정과 성장 추구 및 고용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현재 국제사회의 CEDRE를 통한 지원약속의 전제 조건인 재정적자 감소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개혁조치의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나 국내 정파간의 이견으로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은 상황이다.

레바논은 2011년 정부의 숙원 사업인 전력공급문제 해결을 위해 5년에 걸쳐 12억 달러를 투자하는 발전소 건립 계획을 승인하였다. 2013년에는 전력선(270MW)이 도입되어 전력 공급문제가 다소 해소되고 있으나, 만성적인 전력 부족과 단전 현상은 당분간 계속 될 전망이다.

레바논 정부는 국토 연안의 석유 및 가스 탐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노르웨이 PSG사의 지질 탐사 및 2010년 미국 ION사의 탄성파 측정 등에 따르면 연안에 석유 660만 배럴, 가스 850만 큐빅미터가 매장되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레바논 정부는 석유 및 가스 탐사 업체 선정을 위해 2013년 4월에 사전적격심사(PQ)에서 12 operators 및 34 non operating 업체를 발표하였다. 이 중에 미국의 ExxonMobil 및 Chevron, 우리나라의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포함된다. 이후 레바논 정부는 2014년에 입찰사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관계법령 미비로 입찰 진행이 중단된 채 4년여 기간이 경과되었다. 2017년에는 첫 번째 내각회의(1.4)에서 석유·가스 개발 선결과제였던 2개 행정령(석유개발규정, 자원탐사 및 생산규정)을 통과시켰다. 2017년 5월에는 사전적격심사(PQ)에 통과한 51개 업체(우리나라 참여 업체 없음)를 발표하였으며, 입찰 기한을 2017년 9월 15일에서 2017년 10월 12일로 연장하면서 관련 업체의 참여를 기대하였다.

레바논 연안 10개 광구 가운데 우선 5개(1,4,8,9,10)광구 개발이 추진되었는데, 이 중 3개 광구(8,9,10)는 이스라엘과 해안 영역 분쟁중이다. 레바논 정부는 2017년 10월 12일 입찰 마감 후 심사를 거쳐, 3개의 국제석유회사들로 구성된 콘소시움에 대해 자국 인근 연안 10개의 석유·가스 광구 중 북쪽의 4광구, 남부 레바논의 9광구에 대한 개발 사업권을 승인하면서(12월 14일) 자국도 석유·가스 생산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기대감을 표명하고, 레바논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이 개선되기를 희망하였다.

우리나라와 레바논 간에 특별한 현안사항으로서 당장 문제시 되는 것은 없으나, 잠재적으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오고 있는 무역역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레바논의 무역역조가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레바논의 수출상품이 농수산품과 일부 제조업 제품(보석가공 등)이기는 하나 그 품목 구성에 한계가 있어 급박하게 풀어야 할 시급한 현안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와 레바논은 2005년 1월 무역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6년 5월에는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등 무역교류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양국 정부대표단의 2009년 1차 협상 개최 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1차 협상 결과 레바논측은 금융정보교환이 어려워 부정적인 입장이며, 우리측(기획재정부) 또한 레바논이 저세율 국가이고, 특정 지역 투자시 모든 법인세가 면제되어 조세회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추진이 보류된 상태다.

레바논은 내전발발 이전에는 우리나라 상사, 은행, 항공사 지점 등이 대거 진출했었으나 1975~1990년 기간 동안 내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사 및 사무소가 철수한 이후 한 · 레바논 간 기업진출 및 투자협력 관계가 다소 침체된 실정이며 대부분 인근 UAE나 요르단 주재 아국 지상사에서 레바논을 관할하고 있다.

레바논 내전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은 1994년 현대건설이 송전시설 복구 공사(8,000만 달러), 극동건설이 상수도시설 복구공사(1,200만 달러)를 수주,

공사를 완료하여 철수한 사례가 있다. 또한 2005년 상반기에는 LG전자 지점 개설, 2013년에 KT&G가 사무소 개설 후 2016년 2월 철수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지점을 개설하였다. 2006년 1월초에는 한국전력이 레바논 전력청의 발전소운영에 관한 국제입찰에 낙찰되어 5년간 레바논 전력청과 계약, 현지 법인(KEPCO Lebanon Sarl)을 설치하여 2011년 2월까지 디아르 아마르(북부) 및 자라니 발전소 (남부) 두 곳을 운영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레바논은 내전과 전쟁 등을 겪으면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으나, 레바논은 2009년 총선 실시 및 신정부 구성 등을 통해 경제 개혁을 통한 성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고조되어 2010년도에 7%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2011년부터 시작된 인근 시리아 사태의 영향으로 2013~17년 동안 1~2% 수준으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고, 2019년 성장률은 -5.6%, 2020년엔 -21%를 기록하였다.

레바논은 국내외적인 도전속에서 경제부문에 대한 전방위적인 개혁에 착수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놓여있다. 레바논 스스로의 경제개혁을 전제로 약속한 서구의 CEDRE 지원 계획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8월 베이루트 항구 폭발사고로 인해 내각 총사퇴 이후 2021년 9월 13개월만에 신내각이 출범하였으며, 레바논의 경제 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전기, 가스, 통신 및 항만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으나, 국내외의 여건으로 인해 정치, 사회 및 경제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레바논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시리아에서는 아사드 정부가 이란, 헤즈볼라 및 러시아의 본격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상실한 영토에 대해 시리아 북부 일부 및 북동부를 제외하고 상당부분 회복하면서 내전이 끝을 향해가는 시점에 있다. 향후 지역정세 및 정국이 안정되면 전쟁으로 파괴된 주요 인프라의 복구 등 전후 재건 복구 프로젝트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2007년 베이루트 무역관을 폐쇄했던 KOTRA는 2018년 8월 베이루트 소재 주레바논대사관내에 상주 직원을 파견하였으나, 2020년 7월 다시 폐쇄하였다.

관세장벽

(1) 관세제도

레바논은 2001년 5월 24일 발효한 신관세법에 따라 통관에 따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종전 주한레바논대사관의 인증 및 상공회의소 인증절차가 폐지되었다.

관세청이 수입품에 대해 'Under Value'로 간주할 경우 일방적으로 적용한 벌금부과도 자체 위원회가 아닌 민간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수입업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품목분류체계는 HS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며, 관세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제 무역개발협회의(UNCTAD)가 개발한 통관과정 자동화 프로그램인 ASYCUDA(Automatic System for Customs Data) 시스템을 설치, 운영 중이다.

레바논 정부의 무역정책은 관세를 인하를 통해 무역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레바논의 관세는 수입품목에 따라 5%이내에서 80% 이상 등 다양하게 관세율을 적용하는데, 전자제품의 경우 평균 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치품에 대해서는 최고 100%까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레바논-시리아 양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관세율을 매년 낮춰, 2005년부터는 무관세 교역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제도보다는 세관의 절차가 복잡하고 부패도가 높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9년 9월 주재국 산업부 장관은 레바논 산업 보호 및 발전을 위해 18개 수입상품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 품목은 레바논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약 10% ~ 20% 선에서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콘플레이크의 경우 현재 10%의 관세가 부과중이나 유럽산 콘플레이크의 경우 향후 5년간 추가적으로 20%의 관세가 더 부과될

예정(3년차에 17%, 4,5년차에는 16%로 인하)이며, 냉장고 및 세탁기의 경우 기존 15%에서 추가적으로 10%의 관세가 더 부과될 예정이나 이러한 관세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현지 생산 업체는 가정용 가전제품의 경우 단 하나의 기업에 불과하여 다분히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2) 관세율표

관세율 확인을 위해서는 레바논 관세청 홈페이지를 방문, HS Code를 입력하고 확인하면 된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관세율 이외에도 무역통계, 무역관련 규정, 관세법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 레바논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v.lb
- 수록 정보: 관세율, 양자 및 다자간 협정, 무역통계 등

통관절차상의 장벽

(1) 통관절차

가. 수출절차

레바논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출 절차 외에 정부의 특별한 규제는 없는 편이다. 경제무역부, 산업부 및 농업부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예컨대 밀, 올리브유, 원피, 견사, 누에고치, 씨감자, 솔씨 등 20여개)에 대해서는 수출승인이 필요하지만, 그 외의 품목의 경우 수출에 대한 규제가 없다.

수출절차도 비교적 간단하여 외국 수입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외화 입금 혹은 L/C를 수취하며, 수출업자는 수출물품을 확보, 통관 및 선적, 운송의 과정을 거치면 수출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외환거래 및 보유가 자유롭기 때문에 구태여 수출 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매각할 필요가 없다.

나. 수입절차

경제무역부로부터 무역업허가를 받은 수입자는 외국의 수출자와 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High Customs Council 혹은 관련부처의 수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통상 수입승인은 신청하는 대로 발급되는 것이 관례이나, 이스라엘 보이코트 대상 품목이거나 석유나 석유부산물처럼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과 농산물 등은 예외이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외환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통상 거래은행에 개설된 수입자의 외화 계좌로 대금을 결제하거나 혹은 거래은행으로부터 Credit Line을 받아 한도 내에서 수입을 할 수 있는데, 통상 후자의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다. Credit Line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이 신용도와 담보력을 평가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베이루트항 개발청은 통관시 관세와 인지세 외에 소액의 통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산정은 BDV(Brussels Definition of Value)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란산 카페트, 중고 자동차, 중고서적에 대해서만 최소 관세액을 정하고 있다.

수입중고차 관세 및 세금액 산정

세금 종류	세금 기준액	세금액
관세(customs duties)	20백만 LBP(레바논 파운드) 이하	LBP 5,000,000
관세	20백만 LBP(레바논 파운드) 이상	5%
소비세(excise duties)	20백만 LBP(레바논 파운드) 이하	LBP 4,500,000
소비세	20백만 LBP(레바논 파운드) 이상	45%
부가가치세(VAT)	차량가격+관세+소비세	11%

승인(면허)대상 품목은 수입면허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수입을 조절하고 있는데 고등관세 위원회(High Customs Council)나 관련부처에 위임되어 있다.

수입금지 품목은 마약류, 무기, 폭발류, 8년 이상된 중고차량, 공중도덕을 해치는 물건, 공중보건을 해치는 물건과 일부 농산물 등이다. 농산물의 경우 감자, 양파, 마늘처럼 계절 면허가 필요한 품목과 올리브유, 솔씨처럼 연중 면허가 필요한 품목, 그리고 토마토처럼 수입이 완전히 금지된 품목으로 나누어진다. 신용장 개설 혹은 수입 심사시 아랍보이코트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있기는 하나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 타결시 아랍보이코트 조항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이나 식료품 수입시에는 반드시 라벨규정을 지키도록 되어있는데 제품의 제조일 및 유효기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되어있으며 준수치 않을 경우 통관이 거부된다. 또한 현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유사품이나 이미 보호 중인 라벨과 혼동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담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독점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담배 조차도 밀수에 의해 독점적인 지위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법령 제31호에 의해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제도가 있으며 세관당국 혹은 이해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조사 및 적용이 가능하긴 하나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 국제계약은 극히 자유로운 편이며, 수입자들은 C&F, CIF, FOB 중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계약하는데 대금지불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는 편이나 신용장 베이스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적당량의 샘플이나 홍보용 물건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나, 이를 초과할 경우 은행 보증을 요구하거나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통관시 선적서류와 인보이스 원본(총 6부 소요)을 제출해야 하며 기타 원산지 증명서, 패킹 리스트 등은 여타 국가 동일하다.

한편, Under Value 혹은 Over Value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품 가격 산정 시 로컬 업체들을 자문위원으로 선정, 그들로부터 인보이스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관세부과를 둘러싼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관세청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의적인 Under Value 판정 사례는 줄어들었고, 국내 수출업체들은 수출시 상업송장의 상공회의소 확인 및 주한 레바논 대사관 공증절차도 없애는 한편, 통관에 따른 불편 해소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수입규제

(1) 규제제도

레바논은 자유무역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거의 없으며,

WTO 가입에 대비하여 국내 무역법규를 WTO 요구 수준에 부합하게 제정 및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유로-지중해 파트너십(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협약 체결로 EU와의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레바논은 아랍연맹 회원국으로서 아랍 국가들과 쌍무 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일부 동유럽국가, 튀르키예, EU회원국과도 쌍무협정을 맺고 있다. 전후 가장 특기할 만한 쌍무협정은 시리아와 맺은 형제 관계 협정으로서 동 협정에 의거, 양국간 무역은 준국내거래로 간주되어 상품 및 인적교류가 자유롭다.

수입과 마찬가지로 수출에 대해서도 규제가 없는 편이며 다만,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면허제도(Export License)를 채택하고 있다.

◦ 수입 면허 필요 품목

- 마약류
- 생산된 지 8년 이상이 지난 자동차
- 트럭이나 픽업, 밴, 버스 등 디젤엔진 차량의 경우 5년 이상된 차량
- 공중보건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품목 등

◦ 수출 면허 필요 품목

- 대외무역성 승인품목 : 밀, 밀 부산물, 올리브유, 콘크리트, 부탄가스, 하이드로카본, 액화가스통
- 공업성 승인품목 : 가공 안 된 원피, 가공 안 된 실크, 종이, 카드보드, 누에고치, 타르
- 농업성 승인품목 : 씨감자, 계란, 솔씨(Pine Seeds)

한편, 레바논은 현지 업체들의 수출시 어떠한 보조금도 지원하지 않으며, 수출 촉진을 위한 제도가 없다.

(2) 수입규제 동향

현재 규정상 수입규제 및 차별적 제한조치는 없다. 다만 공공구매 입찰 등의 경우 보통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나 혹은 관련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프로젝트 자체의 설계나 관련 소요물품의 스펙을 정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 경우 담당자가 특정기업과 결탁하여 담합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스라엘 보이콧 조항이 있어서 자국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이스라엘 기업이나 국가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선박의 경우도 이스라엘 항구에서 기항한 경우 레바논으로 입항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규제나 금지품목 이외에, 특별히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는 없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통관시 선적서류와 인보이스 원본(총 6부 소요)을 제출해야 하며 기타 원산지 증명서, 패킹 리스트 등은 여타국과 동일하다.

o 통관시 필요서류

- Invoice(송장)
- Bill of Landing(선하증권) or Airway Bill(항공화물 운송장)
- Certificate of Origin(원산지 증명서)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 관련

의약품이나 식료품 수입시는 반드시 라벨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제품의 제조일 및 유효기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준수치 않을 경우 통관이 거부되며 현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유사품이나 이미 보호 중인 라벨과 혼동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의료 기기의 경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 수입을 위해 공중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중보건부는 전문가(약학자와 의사 등)로 하여금 수입 기기를 조사,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가정용 전자제품, 배터리, 완구, 세라믹 대리석, 화장품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선적 전 검사가 필요하다.

환경관련 규제

레바논 정부는 2004년부터 디젤유를 사용하는 10~15인승 마이크로버스와 2톤 이하의 소형트럭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차와 사륜 구동 차량의 수입도 금지된다.

또한, 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디젤유의 질을 높이고, 휘발유도 유연에서 무연으로 바꾸어 나가는 한편, 가솔린과 디젤 차량을 천연가스 차량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어 향후 차량 수입에서 환경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경제무역부 산하 지적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전담기관(IIPO: Intellectual and Industrial Property Office)은 빈약한 시설과 근무인력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찾아내거나 시정할 능력이 뒤떨어지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에 이르기까지는 수년이 걸려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특히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보장받기 어려워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외국 대사관, 국제법 전문가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외치고 있으나 경제무역부에서는 거의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인 송사로 번질 경우에만 마지못해 형식적인 리포트를 제출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려고 한다. 컴퓨터, 오디오,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는 물론 TV 프로그램에서조차도 지적재산권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미국의 국제지식재산권 연맹IIPA(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은 2013년 「Special 301보고서」에서 레바논 정부가 계속적으로 국제저작권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레바논을 「301감시 대상국 명단」 계속 남겨둘 것을 권고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레바논 내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유통으로 인해 미국의 소프트웨어 생산, 판매 기업들의 손실이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바논 정부가 온라인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 장치 마련과 해적판매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레바논은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점유율이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70%를 상회하고 있어 중동, 북아프리카 MENA지역 17개국중 상위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적판 서적은 인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으로 수출되는 등 불법적인 CD 음반, 소프트웨어 및 게임, 서적 복제 및 유통으로 인한 미국 업계의 막대한 상황이다.

그러나 레바논에서의 이러한 문제는 법률에 있기 보다는 법의 적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999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권 보호법에 따르면 위반행위 적발시 벌금은 5백만 내지 5천만 레바논파운드의 벌금을 물거나, 심한 경우 3개월에서 3년까지 구속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법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지식재산권 침해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IIPR) 관련 법적 근거

- 1924년 1월 17일에 제정된 Decree No.2385: 상표권, 저작권, 산업 디자인 권을 규정.
- 1946년 1월 26일, 칙령(Decree)에서 법제화(registration)된 후 1983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개정
- 지식재산권은 레바논 형사법(제701 및 제721조)에 의해서도 보호 받게 됨.
- 국제적으로 레바논은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에 관한 베른협약, 파리 협약 및 마드리드 협약에 가입되어 있음.

- 독일회사의 산업재산권은 1955년 3월 8일 체결한 양국 간 협약에 의해 보호됨.
- 1960년 1월 25일 경제무역부 장관은 칙령 93/57호를 통해 외국 상표의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지침을 발표
- 1999년 4월 3일 법령 75/99호로 문학작품 및 예술작품에 대한 보호법 제정
- 2000년 8월 7일 법령 240/2000호로 특허법 시행

전술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IIPO가 보호, 감독기능을 갖고 있다. 상표권(trademark) 및 의장권(patent right)을 보호받기 원하는 외국기업은 상표권과 의장권을 IIPO에 등록하고 공식간행물에 게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레바논은 영·미 법체제와 달리 프랑스 방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IIPO는 신청서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으며, 등록했다고 해도 처음 5년간은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투자 장벽

투자매력도

레바논은 부동산 및 일부 금융부문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로컬 원자재 의무 사용(Localization) 강요라든지 과실송금 규제, 수출의무 비율 지정 등 규제 내지 차별적인 조항이 없다.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해서 회사 설립에 제한을 가하지도 않는다.

다만 토지소유에 대해서는 구입은 가능하나 소유면적에 제한이 있다. 외국인의 재산 취득은 2001년 4월 3일 개정된 법 제296호에 따른다. 이 개정법은 재산권 취득에 있어 아랍인과 외국 국적 소유자 사이에 차별을 폐지하였다. 부동산 등록세를 내국인 6%, 외국인 16%에서 내·외국인 모두 5%로 낮췄다.

이 법은 허가 없이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 규모를 3,000㎡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이 3,000㎡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정부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들은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레바논 전국토의 3% 미만을 소유할 수 있으나, 전 국토의 3% 이상 그리고 베이루트시의 10% 이상 초과하여 소유할 수는 없다.

레바논은 중동국가 중에서 교육수준이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기 때문에 고급, 숙련 노동자도 풍부하고 대학 졸업자는 보통 영어, 불어, 아랍어 3개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한다.

레바논은 금융, 서비스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은행도 비밀 보장이 잘 되고 시스템이 발달되어 시리아 무역상들 다수가 레바논에서 L/C 개설을 하고 있다.

레바논 정부의 누증되고 있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2002년 2월부터 신설한 부가가치세를 통해 세율이 인상되는 추세에 있고, 행정지연(관료주의), 공무원 부패가 여전한 상황이다. 또한 인프라 시설(전기, 상수도 공급, 인터넷 등)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조업 투자시 간접비용이 많이 든다.

국내정세가 불안하고 시리아 등 주변 정세의 악화로 투자에 필요한 ‘안전도 (Stability)’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소비 인구가 약 680만 명에 불과하여 현지 시장을 겨냥한 제조업 투자 대상지역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외국인 투자도 제조업보다는 부동산, 관광·서비스 및 유통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을 뿐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투자업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외국인 투자유치가 중요함을 인식, 잠재적인 해외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one-stop service 체제를 조기에 구축 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레바논은 내수시장 규모, 정치적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체로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정책개발, 승인 및 사후관리 책임은 대부분 투자청(IDAL)에 일임되어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청을 통하여 대부분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레바논은 외국인 투자한도, 투자대상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등 내·외국인 투자를 차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기업 설립조항은 상법에 규정한 4가지 기업 형태에 포함되어 있으며, 외국인 지사 설치에 대해서는 상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외국인의 투자보장을 위한 조치로 ‘전쟁·내란·몰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NIIG(National Institute for Investment Guarantee)가 설립되었으며 또한, ‘외화송금 및 전쟁 리스크’로부터 보호해주는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에 가입되어 건당 최고 5,000만 달러까지 보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무엇보다도 열악한 인프라 기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한송전 및 단전이 잦은 편이며 도로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이 중 80% 이상이 왕복 2차선인데다 도로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면 및 포장 상태가 열악한 편이다.

레바논으로의 투자 진출에는 정치적 불안정을 고려해야 한다. 내전 재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지만 각 정파, 종파 간 대립구조와 2005년 2월의 하리리 전총리 암살, 2006년 7~8월 중 발발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전쟁 등으로 인해 경제 침체가 있었다. 2009년 이후에는 평화적 총선거최 및 신정부 구성으로 외국인의 직접투자액이 2010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2010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인근 시리아 내전, 2014년 5월 이레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행정부 및 의회 기능 약화, 치안불안 지속 등으로 정세 불안과 경제적 하강 국면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Trump 행정부 출범이후 2018년부터 강화된 Hezbollah에 대한 제재로 인해 레바논은 금융제재 및 서구로부터의 경제개혁 압박을 받고 있으며, 2019년

10월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에 2020년 8월 베이루트 항구 폭발사고와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 더해지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레바논은 주변국가에 비해 고급·숙련노동자가 많은 편이긴 하나 인건비가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현지 기업들은 시리아를 비롯한 이집트, 아프리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으나,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많아 외국인 회사가 이들을 채용하는 데는 다소 위험이 따른다. 더구나 주재국 정부는 금년도 초반부터 외국인 불법 노동자 고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레바논은 제조(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중간재 및 기계류 수입은 4%의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기업 법인세도 10년간 면제,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관세유예 등의 제조업 우대조치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요소가격은 원칙적으로 경쟁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료주의, 행정 편의주의, 통관 지연 및 급행료 등의 부패적 관행이 상존하고 있어서 간접비용이 적지 않다. 더욱이 부지(토지)가격과 생산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수준이 인접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주변산업이 발달되지 않아 투자자의 부담이 큰 것이 문제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담요공장을 건설할 때 염색공정은 외주에 의존할 수 있으나, 레바논의 경우 염색산업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가 염색 공장까지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제품 판매시 외국인 투자사도 국내업체와 동일한 법적 대우를 받으며, 외국인 투자법인에게 가하는 특별한 규제나 제한이 없다. 그러나 수입장벽이 매우 낮고 또한, 인구 450만 명의 작은 로컬 시장을 놓고 외국산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외국기업 투자동향

(1) 레바논 투자청 외국인 직접투자액 통계

WORLD BANK 발표에 따르면 레바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입은 2006~2010년 기간 동안 매년 증가하여 2010년에 49억 달러였으나, 2011년에는 전년 대비 14억 달러 감소한 35억 달러이었다. 레바논 투자청 (IDAL)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액은 2012년 37.9억 달러, 2013년 28.3억 달러, 2014년 31억 달러이며, 2015년에는 23.4억 달러로 지역정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23%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6년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9%가 증가한 25.6억 달러, 2017년 26.2억 달러, 2018년 26.5억 달러에 이르렀다.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0에 의하면 2019년 레바논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1.3억 달러로 다시 감소하였으며, WORLD BANK에서 발표한 2020 비즈니스 리포트에 따르면 레바논은 190개국 중 143위에 랭크되어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기업 투자동향

레바논은 적은 인구와 협소한 시장, 발달이 부진한 제조업 등의 영향으로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진출 신고건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1994년 현대건설이 송전시설 복구공사(8,000만 달러), 극동건설이 상수도시설 복구공사(1,200만 달러)를 수주 및 공사완료 후 철수한 이래 현지 지상사는 전무한 실정이었으나, 2005년 상반기 LG전자 지점 개설, 2013년 KT&G가 사무소 개설(2016년 2월 철수)하였고, 2014년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지점을 개설하였다. 또한 지난 2006년 1월~2011년 2월까지 5년간 한국전력이 레바논 북부 및 남부 발전소를 운영한 바 있다.

(1) 한국과의 투자관계

레바논 내전 기간 중 아국업체의 철수 이후 한·레바논간 기업 진출 및 투자 협력 관계가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에 양국 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2005년 1월 27일에 한·레바논 무역경제협력협정(Agreement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양국 간 최초로 이루어지는 경제 협정으로서 향후 양국 간의 투자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6년 5월 5일에는 한·레바논 투자보장협정(Agreement on the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을 체결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바 있다.

(2) 레바논 투자진출전략

한국 기업으로서는 레바논의 유망 분야를 선정, 이라크, 시리아, 아프리카 등 인근 시장을 포함한 거점 시장으로 진출을 위해 현지 투자를 검토해 볼 만하다.

다만, 주변 시리아 사태의 악화 및 인건비가 높고 발전용량과 전력공급의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전력 인프라가 미비되어 있으며, 인터넷 환경도 아직은 전화 다이얼업에 의한 송수신 속도에 머무는 등 경제 활동 인프라 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으므로, 레바논 진출시 여러 사항을 면밀히 고려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망된다.

또한, 레바논 시장이 인구가 680만 정도로 크지 않고 국토 면적도 약 1만km²에 불과하여 시장이 협소하고 전반적인 경기침체 현상에 따라 저가의 중국산제품 등이 범람하고 있는 시장여건을 감안할 때, 현지 투자는 일반적인 제조업분야의 투자보다는 기술 집약적인 소비재 분야에서의 투자가 보다 유망하다.

레바논 투자청(IDAL)은 투자법을 개정하고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노력 중이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력공급 사정, 인건비 등 제조 인프라가 인근 국가에 비해 열악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레바논 투자청은 one-stop service를 실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는 www.idal.com.lb 이다.

주요 투자법 내용

(1) 투자 인센티브

레바논의 투자 인센티브는 레바논 투자청(IDAL)에 의해 부여된다. 레바논 정부(IDAL)가 지정하는 특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시 ‘패키지 딜 콘트랙트’(Package Deal Contract)라고 하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다. 이는 레바논 투자청(IDAL) 이사회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한 뒤 인센티브 제공여부를 결정하며 인센티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규모사업시 제공 인센티브: the package deal contract

※ 다만, 아래 면제사항은 투자금액, 투자 분야 및 고용 창출 기준에 따라 다르게 부여됨.

- 최대 10년간 법인소득세 및 배당세 면제
- 모든 항목의 노동 허가증 즉각적인 발부
- 노동허가 및 체류허가 소요비용의 최대 50% 감면
- 프로젝트를 위해 수반되는 건축 관련 인가수수료의 최대 50% 감면
- 부동산 등기소 토지등기 수수료, 임대차 계약관련 등록비 등의 면제
- Package Deal Contract 적용대상 분야
 - Agriculture, Agro Industry, Industry, Tourism, Information Technology,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 and Media

(2) 투자관련 정부기관

레바논은 특별법인 투자법 제360호(2001년 12월)에 따라 총리직속 독립정부 기관으로서 IDAL(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of Lebanon)을 설립하고, 1995년에 Decree 5887호(1994년 10월 11일)에 의해 설립된 기존의 투자유치담당기구의 조직과 인력을 흡수하여 2002년 7월부터 공식 출범하였다.

해외투자자들에게 레바논이 갖추고 있는 투자상의 이점을 적극 홍보하고 가급적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투자 절차를 간소화, one-stop service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레바논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기업은 IDAL(투자청)을 접촉, 투자절차 및 투자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출형태별 절차

외국인의 레바논 내 사업 진출방법은 현지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Offshore Co.(제3국 영업만 허용)의 4가지 형태가 있다. 진출형태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현지법인 설립

가. 투자허용기준 및 업무범위

무역, 제조업, 금융업 분야로의 진출과 지사 설립이 가능하며, 현지 등록시에는 영업의 형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등록은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지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고 지연이 될 경우 수수료 100,000 레바논파운드(약 67달러)를 포함한 벌과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영업활동 개시 이전에 개인은 레바논정부 General Security와 노동부를 통해 체류허가를 얻어야 한다.

나. 투자절차 및 구비서류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현지 자회사 설립을 통한 투자는 레바논 투자법 LAW NO. 제360호(2001년 8월 16일) 및 상법의 규정에 적용되며 내국 법인으로 취급된다.

레바논의 상법상 등록(Register of Commerce)은 개인, 회사, Holding Company, Offshore Company의 등록과 소유권(Proprietorship)의 등록으로 구분된다.

법무부 산하 Register of Commerce에 등록을 해야 하며, 지역별로 별도의 등록기관이 있다(예: 베이루트지역 등록처 전화번호: 961-1- 427793).

신청인은 소정의 신고서 2매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서류로 회사정관을 요약(일정한 양식은 없음),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필수 기재사항은 회사 소유주, 상호, 회사형태, 주사무소 및 지사의 위치, 영업목적, 주사무소 위치 또는 에이전트 소재지, 주소, 자본금, 설립연도 및 영업기간 등이다.

등록 3개월 후에는 사회보장기금 납부 증명을 법무부 산하 Register of Commerce에 제출, 허가를 득해야 한다.

레바논 국적인 사람은 자기 회사 등록이 가능하나 회사는 통상 법에 따라 변호사를 등재해야 하므로 변호사가 수속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다. 세금관련 사항

레바논은 지역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가장 경쟁적인 법인세율(17%)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Joint Stock companies 혹은 Limited Liability companies 의 경우 법인세(17%), 고정자산(주식 등 금융자산 포함) 판매를 통한 이윤세(15%) 및 자산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10%)를 부담하여야 한다.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세를 사회보장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원의 소득 수준을 토대로 고용주와 고용원의 분담비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라. 기업 활동 법적 의무사항

영업에 따른 영업 소득세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현지인 고용 시 고용주세 납부가 주된 의무이다. 기타 의무사항은 법률에 따르며 외국기업이라 하여 별도로 정한 특별한 의무사항은 없다.

마. 기타 모회사로의 자금 송금

레바논은 개인구좌 비밀보호가 철저하며 개인의 외환송금이 자유롭고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모회사로 자금송금에는 제한이 없으며, 회사자산의 경우도 이자, 배당의 송금에는 제한이 없다.

(2) 지사(Branch) 설립

가. 지사설치 절차

외국회사가 시장관리를 위해 등록할 수 있는 형태는 지사 설립과 연락 사무소(대표부) 설립의 2가지로 대별 할 수 있다. 지사의 경우는 제조, 무역, 금융 등 관련 모든 법적 행동이 가능하며, 영업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있고, 경제통상부(Ministry of Trade)에 등록을 요한다.

나. 등록 구비서류

경제무역부 무역국(Trade Department)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 지사장 또는 에이전트가 서명 후 지사장 또는 에이전트가 직접 제출하거나 혹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제출 가능
- 외국회사 등록 증명서 : 진출 모기업(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내 모기업)이 해당 국가 내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국내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국가의 레바논대사관 (주한레바논 대사관)의 영사 확인 및 레바논 외무부 공증이 된 서류
 - 외국회사 등록 증명서를 아랍어로 번역하여 번역공증 필요
- 모기업(한국 회사)의 이사회 결의서류
 - 지시설치 결의를 증명하는 이사회 회의록 등 증빙을 요구하나, 통상은 모기업의 지사장 임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주한 레바논대사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
 - 이사회 결의 서류를 아랍어로 번역하여 번역공증 필요
- 법적 위임장(Power of Attorney): 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할 경우 혹은 레바논내에 소재하는 모기업이라도 법적 대리인을 통해 수속을 진행할 경우, 대리인이 법적으로 대리권을 지님을 입증하는 공증 서류

경제무역부 무역국의 등록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7일이다. 신청서가 구비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등록수수료를 재무부에 제출하고 영수증(blue copy)을 받아 이를 경제무역부에 제출한다. 신설 기업은 레바논 관보에 기업 신설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므로, 관보 게재비를 지불USD \$300)해야 하며 경제무역부는 관보에 게재하고 공고 사본을 15일 이내에 해당 기업에 제공한다.

○ 경제부 등록:

- 등록비(Flat Fee For Registration) : 1,200달러
- 관보(official gazette) 게재 : 약 300 달러
- 지방법원 등록비(Mutual Fund of Magistrate) : 600달러
- ※ 경제부 등록 승인을 득한 후, 법무부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 법무부 등록시

- 등록비 : 1,200달러

- 기타 비용 : 약 700달러
- 소요기간(duration of procedure) : 48 hours
- Legal Fees : 약 2,000달러

다. 사업자 등록(TRADE REGISTER) 확정

경제무역부의 관보 공고 이후 Trade Register와 경제무역부에 관보 공고 실물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음으로써,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3일 이후 지사 설립이 완료된다.

라. 소득세: 순수익의 15% 세금 납부

마. 국립투자보장회사(NIGC): 신규 투자 촉진 업무

바. 투자보장협정 체결

레바논은 25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2006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사. 사유재산 보호

레바논은 헌법에 따라 사유재산이 보호되며 국유화는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도 레바논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에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레바논의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아. 세금관련 사항

현지법인과 지사의 경우, 영업소득세 15%, 부가가치세 11% 등 각종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세를 사회보장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고용원의 소득 수준을 토대로 고용주와 고용원의 분담비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자. 기업 활동 법적 의무사항

영업에 따른 영업 소득세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현지인 고용시 고용주세 납부가 주된 의무이다. 기타 의무사항은 법률에 따르며 외국기업이라 하여 별도로 정한 특별한 의무사항은 없다.

차. 영업 및 광고판촉 활동 가능여부 및 업무범위

지사는 영업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영업 및 광고 판촉 등 모든 활동이 가능하며 영업에 대한 제한이 없다.

(3)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립

외국 회사가 레바논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본사와의 업무연락, 시장조사, 홍보 등 비영업적 활동에 국한된 활동만을 수행할 경우,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여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경제통상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행위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영업에 따른 세금 납부의 의무는 없다. 대기업의 해외 주재 사무소의 경우 현지법인을 제외하고는 연락사무소로 등록함으로써 레바논의 제세금 납부 문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현지에 별도 에이전트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이므로, 모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기업들은 단순 연락사무소 형태로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다.

가. 연락 사무소 설치 절차

연락사무소 설치에는 아래와 같은 비용이 소요된다.

○ 경제부 등록시

- 등록비(Flat Fee For Registration) : 1,200달러
- 관보 게재 : 약 300 달러

- 지방법원 등록비(Mutual Fund of Magistrate) : 600달러

- 법무부 등록시

- 등록비 : 1,200달러
- 기타 비용 : 약 700달러
- 소요기간(duration of procedure) : 48 hours
- Legal Fees : 약 2,000달러

통상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회사등록 및 체류허가 갱신 등은 변호사를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소요비용은 변호사에 따라 USD \$2,000 가량이다. 레바논은 법과대학 졸업 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법률 사무소와 같이 흔하며 각종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나. 세금 관련 사항

현지법인과 지사와 경우, 영업소득세 15%, 부가가치세 11% 등 각종 세금 납부 의무가 있으며,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세를 사회보장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원의 소득 수준을 토대로 고용주와 고용원의 분담비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 기업 활동 법적 의무사항

영업에 따른 영업 소득세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현지인 고용시 고용주세 납부가 주된 의무이다. 기타 의무사항은 법률에 따르며 외국기업이라 하여 별도로 정한 특별한 의무사항은 없다.

(4) 타외국 회사와 합작 투자 시 법인 및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립

타 외국회사와의 합작 투자 시 요령은 상기 언급한 1번과 2번의 요령과 동일하나, 통상 현지 공장설립의 경우가 아니면 법인설립보다는 연락사무소 형태가 용이하다.

(5) 비자 관련 사항

현지법인 또는 지사 등 개설차 입국하는 경우 주한 레바논 대사관으로부터 혹은 공항 이민국 창구에서 3개월의 단기비자 취득이 가능하며, 가족의 경우 레바논 내에서 노동허가를 취득한 근무자의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레바논 General Security에 제출함으로써 추후 1년 유효기간의 비자로 갱신이 가능하다. 단, 현지 주재 지상사 또는 업체 장기 근무를 위해 부임하는 경우에는 2013년도 출입국 관련규정 변경에 따라 입국전 사전에 주한 레바논 대사관으로부터 장기 워킹비자를 취득하여야 한다.

입국 후 노동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 목적을 신고함으로써, 처음에 발부 받은 통상 2개월 유효기간의 관광비자의 유효기간을 2개월 연장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중 체류허가를 획득하고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기체류 시(법인 및 해외사무소 동일)에는 현지 노동허가를 우선 취득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1년 유효기간의 체류허가를 매년 갱신 받을 수 있다.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권 유효기간이 18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모회사의 대표부 임명장 (통상 한국기업의 지사 발령장)을 주한 레바논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 받고, 아랍어 번역본을 레바논 외무부에서 공증(CERTIFIED) 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외 지사설치 근거서류 사본, 위임장 사본, 레바논 주택은행의 예치 보증금(1,000달러) 증서 등을 구비 제출해야 한다.

- 노동허가 취득 최소 소요기간 : 9일
- 노동허가 수수료: 1,000달러(LL 1,500,000)

◦ 체류허가 취득 절차

-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이 남은 여권 사본 3매
- 노동허가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모회사의 대표부 설치 증빙서류
- 체류허가 취득 최소 소요기간 : 7일
- 소요비용: 1,200.00달러(LL 1,800,000)

금융업

레바논의 금융역사는 19세기 초 베이루트에서 외환거래소가 처음 생겨나면서 부터였다. 지리적 요충지, 대외개방적 국민성 그리고 금융비밀(Banking Secrecy)을 철저히 보장 해주는 법령(1956년)에 힘입은 데다, 특히 1960년대 초반 아랍 오일머니의 대거 유입으로 내전 발발 이전인 1975년까지 중동 최대의 금융센터로 명성을 떨쳤다.

레바논의 금융시장은 아랍지역에서는 가장 선진화된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수년간에 걸쳐 계속된 전쟁과 파괴로 인해 레바논은 더 이상 중동지역의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전쟁의 초기 몇 년간은 다양한 의용군 지원자금의 유입으로 금융조직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은행들은 사업 무대를 해외로 돌리거나, 대차대조표상보다 더 많은 몫의 돈을 미국달러화로 보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존해나갔다. 레바논의 금융조직은 내전기간 동안은 그럭저럭 잘 버티어 나갔으나, 결국 1985년 레바논 은행 1개와 유럽에 진출했던 몇몇 레바논 자회사들이 도산함으로써 내전의 부담이 표출되었다. 이 사건 이후 중앙은행은 은행의 일체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 1990년 내전이 종식되면서 경제 및 재정 상황이 호전되어 금융체계가 개선되었으며, 레바논 파운드화도 안정을 되찾았다.

내전종식 후에는 복구사업 중 가장 성공한 분야가 금융업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활력을 되찾으며 2009~2010년에는 세계적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연 10%의 대 성장을 기록하며 지역금융센터로 재 부상할 것으로 보였으나, 인근 시리아 사태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주춤한 상태이다.

레바논의 금융 부문은 2019년 말부터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태로, 그간 해외로부터 달러 유입에 의존해 왔으나, 점차 달러 유입이 고갈됨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 대한 달러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은행은 달러의 해외 송금 및 인출 등을 제한하기도 하는 등 금융 부문은 현재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환율 또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레바논은 달러당 1,507.5 레바논 파운드화를 1997년 이래로 공식환율로 유지해 왔으나, 2020년 4월 중앙은행은 환율을 두 배로 인상하기로 발표하였다.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대확산 및 8월 발생한 베이루트 항구 폭발사고 이후 내각이 총사퇴 하는 등 정치적 공백이 지속되면서 암시장 거래 환율은 2020년 10월 달러당 8,000 레바논 파운드화를 돌파하기도 하였다.

보험업

내전 발발 전 베이루트는 금융과 보험산업의 중심지로 많은 국제적인 회사들이 이 지역에 진출했었다. 내전종료 후 국내수요의 증가로 보험사들은 레바논으로 복귀하여 보험산업의 회복에 기여했으나, 인구수에 비해 보험회사가 지나치게 많아 경쟁이 치열하며, 회사 설립 자본금 규모가 150만불로 영세하다. 최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감소 추세에 있다.

보험업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제가 느슨한 분야다. 공식적으로는 경제무역부 산하 보험부서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있지만, 내전 와중에 정부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해져 보험업계 자율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의 질서와 규율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민간단체로는 1971년도에 설립된 ACAL(Association of Lebanese Insurers)이 있으며 53개 보험회사가 가입되어 있다.

현재 약 50개사에 약 4천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약 3백만 명에 달하는 보험 시장을 놓고 보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주변 지역 국가 중 소비자의 선택권이 가장 폭 넓게 보장되는 나라이다. 그러나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인근 시리아 사태로 인해 보험업계에도 타격이 심한 상황이다.

시장 환경

시장 특성

(1) 소비자 특성

일찍이 수많은 국가의 지배를 받아왔었고, 동·서양 문화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이질문화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이고 모방적인 국민성을 갖고 있다. 강자에게는 약한 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국민의 경우에도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는 소홀히 대하는 편이다. 경제적으로 그들보다 부유하지 못한 국가의 국민들이나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취업자)들을 다소 멸시하는 풍조가 있다.

민족주의 성향은 약한 편이며 상당수 지식층들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부문에서는 인구 구성비에 따라 종파간 안배가 있으나 성차별은 없는 편이다.

레바논 사람들은 다른 중동국가와 달리 서구식 복장과 화려한 장식을 즐기며, 저녁 회식이나 파티 초대하기를 매우 좋아한다. 내실보다는 외형과 겉모양,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자신의 가문이 고상하게 보이기를 좋아한다. 소득수준에 비해 훨씬 높은 문화수준을 누리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즐기는 풍조가 강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수시로 공연을 갖고 있으며 입장료가 상당히 비싼 편인데도 관람객들이 많은 편이다. 특히, 구매력있는 소비층의 경우 유럽산 제품에 대해 비합리적인 선호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같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최신형 신차 보다는 3~4년된 구형 벤츠 및 BMW 등 유럽산 명차를 더 선호하는 소비 형태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2) 유통구조

유통단계는 품목에 따라 각각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간단한 편이며, 소비재의 경우 전문 유통업자와 슈퍼마켓 용품 공급업체(슈퍼체인점 등)의 주문을 받아 이들 고객의 주문량을 모두 합쳐 수입하는 경우가 있다. 대개 슈퍼마켓 공급업체는 예컨대 세제류, 식기류 등 전문 취급품목이 4~5가지로 한정되어 있으며, 외국제조업체들의 에이전트를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슈퍼마켓 공급업체는 별도의 창고(Ware house)를 갖고 있고 소매 영업은 하지 않으면서 도매상을 위한 소규모 전시매장만을 갖추고 있다.

내구성 소비재, 예컨대 가전제품의 경우 에이전트가 도·소매를 겸하는 것이 상례인바 지역별로 대리점(Distributors)을 갖추고 있다. 에이전트는 대개 대리점에 6~12개월 할부로 물건을 넘기기 때문에 대리점은 이를 활용하여 할부

판매하거나 현찰 판매 시에는 에이전트의 판매가격보다 싸게 파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의 경우 에이전트가 딜러십을 형성, 지역별 투자자와 자본을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유통경로는 에이전트-딜러망-소비자로 단순하다.

그러나 전문브랜드 제품의 경우 (라코스테 의류의 예를 들면) 에이전트십을 보유한 수입상이 소매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판매망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투자자의 지분을 끌어들이거나 직접 투자하여 1호점, 2호점 분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백화점의 경우 직영은 드문 편이며 대부분 임대방식으로 경영하나 슈퍼체인의 경우는 대부분 직영 방식이다. 한국과 달리 백화점에는 채소, 과일이나 식료품 판매코너가 없으며 음식점은 갖추고 있다.

현지 마케팅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상담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마케팅이 없으며 세일즈 출장 또는 전시회 참가가 요망된다. 시장규모가 작고 같은 업종의 바이어 들끼리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바이어들과 거래를 지속할 수는 없는 시장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에이전트십 방식의 거래가 바람직하지만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간의 테스트기간을 거쳐 가장 신뢰할 만한 바이어와 계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A/S가 필요하거나 브랜드 홍보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에이전트십 선정이 필수적이며, 에이전트 선정시에도 연간 판매 목표를 수량화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수입상의 판매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아무리 수출업체의 제품 경쟁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대량으로 수입 또는 쌓아 놓고 판매하는 수입상은 좀처럼 찾기 어려운 시장이다. 특히 첫 오더 규모가 만족할 만큼 큰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레바논이 450만 명에 불과한 협소한 시장규모 탓도 있지만 치열한 경쟁구조로 인해 수입상들이 위험도가 높은 재고부담을 떠안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전시회가 유효한 마케팅 수단의 하나이다.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마케팅을 위해서는 전시회 참가가 매우 적절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전시회 참가 6개월 전에 현지 출장을 통해 에이전트를 선정하고 에이전트와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여 전문 전시회에 참가하는 방법과, 아예 전시회 참가를 시작으로 바이어 물색에 나서는 경우로 대별할 경우 전자가 다소 바람직한 방법이다.

바이어 발굴보다 중요한 것은 바이어 관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힘들여 바이어를 발굴해 놓고도 관리에 소홀하여 거래에 실패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특히, 세일즈 출장 시 구두든 문서 편이든 일단 약속한 것은 지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계속 관심을 환기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3) 유망 상품

- 전자통신장비: ADSL 및 인터넷 관련장비, 통신용 각종 케이블, 위성수신기, 핸드폰
- 발전설비와 송·배전설비 및 관련제품: 변압기, 계량기, 전압계 및 전류계, 케이블 등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벨트, 필터, 브레이크, 자동차용 배터리 및 부품, 증장비 및 자동차 정비기
- 유압브레이커, 굴착기 등 건설장비 및 부품
- 전자제품: 핸드폰, 에어컨, TV, DVD 및 기타 소비재 가전제품, LCD 모니터, 게임기 및 컴퓨터 관련 주변기기(MP3, USB)
- 산업용 원자재: 철강제품(Galvanized Steel Sheet, Pipe 등), P.E. / P.P. Resin 등 플라스틱 원료
- 의료용품: 의료기기, 치과재료, Disposable Syringe 등 일회용 의료용품
- 기타 중소기업형 수출유망상품: 정수기, 광학기기, 안경테 및 선글라스, 보안장비, 섬유 직물(담요, 폴리에스터 직물), 전화기, 전기제품, 난방기기, 전기담요, 주방용구, 계측기기, 문구류(필기구, 사무용 소모품 등), 냉동설비,

식품가공기계 및 호텔관련 용품, 가정용 소비재, 공조기기, 운반하역기기, 재생 식물, 여성용 의류, 아동용 의류, 스포츠 레저용품, 금/신변장신구 등

(4) 우리기업 진출시 애로사항 및 유의점

가. 일반적 유의사항

레바논은 아랍 문화권에 속하고는 있으나 동시에 유럽문화의 영향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개성이 뚜렷하여 패션지향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따라서 유럽형과 중동형 제품 모두 통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레바논은 페니키아 상인의 후예로서 상업, 서비스 분야가 국민총생산의 약 7할을 차지할 정도로 상업 의존도가 높으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레바논 상인들과의 연계성이 높아 정보가 빠른 편이다. 시장규모에 비해 참여하고 있는 상인 숫자가 지나치게 많아 극히 일부의 독과점 품목을 제외하고는 경쟁이 대단히 치열하다.

나. 건설시장 진출상의 문제점

(낮은 응찰가) 세계 각국의 건설업체들이 레바논 공사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어 대부분의 주요공사들이 초저가 응찰업체들에게 낙찰되고 있는데, 국내 건설업체들은 너무 낮은 가격수준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

(직접적인 해외금융 조달 선호) 레바논 발주처들의 신용도 향상으로 합작투자 사업보다는 직접적인 해외금융 조달을 선호한다. 이는 레바논에 진출한 외국 건설업체들이 안고 있는 주요 당면과제 중 하나이다.

(BOT공사 발주 증가)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건설업체가 모든 경비를 들여 완공한 후 운영까지 함으로써 수십년동안 비용을 상환받는 BOT공사 발주가 늘고 있다.

(법규의 완화) 지난 20년간 지속된 건설법규들이 완화되어 심지어 건설 진행 중에도 설계변경이 잦다.

(공사대금 지불지연)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대금 지불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다. 경쟁국 진출현황 및 수출입 동향

레바논 시장은 2016년 기준, 중국, 이탈리아, 미국, 독일, 그리스, 이집트, 러시아, 프랑스, 튀르키예 순으로 진출해 있다. 레바논에서는 전통적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중국의 진출이 급신장하여 레바논 수입시장의 11.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점유율은 1.2%이다. 한국의 대레바논 상품 수출액은 2019년 1억5천9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의 대레바논 상품 수입액은 2018년 3천5백만 달러에서 2019년 4억3천8백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1년 상반기 기준 레바논의 주요 수출국은 남아공, 스위스, 사우디, 튀르키예, UAE, 이라크 및 벨기에 순이다. Bank Audi 3rd QUARTER 2021 보고서에 의하면, 레바논의 주요 수출품은 보석류(25.5%), 식품(13.6%), 금속금속제품(12.7%), 화학제품(11.6%), 전기·전자 장비·제품(8.4%), 채소류(8.3%), 플라스틱 제품(3.7%), 종이·종이제품(2.7%), 기타(13.4%) 등이다. 그리고 레바논의 주요 수입국은 이탈리아, 중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이집트, 스위스 및 튀르키예 순이며, 주요 수입품은 광물제품(25.6%), 화학제품(14.8%), 보석류(9%), 채소류(8.3%), 전기·전자 장비·제품(6.6%), 식품(6.5%), 운송기기(6.4%), 가축축산물(5.2%) 및 기타(17.6%) 등이다.

라. 우리기업 진출확대 방안

시장진출 장벽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지 Agent를 통한 문제점 파악하고, 레바논 내 각종 상품전시회 참가지원 및 구매단 방한의 적극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국 간 민간상공회의소 지원, 동 협회를 통한 기업진출을 도모해야 하고, 도로 건설, 공항 확장, 전력 프로젝트, 레바논 연안의 석유 및 가스 탐사 같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국제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야 한다.



르완다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경제 현황

르완다는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세계경쟁력지수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7위(전체 100위), 2020년 경제자유지수(IEF)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2위, 2020년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20)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2위(전체 38위), 2018 갤럽 조사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밤길 걷기 안전한 나라 1위(세계 공동 4위)를 기록하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제노사이드의 참상으로만 알려져 있는 르완다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통계의 일부분이다.

르완다는 중동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서 우리나라 경상도 면적과 비슷한 크기(26,338 km²)에 약 1,3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갖고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언덕과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있어 ‘천개의 언덕의 나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르완다는 안정된 거버넌스와 치안을 바탕으로 높은 원조 효율성을 보내주고 있으며,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MDG)의 대부분을 달성할 정도로 원조 효과성이 높은 전도유망한 국가이다. 하지만 내륙국가로서 높은 물류비용, 해외 원조 및 차관에 대한 의존,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 국제시장으로부터의 에너지 및 원료 수입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 고에너지 비용, 여신(credit) 부족, 농업 작물의 다양성 부족, 제조업의 낮은 생산성 등 역시 르완다 경제성장의 주요 걸림돌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르완다 정부는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 미래 전략을 수립하였고, 2016년 키갈리 컨벤션 센터 오픈을 기점으로 MICE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아프리카 세계경제포럼, AU 정상회의의 등 주요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EAC 회의를 비롯한 교육, 금융, 개발, 에너지 등 다분야 컨퍼런스, 포럼 등을 연중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르완다는 여전히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1인당 GDP 833달러(2021, 세계은행)의 최빈개도국(LDC)이다. 인구의 7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가 노동력의 73%, GDP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활동도 산악지형과 낙후된 기술 및 생산방식 때문에 생산성이 낮으며 커피 및 차 생산을 제외하고는 자급자족적 농업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르완다통계연구소(NISR)에 의하면 2022년 2분기 기준 제조업(건설 및 광업 포함)은 GDP의 20%에 불과하며, 서비스 분야가 GDP의 약 47%를 점유하고 있다.

르완다는 1994년 제노사이드를 거치면서 경제·사회·지적(知的) 기반이 대부분 파괴되었으나, 이후 경제가 점차적으로 회복하여 2005년 이후 2012년까지 평균 8.1%(세계은행)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르완다 정부의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해외원조의 효율적 관리 및 집행, 농업의 생산성 개선, 투자환경 개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2012년에 정치적 이유로 해외원조가 일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2013년 르완다 경제 성장률은 4.7%로 저하되었는데, 르완다 경제가 2005~2012년간의 고도 성장기 동안에도 경제구조의 취약성(해외원조 의존, 공공분야 비대, 민간투자 부족 등)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2019년 르완다 경제는 수출 증진, 농업활성화, 민간 소비 성장 등에 힘입어 다시 9.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 등 여파로 약 -3.4%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경제회복기금 및 정책 등으로 반등하여 경제성장률 10.2%(IMF)을 달성하였다.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은 르완다 경제성장률을 2022년 약 7%, 2023년 약 8%로 예측하고 있다.

르완다의 경상수지는 해외원조액의 꾸준한 증가(2005년 729백만 달러 → 2019년 1,332백만 달러, OECD)에도 불구하고 자본재 및 소비재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인해 2005년 65백만 달러 적자에서 2012년 712백만 달러(GDP의

11.3%) 적자로 급증하였다가, 2013년에는 광물 수출 증가에 따라 537백만 달러 (GDP의 7.4%) 적자로 다소 감소하였다. 2014년부터는 해외원조 감소에 따라 2016년 1,210백만 달러까지 적자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2017년 999백만 달러로 적자 폭을 감소시켰으며(IMF, National Bank of Rwanda) 2018년 정부 예산 중 해외원조 비율을 16%까지 줄이며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2020년 국가 채무가 GDP 대비 61%로 증가하였으며, 2021/2022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중 약 45%가 외부재원(원조 등)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졌고, IMF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국가 채무는 GDP 대비 약 73%이며, 2023년 약 75%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차, 커피 등 농산품 및 광물 등이며, 수출 대상국은 UAE, 영국, 스위스, 파키스탄 및 주변 아프리카국(DR콩고, 케냐 등)에 집중되어 있다.

르완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는 사업비용 감소, 투자자에 대한 세금 혜택 제공 등 공격적인 투자 촉진 정책으로 인해, 2016년 650만 달러에서 2017년 10억 달러(르완다개발이사회)로 증가하면서 최초로 케냐, 우간다에 대한 FDI 액수를 능가하였고, 2019년에는 해외직접투자금이 38억 달러(National Bank of Rwanda)로 역대 가장 높은 투자금을 달성하였다. 르완다에 대한 최근 해외직접투자는 부계세라 국제공항 등 건설업, 부동산업, 화수력 발전소, 섬유, 원예 등에 집중되어 있다.

르완다 정부는 르완다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 Vision 2020이라 불리는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했다. Vision2020은 2020년까지 중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 및 농업중심경제를 탈피하여 지식기반경제로 변모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고, 민간 투자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국가 성장 목표를 밝히고 있다. 또한 르완다 정부는 Vision 2020의 후속 국가개발정책으로 르완다가 2035년 까지 고중소득국으로 그리고 2050년 까지 고소득국으로의 도약할 것을 골자로 하는 Vision 2050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 전략으로 2017년 10월 경제·사회·거버넌스의 세 분야를 중심축으로 하는 2017년- 2024년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인 '경제 7개년 계획: 변화를 위한 국가전략 (NST1)'을 발표하였다.

르완다 통상정책의 주무부처는 통상산업부(MINICOM)이며, 재정경제기획부(MINECOFIN), 외교국제협력부(MINAFFET), 농축산부(MINAGRI), 르완다 개발이사회(Rwanda Development Board), 르완다조세청(Rwanda Revenue Authority),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Rwanda) 등도 통상 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르완다 통상정책은 장기 국가개발 전략인 Vision2020, vision2050과 중기 국가전략인 경제개발·빈곤퇴치전략(EDPRS2, 2013-2018), 경제 7개년 계획: 변화를 위한 국가전략(NST1, 2017-2024)의 체제 내에서 수립되고 있다. 르완다 통상정책은 ① 생산성 및 생산능력 다변화, ② 지역 및 국제 무역체제에 대한 참여 증대, ③ 수출 증대를 위한 해외직접투자 유치, ④ 훈련을 통한 인적 자원 개발, ⑤ 과학·기술 능력 강화 등을 중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통상산업부는 ① 성장 및 소비자 보호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②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국내 총생산에서의 비중 확대, ③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민간분야 성장 및 고용 창출 지원, ④ 르완다의 무역 수지 균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역, 글로벌 시장에서의 무역 통합 심화, ⑤ 효율적인 인적 자원 및 기관 역량 조성 등을 전략적 목표로 채택하고 있다.

르완다는 2007년 동아프리카공동체(EAC)에 가입하였으며, 2009년부터 EAC 관세동맹의 이행, 2010년부터 EAC 공동시장의 이행을 개시하였다. 또한 르완다는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과 대호수경제공동체 (ECGLC)의 회원국이기도 한데, 이 두 공동체의 관세동맹은 아직 출범하지 않았다. 2016년 8월 르완다는 2007년 탈퇴하였던 중앙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CAS)에 재가입하여, ECCAS 내 경제협력을 가속화해나가고 있다.

EAC는 EU와의 경제협력협정(EPA)을 지난 2014년 협상을 종료하고, 2016년 초 법률 검토 및 번역 작업이 완료되었으나, 탄자니아와 우간다, 부룬디가 협정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협정의 서명 등 체결절차가 지연되었다. 이에 르완다는 2016년 9월 케냐와 함께 브뤼셀을 방문하여 우선적으로 EU와의 EPA에 서명을

하였다. 관세 동맹 간의 EPA 발효를 위해서는 EAC 회원국 모두가 협정에 서명해야 하는 바, 관련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다.

분야별 무역정책 및 관행

등록·통관·관세평가

모든 수입업자는 르완다개발이사회(Rwanda Development Board)에 등록해야 하며, 납세자확인번호(TIN: Taxpayer's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 받아야 한다.

르완다는 내륙국가로서 인근 케냐 몸바사 및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 항구로부터의 운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르완다 정부는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Asy scan, 사전 통관 등을 도입하였으며, 2012년 2월부터는 통관절차를 웹 기반 전자단일창구 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있다.

르완다는 2004년 1월에 WTO 관세평가협정(CVA) 적용을 통보하였으며, 관세평가지 EAC 공동 규칙을 적용하고 있어 수입품의 EAC 국가 항구 도착 시점의 인도가격(CIF)을 근거로 관세평가를 하고 있다.

관세

르완다는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 2004년부터 GATT(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 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7년 7월 EAC(동아프리카 공동체)에 가입하였고, 2009년 7월부터 아래와 같이 공동역외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최혜국대우 실행관세(MFN applied rate)로서 적용하고 있다. 또한 EAC 회원국 간 교역품에 대한 관세는 철폐되었다.

EAC 공동역외관세율(CET)

품목	관세율	전체품목 대비 비중
원자재 및 자본재	0%	37.4%
중간재	10%	22.1%
완제품	25%	39.3%
민감품목(58개)	35%~100%	1.1%

주: 세부 항목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CET 문서 참고

수입규제

르완다는 EAC 통관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품목과, 공중도덕, 공공정책, 인간/동식물의 건강 및 생명, 역사적/예술적/건축적 가치를 지닌 국보의 보호 또는 산업/상업정책의 보호 등의 법률 적용을 위해 품질, 포장 등 특정 형태의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으로 나누어진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위조지폐, 음란물, 마약류, 독극물, 수은 함유 화장품, 경사용차 및 승용차의 중고타이어 및 지정된 농업용/공업용 화학물질 등이 있다. 그리고 수입 제한 품목으로는 텃, 무기류, 상아 등 동물의 뼈, 몬트리올 협약 및 비엔나 협약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 GMO, 역사적 유물 등이 있다. 전체 목록은 국세청(RRA)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역구제(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관세)

르완다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또는 세이프가드 관련 법령 및 국내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조사 및 실행 사례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EAC 체제로서는 무역구제제도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지역적 차원에서의 무역구제는 시행이 가능하다.

표준 및 기술규격(Standards & Technical requirements)

(1) 표준화 및 기술규정 채택

2013년에 설립된 르완다표준이사회(RSB: Rwanda Standards Board)는 표준 장려, 품질관리 및 계측활동 및, 표준 적용 여부를 감시한다. 또한 르완다 표준이사회는 르완다의 표준을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및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과 조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EAC 표준의 경우 70% 이상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르완다표준이사회는 1,300개 이상의 국가 표준을 소유하고 있으며, 매년 100개 이상의 신규 국가 표준이 개발되고 있다.

르완다의 표준은 민관의 대표로 구성된 르완다표준이사회 기술위원회(TCs)를 통해 개발되고 있으며, 500여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표준 작업에

동참한다. 르완다는 르완다표준이사회를 통해 10개 이상의 국제표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01년 설립된 르완다 공공시설규제청(RURA: Rwanda Utilities Regulatory Authority)은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① 통신/ICT, 방송 및 인터넷 등 전자 기술 수렴 및 시청각 정보 처리 기술, ② 우편 서비스, ③ 재생 및 비재생 에너지, 공업용 가스, 파이프, 저장시설, ④ 수자원, ⑤ 위생, ⑥ 여객/화물 운송 및 ⑦ 기타 규제가 필요한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규제 권한을 위임받았다. 규제청은 정책결정자, 서비스 공급 면허자 및 소비자들 사이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규제청은 총리실에 직접 보고하며, 각 담당 부처들 간의 조정 역할을 맡고 있다.

(2) 부합검사(Conformity testing) 및 인증(certification)

르완다표준이사회는 수입 및 수출품이 르완다의 표준 및 기술규정에 부합하는지를 검사한다. 또한 국경에서의 수입품 검사, 르완다 내 산업 조사 및 시장 감시를 통하여 생산, 홍보, 소비의 모든 단계에서의 품질 관리를 수행하며, 관련 표준을 준수하는 상품 및 시스템에 품질 마크(RSB Standardisation Mark)를 표시하는 인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3) 국경 검사

소비자 및 환경에 대한 높은 위험을 안고 있는 물품·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르완다표준이사회가 발행한 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위탁화물·선적이 르완다의 표준 또는 르완다표준이사회가 인정한 국제, 해외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반드시 물품 도착 사전에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품목, 송장, 수출국이 발급한 검사 증명서 및 육류, 비료, 약물, 생선과 같은 제품에 대한 관련 부처의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식품 또는 식료품을 포함하는 수입의 경우 검사 증명서를 통해 이 식품 또는 식료품이 수출국에서 소비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르완다표준이사회는 전 세계의 모든 인증된 검사 연구소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인정하고 있다.

르완다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은 르완다표준이사회의 감시 하에 재수출 또는 폐기된다.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입업자는 경고, 르완다에서의 상품 판매금지, 물품의 압류 및 폐기, 물품 가치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기업의 일시적인 폐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생 및 검역(SPS)

2016년 8월, 농축산자원부는 농업분야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온라인 검역 및 인증 등 규제 관련 서비스 절차를 온라인으로 자동화한 르완다 농축산검역 및 인증 서비스(eRALIS)⁵⁸⁾를 개시했다.

eRALIS 온라인 포털은 이용자와 관리자를 위한 상호 연계된 두 개의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축산물 수출입 업자 등 eRALIS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포털을 통해 SPS 요건 및 무역 규정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검역/인증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자들은 요청된 서비스의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며, 국제청(RRA)과도 동 정보가 공유된다.

환경

환경관련규제는 르완다환경관리청(REMA)과 환경법, 그리고 장관 명령에 의해 제시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르완다환경관리청 홈페이지⁵⁹⁾에서 찾아볼 수 있다. 르완다에서는 생분해성이 아닌(non-biodegradable) 플라스틱류, 공중보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환경 및 건강관련 제품의 수입 규제가 존재한다. 한편 2019년 6월 12일 의회에서 1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제품 반입이 단계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2021년 기준 공항 입국검사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소지 시 즉시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21년 9월에는 페루와 함께 유엔환경계획(UNEP)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을 마련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며, 2022년 3월 케냐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동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58) <http://212.22.169.22/ralis/>

59) <http://www.rema.gov.rw/>

르완다는 2019년 6월 환경 관리 및 기후 변화의 중요 과제(토양 오염·황폐화, 화석 연료 의존성, 녹색성장 등)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대응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 환경 및 기후 변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사막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의정서,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키갈리 협약, 바젤협약, 습지에 관한 람사협약,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조약 등을 비준한 상태이다. 또한 국제 식품규격의 회원국이다.

마킹, 라벨링 및 포장

상품과 컨테이너는 반드시 라벨 분류 및 관련 정보 표시가 되어있어야 한다. 각 물품의 라벨에는 상품의 이름, 성분, 중량,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포장자, 유통자, 수입자, 수출자, 취급사항 등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이는 영어, 불어 또는 키냐르완다어 중 하나로 작성되어야 한다.

정부조달

(1) 제도

르완다는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2018년 개정)과 공공조달과 표준입찰 제도에 관한 행정법(2008년)으로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방을 제외한 용역, 재화, 컨설팅 서비스, 공공기관 서비스 조달에 적용된다. 국영기업의 조달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르완다는 WTO 정부조달협정 등 어떠한 양자 및 다자 협정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입찰위원회를 대체하기 위해 르완다조달청(RPPA: Rwanda Public Procurement Authority)이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동 기관은 조달정책 개발, 규제 감동 및 조달기관의 능력배양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조달방법

관련 법령은 조달업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타 다른 조달방법으로는 제한입찰(restricted tendering), 견적요청(request for quotation), 단일업체조달(Single- source procurement) 또는 직접계약 등이 있다. 국제입찰, 전국경쟁 입찰의 경우 국내 등록된 기업에게 10%의 가산점이 허용된다.

(3) 조달절차

개별 조달기관에 의해 조달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르완다조달청(RPPA)도 일부 조달을 시행하고 있다. 입찰공지는 르완다조달청 및 dgMarket 웹사이트(www.market.gov.rw)에 공지되며, 국제입찰의 경우 Business Week에 게재된다. 조달업체는 연간조달계획을 발행해야 하며, 특히 입찰명 및 입찰 수량, 입찰방식, 자금주체 그리고 예상 공시일과 집행일은 반드시 인터넷 혹은 조달업체의 공고판, 르완다조달청 웹사이트 그리고 독자층이 두터운 신문에 게재되어야 한다.

(4) 심리요건

입찰자는 조달절차 진행 중 언제라도 조달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한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심리요청은 심리가 필요한 상황을 인지한 후 7일 이내 그리고 낙찰 이전에 서면으로 조달업체 대표에게 요청되어야 한다. 심리 요청 시, 조달업체 대표는 조달절차를 중지해야 하며, 요청접수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유와 사정을 설명하고 심리요청이 타당한 경우 시행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조달업체의 대표가 심리요청 7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입찰자가 심사에 불복하는 경우 입찰자는 독립심리심사단 (independent review panel)에 요청할 수 있다. 독립심리심사단은 국립기관으로 심사단은 민·관·시·민사회조직 출신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독립적으로 요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조달절차의 문제점을 감독한다. 2017/2018 회계연도에 68개의 심리요청이 심사단에 접수된 바 있다.

경쟁정책

르완다의 경쟁정책은 ‘국내교역법’(Law No.15 of 28 January 2001)에 의해

규율되다가, 충실한 경쟁정책 수행을 위해 2012년 경쟁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었다. 이어서 2013년에는 경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독립 기관인 르완다 조사경쟁소비자보호청(RICA: Rwanda Inspectorate,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uthority) 설치 법률이 채택되었으며 2018년 8월 기준 총리령으로 조직구조·급여·부가혜택 등의 사안이 정해진 상태이다(No 116/03 of 06/08/2018). 동 기관이 설립되면 반경쟁행위, 합병통제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게 되며, 르완다표준이사회(RSB)는 표준의 이행에 대한 조사 등 권한을 이양하고 표준 설립에 집중하는 등 업무 영역이 조정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르완다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등의 회원국이다. 르완다는 지역차원에서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권기구(ARIPO)의 하라레 의정서에 2011년 6월 가입서를 제출, 17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르완다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9년 10월 발효)하고, 지식재산권 정책을 발표(2009년 11월) 및 개정(2018년 8월)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르완다 통상산업부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 수립 및 법률 제정의 중추기관이며, 문화체육부는 저작권과 관련한 중추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르완다개발이사회(RDB)는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 보안거래 등과 관련한 사안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르완다 지식재산권 체제는 발명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 직접회로 레이아웃 디자인(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상표, 지리적 표시, 저작권 등을 보호하고 있다.

르완다 지식재산권 체제는 “선출원주의(First-to-File Principle)” 원칙을 고수하는데, 이는 따로 증명치 않는 한 처음으로 지식재산권을 신청한 사람이 유효한 청구인으로 간주한다. 신청서는 반드시 영어, 불어 혹은 키냐르완다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 신청자의 경우 르완다정부에서 승인받은 산업재산 에이전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르완다에는 특허 심사 기관이 없으며, 르완다 개발이사회와 APIPO(아프리카 지역 지적 재산권 협회)간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특허 관련 심사를 하고 있다.

국영기업(SOEs), 국유 및 민영화

르완다 경제에서 특정 국영기업이 특정 분야를 독점하거나 특정 기업이 수출입에 대한 독점권을 소유한 경우는 없으나, 르완다 정부는 여전히 르완다 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수도전기, 건설, 농업, 광업, 숙박업, 금융 및 보험 분야에서 8개의 국영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 기준으로 점차적인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다. 1996년 민영화 및 공공투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재정경제기획부가 전전반적인 민영화 사업 및 매뉴얼을 주관하며, 르완다개발이사회가 민영화 프로그램 실행·감사·고문을 담당하고 있다.

기타 무역장벽

(1) 육상무역의 한계

르완다는 바다에 접해있지 않은 내륙국이기 때문에 주변국의 항구 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약 40%의 수입품 가격이 운송비와 관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국경 지역과 항구로부터의 운송의 행정 체계 그리고 행정 절차 상의 부정부패와 같은 비관세장벽은 비용 및 통관 소요 시간, 총 매출량 등에도 영향을 미쳐 교역 과정에서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

(2) 인프라 부족

르완다는 에너지의 발전량 부족과 접근성에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민간사업, 투자, 통상에 대한 비용 상승의 요인 중 하나이다. 르완다는 2022년 10월 기준 전체 가구의 75.3%(르완다에너지그룹)만이 전력 접근성을 갖고 있다.

르완다는 아프리카에서 도로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국내 도로 인프라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철도나 항구가 없어 운송에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르완다 정부는 항공 교통 발전을 위해 르완다항공의 취항지를 증가

시키고 있으며, 부계세라 신공항 건설 사업과 탄자니아-르완다 표준궤열차 등 철도를 항구에 접해있는 주변국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통해 수출입 비용 절감을 도모 중이다.

르완다의 투자 환경 및 제도

투자매력도

르완다는 세계 여러 기관으로부터 투자 환경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20년 세계은행(World Bank)의 ‘세계 각국 사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Report)’는 르완다를 세계 제38위의 사업하기 좋은 국가로 평가했으며, 이는 사하라이남 국가 중 2위로 주변 국가(우간다 116위, 케냐 56위, 탄자니아 141위, 부룬디 166위)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가이다.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는 르완다를 세계 100위로 선정하였다. 2022년 10월 기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르완다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은 아래와 같다.

르완다의 신용 평가 등급			
	Moody's	S&P	Fitch Rating
르완다	B2	B+	B+

투자 제도

르완다의 투자 제도는 ‘투자 진흥 촉진법’(LAW N° 006/2021 OF 05/02/2021)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토지는 국가 소유이나, 투자자는 최대 99년 기간의 토지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르완다 정부는 안정적인 투자 및 수출환경의 조성과 해외 투자의 유치를 위해 종합투자법(Investment Code)을 2005년에 발표하였으며, 2015년 7월에는 전략적 투자진흥 시스템 강화,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형평성 제고,

비효율적 투자유치 인센티브 폐지 및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인센티브 도입 등을 위해 新투자법인 투자진흥촉진법(The Law on Investment Promotion and Facilitation)을 제정하였다.

이후 2021년 2월 기존 투자진흥촉진법을 개정하였으며, 투자 대상으로서 르완다의 경쟁력 향상시키기 위해 적격 투자자 목록을 확대하고, 등록 투자자에게 우대세율 적용, 법인세 및 원천징수 우대 등 적극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 매력도를 높이려고 하였다. 르완다를 지역 및 범아프리카 수준에서의 국제 표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모범적 투자 목적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키갈리혁신도시(Kigali Innovation City), 키갈리국제금융센터(Kigal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스타트업 및 신생 기업을 통해 형성되는 민간 투자 부문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08년에는 르완다개발이사회(Rwanda Development Board)가 설립되어 르완다에서 투자자들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르완다개발이사회는 투자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법, 정책, 인센티브와 투자환경, 트렌드, 투자 기회 및 토지 확보 지원, 각 산업부문의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르완다개발이사회 내의 원스탑센터 (One-stop center)에서는 노동 허가증과 비자, 세금 감면 및 납부, 환경 규제, 토지 이용 및 건축 허가, 공공시설 이용과 공증 서비스가 가능하다.

투자에 대한 제약

르완다는 투자환경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러 투자에 대한 제약요소를 가지고 있다. 도로 및 전기 인프라는 열악한 수준이며, 이에 따라 연료와 전기의 가격도 높은 편이다.

주변국에 비해 작은 시장규모(인구 약1,300만 명) 및 숙련된 노동인구의 부족 또한 대르완다 투자의 장애물로 꼽히고 있다. 2018년 등록기준 대학생은 전체 학생의 2.1%에 불과하며(르완다국립통계연구원, 2019), 2017년 2월 기준 전체 노동인구 중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비율은 16%에 그친다(르완다국립통계연구원, 2017). 르완다 농산물은 커피, 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자급자족 위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에서도 호텔과 관광산업이 각광 받고 있으나, 주변의 관광 대국들(케냐, 탄자니아)에 비해 규모는 작은 수준이다. 광업의 경우 주석, 콜탄, 텅스텐, 보석류(gemstone) 등이 발굴되고 있다.

르완다 新투자법 주요 내용

- ◆ 법인세 감세 제도 조정 : 기존 고용 및 수출 실적에 따른 혜택(2%~7%)는 폐지하고, 에너지, 운송, 주택, ICT, 에너지, 금융서비스 등 중점 분야에 대해 일괄 감세(15%) 제도 신설
 - 르완다 소재 본부(headquarters)에 대한 법인세 면세 혜택은 유지
- ◆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 에너지, 제조, 관광, 보건, ICT 분야 5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7년간 Tax Holiday 부여- 단, 내각 결정에 의한 추가적 인센티브 부여 제도는 폐지
- ◆ 자본소득세 면제 혜택 신설(단, 상업용 부동산은 제외)
- ◆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 폐지(단, 부가세 신속 (15일 이내) 환급 제도 신설)
- ◆ 법인세 가속 감가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제도 정비 : △각 사업 당 5만 달러 이상 투자한 투자자, △수출·제조·통신·농산물가공업· 교육·보건·대형교통·관광·건설 등 특정 분야 투자자의 신규/중고 자산에 대해 최초 1년간 50%의 가속 감가상각
- ◆ 투자 자산보호 강화 : 투자자의 자본, 자산 및 지재권 등에 대한 보호 강화
- ◆ 투자 등록 기간 단축 : 기존 10일 → 2일
-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 등록 요건(25만 달러 이상) 폐지
- ◆ 건설 분야 투자에 대한 특혜(부가세 및 관세 5%) 폐지
- ◆ 기계 및 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특혜 폐지

투자관련 분쟁해결

르완다는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및 아프리카 무역보험기구(ATI)의 회원국이다. 르완다는 ICSID의 공식문서에 1978년

4월 21일 서명했으며, 1979년 11월 14일 비준하였다. 르완다는 다른 회원국의 국가 및 국민들과의 투자 관련 분쟁해결의 틀에 관한 1965년 3월 18일 협정의 서명국으로 1979년 7월 16일자 법령에 따른다.

키갈리 국제분쟁조정센터(Kigal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ttp://kiac.org.rw>)는 2012년 5월 설립되어 르완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투자자와 관련된 분쟁 조정을 책임진다.

한·르완다 교역 및 투자 현황

한국의 르완다 투자 진출은 2012년까지 10건 40만 달러 규모에 불과했으나, 2005년 경제, 과학, 기술 협력 협정 체결, 2013년 투자보장협정 및 개발협력 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향후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통신기업인 KT가 2013년 6월 르완다 정부와 4G LTE 기술 기반 초고속 무선 브로드밴드망 구축기로 합의하고, 4G LTE 도매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합작회사(KTRN: KT Rwanda Networks)와 르완다 정부의 ICT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정보통신 합작회사(AOS)를 설립하면서 (약 9천만 달러 투자) 한국 기업에 의한 대르완다 투자가 급증하였다. KTRN은 현재 르완다 내 LTE/4G 네트워크 전국망 구축을 완료한 상태로, 1천만불을 추가로 투자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네트워크 품질을 개선하였다.

한편, 2021년 기준 우리나라와 르완다의 교역량은 3,200만 달러(수출 3,000만 달러, 수입 200만 달러)(한국무역협회)로, 2021년까지 우리의 누적 직접투자 현황은 법인 13개, 9,600만 달러 규모(수출입은행)이다. KT는 르완다 4G/LTE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위해 2013년까지 르완다 정부와 합작법인 KTRN을 설립하였고, 2018년부터 독점 공급 중이며 계약은 2038년까지이다.

동아프리카 및 동남아프리카의 지역 통합은 르완다의 기업 및 투자자들의 투자 시장 접근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동남아프리카 지역까지 투자자들의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로코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모로코는 1980년대 이래 대외개방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아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구해오면서 자유무역협정과 함께 최혜국 관세를 점진적 인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기존 농업·광업 중심에서 2000년대 들어 정부 주도 하에 자동차·항공 산업 등 제조업 육성에 적극 나서며 수출이 확대되었으나, 이와 함께 에너지원, 원자재 및 기계류 수입이 동반됨에 따라 구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GDP의 15% 이상의 무역 적자가 만성적으로 누적되면서 모로코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고,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가중되며 모로코 정부는 최근 일부 품목에 대해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0년부터 자국내 생산을 통한 수입품 대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지 생산 동일 품목의 수입 관세 및 비관세 규제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FTA 역외국 수입 완제품에 대한 최고관세를 기존 25%에서 2020년초 30%로, 2020년 7월 40%로 단기간내 인상한 바 있고, 모로코 정부는 2021-23년 산업활성화 정책(Plan de Relance Industrielle 2021-23)의 일환으로 340억 디람(약 37억불) 상당의 수입품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시키기 위한 전담반(TF)을 운영 중에 있다.

모로코 대외교역은 당초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불황으로 2020년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21년 교역현황 분석 결과 인광석 및 파생물

수출(+12.5%),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 피해 단기극복 및 회복 가속화, 자국내 생산을 통한 수입품 대체 기조 등에 힘입어 수출은 +25.0%(총 3,288억 디람)을, 수입 +24.7%(총 5,274억 디람)을 기록하며 위기 속에서도 선전하였다. 2020년 GDP의 14.9%까지 줄었던 무역수지 적자는 2021년 들어 에너지 수입증가 등으로 인해 GDP의 16.6%까지 늘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1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6.9억불을 기록(UNCTAD 통계)하며 전년 17.6억불보다 소폭 하락하였다.

모로코 경제는 2021년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 캠페인으로 2022년 들어 코로나19 상황은 거의 해소됐고,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교역 감소와 모로코 전국에 걸친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작황 불황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2022년 상반기 모로코 대외교역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2022년 1-10월 기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4% 증가(총 3,540억 디람)하여 최근 5년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입도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2% 증가(총 6,149억 디람)하며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동기보다 56.4% 늘었다.

모로코의 수입관세는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공산품에 대해서 제품의 특성과 자국 산업 발달유무에 따라 0%부터 최고 40%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주요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 가공단계가 높아질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모로코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0년 들어 기존 공산품 수입에 부과되는 최고관세를 2차례 인상하여 40%까지 올린 바 있으며, 관세부과 단계를 7단계에서 2012년 4단계(품목에 따라 2.5%, 10%, 17.5%, 40%(2020년 7월 상황))로 조정한 이후 품목에 따라 다소 유연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2022년 재정법안에 따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실내 장식용 식물, 양품용 식물, 초콜렛 가공품, 카트리지토너, 백열전등(적외선, 자외선 제외), 가공용 닭고기 등 일부품목의 수입관세는 상향 조정(품목에 따라 17.5%~40%)됐고, 버스, 트럭용 타이어와 결핵항생제에 대한 수입관세는 하향 조정(2.5%~17.5%)됐다.

모로코는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미국, 튀르키예, 튀니지, 이

집트, 요르단, UAE, 여타 아랍국가 등 50여개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특히 모로코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EU와는 2012년, 미국 및 튀르키예와는 2015년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철폐가 완료되었다. 따라서 상기 최혜국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특혜 및 최혜국 관세 간 격차가 커져 자동차 등 한국산 주력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모로코는 2011.9월부터 캐나다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으나, 모로코 농업 및 공공사업부문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항 등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모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양측은 현재 통관수속, 위생조치,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마무리 협상이 진행중이다. 또한 모로코 정부 및 모로코경제인총연합회는 자유무역협정의 확대에 의해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자국 제조업 기반이 약해지면서 교역과 산업 구조가 더욱 악화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은 모로코의 제1위 교역대상국으로서 지난 2000.3.1일부터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이 발효되어 관세철폐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2012년 3월 1일자로 완전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였다. 유럽연합(EU)은 2008년 10월 모로코에 ‘진전된 지위(Advanced Status)’를 부여함에 따라, 모로코는 유럽자유무역지대(EFTA)에 준하는 지위를 유럽연합(EU)에 대하여 누리고 있다. 또한 2013년 유럽연합(EU)과 모로코 간 심화·확대된 자유무역지대(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구성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어 2014년 4월까지 4차례 협상이 이루어졌다. 서비스무역, 투자보호, 국가조달, 비관세장벽 철폐 등과 함께 양국 간 제도적 근접성을 확보하여 모로코가 EU 시장에 점진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위생 기준, 공업 표준 등의 일원화와 같은 안건이 논의되었으나, 현재는 모로코측 요청에 따라 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2012년 2월에 발효된 농산물 협정은 유럽에서 가격 탄력성이 높은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로코 산 농산품을 유럽으로 수량 제한 없이 수출을 허용한다는 조항과 향후 10년간 유럽에 대해 모로코 식품류 시장을 개방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모로코-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은 2004년 6월 15일 타결된 후 200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95% 이상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2015년에 완전 철폐되었다. 이는 미국이 아프리카 국가와 체결한 처음이자 유일한 자유무역협정이기도 하다. 미국의 대모로코 수출은 2006년(5.21억 달러)에 비해 2021년 약 5배가 증가한 27.59억 달러, 모로코의 대미국 수출은 2006년(3.54억 달러)에 비해 약 3.6배 증가한 12.7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미국의 주력 수출 품목은 원유, 항공부품, 기계류이며, 모로코의 주력 수출품은 비료, 전자부품, 농산물, 인광석, 의류 등이다.

2006년 1월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튀르키예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2015년 완전 철폐되었다. 튀르키예는 세계 2위 섬유산업 강국이어서 튀르키예산 섬유 및 의류 제품의 모로코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면서 모로코정부는 지속적인 FTA 개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2020년 8월 모로코와 튀르키예는 FTA 개정안을 최종 타결하였고, 총 630개 품목(의류, 가죽, 철강, 전기, 목재, 자동차 등)에 대해 관세율을 조정키로 하여 2021년 5월부터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튀르키예는 2019년 모로코의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평로선철, 강철, 자동차, 의류 등이 주요 거래 품목이다. 모로코-튀르키예의 상호 연간 무역액은 2016년 약 13.4억 달러에서 2019년 25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양국 교역액이 지난 13년 동안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로코, 이집트, 튀니지, 요르단 등 4개국이 2004년 2월 25일 체결한 ‘아가딜 협정(Agadir Agreement)’은 2006년 7월 6일 발효되었다. 협정 발효 즉시 모든 공산품과 농산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수량제한 등 비관세장벽도 제거되어 지중해 아랍권 4개국 간 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되었다. 2021년 2/4분기 모로코내 이집트와의 대규모 무역적자 누적에 불만이 증폭된 상황에서, 이집트 당국이 모로코산 자동차 수입 통관을 일부 불허 및 지연시킨데 대해 모로코측도 이집트산 제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하면서 무역 갈등이 일어남에 따라 이집트산 우리 TV제품의 모로코내 통관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등 우리 기업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양국간 협의 결과 통관이 재개되었으나, 향후 유사한 무역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

모로코는 모하메드 6세 국왕의 주도 하에 아프리카 중시 및 남-남 협력 강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2017년 1월 아프리카단결기구(OAU) 탈퇴 33년 만에 아프리카연합(AU) 재가입, ▲2017년 2월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가입 신청 및 ▲2018년 3월 AfCFTA 출범 서명 동참이 이루어졌으며, 동 협정은 2019년 7월 7일에 공식 발효됐다. 세계은행의 2020년 7월 보고서*에 따르면 AfCFTA 완전 이행시 아프리카 국별 및 산업분야별 영향은 매우 상이한데, 모로코는 잠재적으로 AfCFTA를 통해 2035년 8%의 실질소득 증대 실현이 예상되어 혜택을 받는 국가(Top 9)로 분류되어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2019년 모로코의 대외교역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나 AfCFTA에 따른 관세장벽 철폐시 역내 교역이 보다 활성화되면서 기존 아프리카 서부(58%) 중심에서 남동부 신시장으로 확대될 것이며, 역내 제2의 투자국인 모로코의 對아프리카 직접투자 및 역내 국가의 對모로코 투자도 한층 다변화 및 심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입부과금

모로코에서는 관세와는 별도로 수입상품에 대해 0.25%의 수입세(PIT: Parafiscal Import Tax)가 부과되고 있으며, 국내 생산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일반제품에 대하여 20%)와 국내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세관에서의 경제적 제도하에 수혜를 받아 이루어지는 수입, 투자 진흥을 위해 필요한 자본재와 그 부품, 부분품, 부속품의 수입, 수입 관세가 면제 또는 완전히 유보되는 조치하의 상품, 모로코와 특정국가간에 체결된 협정 및 협약의 일환으로 전면 또는 부분 면제되는 상품수입은 예외에 해당된다. 그러나 모로코에서 제3국으로 상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업체의 국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나 면제는 불가능하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수입상품의 통관은 ①수입신고, ②물품검사, ③관세납부, 그리고 물품반입 등의 절차로 진행 된다. 최근 모로코 정부의 투명한 통관 행정 관행 정착에 대한 노력과 함께 전자통관 제도를 도입하여 통관 절차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① 수입신고

모로코와 제3국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품 교역은 원칙적으로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통관 절차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수입신고시에는 수입 신고서(Engagement), 수입화물 도착서류 (Bon de Delivery), 선하증권 (Bill of Lading),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세금 감면 대상 화물인 경우 증빙서류, 수출용 원자재는 관세 환급을 위한 증빙서류, 기타 세관이 필요로 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 면장은 수량 제한 조치 대상이 되는 수입 상품에 한해 요구하고 있으며, 그 대상 품목은 상공장관이 고시하는 리스에 명시되어 있다. 상공장관이 발급하는 수입면장은 6부의 사본이 구비되어야 하며, 수입 약정서는 수입 면장 대상이 아닌 상품 수입시 요구되며, 사본 5통을 신용장 개설 은행에 직접 제출하고, 상공장관에게 사전 비자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 사전신고서(DPI)는 국내 생산에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제품 수입시 요구된다. 모로코 세관의 통관절차는 상품 도착 후 24시간 내에 총 8부로 구성되어 있는 통관 신고서를 제출하고 통관 신고서를 증명하기 위해 특정 규정이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한 후 관세를 지불하면 수입상품이 통관된다. 수입 면장과 수입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세관 통과기준 6개월이다. 이 기간의 기산 일자 는 수입약정서의 경우 지급은행에 신청할 때부터이며, 수입 면장은 상공부 장관이 발급한 시점부터이다. 그리고 수입 사전신고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수입 면장과 수입 사전신고의 최초 조건을 수정할 경우 다시 수입 자격을 요구하는 대상이 되며, 수입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수입업자 카드를 취득하기 위해 무역업자 색인표(Ficher Central des Importateurs)에 등록되어야 한다. 최근 모로코 정부의 정책 노력으로 통관 절차가 간소화 되고 있으며, 기간도 상당히 단축되고 있다.

② 물품검사

물품 검사시에는 화물송장 등의 항목별 내용에 대한 수량, 품목, 규격 등의 정확성 여부를 검사한다. 전수 검사를 원칙으로 하나 수량이 많으면 견본을 지정해 검사하기도 한다. 물품 검사는 통상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기에 세관

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등 보세 구역에서 실시한다. 기타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업자의 요청을 받아 세관원이 현장으로 파견되어 검사가 가능하다. 수입업자가 보세구역내 판매 등을 이유로 수입품을 타 세관 관할 구역으로 이동시킬 경우, 전체 수입가격의 상당액을 보증금으로 은행에 예치한 후 증빙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통관전 이동이 가능하다. 아직 송장 상품거래서 가격 조작(Invoice under value)이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으나, 세관의 심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적발 시 정상이 보다 높은 가격을 적용한 추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③ 관세 납부

세관과 금융기관 간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을 통해 관세를 이체하면 세관이 납부증빙을 발부하게 되어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었다. 또한, 물품을 먼저 통관하고 추후에 관세를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는 신용통관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모로코 수입 통관 절차는 간소화되고 있지만 세관 당국의 관료주의로 인한 급행료 요구, 세관 당국의 자의적인 과세 기준 가격결정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농산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까다로워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유통 기한이 짧은 식품의 경우 검역과 통관에 약 1개월이 소요되어 한국에서 모로코까지 해상 운송까지 포함할 경우 약 4개월이 소요된다.

수입규제

수입 수량제한 대상 품목은 화기, 폭발물 등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나, 공중보건 및 안전상의 이유로 중고의류, 중고 타이어 등에 대한 수입허가가 사실상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모로코에는 수입 규제 제도가 없으나 국가 경제 정책상 농수산업 보호차원에서 농업 분야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 외 사치품 등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비재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사실상 수입을 억제하는 관리정책을 취하고 있다.

모로코는 국토면적과 인구에 비해 구매력 있는 중산층이 적어 내수시장이 제한되어 있다. 특히, 고급 소비재와 산업 설비재는 유럽을 비롯한 세계 유명 브

랜드 물품이 수입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한 반면, 일반 공산품은 중국, 이집트, 튀르키예 등으로부터 중저가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전자제품 등의 경우에는 스페인령 세우타나 메릴라를 통해 밀수입되는 경우도 많아 일반적으로 수입규모가 적고, 가격 민감성이 큰 편이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생산자, 수입업자, 산업협회, 관련 당국 및 소비자는 원산지 국가의 덤핑,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동 제품 수입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가져온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에서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상공부는 이를 관할부처에 통보하여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관할부처가 덤핑, 보조금 지급,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는 경우, 재경부령으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2012년 이후 반덤핑 등 무역규제 조치가 꾸준히 취해지고 있으며, 유럽 및 튀르키예산 철강합판, 덴마크의 인슐린, 포르투갈의 A4용지 등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모로코 산업계에서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실행관세 인하에 따라 국내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하면서, 모로코 상공부는 무역규제수단 적용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엄격한 적용을 천명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14년 6월에는 2012년 이후 수입량이 100% 이상 증가한 유럽 및 튀르키예산 열연강판에 대해 자국 철강기업 Maghreb Steel이 제출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요청서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5년간 기업들에게 11.00~11.0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2015년 냉연강판, 도금강판 및 도장강판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2015년 12월 22%로 부과된 이후 2019년에 해제된 바 있다. 한편 2016년 자국 냉장고 생산기업 MANAR가 제출한 요청서에 따라, 2017년 10월부터 향후 5년간 중국산 제품에 27.56%(기존 25%), 태국산에 18.15%(기존 25%), 튀르키예산에 16.94% (기존 0%)의 추가 반덤핑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산 대상 수입규제는 전제 2건(철강/금속 품목)으로, 2020년 1월부터 냉연판, 2021년 1월부터 열연판에 대해 세이프가

드 규제가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냉연판의 경우 약 15%, 열연판의 경우 약 23~25%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모로코는 기술표준은 국제표준기구(ISO), 유럽안전인증(CE), 프랑스 표준협회(AFNOR) 등 유럽 표준, 식품의 경우 Codex 등의 국제 표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모로코 국가 기구인 모로코 산업표준청(SNIMA)은 모든 공산품에 대해 표준과 규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립검사청(LPEE)은 ISP/IEC에 의거해 제품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모로코 산업표준청(SNIMA)는 2010년 산업통상부 산하 모로코 표준화연구소(IMANOR)로 대체되었다.

모로코는 WTO 기술장벽협정(TBT)의 당사자로서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표준, 기술, 규격 등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가의 자문을 받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2020년 6월부터 모로코 국가기술 표준 및 규정 준수를 통한 제품의 적합성 및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용 수입제품에 대한 적합성 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동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전에는 해당 품목 수입을 위해 모로코내 연구소 등에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새로운 제도 하에서 모로코 정부가 3개 글로벌 검사기관(APPLUS FOMENTO, Bureau veritas, Tuv Rheiland)과 아웃소싱 협약을 체결, 수출국에 위치한 해당 검사 기관사무소를 통해 적합성 인증서(CoC: Certificates of Conformity)를 발급 받을 수 있다. 2021년 6월부터 인증서 발급기준이 강화되어 가전제품, 전자제품, 완구제품, 가구, 자동차 부품 등의 품목에 적용된다.

한편 모로코의 품목별 인증제도는 다음과 같다.

① 이동통신기기

모로코 통신감독위원회(ANRT)의 통신기기 심사를 거쳐야 수입이 가능하다. 모로코는 중고 핸드폰 수입은 불법이다.

② 전자, 전기

유럽규격 CE 마크가 모로코내에서도 유효하다. 가전제품에 대한 모로코 정부의 별도의 인정 및 시험 제도는 아직 운용되고 있지 않다.

③ LED 조명기기류

모로코는 LED조명(등기구, 램프 등) 판매 유통시 강제적인 인증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④ 레이저 기기

통관과정에서 별도로 요구되는 인증 기준은 없으나, 제품 세부사항에 따라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⑤ 금속

ISO, RADIO 등의 인증이 필요하다. 모로코는 동 스크랩(고철)을 다른 산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금속류에 대한 심사가 까다롭다.

⑥ 보석, 액세서리류

모로코 세관당국이 인체유해광물 포함 여부를 검사한 후 자체 인증 표시한다.

⑦ 의약품

의약품의 경우, 제조일, 유효기간, 약품명, 성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⑧ 식품류

모로코 수입관리청(EACCE)에서 수입되는 모든 종류의 농수산물, 식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모로코는 종교적 문장이나 표시가 되어 있는 물품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라벨링은 일반적으로 불어 또는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원산지국가를 명기해야 한다. 식품의 경우 라벨이 반드시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생산 일자와 소비 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가공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품목명, 내용물, 생산자 또는 포장자의

회사명 및 주소, 원산지국명, 내용물 중량, 성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조일, 유효기간, 약품명, 성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모로코에 할랄(Halal)을 의무화 하는 검사 또는 인증 규정이 없었으나 2012년 9월 메크네스에서 열린 국제 할랄 엑스포에서 모로코 당국은 모로코 할랄 인증을 공식 발표하였다. 모로코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한 육류를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할랄 처리되지 않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류 제품의 수입도 일부 허용되고 있다. 모로코는 유럽과 아프리카 할랄 시장에서 지역 허브 역할을 모색하고 있으며, 모로코 표준화 연구소(IMANOR)가 할랄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할랄 식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바젤 협약, 스톡홀름 협약, 로테르담 협약 등 환경협정에 따라 멸종위기 동식물, 유해 폐기물,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특정 유해화학물질 등은 수입허가 또는 수입금지 대상이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의 수입을 2015년 완전히 금지하였다. 한편 모로코 정부는 2016년 11월 마라케쉬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2)를 개최하는 등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2017년 채택된 지속개발가능발전국가전략(SNDD,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durable)의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환경 분야에 적용될 대대적인 환경법안을 구상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모로코는 수출 증진을 위해 수출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부가세 환급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20 재정법(Loi de finances 2020)에 따른 세제 개혁에 따라 2021.1.1.부터 수출기업에 대해서 처음 5년간은 법인세 100% 면제, 이후 전체 매출의 15% 세율로 고정되어 있다(기존 대비 혜택 축소/2021.1.1 이전 기

진출 기업에는 불소급).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환급하고 있으나, 부가세 환급 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1년 이상 소요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모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고 전자조달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조달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조달관련 중앙행정 기구가 없는 반면, 각 부처, 국영기업, 지방행정기관 등이 각각 조달 업무를 이행하며, 재정부 및 회계감사원(Court of Audit)이 정부조달 계약의 감시와 통제를 담당한다.

모로코는 정부조달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2007년 10월 19일 발효된 정부조달에 관한 Decree No.2-06-388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제81조는 경쟁 입찰에 참여한 내국인에 대해서 외국인에 비해 입찰 가액의 15%를 우대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낙찰자의 하청계약금액의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모로코가 정부조달 제도개선 및 투명성 강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실제에서는 과거 거래 경력과 인맥이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물품조달이나 입찰이 공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부적으로 인맥을 통해서나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결정된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정부조달 입찰 공고와 제출서류가 아랍어 또는 프랑스어로만 진행되고 있어 영어권 서류작성에 익숙한 기업에게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경우에, 공고 후 입찰까지 준비기간이 3개월 정도로 촉박하다는 점과 사업성 검토 및 입찰서 작성을 프랑스어로 해야 하기 때문에 비불어권 국가 기업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 일부 사업의 입찰서류를 영어로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014년 9월 산업·통상·투자·디지털경제부 장관은 산업화 촉진 전략에 따라

산업보상 정책을 활성화하여 국방부, 인광석공사(OCP), 모로코항공(RAM), 철도청(ONCF) 등에서 발주한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기술이전, 모로코 내 생산시설 설립 등 산업보상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산업보상 정책이 이행된 경우는 모로코 내 고속철도(TGV) 건설 계약 관련 프랑스 Alstom 사와 체결한 산업보상 합의가 유일하다. 고속철 계약을 수주한 후 Alstom 사는 철도분야 교육기관 설립, 10년간 5천 명 고용을 창출하는 케이블 및 전자부품 생산 공장 건설 및 모로코 납품업체로부터의 구매 확대 등의 산업보상을 약속하였다.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법

모로코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며, 자국 법규를 국제의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지식재산권 위반 시 처벌 규정 강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관련 업무는 모로코 특허청(OMPIC: L'Office Marocain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Commerciale)에서 주관하고 있다. 산업·통상·투자·디지털 경제부 산하기관으로 있는 OMPIC은 산업재산권 신청(발명특허, 상표권, 의장 등록) 접수, 등록, 교부 및 공표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경제 주체에게 인식시키는 임무를 갖고 있다.

모로코 특허청은 특허권에 대한 자료, 상표권에 관한 국가 색인표, 상표권 및 의장등록에 관한 등록 장부, 재산권에 관한 연례 통계, 특허권에 관한 분기별 통계, 연구자료, CD-ROM에 수록된 외국특허(ACCESS, WORLD), CD-ROM에 수록된 국제적 상표(ROMARIN) 자료를 비치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웹사이트(<http://www.directinfo.ma>)를 개설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모로코 특허청은 아랍 연맹, 아프리카 국가의 특허청과 연계해 특허 관련 협력을 하고 있으며 아랍 연맹과는 특허 관련 전략에 관해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하는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허의 경우 개인 혹은 법인체는 독일 뮌헨에 있는 유럽 특허청 및 모로코 내의 OMPIC에 특허 신청을 낼 수 있다. 단일종류의 유럽식 특허는 20년 동안 유효하다. 모로코 특허보다 유럽 특허의 신청 절차가 길고 수수료가 비싼 편이나 유럽 특허가 보호범위 측면에서 광범위할 뿐 아니라 뮌헨 협정에 서명한 모든 국가에 이 특허가 적용돼 선호되는 편이다.

모방제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법률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 시 최소 1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도 최소 2천 8백 달러에서 최고 5만 7천 달러가 부과되나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모로코의 비교적 잘 정비된 지재권 보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지재권 위반 단속 및 법집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소프트웨어, 음악 CD, 영화 DVD 불법 복제품이 시중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으며, 의류, 가방 등 제품의 상표권 및 산업디자인 위반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모로코 정부는 1993년 민영화법을 제정하여 통신, 금융, 운송, 유통 등 서비스 분야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요기업 지분을 외국기업에 매각한 바 있다. 에너지, 교통시설 등의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는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확대하고 있다. 국영기업 민영화로 인한 재정 수입은 세계적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유연한 확대 재정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였으나, 민영화로 인한 비정상적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금융서비스

모로코는 지난 2006년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모든 금융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중앙은행(Bank Al-Maghrib, 이하 BAM)에 허가권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이 지점을 모로코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국가 금융당국의 의견서를 중앙은행(BAM)에 제출해야 하며, 중앙은행(BAM)은 해당국가 준거법에 따른 해당 금융기관의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모로코 재경부는 새로운 보험 상품의 출시를 심의할 때, 다른 경쟁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상품이 모로코 금융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하는데, 이 관행이 기존 금융회사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프랑스계 BNP Paribas가 BNCI 지분 66.74%, Société Générale이 SGMB 지분 56.94%, Crédit Agricole이 Crédit du Maroc 지분 77.03%를 차지하는 등 프랑스의 모로코 기업금융 및 소매금융 부문의 지배력이 강해지고 있다. 또한, 스페인도 Santander 은행이 Attijariwafa 은행 지분 5.26%를 소유하고 있고, 미국 CitiBank Maghreb가 1967년 이래 100% 단독 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통신서비스

기간통신, ISDN(통합서비스디지털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며, Maroc Télécom의 유무선망 사용이 의무적이며, 국제 휴대전화 서비스 사업자는 모로코 내 법인 설립을 해야 한다.

모로코 최대 통신회사인 Maroc Télécom의 최대주주는 UAE의 Etisalat (51%)이며, France Telecom은 2015년 Orange(전 Meditel) 지분 9%를 추가 매입하며 총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모로코에서 세 번째로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한 Inwi은 쿠웨이트 통신사 Zain Al Ajial이 69%의 지분(Inwi 산하 계열 Wana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관광서비스

관광산업은 인광석 및 자동차 수출에 이은 큰 외화 수입원으로 연간 방문객 수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 1,200만 명을 넘어섰다. 국왕 (모하메드

6세) 주재 하에 2010년 11월 30일 선포한 ‘비전 2020’은 2020년까지 관광객 수를 현재의 두 배인 연간 2000만 명까지 늘려서 세계 20대 관광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8개 신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20만 침상을 신설해 연간 관광 수입 17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확정했으며, 특히 ‘지속 가능한’ 친환경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관광 육성 산업은 관광지의 다양성/관광의 질 향상/지속 가능한(친환경)관광이라는 3가지 실천 축을 기반으로 6가지 세부 실천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6가지 세부 실천계획은 Azur Plan(해안 연안 개발사업), 친환경 개발, 전통문화 유산 보존과 개발, 스포츠&레저, 의료관광, 숙박시설개발 (Biladi)이며, 국내 외에서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관광개발기금(FMDT)을 조성하는 한편, 유럽과 중동으로부터 외자를 유치하는 등 2020년까지 총 120억 달러를 관광산업개발에 투입하고 있다.

또한 공항, 도로, 철도 등 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항공사 취항이 늘어나는 등 관광산업 전후방 산업과 관련 서비스 분야의 활동이 촉진되어 궁극적으로 모로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외국 여행사는 모로코 지사 설립 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광 가이드 사업은 모로코 국적을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관광산업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이며, 2020-2021년 극심한 침체를 겪다 2021.9월 이후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외국관광객 입국이 재개됐다. 2022년 10월 누계기준 관광수익은 67억달러도 팬데믹 이전의 80% 가량을 회복했다.

유통서비스

모로코는 아직까지 ‘밀수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밀수가 성행하며 밀수품이 유통구조를 왜곡시켜왔다. 주로 알제리 국경과 스페인령인 세우타, 멜리야로 밀수품이 유통되며 이로 인해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 활동 위축 및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기피를 초래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이런 왜곡된 유통구조를 개혁하고 현대식 유통·물류 시스템을 도입·확산해 내수경기의 활성화와 고용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라와(Rawaj) 계획을 2007년 6월 발표하였다. 2020년까지 유통산업의 GDP 비중을 20%로 확대하고 4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로코 정부는 유통개발기금(Fonds pour le développement de la distribution) 1.2억 달러를 조성했으며, 중소 유통업체, 자영업자, 프랜차이즈업체 등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모로코 소매유통의 현대화(대형-체인) 비율은 중산층의 증가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대형유통업체의 영향력 역시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모로코 투자진흥청은 대형유통업체의 매출액이 국가 총생산(GDP)의 11%를 차지했고, 노동가능인구의 13.2%를 고용했다고 분석했다. 대형 유통 매장은 지속적인 발전 추세를 보이며 지난 5년간 연평균 15%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00년 14개이었던 종합 식품 매장 수는 2019년 기준 100여개의 대형마트(hypermarket)와 600개의 슈퍼마켓(supermarket)으로 늘어났다. 생필품 분야는 코로나로 인해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가전제품 등 그 외의 유통업 분야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유통산업은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배달문화가 자리잡아 배달전문기업 Glovo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모로코 ONA그룹계열 Marjane, Acima, INA 소속 Aswak Assalam, 프랑스 Carrefour가 투자한 Label'Vie(독일계 Metro합병), Atacadão Maroc 및 튀르키예 BIM 등이 체인 형 유통서비스 시장을 분할하고 있으며, 프랑스 Casino도 2019년 시장 진출하여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투자 장벽

1995년 제정된 '투자헌장(Investment Charter)'이 2011년 개정되면서 특정 분야를 규제하던 법들이 철폐되어 현재는 영역과 상관없이 1,8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행위는 단일 법령에 의해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다. 대표적 혜택으로는 각종 세금 경감, 등록절차 간소화, 법인세 및 토지 취득 수수료와 부가 가치세 면제, 프로젝트 소요 수입품에 대한 낮은 관세율 부과 등이 있다. 또한 개정안은 전자, 건설, 광업, 수출, 농업, 호텔, 수공업, 섬유, 석유 등 주요 분야에는 내외국인 투자자에게 동등하게 특별 혜택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 고용인원이 5,000명 이상이거나 2.35억 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특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로코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 국제 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IGA)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국제 협약을 따르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 운영 중인 16개 지역 투자센터(RICs: Regional Investment Centers)는 외국 기업에게 모로코 시장 진출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설립된 모로코 수출투자진흥공사(AMDIE: Agence Marocaine de Développement, des Investissements et des Exportations)는 투자유치를 위해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적극 개최하는 한편, 투자와 관련된 성과 지표를 분석,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간행물을 발간하면서 투자관련 법안 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모로코 수출투자진흥공사는 모든 투자자에게 전문적인 무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공적인 모로코 투자를 위해서는 언어, 문화, 종교, 제도적 차이를 고려하여 모로코의 문화와 역사를 잘 이해하고 언어(아랍어, 불어, 스페인어) 구사에 어려움이 없는 유능한 현지 파트너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2021년 10월 모로코 신정부 출범 이후 ‘투자헌장(Investment Charter)’ 개정을 추진 중으로, 2022년 11월 29일 모로코 의회에서 채택됐다. 1995년 기존 투자헌장이 도입된 후 27년만에 개정된 신규 투자헌장은 특히 지방정부가 직접 투자자에게 인센티브(소정의 한도 이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투자관련 여러 정부부처간 합동회의를 구성토록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투자와 관련된 행정처리 기한을 명시했다. 모로코 정부는 2035년까지 투자 비중을 민간 2/3, 공공 1/3으로 민간 투자 비중

을 대폭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왕 모하메드 6세는 재외 모로코인들의 모국 투자유치를 촉구했으며, 2023년 프랑스 파리에서 모로코 투자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에너지, 수자원, 철도, 운송, 광업, 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모로코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해당 사업 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 보험 및 제약업 등 일부 분야에는 특수 규정 및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분야로는 환경, 문화서비스, 수도·전기 공급, 사설교육, 전문 서비스 등이 있다. 문화서비스 분야에서는 국가에 따라 다른 대우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설교육의 경우 취학전 사설 교육, 유아원, 초등학교 과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 대해 고용허가 취득조건부로 허용하고 있다. 전문 서비스(회계사, 건축사, 법륜서비스, 건축서비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의사, 기타 의료업, 제약업, 운송업, 필름 배급, 수산업, 은행업, 보험업, 통신업, 항공 서비스업 등)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시장 접근이 부합할 경우, 조건부 허용하고 있으며, 거주, 자격요건, 내국인 동업자와 같은 주소, 양자협약에 의해 인증할 경우만 허용된다.

외국인 고용 제한

자국인 고용 창출을 위하여 외국계 기업이 외국인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의 외국법인 취업을 위한 비자 취득은 해당 외국법인이 300인 이상의 모로코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있거나, 또는 취업대상자가 보유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모로코 인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로코 노동청(OPPPT)이 인정할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 및 처분

농경지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과 매각대금 해외 송금은

자유롭다. 외국인의 농경지 소유가 제한되어 있으나 임차는 허용되고 있으며, 1970년대 프랑스인들로부터 몰수하여 국유화한 농업용지의 장기임대 공개 입찰에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

모로코 현지진출을 위해서는 단독(100% 지분 소유)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 파트너와 합작법인을 설립할 것인지를 정하게 된다. 또는 국내 모기업의 지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

(1) 현지법인

(1-1) 유한회사 (SARL)

최소 1인에서 최대 50인의 주주와 1만 달러 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모로코에서 가장 흔한 회사 형태이다. 법인세는 설립 후 5년간 면제되며 법인세율은 35%이다.

(1-2) 주식회사 (Société Anonyme)

최소 5인 이상의 주주와 최소납입자본금(상장사는 3,000,000디르함, 비상장사는 300,000디르함)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 액면가는 최소 50디르함(상장사 최소 10디르함)이다. 큰 규모의 장기적인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할 때 가장 유용한 형태의 회사로 법인세율은 35%가 부과된다.

(1-3) 합자회사 (Société en Commandite)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재산 출자에 한정된 역할을 수행하는 유한책임사원과 경영을 담당하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단순합자회사와 상장합자회사로 구분된다.

(2)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설립이 가장 용이한 형태로서 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한국 본사의 위임장만으로 사무소 설립이 가능하며, 본사 직원을 파견하거나 현지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모회사의 명의로 회계를 사용하여 어떠한 계약 체결도 할 수 없으며, 모로코 내에서 영리활동이 금지되고 시장조사, 홍보, 판매 대리인 관리 등 비영리 활동만 수행할 수 있다.

(3) 프로젝트 수행목적의 한시적 연락사무소

정부발주 입찰에의 참가 또는 수주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형태로서 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한국본사의 설립위임장과 해당 프로젝트의 모로코 발주기관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4) 해외지사

외국법인의 모로코 현지 지점인 해외지사는 모로코 법에 따른 내국인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외국법인으로 취급되며 영리활동이 제한된다. 지사 설립은 일반적으로 한시적인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상업 활동이 없는 경우에 적합한 진출 유형이다. 모로코 현지에서 정상적인 영리활동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조세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현지법인 설립이 보다 적합하다.

노무

모로코의 노무관련 법규와 관행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피고용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형식으로 발전해왔다. 모로코는 지난 2004년 6월 7일 기존 노동법을 보완한 신 노동법이 공포되었다. 노동계약과 관련한 개별 분쟁은 사회재판소(Tribunaux Sociaux)에서 관장한다.

모로코에서 고용은 정규직(CDI, 상호계약이 파기될 때까지 고용), 계약직(CDD, 계약기간에 한해 고용, 계약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임시직(한시적으로 고용)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정규직과 계약직의 경우 고용주가 횡령, 배임, 무단결근 등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고용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고용할 수 없다.

고용 계약서는 고용주, 피고용인 모두 배석한 가운데 작성해야 하며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각각 한 부씩 소지해야한다. 고용 형태, 임금, 근로 조건이 명시

되어야 하며 피고용인의 서명이 있어야 유효하다. 모든 고용주는 사회보장당국(CNSS)에 가입하여 임금 지급 대상자 리스트에 등록하고, 급여, 고용주세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CNSS 신고기록이 노사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자국인 고용 창출을 위해 외국계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의 외국법인 취업을 위한 비자 취득은 해당 외국법인이 300명 이상의 모로코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있거나, 또는 취업 대상자가 보유한 기술의 보유 인력이 모로코에 없다는 사실을 모로코 노동청이 인정할 경우에만 취업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 시 정규직원은 누진제에 따라 산정되는 해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근무기간에 따라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해고의 어려움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크며 이는 생산성 증대 및 투자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조합도 모로코 노동자연합(UMT), 모로코 노동연맹(UGTM) 등 전국적으로 4개가 존재하며 사회적인 영향력도 상당한 편이다.

경쟁 정책

모로코는 경쟁법을 통하여 자유로운 가격결정, 진입장벽 해소, 투명성, 공정한 경쟁 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민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쟁위원회를 설치하여 카르텔, 우월적 지위남용 등 반경쟁 행위와 동종 업종 기업 간 인수·합병 허가 등에 관해 총리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로 지정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격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 정부는 밀가루, 설탕, 석유 등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식수, 전기, 대중교통 등 기초 서비스,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담배 등 독점상품 등에 대해서는 가격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모로코의 전자상거래 발달은 3개의 메이저 중개사 Le CMI, Maroc Télécommerce, CNDP가 바탕이 됐다. 모로코 전자뱅킹센터(CMI, Centre monétique interbancaire)는 웹 사이트들과 전자결제 멤버십 계약을 맺어 고객들이 제품 구매에 있어 Visa, Master Card를 이용한 결제를 승인하는 역할을 하며, 2001년 모로코 메이저 은행인 Attijariwafa Bank가 설립한 Maroc Télécommerce는 전자상거래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모로코 및 국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보안기술을 이용한 인터넷 상거래를 제공함과 동시에 현지 주요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어 고객들과 기업들에게 국제 기준에 맞는 온라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로코 국가 개인정보보호 통제 및 보호 위원회(CNDP)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설된 기관으로 통칭 국가 개인정보 관리 위원회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09-08법안의 27번 조항을 근거로 창설됐다. 해당 기관은 총리 소속 기관이며 위 법안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원들의 불만사항 접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CNDP는 09-08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해 이를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 해외이전은 원칙적으로 CNDP가 허용한 국가로만 가능하며, 허가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는 상대측이 명백한 동의를 표했거나, 사생활, 공공이익 등의 보호가 필요할 때 가능하다.

모로코에는 이미 온라인 전자결제서비스, ASP, 전자상거래 관련 컨설팅과 관련한 선진 기업들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Oracle, Cisco, Microsoft 등 미국계 기업은 물론 세계 최대 ISP인 UUNET, France Telecom, British Telecom 등 유럽계 기업도 진출해 있다.

14년간 모로코 전자지불시스템은 PSP(online payment service provider)가 독점했다. 2014년 초 새로운 전자지불시스템 PayZone, VPS(Vantage Payment Systems)이 등장했고 AmanPay, Fast Payment가 뒤이어 출시됐다. 새로운 전자지불시스템의 등장은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발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로코 전자뱅킹센터(CMI)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모로코 전자상거래는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성장해 2019년 대비 판매량이 32% 늘었으며, 온라인 카드결제량 또한 2020년 대비 48.4% 상승했다.

급격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모로코는 자금조달부족으로 인해 전자상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의 2% 수준으로 타 아프리카 국가(4~10%)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기타 장벽

모로코는 세계경제포럼(WEF) 2019년 보고서에 의하면 전년(2018)보다 7단계 상승한 52위를 기록하였으며, 창업(43위), 건축인허가(16위), 투자보호 분야에서는 37위를 차지하며,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반면, 재산권 등록(81위), 자금 조달(119위), 통관 환경(58위), 기업청산(73위), 계약이행(60위) 분야에서는 개선해야 할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다.

모로코는 유럽연합(EU)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상품 대금의 계약과 지불이 유로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과의 거래에서도 상당수 바이어들이 유로화 결제를 선호해 왔다.

모로코와 한국 간에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90일까지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개선 실적

모로코 정부는 다자간 및 양자 협정체결을 확대하면서 규제완화, 정책투명성 제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친 비즈니스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모로코는 농업, 광업, 수산업 등 1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자동차, 항공, 제조업 등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4-2020 제1차 산업가속화계획(Plan d'Accélération Industrielle I)을 추진한데 이어

2021-25년간 제2차 산업가속화계획(Plan d'Accélération Industrielle II)을 적극 시행 중에 있다. 또한, 2021-23년 산업활성화 정책(Plan de Relance Industrielle 2021-23)의 일환으로 2023년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비한 자국 산업 탈탄소화 및 그린에너지로의 전환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2021년 7월 모로코 의회에서 탄소세 도입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세제개혁 기본법안이 통과되었다. 다만, 탄소세의 구체적 도입 시기, 세금의 성격 및 과세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후 세제 개혁 논의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모로코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2020년 8월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공공 지출 확대(전년대비 6% 증가), 130억 달러 상당의 경기부양책 발표, 일부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평균 5%) 등을 시행하였다.

더불어 모바일 간편 결제 및 전자거래의 확대로 금융서비스 개선, 유통 구조개선,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EU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철폐로 승용차, 냉장고 등 품목에 따라 EU산 특혜관세율과 최혜국 관세율 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지역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더욱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경공업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한국산 제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으며, 소비재 및 중간재 시장은 튀르키예의 중저가 제품 유입으로 인해 가격경쟁이 치열하여 한국산 제품의 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모로코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중산층 소비시장을 고려하여 고가의 선진국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 제품의 시장 개척 가능성은 아직 긍정적이다.



바레인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개관

일반 사항

공식국명	바레인 왕국(The Kingdom of Bahrain)
수도	마나마(Manama)
면적	778.4km ² (서울의 약 1.3배)
인구	약150만명 *이 중 바레인 국적자는 71만명(약 47%)
언어	아랍어(공용어), 영어(통용)
종교	이슬람교(70.3%), 기독교(14.5%), 힌두교(9.8%) 불교(2.5%) 등
건국일	1971.8.15 영국으로부터 독립, 2002.2.14 바레인 왕국으로 국명 개칭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국가원수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
입법부	양원제 80의석 (상원 40명, 하원 40명), 임기 4년 제6대 국회 2022.12월 출범 예정
기후	고온, 습한 사막성 기후
시차	한국이 바레인보다 6시간 빠름 (한국시각 오후 7시가 현지시각 오후 1시)
화폐단위	바레인디나르(Bahrain Dinar, BHD), 1USD=0.376BD(고정환율)

한-바레인 관계

수교일자	1976년 4월 17일
공관현황	우리측 : 2011년 주바레인대사관 재개설 바레인 : 주중국대사관에서 겸임 (주중국대사관 : 한-바레인 정무, 바레인경제개발청(EDB) 서울사무소 : 한-바레인 경제)
수출입현황 (2021년)	수출 : 1.9억 달러 수입 : 6.7억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건설수주실적(누적)	56건(57억 달러)
주요진출기업현황 (2022.9월)	영진공사,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일렉트릭, LGCNS, 삼성STP, GSENC, LSCNS, SM Powertech
양국 주요협정 체결	22.4 외교안보연구소(IFANS)-바레인 외교전략에너지연구원 (DERASAT)간 협력 MOU 21.9 한-바레인 방산분야 협력 MOU 21.8 한-바레인 국회간 협력 MOU 19.6 한-바레인 국방 당국간 MOU 18.3 한-바레인 보건부간 MOU 17.9 한-바레인 통신부간 MOU 15.9 한-바레인 공동위 설립 MOU 13.8 바레인 '도시보안 지휘통제센터' 구축 MOU 13.8 경제통상/기술훈련협력협정 12.5 이종과세방지협정 및 상공회의소 협력약정 87.3 문화협정 84.5 통상증진 및 경제기술협력협정

경제 개황

바레인은 면적 778.4km²의 작은 국가이지만 걸프협력이사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의 회원국이자 이슬람 금융의 허브로서 역내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형태는 입헌군주제이며 1999년부터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 국왕이 바레인을 통치하고 있다. 2021년 6월 기준 바레인의 인구는 약 150만 명이며(외국인이 약 53%를 차지), 2021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25,837달러(EIU)이다. 바레인은 자유경제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외국인에 한해 주류 판매가 허락되는 등 이웃 아랍 국가에 비해 비교적 개방적이다.

바레인의 화석연료 자원매장량은 적지만, 석유산업의 비중이 GDP의 17.4% (2021년 기준)로 적지 않고 국제유가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기에 바레인 정부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경제다각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비석유부문의 확대 추세가 지속된 가운데, 대외무역수지 개선,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사업은 바레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바레인은 2018년 4월 서쪽 해안 Khalij Al-Bahrain 유역 2,000 평방킬로미터 지역에서 신규 유전과 가스전 발견(가스 매장량: 10-20조 입방피트, 석유 매장량: 최소 800억 배럴의 셰일오일 추정)을 발표하였다.

바레인은 현재 바레인내 유전에서 일산 약 45,000배럴과 사우디와 공동 운영 중인 Abu Safa 유전(일산 약 30만 배럴)에서 원유를 생산중이다.

바레인은 2022년 11월 非 재래(unconventional)적인 형태의 신규 천연가스 층 2곳(Al-Juba 및 Al-Jawf)을 발견하였다며, 동 가스층이 현재 생산 중인 가스전 하부 위치에 있는바, 매장량 및 생산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향후 실효성 검사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하였다.

바레인은 2008년 공공분야 경쟁력 강화 및 민영화 정책을 골자로 한 국가 경제 중장기 국가발전계획 “바레인 경제비전 2030(Bahrain Economic Vision 2030)”을 발표하고 교육, 노동, 비즈니스, 연수/훈련 등의 분야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민 고용증대정책(Bahrainization)을 통해 자국민 실업률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바레인 정부는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 및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동의 금융 허브라는 명성에 걸맞게 금융업이 잘 발달되어있다. 현재 두바이 및 카타르 등 이웃 국가와의 경쟁에서 차별성을 두기 위해 바레인 정부는 ▲관광 ▲정보통신기술 ▲의료 ▲교육 ▲비즈니스 ▲금융 서비스 6개 부문의 경제 클러스터 확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바레인 정부는 2016년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3억 1,200만 달러 규모의 제1기 자유무역지구 ‘Investment Gateway Bahrain’이 출범(9월)하였으며,

‘경제비전 2030’ 이행을 위해 매년 정부포럼 등 다양한 경제개발 토론회 및 투자 유치 포럼 개최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바레인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일환으로 2017년 9월 100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2월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였다. 바레인은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 계기, △2060 탄소 중립 목표, △2035 탈소배출량 30% 감소,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2035 맹그로브 지역 4배 확대, △숲 조성 2배 확대를 비롯하여, 탄소포집(CCUS)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기로 발표하였다.

바레인은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 회복과 만성적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2021.10월 경제회복계획(2022-2026) 5대 목표를 발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①노동시장개혁, ②전략산업 및 인프라 부문 300억불 투자, ③6대 산업 활성화 전략(▲석유·가스, ▲관광, ▲물류, ▲산업·인프라, ▲금융, ▲통신·ICT·디지털경제), ④규제개혁 패키지, ⑤재정안정화 정책 등 이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대두된 일부지역 치안문제, 시아파와 수니파간의 갈등으로 인한 무력시위, 이란과의 갈등 등은 여전히 국가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가 재정 악화에 따른 공공재 가격인상, 관세 인상, 각종 보조금 폐지 (▲휘발유가격 60퍼센트 인상, ▲담배·주류 관세 인상, ▲수도·전기보조금 폐지) 등을 비롯하여, 2019년부터 표준세율 5%의 부가가치세(VAT)를 도입하였고, 2022년부터는 10%로 상향하였으며,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기본세율 10% 적용대상, ▲영세율(0%) 적용대상, ▲면제 대상, ▲VAT 적용 비해당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적용하고 있다.

VAT 구분	대상 분야
기본세율 (10%)	▲통신 서비스, ▲의류, ▲숙박업소 및 식당, ▲차량
영세율(0%)	▲보건의료, ▲교육, ▲기초 식료품
부가세 면제	▲특정 금융서비스, ▲부동산 매매 및 임차
부가세 비해당	▲정부기관 행위(여권 및 비자 갱신 등),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일방적 수여 행위

한국과의 관계

외교관계

한국과 바레인은 1976년 4월 17일에 수교하였다. 한국은 1976년 6월 28일에 주바레인대사관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1999년 3월 20일에 대사관을 폐쇄하면서 대사관 업무를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에서 겸임하였다. 그 후 2011년에 주바레인대사관을 재개설하였다.

한편, 바레인 측은 베이징 주재 바레인대사관에서 한-바레인 외교관계를 관할하고 있으며, 2017년 7월 바레인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서울사무소가 개소되어 한-바레인 경제관계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과 바레인의 교역관계

한국과 바레인 양국 간 교역은 상호보완적 구조의 수출입 거래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국은 바레인에 자동차, 철강,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건설광산기계, 합성수지 등을 수출하고 석유제품, 알루미늄, 질소비료 등을 수입하고 있다. 한국이 바레인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90% 이상이 석유제품, 알루미늄 등이다.

2022년 9월 기준 대 바레인 업종별 투자현황(누적)

(건, 천달러)

업종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총계	57	17	283,365	160,14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9	2	205,224	98,354
금융 및 보험업	2	2	45,000	45,000
제조업	8	3	5,183	1,206
건설업	16	5	1,444	83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2	393	39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1	1,137	133
도매 및 소매업	2	1	26	26
운수 및 창고업	3	0	263	0

업 종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1	1	24,696	13,937
기타	1	0	0	0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KOEXIM

○ 한국의 對 바레인 수출입규모(2013~2022.9월)

(단위: 천달러)

년도	수출	수입	교역수지
2022.1~9월	121,432	784,904	△663,472
2021년	185,231	673,762	△488,531
2020년	381,660	419,215	△37,555
2019년	288,148	513,918	△225,770
2018년	193,412	562,955	△369,543
2017년	289,756	393,886	△104,130
2016년	179,725	248,213	△68,488
2015년	186,802	498,739	△311,937
2014년	275,226	615,508	△340,282
2013년	233,977	598,647	△364,670

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바레인은 2003년 1월 GCC 관세동맹의 일원으로서 관세부과 시스템을 도입했다. 바레인은 428개의 물품(주로 식료품 및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그 외에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술과 담배는 제외). 또한 원칙적으로 원자재 수입이나, 생산에 사용될 반제품들, 혹은 재수출될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각각 125%, 110% 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국제유가하락에 따른 정부 재정적자를 극복할 방안으로 2016년 2월 동 품목들에 대한 관세를 각각 225%, 200%로 인상하였다.

무관세	428개의 품목(주로 식료품과 의약품)
5% 수입관세	428개 외의 모든 품목(술, 담배 제외)
200% 수입관세	담배
225% 수입관세	술

바레인은 GCC 내에서 생산된 모든 물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GCC 내에서 부가가치가 40% 이상 추가된 상품은 국내생산품으로 인정하여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한다. GCC국가들은 GCC 역내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공동으로 같은 관세를 부과하며, 해당 물품이 최초로 수입되는 GCC 국가에서만 통관절차를 밟게 하고 그 후 다른 GCC 국가로 이동될시 세관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single-point of entry 제도를 운영 중이다.

수입 시 필요한 세관 서류

수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입세관 신고서(Import Customs Declaration Form; CDF)
- 화물인도 지시서
- 상업 송장(영어 혹은 아랍어) 3부
- 포장 명세서(중량, 물품 분류 등) 2부
- 원산지 증명서(수출국 상공회의소에서 발행된 아랍어 혹은 영어본)
- 보험증명서(해당사항이 있을시)
- 선하 증권(B/L) 원본
- 관련 기관의 수입 승인/허가서 (제한된 물품일 경우)
- 은행지급 명세서 혹은 은행 영수증
- 통계관세 신고(statistical customs declaration): 만일 상품의 최종 목적지가 최초 진입국이 아닌 다른 GCC 국가 중 하나일 경우, GCC 국가 내에 출입국을 표시하는 통계관세 신고를 작성해야 한다.

통관 절차상의 장벽

수입자가 세관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관세 납부, 통관담당자에게 수입 시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해당하는 하역료 지불, 수입품목 검열, 세관통과 등의 통관 수순을 거치게 된다. 2003년 GCC 관세동맹 발효에 따라 수입 물품이 GCC 역내 최초로 진입하는 국가에서 관세를 지불하게 되고, 그 이후로 GCC 내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첫 국가에서 지불한 관세지불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국가들로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바레인은 OFOQ(아랍어로 수평선을 의미)라는 온라인 세관시스템을 통해 비교적 통관절차가 용이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온라인 통관수속도 허용하고 있다.

수입금지 및 규제

다음과 같은 품목들은 바레인에 수입이 금지된다.

- 재활용 타이어
- 석면 또는 석면을 포함한 제품
- 야생 상아, 상아로 만든 장식품
- 살아있는 돼지
- 마약류
- 저작권 위반 소프트웨어 및 음란물
- 야생동물
- 양식진주
- 무선조정 모형비행기
- 염화메틸(methyl chloride)등과 같은 보건부에서 지정한 위험물질이 포함되어있는 장난감
- 시클람산염(cyclamates)이 포함된 음식이나 과자

다음과 같은 품목들은 수입이 제한되어 관련 부처의 승인이 요구된다.

- 서커스 용 야생동물, 말 (지방정부농업부 승인 필요)
- 동물, 동물의 생산물, 육류, 생선, 과일, 야채, 나무 (지방정부농업부 승인 필요)
- 순수 알콜·이소프로판올, 철제 수갑류, 무기류 (내무부 승인 필요)
- 방사선조사식품 및 의약품 (보건부 승인 필요)
- 잡지, 출판물, 영화 등 저작권과 관련 있는 품목 (공보부 승인 필요)
- 통신, 라디오, TV 전파 수신 장비(통신 규제청 승인 필요)

그 외 식품의 경우, 시클람산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제조자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들은 개별 연구소가 있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수입해야 하며 이러한 제품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한 개 이상의 GCC 국가로부터 승인되어야 한다. 육류에 대해서는 수출국으로부터 안전증명서와 수출국 소재 이슬람센터에서 발행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되었음을 증명하는 할랄 증명서가 요구된다.

표준, 검사, labelling 장벽

바레인은 다른 GCC국가들과 함께 지역 내 통일 규격을 제정하기 위한 걸프국가 표준화 기구(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Organization for GCC countries)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바레인내 대부분의 표준은 걸프 표준화 및 국제적 표준을 동시에 따르고 있으며, 걸프 표준이 존재하는 한 바레인은 새로운 표준을 만들지 않는다. 또한, 바레인 당국이 제정하는 표준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 하에 만들어지고 있다.

라벨링 부문에서 바레인은 GCC 라벨링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식품의 경우 품목, 브랜드 이름, 제조일자, 유효기간, 생산지, 제조사 이름과 주소, 용량, 원료

등을 표기해야 한다. 라벨링은 아랍어로만 표기하거나 아랍어와 영어를 같이 표기해야 한다. 특히, 돼지고기가 포함된 식품은 반드시 라벨에 돼지고기 포함 사실을 표기해야 하며, 돼지고기가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라벨에 표기하지 않을시 해당 제품은 압수되며 일정기간 수입이 금지된다.

환경관련 규제

바레인은 2011년 보건부의 규정에 따라 139가지의 화학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모든 종류의 폐기물, 방사선 물질, 무기, 유독성 물질, 석면(asbestos)과 석면부산물의 수입, 제조 및 산업용도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바레인은 2002년 투명하고 제도화된 정부조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새로운 정부조달법을 시행했다. 2003년 바레인 입찰청이 설립되어 BD10,000 이상 모든 정부 입찰과 구입을 관리하고 있으며, BD10,000 미만의 입찰의 경우 각각의 정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BD1,000,000 이상의 입찰 건에 대해서는 입찰청이 다양한 경로로 입찰공고를 한다.

입찰이 공고되면, 관심 있는 업체들은 입찰서류(tender document)와 입찰제출증(Bid Submission Form; TB02)을 구비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관련 서류는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수요일 오후 1시 30분 까지 접수받는다. 접수된 서류들은 입찰청, 프로젝트 담당 부처 대표, 입찰 참여업체, 계약업체 등 관련 인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동시에 개봉하며, 입찰서류 개봉의 결과는 즉시 입찰 가격 리스트에 기록되고, 입찰청 게시판 및 웹사이트에도 공개된다. 이러한 입찰 서류 공개 행사는 매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입찰 서류 심사가 끝나면, 관련 담당부처에서 기술과 금융 심사를 거쳐 주요 신문과 입찰청 홈페이지 등에 최종 낙찰 업체가 발표되며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

바레인은 1955년 상표권 및 특허 관련 산업재산권법을 제정했다. 지식재산권은 산업통상부의 대외무역 및 산업재산국(Foreign Trade & Industrial Property Directorate)에서 맡고 있다. 바레인의 대외무역 및 산업재산국은 걸프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재산 사무소 중 하나이며, 국제적 인지도 또한 높다. 바레인은 1997년부터 저작권법 위반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비디오, 오디오, 소프트웨어 등을 상업적으로 복사 및 배포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관련 국제기구 및 조약 가입현황

바레인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국제기구 및 조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1995)
- WIPO Convention(1995)
- Berne Convention(1997)
- Paris Convention(1997)
- Madrid Protocol(2005)
- Nice Agreement(2005)
- Patent Law Treaty(2005)
- WIPO Copyright Treaty(2005)
-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2005)
- Rome Convention(2006)
- Brussel Convention(2007)
- Patent Cooperation Treaty(2007)
- Trademark Law Treat(2007)
- Budapest Treaty(2012)

서비스 장벽

중동지역의 보험관련 허브로서 바레인의 위치를 강화하고 보험 산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바레인 중앙은행은 보험회사의 소유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과거에는 보험회사 설립 시 51% 바레인인 지분이 요구되었던 것과 달리, 2006년 이후부터는 보험회사 지분의 100%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투자 장벽

투자여건·환경

바레인 정부는 외국투자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자유주의 노선을 취하며 외국 투자기들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힘쓰고 있다. 바레인 내에서는 영어가 널리 통용되며, 오랫동안 중동 지역 무역통상의 중심지로서 개방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사업 및 투자가 용이한 환경을 제공한다. 바레인은 GCC국가들 중 미국과 최초로 FTA를 체결(2006년 8월)한 국가이기도 하며, 미국의 제5함대가 주둔해있는 미국의 주요 역내 동맹국이다. 바레인은 역내 가장 큰 시장인 사우디 동부에 인접해 있으며, 25km의 연륙교인 King Fahd Causeway를 통해 사우디와 연결되어 있다. 2014년 6월 바레인과 사우디는 급증하는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국을 잇는 총 40억 달러 규모의 제2의 연륙교(King Hamad Causeway)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제2연륙교 건설 프로젝트는 제1연륙교와 나란히 건설예정으로 25km(2km : 육지/23km : 해상) 길이, 25m 폭의 철도(복선) 및 도로(왕복 4차선) 건설을 추진 중이다.

바레인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2019년 10월 전세계 19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에서 정부의 투자주도형 경제개발 정책에 따른 △온라인 건축허가 시스템(Benayat), △부동산 거래절차 간소화, △파산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규제개혁 시행으로 2018년도 순위 대비 19계단 상승한 43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2022년 7월 해외거주자 네트워크 사이트인 인터네이션(InterNations)에서 전 세계 5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바레인은 외국인이 일하기 좋은 나라에 15위로 선정되었다. 바레인은 △일과 삶의 균형, △원격근무, △업무 문화, △자기개발, △근무조건 등을 반영한 조사에서 전체 평균 15위를 기록하였다.

바레인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금액은 2017년 14.2억불, 2018년 15.2억불, 2019년 9.4억불, 2020년 10.2억불, 2021년 17.7억불을 기록하였다.

세제상 특징

세제 관련법은 바레인기업과 외국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외국 투자가들도 현지 기업과 동일한 법규에 따라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6~2017 국가경쟁력평가”에 따르면 바레인은 세계에서 4번째로 경쟁력 있는 세금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GCC국가들 중 가장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

- 바레인은 가스와 석유관련 회사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소득세도 없다.
- 바레인은 자본이익(capital gain), 배당금(dividends) 등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인지세(stamp duty): 부동산매매 또는 부동산에 의해 발생하는 이윤과 관련한 서류업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BD 70,000까지는 부동산 매각 혹은 매입액의 1.5%, BD 70,001에서 BD 120,000까지는 2%, BD 120,000 초과 시는 3%가 부과된다.
- 지방세(municipal tax): 부동산(사무실, 주택 등) 임차료에는 7~10%의 지방세가 부과되며, 임차인과 임대주 중 지방세를 어느 쪽이 부담할지를 임대차 계약에 명시한다.
- 사회보장제: 연금 및 의료 보장, 실직보장을 위해 바레인 정부는 월급의 일정 비율을 사회보장제로 납부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 바레인인 고용 시, 고용인이 12%, 피고용인이 7% 부담.

- 외국인 고용 시, 고용인이 3%, 피고용인이 1% 부담.
- 훈련부담금(Training Levy): 50인 이상 사업장 중 피고용인에게 훈련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바레인 정부는 월급의 일정비율을 훈련세로 부과한다(바레인인: 1%, 외국인: 3%).
- 외국인 노동자세 : 외국인 노동자세는 회사가 외국인 고용 시, 한 명 당 매달 BD10(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BD5)의 기여금을 노동시장 규제 기관(LMRA: Labour Market Regulation Authority)에 지불하도록 한 것으로, 2008년 처음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현지노동자 고용을 장려하며, Tamkeen이라는 정부산하기관에서 현지 노동자에게 직업훈련을 시킬 목적으로 시행한다.
- 상업등기(CR)비용 : 기본 등기세는 연간 133달러(50 바레인 디나르)이며, 추가적으로 266달러(100 바레인디나르)를 지불하면 여타 상업활동 유형을 3개까지 추가 가능하고, 3개를 초과하는 상업활동 유형은 1개 추가할 때마다 266달러(100 바레인디나르)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바레인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정은 2013년 4월 26일 발효되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양국 과세당국은 상대국에 자국 탈세혐의자에 대한 금융 및 과세자료 요청이 가능해졌으며, 양국 기업들이 상대국에 진출할 경우 이중과세가 방지되어 세금부담이 완화되었다.

-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에 10%, 이자에 5%, 사용료에 10%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배당소득 제한 세율은 5%이다.
- 양국은 상대국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하기로 합의했다.

바레인 국제투자지구 현황

바레인은 제조업 및 수출기업 유치를 위해 2006년 바레인 국제투자지구(Bahrain International Investment Park)를 설립, 바레인 북동부연안 히드

(Hidd) 지역에 위치한 투자지구에는 26개국 114개 기업이 입주(입주율 79%, 2019년 11월 기준)해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바레인을 포함한 GCC 국민은 바레인 내 모든 지역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2006년 이후부터는 비GCC 외국인도 고층의 상업용 혹은 주거용 부동산 소유가 가능해졌지만 지역 및 목적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비GCC 외국인이 주거 및 상업용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Ahmed Al-Fateh(Juffair)
- Hoorā
- Bu Ghazal
- Seef
- Diplomatic Area (북쪽 마나마지역 포함)

비GCC 외국인이 주거용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Durrat Al Bahrain
- Dannat Hawar
- Riffa Views
- Villamar
- Amwaj Island
- Bahrain Financial Harbour
- Bahrain Bay
- Diyyar Al Muharraq
- Norana

Amwaj 섬 프로젝트 개발사인 Oasis Development Company는 Amwaj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특별 거주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

재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된 Durrat Al Bahrain은 600,000m² 면적의 부지에 총 4,00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 건설 프로젝트이며, 외국인들의 주거용 소유가 허가된다. 바레인 내 대부분의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택과, 빌딩, 아울렛, 아파트 등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레인은 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취득과 처분을 용의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주택 대출의 모기지(mortgage) 개념이 존재하나, 모기지 지불 불이행시 대출기관이나 타인이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는 없다.

바레인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법 개정을 실시하였다. 2015년 2월에 발효된 부동산개발법에 따르면 건축물 시공시 시공일과 완공예정일이 포함된 계획서를 사전 공지하여 완공예정일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하며, 위반시에는 최대 BD 10,000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바레인 정부는 새로 시행된 부동산개발법이 외국인 투자자의 바레인 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여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외국기업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마련하는 방법 중에는 정부로부터 임대하는 방법도 있다. 산업용 부지는 최대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임대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분야에 정부소유 부지개발을 위탁해왔다. 쿠웨이트 파이낸스 하우스(KFH)가 개발한 히드 산업공단(Hidd Industrial Park)이나 Tameer가 설립한 Bahrain Industrial Wharf 등이 대표적인 산업용 부지 개발 사업으로 꼽힌다.

지분 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 상의 제한 완화

2016년 5월 바레인 상원은 외국인의 100% 기업 지분 획득 승인, 외국기업(인) 활동 제한 분야 완화 등을 포함한 국왕의 칙령(Royal Decree No. 28, 2010년 10월)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2001 기업법(2001 Commercial Companies Law)을 일부 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동 기업법 개정에는 ▲외국기업(인) 지분 참여 확대(49%→100%), ▲파산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인수, ▲외국인(법인) 회사 설립 기준 완화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으며, 과거 외국기업

(인)의 100% 지분 획득이 제한되었던 아래 업종들에 대해 지분 참여 제한이 폐지되었다.

- 외국기업(인) 지분 참여 확대(49%→100%) : (해당업종) 숙박, 요식, 행정 서비스, 관광·레저, 예술, 보건, 사회복지, 정보통신기술, 제조, 채석·채굴, 과학·기술, 상수도 등

투자진출 제한분야

다음과 같은 분야는 바레인 내 자국민/외국인 모두 영업이 불가하다.

- 도박, 주류 제조, 담배 제조, 담배 자동판매기 수입, 마약제조, 무기제조
- 모든 종류의 폐기물 수입, 방사선 물질 저장·투기, 유독성 물질 수입, 석면(asbestos)과 석면부산물의 수입·제조, 금지된 화학약품 수입과 산업 용도로의 사용
- 제1종 우편 (바레인 우체국(Bahrain Post)이 독점)

다음과 같은 분야는 바레인 내국민과 바레인 기업에게만 영업이 허가된다.

- 어업
- 부기(book-keeping)와 회계서비스(회계감사 제외)
- 레이싱카 연료 수입, 수출, 판매
- 화물 통관

다음과 같은 분야는 바레인 포함 GCC 국민들과 GCC 기업에게만 영업이 허가 된다.

- 부동산 서비스업과 부지와 건물 임대 및 관리
- 언론사와 출판사, TV, 영화, 라디오 연극제작과 관리, 배포관련 업종
- 운수업, 해양 크루즈, 운전 연수, 오토바이 대여, 렌트카, 콜택시
- 석유관련 제품 공급(주유소 등), 가스분배
- 공공기관 행정지원 서비스
- 하지와 움라(이슬람 성지순례) 서비스
- 외국인 노동력 공급
- 상업홍신소(commercial agency)

임대요금

◦ 상업용/공업용 부지 매입/건축가

상업용 부지	연간 \$3.90/m ²
산업용 건축시공 가격(격납고식 구조)	\$352/m ²
창고(격납고식 구조)	월 \$5-\$80/m ²

◦ 월평균 주거 임대료

방 2개 아파트	\$1,440
방 3개 빌라	\$1,920

◦ 사무실 월 임대료

구분	위치		
고급 사무실	World Trade Center	\$24/m ²	15%의 관리비 별도
	Financial Harbor	\$24/m ²	
	Seef	\$19/m ²	
	마나마 혹은 Diplomatic Area	\$19/m ²	

◦ 상가 임대료

평균(제공 미터 당)	월 \$42.55
Seef Mall(제공 미터 당)	월 \$53.2

그 외 전기, 가스, 수도요금

◦ 주거용: 내국인(1주택 소유)

종류	사용량	고정비	Unit 가격
전기	1-3,000 kWh	\$2.67	\$0.008
	3,001 - 5,000 kWh		\$0.024
	5,001 kWh 초과		\$0.043
수도	1-60 m ³	\$2.67	\$0.067
	61-100 m ³		\$0.214
	100m ³ 초과		\$0.534

◦ 주거용 내국인(2주택 소유 이상), 외국인 등

종류	사용량	고정비	Unit 가격
전기	1kWh	\$2.67	\$0.077
수도	1m ³	\$2.67	\$2.004

◦ 상업용

종류	사용량	고정비	Unit 가격
전기	1-5,000 kWh	\$2.67	\$0.043
	5,001 kWh 초과		\$0.077
수도	1m ³	\$2.67	\$2.004

경쟁 정책

살만 왕세자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레인 경제개발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Board)는 민영화 정책과 경쟁 기조를 바탕으로, 교육, 노동, 비즈니스, 연수/훈련 등의 분야 개혁을 위한 Economic Vision 2030을 발표하였다. 준정부 기관들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체제를 바꾸기 위해 바레인 정부는 민간분야와의 경쟁을 통한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2002년 국왕 칙령에 의거하여 관광, 정보통신, 교통, 전기, 수도, 항구와 공항 서비스, 석유 및 가스, 우편 서비스 등의 민영화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기타 장벽

노동관련

(1) 자국인화 정책(Bahrainization)

바레인에서는 기업이 전체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바레인인(人)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10명 미만의 회사일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는 Bahrainization 쿼터가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될 경우에도 금융 및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10% 내외이다.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25~30%의 자국민 의무고용률이 적용된다.

2016년 5월 바레인 노동시장규제기관(LMRA: Labour Market Regulation Authority)은 자국민화 정책에 명시된 쿼터를 초과하여 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하기를 원하는 고용주에게 초과 고용 외국인 노동자 1명당 BD 200(2년 노동비자 발급 기준)의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상기 부담금은 기존 외국인 고용 등록세(BD 200, 2년 노동비자 발급 기준)와 매달 납부하는 외국인 노동자세(BD 10)와는 별개이다.

- 주요산업 자국민화 고정비율: 석유관련 산업(20~30%), 화학약품 제조(10~30%), 알루미늄(15~30%), 건설(0~8%), 호텔관광(0~25%), 부동산(10~40%), 금융(30~50%)

(2) 최저임금제도

2014년 8월, 숙박업계 종사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BD 300로 보장(단, 바레인 국적자에 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다른 분야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 임금(BD 300) 보장 법안은 2014년 1월 하원의 투표만 거친 채 계류 중인 상태이다. 법적으로 명문화 되지는 않았지만, 바레인은 학사학위 이상은 BD 400, 그 이하는 BD 300의 최저임금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민간 및 공공분야)의 경우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최소 BD 150를 최저 임금으로 지불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다.

(3) 노동법의 주요내용

- (법정 근무시간) 주당 48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마단 기간 중에는 주당 36시간, 하루 6시간)
- (야간 근무시간) 야간 근무시간은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이다.
 - * 단, 여성 고용자에게는 야간 근무를 지시할 수 없다.
- (초과근무) 주간 초과근무 수당은 시간당 임금의 1.25배, 야간 초과 근무

수당은 1.5배를 지급하며 이 경우에도 하루 총 근무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근무중 휴식) 최소 30분의 중간 휴식 없이 연속으로 6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다.
- (연차)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매달 2.5일씩,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매년 3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 (병가)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15일간은 임금 100%가 지불되고, 이후 20일간은 임금 50%가 지불되며, 추가적으로 무급 병가를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출산휴가) 60일간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무급 출산휴가를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4) 신규 노동시장 정책(new labour market reform)

바레인은 2022년 10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련 등록/허가를 유연화하고 권리 보호를 위해 신규 노동시장 정책을 발표하였다.

- 신규 노동시장 정책에는 △고용등록센터 설립/온라인 등록 포탈 구축, △노동시장규제청(LMRA) 노사분쟁 중재, △사업장 안전 확대 조치 등이 있다.

바레인은 신규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부작용이 자주 제기되었던 Flexi Permit* 제도를 폐지하고, 근로자의 신상정보/직종이 명기(QR 코드 탑재)된 고용허가증(work permit card)을 출시하였다.

* 바레인 노동시장규제청(LMRA)이 2017.7월부터 비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2년(갱신기)간 고용주 보증없이 당지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용한 제도

- 바레인 노동시장규제청(LMRA)은 고용허가증 운용이 불법취업 알선과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동시에 최적의 고용환경을 제공하여 바레인 민간부문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바레인 금융시장 현황 및 특성

(1) 중동의 금융허브

바레인 중앙은행(CBB)에 의하면 2021년 6월 기준 바레인에는 362개의 은행과 금융 기관이 있다. 금융 분야는 전체 GDP의 17.7%를 차지하며, 금융종사자는 13,700여명이며, 해외 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해외 거래처에 대출해주는 금융방식인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카타르와 두바이도 금융 분야를 발전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고급 금융 전문인력과 걸프에서 가장 발달된 금융관리 및 조정 제도, 사우디아와의 인접성 등으로 인해 여전히 바레인은 걸프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지키고 있다.

(2)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

ICD-Thomson Reuters의 IFDI(Islamic Finance Development Indicator)에 따라 2021년 이슬람 금융시장에서 세계 4위(조사대상 135개국)에 오른 바레인은 이슬람은행의 밀집도가 높은 나라이며, 총 14개의 이슬람은행이 있다. 바레인은 중동지역에서 2위를 차지하며 중동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샤리아에 부합하는 이슬람금융의 기준을 제시하는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AAOIFI)와 같은 세계적인 이슬람금융 관리·감독기관이 바레인에 자리 잡고 있다. 바레인은 샤리아 기준과 점점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을 어떻게 조합시킬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성장하는 보험 산업

최근 보험에 대한 관심 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른 각종 보험 수요가 증가하여 자동차, 건강 보험 등 일반 보험 시장이 성장 중이며, 이슬람 보험인 Takaful도 영업 분야를 확장해 가고 있다. 보험 시장 종사자는 2019년 기준 약 1,700여명

(이중 2/3는 바레인인)으로 금융업 종사자의 약 12%를 차지한다. 총 150여개의 보험관련 기관이 바레인에서 영업중이다.

(4) 바레인의 금융기관

바레인 중앙은행(CBB: Central Bank of Bahrain)은 바레인 금융 분야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06년 바레인 통화기구가 바레인 중앙은행으로 바뀌면서 걸프지역의 주요 금융센터의 입지를 이어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바레인 중앙은행은 특별히 이슬람금융 분야의 규제와 감독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이며 바레인을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 그 외에도 종속 보험회사 (captive insurance), 지불능력 (solvency), 리스크 매니지먼트, 금융범죄 (financial crime), 이슬람보험 등에 대한 개혁을 논의 중이다.

바레인 중앙은행은 국제적 회계 기준을 도입·적용하여 바레인 내 금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바레인은 자본금이나 이윤, 배당금 등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외환관리 제한이 전혀 없으며, 100% 송금을 보장한다. 환율도 미화에 고정되어있다(BD 1=\$2.6596).

바레인 증권거래소는 과거 100% 정부소유로 바레인 중앙은행에 의해 감독을 받았으나, 국제적 지역적 투자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0년 민영화 되었다. 이후 2011년에는 Bahrain Bourse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바레인 증권거래소는 상장 기업에게 Bahrain Financial Harbour에 있는 바레인 증권거래소 건물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규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 9월 기준 43개 회사가 상장되어 있다.

◉ 바레인의 주요 금융기관

금융기관 종류	이름
소액거래 은행	AUB (Ahli United Bank)-바레인에서 제일 큰 은행이며, 중동에서 제일 큰 은행중 하나
	BBK (Bank of Bahrain and Kuwait)
	NBB (National Bank of Bahrain)

금융기관 종류	이름
도매 은행	ABC (Arab Banking Corporation)
	GIB (Gulf International Bank)
이슬람 은행	Al Baraka Islamic Bank
	Bahrain Islamic Bank
	Ithmaar Bank
	Gulf Finance House
이슬람 금융조정 기관	AAIOFI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Islamic Finance Market
	Islamic International Rating Agency
보험사	Bahrain National Insurance
	Takaful International
	AXA Insurance (Gulf)

디지털 무역 장벽

바레인 개인정보보호법 재정

바레인은 디지털 상의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해 2018.7월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Law) 재정(2019.8월 발효)하고, 개인정보보호청(Personal Data Protection Authority)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는 통치기본법(Basic Law of Governance) 제20조에 의거, 내각에서 세율을 결정하고 왕령에 의거 확정된다. 관세 적용 품목의 분류는 HS(2002)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HS 8단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존 관세율은 주로 5% 또는 12%로 개발도상국 평균(15~20%) 대비 다소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재정 악화 등의 요인으로 사우디 정부는 2020년 6월 20일부로 철강, 전력기자재, 석유 화학제품, 가전제품 등 주요 수입품 1,390여개의 관세를 0.5~15%p 인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세율은 기존 0~20%에서 6~25% 수준으로 인상했다. 추가적으로 2022년 6월 12일부로 농수산물, 화학제품, 기계류 등 수입품 99여개의 관세를 0.5~15%p 인상하며 기존 0~20%에서 5.5~25% 수준으로 인상했다. 2020년 관세 인상이 정부재정 확충 목적이었다면 2022년 관세 인상은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 명목에 기인하여 사우디 정부의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부가세 및 관세 인상은 GCC 협정에 따른 회원국 협의사안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주변국과의 협의 없이 단독 결정하였다.

기준에는 사우디 국내 제조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시멘트, 계란, 윤활유, 철망, 카펫, 펜스 및 철조망, 철관 및 황산 등 유치산업 보호품목은 20%의 관세를 적용해 왔으나, 2022년 관세 인상을 통해 품목별 차별화가 발생하였다. 한다.

쌀, 설탕 등의 기본 식품, 의약품을 포함한 생활필수품과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기자재 수입은 대부분 무관세이며, 일부 품목에는 특별세를 부과하고 있다. 담배, 전자담배와 에너지 음료에는 100%, 탄산음료와 과당음료에는 50%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걸프지역 국가나 아랍국가에서 40% 이상의 가치가 부가된 상품의 경우, 국산품으로 인정하여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관세행정의 미비 등으로 최저관세, 관세부과 가격산정, 관세환급에서 불합리한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래 관세는 송장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 가격 기준 또는 국내 제조업자와의 상의 등을 통해 최저수입 가격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세관원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2018년 도입된 부가세에 따라 기존에는 수입의 경우 5%의 부가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2020년 7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부가세를 15%로 인상하였고, 수입 부가세도 15%가 적용된다.

계절관세

사우디 관세청은 수확기에 자국산 농산물의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비수확기 수입관세를 면제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농산물에 계절관세를 도입하고 있다. 사우디는 사막 환경으로 인해 농작물 재배가 힘든 특성을 지니고 있어 대부분의 농산품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계절관세 적용품목이 많은 편은 아니다. 2020년 12월부터 수확기 관세율은 15%이며 총 9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계절관세 적용 품목 및 기간

적용 품목	HS 코드	적용기간	기간	수확기 관세율	비수확기 관세율
머스크 멜론	0807 19 10	5월 1일 ~ 8월 31일	4개월	15%	면세
수박	0807 11	5월 1일 ~ 8월 31일	4개월	15%	면세
오크라	0709 99 20	6월 1일 ~ 8월 31일	3개월	15%	면세

적용 품목	HS 코드	적용기간	기간	수확기 관세율	비수확기 관세율
애호박	0709 99 10	6월 1일 ~ 7월 31일	2개월	15%	면세
오이 (피클용 오이 포함)	0707	5월 1일 ~ 8월 31일	4개월	15%	면세
당근, 순무	0706 10	2월 1일 ~ 5월 31일	4개월	15%	면세
식용양파 (파종용 제외)	0703 10 11	6월 1일 ~ 10월 31일	5개월	15%	면세
토마토	0702	5월 1일 ~ 8월 31일	4개월	15%	면세
감자 (파종용 제외)	0701 90	1월 1일 ~ 5월 31일	5개월	15%	면세

자료: 사우디 관세청, <https://www.customs.gov.sa/en/agricultural-calendar>

수입부과금

수입 시에는 관세 및 통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 별도 부담금은 없었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 부가세(5%)를 부과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 요율을 상승하여 부가세(15%)를 부과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사우디아라비아는 통관 시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세계은행이 발간한 Doing Business 2021에 따르면 수출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48시간, 수입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104시간으로 기존 대비 많이 단축되었으나 여전히 시간 및 비용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총 190개 국가 중 86위를 기록했으며, 이 외에도 정부의 통관 정책 및 규정 변경사항을 공지하지 않는 경우 등 변수가 많아 수출 시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SABER(사우디 수입안전관리 프로그램) 등록이 필수이다. SABER는 기존 사우디 표준청(SASO: Saudi Arabia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 수입인증을 대신하는 제도로써, 2019년 1월 1일부터 제품안전 프로그램인 SALEEM(Saudi Product Safety Program)의 구현을 위한 온라인 인증 시스템으로 도입했다. (<https://jeem1.saso.gov.sa/>)

SABER 등록은 사우디 현지기업만 진행할 수 있으며, 현지기업이 SABER 플랫폼에서 수출국 인증 대행기관을 지정하면 수출업자는 지정된 대형 기관과 SABER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SABER 등록이 완료되면 제품인증서(PCoC)와 선적인증서(SCoC)가 발급된다. 사소한 통관문제로 인해 수출국(한국)이나 제3국으로 반송(Back Ship)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사소한 사안이라도 유의해야 한다. 통관 관련 법령을 위반해 불공정 수출업자로 등록된 경우 1년 이상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중고자동차는 수입통제품목에 포함해 엄격한 통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10년부터 사우디는 5년 이상이 경과된 중고승용차, 버스, 경트럭(Light Truck) 및 10년 이상 대형트럭(Heavy Truck)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2022년 5월부터는 대형 트럭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여 5년 이상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 통관 시 필요서류

- 원산지증명서 3부(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 INVOICE(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 BILL OF LADING
- 보험증명서(CIF의 경우)
- SABER 등록 인증서(제품인증서(PCoC) 및 선적인증서(SCoC))
- 유전자변형식품 시 GE마크 필히 부착
- 위생검사서(SFDA 인증서 / 의약품, 식품인 경우에만 해당)

통관 시 주류(알코올), 돈육 및 그 성분의 함유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므로 식품, 의약품을 수출할 경우 동 성분의 포함 여부 및 가능비율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손목시계, 액세서리 등은 샘플이라도 과세 통관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양이 많은 샘플의 경우 통관이 어렵다. 방사선동위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사우디 내에서 관련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업만 취급을 할 수 있으므로, 통관 시 취급 및 운송이 가능한 사우디 기업을 선정해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최근 우리 제품 수출 시 사우디 관세청에서 제품의 원산지 각인과 포장지의 원산지 내역이 상이해 통관이 금지된 사례가 있었다. 즉, 제품 자체는 중국 등 제3국의 원산지가 표시돼 있으나 포장에는 “made in Korea”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따라서 원산지 확인, 제조비율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수입 규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는 수량제한 등 일부국가에서 볼 수 있는 수입규제 사례나 비관세장벽은 거의 없다. 그러나 특정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거나 관계부처의 승인 또는 검열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수입금지: 주류, 돼지고기, 음란물, 마약 등 非할랄 제품 92개 품목
- 관련부처 특별승인 요구: 식물의 종자, 비료, 무기, 보안용품 등
- 수입 검열: 미디어제품

2009년 6월부터 사우디 정부는 환경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중고차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세부 내역을 보면 5년 이상 승용차, 버스 및 경트럭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대형트럭의 경우 10년 이상 중고차의 수입을 금지했다. 아울러 모든 차량은 침수, 화재, 충돌, 전복 등의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며, 택시 혹은 경찰차로 사용되었던 차량도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2010년 8월 사우디 교통부는 학생보호차원에서 제조한지 10년 이상의 노후 스쿨버스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2022년 5월에는 대형트럭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여 타 기종과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사우디는 2011년 6월 110~127V의 전압만을 사용하는 제품과 기기에 대한 수입과 자국 내 제조를 2012년 5월 22일부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우디 정부가 향후 25년에 걸쳐 자국에서 공급하는 전압을 국제기준인 230V, 400V로 통일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추가적으로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직접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상품인증제도 개요

사우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소비자 보호, 종교 및 공공도덕 유지, 환경보호 및 비정상적인 거래방지를 위해 국내외 제품 여부에 상관없이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품질표준을 정하고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사우디 내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표준은 국가기관인 SASO가 제정하고 관리한다. 2021년 기준 약 25,000명 이상이 제품 수입 및 유통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사우디 정부는 2005년 WTO 가입과 함께 무역에 관한 WTO TBT협약을 준수해 기술적인 표준을 정비했으며 관련 변경사항을 지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사우디 표준규정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제도의 운용은 수입상품의 경우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국내 상품의 경우 자치부(Ministry of Municipalities), 환경수자원농업부(Ministry of Environment, Water and Agriculture)와 상무부 등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 사우디 내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을 제도화하면서 수출국 입장에서는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입상품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상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유통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특별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국가적 특수 사정을 고려해 WTO에서도 합의한 사항이다.

2013년 11월 한국기술표준원과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간에 6개 걸프국가 및 예멘에서 국내 인증기관 발급인증서를 통용할 수 있게 하는 상호인정 프로그램(MRP)의 체결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이행계획(Action Plan)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국제 유가 및 경기 변동, 코로나19 등으로 보류되어 왔다. 최근 사우디측

에서 MRP 추진을 위한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상호인정협정) 체결 요청을 바탕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한편, SASO는 2019년부터 제품안전 프로그램 SALEEM(Saudi Product Safety Program) 구현을 위한 SABER 온라인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SABER는 기존의 사우디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프로그램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품의 품질 및 적합성 검사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출 전 SABER를 통한 제품인증서(PCoC) 및 선적인증서(SCoC) 발급은 필수이고 제품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이다. 선적인증서는 매 선적건마다 발급해야 한다. 수입업자가 SABER에서 국내 인증 대행기관을 지정해야하며, 국내 수출업자는 인증 대행기관을 통해 SABER 시스템에 필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對사우디 수출인증제도: 강제 적합성 인증제도

사우디아라비아 상무부는 수입상품을 비롯해 국내 유통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에 대해 사우디 규격과 표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반입 전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입상품의 사우디 표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검사 및 인증과 관련된 제도가 수출품인증제도(강제적합성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 for the Goods Exported to the Kingdom of Saudi Arabia)이다.

(1) 제도 개요

종전까지는 수출인증제도를 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ICCP)으로 명명하고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인증서 (CoC: International Certification of Conformity)를 요구했다. ICCP는 1995년 11월 SASO와 상무부에서 도입해 최초 76개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 적용했다. 1998년 8월에는 적용품목을 단순화해 식품(별도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완구, 오락장비를 추가해 총 66개 카테고리로 정비했으며, 다시 2001년 8월에는 자동차부품, 가스조리기구, 휴대폰 등을 추가하면서 총 69개 품목 카테고리 ICCP를 운영해왔다. ICCP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Intertek Testing Services)에서 인증서를 관장하였다.

그러나 2004년 8월에 상공부 시행령 제6386조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해 적용품목을 의료기구, 의료용품, 식품, 군 관련 제품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국제인증제도(ICCP)를 폐지하고, 대신 새로운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를 도입했으며, 주무부서의 경우에도 SASO에서 상무부로 상위 이관되어 현재 운영 중이다.

사우디 정부는 2006년 5월 새로운 규정에 의거 사우디로 수입되는 제품은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CoC)를 첨부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KATS)은 SASO와 협의를 거쳐 2008년 6월 KATS-SASO MRP(상호인정 프로그램)를 체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의 KOLAS 등록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수용기로 했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2008년 12월 적합성 인증서 발급기관 지정 내역을 사우디에 통보하였다. 당시 MRP 체결로 인해 양국의 기술장벽(TBT)이 낮아지고, 무역이 원활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우디의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검사제도인 국제인증제도(ICCP)는 외국 수출 업체들에게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을 주고, 국가 간 교역 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사우디 측은 동 인증제도가 수입규제 측면보다는 국민의 건강이나 국가의 안전 보호 등과 관련되고 모든 국가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제도로써 수입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 인증 대상 품목(Regulated Products)

2004년 8월 시행령 개정 이후 현재는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소비재 상품의 경우에도 표본 또는 데모용, 사우디 내 비매품인 경우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기자재, 임시 수입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증서가 면제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은 선적 전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좋다. FOB 가격으로 3,0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현지 하역 후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세관 담당자에 따라 하역 후 인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의료장비,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은 사우디 식약청(SFDA)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해야 사우디로 수출이 가능하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 제3국 교차인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우디 식약청 등록은 외국기업이 직접 수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현지 대리인(AR, Authorized Representative)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 화장품의 경우 식약청 내 e-Cosma 시스템을 통해 등록을 진행해야만 한다.

환경관련 규제

사우디는 환경관련 규제가 심하지 않은 편이었으나 1991년 걸프전 이후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최근 사우디 담수공사(SWCC)와 사우디 전력공사(SEC)는 프로젝트 추진시 각종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사우디 에너지부(MOE)는 수반가스(Associated Gas) 및 폐열의 회수·산업단지 공급, 석유광물 생산시 환경보호 기준 준수, 무연휘발유 및 저유황경유의 생산·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 주무기관은 기상환경보호청으로서, 1989년 제정된 환경보호기준에 의거하여, 산업시설 계획 또는 운영 시 기상환경보호청이 대기와 물에 대한 보호지침을 부과하고 있다.

2021년 1월 Saudi Green Initiative Forum(SGI)에서 왕세자가 ‘환경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면서 관련 제도 수립 및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2030년까지 매년 278백만 톤 탄소 배출량 감축 및 206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면서 환경 관련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동 선언과 연계한 탈탄소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 식목사업 시작 등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나 환경규제 측면에서는 분야별로 검토 단계에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사우디 정부는 농업부문을 장려하기 위해 농산품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WTO 가입 시 협의에 따라 2016년부터 정부보조금을 폐지하였다. 2006년 농업보조금 규모는 9억 7,700만 달러 규모였으나, 2015년까지 10년간 매년 규모를 축소하여 2015년에 8억 5,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 2016년부터 폐지하였다. 한편 식량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부터 잠정 시행해오던 수입쌀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을 쌀값 안정을 감안하여 2009년 12월부터 중단하였다.

2016년 사우디 비전 2030 발표 이후 정부는 전기, 수도, 석유, 식품 분야의 보조금을 삭감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의 시장원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차량용 가솔린 가격은 유럽 평균 가솔린 가격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량용 가솔린의 경우 정부 재정 악화로 인해 2021년 이후 지속 상승세였으나, 국제유가 회복으로 정부 재정이 회복되면서 물가 상승률 증가 여파 완화 및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2021년 7월 이후 가격을 동결하고 있다.

2006년 농업보조금 규모는 977백만 달러 규모였으나, 2015년까지 10년간 매년 규모를 축소하여 2015년에 858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 2016년부터 폐지하였다.

한편, 식량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부터 잠정 시행해오던 수입쌀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을 최근 쌀값 안정을 감안하여 2009년 12월부터 중단하였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 제약

사우디는 2005년 12월 WTO가입 시 1년 이내에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협상 개시를 약속하였다. 2007년 12월 사우디는 GPA위원회 옵저버가 되었

으나, 이후 적극적으로 가입의사를 표명하기보다는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사우디 정부에서 2005년 WTO 가입 당시와 현재 GPA 의정서가 다르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조항이 완화되었고 당시 가입을 약속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가입한 바 있다. 이런 연유로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우디 정부의 입장이 지난 2019년 개정 발효된 정부 조달법(Government Procurement Law)이 GPA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사우디 정부는 왕령(Royal Decree)에 따라 정부조달을 실시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우디 국방 분야 계약은 이 법령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안별로 협상한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방위산업, 통신, 항공 및 전력 등 주요 조달 계약(약 1.3억 달러 이상)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일정비율의 계약액 보상투자(Off-set) 프로그램 의무이행을 시행하고 있다. 보상투자 규모는 계약금액 중 technical value의 25~35%(방산물자 및 관련 서비스는 통상 35%)이며, 이때 건설비, 인건비 및 사우디산 구매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보상투자 방법은 전체 Off-set 의무량의 25%는 현금 출자하고 통상 사우디 현지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우디 정부는 이러한 Off-set Program의 장려를 위해 합작 기업 추천, 산업개발기금(SIDF) 장기 융자, 수입물품 관세 혜택,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사우디는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따라 정부조달 물품의 경우 자국산 구입 가격을 동일 외국산에 비해 10% 비싸게 구매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가 승인하는 플랜트 설비 등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원청자가 공사의 30%를 의무적으로 현지기업에 하청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용 자재, 장비의 직수입을 금지하여 자국에서 생산된 조달이 가능한 공사용 자재 및 장비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수송, 보험, 금융, 토지 및 건물임대와 Catering에 대해서 현지 용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항목별 세부예산내역 등 정부조달 관련 정보공개가 미흡해 외국 업체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으며, 입찰 공고 기간이 짧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외국 업체의 입찰참여 제한

사우디의 정부조달은 전문 입찰 주관기관이 없고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필요시 입찰을 공고하고 있다. 조달 방법은 기본적으로 입찰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특정 분야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입찰을 하지 않고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 회사의 정부입찰 직접 참가는 제한되어 있어 상무투자부에 현지회사로 등록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우디 에이전트를 통해야만 응찰이 가능하다.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 정부는 물론 Saudi Aramco(국영석유회사), SABIC(석유화학회사), SEC(전력청), STC(사우디 텔레콤) 등 공공기관의 대규모 프로젝트 입찰 시 까다로운 사전기술심사(PQ)를 하며 입찰 참가대상을 발주처에 등록된 Vendor 또는 Contractor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업체선정 시 응찰가격을 제외한 평가기준으로는 사우디 의무고용정책(Saudization), 사우디 재투자, 외국인 고용비율 등과 참가업체의 국제적 신인도, 재정상태, 독특한 기술력, 동종 프로젝트 이행실적 등이 있다.

특히, ARAMCO(국영석유회사)는 현지 제조업 육성을 위해 자국산 기자재 조달 비율 강화 정책인 IKTVA(In-Kingdom Total Value Add Program)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 2021년까지 자국산 제품 구매 비율 60% 달성하였으며, 비율을 70%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동 프로그램은 ARAMCO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된다. 또한 ARAMCO 프로젝트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사우디인 의무고용(Saudization), 사우디산 제품 조달 비율, 프로젝트 총액 대비 R&D 투자 비율 등의 IKTVA 이행이 필수이다. ARAMCO의 자회사인 SABIC은 NUSANED 프로그램을 적용 중인데, 민간 부문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하여 2030년까지 GDP기여도를 각각 65% 및 35%로 늘려 제품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현지화를 추진 중이다. 그 외에도 K.A.Care, SEC, Ma'aden 등 국영기업 위주로 현지화 프로그램이 도입 및 시행 중에 있고 이러한 추세는 정부의 현지화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그 도입률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외국기업은 2024년 1월 1일부터 사우디 정부 및 기관, 정부의 자금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 하려면 반드시 지역본부(ROHQ : Regional Operating Head Quater)를 사우디 내에 설립해야하는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책을 발표한 2021년에만 44개 다국적 대기업이 RHQ 라이선스를 발급받았으며 후속 시행령 발표가 기대되는 2023년부터 사우디로의 투자진출 또는 투자이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https://www.sabic.com/en/nusaned>

※ <https://english.alarabiya.net/News/gulf/2021/10/26/Global-companies-to-announce-regional-headquarters-in-Riyadh-Saudi-minister>

※ https://resources.envoyglobal.com/blog/new-law-in-saudi-arabia-to-require-regional-headquarters-for-international-companies?utm_source=Mondaq&utm_medium=syndication&utm_campaign=LinkedIn-integration

※ <https://www.aljazeera.com/economy/2021/10/27/saudi-arabias-rivalry-with-dubai-for-regional-hqs-heats-up>

※ https://www.zawya.com/saudi-arabia/en/projects/story/Saudi_Arabia_licenses_44_companies_to_open_regional_headquarters_in_Riyadh-TR20211027nL1N2RN0GZX1/

자국산 기초 군수물자 구매

2010년 2월 사우디 국방부는 자국 군수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자국기업에게 무기를 제외한 기초 군수물자 입찰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외국기업만 참여하던 것을 자국기업에게도 입찰참여를 개방하는 조치로서 입찰참여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파이프 등 약 15,000개에 이른다. 사우디 국방부는 현지화 비중을 2030년까지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

※ https://www.vision2030.gov.sa/media/qysdyqxl/nidlp_eng.pdf

※ <https://www.iktva.sa/wp-content/uploads/2016/04/IKTVA-FORUM-DR-RAMADY.pdf>

※ <https://www.healyconsultants.com/saudi-arabia-company-registration/iktva/>

사우디아라비아는 1971년 7월, 파리에서 개정된 1886년의 문학과 예술작품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베른협정과, 1883년의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정에 조인했으며 2004년 3월 이래로 두 협정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특허권 보호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회원국의 개인 및 회사까지 확대하는데 동의했다.

사우디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목적을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규정에 적합하게 모든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TRIPS 협정 제1조에 의거해 사우디는 자체 법규와 절차에 따라 동 협정을 이행하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은 상표법(Trademarks Law), 특허법(The Law on Patents), 저작권법(Copyright Law)이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담당 정부부처는 다음과 같다.

- 특허법(The Law on Patents): KACST (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
- 저작권법(Copyright Law): 문화정보부
- 상표법(Trademarks Law): 상공투자부

* 상표권 신청 시 사우디 국민이 아닌 경우 반드시 사우디 에이전트를 통해서 신청해야 한다.

국제 지적재산권연맹(IIPA)는 2010년 2월 그간 사우디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 및 정책적 진전을 감안해 美무역대표부(USTR) 블랙 리스트에서 제외해 줄 것을 해당 기관에 요청했고, 2010년 USTR 사우디를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위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화, 음악 등의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비롯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인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지적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2011년 2월과 2012년 2월 IIPA는 사우디의 높은 지적재산권 침해율,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미미한 제재 등을 사유로 사우디를 블랙리스트로 재지정 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2019년부터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사업을 위해 총 3,800만 달러를 투자, 특허심사관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2023년까지 생태계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외국으로부터의 출원 증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jSpYWku5D0AhWPNpQKHZ0CAqoQFnoECAwQAQ&url=http%3A%2F%2Foverseas.mofa.go.kr%2Fsa-ko%2Fbrd%2Fm_11062%2Fdown.do%3Fbrd_id%3D4982%26seq%3D1337449%26data_tp%3DA%26file_seq%3D1&usg=AOvVaw38EXYc2_YTKeiTiUzfkTM5

서비스 장벽

사우디는 금융, 보험, 유통업 등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 개방정도가 미미하였으나 2005년 12월 WTO 가입과 함께 서비스 부문 개방을 약속했다.

보험 분야의 경우 2003년 10월 보험업조정통제법을 제정하여 외국 보험회사의 진출 및 직접 영업을 허용하고 상업적인 국내 보험회사(주식회사, 조합, 법인 또는 외국합작)의 설립을 허용하였다(외국인 지분 60%까지 허용).

금융 분야의 경우 사우디 은행법은 은행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상업은행의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 12월 WTO가입을 계기로 사우디 중앙은행(SAMA)은 외국계 은행에게 면허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2004년 2월 제정된 사우디 자본시장법은 외국인의 사우디 내 투자은행 및 중개회사의 설립이 가능토록 했으며, 합작기업의 외국인 자산보유한도를 60%까지로 제한했다. 중개회사의 최소자본은 13.3백만 달러로 규정하는 동시에 잘못된 정보의 배포 및 내부거래에 대한 벌칙도 규정했다.

2008년 8월에는 주식시장에서의 사우디 내 비거주자(GCC국가 국민 제외)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즉,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에게 사우디의 주식을 스왑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한적인 주식투자가 가능해졌다.

2014년 7월 각료회의에서 사우디 주식시장(타다울)을 제3국 외국인 투자자

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증권감독당국(CMA)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적격외국인투자자(QFI)의 사우디 주식시장 직접투자가 허용됐다. 외국인 투자자는 사우디 주식시장의 10% 보유만 허용 가능하며, 단일 QFI(전략적 투자자(SI) 제외)가 보유 가능한 주식은 단일 기업의 최대 49%이다. 2019년 10월 기준 사우디 내 QFI는 1,500명이 넘는다.

투자 장벽

사우디 정부는 1956년에 외국인투자법을 최초로 제정했으며, WTO 가입을 위해 2000년 4월 전면으로 개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 자본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이다. 개정안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국가산업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내 자본에 대한 모든 혜택을 부여할 것을 명시했다.

2000년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외국인투자자 인센티브, 보증 등에 있어서 내국민 대우
- 외국기업 단독 투자 시에도 보조금 성격의 개발기금 이용 가능
- 수익과 자본의 자유송금 보장
- 투자허가 절차의 간소화, 법인세 인하 등이 포함

또한, 2017년 2월에는 사우디 비전 2030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외국인의 100% 지분 보유가 가능토록 투자법을 개정했다.

외국인 100% 지분 보유 제한 업종은 오일, 가스, 방산, 보안 및 탐지, 메디나 및 메카 부동산 구입, 성지순례 여행업, 인력 사무소, 부동산 중개, 출판, 방송 및 오디오, 병원, 대중교통, 어업 등이다.

2017년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 외국인의 100% 지분 보유를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 투자자 또는 모기업이 사우디 또는 국제 증권거래소 상장

- 최근 2년 간 매출 1,866만 달러(7,000만 리얄) 이상
- 총 자산 2,666만 달러(1억 리얄) 이상
- 최근 1년 순이익 1,333만 달러(5,000만 리얄) 이상
- 자국 이외의 지역에 3개 이상 법인 또는 지사 보유
- 투자자 또는 모기업 종업원 10,000명 이상 등

이외에도 외국인투자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사우디 투자청(SAGIA)을 설립하고 투자 유치·승인·허가 기능 수행조직을 일원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투자법 개정 전 사우디 정부는 국가발전 계획에 부합하고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외국인투자를 허가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법 개정 이후 Negative List 제도를 도입해 투자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 투자를 개방했다.

WTO가입 후 사우디아라비아는 유통업종에 있어서 사우디 기업의 최대투자 지분 25%를 보유한 합작투자만을 허용하였으나, 2016년 5월에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책을 발표하면서 유통업(Trading 표기)에 조건부 100% 단독 외국인투자를 허용했다.

유통업에서 100% 외국인투자 허용을 위해 △초기 납입자본금은 최소 30백만 리얄(8백만 달러), △5년 내 최소 자본 기여액(투자액)은 2억 리얄(53.3백만 달러), △사우디 노동부에서 정한 사우디제이션(사우디인 의무고용)율에 따른 사우디인 채용 및 향후 5년 내 관리직에 사우디인 고용 계획 수립 및 실행, △연간 사우디인의 30% 교육 훈련 실시, △설립 5년 이내 3개 사항(제조-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30%를 현지 생산, R&D-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판매되는 총 판매액 중 최소 5%를 R&D 투자, 유통 및 물류 지역본부 설치-회사의 판매 및 애프터서비스의 지역본부 설립) 중 최소 하나로 사우디 내에서 부가가치 창출 등 실현하기 다소 어려운 전제조건을 규정하였다.

2017년 5월 9일 기준 사우디 외국인 투자청 라이선스 발급 부서에 따르면

5개의 글로벌 기업이 유통업(Trading 표기) 100% 외국인투자 라이선스를 획득 (유통업 분야의 100% 외국인투자기업 : 화이자, 애플, 3M, 삼성, 화웨이 등 5개사) 하였다. 추가적으로 5개의 신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총 10개의 글로벌 기업이 유통업 분야에서 100% 외국인투자 라이선스를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 정부 주도로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을 비롯한 물류지구 등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지 진출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높은 초기 자본금은 기업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존재해 왔으며 투자 인센티브 역시 현재는 크게 해당하는 바가 없어 보다 확장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투자금지분야

사우디 최고경제위원회(The Supreme Economic Council, SEC)는 2007년 3월, 원유생산부문, 군사부문, 수송부문, 이슬람교의 정서를 침해하는 부문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금지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업분야
 - 원유탐사, 시추 및 생산(국제 산업 분류코드에서 정하는 CPC5115+883 리스트의 광산 부문 관련 서비스 제외)
 - 군사장비, 장치, 유니폼 제조업
 - 민간 폭발물 제조업
- 서비스 분야
 - 군사 부문 음식납품(Catering)
 - 보안, 탐정 서비스
 - 메카 및 메디나(이슬람 성지) 지역 부동산 중개업
 - 성지순례(Hajj 및 Umrah) 관련 여행안내 서비스
 - 현지 직업 사무소를 포함한 직업채용 및 고용 서비스

- 인쇄출판업(관련 국제 분류 기준에서 정하는 일부 항목 제외)
- 전처리인쇄(88442), 인쇄기(88442), 그림 및 서예(84501), 사진(875), 라디오 및 TV 방송 스튜디오(96114), 해외 언론 사무실 및 특파원(962), 판촉 및 광고(871), 홍보(86506), 출판(8442), 보도 서비스(88442).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산, 판매 및 임대(88), 미디어 컨설턴트 및 연구(853), 타이핑 및 복사(87505 + 87904),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유통 서비스(96113)는 예외적으로 허용
- 국제 분류기준에서 정하는 일부 위탁업(국제 산업코드 621)
- 국제 분류에 따른 조산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준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일부(국제 산업코드 93191)
- 어업
- * 2007년 3월 25일부로 영화 비디오테이프 유통 서비스, 의약 소매 및 개인 약국업을 포함한 도소매 유통 서비스, 상업대리업, 통신서비스, 위성 송수신 서비스, 도시 간 열차 승객 수송 서비스 및 항공운송 서비스 분야가 금지 분야에서 해제되어 외국인 투자 허용
 - ※ <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86&commlItemSn=414>
- * 2018년 10월 23일부로 시청각 및 미디어 서비스, 육상 운송 서비스, 부동산중개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외국인 투자 허용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사우디는 그동안 보험, 금융, 통신서비스분야의 외국인투자지분은 50% 미만으로 제한하였으나, 2005년 사우디의 WTO협정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제한 조치를 완화하여 2010년 9월 보험업은 60%, 금융업 60%, 통신서비스업은 70%, 도소매업은 75%까지 외국인 투자지분율 상한을 확대했고, 2016년 도소매업에 대해 100% 외국인투자를 허용했다.

보험회사의 최소자본금은 1억 리얄(26.7백만 달러), 재보험회사의 경우 2억 리얄(53.3백만 달러)이며, 양 보험 업무를 모두 취급하는 경우 3억 리얄(80백만 달러)이다.

한편 모든 외국인 투자는 사우디 투자청(SAGIA) 산하 투자자지원센터(ISC: Investor Service Center)를 통해 SAGIA에 서류를 제출,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합작 투자 당사자는 동 기관에 출석하여 사업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합작 투자 심의에서 허가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사업 성격과 심의기관에 따라 다르나 약 4~6주가 소요되고 있다.

허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무투자부에 신설회사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확인서를 발급받는데, 합작당사자들은 허가서 발급 6개월 이내에 공장 설립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타당한 이유 없이 지체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허가서에 기재된 합작공장 설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와 함께 연장 신청서를 사우디 투자청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관련 서류는 영문 이외에 현지어인 아랍어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서류작성 등에 애로사항이 많으며, 사소한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에 허가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법인·지사 설립상의 제한

사우디아라비아에 투자 시 크게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으며 진출 희망 분야에 따라 투자허가 평가기준이 다르다. 사우디 투자청(Saudi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이 명시한 활동 분야는 △산업 △상업 △농업 △계약수주업 △부동산중개업 △전문서비스 △자문서비스 △외식산업 △경공업 이다.

(1) 법인

법인의 종류로는 생산법인, 판매법인, 서비스법인이 있으며, 2016년 개정된 사우디 신회사법(The New Companies Law)에서는 회사설립 형태를 총 5개로 구분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합명회사(Joint Stock Companies,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에 해당하며, 이하 편의상 주식회사로 표기),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합작회사(Joint Venture) 등 5개이다.

그 외 합작투자(Joint Venture), 유한합자회사(Partnerships limited by shares) 등의 형태로 투자를 하기도 한다. 상기 형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형태는 샤리아법(Shari'a Law)에 의거 외국인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주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투자진출을 한다.

(2) 지사(Branch)

외국 회사의 지사는 두 가지 형태로 진출이 가능한데 하나는 법인 형태의 지사이며, 다른 하나는 사우디 고객의 스폰서십 지사 형태이다.

법인 형태의 지사는 일반적인 투자법인 형태인 유한책임회사(LLC)와 유사하나 책임의 범위가 다르고, 단독으로만 진출이 가능하다. 즉 LLC가 주주별 지분비율 만큼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면, 지사의 경우는 해당 기업의 본사에서 무한 책임을 진다.

반면, 스폰서십 제도는 사우디 고객의 스폰서십 하에 별다른 등록 없이 활동하는 방식이나 합병은 아니지만 오랜 관행으로 광범위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스폰서 기업의 직원 형태로 취업해 사우디 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한국 기업의 지사는 대부분 이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이 방식의 경우 진출 시 사우디 투자청 승인 등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현지 계좌 개설, 거주증 발급 등 현지 활동 및 생활면에서 많은 제약 있다. 또한 스폰서와의 관계 악화 시 지사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외교부에 의해 승인된 합동증명서(Incorporation Certificate)와 회사정관(Article of Association)은 해당 회사 설립 국가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서 검증한 뒤, 공증 절차를 거쳐서 아랍어로 제출되어야 한다. 지사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역할이 국한되고 상업활동은 수행할 수 없으며, 모회사는 자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임시 지사는 최소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는 정부기관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될 수 있다.

(3) 연락사무소

사우디 회사법에 의거 법인 형태 이외의 외국 기업의 지사는 연락 사무소(Liaison Office) 및 기술 서비스 사무소(Technical and Scientific Services Office)만 허용되는데 그 활동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상사, 제조업 등 일반무역 관련 지사 설치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

(4) 법인설립 주요 절차 및 필요서류

- 투자허가 신청: 사우디 투자부(MISA)에 법인 설립 목적별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투자허가 서류제출: 회사정관, 사우디 투자 의결서, 한국 사업자등록증, 법인 대표자 임명 결의서 및 위임장
 - ※ 모든 서류는 한국 공인 기관의 영문 확인서, 상공회의소 확인서, 주한 사우디 대사관 인증 필요
- 법인등록 신청서 제출: 사우디 상무부에 투자허가증, 법인정관, 동일 상호 마등록 확인서, 자본금 납입 증명서 등
 - ※ 사우디 투자부 투자허가서 획득 이후 1개월 이내 신청 필요
- 법인등록증 발급: 사우디 관보(Official Gazette) 법인 설립 공고 필요
- 법인등록: 사무실 계약서, 법인장 및 파트너사(있을 시) 대표 신분증 등
 - ※ 상무부에 등록하며 등록수수료는 1,000~10,000사우디 리알, 5년마다 갱신, 투자 형태 및 자본금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책정)
- 사우디 상공회의소 등록: 회원 수수료: 1,000~10,000사우디 리알, 1년 갱신, 투자 형태 및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책정
- 노동부, 보험공단, 국세청 등록: 법인장 거주 허가증 및 노동비자 발급(노동부), 종업원 산재보험 가입(보험공단), 국세청 등록

외국인 진출 선호 형태

대부분의 외국 기업은 법인 형태로 진출할 때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형태를 선호하는 편이다. 지사 설립의 경우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설치가 용이한 스폰서십 지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 (최소자본금 약 130만 달러)이 크고, 유한책임회사에 비해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어 실제로 외국 기업이 주식회사로 진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산품 의무구매 등

사우디 정부의 조달물품 구매 시에는 국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는데, 국산품에 대해서는 동일 외국산에 비해 10% 높게 구매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가 승인하는 플랜트 설비 등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원청자가 공사의 30%를 의무적으로 현지 기업에 하청을 주도록 되어 있다. 공사용 자재, 장비의 직수입을 금지하고, 수송, 보험, 금융, 토지 및 건물 임대와 Catering에 대해서 현지 용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GCC국가 국민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생산하고 역내 부가가치가 40%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5%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해당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는 사택이나 피고용인의 주거 제공을 위한 것도 포함된다. 판매나 임대를 위한 투자목적으로 부동산(건물 및 건축을 위한 대지) 취득 시 대지 및 건축 모두를 합친 프로젝트 비용은 최소 3,000만 리얄(800만 달러)을 초과해야 하며,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을 실시해야 한다. 외국인은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으나, 비사우디 무슬림은 2년간 동 지역 부동산 임대 및 2년 주기 갱신이 가능하다.

또한, 투자신청 시 투자목적이 부동산 개발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사후에 이 사실이 발견될 경우 투자허가를 취소하고 취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부인되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 거주자가 개인 주거용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으며, 취득 금액의 하한선은 없으나 내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합작기업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이 가능하며 합작선과의 합작계약이 종료 또는 파기될 경우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여야 한다.

세제상 제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20%인데 이는 외국인 투자 자본에 대해서만 청구된다. 사우디에는 또한 자카트(Zakat)라고 불리는 종교세가 있는데 사우디 내국인에 한해서 순 수익의 2.5%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지만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우디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8년 1월부터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5%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 7월부터 세율을 15%로 인상하여 부과하기 시작했다.

사우디의 외국인 자영업자나 외국기업(합작기업 포함)에게 20%의 소득세(법인세)를 부과하지만 내국인에게는 Zakat라는 종교세 2.5%외에 다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계제도상 차이

사우디의 회계제도는 기본적으로 국제기준에 준거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의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과 달리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고, 은행을 제외한 유한회사는 그 주주에게 대출할 수 없다. 유한회사의 손실이 그 자본금의 75%를 초과할 경우 출자자회의를 개최해 회사의 해산여부를 협의해야 하는 등의 차이점이 있다.

경제정책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 추진

사우디 비전 2030은 사회·경제·국가경영의 목표를 설정한 중장기 국가운영 계획이다. 비전 2030 정책은 저유가 기조 지속에 대비하여 제도개혁, 경제전략 수립,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정책 로드맵과 세부 이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비전 2030 정책을 통해 기존 재정투입 위주의 개발정책을 탈피하고 비석유 분야 제조업 육성을 통한 Post-Oil 시대 新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 재정수입의 60% 이상을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사우디는 정부 재정 수입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의 재정 수입 중 非석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0%에서 2023년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3분기 말 기준 非석유부문의 비중은 30.2%로, 전년동기의 43.0% 대비 비중이 축소되었다. 이는 실제 수입은 유사한, 2021년 대비 2022년 평균 국제유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고기저가 지속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22년 3분기말 기준 석유부문의 수입은 전년동기 배기 167.2% 증가하여 정부재정 흑자전환에 크게 기여하였다. 실제 2022년 1분기는 6년만 첫 정부재정 흑자로,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보다 非석유부문 육성에 투자하고 있다.

※ <https://www.mof.gov.sa/en/Pages/default.aspx>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비전 2030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2018년 5% 세율의 부가세를 도입했으며, 2020년 7월부터 부가세가 15%로 인상되었다. 2019년 12월에는 사우디 증시(Tadawul)에 ARAMCO(국영석유기업) 지분 2%를 상장(IPO)하였으며, 추가 3%는 해외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도 예산 내역

2022년 사우디 정부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3.5% 감소한 2,547억 달러이며, 수입예산은 23.3% 증가한 2,787억 달러이다. 총 240억 달러 재정 흑자를 목표로 하였다. 전년과 동일하게 교육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493억 달러)이 편성되었으나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그 뒤를 국방(456억 달러), 의료 및 사회개발(368억 달러), 보안 및 행정(269억 달러) 등이 뒤따랐으며, 주요 분야 중 보안 및 행정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의 예산이 전년대비 삭감되었다.

이는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출이 컸던 2020~2021년을 극복하여 정부재정 흑자 전환을 위한 정부의 높은 의지를 보여주었다.

2022년 3분기 누적 기준 사우디 정부 재정수입은 2,533억 달러, 재정지출은

2,135억 달러를 기록하며, 39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0년 이후 인상된 부가세로 인한 세수 증가와 국제유가가 높은 가격을 유지함에 따른 석유부문에서의 수익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2022년 3분기 누적 기준 석유부문 수입은 총 1,768억 달러로 전체의 69.8%에 육박했다. 비석유부문은 76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의 30.2%를 기록했다.

○ 사우디아라비아 연도별 정부예산 현황

(단위: 억 미국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예산	증감(%)	예산	증감(%)	예산	증감(%)	예산	증감(%)
수입	2,600	8.9%	2,220	▲14.6%	2,260	1.9%	2,787	23.3%
지출	2,949	7.3%	2,719	▲7.8%	2,640	▲2.9%	2,547	▲3.5%
수지	▲349	▲3.0%	▲499	43.0%	▲380	▲24.6%	24	-

※ 자료원 : Ministry of Finance of Saudi Arabia, Arab News

<https://www.mof.gov.sa/en/Pages/default.aspx>

주: 2022년은 2021년 12월 정부예산 편성계획 기준

기타 장벽

디지털무역 장벽

사우디 통신정보기술위원회(CITC)는 2019년 정부 클라우드(Cloud)센터를 설립했다. 센터 설립 후 개인정보 취급 내부 지침을 만들었으며, 지침에 따르면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 금융정보, 의료정보, 범죄정보는 국외 이전이 제한된다.

사우디 정부 클라우드 센터의 개인정보 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분류된다.

○ 사우디 클라우드 센터 단계별 개인정보 분류

Level	Type	Examples
Level 1	Non-Sensi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ivate website hosted in the Colud - Information on one's family - Email activity outside one's professional activiyu
Level 2	Sensi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public financial information - Sensitive exchanges or correspondence
Level 3	Set as level 3 by custom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person's medical records - A person's criminal records

※ 자료원 :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COmission

2022년 3월, 사우디 데이터 보호 규제 기관인 SDAIA는 NDMO(National Data Management Office)와 협업 하에 개인 데이터 보호법(PDPL: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초안을 발행했다. 이는 왕국의 최초의 포괄적 데이터 보호법으로 개인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조직의 개인 데이터 수집, 처리, 공개 또는 보유를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법령은 2023년 3월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우디인 의무고용 정책(Saudization)

사우디인 의무고용제(Saudization)란 외국 인력의 급증에 따른 사우디 실업률 증가로 자국민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회사 내 고용자의 일정 비율을 사우디인으로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2021년 4분기 기준 사우디의 전체 실업률은 6.9%인 반면에 사우디인의 실업률은 11.0%로 약 1.6배에 해당한다. 과거 대비 개선되고 있으나, 사우디 정부는 이를 장기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사우디인 의무고용제 (Saudization)를 추진하고 있다. 직종에 따라 의무고용 비율은 상이하지만 최대 100%에 이르는 직종도 명시하는 등 상대적으로 임금이 비싸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우디 근로자들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우디 정부는 동 정책의 최초 도입 이후 점차 그 비율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6년 VISION 2030 발표와 함께 1차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이후 비정기적

으로 기업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의무고용 비율을 인상 적용하고 있다. 2020년 1월에는 기존 Yellow 등급을 폐지하며 자동적으로 해당 구간의 기업을 Red 등급으로 격하시켜 기업들의 불만이 있었던 바도 있다. Nitaqat이라고 불리는 사우디인 의무고용제에 의해 등급이 하위등급에 속할 경우, 신규 비자 신청이나 워크퍼밋 갱신 등에 제한이 있어 강제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내고 있다. 이후 2021년 5월에 Updated Nitaqat 발표를 통해 한 차례 더 강화를 하였으며, 더불어 최저임금을 기존 3,000리얄에서 4,000리얄로 인상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더욱 과중시켰다.

현재는 사우디인의 비율을 산업군, 기업규모에 따라 나누고 있으며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Platinum, High Green, Medium Green, Low Green, Red가 그것이며 최소 Medium Green 등급을 유지해야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무리가 없는데, 주요 산업 기준으로 약 20~40%에 달하는 사우디인 고용이 요구된다. Low Green이나 Red 등급의 기업은 신규 비자신청이 불가하여 인력충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더 높은 등급의 회사로 이직해도 제재할 수 없다. 또한, 2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대기업들은 'Saifi' 제도에 의거해 사우디인 학생들(17세 이상)에게 인턴십을 제공해야 한다. 인턴십은 4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월 최소 1,500리얄(400 달러)을 급여로 제공해야 한다.

2021년부터는 사무용품 및 귀금속 분야 사업장에 대한 사우디인 고용율을 70% 이상으로 하며, 엔지니어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20% 이상을 사우디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 및 카페의 경우 쇼핑몰에 입점한 영업장의 경우 각 40% 및 50%를 사우디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쇼핑몰에 입점하지 않은 일반 영업장은 각 20% 및 30%를 사우디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을 추가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직종에 대해 사우디인 고용률을 확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카테고리별 인센티브 및 제재 내역

구분	Platinum	High Green	Medium Green	Low Green	Red
신규 비자신청	가능	가능	가능	불가	불가
외국인근로자 직종변경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가
외국인근로자 워크퍼밋 갱신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가
외국인근로자 이전(이직)	가능	가능	가능	Low-Green 및 Red 등급에서의 이전만 가능	불가
기존근로자 Final Exit 전, 대체인력 위한 임시비자승인	가능	가능	특정 직종에서 동일 직종 근로자 채용할 경우만 가능	특정 직종에서 동일 직종 근로자 채용할 경우만 가능	불가

자료: <https://hrs.gov.sa/en/node> 및 자체정리

스폰서 제도

사우디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사우디 스폰서를 바탕으로 각종 법률행위(Visa 취득, 은행거래, 운전면허증, 이까마 취득) 및 각종 영업행위 등 현지 활동이 가능해 진출 기업의 부담이 크다. 스폰서십을 제공받는 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연간 일정 금액을 스폰서에게 지불해야 한다. 또한 스폰서와의 관계 악화 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현지 외국진출 기업 및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1년 8월에 발표한 Anti-Concealment Law(은폐방지 법)을 통해 스폰서 제도를 활용한 외국인의 현지 영업활동을 윤택행위로 명명하는 등 단속을 시행한 바도 있어 프로젝트 진출로 대규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우리 기업들은 특히 스폰서 관련 정책 및 정부 방침에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각종 불공정 관행 상존

정부공사의 경우 공사 계약 및 집행 시 국제 관행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사 대금 지급의 지연, 추가 공사경비 불인정 등은 관례화된 상태이며 발주처와의 법적분쟁 시 회교법 및 관행을 들어 외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전통 및 관습에 적합한 포장 필요

상품 포장지 또는 상자, 상품 설명서에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된 사진이나 그림 또는 비이슬람 종교 그림이 있으면 이를 검은색으로 덧칠한 이후 세관 통관을 허락하므로 별도의 포장지, 포장상자, 상품설명서를 제작·수출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

사우디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지 면허증을 신규발급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 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혈액형 및 시력 검사증(약 SR 100), 이 까마(Iqama, 거주증) 사본 및 원본, 여권 사본, 한국 운전면허증 사본 및 원본, 공식 번역 업체에서 영어와 아랍어로 번역한 한국 운전면허증 확인 서류(50 SR), 면허 신청서, 신청서에 첨부할 운전면허용 사진(여권 사진 권장),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판매하는 초록색 폴더 파일 등이 필요하다.

또한 운전면허 신청 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신청에 따라 1년-SAR 80 / 2년-SAR 160 / 5년-SAR 400 / 10년-SAR 800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Absher라는 사우디 온라인 정부 통합 서비스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비용은 Absher에서 신청한 금액을 각 은행 온라인 계좌 사이트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영어와 아랍어로 번역한 한국 운전면허증 확인 서류의 경우 비용 없이 대사관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이다. 혈액형 검사증과 시력 검사증은 면허 신청서 목록에 작성하는 것으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미리 병원에 가서 운전면허용 시력검사와 혈액 검사를 마친 이후 받은 검사 완료증을 운전면허장에 제출하는 편이 좋다.

리야드 운전면허 시험장 중 Takhassusi street에 위치한 'Takhassusi Dallah Driving School'을 주로 이용한다. 리야드 중심에서 자동차로 약 10~15분정도 거리에 있다. 시험장 도착 후 정문 왼편의 사무실에서 초록색 폴더 파일을 살 수 있으며, 여기서 간단히 서류구비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받은 뒤 안내에 따라 혈액, 시력 검사증 확인, 간단한 운전 테스트, 서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 후 운전면허증 신청 건물로 가서 번호표를 받고 차례가 오면 창구로 가서 준

비한 파일을 제출 하면 신청과정은 끝난다. 면허증은 신청을 완료하고 10~20 분 뒤 신청장 중앙에서 관계자가 이름을 호명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다른 운전면허 시험장으로는 King Fahad Branch Road에 위치한 Driving School이 있다. 리야드 중심에서 자동차로 10~15분 정도 거리에 있다. 입구 앞 왼쪽에는 시력검사, 혈액검사, 아랍어 번역 사무소가 있어 모든 준비서류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뒤, 운전면허증 신청 건물로 가서 번호표를 뽑고 창구로 가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신청과정은 끝난다. 이 경우 미리 현지계좌를 통해 신청비용을 부담하면 편하다. 면허증 신청을 완료 후 면허 시험을 치르고 다시 등록 건물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면허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 된다.

시험장의 직원들은 대부분 영어를 하지 못하며, 경우에 따라 기타 확인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면허 신청 후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천차만별이다. 또한 운전면허시험장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며 일을 처리하려면 2~3시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고 근무시간도 오후 2시까지이기 때문에 빨리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7시 30분) 가는 것이 좋다. 공휴일을 전후로 관련 담당자가 아무런 통보 없이 휴가를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미리 숙지해두면 좋다.

운전면허증 신청 시 종종 담당자가 시스템상에 사진이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공항에서 입국심사 시, 지문 스캔과 얼굴 사진을 찍는 과정을 통해 이 정보가 현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발생한다. 이 경우 킹 파하드 로드(King Fahad Road)에 있는 여권 관리국에 찾아가면 지문등록과 사진촬영을 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준다. 이후 다시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

사전에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운전학원에서 1개월 이상 수강을 해야 하고 기능시험을 봐야 한다. 수강료는 약 SAR 500(USD 133) 정도이며, 주중 3시~9시에 수업을 듣고 시험을 통과한 후에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거 여성의 운전이 금지된 세계 유일 국가로 여성(외국여성 포함)의 운전면허의 취득이 불가했지만, 2017년 9월 26일 사우디 국왕의

왕령에 따라 전격적으로 사우디 여성의 운전이 허용되었다. 왕령에 따라 여성 운전 관련 여러 제도 및 준비 절차를 걸쳐 2018년 6월 24일자로 여성 운전이 시행되었다. 외국인 여성 운전자의 경우 혈액형 및 시력 검사증에서 초록색 폴더 파일 구매까지 준비한 다음, 운전 경력 여부와 상관 없이 별도의 실기 시험을 치러야 한다. 또한, 여성 운전자는 리야드의 경우 공항 근처 King Khalid airport traffic License Section 1개소에서만 실기 및 서류 신청이 가능하다.



수 단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경제 개요

수단은 2011년 남수단이 독립함에 따라 유전수입의 75%를 상실하여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며, 이후 2017년 10월 미국의 대수단 경제 제재 해제 등 경제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유동성 부족,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여전히 경제난을 겪었다. 2019년 시민혁명을 통해 지난 30년간 지속된 독재정권을 축출하고 민군합동 과도정부가 출범하고, 미국과 관계 개선으로 2020년 12월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이루어졌다. 수단 과도정부가 2021년 2월 변동환율제 채택 및 정부 보조금 폐지 등 경제개혁을 단행하면서 2021년 6월 약 600억불에 달하는 대외채무 탕감 프로세스가 개시되는 등 국제사회의 對수단 지원이 본격화되었다. 이를 통해 2021년 하반기 환율안정, 물가상승률 완화, 수출 증대 등 일부 거시경제 지표 개선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2021.10.25. 수단 군부의 민간주도 과도정부 장악 및 내각 해산으로 정세가 악화되고 국제사회의 對수단 지원이 중단될 위기로 경제상황 또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환율은 2021.2월까지 고정 고시체제였으며, 공식 환율과 시장환율 간의 괴리가 컸다. 지속된 경제난 및 수단화 약세로 인해, 달러대비 수단파운드화(SDG) 환율은 2017년 1달러당 6.7파운드, 2019년 45파운드, 2020년 55파운드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수단 과도정부는 IMF 권고 등에 따른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2021.2월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였으며, 환율은 2021.10월 기준 1달러당 444 파운드를 기록했다.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환율은 급격한 환율변동 없이 과거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이후 연평균 30%를 상회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8년부터 폭등

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72.9%를 기록하여 베네수엘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2019년에는 57%, 2020년에는 269%를 기록하는 등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이러한 물가상승률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며, 115%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IMF, 2021. 11.)

종합적으로 보면, 2011년 남수단 독립이후 대부분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된 상태로 2019년 출범한 과도정부의 최대 과제도 경제회복이 꼽혔으며, 남수단 독립후 낮은 성장률, 높은 실업률 및 물가상승률, 부족한 외환보유고, 외환수입원 부재, 밀수 및 부패 등이 수단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수단 과도정부는 IMF의 권고에 따라 경제개혁프로그램(SMP: Staff-monitored Program)을 실시하여, 2021.1월 전기 보조금 폐지, 2021.2월 변동 환율제 도입, 2021.6월 석유보조금 폐지 및 연료가격 완전 자율화를 실시하는 등 경제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에 국제사회는 수단 과도정부 집권이후 당국의 △민주주의 이행 의지, △미국의 對수단 테러지원국 해제 및 △경제개혁의 성과 등을 인정하고, 수단의 600억불에 달하는 외채경감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1.5월 개최된 파리컨퍼런스에서 △수단의 주요 다자금융기구에 대한 연체금 청산 완료를 선언하고, △과도부채빈곤국(HIPC) 이니셔티브 개시 전망을 확인하였다. 동 컨퍼런스 직후, 세계은행도 향후 1년간 수단에 20억불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2021.10.25. 군부의 과도정부 장악 및 내각 해산 선언 이후로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대외교역 현황

수단 중앙은행의 2021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남수단 독립(2011년) 전 수출은 2010-2011년 연속 100억 달러를 상회하였으나, 2012년 41억 달러, 2016년 30억 달러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8-2020년 평균 35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였다. 무역수지는 2018-2020년까지 3개년 평균 53억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며, 석유를 대체할 수출 품목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될 전망이다.

금을 중심으로 한 광물 및 농축산물(참깨, 양, 낙타, 면화, Gum Arabic) 수출에 의존 중이나 이 역시 아직까지 석유를 대체하기는 역부족이다.

2020년 기준 수단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7.6억불), 인도(2.5억불), 이탈리아(1.6억불), 이집트(1.4억불) 등이며, 수단의 對한국 수출액은 약 1천 1백만 달러로 연괴 및 스크랩(7백만불), 동괴 및 스크랩(4백만불) 등이 주요 수출품목이다.

수단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25억불), 인도(10억불), 튀르키예(3.6억불), 이집트(3억불) 등이며, 수단의 對한국 수입액은 1.4억불로 우리나라는 수단의 6대 수입 대상국이다.

수단 대외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추정치)
수출	34.8	37.3	38.0	40.4
수입	78.5	92.9	98.3	88.9
수지	-43.7	-55.6	-60.3	-48.5

출처: IMF, 수단중앙은행(2017-2020), EIU(2021 추정치) 등

산업환경

제조업은 농축산업과 더불어 수단의 2대 육성산업이나, 공산품의 90%를 대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초 플라스틱, 복제약 제조, 주사기 등 의료기기 일부 생산, 자동차 조립 등이 수단 제조업의 명맥을 잇고 있으나 본격적인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통한 인프라 확충 및 연관 산업 발전이 필요하다.

농축산업의 경우, 수단은 아랍권 경작 농지의 30%를 차지하는 아랍권 최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며, 동 분야가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동 분야는 고용의 8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며, 수단 내 가축 사육 수는 1.1억 마리로 아랍권 최대 규모이며, 축산업은 전체 농축산업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랍권 전체의 수요를 충족하기는 부족한 상태이다. 유전 상

실 후 농업은 경작지 확대, 정부의 수출산업화 정책에 힘입어 수단 경제 성장의 버팀목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농축산 장비, 사료, 비료시장의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다.

광업 관련하여 수단 과도정부는 금광을 역점 산업분야로 선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외 자본 유치 계획은 캐나다 기업인 Orca社가 2021.10월 수단 광물자원부와 체결한 수단 북부지역 금 탐사 관련 협정 체결 외에는 미비한 상태이다. 향후 광산 관련 장비, 제련용 화학제품 수요 증가세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수단은 2019년 현재까지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회원국이 아닌 옵저버 자격에 머물고 있어, 고율의 관세율 및 기타 세금이 복잡하게 부과되고 있다. 평균관세율은 20%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

다만 곡물류, 의약품, 원자재, 농기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 농업용 투입재 8백여 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는 세수 확대, 자국 조립산업 등 보호를 위해 40% 이상의 고율관세가 매겨지고 있는데, 이는 Sub-Saharan Africa(SSA) 국가들의 평균관세율(12.5%) 및 저소득 국가들(lower-middle-income country group)의 평균관세율(11.4%)보다 크게 높은 상황이다. 또한 품목별 관세율 편차도 커서 의료기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이 부여되나 사치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와 함께 기타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농산물 보호를 위한 관세율도 높은 편으로 농산물 평균관세율은 19.5%인데 반해 非농산물 평균관세율은 15.7%로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

수단은 2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COMESA(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초대 회원국으로 이들 국가와 교역시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동시에 범아랍자유무역지대(GAFTA) 회원국으로 동 18개 회원국에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부가세 등 기타 세금

수단은 수입, 수출 품목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며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17%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한다. 이외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3%의 영업세(Business Profit Tax), 개발세(Developemtn Tax), 및 특소세 성격의 기타세금(Additional Tax) 등이 있다.

이들 세금은 자국산업 보호와 사치품 수입 제한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로 인해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40%임에도 실제 수입부담율은 100%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25~40% 관세에 더해 130~150%의 특소세를 납부해야하는 등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이 높아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 수출 애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또한 관세 납부시 별도 적용되는 환율, 자의적인 품목 분류 등으로 인해 실제 관세 등 납부시 고율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통관

수입상은 import declaration, commercial invoice,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검역확인서(quarantine license, 필요시), Sudanese Standards and Metrology organization(SSMO) 확인서(필요시), 은행거래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관련 관세 및 부가금을 납부하면 해당제품을 통관시킬 수 있다.

그러나 2018년에는 외환부족에 따른 수입 통관이 엄격해져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고, 제3국을 통한수입대금 결제건의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취해져 수입상들이 통관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히 품목 분류, 필요 서류 등에 있어 규정의 제정 및 인식 부족으로 자의적인 해석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요구하는 서류도 까다로운 편으로 수입 통관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수입대금 결제 및 외환 통제

2017년 10월 미국발 경제제재가 20년 만에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은행을 통한 수입대금 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제도적으로는 금융거래 제재가 해제되었다고 하지만 수단이 최근까지 미국의 테러지원국 리스트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서방 은행들이 수단 관련 거래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국, 인도, 아랍권 국가들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수단과 금융기관을 통한 외환거래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2020년 12월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한 제약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국 지정 테러지원국 해제 및 변동환율제 도입으로 인한 환율 일원화로 2021.3월부터 수단의 대표적인 상업은행인 Bank of Khartoum, Qatar National Bank 및 UCB(United Capital Bank)는 전세계에서 결제가 가능한 Visa 카드 발급이 이루어졌다.

이외 L/C 거래는 수단내 주요 대기업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수단내에서 외화송금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제3국을 통한 수입대금 결제를 완전히 막을수는 없는 상황이다.

수입규제

산업화 미비로 인해 대부분의 공산품 소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수단은 관세법상 금지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알코올, 음란물, 돼지고기 등 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품목은 금지하고 있다.

특정 중고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도 강력히 유지 중으로 출고 후 1년이 지난 중고의류 및 중고 전자제품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신차 및 중고차의 수입을 전면 금지 중이다(버스·트럭 중고차 수입의 경우는 제외). 다만, 한국산 중고차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아 예외 또는 편법 반입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현재는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는 외환사정 악화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비필수재에 대해 수입금지 품목을 반복적으로 발표하기도 한다.

주요 인증제도

수단 정부는 자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건강, 보건, 기술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군에 대해서는 수입 판매전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레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은 바이어를 통해 NMPB(National Medicines & Poison Board, 우리의 식약청에 해당) 제조시설, 품목 등을 등록해야 하며 농기계, 자동차, 전자제품 등은 우리의 표준청에 해당하는 SSMO(Sudan Standard & Metrology Organization)에 그리고 동물용 사료, 의약품, 사료 첨가제 등은 동물자원부(Ministry of Animal Resources)에 등록해야 한다.

이들 등록시는 제조사, 판매사, 제품을 등록토록하고 있으며, 수단 자체 인증제가 없는 만큼 미국, 일본, EU, 한국 등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UL, FDA, CE, ISO) 등을 획득한 경우 등록이 수월한 편이다.

투자 장벽

1951년 영국, 이집트로부터 독립한 이후 수단은 오랜 내전과 미국으로 부터의 제재로 인해 경제, 인프라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한 여파로 현재 미국의 對수단 경제 제재 해제에도 불구하고, 서방 국가의 對수단 투자는 활발하지 못한 상태로, 중국, 아랍권 국가들의 제한된 투자에 의존해 왔다. 게다가 2011년 남수단 독립으로 석유자원의 75%를 상실하고 중국, 아랍권의 경기도 둔화되면서 對수단 투자는 더욱 위축된 상태다. 서구,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가 저조한 가운데 수단의 외국인투자유치는 사우디, 카타르, 두바이, 튀르키예 등 아랍권 국가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대우그룹이 수단정부 지원과 협력 하에 대규모로 진

출, 의약품, 섬유, 타이어 제조 및 호텔, 금융업까지 영위한 바 있으나 대우그룹 해체로 현재 진출기업은 포스코대우-신풍제약 현지 합작 제약회사(GMC), 삼성전자(현지인 관리체제), LG전자(연락사무소) 정도에 그치고 있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20에 따르면 수단은 조사 대상 190개 국가 중 171위로 사업환경이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력확보, 자금조달, 채무해결 등의 항목에서 특히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2019년 시민혁명을 통해 민군합동 과도정부가 출범한 이후 2020년 12월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이루어진바, 금융거래 제약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단 과도정부는 2021년 투자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기울이고 있다.

투자법 및 장려 업종

수단은 1999년에 투자법을 제정했으며, 네 차례에 걸쳐 개정 지금은 2021년 투자촉진법(Investment Encouragement Act 2021)을 적용중이다. 동 투자법은 제6조 기구 설립에 관한 사항에서 “투자 및 민간영역 개발 감독 기구”를 설립하고, 동 기구는 내각 회의의 결정에 따라 법제화되며 투자부 장관이 이를 대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기구는 첫째, 외국인 투자촉진 및 유치 업무, 둘째,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 셋째, 자유무역지대, 넷째 중소기업 관련 사항 업무를 감독한다. 구체적인 장려 업종은 아래와 같다.

- 건설 분야 개발 : 도시화 진전으로 건설업이 유망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건설 중장비 및 부품 필요
- 금광 및 지하자원개발 : 남수단 분리(유전상실)후 유전 대체 수익원 확보 위해 금광 채굴, 운반 장비, 화학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물장비 및 화학제품 필요
- 산업 지원 : 자동차 스페어 파트 및 기초 플라스틱 원료 필요 겐아라빅, 참깨 관개농업, 축산, 수산양식
- 기타 : 사회인프라, 관광 등

동 투자법에 의하면 수단 투자부는 실제 투자와 관련된 최고경영자의 역할을 하며 △기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 △투자에 관한 실행 계획 등의 수립, △투자 실무에 필요한 연구 등을 한다. 투자 인센티브의 경우, 5년 간 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기자재로 들어오는 관세 등에 대해서도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투자 보호 및 입지 선정지원,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수단 주정부)와의 협의를 투자부에 적극 지원하는 것을 동 투자법은 담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는 종업원을 위한 사회보장보험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는 우리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총 부담률은 총급여의 25%로 이 중 17%를 고용주가 부담하고 (8%는 직원 급여에서 공제)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장에 가입한 경우 직원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면제된다.

단 외국기관에 속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가입이 면제되며, 외국인의 경우도 수단 기업에서 급여의 일부나 전체를 수령하는 경우 사회보장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노동유연성

수단은 저개발 국가로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영국식민지의 영향을 받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규는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 노동자 보호에 집중된 노동법 운영으로 노동유연성은 낮은 편
- 노동법에 적시된 폭력, 횡령, 범죄 등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해고시 해고당시 6개월 분의 통상임금 지급 필요
- 근무 연차에 따라 최저 20일 이상의 연차 휴가에 더해 병가, 원거리 고향 방문 휴가 제도 운영

지분 소유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제도적으로 보면 그린필드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무역, 도소매, 공공부문의 경우 외국인 단독투자는 불허, 아직까지 한-수단간 투자보장 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 협정도 발효되지 않은 상태로 직접투자 방식의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비한 편이다.

현지법인 및 수출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투자법외에 관련 부처의 내부 규정에 의한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기도 하는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외환 부족으로 인해 수출입 관련 규제가 강한 편으로 수단내 판매 목적의 수입활동을 위해서는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수입회사는 내국인 지분율이 51% 이상이어야 한다.

부동산 취득

투자촉진법 상 촉진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정부 소유 산업단지를 낮은 가격에 장기 임대할 수 있다. 공장 등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투자청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다. 일반적으로 투자청에서 대상 토지를 추천, 투자가가 적격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조세 제도

수단은 세율 인하 등 세무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산화 미흡, 과세항목 및 표준 비세분화로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빈번한 점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세율 인하의 대표적인 예로는 2007년 법인소득세율을 기존 30%에서 15%로 낮추고, 법인세를 국제정 기준에 의한 일방적 세액 통보 부과 방식에서 기업 자체 신고 후 사후 감사 방식으로 변경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은 기업활동 활성화, 외국인 투자유치 장려 등이 주 목적이거나 광업, 석유개발, 유통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35%의 높은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수단 조세 제도의 주요 세목은 법인세(Business Profit Tax),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부가가치세(VAT) 등이 있으며, 사안별로 인지세(Stamp Duty), 이슬람 세제(Zakat) 등이 부과된다.

◉ 법인 부과 세금 요약표(연간 기준)

세제	과세기준	세율
Business Profit Tax	순이익	15%
VAT	판매액	17%
Zakat	(유동자산-유동부채) X 무슬림 Share	2.579%
Capital Gains Tax	이익	5%

수단 법인세법은 2007년 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30%에서 15%로 대폭인하되었으며, 인하 배경에 관해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극대화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Zakat(이슬람세)는 회사 주주 중 무슬림이 있는 경우 부과되며, 주주 중 무슬림의 자본비율에 따라 2.579%의 세금이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되고, 이중 높은 세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 계산의 복잡성으로 인해 ①번의 방법으로 계산하며 세무당국도 관례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 ① [유동자산 - 유동부채] × 무슬림의 지분 소유율 × 2.579%
- ② [자본금 + 이익잉여금 + 준비금 + 총당금-순자산] × 무슬림의 지분 소유율 × 2.579%

일반적인 부가가치세(VAT)는 17%이나 의약품에는 영세율, 정보통신업에는 20%가 적용되는 등 차등 적용한다. 수단은 신용카드 미사용 국가로 이로 인해 부가세 신고가 많은 편이다.

개인소득세는 15%이며, 단 건설노동자, 일용자 노동자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사회보장은 실업, 의료보험 성격으로 총급여의 25%를 부과, 이중 17%는 고용주가 부담, 8%는 직원 급여에서 공제해 고용주가 납부한다.

수단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무행정의 전산화율은 저조한 편으로 각종 서류 처리, 보관이 수기로 이뤄지다 보니 누락, 오류가 많고 담당자 변경도 자주 발생하는 바, 제출한 서류 사본을 철저히 보관하여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장벽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른 제한

유엔 안보리 결의(1566, 1591)는 다르푸르 지역 반군과 수단정부 및 교전단체에 대한 무기금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기업이 수단에 방산물자를 수출할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산물자수출 관련 고시를 제정하여 對수단 방산물자 수출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수단 내 주요인사에 대한 자산동결을 시행중 이므로 우리 기업이 이들과 거래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국 제재에 따른 제한

미국의 수단에 대한 기존 경제제재 중 대통령 행정명령(E.O.: Executive Order)에 의거한 포괄적 경제제재는 2017년 10월 해제되고, 2020년 12월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따라, 다르푸르 학살에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한 표적 제재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재권

수단은 유엔 산하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회원국으로 관련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지재권에 대한 정부, 소비자의 인식은 부족한 편이다. 특히, 상표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침해 사례가 다수 보이며 정부의 규제도 허술한 편이다. 수단내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로는 특허법(Law No.58/1971), 상표법(Law No. 8/1964), 저작권법(Law No. 49/1974), 산업디자인법(Industrial Designs law No 18/1974) 등이 있지만 실제 적용은 느슨하다.

부패 문제

수단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179개국 중 174위를 차지하였다(전세계에서 6번째로 부패한 국가). 정부 유력 인사의 가족들이 기업을 운영하며 각종 정부 사업들의 이권을 챙기는 일이 다반사이고 경찰이나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행위도 흔히 발생한다.

또한 정부에 대해 정보를 공개토록 요구할 수 있는 정보 공개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기업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수단 정부가 응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외국투자 기업이 필요한 정보가 있더라도 정부 측으로부터 신속하고 공신력 있는 답변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타 장벽

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외국인의 경우, 거주비자가 없으면 은행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고(거주비자 취득자의 경우에도 계좌 개설 절차가 까다로움), 자동차 매매가 불가능하다. 또한 주택 임대 시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현지인들이 임대계약 체결을 꺼린다.

수단으로의 입국은 현지 업체의 초청으로 일반 상용비자로 입국한 후, 취업 거주비자(일반 근로자의 경우 1년, 대표자급은 5년 유효)로 전환 할 수 있다. 전환절차는 수단 내 법인의 재직증명서와 법인의 비자 발급 요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고, 보건부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에이즈 검사)를 마친 뒤 거주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취업 거주비자를 받아 현지 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할 경우 세무서에 해마다 일정 금액의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 상용비자로 입국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3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이민국에 입국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한 달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매달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현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한국면허증으로는 운전할 수 없으며, 한국운전면허증을 아랍어로 번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기능시험을 거쳐(필기시험 면제) 교통국 면허과에서 현지면허증으로 교체해 준다. 다만 이러한 정책에 대해 현지 경찰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필기시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수단은 20년간(1997~2017) 지속된 미국발 경제제재, 1993년 이후 2020년 12월 지정 해제까지 지속된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WTO 미가입 상태로 인해 무역투자, 금융거래 관행이 국제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특히 현재까지 무역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제약이 된 것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그간 이로 인해 정상적인 외환거래가 이뤄지지 못하고, 국제사회의 파이낸싱 및 차관 지원도 막혀있었다. 특히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서방계 은행의 기피 현상으로 인해 수단발 외화 직접 송금이 제한된 가운데, 수단 정부는 제3국을 통한 수입대금 결제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금지 입장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L/C 개설이 일부 공기업, 대기업에 국한된 가운데 외화송금도 제약된 상황에서 제3국을 통한 송금의 마땅한 수입대금 결제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단속은 느슨한 편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바이어들은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수단 평화협정 이행 등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수단 군부의 과도정부 장악 등으로 인해 향후 수단 정세와 경제 안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수단 기업과 거래를 희망하는 경우 주수단 한국대사관이나 KOTRA 무역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최대한 파악 후 거래, 진출 추진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UAE는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방적 시장 경제 체제를 지향하여 정치적 안정, 친기업적 시장 환경, 우수한 인프라, 주변국 시장으로의 접근 용이성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인근 중동지역의 정치·사회적 불안이 무색하게 UAE는 안전한 투자처(Safe-haven)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러한 명성을 토대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와 소비문화를 발판 삼아 다양한 산업을 발달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산유국인 UAE 경제는 유가 변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UAE 정부는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다각화 정책과 동시에 중동지역의 무역, 금융, 통신, 교통, 관광의 중심지(hub)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을 적극 구사하여 지난 10여년간 비석유 부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어 왔다. 2022년 들어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제 분쟁 등 글로벌 원유 수급 증가에 따른 고유가에 따라, UAE 정부는 재정상황 개선되었으며 한편으로는 기업·민생 물가 상승을 안정시키기 위해 생필품 물가통제, 무료 식사 제공 등에도 노력하고 있다. UAE 정부의 건국 50주년과 함께 코로나로 1년 순연되어 2021년 10월부터~2022년 3월까지 개최된 2020 두바이 엑스포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글로벌 기업 활동 여건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022년 들어 일시적으로 유가가 100달러를 상회하고 방역 조치들이 대폭 완화되면서 UAE 내수경기는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IMF는 2022년 UAE GDP 성장률을 5.1%로 상향조정('22.10월)하였는데 에너지 부문 호조와 더불어 소비, 교역 등 비석유 부문 또한 회복 추세이며 러시아에 우호적인 UAE 기조로 러시아 인구와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점 등이 주요 이유로 손꼽힐 수 있겠다.

이스라엘과의 수교(2020.8월), 카타르와의 단교 종식(2021.1월)에 이어 2022년 8월, UAE 주이란 대사를 다시 파견하면서 정치적 긴장감이 더욱 완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경제적으로는 2022년 5월 인도(발효)를 시작으로 이스라엘(2022.5월), 인도네시아(2022.7월)와의 연이은 CEPA로 자유무역 확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제도 개편(외국인 100% 지분 소유 가능)과 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 비 석유산업 인프라 구축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 노력이 2022년에도 계속되고 있는바 UAE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시점이다.

무역동향

UAE 對 세계 교역동향

2021년 UAE의 對 세계 수출 규모는 2,7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54.9% 증가하였다. 스위스(△12.2%)를 제외한 10대 수출국가로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큰 폭 상승하였는데 코로나와 급락했던 국제유가 회복세에 따라 원유·석유제품 수출실적 회복된 점이 주요한 이유이다.

UAE의 최대 수출국은 인도로, 430억 달러, 전체 수출의 15.7%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80%가량 증가하였다.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282억 달러로 전체의 10.3%, 3대 수출국인 일본으로서는 270억 달러를 수출, 중국과 일본으로의 수출 모두 전년대비 60%이상 증가하였다.

주요 수출 품목은 원유·석유화학제품,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및 관련 제품이며 금과 다이아몬드 교역 허브인 UAE 시장 특성상 두 품목 수출이 두드러진다.

UAE의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수출대상국	수출액			점유율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인도	30,456	23,950	43,027	13.6	13.6	15.7
중국	15,085	16,957	28,190	6.7	9.6	10.3
일본	26,215	16,338	26,970	11.7	9.2	9.9
이란	-	-	14,985	-	-	5.5
싱가포르	11,521	6,264	12,510	5.1	3.5	4.6
사우디	10,356	8,967	12,475	4.6	5.1	4.6
태국	7,454	5,450	9,431	3.3	3.1	3.4
스위스	15,070	9,978	8,758	6.7	5.6	3.2
홍콩	2,184	5,300	8,049	1.0	3.0	2.9
파키스탄	6,311	4,480	7,334	2.8	2.5	2.7
한국(11위)	8,991	5,693	7,319	4.0	3.2	2.7
총계	224,419	176,722	273,725	100	100	100

자료원: GTA (입수가능 최신자료로 한국-UAE 통계청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21년 UAE의 對 세계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25.6% 증가한 3,393억 달러이다.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한 수입 부진과 저유가가 유발했던 기저효과에 의하여, 2021년은 UAE의 10대 수입대상국으로부터 수입액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UAE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과 인도로 양국으로부터의 수입액과 비중(전년대비)은 모두 증가, 중국은 최대 수입 대상국으로 수입액은 439억 달러, 전체의 12.9%를 차지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70.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3% 증가하며 2019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對 한국 수입액은 2014년을 정점(6위, 72억 달러)으로 점차 감소해 2021년도에는 39.8억 달러, 17위로 하락하였다.

제조업 기반이 낮아 에너지 집약 산업 생산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컴퓨터, 항공기, 금, 다이아몬드 등이 주요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UAE의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수입대상국	수출액			점유율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중국	33,450	32,343	43,851	9.1	12.0	12.9
인도	29,815	18,060	25,380	8.1	6.7	7.5
미국	19,974	14,743	17,064	5.4	5.5	5.0
사우디	7,896	10,972	15,413	2.1	4.1	4.5
홍콩	8,105	7,158	9,935	2.2	2.7	2.9
독일	9,732	7,918	8,402	2.6	2.9	2.5
영국	9,972	6,072	7,889	2.7	2.2	2.3
일본	7,184	5,556	7,019	1.9	2.1	2.1
이탈리아	5,153	4,425	5,694	1.4	1.6	1.7
튀르키예	3,627	2,827	5,495	1.0	1.0	1.6
한국(17위)	3,470	3,654	3,975	0.9	1.4	1.2
총계	368,576	270,081	339,291	100	100	100

자료원: GTA (입수가능 최신자료로 한국-UAE 통계청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우리나라 對 UAE 교역동향

2022년 對 UAE 3분기(누계) 수출액은 29.8억 달러로 UAE는 사우디아라비아(34.4억 달러) 이은 중동에서 두 번째 수출 대상국이다. 수출액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 2014년 이후 계속해 감소세를 보였으나 코로나 팬데믹, 저유가 장기화 등 부진요인을 극복하고 반등에 성공하였다.

2022년 對 UAE 3분기(누계) 수입액은 109억 달러로 UAE는 사우디아라비아(319억 달러), 카타르(120억 달러)에 이은 중동지역 3대 수입 대상국이다. 전년 동기대비 수입금액 기준 108.7% 증가하였는데 이는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액에 기인하였다.

2022년 對 UAE 3분기(누계) 무역수지는 79.5억 달러 적자로, 전년동기(약 24억 달러 적자) 대비 적자 폭 대폭 상승하였다. 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입 증가로 인해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 우리나라 對 UAE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금액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22년(3분기)	2,975	10,929	-7,954
2021년	3,975	7,319	-3,344
2020년	3,654	5,693	-2,039
2019년	3,470	8,991	-5,521
2018년	4,588	9,287	-4,699

자료원 : 관세청

무역제도

UAE는 1996년 WTO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부터 국제 무역 규범에 맞는 무역 제도를 따르고 있다.

UAE의 무역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이다. 무역정책 입안을 위해 경제부는 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각 에미리트 행정당국과 협조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의견수렴을 위해 상공회의소나 직종별 협회와도 교류하고 있다. 무역정책 수립은 관련 부처의 입법안이 연방평의회(Federal National Council)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고, 최종적으로 연방최고회의(Supreme Council)의 비준을 거쳐 공포되는 순이다.

2017년 7월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UAE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 10월 발효되었다. 종합인증 우수업체(AEO)는 법규 준수,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 관리 등의 적정 기준에 따라 관세청에서 공인한 업체이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 수출입 시 세관 절차상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시 우선 조치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MRA 체결로 상대국인 UAE에도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 한·UAE AEO MRA가 전면 이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AEO 수출 화물에 대한 수입검사율은 5%에서 2.5%까지 낮아질 수 있으며,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더라도 일반화물보다 먼저 검사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 통관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 가스, 석유화학을 제외하고는 자유무역지대(Free Zone)이 UAE의 수출 중심지로서, 본토(Mainland)보다 편리한 사업환경과 물류, 행정, 금융 등의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1985년 두바이 제벨 알리 프리존(JAFZA)을 시작으로 두바이공항프리존(DAFZA),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 실리콘오아시스 등이 대표적이며 UAE 전역에 걸쳐 40여 개의 자유무역지대가 운영되고 있다.

◉ UAE 자유무역지대 입주 시 혜택

- 100% 외국인 지분 소유 가능
- 수출입 관세 면제
- 자본 및 수익의 본국 송환에 대한 규제가 없음.
- 장기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갱신 또한 가능
- 채용 및 비자 발급 등을 지원하며 외국인 고용에 제한이 없음.

관세와 통관제도

관세와 관세 환급

UAE는 GCC(걸프협력회의) 회원국으로, GCC 관세협정에 따라 회원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공통 관세율 5%를 적용하고 있다. GCC 관세협정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2020년 6월과 2022년 6월 두 차례 독단적으로 관세를 인상했으나 UAE는 종전 세율 5%를 유지하며 무역자유화에 개방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02년 UAE는 에미리트 간 경제를 통합하고 GCC 관세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연방관세청(Federal Customs Authority)을 창설하고 세관 절차의 표준화를 위한 연방 법안(Federal Decree Law No.1 of 2003)을 제정했다.

아울러 단일항구원칙에 따라 UAE 혹은 기타 GCC 국가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첫 도착항에서만 세금을 부과하며 역내 이동 시 이중과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UAE로 수출하는 대다수 품목에는 공통관세가 적용되나, 품목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주류(50~70%), 담배(100%)와 같이 특별상품군으로 분류되어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특별상품군은 GCC 국가별로 관세 책정이 상이하며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8년 1월부터 부과되는 부가가치세(5%)의 경우, 세후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UAE 내 수입된 물품이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출되는 재수출용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BE(Bill of Entry) 상에 재수출용 물품임을 기재하고 일단 부과된 관세액을 납부 한 후, 관세환급 신청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시 또는 시연 샘플의 일시수입에 대한 전시품 관세 면제 제도가 있다. 인보이스 원본과 원산지 증명서, 패키리스트, 주최측로부터 받은 참가확인서를 첨부하여 입국세관에 신고하면 출국 시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A.T.A.까르네 제도를 이용하면 협약 가입국 간 수출입 통관할 때 복잡한 통관 서식이나 관세, 부가세, 담보제공 없이 시 일시 통관이 가능하다.

통관절차

UAE의 수입 통관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투명하지만, 수입업자는 반드시 관세청으로부터 유효한 수입업자 코드(Mirsal Code)를 획득하여야 하며, UAE에 등록된 회사만이 수입 자격이 있다. 수입 물품 통관 시 인보이스 및 원산지 증명서에 해외 주재 UAE 영사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세관 신고서류에 대해 아랍어 번역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UAE로 수출 통관 시 세관에서 원본 선하증권(Bill of Lading) 제출을 요구하나, 원본 제출이 어려울 시 1,000디르함(약 273달러)을 지불하고 사본으로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수관 물품 보세구역 반입
- 2단계: Bill of Entry 작성 및 제출(아래 부속서류 첨부 요)
 - Invoice
 - Delivery Order

- Bill of Landing/Air Bill
- Packing List
- Certificate of Origin
- 수입상 Trade Licence 사본
- 수입상의 위임장(Authorization Letter to Shipping Co.)
- 제품 인증서(강제인증 대상 품목 시)
- 3단계: 관세 납부 및 통관물품 보관장소 확인
 - CIF 기준 5% 관세 부과
 - 관세 납부 후 수입물품 보관장소 확인
- 4단계: 수입물품 검사 및 확인 스탬프 날인
 - 수입품 검사소에 관련 서류를 제시, 검사일시를 지정받음.
 - 지정된 검사 날짜/시간에 하주 또는 대리인 입회하에 수입물품 검사가 이루어지며, 이상이 없을 경우 BE에 'Cleared'라는 확인 스탬프를 날인
 - 마약, 주류, 음란물, Under Value, 원산지 등을 검사
- 5단계: 반출 확인서 및 운송차량 통과증 발급
- 6단계: 반출

수입규제

UAE는 자유무역경제를 지향할 뿐 아니라 생필품, 소비재, 산업자재 등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대부분 품목에 대한 자유로운 수입을 목표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의 경제, 환경, 안전, 종교, 도덕적 관점에 반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국의 산업과 자국민의 안전 보호 등을 위한 수입 규제 및 사전 강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금지와 규제품목은 대체로 GCC 세관 규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수입금지품목

UAE에서는 이슬람의 가르침을 부정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물건, 마약류, 위폐 등 하기 품목이 연방세관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그간 중동국가의 이스라엘 보이콧 규정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이스라엘산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수입을 금지했으나, 2020년 9월 UAE-이스라엘의 공식 외교 정상화 합의에 따라 동 규제는 폐지됐다.

UAE연방세관 수입금지품목

- 마약류 (Hashish, opium, heroine, morphine, cocaine, papaver and its hull and seeds, Khat, cannabis and any other grains of similar effect 등)
- 이슬람의 가르침을 부정하거나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출판물, 유화, 사진, 잡지, 조각상 등 종교적으로 금지되는 물건
- 코끼리 상아, 코뿔소 뿔
- 3겹의 나일론 소재 어망
- 도박 용품
- 식품 (비사업적 목적의 반입만 허용)
- 캔디 담배(Candy cigarettes)
- 오존 폭발 물질, 방사능 오염물질
- 석면 시트 또는 석면 파이프
- 적색 레이저 포인터
- 유해 폐기물
- 매(Falcon) : CITES 협약에 따라 허가받은 매, 여권이 있는 매, 환경 연구청으로부터 치료 허가를 받은 매를 제외하고는 매년 4월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금지
- GCC 공통관세법이나 UAE 법률 규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품목

인증제도

과거 UAE의 인증제도는 구체적으로 확립되지 않아 여러 기관이 각기 다른 품목을 관장하거나 특별한 규제 없이 수입품의 유통이 가능하였다. 2014년 UAE 연방 표준측량청인 ESMA(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 Metrology)를 설립, 연방차원의 규제 정비를 시작하였다. 이후 2020년 7월, 정부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정부 조직 통폐합 개편이 시행되어 ESMA는 산업

첨단기술부(Ministry of Industry and Advanced Technology)에 합병되었다. 2022년 10월 현재 UAE 내 수입과 유통을 위해서는 산업첨단기술부가 관장하는 적합성 인증인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획득이 강제되며, 해당 인증은 식품·소비재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주요 ECAS 인증 취득 대상은 저전압 전기제품, 화장품 및 퍼스널 케어 제품, 세제, 식품 접촉 제품, 담배 제품 및 물담배,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타이어 및 재생타이어, 어린이 보호 시트, 속도 제한 장치, 트레일러, 개인 보호 장비(PPE), 전자담배 등이 있다.

아울러 에미리트 품질 마크인 EQM(Emirates Quality Mark)은 식수, 주스 및 음료, 유제품 등에 적용, 이 외에도 안전 강화, 에너지 효율 조치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 라벨링(EESL)과 유해물질 제한제도(RoHS)가 운영되고 있다. 주요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부착 의무 대상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식기 세척기 등 가전제품이다. 납, 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한(RoHS) 제도를 의료기기를 포함한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도입중이다.

2014년 1월, ESMA에서는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UAE 단일 할랄 규격기준인 할랄 마크를 제정했다. 신선육류 수입에 적용되고 있는 할랄 마크는 식품 전반, 소비재 및 의약품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할랄마크 공표 당시의 관할기관이었던 ESMA는 글로벌 인정기관(HAB: Halal Accreditation Body)을 선정해 할랄 인증기관(HCB: Halal Certification Body)을 평가,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고 할랄 인증기관이 실질적인 할랄 인증 발급서 및 마크 부착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ESMA가 산업첨단기술부(MoIAT)에 합병되면서 약 80여 개의 할랄 인증기관이 산업첨단기술부 산하에 등록되어 있다. 이중 한국의 인정기관(HAB)으로는 한국인정지원센터(Korea Accreditation Board)가 있으며, 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International Halal Certification Center)는 한국 최초의 할랄 인증기관이다. 또한 할랄협회(KOHAS)는 ESMA의 공식 승인기관은 아니나, ESMA가 승인한 글로벌 할랄 인증기관인 IFANCA와 할랄인증 동시발급(TLS) 협약을 체결해 단일 기관 기준의 절차와 비용으로 2개 인증(KOHAS와 IFANCA)을

동시 발급하고 있으며, 신청 기업이 희망할 경우 ESMA 할랄 인증 발급도 단독 혹은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회사는 사전에 UAE 보건예방부(MOH : 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에 등록하고 수입을 위한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해당 인허가의 신청과 취득 절차는 보건예방부가 부여한 의료기구나 의약품 취급허가를 가진 현지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진행 가능한바 현지 파트너사의 선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디스트리뷰터 선임->제조업체 등록->제품인허가->유통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수입규제품목

GCC는 EU와 달리 WTO에 개별 국가로 등록돼 있으나 FTA, 수입규제 등 주요 현안은 GCC 이름으로 협상하고 결정해 각 회원국에 동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UAE도 GCC 회원국으로 GCC 차원의 수입규제를 따르는데, GCC에서는 최초 수입규제 조치로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HS Code 850710)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6월 25일부터 5년 동안 약 12%에서 25%의 관세율을 적용하였다. 2018년 5월에는 수입 도금강판(HS Code 721070, 721090)에 대해 3년간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6월 21일부로 연간 수입규모 250,354톤을 초과하는 시멘트·모르타르·콘크리트용 조제첨가제(HS Code 382440)에 3년간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동 세이프가드 조치는 1차년도 221달러/톤, 2차년도 199달러/톤, 3차년도 177달러/톤으로 최초 부과 후 점진적으로 경감된다. 2019년 10월에는 9개 카테고리의 광범위한 철강제품에 대해 조사당국 직권으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으나, 2021년 9월 2일 미부과 결정을 하며 우리 기업에게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0월 기준, 조사 중인 對 한국 수입규제는 반덤핑 1건(아크릴폴리머, HS Code 390670)이며, 동 품목에 대한 조사는 지난 '21년 11월부터 계속하여 진행 중이다. UAE가 산업 다각화를 위해 기초 소비재 생산설비 확충, 석유화학 및 다운스트림 고도화를 추진함에 따라 관련 수입규제 조치의 증가가 예상된다.

디지털 무역장벽

UAE는 국가간 자유로운 디지털 무역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다. 2017년에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중동 최대인 UAE 전자상거래 업체 Souq.com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하는 등 디지털 무역에 대해 특별한 장벽을 두고 있지 않다.

정부조달

일반적으로 UAE의 정부조달 규모는 연방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 구매예산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에미리트별로 수행하는 다양한 산업개발 프로젝트, 국영기업의 구매예산도 포함될 수 있다.

UAE 정부는 정부조달에 있어 현지 업체나 중소기업에 가점을 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외국기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UAE는 WTO 정부조달협정 서명국이 아니다. 정부조달은 대부분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입찰 방법은 일반 공개입찰, 제한 입찰, 경쟁견적, 수의계약의 4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입찰은 국제입찰과 국내입찰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 입찰 모두 UAE 국적 파트너와 함께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국제입찰의 경우에 외국인의 명의로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가격 결정 등 외국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입찰의 경우에 UAE 국적을 가진 파트너의 명의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동 파트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석유·가스 분야 플랜트 발주가 많은 UAE 아부다비 정부는 2018년 4월부터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발주사업에 국내가치(ICV: In-Country Value) 인증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ICV는 자국 내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 증가를 유발하여 GDP 다변화를 이끌어내고, 민간분야에서 자국민 고용기회를 확대하며, 핵심 공급망의 현지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ICV 점수 증명서

가 입찰 참가를 위한 강제 요건은 아니나, 미제출 시 입찰 참가기업 재무평가에서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ICV 점수가 0점 처리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화나 다름이 없다. ICV 평가 및 인증은 ① 제조, ② 조달, ③ 하도급, ④ 투자, ⑤ 현지인 고용, ⑥ 외국인 공헌 등 6가지 항목으로 이뤄진다. 아부다비석유공사가 선정한 6개 컨설팅 업체에서 인증 업무를 수행하며, 인증서를 받으면 12개월간 유효하다. ICV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중국업체들의 저가 공세와 함께 사업 수주에 불리한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

2019년 아부다비 경제개발부(Abu Dhabi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는 현지화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ADNOC의 ICV와 비슷한 아부다비현지가치(Abu Dhabi Local Contents)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동 프로그램은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발주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는 공급업체가 대상이 된다.

2020년 2월, ADNOC과 아부다비 경제개발부는 양 기관의 현지화 프로그램인 ICV와 ADLC를 통합 운영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 협력 증진과 현지화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기로 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두 기관은 아부다비 정부의 상품 및 서비스 조달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현지화 점수 산출 방법을 통합하였으며, 이후 민간 및 준정부기관도 프로그램에 합류함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통합된 프로그램은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산하 산업개발실(Industrial Development Bureau)에서 관장하고 있다. 정부 발주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여 ADLC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부다비 경제개발부에서 검증한 인증기관 또는 통합 ICV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ESG의 개념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투자·비즈니스 관련 의사결정 시 ESG 기준을 도입을 준비하는 UAE 정부 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부다비의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과 조달을 담당하는 아부다비 투자진흥청(Abu Dhabi Investment Office)의 경우 인센티브 제도와 민관합작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s) 사업자 선정에 ESG 요소를 반영, 투자대상을 선정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2021년 8월, ADIO가 발주한 아부다비 도

로 LED 조명시설 PPP 사업 입찰참가자격(Pre-Qualification)심사 절차에서 ESG 평가가 반영, 9개 후보 업체가 선정된 바 있으며 관련 움직임은 UAE 정부조달 시장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적재산권 보호

UAE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WTO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등 국제협약에의 서명국이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다.

국내적으로도 1992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방법(40/92)을 제정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가 충분하지 못하여 상표 도용,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특허출원이나 의장 등록은 연방 경제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을 개정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크게 강화하였다.

상표법(Trademarks)

Federal Law No. 37 of 1992에서 정의하는 상표는, 유상으로 거래되는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것과 구별하는 표시를 할 때, 이름, 단어, 서명, 글자, 모양(Figures), 그래픽, 로고, 칭호, 특징(Hallmarks), 날인(Seals), 그림, 패턴, 공지(Announcements), 포장 또는 기타 마크 등으로 구별짓는 형식을 말한다. 상표법의 내용은 대부분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에 준거하고 있다.

상표 등록은 UAE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상표 로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우선권 서류(Priority documents), 여권 사본 등이 필요하다. 통상 초기 신청 승인 후 30일이 소요되며, 비용은 1,000디르함(약 273달러), 상표권 보호 기간은 10년이다.

상표권 침해의 경우 경찰 상업범죄 담당부서(Commercial Crime Department)에서 원본과 위조 상표의 대조·확인 작업을 실시하며, 상표권자는 민사

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 전 또는 소송 기간 중 동 위조 제품에 대한 사전 압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위조 상표가 포함된 포장, 라벨 등도 압류 요청이 가능하고, 원고가 승소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위조 제품 폐기와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액에 대한 배상 명령을 받아낼 수 있으며, 법원은 위조 상품 제조자에게 위조품 생산 중지 명령과 함께 지역 신문에 동 재판 내역을 공지할 수 있다. 또한, 위조품 생산자는 판결에 따라 15일에서 6개월간 거래면허가 중지되며, 이 기간 동안 UAE 내에서의 영업활동은 금지된다.

저작권법(Copyrights)

Federal Law No. 7 of 2002에서 정의하는 저작권은 서술·표현 형태·중요성 또는 목적과 관계없이 문학, 예술 또는 과학 분야의 원저작물을 말한다. 책, 소프트웨어, 강의, 뮤지컬, 오디오 및 비디오, 그림, 사진 등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 등록이 현지에서 의무사항은 아니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수적이다.

저작권 등록은 UAE 경제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경제적 권리는 저작권자 생존 기간 및 사후 50년까지 보호된다. 단, 응용미술(Applied art) 분야는 첫 발표 이후 25년 후 만료된다. 통상 1~2일이 소요되며, 저작권자가 개인일 경우 100디르함(약 27달러), 저작권자가 회사일 경우 300디르함(약 82달러)의 비용이 수반된다.

저작권법 침해의 경우, 일시적인 조치로서 법원은 관련 저작물의 생산·발간·게시 등을 규제하거나, 저작물에 대한 상세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침해 내역에 따라 구속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특허/의장/실용실안권(Patents, Design & Models)

Federal Law No. 31 of 2016에 따르면 과학적 근거가 있고, 적용이 가능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개선점을 반영한 모든 기술 분야에서의 발명품에 UAE의 특허 보호가 가능하다. 실용신안, 산업 드로잉, 디자인 및 영업 비밀을 보호하고, 지식 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발명이나 디자인 등을 몰수하는 등의 가

처분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단, 사람과 동물에 필요한 진단방법, 치료법 및 수술, 과학적·수학적 원리 발견, 공공질서나 도덕을 침해할 수 있는 발명 등은 특허 보호가 되지 않는다.

특허 등록은 UAE 경제부 산하 국제 특허등록센터(ICPR)에서 수행하며, 신청은 UAE 경제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특허 보호 기간 20년, 실용실안 보호기간은 10년, 의장은 10년까지 보호가 가능하며, 수반 비용은 항목별로 상이하다.

특허, 실용실안 등 공업소유권 침해 적발 시 당해 물품은 압수되며, 구속 또는 5천 디르함(약 1,362달러) 이상 10만 디르함(약 27,248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업소유권 침해 물품에 대한 몰수 및 폐기가 실시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 UAE와 ‘특허심사 대행을 위한 지식 재산권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UAE의 특허심사를 대행하고 있다. 이후 심사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9년에는 특허심사 수행 범위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이 수행하고 있는 UAE 특허심사 범위를 기존의 신규 심사 중심에서 최종 심사까지 전 영역 확대, 중동지역의 한류확산에 발맞춰 지재권보호에 관한 공조 강화를 진행 중이다.

투자환경

투자여건

글로벌 경영 컨설팅사 커니(Kearney)에서 발표한 ‘2022 커니 FDI 신뢰지수(2022 Kearney FDI Confidence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UAE는 14위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 15위였던 데 비해 1단계 상승했으며, 동 지수 상위 25개국 중 개발도상국으로써 중국(10위), 브라질(22위)과 함께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중동지역에서는 부동의 1위로 지역 허브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UAE는 오랜 기간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미 달러화에 고정된 디르함(AED)의 안정성과 투자 후 과실 획득 시 외환 송금의 편리성 등 UAE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투자 진출 지역 중 하나로 여겨진다.

또한, 해외기업의 회사 설립에 관하여 석유 및 가스 산업,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개방되어 있어 기업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비용 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환경과 더불어 중동지역 중 정치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꼽히면서 UAE는 중동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 주목, 매년 수많은 외국회사 또는 개인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아울러, UAE는 프리존이 매우 발달해 있으며, 이들 프리존은 면허, 자국민 고용조건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두바이를 중심으로 프리존이 크게 발달해 왔으나 최근에는 아부다비 등 다른 에미리트들도 프리존을 점차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 중이다.

대외환경

UAE는 민간부문이 외국으로부터의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받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 성장 동력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외국인 투자법이 독립적으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회사법(Commercial Company Law)을 토대로 규정하고 있다. 초기의 회사법은 1984년 제정된 연방법 8호(Federal Law No.8 of 1984)였다. 동 회사법에는 회사 형태 규정, 이사회 구성원, 주식회사 규정 등 일반적인 회사 설립 규정을 다루고 있고, 1984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연방국가라는 점에서 법 체제는 크게 연방 차원과 토후국 차원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UAE 헌법도 토후국별 문제는 개별 토후국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각 토후국의 외국인 투자 관할 기관은 경제개발부(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이며, 연방 회사법의 규정에 기초한 다양한 법적 형태의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중동 내전 등 지역 안보와 직결된 문제 지속과 對이란 제재 등 경제활동 제한 요인이 외국인의 투자 진출 걸림돌이 되며 GCC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열심이다. GCC 역내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UAE는 글로벌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018년 9월 외국인 투자자 및 기업에 지분을 제한을 완화하는 신규 투자법을 제정했고, 13개 산업 부문 122개 세부 분야에 대해 외국인 소유지분율을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으며, 재생에너지·항공우주·농업·첨단제조업 등을 포함했다.

이후 2020년 11월 UAE 정부는 모든 산업에 경제를 개방하여 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회사법에서 규정하던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 요건 폐지와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제도의 대폭 완화를 발표했다. 현지에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해 반드시 선임해야했던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 제도(2021.4월부)와 대부분 산업군의 법인 설립에 제한을 두었던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요건(2021.6월부)도 대폭 완화됨으로써 우리기업의 진출 애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단, 연방정부의 법 개정·발효 후에도 지분한도와 적용산업에 대한 결정은 각 토후국에 자율재량권이 부여되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UAE 정부에서는 경기 침체에 따라 지속 유출되는 외국인 인구를 막고자 외국인 대상 비자 제도에도 파격적인 변화를 주었다. 카타르에 이어 GCC 내 두 번째로 주요 투자자에게 영주권(Permanent Visa)을 부여키로 했으며, 2021년 1월에는 GCC 최초로 일부 전문직 종사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시민권(Citizenship)을 부여키로 했다. 무직의 외국인 은퇴자에도 특별 장기 거주 비자(은퇴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하여 2020년 9월 두바이를 시작으로 발급을 시작하기도 했다. 또한, 두바이는 2019년 10월 가상 사업허가(Virtual Commercial Licence) 제도를 도입하여 창조산업, 기술산업,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현지에 거주하지 않고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다.

UAE는 1994년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1996년에 세계 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있어 UAE와의 양자간

무역협정은 특정 상품들에 대하여 시리아(2000년 11월), 요르단(2001년 3월), 레바논(2002년 3월), 모로코(2002년 3월) 및 이라크(2002년 4월)와 체결했으며, 이후 UAE는 모든 FTA 협정을 GCC 차원에서 협상해왔다.

GCC 차원에서 FTA를 체결한 국가는 범아랍자유무역협정(1998년 1월 발효, PAFTA), 싱가포르(2013년 9월 발효), EFTA(2009년 6월 서명), 뉴질랜드(2009년 10월 서명)가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일본, 호주, EU, 인도, 튀르키예, 파키스탄, MERCOSUR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GCC측 내부 입장 정리를 위해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2021년, UAE는 건국 50주년을 맞아, 향후 50년을 대비하기 위한 정부 이니셔티브 ‘Projects of the 50’를 발표할 당시 자국 교역규모 확대를 위해 8개국(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영국, 이스라엘, 케냐, 에티오피아)과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을 추진키로 발표했다. 이후 2022년에 인도(2월), 이스라엘(5월), 인도네시아(7월)와 연이어 양자 CEPA를 체결했으며 현재 튀르키예 등과 협상 진행 중이다.

회사설립 및 사업 시작

(1) 사업면허와 스폰서 제도

UAE에는 그간 본토 내 법인 설립 시 현지인(스폰서) 51%의 지분 참여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 시에는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가 필요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여러 차례 회사법 개정을 거쳐 2020년, 전 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완화(일부 공영화 필요한 산업군 제외),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 선임요건을 폐지하며, 현지 진출 희망 기업에 파트너 물색 부담을 덜어주었다.

다만, 동 법령이 연방 차원에서 발표되었지만 각 에미리트의 기업규제 부서인 경제개발부(DED)에 적용 권한을 위임해 에미리트 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외국인 100% 지분 허용 여부는 전적으로 각 에미리트 경제개발부 내 FDI 위원회 재량에 달려있다. 실제로 75~80%까지만 외국인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나머지 지분은 자국민 스폰서로 하여금 소유하게 한 사례도

있다. 한편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완화 조항은 유한책임회사(LLC) 형태에만 적용된다.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각 에미리트의 경제개발부(DED), 관광청 또는 산업단지관리청 등으로부터 사업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면허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종류가 있다.

사업면허의 종류	사업 내용 및 요건
상업면허 (Commercial License)	- 수출입, 판매, 유통, 저장 / 은행, 보험 / 호텔, 운송 등 활동 기업 - 활동 개시 전에 경제부에 상업등록을 하여야 함
산업면허 (Industrial License)	- 제조업 등 산업 활동 기업 - 최소자본금 : 25만 디르함
전문면허 (Professional License)	- 회계 · 법률 등 전문직서비스 및 예능서비스 활동 기업 - 전체 직원의 수가 제한될 것임
관광면허 (Tourism License)	- 호텔, 숙박, 여행사 등 관광활동 - 활동 개시 전에 경제부에 상업등록을 하여야 함

그동안은 프리존 밖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로컬 스폰서/파트너 또는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하여야 했다. 가끔 스폰서를 잘못 지정하여 영업기밀 누설, 사업지체 등 투자자가 곤욕을 치르는 경우들이 있었으나 현지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불가피했기에 투자자들에게 큰 애로로 작용했던 바 있다. 현재는 법적으로 폐지된 제도이긴 하나, 지분한도와 적용산업에 대한 결정은 각 토후국에 자율재량권이 부여되어 진출 희망 기업들이 진출 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로컬 스폰서/파트너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
요구 면허	- 모든 상업면허	- 모든 전문면허 - 외국기업의 지사, 대표 사무소
지분 소유	- 회사 자본금의 51% 이상 지분 소유	- 없음(단, 토목회사의 경우 1%라도 지분을 소유해야 함)
역할	- 비자 취득, 노동카드 취득, 면허카드 취득, 기타 회사경영 활동 지원	- 비자 취득, 노동카드 취득, 면허 발급 등 지원
급여	- 계약에 정한 바에 따름	- 총액 또는 이익 또는 판매액의 일정비율

(2) 회사의 형태

①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 소유권
 - 1인 유한책임회사 설립 가능
 - 주식은 제3자에게 양도 가능
 - 외국인의 지분은 최대 49%까지로 제한(2021.6월부 요건 폐지)
 - 일반 국민으로부터 주식청약을 받는 행위 불가
- 경영진
 - 5명 이하의 매니저(외국인 매니저 가능)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② 지점(Branch Office) /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소유권
 - 100% 외국인 소유 허용(2021.4월부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 선임요건 폐지)
 - 모기업의 일부이며, 독립적인 법인격이 없음(UAE 내에서 별도 영리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됨)
- 경영진
 - 외국인이 매니저일 가능성이 높음
- 최소 자본금 요건: 250,000디르함(아부다비)

③ Public Joint Stock Companies(PJSC)

- 소유권
 - 정부가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10명 이상의 창립주주(유한책임)
 - 자국민이 최소 51% 이상 소유
- 경영진

- 3~1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회장은 UAE 국민이어야 함)
- 최소 자본금 요건: 1,000만디르함
- 자본금의 25~45%는 상장될 수 있음

④ Private Joint Stock Companies

- 소유권
 - 최소 3명 이상의 창립주주(회사 자본금 전액을 분할 소유, 유한책임)
 - 자국민이 최소 51% 이상 소유
 - 주식은 일반국민에게 공개될 수 없음
- 경영진
 - 3~1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회장은 UAE 국민이어야 함)
- 최소 자본금 요건: 200만디르함 이상

⑤ Partnership Limited with Shares

- 소유권
 - 1명 이상의 일반 파트너(공동 무한책임) + 1명 이상의 참여 파트너(유한책임)
 - 일반 파트너는 UAE 국민이어야 함
- 경영진
 - 일반 파트너가 경영을 맡아야 함
- 최소 자본금 요건: 50만디르함
- 자본금은 주식 형태로 분할되어야 함

⑥ Limited Partnership Company

- 소유권
 - 1명 이상의 일반 파트너(무한책임) + 1명의 이상의 유한책임 파트너
 - 일반 파트너는 UAE 국민이어야 함

- 경영진
 - 일반 파트너가 경영을 맡아야 함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⑦ Joint Venture

- 소유권
 - 2명 이상의 외국인 및 국내 파트너가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기로 계약 합의
 - 1명 이상의 파트너가 자신의 이름으로 상업 활동을 영위하고, 다른 파트너는 나서지 않음
- 경영진
 - 외국인은 경영자가 될 수 없음
- 최소 자본금 요건 : 없음

⑧ Sole Proprietorship / Individual Establishment

- 소유권
 - 1명의 소유자(무한책임)에 의해 100% 소유
 - 전문 면허이고,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하는 경우 외국인이 100% 소유 가능
- 경영진
 - 외국인도 경영자가 될 수 있음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⑨ Civil Company / Civil Works Company

- 상법에 따르면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컨설팅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독립된 법인체인 Civil Company를 설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소유권

- 많은 수의 파트너(무한책임)
-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하는 경우 100% 외국인 소유 가능
- 경영진
 - 경영진이 모두 외국인이어도 무방함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⑩ General Partnership

- 소유권
 - 2명 이상의 일반 파트너(무한책임)로 구성
 - UAE 국민들만 파트너가 될 수 있음
- 경영진
 - 일반 파트너가 경영권을 행사하며,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만장일치에 따라 의결하는 구조를 가짐
-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3) 프리존 안에서의 회사 설립

프리존은 에미리트별 Free Zone Authority가 관할하고 있으며, 각각의 프리존에 대한 규정이나 법령은 차이점이 그리 많지 않다. 프리존에서는 UAE의 회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프리존에서의 회사형태는 아래의 네 가지 회사구조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 Free Zone Establishment(FZE)
 - 주주 1명으로 구성
 - 무역, 유통, 저장 등 사업활동 영위 회사
- Free Zone Company(FZCo)
 - 2~5명의 주주
 - 원재료 수입, 가공, 수출 사업활동 영위 회사

- 외국회사의 지점

-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며, 모회사의 활동을 다름
- 프리존 내에서 사업경영, 마케팅, 컨설팅, IT 등 사업활동 영위 회사

- Freelance Permit

- 모든 프리존에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프리랜스 전문직 활동만 수행 가능
- GCC 소유 지분이 최소 50% 이상이고, UAE내에서 부가가치가 최소 40% 이상 창출될 때 허용

프리존에서 발급하는 사업면허는 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활동의 성격에 좌우되며, 그 형태는 크게 아래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Trading License

- 이 면허는 증서에 명시된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Trading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만약 프리존 내 회사가 UAE로의 판매를 원한다면 UAE의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야만 가능함

- Industrial License

- 상품의 생산이나 원자재를 수입하여 프리 존 내에서 제조한 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제조업자에게 필요한 면허임

- Service License

-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게 필요한 면허임

(4) 제3기관의 각종 인·허가

UAE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특정된 제3의 정부기관으로부터 목적하는 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 업 활 동	인허가 담당기관
은행, 환전, 금융 컨설턴트	The Central Bank of the UAE
보험	UAE Insurance Authority
산업 활동	Ministry of Economy The Environment Department (각 에미리트)
병원, 사립클리닉, 의료실험,약품	Ministry Of Health
자동차 렌탈	Traffic & Transportation Department (각 에미리트)
미디어 관련 활동(광고, 온라인 거래, 홈쇼핑, 인쇄, 방송 등)	National Media Council
회계감사, 외국기업 지사	Ministry of Economy
육아, 간호	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노동 서비스	Ministry of Labor
식물재배, 농장, 가축 거래, 종자 거래, 검역, 수의	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Agriculture or Environment Department (각 에미리트)
종교 관련 활동	Islamic Affairs and Awqaf
법률 회사	Ministry of Justice
사립학교, 유치원, 체육관	Ministry of Education
항공운송, 항공화물	Department of Civil Aviation General Civil Aviation Authority
통신장비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엔지니어링, 건설	Relevant Municipality (각 에미리트)

(5) 회사설립 절차와 소요시간

UAE 내에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절차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다. 각 절차마다 쉽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서류 확인 보완, 설명 등의 부가절차를 거치면서 설립절차가 복잡해지고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회사 설립 후 실제 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회사 설립 후 2달 이내에 경제부에 상업등록(Commercial Registration)을 하여야 한다.

①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LLC를 설립하는 경우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은행에서 받은 불입자본 증명서
- 납입자본금 등을 증명하는 UAE등록 회계법인의 증명서

- 기타 회사설립 신청서에 명시된 서류

② 지사 및 연락사무소

지사 및 연락사무소의 설립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회사(본사)의 정관
- 회사(본사)의 과거 2년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 사업자 등록증
- 회사 사업목적 등 내용이 담긴 소개서(Company Profile)
- UAE에 에이전트가 있는 경우 에이전트의 동의서(없는 경우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위의 서류는 모두 영어로 작성(번역)하여 국내에서 공증을 받은 후 상공회의소 및 주한 UAE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인증에 약 3일 소요). 참고로 두바이에서 중견 규모의 LLC를 설립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사업자등록증을 받기까지 약 15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 표는 두바이 경제개발부(DED)에 게재된 Doing Business에 따른 개략적 회사 설립 절차이다.

단계		내용	소요 비용
1단계	초기 승인 (Initial Approval)	사무실 임차 및 사업활동에 따른 인·허가 취득	서비스 비용 AED 100 + 행정 처리 비용 AED 20
2단계	기업 상호 신청	경제개발부 기준에 맞는 상호 신청	서비스 비용 AED 600 + 행정 처리 비용 AED 20
3단계	사업자등록증(Trade License) 취득	상공회의소 회원증, 회사 설립증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취득	사업활동에 따라 상이 (Invest in dubai 웹사이트*에서 대략적인 수수료 확인 가능)
4단계	상공회의소 회원 등록	원산지증명서, 기타 증명서 발급, 정부의 각종 혜택 수혜 위해 등록	업종에 따라 상이 (General Trading AED 1,200)

* Invest in Dubai: <https://invest.dubai.ae/business-setup-recommendation>

(6) 즉석 사업자등록증(Instant License) 제도

두바이 경제개발부(DED)는 즉석 사업자 등록 제도를 도입해 신규 기업의 사업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 상업 및 산업 라이선스 등록 절차는 회사 사무실 공간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수 서류로 요구되는 반면, 즉석 허가증은 첫째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서가 면제되며 회사설립계약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다. DED에서 등록 허가하는 모든 산업 활동의 사업자 등록을 서비스 센터, 행복 라운지, 스마트 라운지, 온라인 서비스 등의 경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단, 종합 무역 상사는 전자 무인기기를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최초 비용 AED 10,000은 고정 금액이며 최초 승인, 사업자등록증 발급, 두바이 상공회의소 가입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수 서류는 없으나 그 외의 경로를 통해 즉석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외국 회사 경우, 현지 사업 파트너와 매니지먼트 중 한 측의 직접 방문과 함께 양 측의 여권 사본, 외국인 매니지먼트의 거주 비자 사본 등이 요구된다.

단계	절차
1단계	법적 유형 선택
2단계	산업 활동 선택
3단계	법적 유형에 따라 파트너를 추가하고 파트너 할당의 자본과 양측 간의 손익 분배 내역을 증빙
4단계	상표명 보호
5단계	자본의 가치를 상업 등록 정보에 기입 (타 항목은 자동 기입됨)
6단계	전자 기기 내에 정관 발급 관련 옵션이 제시되며, 신청자는 이를 선택 혹은 건너 뛸 수 있음.
7단계	납입 요청서 발급
8단계	지불

2017년 10월 아부다비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산업다각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자 간소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라이선스 유효기간은 약 2년으로 토지 매매 및 창업 계약서 없이 취득 가능하다. 동 제도는 UAE

예비 사업자의 회사 설립과 프로젝트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허 소지자는 프로젝트 설립을 위한 부지 물색, 타당성 조사 시행, 직원 취업 비자 취득, 은행 계좌 개설, 해당 정부 부처에 필요 서류 승인 등의 절차를 2년간 진행할 수 있다. 라이선스 신청은 아부다비 비즈니스 센터(ADBC) 방문 혹은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비용은 AED 500~12,000로 산업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7) 아부다비 이중 사업자등록(Dual License) 제도

2018년 9월 아부다비 경제개발부는 아부다비 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들에게 자유무역지대 외부 본토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중 사업자등록(Dual License) 시행을 발표하였다. 적용 대상은 일단 아부다비 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만 대상으로 하고 점차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회계제도

(1) 회계기준

UAE는 자국의 회계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 Standard(IA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IFRS))을 그대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2) 감독기관 및 회계정보의 신뢰성

UAE의 공개자본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경우는 DFM 및 ADX의 상장규정에 따라 재무제표 등 주요 재무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증권거래소의 감독기관인 DFSA 또는 SCA를 통해서 상장회사들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등 회계 및 재무정보의 투명성을 나름대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회계감사 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회계감사에 있어 느슨한 부분이 없지 않다.

예들 들어, UAE의 주력업종인 부동산개발 및 건설회사의 경우에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고, 건설기간이 장기간임에 비추어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에

따라 회사전체의 수익성이나 재무건전성이 급격하게 변동하여 회사의 가치산정 및 계속기업의 판단 등에 있어 실질과 다른 결과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3)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상장된 회사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비상장 법인의 경우는 제출의무가 없다. 단지 실무적으로 회사는 Trade License를 매년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한 프로젝트의 입찰참여 등의 경우 입찰 서류의 일부로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지점이나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고, 본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번역 후 간단한 검토를 받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프리존 내 일반회사의 경우에는 프리 존 당국이 자체적인 규정 및 법령을 가지고 있으며, 회계감사의 의무는 프리존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Jebel Ali 프리존과 Dubai Airport 프리존의 경우는 매년 감사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Dubai Technology and Media 프리존의 경우에는 제출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조세 제도

(1) 일반 환경

UAE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부가가치세(2018년 1월 도입)와 담배·전자담배·에너지음료·탄산음료에 대한 개별소비세(2017년 10월 도입, 2019년 12월 추가 도입)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에 연방국세청(Federal Tax Authority)을 설립하고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절차법 등 관련 세법도 제정하였다. 에미리트별로 별도의 세법 또는 관련 규정을 가지고서 이를 통해 법인 및 개인소득의 수준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실제 개인소득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법인세는 오일관련 회사(두바이 50%, 아부다비 55%) 및

외국은행의 지점(20%)에 한해 부과해왔으나, 2023년 6월 1일부 연방법인세(Corporate Tax)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담배·에너지음료·탄산음료)

① 부가가치세(VAT)

UAE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2018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를 시행하였다. 당초 GCC 6개국이 공동으로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먼저 시행하게 되었다. 표준 세율은 5%인데, 우리나라가 10%, 유럽 국가들이 20% 수준의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다.

UAE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영세율 및 면세, 환급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출, 운송, 주거용 부동산, 교육 및 헬스케어 등에 대해서 영세율이나 면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필수 식료품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지 않고 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5%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

영세율, 면세 및 환급 제도

구분	내용
영세율 (zero rated)	GCC 국가 밖으로의 수출, 국제 운송, 귀금속 투자, 신축 주거용 부동산(건축 후 3년 이내), 교육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 원유 및 천연가스 등
면세 (exempt)	금융 서비스(수수료는 면세에서 제외), 주거용 부동산(건축 후 3년 이후), 나지(bare land), 국내 승객 운송 등
환급 (refund)	외국인 관광객, 자국민의 신규 주택 건설, 외교사절단 등

UAE 내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과세대상 상품 및 서비스 공급액이 AED 375,000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Tax Registration Number)를 발급받아야 한다. 과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

공급액이 AED 187,500을 초과하고 AED 375,000이하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 등록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등록을 한 사업자는 연방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큰 사업자(연간 매출액 AED 1억 5천만 초과)는 월별 단위로, 매출액이 작은 사업자는 분기 단위로 신고한다. 한편 2018년 11월부터는 일부 소기업,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 등에게 반기 단위 신고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UAE의 부가세 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법인세, 소득세 등이 없었던 지역이라 신규 세금 부가는 내구소비재 및 건설기자재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등 2분기 정도의 적응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길게 3분기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평균 3.8을 기록하며 여파가 남았으나, 2018년 10월부터 안정세를 보였다.

② 개별소비세(담배·에너지음료·탄산음료)

UAE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2017년 10월부터 건강 증진을 목표로 담배 및 에너지음료에 100%, 탄산음료에 50% 세율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다. 동 개별소비세도 GCC 6개국이 공동 도입하기로 한 것이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가 2017년 6월 가장 먼저 도입하였고, UAE가 2017년 10월 GCC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도입하였다. 이후 2020년 1월, 국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과세 범위를 확장하였다. 추가된 과세대상 및 과세율은 설탕 첨가음료 50%, 전자담배 관련 모든 제품 100%이다.

(3)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① 개인소득세

현재 UAE에서는 연방 차원이든, 개별 에미리트 차원이든 소득의 형태를 불문하고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법인세

기존 UAE는 연방 차원에서 부과되는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개별 에미리트에서 석유회사 및 외국은행의 지점에 한해 법인세를 부과해왔다. 아부다

비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 석유에 대한 권리 및 기타 탄화수소 물질을 거래하는 회사에 대한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두바이 50%, 아부다비 55%의 세율을 적용했다. 제적인 납부세액은 회사의 영업이익을 기초로 하여 합의된 회사와 해당 에미리트와의 사업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각 에미리트별로 부과되는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법인세는 대체적으로 20%이며, 큰 차이는 없으나 구체적인 세칙은 상이했다.

2022년 1월 31일, UAE 재무부(MoF)는 2023년 6월 1일부로 자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연방 법인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 진행된 OECD/G20 IF 총회에서 제안된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IF 총회에서는 BEPS 프로젝트(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행위 대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5% 수준으로 제안했으며, UAE는 프로젝트 참여국으로서 제시된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에 동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자국 내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UAE 정부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기존 법인세 과세 대상이었던 석유·가스 분야는 신규 연방 법인세 대상에서 제외돼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은행 지점도 과세대상이나 상세 지침은 별도로 발표된 바가 없다. 이같이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UAE 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었으며, 프리존 기업의 경우 법인세 신고 등의 의무는 부여되나 세금혜택은 주어질 예정이다. UAE 연방 법인세 적용시기와 세율은 다음과 같다.

◉ UAE 연방 법인세 적용 시기 및 세율

구분	내용
적용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연도 2023년 6월 1일부로 부과 - 회계연도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인 경우 2023년 7월 1일부 적용 - 회계연도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4년 1월 1일부 적용
적용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소득이 AED 375,000보다 적을 경우 0% 적용 - 과세소득이 AED 375,000보다 많을 경우 9% 적용 - OECD BEPS 프로젝트의 Pillar 2*에 해당되는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경우 별도 세율 적용 * 기업의 통합수익(Consolidated global revenue)이 EUR 7억5000만(약 AED 31억 5천만)을 초과할 경우

(4) 기타

① 관세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GCC 회원국 간의 관세동맹에 따라 UAE 및 GCC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그 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5%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프리존은 관세동맹에서 지정한 무관세 해당지역에 속하지 않는다.

② 사회보장연금 지출

연금 및 사회보장법인 연방법 No.7(1999)에 따라 UAE 국적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회사 및 해당 피고인은 급여의 일정비율을 GPSSA(General Pension and Social Security Authority)에 납부하여야 한다.

- 고용인 : 12.5%, 피고용인 : 5%
- 외국인을 위한 규정은 없음

③ 개별 에미리트가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수수료

개별 에미리트에서 세금(tax)이라고 명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수수료(fee)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이전 수수료(Property Transfer Fee), 부동산 임차 수수료(Municipality Fee for annual rent) 등을 부과하고 있다. 부동산의 이전(transfer)시 매매가격의 일정 비율(두바이는 5%, 아부다비는 5~7.5%)에 대해 이전 수수료(매도인 및 매수자가 분담 비율을 합의)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주거용 부동산 임차와 관련해서는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임차인에게 연간 임차료의 5%를 Municipality Fee로 부과하고 있다. 사업용 부동산 임차와 관련해서는 두바이는 연간 임차료의 2.5%를 market fee로 부과하고 있다.

호텔 및 부대 시설(레스토랑 등) 관련해서는 각 에미리트별로 그 수입에 대해서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두바이는 municipality fee로 7% 부과, 아부다비도 10%의 수수료(tourism fee 6%, municipality fee 4%)를 부과해 왔는데, 2018년 중반부터 5.5%(tourism fee 3.5%, municipality fee 2%)로 인하하였다.

(5)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Treaty)

UAE는 한국과 2003년 9월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한-UAE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내용은 한국 및 UAE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 10%의 제한세율로 과세되고, 한국기업이 UAE에 제공하는 기술, 산업장비 등의 사용료 소득은 한국에서 일괄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2019년 2월 UAE 정상외 방한을 계기로 양국 경제교류와 투자를 활성화하고, 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현행 협정을 전면 개정하였다. 개정협약에는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도 10%의 세율로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권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과 제한세율은 현행과 동일하다. 또 납세자가 거주지국이 아니더라도 조약 당사자 양국 모두에 상호 합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UAE는 원천징수세율이 높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과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맺고 있어, 아프리카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에게 UAE는 아프리카 투자의 매개체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노무관리

(1) 노무환경

UAE 정부는 전체 인구 대비 자국인의 비율은 약 10%에 불과하다. 최근 Dubai Municipality 전망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로 지속될 경우 민간부문의 외국인 근로자비율은 99%, 공공부문의 외국인 근로자비율은 91%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근로 인력 편중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UAE

자국민 고용을 장려함과 아울러 일정 인원의 UAE 자국민 고용을 의무화하는 노동관계법(Emiratization)을 일부 직종에 한하여 적용해왔다. 2022년 5월 발표한 개정법 Ministerial Resolution No.(279)에 따르면, UAE 본토 내(프 리즌 기업 제외) 50인 이상이 근로하는 민간부문 사업체에 2022년부터 5년간 매년 2%씩 자국민 고용 의무 비중이 적용된다. 에미라티제이션 비율 준수 여부는 UAE 노동부에 등록을 마친 자국민의 근로 허가증(Work permit)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2023년 1월까지 각 기업에 할당된 수의 자국민을 채용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 가해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Cabinet Resolution No.(19/5m)에 따라 채용하지 못한 자국민 수당 매달 6000디르함(약 1634 달러) 수준의 기부금(Contribution)이 부과되고 이는 매년 1000 디르함씩(약 272달러) 증액될 예정이다.

노동관계 기본법인 연방노동법은 Federal Act No.8(1980) 및 No.12 (1986), Federal Decree-Law No.33(2021)이며 관할 정부기관으로는 연방 노동부가 있다.

노동법에서는 근무시간, 휴가, 의료혜택 등 기본적인 노무자 및 사용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노동법의 규정은 고용계약서상의 어떠한 내용도 노동법의 규정보다 피고용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 이것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계약은 크게 고용 기간이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다. UAE의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을 둘 수 없으며, 노사 간의 분쟁이 있거나 노동법의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UAE 노동부가 1차적인 중재자로서 분쟁 해소를 위해 간섭하게 된다. 노동부의 중재에 불만이 있는 경우 노사 공히 이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노사중재를 위한 행정적 장치는 단계적으로 조정위원회(Conciliation Committee)와 노사중재원(Supreme Arbitration)이 있으며 각각 14일 및 30일 이내에 검토 및 중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UAE의 주택 임차비가 매우 비싼 실정에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사례 등이 인권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인력 알선 전문업체와 인력 공급 사업자 간에

계약이 체결되고, 이 과정에서 실제 내용과 계약 내용이 상이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아울러 2016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고용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UAE 노동법이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개정 내용에는 통합 근로 계약서의 규정, 이직 관련 규정, 근무조건, 고용주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등의 내용 등이 추가되었다.

(2) 노동법의 주요내용

노동법은 UAE 본토 내 모든 고용 계약에 적용되나, 노동법 제3조에 따라 UAE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가정부, 농축산업 관련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프리존의 경우 관할청마다 노무 법령이 상이할 수 있어 HR 조항, 건강보험 등 상세 내용에 대해 각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① 고용 계약서

기존 노동법상 고용 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한 계약(limited period)과 만료기간이 없는 무한 계약(unlimited period)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2021년 개정법에 따라 무한 계약 형태는 폐지되고 최대 3년 기간의 유한 계약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기존의 무한 계약을 모두 기간 유한 계약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고용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은 1) 임금과 보수, 2) 계약 체결일, 3) 근무 시작일, 4) 계약의 성격 및 고용 기간(유한 혹은 무한), 5) 업무 내용, 6) 근무 장소 등의 정보가 적혀 있어야 한다. 계약서는 노동청에서 준비한 아랍어와 영어의 기본 양식이 있으나, 반드시 이 노동청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어(영어)와 아랍어로 작성된 경우 두 언어 사이에 해석 차이가 발생하면 아랍어 해석을 우선한다. 고용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는 3부 작성하며, 1부는 고용주, 1부는 근로자, 1부는 노동부에서 보관해야 한다.

신규 채용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선에서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으며, 고용주가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한다. 근로자가 수습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의 총 근무 기간으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내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15일 이내 노동부에 서면으로 근로자 이름, 나이, 채용일, 급여, 근로내용 및 등록 카드 번호 등을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일 경우 고용 전에 반드시 노동부로부터 노동 허가서(Work Permit)를 취득해야 한다. 계약은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해 연장하거나 갱신할 수 있고,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 연장 또는 갱신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은퇴 연령은 60세이며 그 이후에도 고용주와 직원이 상호 동의한다면 직원은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근무를 지속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

현행 UAE 노동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단체 교섭(Collective Bargaining)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임금

임금은 기본임금과 각종 보조금 등을 포함한 전체임금으로 나누어진다. 중요한 차이는 퇴직금 계산 시 전체임금이 아닌 퇴직 직전 근로자에게 지불된 기본 임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법정근무시간

최대 1일 8시간 또는 1주일에 48시간을 넘지 못한다(라마단 기간 중 1일 2시간 감소). 단 무역, 호텔, 경비, 레스토랑을 포함한 노동부 장관이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추가 1시간(1일 9시간) 연장 근무를 시킬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은 휴식 없이 5시간 이상 연속으로 일할 수 없으며 휴식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추가근무수당

근무시간 외 추가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연장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당은 기본임금 외에 시간당 추가 25%의 특별근무수당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며, 심야 근무(저녁 9시~새벽 4시)를 하게 된 경우 기본임금 외에 시간당 50%의 특별근무수당을 지급 해야 한다.

⑥ 휴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매달 2일,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연간 3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으며, 휴가 중에도 주택보조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1년 휴가 일수를 최소 2회 이상에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 연차는 당해연도에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주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이월에 동의한 경우 매년 부여되는 연차 휴가 일수의 50% 미만은 이월이 가능하다.

병가의 경우, 1년에 90일 이하로 사용이 가능하며, 첫 50일간은 유급으로 인정, 이후 30일은 급여의 절반, 나머지는 무급으로 분류된다.

연방법에 따르면, 임신부에게는 출산휴가 60일이 지급되고, 업무 재개 후 4개월 동안 근무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남성 직원의 경우 분만 기간 중 3일의 휴일만 지급된다. 이 외 에미리트별로 출산휴가 규정이 약간씩 상이한데, 두바이의 경우에는 출산예정일 앞뒤로 45일간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최대 120일까지 연차 및 무급휴가를 적용해 사용할 수 있다.

경조사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직계가족 사망 등 불가피하게 휴가를 사용해야할 시 연차에서 공제된다. 무슬림 직원의 경우 근무 기간 중 단 한번 성지 순례(하지; Haj) 목적으로 최대 30일간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⑦ 업무상 재해

UAE 노동법상에는 산재 관련 규정은 따로 없으나, 산재 방지를 위해 회사는 의약품과 붕대 및 기타 응급 처치 키트를 잘 보이는 곳에 구비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직 근로자들에게는 작업장에서 업무 중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는 상세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동 지침서는 아랍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비아랍권 근로자를 위해 다른 언어 작성본도 구비해야 한다. 만약 현장직 근로

자가 작업장에서 부상 또는 사망 시, Article 149 of the Labour Law에 의거 근로자의 사망하기 전 마지막 임금을 기준으로 2년(24개월)치 기본임금과 동등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이는 18,000디르함 미만이거나 35,000 디르함을 초과할 수 없다.

⑧ 계약 종료

고용계약은 언제든지 상호 합의 하에 또는 당사자 중 한편이 최소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 종료될 수 있다. 통지 기간동안 근로자의 임금은 그대로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이 통지 기간동안에도 고용계약은 유효한 상태이므로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무통지 즉결해고

근로자가 노동법 120조에 열거된 행동을 하여 고용주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를 제공한 경우 사전 통지(30일 기간) 없이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또한 반대로, 고용 상황이 법 121조에 해당하는 경우(예: 임금의 미지불 혹은 고용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경우) 근로자 또한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통지 절차 없이 종료할 수 있다. 근로자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계약의 종료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법원은 근로자의 최종임금을 기초로 계산된 3개월분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피해를 보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⑩ 퇴직금 지급

1년 또는 그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고용 기간 처음 5년 동안 매년 21일 동안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 (2) 근무기간 5년 이상부터는 매년 30일 동안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단, 퇴직금 총액은 2년 동안의 보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외에 해고 통지 기간에 상응하는(예: 30일간의) 임금,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예: 최대 3개월간의) 임금, 또한 미사용 연차 일수 및 추가 수당 등의 잔액 등을 받을 수 있다. UAE 법원의 판례법에

의하면 생활 보조금 및 특별 보너스 등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나, 고용 계약서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임금의 한 부분으로 합의된 영업성과 보너스나 커미션 등은 퇴직금액 산정 시 임금으로 간주된다.

⑪ 노동계약 기간 연장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특정한 일의 종료 후에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갱신된 계약은 그 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⑫ 사회보장세

국민연금법(The Pensions & Social Securities Law, Federal Law No.7 of 1999)에 의하여 근로자가 UAE 국민 또는 GCC 국적을 가진 근로자 중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에게 연금을 제공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UAE 국민의 경우 월급의 특정 비율을 연금 공사에 지불하게 되어 있다(민간 기업인 경우 고용주 부담액은 15%이나 국가가 이중 2.5%를 보조함). 아부다비의 경우 조금 더 수월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며, 근로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에미리트의 경우 건강보험 의무화를 통해 거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기준 아부다비, 두바이, 아즈만에 거주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건강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하며, 통상 고용주가 보험을 들어준다. 샤르자의 경우에는 정부기관 근로자들에 한해 의무화하였고, 민간 부문 근로자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⑬ 분쟁 조정

고용 관계에 있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 해당 사업체가 등록된 에미리트에 있는 노동부로 분쟁 해결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분쟁에 대한 민원이 노동청에 접수되면 당사자는 노동청으로 참석이 요청되어 서로의 입장을 진술하고, 대략 2주 이내에 노동청의 권고안을 제시받게 된다. 당사자들이 이 권고안

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분쟁 안은 노동법원으로 접수되며, 법원의 분쟁 조정 일 날짜를 기다리게 된다. 고용 분쟁과 관련된 민원/소송 신청은 분쟁의 원인인 해당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1년이 지나면 그 시효가 만기 되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⑭ 노동법 비적용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정부, 공무원 등에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⑮ 급여 수준

일반적으로 UAE 자국민의 임금은 외국인 대졸자 임금의 2~3배 수준이며, 대학 졸업 후 금융 및 엔지니어링 등 전문 직업에 대한 경험 또는 자격이 있는 자국민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다.

⑯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 제63조에서는 근로자의 직종, 작업장 등에 따라 자국민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공표되지 않고 있다. 단, 2006년 노동부는 Ministerial Resolution No.286에 의거하여 UAE 자국민에 대해 최저 임금제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 대학 졸업자: 월 12,000디르함
- 전문대학 졸업자: 월 7,000디르함
- 고등학교 졸업: 월 5,000디르함

두바이의 경우 Dubai Government Human Resources Management Law No.27(2006)에 의거하여 두바이 정부 소속 공무원의 최저임금을 월 4,250디르함으로 책정하였으며, 이는 두바이 정부 공무원이면 UAE의 자국민 및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참고로 월급이 4,000디르함 미만인 근로자는 이후에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스폰서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는 노동법의 규제라기

보다는 이민법상의 규제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가정부를 고용(비자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 월급이 25,000디르함 이상이어야 한다.

⑰ 정기급여 이외의 보상

정기급여 이외에 통상적으로 연간 100~200%의 상여금(마케팅 분야 종사자의 경우 연간 약 200~400%가 관례) 및 1년에 1회 이상 피고용자의 본국까지의 왕복항공권을 지급하고 있다.

⑱ 가정부 보호 노동법

외국인 가정부 학대 및 처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며 2017년 9월 가정부 보호 노동법이 승인되었으며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 내에는 노동 시간, 연차, 여권을 포함한 개인서류를 소지할 권리 등이 명시되어있다. 또한 18세 미만인 자의 고용, 계약서 외의 업무 지시, 가정부의 신체적 상해 노출을 금지하고 아래 사항을 의무화하고 있다.

-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기준 10일 이내의 급여 지급 의무화
- 주 1회의 휴일
- 8시간의 연속 휴식을 포함하여 총 일일 12시간 이상의 휴식
- 의료 보험 및 2년에 한번 고국으로의 왕복 항공권 제공
- 적당한 식사 및 주거 환경 제공
- 연간 30일의 휴가 및 병가 제공
- 여권과 신분증을 포함한 개인 서류를 소유할 권리

중재와 청산 제도

(1) 중재 (Arbitration)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파트너들이 지불을 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최후의 해결방법은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다. UAE에서의 소송은 일반적으로 제1심 법원에서 시작하는데, 소송

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아랍어이고 이러한 소송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그러므로 보다 쉽고 간편한 문제해결 방법으로서 UAE에서도 중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계약의 쌍방이 중재에 동의를 하면 계약 관련 분쟁은 중재 법원에서 해결하게 된다. 계약 체결 시 쌍방은 중재에 사용될 언어에 합의해야 한다. 또한 계약의 쌍방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재자에 동의를 해야 하는데 중재자가 복수일 경우에 쌍방은 서로 같은 수의 중재자를 둘 수 있다. 만약 계약의 쌍방이 1명의 중재자에 동의했다면 분쟁 발생 시 법원은 그 중재자를 지명한다. 만약 계약의 쌍방이 3명의 중재자에 동의했다면 쌍방은 그 중 각자의 중재자를 1명씩 지명하고 그 중재자들이 상호간에 합의하여 제3의 중재자를 지명해 의장의 역할을 맡게 한다. 또한, 최대한의 공정함을 위해 중재 법원은 단독 중재자나 중재 의장의 국적이 쌍방의 어느 국적과도 같지 않게 한다. 그러나 중재에 있어서 유리하려면 명확하고 잘 계획된 중재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중재 조항에는 중재자의 수, 중재의 언어, 중재의 장소와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중재 조항에는 패소인이 중재 비용과 승소인의 변호인 수임료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불한다는 내용도 명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승소인은 중재에 필요한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UAE 정부는 2018년 5월 신규 중재법령(Arbitration Law)을 발표하였다. 해당 법령 제정 이전에는 기존 사법 시스템 외에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분쟁 해결 과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오랫동안 연방 중재법 제정이 지연된 바 있다.

신규 법령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UAE의 중재제도는 1992년의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Law; CPL)에 의해 규율되었으며, UAE는 1982년부터 국가간투자분쟁해결협약(ICSID)의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바, 그에 의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운영해 왔다.

신규 중재 법령은 국제 상업중재에 관한 UNCITRAL Model Law의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동 법안에는 중재재판의 관할권, 재판관의 구성과 법원의 관여 정도, 중재 절차, 중재 결정에 대한 불복 등의 규정이 담겨 있다.

UAE내에서 발생하는 중재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중재 센터의 개설통크게 늘었는데, 현재 UAE내에는 다음과 같은 중재 센터들이 활동하고 있다.

- The Duba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 The DIFC-LCIA Arbitration Centre
- The Abu Dhabi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entre
- The Sharjah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
- Ras Al-Khaimah Commercial and Arbitration Centre

최근에는 UAE의 경기 침체,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에이전트와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UAE내 제품판매 독점계약을 한 경우, 에이전트와의 분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에이전트로 변경하고자 할 때 중재 및 소송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고 결과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2) 청산(Exit)

연방법 No. 8(1984)에 의하면 UAE에 설립된 회사는 △정관에 기재된 존속 기간의 만료, △회사 사업목적의 소멸, △회사의 자산이 소멸되어 나머지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 불가능, △합병 등의 청산사유가 발생하면, 정관에 명시된 의결정족수로 또는 의결 정족수 조항이 없는 경우 주주 또는 파트너(Partner)들의 만장일치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을 의결할 수 있다.

회사의 청산기간 중 회사의 형태는 유지되어야 하며 모든 회사의 문서에는 ‘기업 청산 중’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기입되어야 한다. 회사청산 직후 실질적인 이사회의 권력은 사라지나 모든 청산업무가 끝날 때까지는 회사를 운영하는 책임이 주어진다. 이사회의 권한은 청산개최기간 중에도 남아있고, 청산인의 권한과 중복되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권한은 인정된다.

UAE의 경우 산업 및 경제구조가 아직 성숙단계에 있지 않아 회사의 청산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청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채권자등의 절차, 청산사실 공개 절차, 노동부·경제부 등 관련부서로부터의 허가 절차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UAE의 현지 법무법인을 통하여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UAE의 청산 관련 절차와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청산인 임명

청산인은 파트너가 임명하거나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임명한다. 법원의 판결로 인한 청산의 경우 판사가 청산 방법 및 청산인을 임명한다. 청산인 임명에는 2,010디르함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청산인 인명 후 경제부에 면허취소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명된 청산인은 청산 과정에 필요한 모든 업무가 가능하며 종료일까지 6개월마다 청산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주주총회 회의록 혹은 파트너 결의서의 공증본
- 청산인의 공증 서명, 경제부가 발행한 청산인 면허, 회계감사 자격증
- 기업의 청산을 승인하는 청산인의 서한

② 기업 청산 공고

경제부 내 법무부서는 위의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근무일 기준 1~3일 이내에 면허취소 승인을 발행한다. 이 승인을 취득한 이후 면허취소 비용 3,010디르함을 지불하면 청산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반 비용의 지불을 완료하면 1일간 2개의 현지 지역신문(아랍어)에 기업의 청산 공고를 해야 한다. 이후 45일간 채권자에게 권한을 행사할 기회를 준 뒤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공고가 된 현지 지역신문의 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회사의 자산 기록

청산인은 임명받는 즉시 제공받은 기업의 모든 문서와 회계장부를 이용해 회사의 자산을 기록해야 한다. 작성된 자산과 채무 목록은 대표이사와 매니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청산인은 청산 업무를 기록하는 장부를 만들어야 한다.

④ 채무변제 및 잔여재산 분배

청산인은 청산 종료 일자까지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회사가 모든 채무를 이행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 선취권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회사의 자본을 분배해야 하며, 청산업무 중에 생기는 채무는 우선 변제해야 한다. 채무 정리 후에 남은 자본은 회사 설립 시에 투자한 만큼 나누어 지불하며, 이후에 남은 자본은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한다. 투자한 만큼의 자본을 나누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 설립 시 지정한 대로 손실을 분배한다.

⑤ 최종 보고서 작성

청산이 종료된 직후 청산인은 청산업무에 관련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보고서가 승인되면 청산업무가 종료된다.

⑥ 기업 면허 취소

기업 면허 취소를 완료하려면 이민국을 통해 청산하려는 기업이 스폰서와 고용인의 비자를 모두 취소하고 노동부를 방문해 현재 기업 면허와 관련된 노동 계약서가 없음을 증명하는 NOC(No Objection Letter)를 취득해야 한다. 기업 면허 발행 시 업종의 특수성으로 관계 기관(예 : 두바이 보건청, 두바이 시청 등)의 승인을 득한 경우, 기업 면허 취소 시에도 동일 기관의 승인 서한을 취득해야 한다. 이 과정을 완료하면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고 경제부를 방문해 기업 면허 취소 과정을 마칠 수 있다.

- 업종 관련 관계 기관의 승인 서한(통신 업체, 수도공사, 우체국 등)
- 노동부가 발급한 NOC
- 이민국이 발급한 기업 스폰서 하의 모든 비자 취소 증빙
- 파트너/주주들의 기업 청산 동의 서한
- 기존에 제출한 기업 면허취소 신청서

상기 서류들은 기업의 형태를 막론하는 필수 서류이며, 법인의 경우 아래의 서

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지사의 경우 청산인을 임명할 필요가 없으며, 지사의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가 지사 철수에 이의가 없음을 증명하는 NOC와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 기업 면허 취소를 진행할 수 있다.

- 파트너가 승인하고 청산인이 직인한 청산 최종 보고서
- 기업 청산을 공고한 현지 지역신문(아랍어)
- 공고 이후 45일의 채무 정산 개최 기간 동안 제기된 권리 주장이 없다는 증명 혹은 제기된 권리 요청의 해소 증명
- 청산 증명서 사본
- 기업 청산/철수에 대한 경제부의 승인

UAE 정부는 2016년에 국제 표준에 부합되도록 파산법(Federal Law No.9 of 2016)을 제정하였다. 이전까지는 파산 및 회생을 다루는 단일 법체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상사거래법이 중심이 되어 민법, 회사법, 민사소송법 등 조항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었다. 동 법은 산발적이고 비효율적인 기존 파산·회생 법체계를 화의, 회생, 청산으로 정리 보완해 단일 파산법 체제를 도모했다. 기존 파산법은 적용 범위가 무역상(traders)으로 제한되어 있어 UAE 내의 기업들을 총체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실용성 또한 부족해 거의 학술적 용도로만 사용됐다. 파산법 제정으로 UAE 기업 및 개인들은 채무 구조조정을 통해 즉각적인 파산을 피할 수 있게 됐고, UAE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로 국가 경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중동지역에서 단일 파산 법 제도를 현대화한 최초 사례로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투자 매력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모범사례로서 타 중동국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알제리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일반 경제 현황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알제리의 2021년 GDP는 1,646억 달러(2022년 GDP 추정치: 1936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3,701달러(2022년 1인당 GDP 추정치: 4,294달러)이다. 2014년 하반기부터 2021년 동안 국제 유가의 지속적인 하락 현상은 석유·가스 수출에 크게 의존(외화수입의 95%, 정부재정의 60%)하는 알제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준 결과, GDP 성장률은 2019년 0.8%까지 하락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 19 확산의 영향으로 -5.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2021년에는 2020년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효과로 4.0%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2022년에는 유가 상승 및 경상수지 개선으로 전년대비 4.7% 경제성장이 전망된다. 2022년 상반기부터 유가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석유 공급에 대한 우려로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일시적인 추세를 보인바, 이는 총수출의 95% 이상을 원유·가스에 의존하는 알제리 경제에 호재로 작용하여 경상수지 및 정부 재정이 개선되었다.

소비자 물가의 경우 알제리 정부의 식료품 가격 안정화 등 인플레이 억제정책의 효과로 2012년 8.9%에 이르던 물가상승률이 2014년까지 안정세(2.9%)를 이루었으나, 수입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2017년 5.9%까지 증가하였다. 이에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 통제를 강화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0년 2.1%를 기록하였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 및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7.2%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고, 2022년 8.7%의 물가상승률이 전망된다. 실업률의 경우, 2000년대 초반

20%대에서 2018년 11.2%대로 크게 둔화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 상황 악화로 2020년 16%, 2021년 13.4%을 기록 중이며, 2022년에는 13.7%로 전망된다.

2021년까지 국제유가 하락 및 석유 생산량 감소로 인한 수출액 감소로 알제리의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정부의 강력한 수입 억제 정책으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182억 달러 적자, 2021년에는 111억 달러 적자를 기록, 2022년에는 48억 달러 적자가 전망된다.

외환보유고의 경우, 2019년 1월 알제리 역사상 최초로 800억 달러 선이 무너진 이래 급속하게 감소하며 2020년 말 489억 달러로 보고되었으며,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의약품품 구입 등으로 인한 지출 증가로 2021년에는 433억 달러까지 낮아졌으나 최근 정부의 강력한 수입 억제 및 외화 유출 억제 정책으로 2022년에는 488억 달러로의 증가가 전망된다.

석유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알제리 경제는 2015년 이후 유가 하락으로 인해 경기 침체를 경험한바, 알제리 정부는 기존의 탄화수소 의존 경제 구조를 재편하고 산업의 다각화를 추진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현지 생산을 장려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경상수지 적자 및 외환보유고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현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외환 거래를 통제하고 수입 면허 제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투자 유치 증대를 목적으로 투자 장벽을 철폐하고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7월 신투자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2016년 제정된 투자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 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일부 투자 장벽을 제거하며, 투자자에 대한 혜택을 증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투자 장벽이었던 과실 송금 제한을 완화하고 대외 송금을 보장하는 규정과 및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구체적인 범위 등의 주요 법률 사안이 대부분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하위 법령의

제정 및 발표될 시일까지, 투자 환경이 개선되는 실제 효과가 발생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알제리 국제기구 가입 및 협정 동향

알제리의 WTO 가입 추진 동향

알제리는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길 희망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추세에서 실질적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여 WTO 가입을 크게 서두르지 않고 소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오고 있다.

그동안 WTO 가입 작업반회의 등을 통해 미국과 유럽을 주축으로 하여 WTO회원국이 질의한 96개 항목 중 19개가 알제리의 현황과 WTO의 요구 수준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간의 의견 차이가 큰 대표적인 이슈들은 수입허가, 가스에 관한 이중 세율, 수출보조금, 특히 연료에 대한 가격정책, 위생 및 검역에 관한 정책, 그리고 무역에 관한 주요 장벽, 중고자동차수입 등이다.

제12차 가입 작업반 회의(2014년 3월 31일)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제11차 작업반회의(2013년 3월)에서 제기된 170개의 항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투자지분 제한, 금융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14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알제리 경제도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알제리 내부적으로 알제리의 WTO 가입에 대한 신중론이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다. Belaib 통상장관은 2015년 8월 WTO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여 알제리가 WTO 가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국내적으로 알제리 국민들 사이에서 WTO 가입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알제리는 WTO 가입 협상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하고 있는 국가로 그

간 6명의 가입작업반 의장이 임명되었으며, 12차례의 가입작업반 회의, 120차례 이상의 양자협상을 통해 6개국(쿠바, 브라질, 우루과이, 스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과 양자협상을 타결하였다. 알제리 가입 작업반은 1987년 개설되었으며, 12차 회의를 끝으로 차기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10월에는 알제리 가입작업반 신임 의장으로 Balbela 주제네바 우루과이 대사가 선임되었으며, 이에 대해 알제리 정부는 Balbela 대사의 의장직 수임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알제리의 WTO 가입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차기 작업반 회의는 개최되지 않는 등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알제리 측에서는 WTO 가입조건인 원유가격 국제시장이 적용 조항과 관련하여 협상의 여지없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가입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인을 위해 자국 시장에 원유 및 가스를 국제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바, WTO는 이를 일종의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 및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양측간 입장 차이가 첨예한 관계로 알제리의 신속한 WTO 가입은 당분간 요원해 보인다.

알제리-EU 제휴협정에 따른 무역자유화 일정 연기

알제리는 EU와 자유무역협정을 2005년 9월 발효하여, 동 양허일정에 따라 점진적 관세인하 및 철폐를 진행 중이며, 당초 2017년 까지 완전 자유무역지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EU-알제리 FTA 품목별 관세철폐 계획

1단계 리스트 (협약발효 직후 유효)	2단계 리스트 (협약발효 2년 후 5년에 걸쳐 적용)	3단계 리스트 (12년간 점진적 철폐)
중간재 원자재 화학공업용 반제품 금속공학 섬유 건축재료	의약품 기계장치 전기 및 전자설비(가전제품 제외) 철도운송설비 자동차 수리 부품 제어, 측정 설비 기구	소비재 재고품

협정발효 이후 알제리 정부는 알제리-EU간 제휴협정 이사회 등을 통해 양자간 석유가스 부문을 제외한 무역 불균형의 심화 및 알제리내 EU 직접투자의 부진 등의 동 제휴협정 체결 이후 양자간 발전적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무관세를 위한 일정계획의 수정 등을 요청하여 수차례의 당사자 협상을 진행한 결과 2012년 9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농산물, 산업제품의 관세철폐 효력 발효 시기를 2017년에서 2020년으로 3년간 연기하였다. 알제리-EU 무역자유화 관련 새 협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산물 분야

- 25가지의 해당 농산물 의무수입 할당제 취소
- 우유, 마가린, 치즈 등 유제품 분야의 농산품에 대한 신규 의무수입할당제 추가
- 2010년 추가 협상을 통해 당초 협정안의 36개 농산물 의무수입할당제 폐지

공산품 분야

- 2012년 9월 관세철폐 예정이던 1058개 공산품에 대한 재검토
- 자동차·부품 등 82개 민감품목의 부분적 관세복원 및 철폐 시기도 4년을 연기하여 2009년에서 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
- 절단기, 식기세척기 등 185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사 시기 2년간 유예
- 페인트류, 삼푸, 플라스틱, 목재가구 등 174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시기를 2017년에서 2020년으로 연기하고 부분적 관세 복원
- 화장품, 종이, 의류, 신발 등 617개 품목 관세인하를 2012년에서 2015년 까지 3년 유보

또한, 협정 발효시기 연기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알제리 정부는 협력합의서 하에 맺어진 알제리가 부여한 특혜관세는 EU국가들이 100% 활용하지만, 알제리는 EU가 부여한 특혜관세 41개의 물품 중 단지 6개만 활용하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는 투자부문에서 특히 석유가스 이외 부분에서 유럽인들의 대알제리투자가 매우 빈약함을 알 수 있다. 유럽인들은 알제리의 법적 불안정성과 기업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상기 무역 불균형은 협정의 문제가 아닌 표준 문제이며, EU의 대 알제리 직접투자의 부진은 알제리의 외국인 투자 환경 특히, 기업 환경이 열악하고 보호주의적인 것이 기인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알제리 주재 EU 대표부 측은 알제리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에 대해 '알제리 기업이 유럽 표준을 맞춰야 함'을 강조하였다. EU와 알제리 간에 합의된 특혜관세가 알제리 기업에 의해 크게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유럽 표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동 분야에 대한 양자간 협력을 제의하였다.

상기 관세철폐 발효시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의 대EU 무역 불균형이 지속되자 EU와의 제휴협정에 대한 추가개정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바, 알제리는 EU측에 동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양측간 공동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여 왔으나,

EU는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알제리는 △협정 발효 시점부터 지금까지 무역 불균형 현상 심화 (2005-2020년간 탄화수소 분야 제외 시, 알제리의 對EU 누적수출은 150억, EU로부터의 누적 수입은 3100억불), △EU의 對알제리 해외직접투자 부진, △협정 발효 당시 EU 회원국수가 15개에서 현재 27개로 늘어난 사정 변경 등을 근거로, 동 협정이 일방적으로 자국에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최종 시한이었던 2020년 9월 1일까지 마무리되어야 할 관세 완전 철폐 협상이 알제리 측에서 불리함을 이유로 협상 재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추후 협의 시까지 잠정 중단되었다. 이와 관련, 알제리 테본 대통령은 2021.10 각료회의에서 알제리-EU 제휴협정을 양자간 상호 이익 창출, 국내 생산 및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항별 재검토(review)할 것을 지시한바 있으나, 2022년 10월 말 현재까지 양측간 협상 개정 관련 진전된 사항이 없다.

한편, 2022년 5월, 서사하라 문제에서 스페인이 모로코 입장을 지지함에 따라 알제리는 스페인산 상품의 수입을 2개월간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는데, EU는 이를 무역협정 위반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2022년 9월 유럽이사회 의장이 알제리를 방문한 계기에, 알제리-EU 제휴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바, EU는 최근 러시아의 대유럽 천연 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알제리와의 에너지 협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알제리측의 제휴협정 개정 노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프리카 범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

알제리는 2018년 3월 아프리카연합(AU)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출범한 아프리카 범자유무역지대(AfCFTA)의 회원국(2019년 12월 15일 비준)이다. 동 협정은 아프리카내 물품 거래에 대한 관세 제거, 서비스 무역 자유화, 국경 무역에 있어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 5월30일 공식 발효되었다. 2020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협의 중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연기, 2021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되였다. 2022년 6월 알제리는 가나에서 관세 양허안을 AfCFTA 사무국에 제출하였으나, 협정 적용의 전제 조건인 원산지 규정 및 관세 양허 관련 AfCFTA 회원국간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 실제로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향후 AfCFTA에 따라 완전한 관세 철폐가 실현될 경우 아프리카 대륙내 역내 무역은 약 50% 이상 증가되고 대아프리카 투자 증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알제리의 대아프리카 수출은 5~6배 증가되고, 아프리카 지역내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s)이 형성될 것인바, 지역내 4위 경제 대국인 알제리는 아프리카 경제 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2020년 기준 알제리의 대아프리카 무역 규모는 총 무역 규모의 6% 미만이고, 아프리카 대륙내 알제리의 비교우위 상품은 △석유·가스·전기 및 에너지 관련 파생 상품, △시멘트 및 클링커, △인광석, △대추야자 및 설탕, △석유 화학제품, △가전제품, △의약품 등으로 향후 AfCFTA의 완전한 이행 후에 수출 잠재력을 보유한 제품들로 평가를 받고 있다.

관세 및 수입부과금

현재 대부분의 상품수입은 자유화되었으며, 수입규제는 공공질서 유지, 공중 보건 및 환경보호 등의 목적에 국한되어 있다. 특히 관세부과를 통한 수입규제는 2005년 9월 EU와의 제휴협정 발효 이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입상품 분류는 국제기준(HS CODE)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자재 5%, 반가공제품 15%, 완제품 30% 등으로 단순화하였다. 이러한 관세율 조정은 외국자본을 생산활동과 투자에 유도하여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고 생산단가의 인하를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2002년 1월 이후 알제리 세관당국은 동일 품목이라도 생산공정에 사용할 품목이면 5% 또는 15%를 적용, 알제리내 조립·생산을 유도해 국내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수입정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관세인하와 Valeur Administrative (세관 당국이 책정하는 과세표준가 적용세율) 및 추가 특별세(TSA)의 폐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500개 품목에 도입한 추가임시세(droit additionnel provisoire)는 2001년도부터 매년 12%씩 세율을 낮추어 왔으며, 2006년 재정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대알제리 수출시 수입자가 부담하는 관세세목은 관세특소세 등이 있으며, 세율은 품목마다 다르다. 각 품목별 세율 등 자세한 정보는 알제리 세관 홈페이지(www.douane.gov.dz)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임시추가수입관세

2018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2019년 1월 임시추가수입관세(DAPS: Droit Additionnel Provisoire de Sauvegarde) 제도가 도입되며 철폐되었다. 임시추가수입관세 제도는 당초 2018년 7월 말 시행계획으로 발표되었었으나 업계와의 의견 조율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어 2019년 1월 말에 발표되었으며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2019년 1월에 도입된 900여개 항목에 대한 임시추가수입관세 제도는, 2020년에 추가 개정을 거치며 더욱 강화되었다. 동 임시추가수입관세는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관세에 30~200%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추가 관세에 대해서 감면 및 면제 규정을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FTA 체결 국가 제품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최초 발표 후 한차례 수정을 거친 임시추가수입관세 제도에 따라 HS code 기준으로 총 992개 품목이 임시추가수입관세 부과 대상이 되었다. 알제리 상무부는 대상 품목과 세율은 업체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한차례 수정 발표되었고, 2020년 하반기에 또 한차례 수정되었다. 임시추가수입관세제도 도입과 더불어 수입금지조치가 해지되며 차량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가 도입되었으나 2020년 재정법 개정으로 차량에 대한 수입쿼터 또한 폐지되었다.

2022년 1월 통상·수출진흥부 장관은 외환보유고 감소를 막고 현지 생산 장려를 통한 제조업 육성을 위해 임시추가수입관세 항목을 기존의 992개에서 2,608개로 확대할 예정임을 발표한바, 향후 추가적인 관세 장벽의 심화가 전망된다.

2022년도 임시추가수입관세는 정부가 2021년 7월 지정한 국내생산 장려 및 수입금지 품목 목록을 기반으로 육류, 유제품, 청과물, 담배 등 기호식품, 직물, 가재도구 등의 소비재와 일부 차량 부품, 대리석, 변압기 등의 건축자재, 일부 의료기기와 SKD/CKD 키트에 적용되며, 자국 내 생산되는 공산품 및 장비에도 부과되는 점이 특징이다.

통관

알제리는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세관당국에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많아, 회사별로 담당직원을 두거나 통관 수속 대행회사를 이용하여 통관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경우가 많다.

알제리 세관당국은 1999년부터 통관자동관리시스템(SIGAD)을 도입하였으며, 2003년 4월에는 알제항에 컨테이너 스캐너를 설치하는 등 통관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알제항의 접안시설 및 컨테이너 처리시설의 부족과 관료주의로 통관에 애로를 초래하는 경우는 발생하고 있다.

통관에 필요한 구비서류 미비 시 수입품은 세관창고에 보관되고 보관기간 중에는 일단위로 보관료가 부과된다. 또한 통관절차가 종료되고 제반비용 납부 후 15일 이내에 수입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수입품은 세관당국에 압류되어 경매에 붙여진다.

세관당국은 공공질서, 사회관습, 공중보건,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국내규정의 의거하여 통관을 거부할 수 있으며, 검역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식물, 기타 물품은 재반출되거나 폐기된다. 즉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종교상, 안보상의 이유로 수입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소위 ‘아랍 보이코트’로 불리는 이스라엘 생산품의 수입금지는 계속되고 있다.

한편, 2013년에 한국과 알제리간 세관상호지원협정이 체결되어, 2016년 6월부터 발효되었으며, 동 협정을 통해 양국간 세관분야 전문가 교류, 법규·제도 관련 정보교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알제리 세관당국은 전자세관(E-Custom) 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 이와 관련, 알제리 관세청은 한국 관세청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구축 사업을, 한국국제협력단과 알제리 전자무역을 위한 싱글윈도우 시스템 구축 사업을 각각 진행 중으로, 동 사업들은 통관 신고시 필요한 요건 확인 및 문서처리를 전산화하고 온라인으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관업무 단일 창구 시스템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수입금지 사례

- 수입금지 품목: 돼지고기류 및 중고자동차
- 수입업자가 관세법에 규정된 제반 수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수입 물품이 제반 증명서상에 표기된 종류와 불일치하는 경우
- 수입 물품이 관세법상에 명기된 제반 규격 및 규정과 합치하지 않을 경우
- 동물 수입 시 공공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식물 수입 시 검역상의 문제
- 유통기한이 너무 짧거나 이미 기한이 도래한 경우
- 서적, 영화 수입 시 사회풍속이나 종교적 가치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환경에 유해한 경우
- 위험 화학제품에 대해 하역 시 모든 안전상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

휴대품	통관기준
주류	◦ 포도주 2리터 또는 증류주 1리터 이하
담배	◦ 담배 200개피 또는 작은 여송연 100개피 또는 여송연 50개피 또는 담배 총합계가 250g 이하일 것
향수	◦ 향수 50g 또는 화장품 1/4리터 이하
면세한도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품 환산금액이 총50,000DA(디나르) 이하 ◦ 휴대품 외관 및 수량이 판매용 특성을 지니지 아니할 것 ◦ 휴대품의 내용물이 반입금지품목, 국제적 보호품목 및 신고의무화 품목이 아닐 것 ◦ 알제리내 반입가능한 지불수단 및 여행자 수표 ◦ 100mg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용 보석류
외국환신고	◦ 모든 외화는 입출국시 신고의무화
의약품	◦ 처방전에 언급된 품목 및 수량과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 관세 면제
식품	◦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을 초과할 경우 세금 부과
반입불허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 무기·전쟁용 물품 또는 위조 물품 ◦ 중고 부품(부품별로 1개만 허용) ◦ 중고 물품(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가전제품, 가구 및 의류) ◦ * 자동차는 3개월 범위내 사용조건으로 통관허가를 취득한 경우 한시적으로 반입 가능 ◦ 미풍양속 저해 물품 ◦ 알제리 화폐(디나르, Dinar)의 수출입 ◦ 동반자가 없는 가방 또는 허가증 미동반 품목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수준 초과시 세금 부과 물품 - 의류 및 액세서리, 화장품, 보석류, 빗·모자 및 유사물품, 사진필름, 오디오·비디오 테이프, 양탄자, 식료품, 가축사료, 과일(통조림 포함), 도자기

후대품	통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제리 정부로부터 반입 허가가 필요한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류·필름·녹음테이프(문화부), 위생시설설치제 및 동물의약품(농업부·보건부), 방송기자재(정통부) ◦ 국제협약상 보호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종 위기 동물, 보호 동식물, 고고예술품 ◦ 레저용 선박 및 제트 스키의 경우 여행목적 및 3개월내 사용조건으로 통관 허가증을 취득하고 세관에 보증금을 납입한 경우 반입 가능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등

모든 국가에 대해 원산지 증명 제출(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 신고서와 함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9년 추가재정법 시행 이후 원산지 증명과 더불어 수입품에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아랍어) 하였다.

- 동·식물 수입 : 검역관계 확인 서류, 보건당국의 수입허가증
- 의약품 수입 : 보건당국의 허가
- 화학약품 수입 : 관련당국의 수입허가, 안전하역 방안
- 정기간행물·특별간행물 : 관련당국의 허가
- 영화 : 관련당국의 허가(필요시 검열)
- 측량단위 수입 : 관련당국의 사전 검토
- 전쟁물자가 아닌 무든 무기류 수입 : 관련당국의 허가
- 폭발물 수입 : 관련당국의 허가
- 식품 수입 : 품질보증서, 균질보증서

2009년 추가재정법 시행 이후 원산지에서 제조되지 않은 자동차 부품은 알제리에 수입이 금지된다(원산지 직수입 자동차 부품만 수입 가능). 이러한 규제는 여러 분야에 걸쳐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복제품 퇴치 목적의 일환이다. 그러나 원산지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후 제3국에서 제조되어 알제리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은 예외로 간주된다. 따라서 수입자들은 원산지로부터 라이선스를 득한 후 제3국에서 자동차 부품이 제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규제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부품들은 통관 시 screen되어 반입이 금지된다.

현재 알제리로 수입되는 자동차부품의 80% 정도는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대한민국, 독일에서 수입되는데, 이 가운데 중국산 자동차부품이 가장 많다. 자동차부품 복제품에 대한 법안은 2002년부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안이 의도한대로 통관 시 screening이 정상적으로 될 지 예의주시할 부분이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알제리 세관법 제8조는 덤핑 수입상품 또는 원산지국(또는 수출국)의 수출 보조금을 수혜한 모든 상품과 정상가격 대비, 수입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수입품 등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역업 규제

2009년 7월 26일 대통령령(Ordonnance 09-01)을 통해 공포한 ‘2009 수정재정법(2009년 7월 26일 공포, Loi de Finances Complémentaire pour 2009)’은 알제리 법인격을 보유한 외국수입업체에 대해 보유 지분의 30% 이상을 알제리 국적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상기 규정은 법인격을 보유한 외국수입업체중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한 후 동 상품에 대한 별도의 가공과정 없이 알제리 국내 시장에 수입한 상태 그대로 상품을 공급하는 수입업체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한 후 알제리 국내에서 별도의 가공과정을 거쳐 제3의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건설공사 등을 목적으로 장비를 반입하는 경우 등 상품수입 및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2017년 10월부터 수입상품을 가공하지 않고 알제리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 법인은 2,000만 디나르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2018년 행정령 18-51에 따라 수입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품의 특성에 맞는 저장유통 인프라를 갖춰야 하고 2년에 한번씩 사업자 등록을 갱신 해야 한다.

수입제한조치 도입 움직임

알제리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고, 원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의 한계를 벗어나 산업 다변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현지 생산을 장려하고 각종 수입 제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2016년부터 수입허가제를 전격 도입(Executive Decree No. 15-306, 2015년 12월 6일)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액 급감(2014년 600억 달러→ 2016년 291억 달러→2018년 411억 달러→2020년 219억 달러→2021년 357억 달러) 및 외환보유액 감소(2014년 1,774억 달러→ 2016년 1,129억 달러→2018년 802억 달러→ 2020년 489억 달러→2021년 433억 달러)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산업 다변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자동차, 시멘트,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봉(reinforcing bar) 등이며, 이 가운데 수입허가제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자동차 수입이다. 2016년 5월 자동차 수입 쿼터제(총 83,000대, 금액 기준 10억 달러)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주요 수입 품목중 하나인 자동차 수입액(2014년 기준 42만대, 57억 달러 수입)을 현격하게 축소시킴으로써 무역수지 균형을 도모함과 동시에 알제리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현지 생산을 독려하기 위함이었다.

알제리 정부 방침에 따라 르노·벤츠(2014), 현대(2016), 폭스바겐(2017) 등 글로벌 메이커들은 현지 생산공장 설립하고 반제품 수출 및 현지 조립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자동차 수입 쿼터제는 폐지(2018) 되었다. 그러나 알제리 정부가 당초 의도한 현지 자동차 제조 기반 육성을 위한 부품 현지화율이

15% 목표 기대치에 미달하고, 조립생산 증가와 함께 부품 수입도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9년 알제리 정부는 동 조립 생산이 무역적자 심화와 외환보유고 감소를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 관련 규제를 대폭 상향하였다.

2019년에는 금액 기준 CKD/SKD Kit 수입 규모 제한, 현지 생산 완성차 업체별 Kit 수입쿼터 및 조립생산 가능 모델 지정 및 완성차 전면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되었다. 2020년에는 CKD/SKD kit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혜택이 폐지된 후 동 부품 수입도 중단되었다. 2021년에는 신차 수입을 일부 허가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실제로 알제리 정부는 신차 수입 허가권을 어떤 업체에게도 주지 않아, 사실상 수입 전면 금지 상태가 지속되었다. 자동차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이 지속되고,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자, 2022년 8월 알제리 정부는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이 직접 사용할 용도에 한하여 3년 이내의 중고차 수입을 2023년부터 허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알제리 정부는 이러한 수입규제 조치를 여타 산업 및 농업제품으로까지 확대하여 2017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가공수프, 소스, 빵, 피자, 파스타면, 견과류, 과일주스, 탄산수, 잼, 초콜릿 등의 식료품과 수도·가스 밸브 부품, 변압기, 대리석·화강암 완제품, 벽돌, 타일, 카펫, 플라스틱 완제품, 가구 등의 공산품에 대한 임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더해 2018.1월 치즈, 제과제빵 제품, 육류, 종이류 등 식료품 및 소비재를 대상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하였으나, 2019.1월, 약 880개 항목에 대해 수입 금지를 철폐하고, 임시추가관세(DAPS)로 대체하였다.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분야에서 알제리 내 생산되는 품목이 현지 수요 대비 공급량 및 품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4월에는 대통령 지시로 소형발전기류, 8월에는 참치, 아이스크림 등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시행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입 금지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알제리 정부는 정책적으로 가전제품의 생산을 현지화하기 위해 다

각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2018년부터 현지 생산 중인 일정 가전 완제품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시행하고, 현지 생산 가전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19년 초 임시추가수입관세 제도를 도입하여 현지 생산되는 가전제품 품목에 대해서 6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한바 있다. 2022년 3월, 알제리 테분 대통령은 전자 제품의 현지생산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알제리에서 생산되는 전선, 변압기 등 전기산업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를 지시한바 있다.

최근 알제리 정부는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 식량 자급률 향상과 무역적자 억제를 위해 농식품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선정, 국내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달걀, 감자(씨감자 포함), 마늘, 건채소류(강낭콩, 렌틸콩, 병아리콩), 밀·보리 가루, 두유, 설탕, 면류, 농축 토마토(퓨레 등)에 대한 수출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알제리 금융당국은 2017년 10월 22일부로 현지가공을 위한 원부자재 및 부품을 제외한 수입품에 대해 선적 30일전까지 수입액의 120%를 예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분야에서도 새로운 비관세장벽을 세웠다. 이 조치는 2022년 8월까지 지속되었다.

기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자동차 부품 이외에도 많은 품목에서 높은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품목을 섞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기타’로 분류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제리 정부는 HS 코드 ‘기타’ 분류 상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 조치를 시행하였다. 다시 말해, 기타 품목의 수입거래의 신용장 지급 장소 지정(domiciliation) 절차를 중지하여 수입대금 절차를 막아, 사실상 거래를 중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2022년 하반기 현재 알제리 수입 현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수입 규제 조치는 ‘국내 미(未)생산 인증서’ 제도이다. ‘알렉스(ALGEX)’로도 불리는 이 규제 조치는 수입업자가 수입하려는 것이 알제리 국내에서 동종 상품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고 상무부의 심사 후 인증서를 받아야 은행에서

의 수입 대금 지급이 허가된다는 내용이다. 2022년 4월 하순 발표되어 7월 말까지 식량·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아, 사실상 수입이 대량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22년 8월부터 인증서 발급이 재개되었으나, 통상 2개월에서 4개월에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으로, 최근 매우 큰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입제품 품질검사

알제리는 2005년 10월 12일 행정명령 제05-467에 의해 수입제품의 품질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수입경로(육지, 해양, 항공 등)에 따라 수입제품의 품질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품질 검사는 통관절차 전에 시행되며, 최초 수입품인 경우 검사사항은 △구 비서류 및 증명서 검사, △제품 외관검사, △제품 샘플검사 등이며, 정부의 관련 검사기관을 통해 품질검사가 이미 통과된 제품의 반복 수입일 경우는 △구비서류 및 증명서 검사, △품질규정준수 인증서 등이다.

품질규정 준수 검사를 위해서는 수입자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수입신고서, 상업등록 증명서 사본, 송장사본, 기타 검사를 위한 문서의 원본 등을 관련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48시간 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수입허가증이 발급되며, 적합성 검사에 불합격하면 수입거절증을 발급하고 알제리 세관에 통보된다.

수입업자는 적합성 검사에서 불합격 될 경우 2005년 10월 12일 행정명령 제05-467에 의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절차는 3단계로 나뉘어진다.

1단계로 수입업자는 알제리 각 시도의 상업 집행부에 수입거절 통지를 받은 후 8일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수입거절 원인에 대한 검증을 통해 수입거절

취소결정이 유지된 경우 수입업자는 2단계로 알제리 지역 사업집행부에 부적합 판정제품의 용도에 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이의제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유예기간 동안 이의제기 신청이 불가한 경우 3단계로 알제리 중앙행정기관의 소비자 보호 부서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기타 표준·검사·Labeling

현재 표준·검사·라벨링 등과 관련하여 우리제품에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만한 제도는 없으며, 품목별로 유럽 각국에서 통용되는 검사 및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자동차 검사 및 규격 등)가 있다. 알제리 정부는 최근 ‘국가 표준검사센터’를 설립, 각종 표준제품 인증제도를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체제로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알제리로 수입되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일부 제품들에 대해서는 관련당국의 기술규격 사전인증과 세관통과 시 사후 검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각종 의약품은 수입 전에 안전성에 관한 사전 인증제도인 비자(le visa technique)를 획득해야 한다. 담당부서는 보건부(Ministère de la Santé)이며 비자 획득에는 1~2년이 소요된다(관련법령: Regulation No 92-284 of July 6, 1992 Article 12).

이외 가축용 의약품도 알제리 농업개발부의 인증을 받아야 유통될 수 있다(관련 법령 Décret Exécutif No 90-240 du 4/08/90). 또한 식품류도 위생법에 의한 위생검사를 거쳐야 유통될 수 있다. 이외에 위험물·일부 화학제품이나 산업용 가스제품들도 산업부의 사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관련 규제

과거에는 환경관련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했으나, 점차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4년에는 ‘환경과지속가능발전위원회’(High Council on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가

설치된바 있으며, 2021년 9월 국가경제사회위원회(CNES)가 국가경제사회 환경위원회(CNESE)로 명칭을 바꾸며 환경 문제도 담당하게 되었다.

환경에 유해한 품목(식물, 화학약품 등) 수입 시에는 관련당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이라고 판명된 화학제품 및 기타 물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2017년 재정법 개정으로 알제리로 수입되거나 알제리 내에서 생산되는 전자제품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세(Taxe D'efficacite energetique)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효율 등급에 따라 A에서 G까지 등급이 매겨지고 A등급(고효율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가격의 5%, G등급(에너지 고소비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60%까지 세금이 부과된다. 알제리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도 도입의 취지는 에너지 소비를 합리화하여 자원 낭비를 방지하며 세수 확보를 통한 국가 재정 진전화에 있었으나 업계에서는 에너지 등급 부여 기준 및 규정이 확립되지 않았고 등급을 부여할 자격을 갖춘 인증 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하여 규정을 도입하고,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제품 카테고리에 따른 등급 부여 방식이 도입된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0년 재정법은 환경보호 관련 세율을 인상(담배세, 자동차세 등)하고, 에너지효율성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거나, 하수처리, 공기 오염 시설, 산업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세금을 신설하는 등 환경 보호 관련 조치를 다수 도입한 만큼, 향후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보호

소비자 보호 관련, 선진국 수준의 세부적 규정이 구비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식료품 등은 수입허가가 까다로운 편이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물품의 가격, 판매자의 계약상 책임한계 및 판매의 제반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할 법적의무는 없다.

국민건강과 관련된 환경분야, 의약품의 안전성, 축산품의 위생문제 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으며, 정부, 언론 및 민간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알제리는 1966년부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며, 1975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한바 있다. 제도적으로는 지식재산권 보호제도가 마련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 법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알제리는 지적 재산 보호 및 집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비공식 시장 단속, 세관 당국과의 협력 강화, 지적재산 보호 기관을 위한 역량 강화 노력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

산업발명(industrial inventions), 산업설계, 디자인과 상호(trademarks and service marks or appellations of origin) 등이 보호된다.

산업발명은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된 특허규정에 의해 보호된다(관련법령: Ordinance № 03-07 of July 19, 2003 및 Decree № 05-275 of August 2, 2005).

특허대상 품목은 식료품, 화장품, 의약품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리고 특허기간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연장이 불가하다. 아울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등을 통해 보호된다.

산업특허는 Algerian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Institut

National Algérien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INAPI)에 출원하고, Official Bulletin of Patent(Bulletin Officiel des Brevets)를 통해 공표된다.

상표(Trademarks)는 Ordinance № 03-06 of July 19, 2003 및 Executive Decree № 05-227 of August 2, 2005에 의해 규정되며, INAPI에 등록해야 한다.

상표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6개월~2년의 징역과 250만~1,000만 디나르의 벌금이 함께 부과되거나, 벌금 혹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문학·예술적 재산권(literary or artistic property rights)

문학작품, 컴퓨터 프로그램, 영화, 음반 등의 문학·예술적 재산권은 Ordinance № 03-06 of July 19, 2003에 의해 보호된다. 경제적 권리는 작가의 사후 50년까지 보호된다. 저작권 관련 사항은 National Office of Copyrights and Related Rights (ONDA)에서 관리한다.

외국인 투자 환경 및 관련 제도

알제리 최초의 장기 투자 유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신투자법이 2022년 7월 28일 공포되었다. 지난 5월 19일 특별 각료회의에서 승인된 후 2개월 9일 만에 공포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투자 관련 소청을 위한 고등국가위원회 구성, 국가투자위원회, 알제리투자진흥청 등 투자 정책 및 지원 조직의 구성, 창구 단일화(Single Window), 디지털 투자자 플랫폼, 각종 인센티브 제도 등이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가장 큰 제약 조건으로 지적한 대외송금 보장, 국가투자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알제리투자진흥청 관련 사항, 주요 프로젝트 단일창구, 인센티브 범위 등 주요 법률 사안이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실질적인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2022년 10월, 8개 신투자법 하위법

령이 시행되어 본격적으로 신투자법이 발효되었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고등국가위원회(투자 관련 이의신청 담당), 국가의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국가투자위원회, 투자 진흥 행정기관인 알제리투자진흥청의 조직 구성 및 기능에 관해 규정되어, 투자 정책, 투자 진흥, 투자 보호를 위한 기관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알제리투자진흥청이 담당하는 단일 창구의 경우, 주요 프로젝트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단일 창구(중앙정부 담당)와 분산된 단일 창구(지자체 담당)로 구분되고, 단일 창구를 통해, 재무·관세·무역등록·토지 및 건축·노동·환경 등 관련 부서 대표가 참석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를 발행한다. 또한 운영 기간 동안의 투자 안내, 지원 및 모니터링을 위해 디지털 투자자 플랫폼도 운영한다.

하위법령에는 특별지역 인센티브, 분야별 인센티브 등 법률에 규정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활동 및 인센티브 혜택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 등이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투자 활동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진출기업을 포함하여 알제리 주재 외국 기업들이 과실송금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이번 시행령에는 과실송금의 보장과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고, 법률을 통해 관세 면제, 부동산세 면제, 부가세 면제 등 큰 폭의 세무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하위법령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활동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예측가능성이 낮은 알제리 사업 환경을 고려할 때 투자매력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자동차 현지 생산 관련 투자 여건

알제리 정부는 2010년대 초부터 자동차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 산업으로 보고 정책적으로 육성을 시도하였다. 2016년 자동차 수입 쿼터제 도입과 함께, 알제리 기업과 협력하여 현지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완성차 업체 위주로 쿼터를 배정하며 현지 생산을 유도하였다. 현지 제조업 자체 기반이 취

약한 이유로 인해, 르노, 폭스바겐, 현대, 기아 등 주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SKD/CKD 조립 생산 방식으로 현지 생산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9년 부테플리카 정권 퇴진 및 테분 대통령 신정부 수립 이후, 현지 자동차 산업인과 구정권 인사들과의 부패 고리 척결 및 정책 재조정을 이유로 주요 자동차 산업계 인사 등이 구속되고, 현지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었다.

2021년 초, 알제리 산업부 장관은 그간 중단된 자동차 생산 및 수입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자동차 수입 라이선스를 신규 발급하겠다고 했으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발표되지 않았다.

2022년 10월, 이탈리아 피아트(FIAT) 및 프랑스 르노(Renault) 등 기업의 알제리 내 조립 생산공장 설립 또는 조업 재개 계획이 발표되고, 알제리 정부는 이탈리아 자동차 기업 Stellantis사와 Fiat 자동차 조립생산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다. 2022년 11월 초 현대차 조립 생산 공장이 일시적으로나마 재가동(2022.11~12월)되었고, 자동차 생산 및 수입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발표됨에 따라, 2023년에는 자동차 조립 생산 관련 규제는 더욱 완화될 전망이다.

과실 송금 문제

최근 알제리의 新투자법 제정(2022.7)으로 알제리 내 외국 기업에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동 법안이 외환 관련 부분(과실 송금 제한 및 외환·디나르 인출 제한 등)등을 미포함하여 알제리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이익(배당)금의 본국으로의 송금에 여전히 많은 제약이 남아있다.

과실 송금 관련 알제리 법 조항은 Ordinance No 01-03 of August 20, 2001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본 유입을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투자된 자본과 과실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과실 송금을 위해서 생산을 위해 사용된 모든 자산과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의 가치를 구분해야 하며, 투자를 위해 알제리로 유입된 자본만이 송금 가능한 자본과 수익 산출의 근거가 된다.

알제리에서 얻은 이윤을 국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알제리 내 회계사무소가 발급하는 자본납입증명서, 연말회계감사 보고서, 이사회회의 이윤배분 결의서 및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외환관리국에 제출하여 송금 허가를 얻어야 한다. 외국인 직원의 임금 및 정당한 수익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나, 소득의 일정 부분(평상시 60%)만 허용하는 등의 제한이 있다.

송금 및 과세 부문 관리 강화

알제리 국내생산 장려를 위해 수입을 억제하려는 움직임 역시 몇몇 분야에서 포착된다. Bouteflika 대통령 취임 이후 몇 년 동안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해왔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사 이익 선점 등으로 인하여 알제리 국내 산업발전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자 2010년 추가재정법 (LFC)에서 보호주의적인 정책 다수가 입안되었으며, 아래 몇몇 조치들은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다.

(1) 대외송금 절차

대외송금의 경우 송금 30일전에 송금검증신청서를 제출해 송금검증서를 받부받아야 대외송금이 가능하다. 만약 검증서가 발부되지 않는 경우 송금액의 25%를 벌금으로 징수가능하다. LFC2009가 배당금 송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LFC2010에 명시된 조항은 자재구입, 서비스 용역 등을 포함한 모든 송금에 대하여 알제리 당국의 관리수단 및 직권 조정 권한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입건설기기에 대한 특별 종량세 부과

2010년 9월 1일자로 알제리로 수입되는 건설기기에 대해 품목별로 30~70만 디나르의 특별 소비 종량세가 부과된다.

◉ 특별소비 종량세

- 건설기기를 알제리로 수출 시 관세를 납부하고 VAT 17%까지 완납 후 최종소비자가 품목별로 약 4,000~9,000 달러의 특별소비세를 부담을 규정

- 과세액 30만 디나르

품 목	HS CODE	기 타
원심펌프, 모터펌프 등	841370	
기타펌프	841380	관세 30%
수지식취관	846810	
가스용접기, 가스자동절단기	846820	
납땜용, 용접용의 기기	846880	
납땜용, 용접용의 부분품	846890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8502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	8504	
전기식 레이저 또는 광선식 납땜 또는 용접용의 기기	8515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870540	

- 과세액 50만 디나르

품 목	HS CODE	기 타
증기, 모래취사부 제트분사기	842430	
갱구용 와인딩 기어 및 원치	842531, 842539	
타워 크레인	842620	
문형 또는 정지형 지브 크레인	842630	
기타 크레인	842641, 842649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	842810	
뉴매틱식 엘리베이터, 컨베이어	842820	
물품 또는 재료용의 기타 연속 자동식 엘리베이터, 컨베이어	842831~9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	842840	
텔레페릭, 의자 양하기, 스키용 드래그 라인, 유니쿨러용 견인장치	842860	
광산용 왜건무셔, 기관차 또는 화차의 트레버서, 화차 경사기 및 철도화차 취급 장비 등 기타의 기계	842890	
항타기와 항발기	843010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러어	843020	
시추기	843049	
선별기, 기계식 체, 분리기, 세척기, 파쇄기, 분쇄기, 혼합기, 반죽기, 조괴기, 형입기, 성형기 등	8474	
섀매	871680	관세 30%

- 과세액 70만 디나르

품 목	HS CODE	기 타
볼도저와 앵글도저	842911, 842919	
그레이더와 레벨러	842920	
스크레이퍼	842930	
탐핑머신 및 로드롤러	842940	
프론트엔드 셔블로더	842951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 기계	842952	
기타 메커니컬 셔블	842959	
탐핑용, 콤팩팅용 기계	843061	

주: 상기 리스트는 가이드라인으로 더 세부적인 사항은 HS Code 자릿수별로 상이할 수 있음. 또한 리스트에서 별도 표시가 없는 한 관세율 5%, VAT 17%

(3) 수입의약품 규제 강화(국내 생산 의무화 등)

2011년 1월 이래 알제리 내 의약품 수입 시 국내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의 무가 부과되고 있다. 기존에 수입업자들은 통관 시 수입품목 유사성 및 거래 물품을 무역등기소에 등록을 해야 하고, 필수적으로 알제리 국내에서 재정 활동을 정당화하는 이전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수입비용 지불을 위해 필수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해야 한다.

한편, 알제리 보건부의 규제안은 알제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의 일환이다. 의약 관련 공기업인 SAIDAL의 생산능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그 제반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의약품의 알제리 국내생산을 70%까지 높이려는 계획의 초안이다. 실제로 2009년에 알제리 국내 생산이 27%에서 38%로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14억5365만 유로로 대폭 감소하였다. 2020년 알제리 정부는 보건부에서 '제약산업부'를 분리 신설하여 국내 제약산업 육성 의도를 더욱 더 분명히 하였다.

투자진출 제한분야(석유자원 탐사 및 개발)

알제리 정부는 고유가의 지속 등 에너지 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른 석유 자원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2005년 4월 28일에 제정된 석유가스사업법을

2006년 7월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유 탐사 및 개발(정유 및 송유관을 통한 수송 포함)에 국영석유회사인 Sonatrach의 참여를 체계화하고 의무화하여 외국회사와의 합자회사 설립 시, Sonatrach의 지분을 최소한 51%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5년도 법은 Sonatrach이 20~30%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 아울러 개정법령은 고유가의 지속에 기인한 예외적인 수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생산량에 따라 5~50%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인 수익의 기준은 Brent 유가의 월평균 가격이 배럴당 30달러를 넘는 경우를 상정하였으며, 세부 적용절차와 조건은 하위법령에 규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2006년 탄화수소법 석유가스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기업의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자 2017년 10월 석유가스 생산량 확대하였다.

아울러,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석유·가스 신규 탐사 및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파트너계약 도입 등을 포함하여 2019년 말 신석유가스사업법을 개정하였으며, 2020년 1월 발효되었다.

2019 신석유가스사업법은 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가스 세입을 확대하고, 석유가스 분야에 유연성을 제고, 매력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알제리 국영 에너지 기업인 소나트락과의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51/49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되는바, 소나트락을 통해 신규 석유가스 개발 사업을 이행할 수 있게 하여 국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2019 신석유가스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해외 투자 기업은 석유가스분야에서 △참여계약, △공동생산계약, △리스크 서비스 계약 등 세 가지 형태의 계약을 통해 알제리에서 석유가스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석유가스 관련 활동 기한은 조사는 7년 이하, 타 단계의 경우 최대 30년까지 계약 체결 가능하며, 유전 개발 계약 기한은 25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이다.

- 이외에도, 동법은 석유가스 관련 활동 용지에 대한 세금, 석유가스 사용료, 소득세(IRH), 결산세, 외국 공동계약자의 보수에 대한 세금, 생산에 대한 정액 사용료, 토지세 등의 세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합작투자 의무화

정부발주 공공사업 영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알제리 기업과 합작투자가 요구된다. 컨소시엄은 투자행위로 간주되지 않으며 알제리 파트너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야 한다. 또한 알제리 국적의 기업이 지분의 과반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51:49).

기존에는 합작투자 의무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었으나, 2021년에는 수정재정법은 합작투자 의무화가 적용되는 분야를 △광물 등 지하자원 개발, △에너지 등 석유가스사업법에 포함된 모든 분야, △군사, △철도, 항만, 공항, △제약산업으로 열거한 주요 전략 분야로 한정하였다. 2022년 재정법이 일부 변경되어 △광물 수출 활동, △에너지 생산 전(前) 단계, △석유가스 사업법상 명시된 기타 활동 등이 합작투자 의무화가 적용되는 전략 분야에서 제외되었다.

아울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주 시 투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응찰서에 적시하여야 하며, 현지 파트너와의 협약서 등을 첨부하여 투자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제상 혜택이 부여된다.

- 투자목적에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TVA) 면제
- 투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자산취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

다음의 혜택들은 알제리 정부가 관여하는 투자사업과 항만, 공항, 도로, 수자원관리 등 중요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환경 친화적 기술을 사용하는 투자

사업에 부여되며, 투자이행 단계와 투자이후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1) 투자 이행 단계

-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한 양도세 면제
- 회사 물품과 자본금 증액의 등기비용에 낮은 세율 적용
- 투자의 이행에 직접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2) 투자 이후 단계

- 법인세, 종합소득세, 급여세, 직업세, 부동산세 등을 10년간 면제
- 결손금 이월(loss carry-over), 감가상각 연장(depreciation extension)을 통한 추가 혜택도 가능

2022.7월 신투자법에 명시된 추가적인 투자 혜택(인센티브)은 아래와 같다.

① 분야별 혜택 : △광물, △농업, 수산양식, 어업, △식품공업, 제약산업, 석유화학산업, △서비스 및 관광 산업 △신규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지식경제, 정보통신기술 분야 투자자에 한해 아래의 혜택 부여

- 투자 실행 단계
 - 투자 실행에 직접 투입되는 수입 재화에 대한 관세 면제
 - 투자 실행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며 수입되거나 현지에서 조달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투자사업 관련 실행된 모든 부동산 취득의 경우 유상양도에 따른 세금 및 부동산등록세 면제
 - 투자 관련 회사 설립 행위 및 증자에 부과하는 등록세 면제
 - 등록세, 부동산등록세 면제, 그리고 투자 계획 실행을 위한 부동산으로 건물이 있는 부동산 및 없는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국가보상의 면제

- 취득일로부터 10년 동안 투자 실행에 투입되는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세 면제
- 운영 단계 (운영 단계 개시일로부터 3년부터 5년까지 적용)
 - 회사소득세(IRS) 감면
 - 직업활동세(TAP) 감면
- ② 지역별 혜택 : △고원지역, 남부, 극남부,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발지역, △천연자원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에 한해 아래의 혜택 부여
 - 투자 실행 단계 : 분야별 혜택과 동일
 - 운영 단계 (운영 단계 개시일로부터 5년부터 10년까지 동안 적용)
 - 회사소득세(IRS) 감면
 - 직업활동세(TAP) 감면
- ③ 주요투자사업 : △일자리 및 국부 창출 가능성이 유망한 투자 사업, △국토의 매력도를 제고할 수 있는 투자사업,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경제 활동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 사업에 한해 아래의 혜택 부여
 - 투자 실행 단계 : 분야별 혜택과 동일
 - 운영 단계(운영 단계 개시일로부터 5년부터 10년까지 적용)
 - 회사소득세(IRS) 감면
 - 직업활동세(TAP) 감면

공공 입찰시 자국 제품 인센티브 확대

2010년 10월 7일 관보 58호에 게재된 13조, 23조에는 “건축, 타당성조사 등의 공공입찰 시 알제리산 제품 및/또는 알제리인이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알제리 법인 제품에 대해서는 25%의 특혜 마진이 부여됨” 조항이 신설되었다.

2011년 3월 28일 관보 24호에 게재된 1조, 2조에는 상기 조항의 상세 내용

이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바, 설비계약에 대해서는 알제리산 제품 증명서를 발급받은 설비 제품에 한해 25%의 특혜 마진을 부여하고(1조), 공사, 서비스, 감리 계약에 대해서는 알제리 법인 기업, 감리사무소, 알제리인이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25%의 특혜 마진을 부여한다(2조)고 명시되어 있다.

투자촉진 기관

(1) 알제리투자진흥청(AAPI)

AAPI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투자촉진·개발·후속조치를 담당한다.
- 내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투자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투자의 투자약속의 이행을 확보한다.
- 투자관련 업무처리를 위한 단일창구 역할을 한다(one stop service).

(2) 단일 창구(Le guichet unique; One-stop shop)

기업의登記 절차와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중요한 기관으로 월라야를 중심으로 지방에 분산하여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AAPI, CNRC, 국유 재산 관리국, 세관, 세금, 도시화, 토지 개조, 노동 환경의 각 지방 대표자와 단일 창구가 위치한 지역의 APC 대표자가 담당한다. 법령 06-356에 의하여, 각 대표자들은 자기가 속한 분야와 관련된 일을 책임지게 된다.

비거주 투자자는 입법자의 특정 대상이 된다. 첫째로, 지방의 단일 창구(GUD) 대표는 비거주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교섭 상대를 구성한다. 둘째, GUD 대표는 투자자를 책임져야하며, 투자 신고금과 이익 부여권을 만들고 지급하며 보증해야한다. 셋째, GUD 대표는 GUD에서 조사한 서류에 책임이 있으며, 관련 서비스 종료까지 보장해야한다.

GUD가 발급한 모든 서류와 행정 절차를 따라야한다. 그러나 2009년부터 투자법이 정정됨에 따라 GUD는 CNI 및 AAPI를 통해서만 절차에 개입할 수 있다.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Ordinance № 95-22 of August 26, 1995가 제정된 이후 6년만에 공기업의 조직, 경영 및 민영화에 관한 과감한 정책(Ordinance № 01-04 of August 20, 2001)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민영화에 있어서 전략분야의 기업과 경쟁분야의 기업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고, 두 가지 분야의 공기업이 공히 민영화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에 인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래의 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의 목표로는 민영화를 통한 경영개선, 신기술도입 및 부채축소를 들 수 있다. 민영화를 통한 새로운 자원 마련을 위해 지주회사(Société de gestion des participations)를 통해 심도 있는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알제리 경제에 기여하는 민영화(beneficial privatization)를 선호한다. Ordinance № 01-04 of August 20, 2001의 제17조는 ‘공기업을 인수한 자가 이윤을 내고, 기업을 근대화하고 종업원의 일부 혹은 전부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 사안에 따라 특별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영화에 앞서 민영화 대상기업에 대한 가치평가(evaluating enterprises)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치평가는 주로 다음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 현재가치에 기초한 자산기초평가(asset-based valuation)
-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할인(discounted future cash flow)
- 주식시장에 기초한 평가

이 가운데 민영화의 약 90%가 자산기초평가에 의해 가치평가가 이루어졌

다. 그러나 민영화가 항상 이러한 가치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경제적 고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각의에서 채택된 민영화 계획의 이행은 산업부장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민영화 절차

공기업의 민영화는 다음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1) 주식 시장을 통한 민영화

주식 시장에의 상장 혹은 상장된 주식의 거래를 통한 민영화 방법이다. 주식이 이미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주식을 개인이나 기관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나, 알제리의 경우 현재까지 Hotel El Aurassi, 제약회사인 Saidal Enterprise, 밀가루 제조회사인 Eriad de Sétif 등 3개 기업만이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상장 주식도 전체주식의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식은 상장되어 있지 않고, 민영화 대상기업의 주식관련 정보가 사전에 투자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알제리 주식거래 위원회(Algerian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COSOB)가 양도할 주식의 가격과 수량을 결정한다.

(2) 입찰

대부분의 민영화의 경우 기업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종료된 후 해당 기업을 입찰에 부치고 잠재적 구매자와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종업원 500명 미만 기업의 민영화는 지주회사(SGP)의 감독하에 민영화 협상이 진행되고, 500명이 넘는 기업의 경우는 산업부장관의 감독하에 협상이 진행된다. 협상을 통해 민영화 조건이 합의되면 동 합의는 투자위원회에 제출되고 위원회에서 제안의 수락여부가 결정된다.

알제리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입찰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다. 동 사이트들은 유료로 운영되며,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가입 절차가 필요하다(가입 관련사항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함).

- <http://www.algeriatenders.com>
(알제리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국제입찰정보 검색 가능)
- <http://www.baosem.com> (에너지·자원 분야의 입찰정보 검색 가능)
- <http://www.anep.com.dz/bomop/bomop/bomopp.html>
(에너지·자원 분야를 제외한 해외입찰정보 검색 가능)

(3) 투자자와의 계약

국가가 투자자와 직접 협상하여 기업가치를 결정하고 민영화 조건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4) 공모주

사전에 결정된 가격에 일반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토지의 조차 및 양도

과거에는 투자 목적으로 제공되는 국유지에 대해 22년 간 조차를 허용하고 투자프로젝트를 실현한 후 2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요청할 경우 소유권이 양도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2008년 9월 1일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토지 조차기간은 늘리되 소유권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투자목적으로 제공되는 국유지를 1회 33년(갱신가능), 총 99년 간 조차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아래 토지에 대해서는 조차를 금지하고 있다.

- 농업용 토지, 광물 탐사·개발 지역, 석유 및 가스 탐사·개발지역, 전기·가스 시설물 보호구역,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건설 및 토지개발 진흥구역, 문화·고고학적 보호구역

또한, 추가개정법 2010에 따라 기존의 2001~2003행정명령 조항을 보충하

여 양도 계약 시 국가의 선매권 행사토록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외국 기업이 소유 지분 양도시 국가가 선매권을 행사를 결정하면, 기업은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실행포기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행해진 양도계약의 경우도 국가 선매권에 따른 권리 포기증명서 발급의무를 제정하였다. 동 증명서는 제출요구 기한 한 달 내에 공증인을 중개로 교부받아야 한다. 양도 총액 한계 초과 시, 이 거래는 해당 기업의 지분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선매권 행사는 국가가 취득자를 대신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동 선매권에 따른 매입가격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소유권 양도와 부동산 권리이전과 관련, 조항 10조에 따르면 소유물 양도세의 1/2를 법무사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는 기존에 소유주와 법무사 사이에 거래된 총 양도세가 1/5에 불과하는 등 납세자들이 납세의무를 회피하여 국가재정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 이 밖에도 회사 지분의 양도, 설립과 변경, 무상교부, 외자에 의한 설립, 자본 증가 등에 있어서도 양도세 납입 의무를 확장하였다.

내·외국인 고용절차

(1) 내국인 고용

알제리 진출 기업 및 기관이 알제리 현지인을 고용하기 위한 특별한 고용절차는 없으며 신문광고, 지역소재 전문인력양성 기관의 추천의뢰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현지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알제리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소재지 관할 사회보장 기관에 신고하고, 사회보장기금(CNAS)에 가입 후 현지 고용인을 등록해야한다.

현지 고용인에 대해서는 35%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하며, 고용주가 25%, 피고용자가 9%를 적립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알제리 정부는 자국내 실업률 해소를 위해 주요 국책 프로젝트를 수주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자국인 의무고용제(전체 투입 근로자의 총 약 80% 수준)를 부과하고 있다.

(2) 외국인 고용

기업 및 기관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용주는 먼저 주(Wilaya) 노동국을 통해 해당 직무에 적합한 현지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노동부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허가 또는 임시노동허가(3개월 이내 근로의 경우)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을 위해서는 블록비자→취업허가→노동비자→노동허가 등 4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

1단계로 고용주는 주 노동국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유, 사업장 설치 근거서류(상업등기부 등), 사회보장세(CNAS) 및 조세 납부관련 서류, 고용예정인 현지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수 및 자격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블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블록비자 발급에는 통상 2~4개월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다.

2단계로 고용주는 주 노동국에 근로자의 자격 및 경험 등을 입증하는 서류, 여권,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발급기간은 3~6주가 소요된다.

3단계는 해당 근로자가 자국 소재 알제리대사관에 취업허가서, 고용계약서, 본국귀환 보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비자를 신청하여 비자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알제리에 입국하여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4단계로 근로자는 사진, 건강검진증명서, 여권 사본 등을 첨부하여 노동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 외사계에 여권과 은행구좌개설 확인서를 첨부하여 거주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거주허가 신청시

취업의 경우 고용계약서, 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타의 경우 거주 허가신청 사유서 및 생활능력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장벽

비자 발급

알제리 입국을 위한 비자는 주한알제리대사관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약 2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알제리 사업 파트너나 초청기관이 없는 경우에 비자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주알제리한국대사관 또는 KOTRA 알제 무역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행정 처리

알제리에서 영업활동에는 행정처리 업무가 많고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치안상의 문제

1990년대 초부터 알제리의 테러문제는 국내적으로는 사회불안 요소로 대외적으로는 이미지 손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2005년 9월 ‘평화 및 국민 화합 현장’을 통한 화합정책을 통해 테러위협이 상당히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테러세력들이 주로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만큼 지방 이동 시에는 사전에 대사관과 협의를 하고 알제리 관계 당국에도 적절히 통보하여야 한다.

언어 문제

알제리의 공용어는 아랍어이나 상업활동에는 불어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는 만큼, 시장조사나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 불어통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불 통역의 경우 알제리 현지에서 우수한 통역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통역은 가급적 한국 또는 프랑스

에서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부 입찰의 경우 영어로 입찰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경우가 있으나 불어로 작성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실정이다.

개인정보 보호

알제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정보이전에 동의한 경우 및 의료적 목적을 제외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보 및 국익에 해가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개인정보처리법(Law No.18-07, 2018.6.10.) 제4장 44조 및 45조). 한편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비방, 차별 및 혐오 발언시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특히 온라인 상 이를 조장하는 글을 게재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1000만 디나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차별 및 혐오발언 금지법(Law No.20-05, 2020.4.28.) 제5장 31조 및 34조).

교역관련 국가기관

알제리 수출의 90%이상은 석유·가스 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 일반상품의 교역비중이 낮아서 교역관련 국가기관 중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부서는 알제리 에너지부이며 국영석유공사인 Sonatrach이 알제리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이다. 아울러 알제리내 무역·투자 관련 주요 기관은 아래와 같다.

☞ 무역·투자 관련 주요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주요기능
알제리통상·수출진흥부 (Ministère du Commerce et de la Promotion des Exportations)	www.commerce.gov.dz	대외무역진흥 정부부서
알제리수출진흥기관 (ALGEX)	www.algex.dz	수출진흥지원, 해외시장정보전파 등
알제리투자진흥청(AAPI)	www.aapi.dz	투자정보제공
관세청 (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www.douane.gov.dz	관세율, 수입제도 변경 등

기관명	홈페이지	주요기능
에너지·광물부 (Ministère de l'Energie)	www.energy.gov.dz	석유가스 산업정책 및 국가계획 수립
국영석유회사 (SONATRACH)	www.sonatrach.dz	원유가스 생산 판매 유통
지식재산권보호기관(INAPI)	www.inapi.org	지식재산권보호 특허등록

알제리의 주요 법령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 <http://www.lexalgeria.net/>
- <http://www.joradp.dz/HFR/Index.htm>



앙골라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개관

공식국명	앙골라공화국(Republic of Angola)
수도	루안다 (Luanda)
면적	1,246,700km ² (한반도의 약 5.6배)
인구	3,286만명 (2020, World Bank)
주요도시	Luanda, Cabinda, Malanje, Huambo, Benguela州
언어	포르투갈어
민족	오빙분두 37%, 킴분두 25%, 바콩고 13%, 기타 25%
종교	가톨릭(55%), 토속종교(25%), 개신교(10%), 무교(9.4%), 이슬람교(0.4%), 유대교(0.2%)등
기대수명	61.49세(2020, World Data Atlas)
독립일	1975.11.11.(포르투갈)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간선제, 임기 5년, 1회 연임 가능)
국가원수	주앙 마누엘 곤살베스 로렌쑤(João Manuel Gonçalves Lourenço) 대통령
입법부	단원제(220석, 임기 5년)
기후	○ 열대성 기후(우기 : 10~4월, 건기 : 5~9월) ○ 루안다 : 하계(2~3월) 평균기온 28℃, 동계(7~8월) 평균기온 23℃, 연평균 강우량 400mm
시차	- 8시간 (한국시각 오전 9시가 현지시각 오전 1시)

주요 경제 지표

기초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623억 달러(2020, World Bank) ○ 2021년 성장률(World Bank) : 0.4%(전망) ○ 구성 : 제조업 61%, 서비스업 28%, 농업 10% ○ 1인당 GDP : 1,895달러(2020, World Bank)
정부부채	GDP대비 134.2% (2020)
물가 상승률	21.8% (2021.10월 기준)
화폐단위	Kwanza(Kz)
환율	1 USD = 597 관자(2021.10월 기준)
외환보유고	101억 달러(2021.10월 기준)
교역액	361억 달러(2020년 World Bank)
수출입 (최근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수출 210억 달러, 수입 151억 달러) ○ 2019년 (수출 412억 달러, 수입 188억 달러) ○ 2018년 (수출 438억 달러, 수입 156억 달러)
주요수출품	원유, 다이아몬드, 정유제품, 커피, 수산물 등
주요수입품	기계류, 전자제품, 자동차 및 부품, 의약품, 식료품 등

앙골라 경제 동향

경제 개요

앙골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제 2의 원유 생산국(1위는 나이지리아)으로 풍부한 노동력(전체 인구의 65%가 25세 이하)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원유, 가스, 다이아몬드, 철광석 등 지하자원도 풍부한 자원 부국이다.

앙골라 경제는 2002년 30년 간의 내전 종식 이후 국제 유가 상승세와 신규 유전 개발에 따른 원유 수출 증가, 다이아몬드 산업 회복세에 힘입어 201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9%대의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하며 남부 아프리카의 새로운 지역

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총 수출의 95%를 원유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2014년 이후 저유가로 인한 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는바, 2017년 9월 취임한 Lourenco 대통령은 경제다변화(economic diversification) 정책 및 각종 규제개혁조치 등을 통해 현 위기를 극복하고자 적극 노력 중이다.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20년 10월 13일)에 따르면, IMF는 앙골라의 석유 생산량 감소세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 등을 반영하여 2020년 앙골라의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하는 등 5년 연속 경기 침체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2021년에는 OPEC의 원유 감산 종료와 석유 부문 투자 재개에 따라 앙골라의 경제성장률이 3.2%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점차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였다.

앙골라의 물가상승률은 2017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물가 문제가 심각하다. 2014년 하반기 이후 경기 침체 및 환율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 추세(2014년 7.3%, 2015년 10.3%, 2016년 32.4%)를 보이다가, 국제유가 회복세에 따른 외환보유고 증가 및 해외부채 감소 등으로 다소 감소 추세(2017년 29.8%, 2018년 20.5%, 2019년 17.9%)를 보였다.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유가 급락 및 경제적 충격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2020년 25%에 이어 2021년에는 26.8%(앙골라 중앙은행 전망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 이전(2014년 초)의 앙골라 외환보유액은 30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수출 및 FDI 유입 부진에 따른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2021년 5월 기준 앙골라 외환보유액은 2011년(214억 달러) 이후 사상 최저치인 7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최근의 경기악화에 따른 외환 수입 감소와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 매각, 해외직접투자 축소 등이 외환보유액 감소(2014년초 311억 달러→ 2019년말 101억 달러 이하)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부부채 중 대외채무 규모 또한 2014년 359억 달러에서 2020년 501억 달러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 정책 및 장벽

앙골라의 수입업자가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부(Ministério da Indústria e Comércio)의 수입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 수출입업의 대행업자 또는 사무소는 동 허가 발급을 위해 산업통상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 모든 수입업자는 수입 면허 및 납세자 ID 카드를 받아서 산업통상부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 면허는 매년 갱신할 수 있으며 수입업자가 구매하는 모든 품목이 수입 면허 발급 필요 대상에 해당된다.

앙골라는 1996년 WTO에 가입하였으며, 자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상품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다. 복수 국가간 정무조달협정(GPA)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며, 무역원활화 협정을 아직 비준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앙골라는 우리나라의 일반특혜관세(GSP) 공여 대상국가 중 하나이다.

최근 관세율 하락은 지난 수 년 간 경제다변화 정책(Economic Diversification) 시행과 세계 무역시장에서의 앙골라의 무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서, 앙골라는 궁극적으로 수출 관세 대부분의 폐지, 비석유 및 비농산물 분야의 관세장벽 제거 등 세계적인 교역 자유화 추세에 발맞추어 가기 위해 지속 노력해 오고 있다.

한편 앙골라 정부가 2017년에 제정한 『2017 관세법』이 2018년 8월 9일 발효되었으며, 동 개정안은 앙골라 제조업 및 농업 활성화를 위해 2,475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세수 증대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126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밀수·가품 거래 방지를 위한 635여개의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재수출 상품에 대한 수출세 20% 부과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 관세면제 대상 세부 품목(『2017 관세법』)

기본생활품	콩/식용유/우유/옥수수/쌀/설탕/소금/밀가루/분유 등
보건	모든 의약품/수의(동물 관련)약품/병원용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탈지면·거즈·붕대·마스크·위생장갑)등
제조업	산업용 원자재/산업 및 제조 장비(소형), 건설·채굴·토목용 장비 등
농업	농업용 장비(트랙터, 콤팩트, 로더 등)/종자/살충제/비료 등
차량	18인승 이상 승객수송용 차량
섬유	방적되지 않은 순면·리넨 등

◦ 관세인상 대상 세부 품목(『2017 관세법』)

원예·화훼	원예·화훼 용품
음료	생수/음료수/과일 주스
주류	맥주/와인/위스키
육류	소고기/염소 고기 등

◦ 수입 금지 대상 품목(『2017 관세법』)

화학	몬트리올 의정서에 규정된 해로운 화학물질
제조	중고 및 재생 타이어/중고 모터
동·식물	Welwitschia mirabilis(웰워치아) 화석식물/ 자이언트 세이불 영양
목재	비가공 원목

2018년 8월 발효된 『2017 관세법』에 따르면 앙골라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상하였으며(맥주 60%, 물 70% 등), 한편, 농업 부문 국내 자급률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해 호밀·보리·밀·귀리 등의 종자

및 농업용 기계 등의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폐지하였다. 또한 밀수 방지 및 소비 촉진 등의 목적으로 담배·악기류·화장품 등의 사치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하였다.

석유 제품의 수입관세는 앙골라 정부와 외국 석유회사 간 개별 협상에 따라 결정되며, 상당부분 면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제 상의 제한

□ 부가가치세

앙골라는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 운용 개선을 위해 2019년 10월 1일부터 기존의 소비세를 대체하여 부가가치세 14%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Lourenco 대통령은 2021.10월말 내각회의를 통해 필수 및 생산재 28개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존 14%에서 7%로 인하하였다.

* (필수재) ▲ 냉장·냉동 육류 ▲ 냉동·건어류 ▲ 달 ▲ 연유 ▲ 우유 가루 ▲ 마가린 ▲ 계란 ▲ 콩 ▲ 고구마 ▲ 감자 ▲ 카사바(만디오까) ▲ 참마 ▲ 쌀 ▲ 옥수수 ▲ 밀 ▲ 대두 ▲ 설탕 ▲ 소금 ▲ 옥수수 가루 ▲ 옥수수 가루 ▲ 밀가루 ▲ 빵 ▲ 식용유 ▲ 미네랄 생수 ▲ 비누 (생산재) ▲ 중 소형 선박, 어업 용품 ▲ 공예품 ▲ 농산업 기계 및 장비 등

(1) 도입 배경

석유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앙골라는 2014년부터 이어진 저유가로 인한 경기 침체로 재정 수입 확보가 긴요했던바, 동 부가가치세의 도입은 신규 세제 도입을 통한 세원 다변화가 주목적이며, 그 밖에 ①재원관리, ②역내 사업자 관리 감독, ③비석유부문 성장 도모, ④유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2)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및 사업자별 구분

-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 관세청 지정 421개 업체: 2019.10.1.부터 적용, 14%
- 연간 영업매출 25만불 초과업체: 2021.1.1.부터 적용, 14%(정식 시행일 이전까지는 3% 세율 한시적 적용)

(3) 신고 기간

(월별 신고) 2020.1월부터 부가세 납세자는 앙골라 회계전문가 협회(OCPCA)에서 승인한 공인 회계사를 의무 고용하여 재무부의 「납세자 포털」(<https://portalsigt.minfin.gov.ao/>)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가 발생한 달의 익월 말까지 부가세를 정기 신고해야하지만, 2019년 10월-12월간에 대해서는 3달치에 해당하는 분기별 부가세 신고로 임시 운영된다.

(연간 신고) 다음 연도 3월 말 까지 부가세 연간 신고가 필요하다.

(4) 과세 대상자 확인 및 등록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앙골라 관세청 홈페이지(<https://agt.minfin.gov.ao/PortalAGT>) 접속 → Servico 카테고리 클릭 → Consultar NIF 클릭 → NIF 번호 입력 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식 부가세 납부를 위해서는 재무부에 별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5) 면세 대상 세부 품목

식품·생필품	미농축 우유/우유가루/콩류/쌀/밀가루/옥수수가루/식용유/비정제설탕/비누 등
교육	전자책을 포함한 서적류
의료	의약품
교통	승객 운송 목적 용역
에너지	석유류 제품/광업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임대(호텔 및 숙박업 제외)/부동산양도세(SISA)
유흥	복권, 도박, 오락 게임
금융	금융투자 중개업/보험 용역

(6) 관련 과태료

인보이스 미발행	공급가액의 7~15% 과태료 부과
전자 세금계산서 신고 불이행	50만 원자 과태료 부과
부가세 지연 신고	50만 원자 과태료 부과

양골라 관세청(AGT)은 금번 부가세 도입으로 2020년까지 7,030억 원자(14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며, 부가세 시행을 통한 재무 및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기업 운영의 투명성 또한 한층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양골라의 경우, 부가가치세 시행일이 두 차례나 연기되고(2019년 1월, 2019년 7월), 시행 초기부터 면세 품목에 부가세가 부과되는 등, 제도 적용 미숙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바, 관세청에서는 해당 업체들을 불시 점검하여 부가세 발행 여부를 관리감독 하고 있는 실정이다.

□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는 양골라 국내기업 또는 외국법인의 현지 사업장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으로, 국내 기업의 경우, 양골라 국내를 비롯한 해외 사업 활동에 의해 발생한 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외국 법인의 현지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한해 과세한다.

세율은 고정사업장 기준 30%이나 농업, 양식업, 가금류, 축산업, 수산업, 임업의 경우 15%이다. 단, 광산업 개발 업체에는 40%, 석유생산업체에 대해서는 50%를 부과하며, 합작투자회사에게는 65.75%를 부과한다.

□ 양도소득세

법인 소득세, 이익배당, 이자, 로열티 등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표준 세율은 10%이다.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및 수입규제 조치

앙골라는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관련 법령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유통기한에 따른 수입제한을 두고 있으며 식품은 유통기한 1/4 이하, 의약품은 유통기한 1/2 이하 또는 6개월 이하일 경우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자동차는 제조일로부터 3년 이상, 트럭은 5년 이상의 경우 수입이 금지된다.

수입부과금/내국세

수입부과금으로는 clearing cost(2%), 수입인지세(0.5%)와 함께 세관인건비, 통관수수료, 창고보관료 등이 부과되고 있다. 특히, 2018년 8월 발효된 『2017 관세법』에 따라 앙골라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제품에는 국내산 보다 높은 세율(맥주 60%, 물 70% 등)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2015년 6월부터 해외로부터의 기술·서비스 제공에 대한 세율이 10%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 분야 총 세율은 16.5%에 달하게 되었다.

최근 추세 : 수입제한 강화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하락으로 인한 외환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앙골라 정부는 2015년 1월 일부 품목 대상 수입할당제 및 수입제한조치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수입할당 적용 품목은 국내생산량이 국내소비 수준의 60%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품목으로, 주로 식품 및 음료로 구성되어 있다(단, 상금 수입할당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음).

시멘트의 경우 2017년 4월 발표된 수입제한조치 시행계획에 따라 정부 기관(Cement Sector Commission)의 사전허가 및 승인 없이 수입이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시멘트 수요가 많은 3개주(Cabinda, Cunene, Cuando Cubango)에서는 시멘트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동 3개주에 대해서는 종전(2015) 수입 허용량(15만 톤)제한도 폐지하였다.

또한 2018년 3월 앙골라 산업부는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고자 고철 폐기물에 대한 수출을 금지 하였다.

통관절차상 장벽

수출입 절차

수출입 종사 기업들은 2013년 이후 산업통상부로부터 각 사업별 허가증(5년마다 갱신)을 취득해야 하며, 앙골라 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앙골라인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수출입 등록증과 각 선적별 선적전 수출입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수입절차와 관련하여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로부터 Proforma Invoice를 받고 산업통상부에서 발행하는 수입 허가 번호를 받아야 한다. 앙골라에 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는 수출지에서 앙골라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Angola National Shipper's Council)에서 발행하는 선적증명서인 CNCA(Conselho Nacional de Carregadores de Angola)를 받아야 한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부처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보건부는 의약품 원재료, 사카린 및 그 파생품을, 내무부는 총기와 화약 제품을, 농림부는 식물, 근채류, 과일, 씨앗, 미생물 제품을 사전 승인이 필요한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앙골라 정부는 2019년 1월 발효된 ‘앙골라 정부의 생산지원 · 수출 다변화 · 수입대체 프로그램(PRODESI) 이행 법령’을 통해, 설탕, 쌀, 밀가루, 콩, 우유, 소금 등 국내 생산 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54개 품목과 관련된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해당 품목 수입을 위해서는 현지 생산업자와 수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상기 품목 수입기업은 sepe.gov.ao 사이트에서 온라인 수입통관 신청 절차를 통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2020.8월 Lourenco 대통령은 「제8차 내각 경제위원회」를 주재하여 국내에서도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입할 경우, 국고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승인하며 국내 생산 제품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 시행해오고 있다.

통관

통관을 위해서는 세관에 관세계산서(Documento Unico), 물품소유증명서(proof of ownership),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수입권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1,000달러 이상의 제품은 통관 회사(clearing agent)통해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과거 항구설비 부족과 관료주의로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통관 지연에 따른 벌금 부과도 있어 우리 기업 진출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앙골라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2010년 10월 앙골라 최대 항인 루안다 항구의 통관 평균 시일은 약 2주로 감소되는 등 많은 개선이 있었다. 또한 앙골라 정부는 물품 통관 처리 개선을 위해 로비토항과 루안다항의 하역터미널 및 컨테이너 저장소 확장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6억 달러 규모의 나미브항 신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다만, 일부 품목(특히 식료품 등)에 대해서는 하역 후 13일이 초과되는 경우 공매 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되므로, 통관 물품의 접안 전부터 지속적인 관찰과 노력을 통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추가적인 비용 발생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앙골라 정부는 선적전 검사(PSI: Pre-shipment Inspection) 제도가 상품 운송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 2013년 6월 11일 선적전 검사 법령을 개정하여 동 제도 적용을 완화하였다. 선적전 의무 검사는 2013년 7월 17일자로 폐지되었으며, 수입·수출에 관계없이 자발적인 검증 절차의 경우 요청자에 한해 동 절차를 검사 관리부(ADV)에서 실시하고, 정부는 가격 조건, 수량, 기술, 상업, 위생분야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보다 빠른 통관을 위해서는 선적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2017년 10월 대통령령을 통해 정부지정 검사기관(Bromangol)의 독점적 지위를 철폐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관의 독점적 지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Bromangol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전 검사를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여전히 통관상 제약이 발생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 관련 장벽

수출지 컨테이너 선적 전 검사

원활한 통관을 위해 자동차, 가축, 동식물, 곡식, 씨앗, 식료품, 의료품, 화학제품, 주류, 유제품 등 앙골라에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대부분에 대해 선적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Bromangol 이라는 사기업이 앙골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안전 검사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라벨링

앙골라로 수입되는 제품은 의무적으로 포르투갈어로 라벨링이 되어 있어야 한다.

검사절차

수입업자는 앙골라 소재 검사 기관(SGS, COTECNA, BIVAC)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산업통상부 발행 수입허가번호를 지정한 검사기관에 접수하고, 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검사번호(일명 PIP)를 수출업자에게 통보해 준다. 수출업자는 이 번호를 가지고 지정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후 검사기관은 검사 상태를 앙골라 소재 검사소에 통보하게 되며, 앙골라검사소에서 통관에 필요한 CRF라는 검사증명서를 발행해 준다.

정부 조달 관련 장벽

앙골라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정보 공개 부족, 입찰 과정의 불투명성 및 국제 기준 미준수로 인해 기업들의 입찰 참여비용이 크다. 정부 입찰 공고는 관보(Diario da Republica)와 대표적 일간지인 “Jornal de Angola”에

주로 게재되고 있다. 1,800만 달러 이하 계약은 수의계약이 적용되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7,300만 달러 이상 계약의 입찰에만 참여할 수 있으나, 그 이하에 대해서도 국내 입찰자가 없으면 해당 부처 승인으로 참여 가능하다.

의약품 조달의 경우, 정부 지정 소수 기업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절차가 복잡/불투명하기 때문에 앙골라 내 관련 시설과 네트워크를 갖춘 유럽계 업체(GSK, Bial 등)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적으로 앙골라는 WTO 정부조달협정에는 가입하고 있지 않다.

지식재산권 보호

앙골라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이며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TRIPS), 공업소유권협정(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및 특허협력조약(WIPO 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국이다.

앙골라는 아프리카지역지적재산권기구(ARIPO)에는 옵저버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파리산업지식재산권보호협정과 특허협력조약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을 하지는 않았다. 앙골라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산업부(상표, 특허, 디자인)와 문화부(저작권)에서 관할하며 산업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법(3/92)'에 의해, 저작권은 "저작자 권리에 관한 법(Law No.4/90 of March 10, 1990 on Author's Right)"에 의해 보호된다.

앙골라법은 지재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도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많은 입법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제 법집행은 정부 당국의 능력 부재로 쉽지 않은 형편이다.

투자 정책 및 장벽

2020년 앙골라가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2017년(87억 달러)

대비 75% 하락한 2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와 같은 FDI의 감소 추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앙골라의 투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앙골라가 유치한 FDI의 상당 부분은 중국 정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앙골라는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에 가입하고 있으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투자 진출 관련 제한

최대 산업인 석유와 관련 탐사/개발/시추에 대한 권한은 앙골라 정부에 귀속되며 관련 투자는 반드시 국영석유공사(SONANGOL)와 합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외환거래법에 따르면 앙골라 내 모든 석유가스 회사들은 앙골라 소재 은행을 통해서만 해외 송금을 하게 되어 있으며, 현행 앙골라 노동법은 앙골라 현지 직원들에게 관자로만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2020년 8월 4일 앙골라 중앙은행(BNA)은 'Aviso 17-2020' 통지를 통해, 2020년 9월 3일부로 앙골라에서 고용계약을 통해 보수를 받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보수활동을 허용하는 비자 소지자)가 의무적으로 국내 소재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급여를 수령하도록 하고, 고용주가 급여를 외국인 근로자 소유 해외계좌로 직접 송금 해주던 기존 방식은 금지하였다.

외국인 투자는 국방, 국내 공공질서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다. 또한 중앙은행과 은행을 포함한 은행 업무에는 참여가 불가하고 국가가 법으로 정한 기타 부문에서의 투자는 금지되어 있으며, 석유 및 다이아몬드 산업과 금융 기관에 대한 투자는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앙골라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품목은 무기 및 탄약, 통화, 음란물, 도박 장비, 유독성 제품, 의약품, 철광석 등이다.

앙골라 정부는 유전자 변형 곡물 및 종자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 처리된 곡물 및 종자는 반드시 제분 또는 단종 처리를 거쳐야 수입이 허가된다.

투자 관련 법규(2018년 신투자법)

그간 “2015년 민간투자법”에 기초하여 대앙골라 해외투자기업은 앙골라 투자청(UTIP)과의 투자계약 체결 및 앙골라 수출투자 진흥청(APIEX)의 승인을 통해 앙골라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동 투자 계약 체결시 앙골라 투자청 및 투자 분야 관련 부처와 세액 공제, 투자액환급, 내국세 면세 등 투자 조건 및 인센티브를 협상(Case by Case)할 수 있었으며 1,000만 달러 이하 투자는 앙골라 수출투자 진흥청(APIEX)의 승인이, 1,000만 달러 이상은 내각 장관 회의 및 임시 국무회의(대통령주재)의 승인이 필요하였다.

2018년 4월 앙골라 정부는 투자유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5년 민간투자법”을 개정, “2018년 민간투자법”을 새로 발표하였으며, 동법은 2018년 6월 발효되었다.

신 민간투자법은 기존 앙골라 수출투자 진흥청(APIEX)을 앙골라 민간투자 수출 진흥청(AIPEX)으로 대체하였으며, 5,000만 달러 이하 투자는 해당 부처에서 승인하고 5,000만 달러 이상은 종전과 동일한 내각 회의 및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규정하였다.

외국인 투자 참여시 필수 제출서류에는 투자자 법적 서류/투자 협약 제안서/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여권/기술·경제·재정적 타당성 조사 시행/회사 재정 상태 증빙 서류 제출/앙골라 관세청(AGT)의 체납금액 여부 증명서 등이 있다.

(1) 외국기업의 자회사 설립

외국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앙골라 내 자회사 설립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5년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외투자 기업은 100만 달러 이상(국내투자자 50만 달러) 직접투자를 통한 단독 법인을 설립하거나, 앙골라 현지기업과 합작을

통해 합작법인을 세워야 진출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 신투자법은 상기와 같은 해외투자기업의 투자 하한선을 폐지하였다.

(2) 투자 인센티브 부여

2018년 신투자법은 종전 해외투자자에 대한 최소 100만 달러 이상(국내 투자자 50만 달러) 투자 금액 조건을 폐지하여 모든 투자자들이 투자인센티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센티브 수혜대상지역은 앙골라 정부가 지정한 3개의 산업개발지역(Development Zone)이다.

* Zone A: Luanda주 / Namibe주 / Benguela주 / Huila주 / Lobito시

* Zone B: Cabinda주 / Bié주 / Huambo주 / Bengo주 / Cuanza-Norte주 / Cuanza-Sul주 / Malanje주 / Namibe주 / Uíge주 / Benguela주(주도 제외 모든 시) / Huila주(주도 제외 모든 시)

* Zone C: Lunda-Norte주 / Lunda-Sul주 / Moxico주 / Cunene주 / Zaire주 / Cuando-Cubango주 /

Zone A의 지방세(취득세)는 2년간, 재산세는 2년간, 산업세는 각각 3년간 면제되고, Zone B의 지방세(취득세)는 3년간, 재산세는 2-4년간, 산업세는 3-6년간 각각 면제되며, Zone C의 지방세(취득세)는 4년간, 재산세는 4-6년간, 산업세는 6-8년간 각각 면제가 가능하다.

또한, 앙골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세제 혜택의 세부 내역으로는 ▲가속상각제도, ▲세금 면제(공제), ▲세금 납부기간 연장 혜택 등이 있다.

(3) 투자 승인 주체

2015년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1,000만 달러 이하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앙골라 수출투자 진흥청(APIEX)이 승인하고, 그 이상 규모는 내각 회의 및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8년 신투자법은 앙골라 수출투자 진흥청(APIEX)을 앙골라 민간투자 수출진흥청(AIPEX)로 대체하였다. 이제 5,000만 달러 이하 투자는 해당 부처에서 승인

하며, 5,000만 달러 이상은 종전과 같으며, 외국인이 앙골라에 투자할 시 최소투자금액 요건은 없다.

(4) 현지 파트너 의무화

2018년 신투자법은 특정 부문(전기, 수력, 호텔, 관광, 로지스틱스, 건설, 통신, IT)에 대해 의무적으로 앙골라 현지 파트너를 갖추고 동 파트너는 투자법인의 35% 이상 지분을 갖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2개의 필수 의무 조항을 폐지하였다.

(5) 해외 송금 관련 제한

2018년 신투자법은 2015 민간투자법과 동일하게 해외투자자의 간접투자(주식 및 채권 등) 규모가 전체 투자액의 30%를 넘을 수 없으며, 투자의 해외 환급(repayment)은 법인 등록 후 3년 후부터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익 및 배당금의 해외 송금 규모가 투자자의 기여도를 초과할 경우 15~50%의 부가세를 매길 수 있게 하였다.

투자 관련 애로 사항

(1) 전반적으로 열악한 사업 환경

세계은행의 2020년 “Doing Business Report”에 따르면 앙골라는 전체 190개 대상국 중 177위로 사업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계약이행(186위), 국경간 거래(174위), 대출(185위), 전력 공급(156위) 등이 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특히 계약 이행에는 무려 1,296일이 걸리고, 국경 통관처리에 164시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미수금 문제

2015년 이후 앙골라 경제가 큰 침체에 빠지면서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국내외) 상당수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외국

기업들이 철수한 상황이다. 미수금 문제는 달러 환전의 어려움 및 해외송금 제한 등으로 더욱 큰 부담이 되고 있다.

(3) 신속하지 못한 외국기업 등록절차

앙골라 정부는 외국기업의 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2003년 8월에 One-stop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면허 발급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앙골라 법률은 외국기업 등록절차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앙골라 민간투자 수출진흥청(AIPEX)은 2019년 3월 투자자 유치 확대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동 창구의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동 플랫폼을 통해 ▲법인 설립 간소화, ▲각종 제증명 온라인 발급·처리, ▲기업민원 및 행정 안내·처리 등의 업무가 가능해짐으로써 기존 기업 지원 서비스의 업무 소요시간 단축 및 사업자 편의 증진 등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앙골라 산업통상부는 신속하고 경제적인 기업 등록절차를 위해 2017년부터 온라인 기업설립시스템을 시행해오고 있다.

(4) 관료주의

유관부서 또는 파트너와 사업 추진 시 관료주의 또는 일정이 자주 변경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현지 관행과 관료주의로 인해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현지법인 설립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전기,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이 없거나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5) 국산화의무 부과

앙골라 정부는 현지 조립생산제품에 대해 국산화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재 앙골라 제조업이 음료, 시멘트, 석유화학제품, 선박구조물 등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부품 등 제조 산업이 부재 또는 미미해 국산화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부동산 취득 상의 제한

외국 투자법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나 부동산 소유권 관련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앙골라가 포르투갈로부터 1975년에 독립하면서 포르투갈인들이 포르투갈로 귀국하거나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소유권 귀속 관계가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 등 전문가 고용을 통해 부동산 취득 및 부동산 소유권 분쟁에 대한 대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금융 상의 제한

1) 송금 관련

현지에 투자 법인을 설립한 업체들은 종종 본국으로의 외환 송금에 대해 이유 없이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앙골라 현지의 외환사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해외 송금 거래에 앞서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대상인지를 현지 거래 은행에 문의해 확인을 받아야 추후 발송할 송금 제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2015년 이후 앙골라 경제가 큰 침체를 겪으면서 정부가 공공연히 외환 환전 및 송금을 제한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약품, 식료품 등 필수재를 제외한 품목의 대금 지급을 위한 송금을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사업별로 다름)을 충족해야 하며, 국내 수취까지 4~5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8년 신투자법에서는 해외 송금에 대해 투자의 해외 환급(repayment)은 법인 등록 후 3년 후부터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익 및 배당금의 해외 송금 규모가 투자자의 기여도를 초과할 경우 15~50%의 부가세를 매길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외화 송금과 관련, 앙골라 중앙은행(BNA)은 2019년 10월 23일 연간 최대 개인 외화 송금 한도를 12만 달러로 상향하는 등, 해외송금 문제를 개선하고자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2) 외환 확보 문제

2014년 중반 이후 국제유가 하락세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전환 및 석유 부문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환율상승에 따른 환자화 가치 방어를 위한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은 계속 감소하여, 현재 앙골라에서 외환, 특히 달러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외환보유고 부족(2019년 10월 기준 101억 달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여력 약화, 미국 달러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앙골라 외환 시장 상황에 따라, 앙골라 중앙은행(BNA)은 2019년 10월 23일 공식 성명을 통해 지난 2018년 1월 시행된 관리변동환율제도를 폐지하고, 환율 변동폭 제한(일일 최대 $\pm 2\%$) 조건도 폐지하며 환율이 외환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2021년 4월에는 앙골라 순외환보유고가 2007년(77억 달러) 이후 사상 최저치인 7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앙골라 내 외국인 근로자의 달러 해외 송금은 물론, 앙골라 내 본인 계좌 달러를 인출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졌다.

한편, 중국은 앙골라 거주 중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 및 외화 거래를 위해 2017년 6월 중국은행(Bank of China) 1호점을 앙골라 루안다에 개설하였다.

3) 현지 금융 조달 상의 제한

현지 기업들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애로사항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수도 루안다 이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은 금융시장 접근이 보다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서비스 접근성의 애로사항은 주로 신청절차의 복잡성과 담보물 불인정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운영자금을 자체 유보이익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장기자금의 경우 대기업은 은행을 통하여 운영자금의 25%를 조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4% 정도를 의존하고 있다.

기타 장벽

(1) 비자 발급

앙골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앙골라 파트너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후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일반 비자유효기간은 1~3개월이며 추후 1년짜리 노동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노동비자의 경우 과거 서류 준비와 취득에 장시간이 소요(1~2년) 되었으나, 2016년 이후 개선되어 대략적으로 빠르면 2~3주면 발급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온라인 비자신청시스템이 도입되어 종전보다 신속하게 비자 발급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앙골라 정부는 2020년 6월 「외국인법에 대한 규정」에 관한 대통령령 163/20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 조성 및 관료주의 행정 개선을 위하여 환승비자(2일), 관광비자(5일), 단기비자(2일), 학생비자(30일), 의료비자(30일), 취업비자(30일), 임시체류비자(30일), 영주비자(60일), 투자자 비자(30일) 등, 앙골라 발급 비자 소요 기간을 지정하였다.

앙골라 정부는 2018년 2월 대통령령 56/18을 통해 2018년 3월 30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0개 주요 협력국을 대상으로 앙골라 단기방문(관광)비자 간소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앙골라 입국희망자는 주한앙골라대사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온라인상으로 단기사증(30일)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발급받은 입국승인증명서를 앙골라 입국시 제시하면 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현행과 같이 주한 앙골라 대사관을 방문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것도 여전히 가능하다.

앙골라 이민청(SME)은 2019년 7월 발효된 앙골라 ‘외국인법 개정안’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기존의 특별비자(Privileged)를 대체하여 투자자 비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동 비자 소지자는 2년간 제한 없이 앙골라 입출국 및 거주 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2) 인프라 미비

앙골라는 27년에 걸친 내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회 인프라가 황폐화되어 전력 및 식수 공급이 매우 불안정한 바, 외국기업들의 경우 자체 발전기 및 식수 탱크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기업의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3) 부품 등 중간재 부재

앙골라에서는 음료 등 일부 가공제품만이 자체 제조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부품 및 중간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바, 이는 기업들의 생산비용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4) 세계 최고수준의 물가 및 열악한 거시경제 지표

2019년 6월 MERCER가 발표한 『2019 세계 주요 도시 물가 순위』에서 앙골라 루안다가 아프리카 국가에서 가장 물가가 높은 도시 4위로 선정된 바, 앙골라에서는 해외 주재원 및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택 및 사무실 등의 유지비용이 크게 소요된다.

국제 신용 및 금융 기관 등은 2021년도 앙골라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0.4%(WB), -0.7%(IMF), 0.1%(Fitch社), -0.2%(Standard & Poor's社)로 전망하였으며, 앙골라 정부는 0.2%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2020년도 물가상승률은 25.1%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도는 27%로 전망된다.

2021년도 상반기 앙골라의 비석유부문 세입은 4조 2천억 관자(6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앙골라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2년 26.7%를 기록한 이래 2020년 134.2%로 대폭 상승하였다.

최근 재정건전성 강화 조치로 재정적자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13년 0.3%의 흑자를 기록한 이래 2015~17년 동안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해왔으나,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2%와 0.6%의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였고 2021년에도 0.7%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디지털 무역 장벽

앙골라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기본 인프라 미흡* 및 높은 디지털 문맹률 등으로 인해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거래 또는 무역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고 있다. 2020년 4월 최초로 앙골라 기업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구축운영되었으며, 2020년 2월에 전자무역 관련 규정 도입을 위한 부처 간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 △낮은 인터넷 보급률, △저품질 인터넷 서비스, △낮은 인터넷 접근성, △국가 전역의 우편 서비스 체계 미흡에 따른 물품 배송 및 △전자상거래시 카드결제 어려움 등

개선실적

앙골라 정부는 내전 종식 후 안정적 정치 환경을 기반으로 국가재건 및 국내 자체 제조업 발전을 위해 광업, 건설, 농수산업, 섬유, 유통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인프라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9월에 출범한 Lourenco 신정부는 앙골라 중앙은행(BNA)과 협력하여 국내은행 및 금융시스템이 국제표준을 도입하고,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시중 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예방 및 퇴치 활동을 전폭 지원함으로써, 실물경제 회복과 외환확보를 위한 최선의 전략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Lourenco 대통령은 당선 직후 앙골라 비즈니스 환경의 전면적 개혁을 표방하였으며, dos Santos 전직 대통령 일가 및 측근 퇴출, 고정환율제 폐기 및 관리 변동환율제 등의 거시경제체제 도입 및 민간투자법 개정과 같은 규제완화 정책 등을 시행해왔다. 특히 비석유 부문 산업(주로 노동집약적인 농/수산/식품 분야 제조업)을 육성, 원유 관련 내외부충격(국제유가 하락 및 국내 산출량 감소 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경쟁법 개정, 해외은닉자산 환수 조치,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 노력,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노력 등의 거시 경제 안정화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한 경제/금융

개혁 조치 등을 도입함으로써, 對앙골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 중이다.

Lourenco 신정부는 경제슬로건인 경제다변화 추진을 통하여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민간 수출 확대, 특히 농업 및 제조업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불균형 해소, 세수 확보 등을 통해 국제 유가 하락 및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위기에 직면한 앙골라 경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자금력 향상을 위해 기계 및 장비류 수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 지원·수출 다변화·수입대체 프로그램(PRODESI) 등을 통해 국내외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앙골라 경제를 지속가능하고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로 탈바꿈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Lourenco 신정부는 농업 부문에서 농업 현대화 사업, 가족 단위 농업 중요성 제고, 농산물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에 중점을 두고, 제조업 부문에서는 철강 산업, 건축자재, IT, 직물 제조업, 식품 부문의 자금력을 증대시켜 나갈으로써,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18년 12월, Lourenco 정부는 앙골라 경제 개혁 개선을 위하여 IMF로부터 3년간 37억 달러의 확대금융지원(EFF, Extended Fund Facility) 지원을 승인 받았으며, 동 자금을 통해 앙골라 정부는 △앙골라 5개년 국가개발계획(2018-22) 세부 이행계획 추진, △재정 지속가능성 회복, △민간주도의 경제다변화 정책 기반 마련,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법안 제정 논의, △부채 수위 안정화 등의 노력을 실시해오고 있다.

IMF는 2019년 6월 對앙골라 확대금융지원(EFF)에 대한 2억4,815만불 규모의 2차분할금 지급을 승인하였는바, 동 자금 지원은 앙골라 정부의 각종 경제 개혁 조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0.9월 IMF 집행위원회는 대앙골라 확대금융지원(EFF)에 대한 3차 검토를 실시, 약 10억 달러의 분할금 집행을 승인하고 지난 7월 앙골라 정부가

요청한 7억6천5백만 달러 규모의 추가 EFF 금융 지원을 승인하였는바, 이에 따라 IMF의 對앙골라 확대금융지원(EFF) 총액은 기존 37억 달러에서 45억 달러로 증액되었다.

2021년 6월 IMF는 對앙골라 확대금융지원(EFF)에 대한 7억7천2백만 달러 규모의 5차 분할금 집행 승인을 발표, 이에 따라 앙골라에 기 지급된 EFF 분할금 총액은 약 39억 달러 상당으로 확인된다.

또한, 2020.8월 파리클럽(Paris Club)은 성명을 통해, G20의 ‘채무연기 이니셔티브(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DSSI)’ 동참을 통해 2020년 5월 1일~ 2020년 12월 31일 간 앙골라의 부채 상환 유예를 승인하였으며, Fitch Ratings社는 2020.8월 특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동 채무 연기 결정에 따른 수혜국으로 앙골라, 모잠비크, 파키스탄, 콩고공화국 및 라오스를 언급하고, 이중 앙골라가 GDP의 4.3%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하여 최대 수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며, 2020년도에 26억 달러 상당의 부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Lourenco 행정부는 출범이후 경제안정화 정책 추진을 위해 주요국 금융기관과의 자금협상에 주력해왔으며, 지난 1년간 영국의 수출금융기구(UKEF) 5억 달러·유로본드 35억 달러 발행·프랑스 Credit Agricole 은행 5억 달러·프랑스 개발청(AFD) 9천 2백만 달러·독일개발은행(KfW) 5억 달러·포르투갈 보험회사(COSEC) 5억 달러·중국개발은행(CDB) 20억 달러·중국공상은행(ICBC) 35억 달러·중국수출입은행 6억 2천만 달러·AfDB 1억 1천만 달러 등 총 112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을 획득해오며 자금 조달에 힘써오고 있다.

Lourenco 대통령은 태양 및 풍력에너지 등의 대체에너지 개발과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한 에너지 생산 및 환경보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바, 향후 에너지-기후변화 분야 간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도 기대된다.

또한, 신정부는 미국, 한국, 일본 등과의 경제 협력의지를 적극 밝히며 중국 위주의 경제협력선을 다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앙골라의 재정 상태, 각종 거시 경제 지표, 투자 리스크 및 행정력 등을

감안할 때 기업들이 앙골라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기업·통상 환경이 조성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은행, Capital Economics社(영국시장조사업체), 앙골라 재무부는 앙골라가 국제 유가 회복세와 비석유 부문 개발 노력에 힘입어 2021년에 각각 경제성장률 0.4%, 1.3%, 0.2%를 기록하며, 앙골라가 지난 2016년부터 지속되어 온 5년 연속 경기 침체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다.



에티오피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개관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뿔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에 에리트레아, 동쪽에 지부티와 소말리아, 남쪽에 케냐, 서쪽에 수단 및 남수단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주변국가에 비해 석유 등 원자재가 부족한 편이지만, 아프리카 제2의 인구 대국(나이지리아에 이어 2위, 2021년 기준 1억1천7백만명(WB)이면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동시에 보이고 있어 시장 확대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꾸준한 환율상승 및 물가상승(연평균 10% 이상)은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아직 국유화 되어 있는 물류 시스템 및 정보통신 서비스 등은 국가 인프라 구축에 문제가 되고 있다. 다만, 2018년 6월 현 정부는 국영기업의 일부 민영화 원칙을 발표하였으며, 관련 이행방안이 논의 중이다.

에티오피아는 최근 수년 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2018년 7.6%, 2019년 7.3%, 2020년 6.1%), 아비 총리(2021년 10월 재신임)가 제조업 육성, 경제개발을 위한 외화 확보, 통신 등 주요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등 일련의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경제개발정책 추진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난(관광 등 외환 수입 급감) 및 내전, 종족 간 갈등 등 정세 불안 요인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10개년 개발계획(2021~2030)에 따라, 제조업 분야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GDP 중 제조업 비중 2019/20 6.9%→2029/30 17.2% 확대). 다만, 지속적인 재정적자, 만성적인 무역적자, 환율 상승, 외환 부족, 높은 물가 상승률 등은 향후 경제 성장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대에티오피아 상품 수출액은 1억4천만 달러로 의약품과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등이 주요 품목이며, 대에티오피아 상품 수입액은 8천1백만 달러이며 커피, 참깨 등 농축산물이 주요 수입품목이다. 특히, 에티오피아는 세계적인 커피 생산국으로 커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에티오피아산 커피 수입이 늘고 있으며, 최근 직물제 의류가 새로운 수입품목으로 급부상하였다. 동부 아프리카 물류의 거점으로서 에티오피아의 전략적 이점과 에티오피아 항공의 인천-아디스아바바 직항 운영(2022.11월 현재 주4회 운항중)을 계기로,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

에티오피아는 2018년 3월 아프리카연합(AU)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출범한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의 회원국(2019년 3월 21일 비준 완료)이다. 동 협정은 아프리카내 물품 거래에 대한 관세 제거, 서비스 무역 자유화, 국경 무역에 있어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 5월30일 공식 발효되어 2021년 1월 1일에는 AfCFTA 하에서의 교역이 단계적으로 개시된 바 있다(2022년 11월 기준 40개국 비준 완료). 향후 AfCFTA에 따라 완전한 관세 철폐가 실현될 경우 아프리카 대륙내 역내 무역은 약 50% 이상 증가되고 대아프리카 투자 증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참여 동향

에티오피아는 전체 약 4억 인구의 19개 아프리카 국가가 참여하는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회원국이다. 지난 2000년 10월 31일 역내에 무역 자유화 지대를 창설해 단일 경제 공동시장(수입관세 및 장벽 철폐)을 결성하고, COMESA 역내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 기준도 종전 45%에서 35%로 인하해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일부 COMESA 회원국은 40% 기준 유지). 2009년 6월 13차 COMESA 정상회의에서 3년간의 경과규정을 두고 COMESA 회원국 간 관세동맹을 출범키로 하였으며(일부 회원국들 유보적

입장 표명), 완전한 관세동맹 이행을 위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COMESA 창립 회원국임에도 COMESA FTA는 미가입 상태이다.

무기를 제외한 모든 교역 원칙(Everything But Arms)

유럽과의 교역에서 무관세 및 쿼터 제외를 보장한 원칙에 가입하여 유럽으로의 수출이 용이하다.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s, AGOA)

미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미국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AGOA를 통해 해당 국가들에 대미 무관세 수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2000년부터 AGOA 혜택의 적용을 받아 의류, 농산물 등의 품목을 미국 시장에 수출하여 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에티오피아 내전 상황 하 중대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2022년 1월 1일부터 에티오피아에 대한 AGOA 혜택 적용을 중단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에티오피아가 인권수호를 비롯하여 AGOA가 추구하는 기본 가치를 만족할 시 AGOA 혜택 부여를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35%의 수입관세와 15%의 VAT를 부과하나, 제조업 및 수출산업 육성, 국내 산업 및 제품 보호를 위해 관세 면제나 차등적 부과가 적용되기도 한다. 관세 면제 대상에는 아래 품목들이 포함되며, 구체 품목은 에티오피아 국세부(Ministry of Revenue)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축산업 : 가축, 작물종자(감자, 밀, 보리, 콩 등), 비료
- 천연자원 : 천연 광물 및 고무, 각종 광석
- 기계류 : 일부 동력장치(수차발전기, 터보제트 터빈 등), 식료품 제조기계, 직조기계, 트랙터, 크레인, 의료기기 등
- 교통수단 : 경전철, 헬기, 항공기 등

그리고 수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자재 수입에 관해서는 차후에 관세가 100% 환급된다.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은행허가서를 에티오피아 투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 튀르키예, 중국 등 21개국과 BIT를 발효 중이고, 영국, 이탈리아, 인도 등 22개국과는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맺어져있다. 우리나라와는 BIT 미체결 상태이며, 이중과세방지협정은 2017년 10월 31일 발효하였다.

수입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에는 관세, 특별소비세(Excise Tax), 부가가치세(VAT), 물품세(Surtax), 수입인지세(With-holding Tax)가 있다.

관세(CIF기준)는 0~35%까지 5단계가 적용되며 품목 및 생산단계에 따라 다르다. 특별소비세(CIF+관세기준)는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보편적인 세금 종류로서 주로 사치재, 가격 비탄력적인 재화, 유해 물품 등에 부과된다. 부가가치세(CIF+관세+특별소비세 기준)는 법에 명시한 특별한 경우(가령 종교적, 교육적 목적 등)를 제외하면 일률적으로 15%가 부과된다.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물품세(CIF+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기준)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활비(식비) 수준을 낮추는 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세목으로, 10%가 부과되나, 비료, 석유, 자동차, 항공기 등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수입인지세는 3%가 부과된다.

디지털무역 장벽

에티오피아 정부는 2020년 「Digital Ethiopia 2025」전략을 발표하며 디지털 전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으로, 특히 디지털 ID, 디지털 결제 시스템,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등의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만, 에티오피아의 낮은 인터넷 보급률(2021년 16.7%)과 열악한 인터넷 환경은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에티오피아에는 570여 개의 온라인 서비스·상거래 업체가 운영 중이나, 대다수가 소규모 사업체에 해당한다. 신용카드의 미보급과 미비한 물

류시스템은 에티오피아 내 전자상거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기업 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잠재력을 평가한 UNCTAD의 B2C 전자상거래 지수(B2C E-commerce Index)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31.1점을 기록하여 152개국 중 120위를 차지했다.

온라인 부문을 관장하는 법적 제도가 미비하여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법령 등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에티오피아 혁신기술부(Ministry of Innovation and Technology)는 2021년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마련하였으나, 아직 입법화 되지 않은 상황이다.

통신 민영화 정책으로 2021년 Safaricom Ethiopia가 에티오피아의 제2 통신업체로 등장하기 전까지 국영통신사인 Ethio Telecom이 통신 부문을 독점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 의한 인터넷 접속 차단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졌으며, 특정 사이트에 대한 차단도 가능하다. 프리덤하우스는 2022년 에티오피아의 인터넷 자유도를 27점(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바 있다. 한편, 2020년 11월 발생한 내전으로 티그라이 지역에는 통신 공급이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22년 11월 기준).

표준, 검사, Labeling 관련

에티오피아 표준협회(Ethiopia Standard Agency, ESA)가 1970년에 설립되어 수입품 안정성 테스트(Testing) 및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를 담당하고 있고, 동 협회는 다음의 모든 국제표준기구의 멤버로서 국제표준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OIML)
-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CAC)
- African Reg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RSO)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

에티오피아는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품질 인증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식의약품, 건축자재, 화학약품, 섬유 등은 품질인증서가 필수이다.

또한 모든 수입 상품에는 분명하고 서류와 대조 가능하도록 라벨 및 마킹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벨 및 마킹과 관련한 규정은 에티오피아 표준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에티오피아는 농업이 전체 GDP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약 70~80%의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환경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1997년 도입된 에티오피아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 of Ethiopia)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질 좋은 환경에서의 삶을 영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미래 세대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정책에는 토양, 숲, 생물 품종, 수자원, 에너지, 천연자원, 도시환경, 산업폐기물,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문화 및 자연 보존지역, 인구, 공동체, 토지, 성, 환경경제, 환경정보화 시스템,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환경교육 등이 망라되어 있다.

한편, 에티오피아 정부는 2011년 기후 복원력 증진 경제 전략(Ethiopia's Climate-Resilient Green Economy, CRGE)을 발표하여, 이에 따라 2025년까지 탄소배출 중립적이고 기후 복원력 있는 국가 달성 및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발전 목표를 추진 중이다. 또한, 에티오피아 투자규정(2020.4월)은 투자의 세부 목표 중 하나를 사회적·환경적으로 책임있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모든 투자자는 투자 진행 시 환경보호 등 사회·환경적 지속가능한 가치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에티오피아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은 2003년에 설립된 EIPO(Ethiop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이며, 지적재산권 관련 파리조약, 특허협력조약(PCT 조약) 등 주요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의 출원을 전제로 하는 우선권을 인정한다.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발효 중인 지적재산권 관련 조약은 나이로비 조약(1982.9월 발효), WIPO 협약(1998.2월), 마라케시 조약(2021.2월 발효)이 있다.

특허 출원 시,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15년 후 만료되나 발명이 에티오피아에서 제대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존속기간을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 신청일로부터 1년 후부터 매년 연회비를 특허청에 선불로 납부해야 한다. 연회비가 납부 기한 6개월을 넘겨도 납부되지 않는 경우, 특허 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특허가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실용신안 인증서는 5년의 기간 동안 부여되며, 이 기간 동안 에티오피아에서 발명이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제출될 경우 5년의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해외에서 특허를 받았고 권리가 만료되지 않았으며 에티오피아에서 특허를 받지 않은 발명에 대해 도입 특허가 주어질 수 있다. 도입 특허는 국가 차원의 기술의 채택, 활용, 개선 및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에티오피아에서 독점적으로 실행되는 제도이다.

디자인은 선이나 색상의 어떤 구성이나 형태가 산업 및 수공예 제품에 특별한 외관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선이나 색상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3차원적인 형태로 정의되며,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실용성을 가져야 한다.

상표는 한 사람의 재화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신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어, 디자인, 문자, 숫자, 색상 또는 상품의 형태, 포장 또는 그 조합을 포함한다.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7년이 고, 7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다.

투자장벽

외국인투자법

에티오피아 정부는 경제개발을 정책목표의 최우선으로 두고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사무소를 1996년 6월 투자청으로 격상시키면서 투자규정을 개선하는 등 꾸준히 불합리한 관행과 규정을 바로잡으려 노력해오고 있다. 그 간 투자법 개정을 통해 투자 행정체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여왔으며, 2020년 4월에는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제 발전 가속화를 위해 투자법을 한 차례 더 개정하였다.

개정 투자법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허용하는 Negative List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가능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최소 자본금(투자 분야나 단독 혹은 공동 투자 여부에 따라 5만~20만 달러) 면제 요건을 배당이나 이익의 재투자 외에, 1) 개인유한회사(PLC)에서 주식회사(share company)로 변경함에 따라 이사회 멤버로 선출된 사람, 2)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한 기업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수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투자자의 민원 접수 및 분쟁 해소를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개정 투자법에 따라, 최고경영진을 제외하고는 감독, 훈련, 기타 기술 관련 분야에는 유사한 자격이나 경험을 보유한 에티오피아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외국인에 대한 고용 요건을 강화했다.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 관세 감면, 기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수출업 종사 시 추가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법인세 감면 : 투자 활동이나 입지, 제조업(6년), 농업(10년), 전력 (5년), ICT(5년), 관광(5년) 등 분야별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투자가는 1년~10년 사이의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세 감면 동안의 손실은 감면 기간 종료 이후 최대 5년 범위에서 감면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 이월할 수 있다.

한편 에티오피아의 법인세는 30%, 부가가치세(VAT)는 15%가 부과된다.

- 관세 감면 : 공장 생산 설비와 같은 투자용 자본재 수입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 만족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누진세, 특별소비세 등 기타 세금이 100% 면제된다. 그 외 수출 인센티브로서 수출품 생산을 위해 수입 혹은 현지 구입한 원부자재에 부과된 관세 및 기타 세금은 면제되며, 납부된 관세 및 기타 세금은 최종재 수출 시에 100% 환급받을 수 있다.
- 기타 지원 프로그램 : 산업단지에 위치한 섬유 가죽 제조업체로 생산품을 100% 수출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 만족 시,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투자이사회는 현지인 역량 개발 및 고용 유지 인센티브로서, 현지 노동력 고용과 훈련비용에 대해 1년 차 85%, 2년 차 75%, 3년 차 50%, 4년 차 25% 까지 매칭 펀드 형식으로 지원 결정이 가능하다. 공장 설립 부지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최장 99년까지 리스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법령, 도덕, 공중보건 또는 안보에 반하거나, 정부와의 공동투자 분야, 국내투자자를 위한 분야(국가 통합 전력망을 통한 송배전업 등), 국내투자자와의 공동투자 분야(물류 서비스 등)로 별도로 규정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 투자가 가능하다.

정부와의 공동투자만 허용되는 분야는 1) 무기, 탄약, 화약 제조업 2)전기 수출입업 3)국제 항공운송업 4)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5) 택배를 제외한 우편 서비스이다.

금융상의 제한

에티오피아로 입국시, 상주민의 경우 4,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비상주민의 경우 10,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소지하고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 에티오피아 중앙은행은 상주민을 대상으로 입국 후 최대 30일까지만 외화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공식 환전소에서 비리로 환전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비상주 외국인의 경우, 비자 유효 기간 동안만 외화를 보유할 수 있다. 출국시에도 외환을 소지하고자 할 경우 해당 외환에 대해 30일 이내

발급된 은행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동 규정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출국하는 비상주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소지 금액이 10,000달러를 초과할 시에는 입국시 작성한 외환세관신고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법 관계

에티오피아 노동법에 따라 고용주와 피고용주는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고용기간, 급여, 근무장소, 담당업무, 월 급여 및 초과근로 조건(초과수당 계산법 등), 계약파기, 해고, 휴가,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 업무상 비밀유지, 계약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계약기간은 보통 1년 단위로 하며,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월 급여 조건에 대한 수정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조건에 이견이 없는 한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채용 후 수습 기간은 60일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에는 저성과자에 대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나, 수습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정직원으로 간주된다.

피고용인이 사직하는 경우에는 30일 사전 통보하면 되나,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수습을 마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1~9년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개월, 9년 이상 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 수습을 마쳤으나, 인력 감축에 따른 해고의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에티오피아는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없으며,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이 매우 낮아, 평균 임금은 약 USD 212이며, 대졸 초임의 경우, 현지 정부기관 근무 시 USD 100~150, 일반 기업체는 USD 200 이상이다. 고졸-생산직의 경우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으나 초임 월급은 USD 60~80이다.

수습기간을 마쳤으나,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노동자는 파산 기타 이유로 기업 조업이 영구 중단되어 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고용주가 노동법을 위반하여 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기타 고용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노동자가 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고용주의 성희롱,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대우 등)에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법에 따라 에티오피아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초과근무수당 계산은 아래와 같다.

- 06:00~22:00 사이 초과근무 : 시급 X 1.5배
- 22:00~06:00 사이 초과근무 : 시급 X 1.75배
- 주말 근무 : 시급 X 2배
- 공휴일 근무 : 시급 X 2.5배

노동법상 최초 채용 시 유급 휴가는 16일을 기본으로 부여하며 이후 2년마다 유급 휴가일 수 1일이 추가된다. 연간 휴가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 피고용주와 고용주간 합의하에 최대 2년 내 소진하지 못한 휴가를 이월하여 쓸 수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에티오피아의 토지는 정부 소유로, 원칙적으로 매매가 금지되어 있다. 정부 소유 토지는 최대 99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다. 만약 토지개발을 목적으로 장기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계약파기 및 개발권 환수, 패널티 부과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임차권은 공공경매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고, 매매가 가능하다.

에티오피아 경제개황	
구분	내용
위치	아프리카 동북부, Horn of Africa 에리트레아, 지부티, 케냐,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과 국경 접하고 있음
면적	1,104천km ² (경작 가능지: 68%, 삼림율: 3%) 한반도의 5배
인구	1억 1,787만 명 (2021년, WB)
수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New Flower의 뜻) 연평균 기온 20℃(우기에는 5~10℃까지 떨어지기도 함), 위도 9° 평균해발 2,355m로, 수도로서는 세계 제3위 고도 기록 면적: 530.14km ² (서울, 605.3km ² 의 0.9배) 인구: 약 5백만 명(서울, 약 1천만 명의 0.5배)
언어	암하리어(공용어), 영어 및 기타 지역부족어
GDP	1,112.7억 달러(2021년, WB)

구분	내용
GDP성장률	5.6%(2021년, WB)
소비자물가상승률	26.8%(2021년, WB)
수출입	총 193억 3백만 달러 (2021년, KITA) 수출: 약 31억 9천5백만 달러(커피, 채유종실, 화초류) 수입: 약 161억 8백만 달러(의약품, 건설중장비, 합성수지)
외환보유고	20.36억 달러(2021년 8월, 에티오피아 국립은행)
외채	303.6억 달러(2020년, WB)
환율	USD 1 = 53ETB (2022년 11월 달러 매입기준)

자료: WB, EIU, KITA(한국무역협회), 에티오피아 국립은행

에티오피아 입국시 유의사항

사전에 e-비자를 신청(<https://www.evisa.gov.et/>)하여 발급받은 비자를 지참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입국제한은 2022년 10월 28일부로 해제되어 코로나19 확진자를 제외하고는 별도 조건 없이 입국 가능하다(2022년 11월 기준).



요르단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요르단 경제 개관

경제 성장 과정

- 1970년대: 급격한 유가상승 속에서도 아랍 국가들의 원조 및 걸프지역 근로자 송금 확대 등으로 꾸준히 성장
- 1980년대: 대외 여건 악화와 국내 경제조정 실패 등으로 1989년 IMF의 관리체제 경험
- 1990년대: 이라크 전쟁 등 지역정세 불안이라는 악재 속에 1994년 이스라엘과의 평화조약 체결로 경제성장 동인 마련
- 2000년대: 대미 FTA체결 등 강력한 경제개혁·개방정책, 세제투자관련 법규 개정 등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연 10% 이상의 수출신장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등 연 5% 이상의 고속성장
- 2008년부터 글로벌 경제위기로 타격을 입었고, 2011년부터 회복하던 중 시리아 내전으로 성장폭 둔화
- 2011년 초반부터 이집트 천연가스 공급망 불안으로 에너지 수입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
- 2012년 IMF로부터 경제 개혁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대기성 차관 20억 달러 수혜
- 2015년 IS(Daesh, 이슬람국가)사태와 시리아 내전으로 대규모 시리아 난민(요르단 정부 추산 약 130만명)이 유입되면서 시리아, 이라크 국경 폐쇄로 직접 및 중계무역이 위축되면서 요르단 경제에 부정적 영향

- 2016년 IMF로부터 경제 개혁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대기성 차관 7.23억 달러 추가 수혜
- 2017년 8월말 요르단-이라크 국경 재개방, 2018년 10월 요르단- 시리아 국경 재개방에 따라 이라크 및 시리아와의 직접·중계 무역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
- 2018년 GCC(사우디, UAE, 쿠웨이트) 3개국이 요르단에게 약 25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동 지원이 실현되면 요르단 정부의 재정 적자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2019년 IMF는 요르단 확대신용공여 프로그램 하 2차 평가 시, 정부가 거시경제 안정, 신중한 금융 정책, 견실한 금융 시스템을 유지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고 11월 중 3차 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기존 프로그램은 세수확보, 재정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재정 정책에 주안점을 두었던 반면, 신규 프로그램은 개발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
- 2020년 코로나19로 3~6월 기간 사실상 경제활동 전면 중단에 따라 전 산업이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 주요 산업인 관광업에 가장 큰 여파가 미치고 있는 한편,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여 주요 수출 품목인 의류 및 자원 수출 관련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재정 부양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현재 소비투자 심리는 얼어붙었고, 5월에는 디스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현재 요르단 산업 전반은 침체되어 있는 상황
- 2021년 요르단 정부의 코로나19 제한조치 완화 및 국가 경제회복 프로그램 추진에 따라 관광 등 서비스업과 광산·채굴업, 건설업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경기 회복 조짐 뚜렷
- 2022년 요르단 정부는 “경제 현대화 계획”을 발표하고, 수자원, 에너지 등 국가 기간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선진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관련 기자재 기업들의 진출 환경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경제 구조적 특징

(1) 서비스 산업에의 의존

요르단 경제는 협소한 시장, 취약한 산업기반, 부족한 자원 부족으로 GDP비중 중 서비스 생산이 약 67%, 상품 생산이 약 33% 차지. 특히, 제조업 비중은 전체 GDP의 약 20%이며, 식품, 의약품, 화학 제품, 의류 산업에 편중되어 있다.

◦ 요르단의 산업 구조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농업 · 임업 · 수렵 · 어업	5.4	5.4	5.5	5.6
채석 · 광업	2.3	2.3	2.4	2.5
제조업	20.3	20.1	19.8	19.9
전기 · 수도	2.1	2.1	2.1	2.1
건설업	3.3	3.2	3.1	3.2
상품 생산 소계	33.4	33.1	32.9	33.3
숙박 · 요식업 · 교역	10.8	10.7	10.5	10.5
운송 · 창고 · 통신업	9.9	10.0	9.6	9.6
금융 · 부동산 · 비즈니스 서비스	20.7	20.8	21.4	21.5
공공서비스	15.9	15.8	16.2	16.1
기타 서비스	9.3	9.6	9.4	9.0
서비스 생산 소계	66.6	66.9	67.1	66.7
총합	100.0	100.0	100.0	100.0

* 주: 2022년 기준 가장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2021) 자료

* 자료원: 요르단 중앙은행 연례보고서

(2) 만성적 적자재정 운영

수입 측면에서 요르단은 여타 중동국가와는 달리 원유·천연가스 매장량이 거의 없어 재정 수입의 대부분을 조세수입과 재외 국민의 본국 송금에 의존하고 있다. 요르단은 세계 3위의 인산염(phosphate) 생산국이며, 탄산칼슘(potash) 매장량도 풍부하지만 정부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지출측면에서 요르단 정부는 기초 식료품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 인건비, 국방·치안 및 국공채 이자비용, 공무원 연금 등 분야에서 정부 지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이후부터는 코로나19

위기로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는데, 요르단 통계청에 따르면 요르단 공공 부채는 2021년 기준 GDP 대비 103.7%로 2019년 91.1% 대비 12.6%p 증가했다.

(3) 대외 의존

요르단은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바, ① 해외 거주 요르단인의 국내송금액(GDP의 약 10%), ② 관광수입(GDP의 약 10%), ③ 외국정부의 예산지원 방식 무상원조(연 평균 10억 달러 내외)로 경상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거주 요르단인 송금) 요르단 중앙은행에 따르면 매년 전체 해외근로자의 국내 송금액은 약 35~40억 달러 규모로 GDP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해외 거주 요르단인의 대요르단 송금액은 전년 대비 약 1% 증가한 30.66억 달러를 기록했다.

(관광수입) 관광업은 요르단 GDP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중추 산업이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3월부터 관광업은 사실상 마비되었는데, 2021년 3월 이후 요르단 관광산업은 월별 매출액 1억달러 이상을 계속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1~7월 기준, 요르단으로 입국한 해외관광객은 250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2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관광 수입액은 총 28.7억 달러로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대외원조) 공여국이 요르단 정부의 국고로 직접 재원을 이전하는 예산지원(budget support) 방식의 무상원조(grant)는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GDP의 2~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재정 지원의 주요 출처는 미국, EU, 걸프개발기금, 메카기금 등이다. 최근 요르단 정부는 경제회복 프로그램인 '2021-2023 경제 우선순위' 정책(총 6.8억달러 규모)을 추진하면서 이중 약 3억 달러를 해외 원조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요르단 정부는 대외 원조 이외에도 IMF 확대신용공여, 유로본드 발행, EU-요르단 신규 대출 협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족한 수입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2021년 요르단에 대한 무상원조 및 차관을 포함한 총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약 44억 달러로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치이다.

○ 대요르단 대외 원조액(예산지원방식) 현황

(단위: 억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대외원조액	12.63	11.13	11.16	11.34

* 자료원: 요르단 재무부

최근 경제 동향

요르단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2020년 역성장(-1.6%)을 딛고, 2021년에는 2.6% 성장했으며 2022년에는 2분기까지 2.9%의 성장률을 보였다(EIU 분석). 즉, 요르단 총 GDP는 2021년에 부분적으로 회복된 후 2022년 전세계 위드코로나(Life with Corona) 확산 및 주요 산업 활성화로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요르단 관광·서비스 수지는 2020년에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2021년부터 반등하여 향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 가고 있다.

제조 부문에서는 비료·탄산칼륨 등 주요 제조 품목 생산량 증가, 주택수요 반등에 따른 건설시장 회복 등이 주요 경기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증가 중인데, 2022년 1~6월 기준 요르단 일반산업 생산지수는 92.16으로 전년 동기간 88.34에서 4.3% 증가했고, 같은 기간 광업 및 채석업 생산 지수는 9.1%p 상승했다. 이는 국제 인산염, 탄산칼륨 가격 상승(양 품목 2배 이상)에 힘입은 바가 크다.

2022년 1~7월 기준 요르단 탄산칼륨 및 인산염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각 5.9%, 17.7% 상승했으며 인산염의 경우 2년 연속 두 자리 수 성장 중이다. 단 국제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해 원유를 원자재로 활용하는 석유제품 산업의 생산량은 3년 연속 하락했다. 한편, 전력 생산량은 2022년 1~7월 기간에 전년 동기 대비 12% 이상 상승하면서 3년 연속 상승 중이다.

◦ 2018-2022 제조업 분야별 생산량 추이(괄호는 전년 동기대비 %)

연도	제조업(천톤)				채굴업(천톤)		전력 (백만KW/h)
	석유제품	벽돌	화학물질	비료	탄산칼륨	인산염	
2018	2,213(△15.0)	587(8.1)	1,375(5.1)	882(26.9)	2,434(4.9)	7,986(△7.8)	2,270(△51.9)
2019	2,274(2.8)	282(△52.2)	1,292(△6.1)	747(△15.2)	2,486(2.1)	9,088(13.8)	973(△57.1)
2020	1,855(△18.4)	292(3.8)	1,391(7.7)	929(24.3)	2,455(△1.3)	8,616(△5.2)	1,030(5.9)
2021	1,765(△4.8)	216(△26.0)	1,562(12.2)	1,055(13.5)	2,562(4.3)	9,840(14.2)	1321(28.2)
2022	959(△5.7)	190(△12.0)	933(13.0)	572(△4.6)	1,567(5.9)	6,440(17.7)	711(12.3)

자료: 요르단 중앙은행 * 2022년도는 1~5월 누계치 기준

요르단 광업은 요르단 경제에 7~8%를 기여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기준 전체 요르단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 산업이다. 요르단 광업 생산지수는 5년 연속 상승했다.

요르단 건설시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데, 2021년 건축허가 규모는 전년 대비 53% 증가하면서 반등했고 같은 해 건설 프로젝트 규모는 총 14.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 상승했다.

◦ 2018-2021 요르단 건설 프로젝트 규모(백만\$)

연도	빌딩	도로	수자원	전자/기기	기타	합계
2018	1,074.70	280.8	98.4	554.5	383.9	2,392.40
2019	1,034.20	289.8	44.4	68.1	25.8	1,462.30
2020	749.2	65.1	88.4	48.2	224	1,174.90
2021	963.1	68.1	108.6	141.8	165.1	1,446.80

자료: 요르단 건설기업협회

수출입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요르단 수입액은 156.2억 달러, 수출액은 72.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84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단, 같은 기간 요르단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38.9% 증가하였고 수출도 44.8% 증가하여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 2018-2022 요르단 수출입 규모 및 무역수지(백만\$)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7월)
수출액(FOB기준)	6,602	7,056	7,124	9,383	7,217
수입액(CIF기준)	20,367	19,224	17,059	21,613	15,617
무역수지	-13,765	-12,168	-9,935	-12,230	-8,400

자료: 요르단 통계청 및 중앙은행

수출 부문을 살펴보면, 수출 비중 1, 2위 산업인 편직물·의류와 비료산업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22년(1~6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3% 상승했다. 2019년까지 편직물·의류 수출의 70%는 미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경제 수요가 회복하면서 동 품목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또한 전세계 농산품·식량 수요 증가로 광물·화학성 비료 제품의 수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조칼륨, 조인산 등 원자재 수출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수입 부문에서는 2022년 상반기에 국제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해 원유 및 관련 품 수입 규모가 77% 상승했으며, 국제 식량가격 폭등에 따라 ‘곡물’ 품목의 수입이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34.6% 늘어난 50억 4,410만 JOD를 기록했다.

◦ 2022년 상반기 요르단 무역 동향(백만JOD)

수출			수입		
품목	수출액	전년대비(%)	품목	수입액	전년대비(%)
의류 및 편물류	719.1	17.6	원유 및 관련품	1,766.9	77.7
비료	652.1	90.0	보석 및 귀금속	693.3	124.4
조칼륨	505.8	144.7	자동차/오토바이/부품	543.9	14.0
조인산	365.4	148.9	기계/기계도구/부품	523.6	10.2
화학제품	204.3	42.3	기계류/전기제품/부품	408.2	12.7
의약품	177.9	△13.8	곡물	351.0	41.4
기타제품	1,336.4	25.5	기타제품	5,087.0	30.4
일반 수출액	3,961.0	45.5	총 수입액	9,373.9	38.6
재수출액	368.8	24.8			
총 수출액	4,329.8	43.4			

자료: 요르단 통계청

한국의 대요르단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8월 기준 한국의 對요르단 수출은 전년대비 28.3% 증가한 5.29억 달러, 수입은 74.2% 증가한 1.06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들어 기존 수출 강세 품목인 신차/중고차(32.5% ↑), 합성수지(200% ↑) 및 자동차부품(51.6% ↑) 등 품목의 수출액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대요르단 수출의 75%를 차지하는 자동차가 전체 수출실적을 견인했는데, 승용차(20.9%), 화물차(7.5%) 등의 수출이 고르게 증가했으며 전기차 수출은 전년 대비 약 3.6배 증가했다.

◉ 최근 5년간 對요르단 수출입 현황(백만\$,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1~8월)
수출액 (증감율)	520 (△19.7)	531 (2.1)	470 (△11.6)	668 (42.4)	529 (28.3)
수입액 (증감율)	55 (△24.0)	94 (72.8)	84 (△11.0)	106 (27.2)	106 (74.2)
무역수지	465	436	386	562	423

자료: 한국무역협회

투자 동향

(1) 총 투자

2018년 이후 투자 감소세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공개된 공식적인 2021년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6.21억 달러이다. 요르단 정부는 2019년도 런던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각 산업 민간 투자 장려책을 마련하였고, 2020년 투자청에서 약 60여개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 19 상황과 맞물리면서 역내 투자는 큰 타격을 입었다.

◉ 연도별 해외직접투자(FDI) 동향

(단위: 억달러)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해외직접투자액	16.00	15.53	20.30	9.55	7.30	7.26	6.21

자료: UNCTAD STAT

한편 2022년 9월에 기존의 투자법 30호(Investment Law No.30 of 2014)를 대체하는 신규 투자법령인 투자환경법(Investment Environment Law)이 요르단 상·하원을 통과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동 신규 법령에는 1개 프로젝트에 500만 JOD 이상을 투자하거나 250명 이상의 요르단인을 고용한 투자자에 대해 향후 인센티브/혜택 감축을 방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 우리나라의 대요르단 투자 현황

우리나라의 대요르단 투자는 1980년대 건설 진출 붐을 이루었으나 중반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2007년부터 이라크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 증대, 걸프 자금의 요르단 유입 확대, 2008년 양국 정상회담 등에 힘입어 요르단 진출이 극히 미비하지만 활성화 되었다(투자 금액 기준 0.22%). 다만, 2011년에는 아랍의 봄 사태로 투자가 중지되었고 다시 2012년 신고 2건, 2013년 7건을 기록하면서 투자 기조가 조금씩 되살아났다. 한국과 요르단은 2004년 7월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투자보장협정은 상호 투자에 대해 최혜국대우 부여, 송금의 자유 보장, 투자 분쟁 해결절차 등을 포함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요르단 투자에 대한 법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기업의 투자는 전력공급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동 기간 건설업 분야에서 몇 차례 투자신고가 있었으나 실제 투자로 이어지진 않았다. 2022년에는 추가 투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참고로 현재 요르단에는 한전알카트라나, 한전케이피에스, 암만아시아, 한국남부발전, 대한풍력발전 등 한전 관련 법인 5개사가 운영 중이다.

10 2018~2021 대요르단 한국기업 투자 규모

업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고건	투자액	신고건	투자액	신고건	투자액	신고건	투자액
전력공급	13	5,336	2	71,953	6	26,772	3	34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수입 규제 제도

개관

요르단은 2000년 WTO 가입 이후 2001년 수출입 법령(Imports and Exports Law No.21)을 WTO 규정에 따라 재정비, 원칙적으로 수입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군수품, 마약류 및 정부 소유 공기업의 수입독점 품목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을 어떠한 제약도 없이 요르단에 수출할 수 있다.

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건별 지침이 발표되나 사실상 수입금지 품목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다만, 요르단 표준 계량원(JSMO)에서 건별로 수입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요르단 식품안전처 (JFDA)에서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등록 및 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환경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 8월 1일부로 연식 5년 이상의 중고차는 수입이 제한되고 있고 요르단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 협약 이행과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디자인과 라벨링 부착 여부를 조사하는 요르단 에코 라벨링 제도(가전기기 등에 해당)을 운용 중이다. 주요 수입 제한 또는 금지 품목은 마약류 일체, 디젤 연료 승용차, 플라스틱 폐기물, 폭죽류, CCTV/카메라 스크린 차단 스프레이, 모자이크 예술품, 5년식의 중고 자동차 등이 있다.

지속적인 대외개방 및 무역·투자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여 경제 분야에서는 대부분 국제기준에 부합되며 EU와의 제후협정(1998), 아랍자유무역지대협정(1998), WTO 가입(2000), 요르단-미국 FTA 체결(2001), 아랍자유무역 지대 가입(2005) 등으로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후로도 아가디르 협정(Agadir FTA, 요르단-튀니지-이집트-모로코-팔레스타인 등이 참여 중)에 참여하고, 이라크, 튀르키예 등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동 중개무역지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최근 2018년 말 요르단-EU는 향후 10년간 요르단 원산지 규정을 완화하기로 상호간 합의하고 요르단 생산품의 비요르단 원료 비

중을 70%까지 허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2018년부터 요르단-튀르키예 FTA는 결렬된 상황이다. 주된 이유로는 요르단의 대튀르키예 무역수지 적자, 튀르키예의 기술 이전 미비 등에서 상호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7월부터 대요르단 수입품에 대한 영사인증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기존에 요르단은 해외의 수출업체들이 요르단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 상업송장 (Invoice)과 원산지 증명 등 무역관련 서류에 대해 국내 상공 회의소 인증을 받은 후 각국 주재 요르단 대사관에서 별도의 영사인증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2020년 7월 28일, 요르단 산업통상부는 영사 인증이 수입통관시 필요요건 서류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최근 요르단 정부는 온라인 무역 포털(<https://tradeportal.customs.gov.jo>)을 신규 런칭하고 각 품목별 수출입 신청 절차, 필요 양식, 소요 비용, 소요 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수입관련 제도

(1) 원산지 규정

요르단 정부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바, 한국 내에서 수출하는 경우 주한 요르단 대사관(*2010년 10월 상주대사관 개설)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공증 받아 첨부해야 한다.

(2) 세이프 가드

2020년에는 2건의 세이프가드가 종료되었다. 알루미늄바·로드·프로파일 관련 세이프가드는 2020년 5월 15일 요르단 내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종료되었다. 그리고 잠자침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2020년 5월 12일 요르단 산업부장관 결정(No.73/2020)에 따라 수입 규제 조사 중지 및 규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 세이프가드 현황

연번	HS CODE	품목명	규제내용
1	7604	알루미늄 바, 로드, 프로파일(Aluminium Bars, Rods and Profiles)	세이프가드(규제종료)
2	7213.206, 7214, 7215	봉강 (Bars and Rods of Iron and Steel)	세이프가드(규제종료)

자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3) 반덤핑, 상계관세

2003년 반덤핑 및 보조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실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발동실적은 없다.

(4) 수입 금지 품목

모든 종류의 약물(마약), 유독 물질, 공공보전에 해로운 물질, 무기, 폭발물, 탄약, 연식 5년 이상 된 중고 자동차, 플라스틱 폐기물, 디젤 승용차, 촉매 변환장치(catalytic converter) 미장착 차량, 마약성 작물(양귀비, 대마초 등), 소리만 나는 모형 총, 10년 이상 된 화물자동차(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는 제외), 공공보건 유해물질, 할랄 무인증 고기류(할랄 대상 고기만 해당) 등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한다.

(5) 수입 규제 품목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요르단 내 특정 기관 또는 회사만 수입이 가능하다.

- 원유, 원유 파생상품(Mineral Oil, 광유 제외), 가정용 가스 실린더: 요르단 석유정제 회사(JPRC)만 수입 가능
- 검은 시멘트(Black Cement): 요르단에서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만 수입 가능
- 폭발물, 화약, 미정제된 인산염: 요르단 인산염 광산회사(JPMC)만 수입 가능
- 중고타이어: 요르단 타이어 수리 공장만 수입 가능

- 미가공된 가죽(원피): 요르단 제혁 회사만 수입 가능
- 무기 등 방산제품: 요르단 정부에서 인가하는 업체 및 기관만 수입 가능

(6) 수입 허가 필요품목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요르단 관할부처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 밀가루와 그 부산물, 흰 시멘트, 중고 오븐, 온수기, R12를 사용하는 냉장
고용 압축기 (산업통상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동물의 냉동 정액, 올리브유, 냉동 동물, 살아있는 동물, 날고기, 냉동 고기,
방부 처리한 야생 동물, 수입 유가공품, 농업용 묘목 (농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
- 감자, 양파, 마늘, 과일, 채소 (농산물마케팅가공회사; Agricultural
Marketing & Processing Co.)
- 질산암모늄, 병기 탄약, 폭발물, 잭나이프(스위치 블레이드), 연료로 작동
하는 장난감 자동차, 리모콘으로 조정되는 장난감 비행기, 상업용 전자계
입, 자기 방어 용품(내무부 공중안보부서; Public Security Directorate,
Ministry of Interior)
- 방사성 물질, 우라늄 등 (에너지광물자원부;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 무선수신기와 방송국, 무선 알람 장치, 원격 조정 장치(모터, 차고, 창문,
셔터 포함: TV, 비디오 장치 제외), 사이트 맵 장비, 휴대폰 장비, 무선마이
크, 통신용 단말기, 원격조정 장납갑, 이동 TV 장비 등 (통신 규제위원회;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Commission)
- 디코더와 위성방송 수신기 (요르단 라디오·텔레비전 공사; Jordan Radio
& Television Corporation)
- 군복 (국방부; Ministry of Defense)
- 의약품 전체, 향생제, 운동선수용 식품 보조제, 브로민화 칼륨, 식용색소,

석면, 파이프와 패널, 유아식/유아용 우유, 산소, 산화질소, 레이저 팬 등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 우편 분류기 등 (정보통신기술부;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아르투아식 우물 드릴 등 (수자원관개부; Ministry Of Water And Irrigation)

(7) 수입 등록 필요품목

모든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품목은 요르단 식품의약처(Jordan Food & Drug Administration)에 수입 전에 사전 등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은 요르단 식품의약처에 등록된 에이전트를 통해 제품 등록을 진행한다. 하기 '수입물품 등록제도'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8) 기타 규제사항

코로나19 관련 단기적 수입규제 조치, 에코 라벨링 제도, ISO 라벨링 금지 등의 조치가 발효중이다.

요르단 코로나19, 인증, 수입검사, 라벨링 관련 규제

구분	주요 내용
코로나19 관련 수입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르단 식약처(JFDA)는 2020년 3월부터 신속 진단 테스트 키트 수입을 금지 하였으나, 2021년 1월부터 수입을 재개. 단, 이 경우 JFDA로부터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음. * ① EUA 또는 FDA 인증 보유 ② CE 인증 보유 ③ 요르단에서 판매허가를 득한 에이전트를 통한 상품 판매 (민감성 97% 이상, 선별도 99% 이상, 검사시간 15분 이하)
에코 라벨링 제도	<p>'14년 7월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협약 이행과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건조기, 램프 등 가전기기에 대해 에너지 디자인·라벨링이 부착된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p>
ISO 라벨링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부터 요르단 표준계량원은 제품 및 포장재, 카탈로그 등에 ISO9001, ISO14001, ISO22000 등 모든 ISO 로고 표기를 금지 - ISO 인증에는 품질인증이 아닌 기업 품질경영시스템 평가인증이 섞여 있어 해당 인증이 표기되면 소비자가 제품 품질이 좋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

관세제도

요르단은 2000년 WTO 가입 이후 2001년 수출입 법령(Imports and Exports Law No. 21)을 WTO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재정비하고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다. 1999년 7월 28일 산업무역부는 수입자유화 정책의 하나로 수입 절차 완화를 위한 새 규정을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 발표한 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요르단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 외국인 투자자, 요르단에 등록된 외국 계약자(contractor) 및 회사, 언론에서 일하는 외국인 등은 물품 수입 전에 정부로부터 수입 면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각종 세제 지원이 강화되고 자국 생산 가능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발효 중이다.

정기적인 수입관리 공고제도는 없으며 총리 명의의 발표에 의해 건별로 발표하고 있다. 1995년 수입면허제도 폐지로 인해 수입업자는 면허 없이 자유롭게 외국 상품을 수입할 수 있다. 단, 수입 면허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품목들이 있다. 예를 들어 수입된 모든 농산물 또는 식품은 요르단 식품의약품(Jor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JFDA)에서 검사를 거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품 첨가물은 요르단 표준계량원(Jordan Standards and Meteorology Organization; JSMO)에서 승인을 득해야 한다.

요르단은 한국과 같이 HS를 사용하고 있다. 요르단은 WTO의 관세평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인보이스 가격이 관세율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수입물품의 가치는 통관 시 중앙은행에서 환율(JD 1=\$ 1.41)을 적용해 요르단 디나르로 전환돼 산정되며 특별한 예(Under Value 물품 등)를 제외하고는 세관의 자의적 관세 적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하지만 세관에서는 간간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자의적 관세 행정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요르단 관세청은 HS 세번, 단세제 그리고 종과세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또한 대부분의 상품에 수입 관세 이외에도 16%의 판매세가

부과된다. 요르단으로 상품 수출 시 명시된 종류, 물품가치, 무게, 원산지 등이 실제와 다를 경우 요르단 관세청이 지정한 올바른 세율로 재측정되며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

2022년 1월, 요르단 정부는 관세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시행하여 종전에 0~30%에 달하던 관세 범위를 장기적으로 0~1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2027년 1월까지 복잡한 품목별 관세율 범위를 통합하고, 요르단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참고로 이전 세율은 0%, 5%, 10%, 15%, 20%, 25%, 30% 등의 7개 구간으로 구성되었고, 수출용 원자재, 생산 투입용 원자재, 의료용품 등 생필품 수입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었다. 기타 소비재에는 25%의 관세율이 적용되었고, 주류, 담배 및 자동차에는 더 높은 30%의 세율이 적용된 바 있다.

새로운 관세 체계에서는 0%, 5% 및 15%의 3가지 구간만 유효하다. 15% 관세율은 자국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요르단 엔지니어링, 건설, 가구 및 식품 산업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요르단 재무부는 2027년 1월까지 요르단에 들어오는 수입품의 53%가 관세가 면제되고 자동차, 알코올 음료, 담배 및 그 계열사를 제외한 나머지 40%의 물품에 5%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엔지니어링, 건설, 가구 및 식품 산업에는 중장기 관세율 플랜이 적용되는데, 1) 처음 3년(2025년까지) 동안에는 15% 및 25% 2) 그 이후에는 동일한 카테고리에서 관세율이 25%에서 20%로, 20%에서 15%로 차례대로 감소한다.

이외에 수출용 원자재와 생산요소 투입용 원·부자재, 의료 용품, 긴급 생필품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기타 소비용품은 대개 2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술과 담배, 자동차 등은 고세율(특별소비세 포함)이 부과된다.

요르단과 자유무역협정 혹은特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미국, 싱가포르, EU, EFTA, 아랍국 등)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으며 그 외의 국가는 공통적으로 WTO 양허세율이 적용된다.

수입물품 등록제도

(1) 개요

요르단 식품의약처는 2008년부터 재정적, 행정적 독립성을 갖춘 법인격을 갖춘 기관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자재, 식품의 제품 등록을 포함하여 요르단의 식품 및 의약품 전반을 관리한다.

(2) 등록 절차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등의 수입품을 요르단에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은 먼저 식품의약처 방문 약속을 잡아야 한다. 이때 식품의약처는 필요 서류, 증명서, 견본을 제출하는 날짜를 알려 준다. 필요서류, 증명서, 견본 및 등록 수수료는 제품마다 다르다. (제품별 보다 자세한 정보는 요르단 식품의약처 홈페이지(jfda.jo) 참고 또는 KOTRA 암만무역관에 문의)

제품등록 관련 식품의약처 전문위원회에 서류 및 증명서(제품에 따라 위원회도 상이하다)를 보내면 전문위원회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제품 등록 여부를 결정한 결과를 공문으로 작성하여 서명하고 신청자에게 발송한다.

만약 전문위원회에서 제품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신청자가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 위원회에서는 1개월 내에 심사를 다시 진행하고, 그 결과를 최종 결정자인 식품의약처장에게 제출한다.

(3) 주요 등록 기준

제품의 성분, 라벨, 용도 및 기타 전문위원회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검토한 후 제품 등록이 승인된다. 기본적으로 제품에 부착된 라벨은 혼동이나 오인을 일으키지 않도록 명확하고 읽기 쉬워야 하며, 담배 등의 경우 요르단에서 규정한 건강 경고문이 부착된 요르단 표준 사양을 따라야 한다.

화장품 및 의약 화장품(pharmaceutical cosmetics)의 경우, 요르단 규격 및 기준이 적용되며 만약 요르단 기술 기반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국제 규격이 적용된다. 화장품 및 의약 화장품의 구성 성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품으로 간주하여 반드시 신품으로 등록해야 하며, 외부 포장이나 내부 포장, 또는 내부 사용설명서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시 활용 또는 재수출 목적이 아닌 한, 중고 또는 리퍼브 의료기기 및 의료기자재의 요르단으로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의료기자재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료, 현지에서 제조한 살균소독제,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원료, 연구실용 표준자재는 등록 관련한 서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수입 배치에 대한 분석 증명서 또는 안전 데이터 증명서(MSDS)만 제출하면 된다. 등록을 위해 제출된 의료, 무균, 방부제 제품이 2회 연속으로 시험실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에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업자 또는 현지 제조업자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의약품 등록과 관련해서는 해당 제품이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약효, 의약품 품질, 약품 안전성이 그것이다. 의약품은 상품명, 학명, 농도, 유통기한 등의 정보가 의약품의 내/외부 포장 및 내부 리플렛에 게시되어야 하며, 영어와 아랍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의약품의 등록이 모든 약학적 형태와 농도의 등록을 허용한다는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 신청서는 유럽 지침(EMA - 라인 확장)에 따라 각각의 약학적 형태와 농도에 대해 모두 제출되어야 한다. 등록된지 5년 이상 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 경우, 유전자 변형 물질을 포함한 식품 첨가물 및 식품을 수입 및 거래할 수 있다. 단, 원산지 국가에서 이미 유통된 전례가 있어야 하며 원산지 국가의 지침 및 규정에 부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만약 원산지 국가에서 유통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 첨가제나 식품은 요르단에서도 등록될 수 없다.

현지 유통 전에 식품 및 식품 첨가물에는 제품 이름, 성분, 사용 방법, 경고문 및 기타 정보를 나타내는 아랍어 라벨이 명확하게 인쇄되어야 한다.

수입된 식품에 유통 과정에서 불순물이 섞이거나 성분의 허위 기재시 반입이 금지되며, 수입업자의 비용으로 수출국으로 재수출된다. 또한 식품이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요르단 내 저장을 금지하고 6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수입자의 비용으로 수입국으로 재수출해야 한다. 재수출이 불가할 경우 수입업자의 비용으로 제품을 파기해야 한다. 다만, 요르단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등록이 유보되며, 이때 해당 제품이 재가공을 통해 기술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허용된다.

수입 검사제도

(1) 개요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은 2007년 8월 1일부 발효된 The Directorate of Testing의 규정에 의거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운영 목적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요르단 자체 혹은 국제 표준규정 혹은 라벨링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 적용 범위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이 대상이다. 관할 세관원은 규정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데, 이때 왕궁 계정으로 수입되는 물품,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인가된 외교 기관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 등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과 같은 물품은 세관 규칙 또는 수입자 요청에 따라 수입자의 비용부담 원칙 아래 세관 밖에서 검사가 이뤄진다.

- 완전한 생산단위의 형태로 입고된 물품
- 현장에서 설치한 후에야 검사가 가능한 제품

- 세관 내에서 하역 및 처리가 불가능한 중량물
- 상하차 작업으로 인해 부패 또는 파손 가능성이 있는 민감성 물품
-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 기타 부서에서 승인된 물품

(4) 검사 방법

수입품은 위험도에 따라 해당 관청에서 감독하는 선별기준에 따라 녹색 레인(Green Lane), 황색 레인(Yellow Lane), 적색 레인(Red Lane)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이때 녹색 레인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에 필요한 문서만 갖추어지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황색 레인은 해당 필요 문서에 대한 검증 작업을 거친 경우에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세관 공무원은 물품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 요청에 대한 사유를 제시하고 물품을 검사할 권리가 있다.

기본 검사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진행 방법은 수입품 샘플 채취→소정의 검사소에서 검사→수입허가 혹은 불허 판정, 통보 등의 순서

이때 검사는 수입신고자 또는 수입신고자의 대리인이 입회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관청은 신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검사 일자를 통보한 후 신고자의 입회 여부에 관계없이 지정된 검사 시간에 포장을 개봉하고 물품 검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해당 관청은 물품의 유형, 사양 및 법률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서의 상급 직원 3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물품을 분석할 수 있다. 만약 분석에 의해 해당 수입예정 물품이 유해하거나 승인된 사양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관청은 물품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비용으로 물품을 파기시킬 권리가 있다. 이때 물품 분석 결과에 대해 신고인 등 관계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소유자는 분석 결과 도출 전에 관세 수수료를 미리 지불하고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5) 검사 기준

요르단 자체 검사기준이 없을 때 국제 라벨링 기준을 적용하여 검사한다. 요르단 자체 혹은 국제 기준이 있을 때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소비자 혼동 야기 가능성이 등이 없을 경우 수입이 허가된다. 검사 결과 등 소정의 서류 미구비 시 샘플 테스트 후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요르단 내에서 검사 불가능 시 샘플과 라벨링 정보 상호 비교 후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6) 운영 주체

- JSMO (Jordan Standard and Metrology Organization)
 - Call center : 962-6-550-6060
 - E-Mail : jsmo@jsmo.gov.jo

지식재산권 보호

개관

요르단은 국제지식재산보호기구(WIPO)에 가입하여 지식재산권 법령은 구비하고 있으나 실제 시행이 엄격하지 못하여 많은 모조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데,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은 거의 대부분 복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특허권

특허관련 파리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전반적인 집행은 국제기준에 미달한다. 특허 및 디자인법(Patents and Design Law)에 의해 특허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출원주의를 채택한다. 인정된 특허는 ①특허인정과 함께 등록비를 납부하고, ②매 4년마다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를 받으며, 특허권은 관보에 게재되어 제3자가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경우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다.

상표권

상표법(Trademark Law)에 의해 규정되며, 출원주의, 관보게재, 이해관계자 이익제기 및 의장권 인정 등은 특허권 관련제도와 동일하다. 단,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서비스 관련 상표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저작권

1992년 발효된 Copyright Law No. 22가 기본법으로서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간 보호된다. 공동저작물 경우, 공저자 중 마지막 생존자가 사망한 이후 50년간 인정된다.

문화부의 저작물 발간 혹은 재발간 권고 이후 6개월 이내에 발간 또는 재발간 이 없을 경우 문화부에서 소정액을 보상한 후 관련 저작물을 발간 또는 재발간 할 수 있다.

디지털 무역 장벽

개관

요르단 정부는 2021년 11월 개인정보보호법 입안을 위해 각료회의 및 각료 법률위원회에서 동법 발효조건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각료회의는 2021년 12월 29일 동법 초안을 확정, 승인하였다. 2022.9월 현재 동법안은 요르단 의회에 제출되어 승인 대기 중이다.

요르단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요르단 외부로 개인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 데이터 보호 수준이 적절하지 않은 국가 외부의 기관 또는 인물에게 개인 데이터를 이전할 수 없다. 이때 해당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요르단 법률에서 규정한 보호 수준보다 낮으면 개인데이터 이전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요르단에서 시행 중인 국제 협정이나 조약에 따른 협력국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의료행

위 관련자료(환자의 의료데이터 등), 전염병, 건강 재해 또는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된 데이터 등은 요르단 외부로 이전할 수 없다.

요르단 내 데이터 전송의 경우, 데이터를 처리하는 당사자 사이에 다음 조건에 대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데이터를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데이터 전송이 불가하다.

- 이전되는 데이터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당사자 및 데이터 수신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당사자가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목적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함
- 관련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의 마케팅을 위한 데이터 전송이 금지됨

데이터 처리 관련자는 개인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 데이터 수신자가 다른 국가에서 규정한 데이터의 보호 및 보안 관련 사항을 문서화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요르단 디지털 분야 현황

요르단 당국 및 통신규제위원회에서는 때때로 특정 웹사이트를 차단하기도 한다. 요르단 당국이 허가하지 않은 뉴스 웹사이트 등이 그 주된 차단 대상이다. 웹사이트 차단 결정은 대부분 임의적이고 불투명하게 이루어진다.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디지털 책, 영화 및 음악에 대한 액세스가 차단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요르단 정부는 WhatsApp 및 Facebook과 같은 메시징 응용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한하기도 하며, 지역 통신 회사에 일정 기간 동안 메시징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하기도 한다. 특히 대규모 시위나 정치적 불안이 감지되는 경우 이와 같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요르단 내에서는 전자 상거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규제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투자환경

요르단 정부는 현 압둘라 국왕 취임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경제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요르단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기업들에게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요르단은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2020년 비즈니스 하기 쉬운 국가 순위(World Bank's Ease of Doing Business 2019 Index)에서 190개국 중 75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중동 지역에서는 경제 개방도, 정부로부터의 자율성, 법적/규제 안정성, 무역/투자 안정성 분야에서 평균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중동 및 요르단 투자 진출 매력도 점수

(단위: 점수)

구분	경제 개방도	정부로부터의 자율성	법적/규제 안정성	무역/투자 안정성
요르단 점수	67.2	65.0	49.8	60.7
MENA 평균	48.2	53.3	42.6	48.0
순위 (MENA 18개국 중)	4	4	8	7

자료: Fitch Solutions

지난 20여 년간 요르단 정부는 외국 투자자의 소유권 제한 철폐, 각종 인센티브 제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호의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에너지, 대중교통, 항공 등 주요 인프라 개발사업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함으로써 요르단 국영기업과의 경쟁을 촉진하고 국영기업의 역할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공공민간파트너십(PPP)을 통해 철도, 정유, 해수 담수화와 같은 분야에서도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최근 2019년에 들어 요르단 정부는 경제 구조 개혁의 핵심 과제로 민간 부문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민간투자유치 목표를 위한 신규 정책들을 런던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발표한바 있으며 기업 운영 및 투자 관련 금융도산법, 벤처자본법 등을 마련하고, 또한 신규 법안 마련,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규 투자 부문 개방

등을 예정하고 있다. 민간 투자자들에게 좀 더 우호적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며 법안 마련 전 민간 부문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22년에 요르단 투자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민간 부문의 참여 아래 요르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환경 및 품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매력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div> <div></div> <div>투자 환경 장·단점 비교</div> </div>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년 투자촉진법에 의한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따라 각종 세제 면제 등 ◦ 투자 규제 분야 대폭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 마련 중 ◦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는 관문 - 홍해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북아프리카를 연결 ◦ 정치적 안정 및 지원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IZ, Free-zone ◦ 양질의 노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문맹률(5.1%), 전 인구의 17%가 고등 교육 이수, 낮은 임금수준 ◦ 개방, 자유시장 주의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등 20여 개국과 FTA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료주의, red tape, 제도 및 법 집행과 정의 불 투명 등으로 인한 “Hidden Cost”가 곳곳에 상존 ◦ 좁은 국토와 적은 인구(약 1천만)로 인한 자체 시장 규모 미미 ◦ 전문 분야에서의 숙련공 확보 미흡 ◦ 노동자 중심의 노동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휴가, 병가, 소송 등 ◦ 라마단(1달간), 종교휴일(이드 등) 비근로 공휴일과 종교 휴일 다수 ◦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정주의, 부족국가 전통으로 인한 낮은 근로 의욕 - 여성 노동 이용의 한계(결혼 후 직장 생활 계속 애로) ◦ 세계 2위의 물 부족 국가로 선정될 정도의 만성 적인 물 부족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 급수로 제조업 투자 활동 제약 ◦ 산업 기반 미흡으로 연관 산업 인프라 취약

주요 투자법 내용

요르단은 2022년 9월에 기존의 투자법 30호(Investment Law No.30)를 대체하는 투자환경법(Investment Environment Law) 초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동 법령은 2022년 10월 16일에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법률에 따라 90일 이후인 2023년 1월 16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투자환경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의 목적은 고용 기회 제공, 경제성장 증대, 경쟁력 및 근로환경 개선 등 투자금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강제 수용은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목적 아래 비차별적인 방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는 행정·기술 직종에 비요르단인을 전체 직원 수의 25%까지 고용할 권리가 있음. 단, 해당 직종에 요르단인 고용이 어려울 경우 비요르단인 고용 허용 비율은 40%까지 인상됨 · 개발구역(Development zone) 또는 자유구역(Free zone) 밖에서도 고정 자산, 생산 투입물 및 경제 활동을 위한 예비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가능 · ①저개발 지역에서 운영되거나 ②실제 사업 운영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지속되며 최소 250명 이상의 요르단인을 고용하는 프로젝트 등에 대해 소득세는 면제되거나 30% 이상 감면됨 · 관세 또는 기타 세금이 면제된 상품·서비스가, 면제가 부여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투자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세금 및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 한 프로젝트에 500만 JOD 이상을 투자하거나 250명 이상의 요르단인을 고용한 투자자는 법률·규제·조직 조항의 수정/변경에 영향받지 않도록 보장 · 투자자에게 상기 두 조건 중 하나를 달성한 날로부터 7년 동안 법률·규제·조직 조항의 수정/변경의 비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 · 이 법에 따라 관세·세금 혜택 및 면제 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향유하는 경제 활동은 법 시행일로부터 첫 7년 동안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부여된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혜택, 면제, 인센티브를 유지
협의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협의회(Investment Council)는 다수의 장관들, 중앙은행 총재, 요르단 상공회의소 임원진 중 2명의 의장, 사업가를 포함한 민간부문 대표자, 농업·관광업·서비스/금융업 등 대표 3명 등으로 구성 ·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 설립을 단 1회에 승인하기 위해 장관 의회(Council of Ministers) 내에 「인센티브 및 감면 위원회(Incentives and Exemptions Committee)」를 설치 · 인센티브 및 감면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장 및 위원들은 동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이익을 취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 참여 불가 · 장관 의회는 갱신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투자자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350명 이상 요르단인 고용, 50% 이상의 요르단인 고용, 사업 부가가치 규모 등), 인센티브 및 감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 · 인센티브 및 감면 위원회는 직·간접 투자를 위한 투자 펀드나 기타 상호 펀드에 대한 이중 과세 문제를 검토하고 처리 · 투자부 장관 결정에 따라 투자부 내 하나 또는 복수의 위원회(Committee)가 구성되며 해당 위원회들은 투자부 사무총장을 장으로 함 · 위원회는 투자자 고충처리 요청을 처리하며, 공공기관이 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투자부 장관은 권고사항을 투자협의회에 제출
투자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관련 구역은 투자부 장관의 추천에 따라 장관 회의에서 결정 · 국고지의 소유권은 해당 지역 설정시 투자부에 이양되며, 투자부는 개발 구역 내 토지를 개발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음 · 개발업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장관 회의를 거쳐 시가 기준으로 토지 가격을 산정하여 해당 구역에 등록된 공공기관에 반환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업자는 구역 개발 협약에 따라 지역을 운영하고 개발 ·개발업자는 개발협약의 규정에 따라 해당 구역에 사업체를 등록해야 함 ·해당 구역의 장관은 최고기획심의회(Supreme Planning Council)와 각 지방 위원회(Local Committee)를 구성하되, 최고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회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함 ·해당 구역에 등록된 사업체는 개발협약에 따른 규정에 따라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음 ·해당 구역에서는 외자 비율 관련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수출입 관련 법이 적용. 이를 위해 투자부 장관은 산업통상부 장관의 권한을 행사 ·개발 구역에서의 상품·서비스 소비에 대해 7%의 판매세 부과 ·소득세법에 명시된 세율은 은행, 통신회사, 개별기업, 금융 중개회사 및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되지 않음 ·개발 구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수입한 상품 및 서비스에 일반판매세는 영세율이 적용 ·개발/자유구역 내에 건립된 건축물은 허가 수수료, 건물세 및 토지세로부터 면제
등록/면허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기업 및 기관의 등록시에는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다른 당사자의 사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음 ·투자가 등록, 허가 등의 업무를 위한 정부 당국을 설립하고,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기관을 지정 ·투자부는 경제활동 허가를 위한 포괄적인 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기업이 투자부 또는 관련 기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며, 제출일 기준 15일 내에 신청서 처리를 완료해야 함 ·투자업무를 처리하는 양 기관 사이에 전자적 링크가 존재하는 경우, 일방의 기관은 투자자에게 같은 문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없음 ·투자자에 대한 허가를 부여 또는 거부하는 결정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시장 내 독점적 지배자를 보호하거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됨 ·당국이 면허를 취소, 철회 또는 정지하기 전에 면허 보유자에게 서면으로 위반 사실을 고지해야 함. 이때 면허 보유자는 일정 기간 내에 위반 사항에 대해 소명해야 함 ·해당 면허가 종합 투자 서비스의 적용을 받는 경제 활동과 관련된 경우에 면허 당국은 투자부에 이 사실을 미리 통보해야 함 ·투자부는 면허 발급을 위한 조건, 절차, 필요서류, 기간 등의 정보를 담은 면허 안내문을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동 법률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면허 발행을 위한 정부 당국을 설립
분쟁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 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투자계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의된 규칙에 따라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이때 외국/국제 중재 재판소가 외국 판결법에 따라 중재 판정을 내릴 수 있음 ·투자계약 분쟁에서 법원 또는 중재재판소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법을 적용하며, 합의가 없는 경우 국제사법 규칙상의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요르단 법을 적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장관 회의는 필요한 규정을 수립하고, 투자부 장관은 필요한 지침을 발행 ·이 법이 시행되면 2014년 투자법 30호(Investment Law No.30 of 2014)는 폐지됨. 다만, 투자법에 따라 발행된 규정, 지침, 결정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폐지, 수정 또는 대체될 때까지 계속 시행됨

자료: Fitch Solutions

다만 투자환경법 발효 이후에도 기존 투자법 30호와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기존 투자법 30호의 내용을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아래에서는 현재 발효중인 투자법 30호의 내용을 설명한다.

(1) 투자법 30호의 주요내용

- 외국인 투자가의 권리
 - 외국인도 법에 따라 요르단 내 투자회사의 완전소유, 동업 및 지분참여가 가능
 - 법적으로 하자 없이 투자한 외국인 투자는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계속 보장
 - 경영활동에 필요한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당국에 필요사항 요청 가능
 - 공공이익을 제외하고는 투자가의 재산을 수용할 수 없으며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도 투자가에 대해 정당한 보상
 - 외국인 투자는 투자자금의 원금회수나 과실의 자유로운 해외송금이 가능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봉급도 송금보장
- 외국인 투자가의 의무
 - 투자목적으로 고정자산을 확정하고 장비를 갖추면 영업개시일 또는 생산 개시 일을 서면으로 제출
 - 투자목적에 투입된 고정자산 목록의 상세한 기록과 요르단 공인회계사에 의한 정기적인 회계감사 수감
 - 투자에 투입된 자산 및 인원 등에 대한 정보나 서류에 대한 요청 시 제공의무
- 투자자산의 권리변동
 - 투자자산에 대한 면세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한 경우도 후임자가 전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바, 면세기간은 잔여 기간까지 적용
 - 투자는 구매가의 계속 사용을 조건으로 승인을 얻어 면세 장비의 판매나 이전 및 재수출이 가능
 - 면세장비의 제세부담 후 타인에게 매각 가능
 - 은행대출을 위해 면세자산의 담보가 가능하나 장부열람 요청시 응할 의무

(2) 투자진출 절차

투자법 30호(the Investment Law No. 30 in 2014)에 따르면 회사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이 6개의 절차로 구분된다.

- 회사 등록 및 설립(Company Registration & Establishment) : 투자 창구를 통해 사업체를 등록하는데 필요한 표준 시간은 승인된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한 후 약 15분이 소요된다. 부문위원회(sector committee)의 허가가 필요하거나 보안 허가가 요구될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부문별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근무일 기준 7일이 더 필요하다. 또한,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로 부터 공증이 필요할 경우(외국인의 경우), 14일의 근무일 기간이 추가 소요된다. 등록이 완료되면 7일 이내에 요르단에서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받게 된다.
- 지대 설정 및 규제 승인(Zoning & Regulatory Approvals) : 경제 활동이 시행 될 현장에 대한 규제 승인을 얻는 것이다. 암만 시(Greater Amman Municipality) 내부 또는 암만 시 내부에 설정된 특별 zone에 설립하는 경우, Central Licensing Committee와 District Committee의 승인이 필요하다. 암만 시 내부의 특별 zone 밖에 설립을 원할 경우, 농업 활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는 승인이 필요하다. 암만 시 밖에서 설립을 원할 경우, 역시 특별 zone에 설립 시, Central Licensing Committee와 District Committee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특별 zone 밖에 설립을 원할 경우, Higher Planning Council, Central Licensing Committee, District Committee의 승인이 필요하다.
- 부문별 승인(Sectoral Approvals) : 부문별 승인은 경제 활동의 형태에 관한 승인을 받는 것이다. 경제 활동의 규제, 법규, 조건, 규정,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부처 공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분별로 승인 조건이 다르며 부문 별 승인은 제조 부문, IT 부문, 보건 부문, 관광 부문 및 농업 부문에서 필요하다.
- 건설 라이선스(Construction License) : 건물 허가증은 해당 당국이 설계 및 도면을 확인한 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발급한다. 암만 시내에서 건설할 경우, 암만 시의 승인을 JIC의 창구를 통해 받아야 한다. 그 외 지역의 경

우, 지방자치부(Ministry of Municipal Affairs)의 승인을 JIC의 창구를 통해 받아야 한다. 보통 15일 정도 소요된다.

- 점유 허가(Occupancy Permit) : 건물 검사 후 점유 허가가 발행되며 암만 시내일 경우, 암만 시의 승인을 JIC의 창구를 통해 받아야 한다. 그 외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부(Ministry of Municipal Affairs)의 승인을 JIC의 창구를 통해 받아야 한다. 보통 15일 정도 소요된다.
- 직업 면허(Vocational License) :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끔 하는 절차이다. 암만 시내일 경우, 암만 시(the Greater Amman Municipality)의 승인을 JIC의 창구를 통해 받아야 하며 약 10일이 소요된다. 그 외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부(Ministry of Municipal Affairs)의 승인을 JIC의 창구를 통해 받아야 하며 5~10일 정도 소요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ISTD 및 SSC(세금 관련), 상호명 등록, 재산소유권 등록, 주거허용을 위한 안전 승인 취득, 레지던스 카드 취득, 워킹 비자 취득도 등도 필요하다.

- STD 발급 : 투자법에 포함된 세금 혜택 활용 및 소득세 및 판매세를 준수하기 위한 절차이며 법인세 번호를 받기 위해 ISTD를 등록해야 한다. JIC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법인 설립 직후 발급이 가능하다.
- SSC 발급 : 사회보장세이며 직원들의 급여에 사회보장세 비율에 따라 월단위로 지급해야 하는 세금이다. SSC 사무실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 및 등록해야 한다.
- 상호명 등록 : 등록 비용은 20 요르단 디나르이며 일반 위임장, 특별 위임장, 수수료 등 총 34요르단 디나르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보통 10일 정도 소요된다.
- 부동산 소유권 등록 : JIC의 창구를 통하여 토지조사국(Department of Lands & Survey)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10~21일 정도 소요된다.
- 체류 보안 허가 승인 : 모든 투자자들은 JIC의 창구 내의 내무부로부터 거주를 위한 보안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용은 약 5 요르단 디나르가 소요된다.

- 거주증 : 모든 투자자들은 거주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비용은 최초 발급시 20요르단 디나르가 소요되며 갱신시 5요르단 디나르가 소요된다.
- 취업 허가 :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할 때 필요하며 JIC 창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비자 발급 비용은 해당 분야에 따라 다르다.

◦ 각 분야별 취업허가시 비자발급 비용

분야	각 근로자에 대해 1년 또는 1년의 일부에 대한 워크퍼밋 발급 또는 갱신 수수료	근로자 1인당 6개월 이내의 임시 허가증 발급 수수료(JD)	각 취업 허가 또는 갱신에 대한 고용, 훈련 및 기술 교육 기금에 대한 추가 수수료
JIC에 등록된 의류 및 편물 산업	175 JD	300 JD	100 JD
가사도우미, 정원사, 요리사... 등등. 근로자가 개인 농장에 있는 경우(면적이 20두넛을 초과하지 않고 농업 또는 축산업에 사용되며 개인 또는 그룹이 소유하는 농장)	500 JD	300 JD	100 JD
기타 분야	400 JD	300 JD	100 JD

(3) 투자 관련 세제 정보

◦ 법인세

- 요르단 법인세는 평균 20%이며 운영형태 및 업종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음. 최근 2018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법인들에 대한 세율이 개정된바 있으며 이는 법인 설립 전 요르단 투자청을 통하여 확인 필요

구분	세율	비고
은행	35%	-
주요 기업	24%	통신, 전력, 광산, 보험 및 재보험, 중개 회사 및 금융리스를 실무하는 법인 등
산업 분야	14%	-
기타 모든 법인	20%	-

◦ 원천징수세

구분	세율	비고
이자	10%	비거주자에게 지불된 이자에 부과
로열티	10%	비거주자에게 지불한 로열티에 부과
기술 서비스 수수료	10%	비거주자에게 지불한 기술 서비스 수수료에 부과
관리비	10%	비거주자에게 지불한 관리비에 부과

◦ 기타 법인세

구분	세율	비고
급여	7-20%	
부동산세	15%	연간 임대료에 부과
사회보장세	14.25%	월 급여에 따른 사회 보장세 부과
인지세	0.3-0.6%	날인 계약서에 부과

- 일반판매세(GST) : 일반적으로 모든 공급서비스에 대하여 16% 부과되나 일부 사치품에 대하여는 고세율 적용

(4) 투자자에 대한 혜택

요르단 정부는 자유지대(Free Zone), 개발지구(Development Zone), 그 외 지역의 투자에 대해 상이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2014년 투자유치 촉진법, 2015년 투자 인센티브 제도, 판매세법, 소득세법, 투자위원회의 규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 세부내용

경제 분야	혜택
모든 분야	- 정부에서 설정한 발전 필요 지구에서 10년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50%의 법인세(CIT) 감면 혜택 제공 - 경제 활동에 필요한 물품은 관세가 면제되며 현지에서 수입 또는 구매하는 경우 일반 판매세(16%)는 미적용
특정 경제 활동	- 특정 경제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및 생산투입물에 대한 상품용역세(GST) 면제 혜택 제공
산업 및 수공업 분야	- 특정 품목에 대하여 관세 면제 혜택 제공
ICT 분야	- 특정 품목에 대하여 관세 면제 혜택 제공 - 특정 서비스, 특정 수입품, 현지 구매 품목에 대하여 상품용역세(GST) 면제 혜택 제공

경제 분야	혜택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	- 5%의 법인세 감면 혜택 제공
	- 재생 가능 에너지원, 에너지 보존 시스템, 장비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 면제
	- 재생 가능 에너지원, 에너지 보존 시스템, 장비에 관하여 상품용역세 (GST) 0% 부과

- 자유지대(Free zone) 및 개발지구(Development zone) 혜택
 - 자유지대 투자자에 대한 혜택(요르단의 자유지대 숫자는 약 40~50개)

구분	비고
법인세 (CIT)	자유지대 내에서 상품의 수출, 운송 무역, 물품의 판매, 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한 법인세 면제
상품용역세 (GST)	자유지대 내에서 판매되는 서비스 및 소비되거나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GST 면제
관세	자유 지역에서 수입 된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자유 무역 지역에 있는 회사가 다른 국가로 수출 한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토지세	자유 지대에 설립 된 건물 및 건축물에 대한 토지 면세
건물세	자유 지대에 설립 된 건물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 면세

- 개발지구 투자자에 대한 혜택

구분	비고
법인세 (CIT)	개발 구역 내의 경제 활동 및 제조 활동을 하는 경우 법인세 5%로 감소 또는 개발 지역 내에서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상품용역세 (GST)	개발 구역 내의 회사가 구매 또는 수입 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GST 면제 또는 개발 구역 내에서 생산되고 타 지역으로 판매된 상품 및 서비스에 GST 7%의 감소
관세	개발 지구에서 수입 된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 최소개발지역(Least Developed Area) 투자자에 대한 혜택(20년 한정)

구분	비고	소득세 감면
A지역	Al-Aghwar Al Shamaliyyeh District, Deir Alla District, Shuna al-Janubiyya District, AlAghwar al-Janubiyya District, Al Rowashed District, Badiah Shamaliyah District, Badiah Gharbiyah District, Al-Azraq, Al Jizah District (excluding the boarders of Jizah Municipality), Muwaqqar, Aqaba Governorate, (excluding ASEZ)	100%

B지역	Tafilah, Kerak, Ajloun	80%
C지역	Jerash, Mafrqa, Irbid (except Greater Irbid Municipality boarders)	60%
D지역	Madaba, Balqa, the Capital (except for the Greater Amman Municipality), Zarqa (except for Zarqa and Rusaifa Municipalities)	40%

(5) 투자 장려/제한/금지분야

- 투자장려 분야: 요르단 투자청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투자 장려 분야는 ICT,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개발 지구 등 정부설정 투자 지역 등
- 제한 및 금지 분야 : 요르단 내 비 요르단인 투자자는 100% 개방되어 있는 분야에만 단독 투자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요르단인과 합작 투자가 필요 (투자 제한 분야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요르단 투자청을 통해 사전 확인 필요)

부문	내용	소유 가능 비율
상업	도소매업(유통, 수출입 등), 리스 활동(금융 리스를 제외)	50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컨설팅, 건설 계약 및 관련 서비스, 건축 및 건설 목적을 위한 토양 검사 및 화학 테스트 등 관련 기술 서비스, 고용 및 인력 제공 서비스, TV 및 영화 제작을 제외한 사진 서비스, 은행 및 금융서비스를 제외한 중개 서비스, 광고 서비스,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화폐 교환 서비스, 호텔 및 모텔을 제외한 케이터링 서비스, 여행사 서비스	50
교통	해상운송, 항공운송, 도로운송 관련 서비스	49
기타	송신기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장비의 유지보수, 주거용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 매입·분양·임대	49
	스포츠 클럽	49
	건설 목적으로 모래·바위·건축용 돌 등의 채굴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 조사 및 보안 서비스, 개인 신변 보호 서비스 및 관련 교육, 화기 및 탄약 거래 거래 및 수입, 민간 사격 활동 관련, 폭죽과 관련된 거래 및 서비스, 베이커리 활동, 운송활동을 제외한 일체의 재고 서비스 활동	0

자료: 요르단 투자청

(6) 주요 투자 장애요인

- 물품대금 회수불능 문제
 - 대금결제를 수표로 하는 경우, 수표하단 등 잘 안 보이는 부분에 “차기물품 도착 시 대금 지불” 등 이해가 안 되는 아랍어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으며, 동 수표를 받고 물품을 인계해 주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없고, 재판에서도 대부분 무시
 - 또한 상당기간 대금을 잘 지불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외상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발생
 - 계약 시 또는 대금 결제 시 변호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거나 공관 및 KOTRA 등에 확인하는 절차 필요
- 노무관리의 어려움
 - (노모소송) 요르단의 노동법은 유럽의 관계노동법을 준용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은 상태로서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빈발
 - (인력유출) 숙련된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한국 기업이 육성한 인력을 타국 기업이 고 임금을 제시하여 인력을 유출시키는 현상이 최근 심화 (IT, 에너지 분야)
- 기타 애로사항
 - (자재조달) 요르단 산업 발달이 미비하여 현지 구매 자재의 단가가 무척 비싸며 필수 자재를 현지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 다수
 - (지역사회갈등) 수도외 교외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외국 기업들에게 지역민 채용을 강제하는 등 사업 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

(7) 외국인의 요르단 내 시설 및 자산 취득

- 군사적 목적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자산 취득 이외에는 내국인 대우를 부여
-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외국인의 자국내 법률이 요르단인들의 현지 자산

취득에 제한이 없는 한 비 아랍계 외국인들도 요르단 내에서 자산 취득 및 리스 행위를 가능하도록 허용

- 원칙적으로 비 아랍계 외국인은 농업용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외국인이 농업부분에 투자하여 요르단 회사로 등록할 경우에는 농지소유 등 모든 면에서 내국민 대우를 부여

(8) 투자자의 요르단 시민권 획득 혜택

- 2021년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요르단 시민권 및 거주증 부여 조건이 대폭 수정되었는데, 시민권은 매년 500명의 투자자에게만 부여되며 조건이나 요구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요르단 시민권이 취소되거나 경우에 따라 거주가 취소될 수 있음
- 요구사항
 - 요르단 시민권은 투자자가 3년 동안 100만 달러를 요르단 중앙은행(CBJ)에 무이자로 예치하고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출금하지 않을 때 부여됨
 - 투자자는 6년 동안 100만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해야 하며 이자는 요르단 중앙은행에서 결정
 - 투자자는 요르단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최종 권고에 서명하기 전에 적어도 한 달 동안 왕국 내에 있어야 함
 - 요르단 시민권은 요르단 기업의 주식을 최소 3년 동안 처분하지 않은 경우 최소 150만 달러에 요르단 기업의 주식을 구매할 때도 부여됨
 - 프로젝트의 설립, 등록 또는 경제 부문 투자시 국경 내에서 총 자본금이 최소 100만 달러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 또는 투자시 요르단 사람들에게 20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투자자는 최초 4개월의 기간 동안 고용 요건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 3년 동안 동 조건을 준수하면 투자자에게 요르단 시민권이 부여됨

외환관리 및 조달

(1) 개관

현재 요르단의 외환 관리는 1966년 외국환 관리법 95항 및 1978년 외환 관리 규정에 따라서 요르단 중앙은행이 실시하고 있다. 요르단 중앙은행은 외환 유입 및 유출, 외환 계좌, 대출, 상업 지불, 외환 허가 수수료 등 외화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1995년 요르단 중앙은행은 고정환율제(요르단 디나르의 달러 환율 고정, 1 USD = 0.71 JD)를 발표하였으며 해당 정책을 2022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투자 촉진 정책에 따라 외환 거래의 자율성을 고수하고 있다.

(2) 금융 관련 제도

2001년 국내 자본시장 육성법이 마련된 이래 mutual fund 등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경직된 금리정책과 2차 금융시장 미발달로 회사채 시장의 발달 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3) 현지금융 및 과실 송금

요르단 정부는 외환의 거래와 송금, 외국 기업의 현지 자금 조달 등에 대해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 비거주자(일반적인 외국인으로서의 자연인 또는 법인)의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현지 은행에서 외화 계좌를 개설하고 요르단 내 외로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으며, 외국계 회사의 과실 송금에 대한 제한도 없다.

과거 중앙은행 보고사항의 하나였던 투자 관련 자금의 이체 및 이관의 경우에도 이제는 중앙은행 보고 없이 이체 및 이관이 가능하다. 다만, 특이사항으로 요르단에서는 개인 혹은 법인이 달러계좌에 입금할 때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요르단 디나르 계좌에 입금할 때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특정 국가(시리아 등)에 송금하는 경우 송금인 및 수령인의 관계, 사유 등을 밝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송금하는 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르단인의 경우, 신분증만 제시하면 특정 국가 송금에 큰 문제는 없는 편이다.

노무관리

(1) 개관

1996년 노동법은 유럽의 관계 노동법을 준용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 수준이 높은 상태이며 이러한 근로자 위주의 노동법으로 인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빈발하다.

(2) 노동법의 주요 내용

요르단 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고용시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대 채용 외국 인력은 분야별로 상이하다. 외국인 노동자는 1년 단위로 노동허가를 갱신해야 하고, 불법고용기업에 대해서는 건별로 5,000~10,000 JD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정 고용시간은 주 48시간이며, 평일 125%, 휴일 150%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 최저근로 가능 연령은 만 16세이다. 인건비는 급여, 사회보장세(기본급여의 21.75%로서 고용주 14.25%, 근로자 7.5% 분납), 의료보험으로 구성된다.

유망 분야 시장 동향

중고차 시장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요르단 정부는 산업계 조업 중지 및 전면 통행금지령을

실시하여 주요 중고차 수출무역지대인 자르카 자유무역지대로의 중고차 유입이 급감하였으나, 6월 정부 조치 완화로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 요르단을 통한 주변국(사우디,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 재수출은 여전히 활발한 편으로 거점 시장으로서도 유용하다.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주변국으로 재수출된 차량수는 전년동기대비 22.3% 감소된 24,909대이지만 요르단은 중고차 중계무역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중고 자동차의 수입과 관련하여 요르단 정부는 최근 5년 이내 생산된 중고차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현지에서 수요가 지속적인 중고차는 아반테, 소나타, 투산, 산타페, 스포티지, 엑센트, 기아 K시리즈이며, SUV의 경우 4륜구동을 선호한다. 그리고 현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는 봉고 2와 현대 포터 등이다. 중고자동차 수입시 요르단 바이어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연식-무사고-가격 순으로 마일리지는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주요 매물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르단 현지 및 주변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진출이 필요 하다.

에너지

요르단은 전 국토의 75%가 사막 또는 준사막 지역으로서 중동의 대표적인 비산유국이다.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요르단 원유 생산량은 300t 정도이고 천연가스 생산량은 약 3.6 Bcf를 기록했다. 하지만 두 자원의 생산량은 국내 소비량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원의 약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요르단 정부는 1인당 전력 소비량이 2000년 1,216KWH에서 2017년 1,748KWH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시리아 난민 유입 및 인구의 자연 발생 등의 추가 수요로 에너지 발전소 확대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또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는 2007년 신규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고 2012년 에너지 관련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관련 펀드를 설립하였다. 2015년에는 10개년 경제 발전계획인 2025 Jordan Vision을 통하여 2025년까지 전체 에너지 비중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1%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 수립하였다. 현재 요르단 정부의 예상보다 빠르게 2020년까지 약 20%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도 2020년까지 2,350MW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요르단은 태양광 연간 발전 가능일이 330일 이상이며 일조량은 $5\sim 7\text{kW/m}^2$ 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며 요르단 북부 및 서부 지방의 풍속은 7.5m/s , 동부 지방의 풍속은 11.5m/s 에 달하며 연간 풍량이 꾸준한 편으로 풍력 발전 환경도 좋은 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풍력 발전 등 분야에서 현재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요르단의 에너지 관련 자원을 살펴보면, 미국이 추정하는 요르단의 오일세일 매장량 규모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현 원유 매장량의 3배에 달하며, 미국의 현행 원유 소비량을 고려할 때 향후 4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매장량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6년도부터 에스토니아-말레이시아-중국 컨소시엄이 조성되어 요르단 남동부 아타랏 지역에서 오일세일 발전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한편, 세계원자력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요르단에 매장된 우라늄 규모는 5만 톤 정도이나, 요르단 정부는 잠재 우라늄 매장량이 약 14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요르단 정부의 현재 에너지 주요 해결과제로는 에너지 효율화 및 잉여 전력 문제 해결이다. 요르단은 2011년 이집트로부터의 천연가스 공급이 차질이 생기면서 국내에 발전소를 대폭적으로 늘려왔으나 현재 잉여 전력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오일세일 발전소가 가동될 시 해당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예정이다. 또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전기사용자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누전되거나 도전되는 등 전력손실률이 높은 편으로 총 발전량에서 요르단 전력손실률은 약 13.1%로 한국 전력손실률 약 3.57%에 비해 큰 편이다.

수자원

세계은행이 발간한 International Water Poverty Index(IWPI)에 따르면, 요르단은 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세계 주요 물 부족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18년 UN 기준, 물 기근국 3위로 국토의 91%는 연평균 강수량이 200mm 이하이며 2017년 요르단의 연간 1인당 재생가능한 물 공급량은 100m^3 이하로 글로벌 물 기근국 기준인 연간 500m^3 과 비교하여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2015년 요르단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요르단의 연간 물 소비량은 약 1,400백만 큐빅미터이지만, 연간 물 생산량은 850백만 큐빅미터에 불과하여 연 550백만 큐빅미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인구 증가 및 관광 개발 등으로 향후 2020년까지 연간 물 소비량은 1,665백만 큐빅미터 이상까지 증가할 전망이나 공급은 1,276백만 큐빅미터에 그칠 것으로 전망, 향후 요르단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물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요르단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과 함께 홍해-사해 담수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스라엘과의 관계 악화 및 자금난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 한편, 2009년 시작된 디시(Disi)-암만 Water Conveyor 건설 프로젝트는 2013년 완료되어 현재 관련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디시-암만 수자원 운송 프로젝트는 총 11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공사로서 튀르키예의 Gama Energy가 수주했다(2009년 6월 공사 개시, 2013년 7월 완공).

ICT

요르단은 급격히 개발되는 ICT 기술과 도시화 대비하여 ICT 인프라확보를 위해 통신 민영화, 3G, 4G 도입 등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요르단의 통신망은 크게 내륙통신망, 국제 통신망으로 나뉘질 수 있는데, 먼저 내륙통신망을 살펴보면, 마이크로웨이브링크 약 3,600곳, 라디오 중계국 약 3,240곳 등으로 나뉘질 수 있다. 현재 요르단 내륙 통신망은 동축선이 주류이나 국가 차원에서 광케이블을 설치 작업 중에 있는 상황이다. 요르단은 2015년부터 4G LTE 서비스를 시작하여 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주요이슈인 5G 인터넷도 정부차원에서 도입 중으로 2019년 9월 기준으로 민간 회사의 시운전도 모집한 바 있다.

국제 통신망은 현재 3라인과 연결되어 있는데, 첫 번째, 1999년 해저 광케이블 FLAG와 연결되어 아카바에서 이라크까지 약 400KM구간을 설치한 동 라인은 SDH 기술로 622 MBPS용량으로 2.5 GBPS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번째, JADI라인은 요르단, 시리아, 튀르키예를 잇는 요르단 내 주요 광케이블 라인이며 세 번째, RCN라인은 아라비아 반도와 튀르키예를 잇는 육상 케이블 망

으로 UAE-사우디-요르단-시리아-튀르키예를 거쳐 총 7,750km의 망을 최종적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2015.5월 개통된 UAE-요르단 라인은 약 5,000KM로 10G 이터넷을 이용하여 1.2 Tbps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르단의 인터넷/모바일 보급률은 글로벌 보급률 보다 높은 수준이며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보급될 정도로 보급률이 높다. 2018년 기준 88%, 9.1백만명에게 인터넷이 보급되었고 모바일은 85%, 약 8.7백만명에 보급되었다. 2017년 글로벌 인터넷 보급률은 43%, 모바일 보급률은 66.5%인데 그 비율을 크게 상회할 정도이다. 요르단의 인터넷은 1993년 DSL, Wimax를 통해 시작되었고 2015년 4G 도입, 2019년 9월 5G 도입을 위한 시운전 민간 회사 모집 중으로 세계적인 흐름에 빠르게 반응하는 편으로 볼 수 있다.

요르단의 텔레콤, IT 및 IT 관련 서비스 시장 등을 총 포함하는 ICT 전체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21억 달러 시장이다. GDP 대비 약 5.2%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으며 이중 텔레콤을 제외한 순수 IT 분야 및 관련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7.5억 달러인데 2017년대비 약 10% 성장하였다. 지난 5년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유망 분야로 볼 수 있다. 2018년 텔레콤 분야 시장규모는 14억 달러인데 투자는 1.9억 달러가 이뤄졌다. 2015년 주변국 정세 불안으로 인해 시장 및 투자가 위축되었으나 최근 점차 주변국 정세가 안정화됨에 따라 해당 시장도 회복세가 예상된다.

요르단 ICT 시장의 특성은 해외 수출형 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IT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은 단가가 비싸 내수 시장에서 소화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요르단 정부 및 민간에서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시장에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 IT 시장 규모 중 수출로 인한 수입 창출은 2.6억 달러로 전체 규모의 34%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시장이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 통신 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아랍어 온라인 콘텐츠의 약 75%가 요르단에서 직간접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평가할 정도로 중동 시장에서의 요르단 진출이 활발하다고 볼 수 있으며 주요 수출국가는 GCC 국가로 사우디, UAE, 쿠웨이트가 전체 IT 관련 수출의 50%를 차지한다.

요르단은 IT에서 소프트웨어, 모바일 및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게임 개발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약 1.8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 게이밍랩, 펀드 기관 등은 개발자들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동 최대의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Jamalon 같은 경우 2010년 요르단 암만에서 설립되어 중동 최대의 온라인 서적 공급사이트로 성장하였고 아랍판 아마존으로 여겨진다.

건설 플랜트

2017년 기준 요르단의 건설 및 기계 플랜트 총 시장 규모는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하여 2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요르단의 건설 및 플랜트 시장은 자체 자금보다는 외부자금에 의한 인프라 건설 및 공공 플랜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이는 중동 내에서 흔히 않은 비산유국으로서,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건설 및 플랜트 발주 예산의 대부분이 국제기구 혹은 외국 정부의 차관, 원조 자금, BOT 발주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발주되는 제조업 플랜트의 경우, 요르단의 주요산업 중 하나인 인광과 가성칼리, 시멘트, 비료 등 광업과 화학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시설 현대화 및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전력과 유류 저장용 탱크, 항만 시설 확충공사 등의 발주도 늘어나고 있다.

중소형 규모의 제조업 플랜트 시장은 미미한데, 이는 2017년 기준 요르단의 제조업 비중이 GDP의 19%에 이르나 제조업 기반이 빈약하기 때문에 제조업 플랜트 시장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의 경우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석유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건설된 석유 생산 공장 자동화 설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설 붐을 반영하여 시멘트 프로젝트 발주도 이어지고 있다.

자원·광물 개발

요르단의 주요 광물자원은 인광(Phosphate)과 탄산칼슘(Potash)이며, 최근에는 오일셸(암반유 약 600~700억 톤) 및 우라늄(확인된 매장량 기준 약 5만 톤)도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와 투자청은 요르단 광물 및 석유자원 분야 투자 및 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석유, 오일 셰일(oil shale), 광물 자원 부문(특히 금·구리·지르콘(zircon) 등 전략 자원)의 투자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주요 한국 업체 진출 동향

우리나라의 요르단 건설·플랜트 시장진출은 1974년 한보건설의 진출을 시작으로 1980년대 초반에는 건설 진출 붐을 이루었지만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시리아 및 이라크 시장진출 교두보로서 요르단 시장에 대한 우리기업이 관심이 증가하면서 진출이 다시 확대 되었다. 현재 요르단 진출 국내기업은 10개사이다.

주요 진출 현황

2022년 11월 기준, 요르단 진출 국내기업은 10개사이며 에너지·플랜트, 가전 판매 등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요르단 진출 우리나라 기업 현황

연번	기업명	형태	업종
1	LG전자 레반트	법인	가전 판매
2	삼성전자 레반트	법인	가전 판매
3	[한국전력] 알카트라나	법인	IPP2 전기 판매
4	[한국전력] 암만아시아	법인	IPP3 전기 판매
5	[한국전력] 푸제이즈 풍력발전	법인	풍력 발전
6	남부발전	법인	IPP2 운영(O&M)
7	제일기획	법인	광고·기획
8	코오롱글로벌	사무소	하수처리시설 건설
9	[한국전력] KPS	사무소	IPP3 운영(O&M)
10	대한풍력 타필라 풍력발전	법인	풍력 발전

* IPP : Independant Power Plant(민자독립발전소)

주요 진출 프로젝트

1) 코오롱글로벌 남부암만 하수처리장 사업

- 위치 : 요르단 남서쪽 지역
(암만에서 약 20km, 차로 30분 소요)
- 발주처 : 요르단 수관리청(WAJ), 수관개부(MWI)
- 사업분야 : 하수처리
- 설계용량 : 17,000m³/일
- 현지법인 : 코오롱글로벌
- 사업의의
 - 요르단 주민들의 위생환경 개선
 - 처리된 폐수를 농업용수 활용, 농업 생산성 제고

2) 한국전력 알카트라나 가스복합화력발전소(IPP2)

- 위치 : 요르단 카락주, 알카트라나
(암만 남쪽 100km 위치, 차로 1시간 소요)
- 설비용량: 377 MW
- 발전형식 : 가스복합화력
- 현지법인 : (한국)KEPCO 80%, (사우디)XENEL 20%
 - 남부발전 요르단 법인에서 발전소 운영
- 사업의의
 - 요르단 정부의 두 번째 민자발전 사업으로 사업리스크가 적은 사업구도
 - 발주처(요르단 전력공사)에서 100% 전력판매 보장, 연료 전력공급 조건
- 현황 : 1단계 상업운전일('11년 1월)로부터 25년간 운영

3) 요르단 대한풍력 타필라 풍력발전소

- 위치 : 요르단 남부 타필라 지역
(암만에서 200km, 차로 약 3시간 소요)
- 발주처 : 요르단 에너지 광물자원부(MEMR)
- 사업분야 : 풍력발전
- 설계용량 : 51.75MW(3.45MW×15기)
- 현지법인 : 대한풍력
 - 남부발전은 요르단 현지법인을 통해 국제금융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국제상업은행 등으로부터 사업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
- 사업의의
 - 남부발전은 최근 칠레 태양광발전사업 수주와 이번 요르단 풍력발전소 착공 등 해외 전력시장 진출을 본격화

4) 한국전력 암만 아시아 디젤내연발전소 건설(IPP3)

- 위치 : 요르단 나우르
(암만 동쪽 40km 위치, 차량으로 40분 소요)
- 설비용량 : 573 MW
- 발전형식 : 디젤내연발전
- 현지법인 : (한)KEPCO 60%, (일)미쓰비시 35% 등
- 사업의의
 - 요르단 세 번째 민자사업으로 요르단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
 - 저비용 가스원료 활용 Dual Fuel(가스<->중유) 운전 인프라 구축('16년)
- 현황 : 1단계 상업운전일('14년 8월)로부터 25년간 운영

5) 한국전력 푸제이즈 풍력발전소

- 위치 : 요르단 푸제이즈
(암만 남쪽 250km 위치, 차량으로 3시간 소요)
- 설비용량 : 89.1 MW
- 발전형식 : 풍력발전소
- 현지법인 : KEPCO 100%
- 사업의의
 - 중동에서 한국 전력의 첫 번째 풍력사업 진출 사례
- 현황 : '19년 10월 준공 완료



이라크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경제 개관

이라크는 1991년 걸프전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제조업이 육성되었으나, 걸프전 이후 UN의 경제제재로 인해 산업부문 역시 제재를 받아 제조업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기존 산업마저 파괴되어 석유산업 및 농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아울러 2014년 발생한 ISIS 사태와 국제유가 하락 등은 국방비 과다 지출 및 석유 판매수입 감소를 통해 이라크 정부재정 악화와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해 왔다. 2014년 이래 비석유 분야 경제는 21.6% 축소(세계은행 분석)되었으며, 16.11월 OPEC 회원국 간의 감산합의(이라크: 435.1만 배럴/일) 이행에 따라 원유 생산도 줄어들어 2017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2017년 12월 ISIS 대한 승리 선언을 하는 등 사태가 수습되고 유가가 회복되며 경제지표가 2019년까지 꾸준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한 수요감소와 저유가로 경제성장률이 -11.3% 까지 떨어지고 재정 적자 대응을 위해 자국 통화를 20% 이상 평가절하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2021년부터 유가상승으로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8% 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으며 2022년에도 약 8.2%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2023년에도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더라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신 정부 구성 등 정치적 현안의 안정적 해결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2년 기준 이라크는 베네수엘라, 사우디, 이란에 이어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1,450억 배럴, 세계점유율 9.4%)으로⁶⁰⁾ 이라크 정세가 안정될 경우 매우 큰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60) 2022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경제정책

2003년 이전 이라크는 바트당 이념에 의거하여 중앙 계획 식 사회주의 경제모델을 운용해 왔으며, 연합국 임시행정처(CPA)는 외국인투자 유치와 민영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인세율을 45%에서 15%로 낮추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지만, 경제 이외 치안, 국방 등 선결당면 과제에 부딪히면서, 제대로 된 자유화를 완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6년에는 투자법(Investment Law)을 제정하고 외국인투자유치에도 노력하고 있으나 석유 등의 일부 핵심자원 개발에 대한 일부 외국인투자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운 실정이 지속되고 있다.

2003년 이라크전쟁 및 2014년 ISIS 발호 등 지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사회 기반시설이 붕괴됨에 따라, 줄곧 석유가스 자원개발 및 전력, 상하수도, 의료, 주택 등 인프라 복구 등을 위한 경제개발 정책에 초점을 맞춰왔다.

2018년 5월 5개년(2018~2022) 국가개발계획을 발표하며 국토 재건 및 향후 발전 계획을 제시했다. 동 계획에 따르면 2018~22년간 예상 재정수입은 총 약 3,722.5억 미국달러 (석유판매 수입 3,132억 미국달러 및 직접간세 590.5억 미국달러)을 추산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7.0%의 GDP 성장률 달성 목표(석유 부문 7.5%, 비석유 부문은 6.1%)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동 성장률 달성을 위해 5년간 총 약 1,867억 미국달러의 투자(공적, 사적)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부문별 투자 비중: 석유 38.4%, 교통 및 통신 17.9%, 서비스 16.9%, 전력 및 수도 9.2%, 건축 5.5% 등). 다양한 재건 분야 중 이라크 정부는 특히 주택건설, 교육(학교 재건 등), 보건 분야 개발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목하고, 이 밖에도 금융 및 은행 부문, 인간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 개혁에는 한계를 노출하며 반정부 시위 등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 5월 출범한 Al-Kadhimi 정부는 석유 수출에 대한 과도한 재정 의존도, 정부 예산 중 과도한 공무원 급여 비중 등 이라크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백서(White Paper)를 2020년 10월 공식 발표하였다. 동 개혁안에서 1) 지속가능한 재정안정성 구축, 2) 거시경제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및 비석유부문 강화, 3) 경쟁력 향상

을 위한 기본 인프라 개선, 4) 개혁 과정에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지원 및 배려, 5) 공공행정 개혁 등 다방면에 걸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이후 발생한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결과를 창출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만성적인 전력 및 상수도 부족 등 인프라 결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일반국민의 생활의 질 하락을 초래함은 물론, 안정적 경제개발 등에도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신정부가 수립되며 시행될 이라크의 개혁 추진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주요 경제지표

구분	지표 (단위)	2018	2019	2020	2021
대내 경제	명목GDP(경상가격, US\$백만)	227,367	233,636	184,344	207,889
	명목GDP(경상가격, ID조)	268.9	276.2	219.8	301.4
	실질경제성장률(%)	2.6	5.5	-11.3	2.8
	1인당 GDP(PPP기준, US\$)	10,809	11,349	9,955	10,711
	소비자물가상승률(%)	0.4	-0.2	0.6	6.0
대외 경제	수출(FOB기준, US\$백만)	86,360	81,585	46,811	72,822
	수입(FOB기준, US\$백만)	38,876	49,418	40,927	34,626
	무역수지(US\$백만)	47,484	32,168	5,883	38,196
	대외부채(US\$백만)	82,043*	84,950*	84,223*	83,803*
	외환보유고(US\$백만)	64,719	68,018	54,416	64,222
	환율(연말) ID: US\$	1,182	1,182	1,450	1,450

주1: * EIU estimation

주2: 수출, 수입은 재화기준

자료: EIU(2022.10)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양국 간 교역은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이동제한 및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2020년 52억 달러 규모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유가회복 등으로 인해 63억 달러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2022년에는 고유가 지속 등의 영향으로 8월 기준 67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3%에 달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수입은 거의 100% 원에 집중되어 있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2021년 기준 한국(6.24%)은 중국(31.10%), 인도(31.09%)에 이어

이라크의 세 번째 수출 대상국이며,⁶¹⁾ 이라크는 한국의 제5위 원유 수입원 (5.99%)이다.⁶²⁾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기계류, 전자기기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승용차를 비롯한 자동차류는 이라크 수입통계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해 한국산 승용차의 이라크 시장 내 지위는 매우 높은 편이다. 그 밖에 전기, 전자기기, 보일러 및 기계류 등은 우리기업의 플랜트 수주와 깊은 관계가 있다.

◦ 한국의 대이라크 교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	1,462	1,912	1,945	935	986
수입	6,371	9,569	7,995	4,628	5,331
규모	7,833	11,481	9,940	5,203	6,317
수지	-4,909	-7,657	-6,050	-3,334	-4,345

출처: K-stat

수입규제 제도

이라크는 타 국가와 유사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특별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할 시, 관할 부처에서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또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선적전 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통관 절차 및 규제 항목에 관한 결정은 기획부 산하 '표준화 및 품질검사 중앙기관(COSQC, Centr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의해 관장된다. 수입규제 제도가 2011년 5월 개정 발효된 이후 대이라크 수출업자는 세관을 통과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 이라크 세관의 사전 심사에 따라 수출해야 한다.

61) https://oec.world/en/visualize/tree_map/hs92/export/irq/show/52709/2019/

62) K-stat(stat.kita.net)

수입규제 품목

이라크는 수입규제 관련 네거티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수입 금지품목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의 목적으로 관세청에서 39개 품목을 수입 금지 및 사전허가 품목으로 지정하고, 농업부에서도 52개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 이외에 추가로 특별세를 부과하는 규제 조치를 취하고도 있다. 일몰제도로 인해 일정 시점이 지나면 특별세가 사라지는 시스템으로 2022년 10월 기준 8개 품목에 대해 특별세가 부과된다.

수입제한 법규

(1) 수입품 선적전 품질 검사제도 시행

2011년 5월 이라크 내각회의는 2004년 12월 1일 이라크 전쟁 이후 활동을 중지했던 ‘표준화 및 품질검사 중앙기관’의 기능을 부활시켜 상품 수입에 앞서 반드시 동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결정하면서, 동 기관에서 발행한 승인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이라크의 자체적인 수입품 사전 품질 검사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불량 제품의 수입이 확산되자 이라크 정부는 2011년 5월부터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수입품에 대한 선적전 검사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시행 중이다. 품질 검사기관은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검사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수입품 통관시 품질검사 내용을 첨부토록 하고 있다. 2022년 10월 기준 동 기관은 국제공인 시험소인 Intertek, HQTS, Geo-Chem, Bureau Veritas 등 4개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검사를 대행하게 하고 있다.

(2) 수출입 허가제도

이라크정부는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저가 불량 수입상품 범람, 이라크 외 제3국에 사무실과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이라크 시장에서 수입업 무를 하는

업체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전 등록된 기업만이 수입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면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비관세장벽

이라크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선적전 검사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인증 제도 등을 도입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이라크 정부는 소비자 보호 및 환경보호를 위해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에너지라벨링 제도를 EU에서 차용해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2017년 4월 에어컨을 시작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및 텀스텐 램프, 에너지 절약램프, 형광램프 등으로 적용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세관 현장에서는 에너지라벨링규제가 적용되는 에어컨의 경우 도통 시 라벨부착 등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기도 한다.

자동차의 경우 2005년부터 2000년도 이전에 생산된 중고 차량의 수입을 금지 시킨바 있으며, 2005년 9월 1일부터는 2004년 이전 생산된 중고차량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한시적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한 후 매년 동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된 지 2년 이상 된 차량은 원칙적으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다만 2009년 일부 법을 개정하여 10년 이하의 버스(20인승 이상) 및 트럭(3톤 이상)과 15년 이하의 농업용 및 건설용 차량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차량 부품수입과 관련, 중고부품 수입을 금지했던 종전 규정을 개정하여 2009년 9월 1일부터는 중고부품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하였으나 차량을 절단하여 반입하는 것은 불허기로 했다.

참고사항

이라크 정부는 수입물품 범람에 대한 대처를 위해 수입규제를 점차 강화시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수입면허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수입면허 취득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기존에는 수입면허 취득 시 모든 수입물품 취급이 가능하였으나, 규정 개정 후에는 수입품목별로 별도 수입면허를 취득해야 해당 품목의 수입이 가능해졌다.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농업부, 내무부 등 타 부서의 승인을 득해야만 발급이 되는 등 점점 더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정부물자의 경우 수입면허가 불필요하였으나, 최근에는 수입면허 발급이 의무화되고, 관세감면 절차와 기간도 매우 어렵고 복잡해졌다. 이라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의 경우 평균 관세 감면절차에 한 달 가량이 소요되었다.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수입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003년 이라크 전쟁 후 중고차 수입 자유화로 많은 중고차를 수출하던 우리나라는 2005년 저렴한 중고차가 자살폭탄테러에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 유류난 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중고차 수입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큰 타격을 받은 적이 있다.

디지털무역 장벽

전자 결제 시스템의 미발달로 인해 디지털 무역 자체가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안보 등과 관련한 이라크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은 아직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2020년 인터넷 해킹, 온라인상의 거짓정보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사이버범죄 법안(Anti-Cyber Crime Law)의 초안이 제안된 적은 있으나, 실제 디지털 및 인터넷 분야에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령, 행정규칙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외이전, 컴퓨팅설비 설치 위치, 인터넷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등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무역에 대한 법령상의 규제 또는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정치적 분열과 폭력 조장 또는 선정성을 이유로, 이라크 정부 차원의 결정에 따라 특정 사이트 차단 및 온라인콘텐츠 검열 등 조치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 사례로, 이라크 정부는 2019년 10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시 공공안전을 이유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일부 SNS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바 있다.

관세제도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미 군정당국은 연합국 임시행정처(CPA;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포고령 54호를 발표하여 2004년 4월 16일부터 재건세(reconstruction levy)라는 명목의 수입관세를 부과하였다. 수입관세는 원칙적으로 H.S. 세번 분류방식에 의거 C.I.F 이라크 도착 가격을 기준으로 5%의 관세(재건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해 왔다. 2010년에는 관세법을 마련하여 5~35% 수준(주류 등 품목에 대해서는 80% 관세 부과)의 차등화된 관세율표를 마련했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 시행시기가 연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는 2014년 이후 ISIS 사태로 인한 국방비 과다지출과 국제적인 저유가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2016년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됨에 따라 재정수입 확보 차원에서 그동안 연기해 왔던 차등관세법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차등관세법은 2016년 1월부터 전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관세 집행 시스템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차등관세가 강력하게 집행되지 못해 2018년 1월부터 관세를 품목군 별로 단순화했다.

차등관세 도입이 여의치 못했던 것은 쿠르디스탄 정부의 비협조 영향이 컸다.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5% 일률관세를 유지해, 다수의 수입업자가 쿠르디스탄을 통해 수입하면서 중앙정부의 차등관세 도입이 번번히 무산되었다. 이라크 정부는 2015년 말에 KRG 지역으로부터 내려오는 운송트럭에 대한 특별통관소를 바그다드 주위에 설치하여, 관세차액을 징수하는 초강수 시책을 도입함으로써 수입업자들의 관세회피를 봉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그리고 2019년 2월 KRG와 기타 이라크 지역 간 관세격차에서 오는 시장 교란 및 무역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이라크 정부는 모든 국경의 관세를 통일했다.

수입관세의 면제 및 예외

이라크 정부는 새로 도입된 관세제도에서도 국가전략 투자사업으로 지정된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우리 플랜트 업체들의 경우 이와 같은 면세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관세 부과대상 수입품목 중에서 식료품, 의약품, 의류, 서적, 인도물품, 재건용 반입품(CPA, 연합군, 재건공사 계약업체, NGOs, 국제기구, 외교관 및 Coalition Government, Oil for Food 계약 이행 물품 등)의 경우 수입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지방정부(KRG) 지역에서는 이라크 중앙정부가 정한 관세 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자체적인 수입관세 및 통관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관세율 확인

이라크의 관세업무를 총괄하는 정부부처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이고, 관세의 징수권리는 산하 관세청(General Commission of Custom Authority)이 맡고 있다. 2017년 총리훈령 제393호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로 세부 HS 코드별 관세율 부과 대신 품목군별 관세율 부과로 단순화했다. 하지만 변경된 법이 세관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고, 일부 품목의 경우 공무원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율 정보는 주무부처나 한국 소재 선적 전 검사 대행업체에 품목별 최신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결정 기준

별도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출국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여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류를 주한이라크대사관에서 공증 받아 사용하면 된다.

인증제도

이라크는 인증제도의 시행을 포함하여 인증획득을 위한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적절한 절차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물품 자체 또는 기업의 인지도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 및 진행 절차가 변칙적이기도 하다. 국제 기준의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인증 획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이라크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가맹국(1976년 WIPO 가입)으로 원칙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기존 1970년 특허 및 디자인법 65호(The Patent and Industrial Designs Laws and Regulations No.65)는 2004년 4월 26일 유엔 안보리(UNSCR) 1483에 의거 이라크의 행정 및 재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연합임시행정처(CPA)에 의해 특허, 디자인, 미공개정보, 집적회로 및 식물품종 보호법(Patent, Industrial Design, Undisclosed Information, Integrated Circuits and Plant Variety Law)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라크의 지식재산권 제도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법적 장치 면에서는 여타 국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치안질서도 확보하지 못한 현재 이라크 상황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유효한 행정적 집행수단을 갖는다는 것은 요원한 상황으로 실제 지적재산권 보호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지켜줄 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는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모조품, 윤활유, 전자제품, 담배류 등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제품들로 인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있으며, 특히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의 많은 제품들이 모조품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의 행정력 미비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통관절차 및 운송제도

일반 통관절차 개요

이라크 세관의 통관서류 및 절차는 인근 국가와 유사하다. 세관원은 서류가 적절하게 준비된 경우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에 통관 절차가 종료된다. 대체로 통상적인 국제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나 민간 수입의 경우 수입

면허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CI, Commercial Invoice), 포장 명세서(P/L, Packing List),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적합성인증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 등이다.

이라크 세관은 화물 송장 등의 각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품 검사는 세관이 지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구역인 부두나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하기가 곤란한 플랜트 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물자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검사하기도 한다. 또한 식품, 화학제품, 엔지니어링용품, 섬유제품, 건설재, 안전용품 등은 주로 전문검사기관들에 의해 별도의 검사가 수행된다.

특히 농수산물과 식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 제품과 동등한 관세, 통관, 검역제도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 농수산물과 식품의 위생검역 제도 및 절차는 일반 제품에 비하여 다소 까다로운 편으로 부가적인 통관서류(수출허가서나 위생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우편통관의 경우 국제 우편협약에 따라 배송자는 반드시 관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지정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우편통관 시에도 특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방치된 화물

방치 화물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고 화물 보관료만을 징수한다. 세관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화물은 세관장에 의해 정부가 지정하는 보세창고로 강제 운송된다. 이때 발생하는 보세트럭 운송비, 항만 체선료, 선박이나 항공 운송비 등 모든 경비는 추후 수입업자가 통관을 신청할 때에 완불해야 한다.

이라크에서는 국가 재건 프로젝트에 사용될 건설 기자재를 실은 화물의 경우에도 세관의 억류조치로 인해 화물이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는 해당 프로젝트 소관 부처에 공식 레터를 요청하여 방치 화물에 대한 반입 또는 귀송 승인을 얻을 수 있다.

물품검사, 보류 및 압류

이라크에서는 선적전 검사제도로 인해 수출국 소재 검사 대행업체를 통해 사전에 검사를 하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선적전 검사를 마치고 적합성 검사결과를 세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세관은 선적전 적합성 평가를 미 실시한 경우 수입품으로부터 샘플을 채취(또는 이미 반출된 경우는 수입자로부터 받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세관이 독자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수입자는 세관이 인가한 관할 시험분석소에 시험 분석을 의뢰해서 검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세관은 모든 수입 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검사 목표에 따라 수입품을 선별하여 검사하는 정책(Cargo Selectivity)을 펴고 있다.

통관에 관한 모든 절차는 이라크 검사 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통관 물품의 종류, 수량, 목적 등에 따라 적용 방침이 상이하므로 상업송장, 포장리스트, 세관 조사항목 및 통관 경비 등 관련 세부 사항은 한국 내 선적전 검사 대행업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통관절차 안내 및 문의

이라크 표준화 및 품질검사 중앙기관(COSQC)과 2020년 계약을 체결한 선적전검사 기관은 4개사이며, 한국 내 선적전 검사 대행사는 아래와 같다.

- Intertek
- Geochem
- HQTS Helmsan & Quality & Technology Services
- Bureau Veritas

운송비용

국제항구로는 남부의 바스라항과 움카사르항 2개가 있으며, 상업 화물은 주로

움카사르를 통해 수입된다. 2022년 하반기 기준 한국 부산항에서 이라크 움카사르항까지 선박 운임은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3,000달러 상당이며, 움카사르항에서 바그다드까지 육로 운송 요금은 1,000~1,500 달러 상당이나 운송과정의 도난, 파손 등의 위험으로 보관 및 보안 경비가 추가될 수 있다. Jebal Ali 항에서 움카사르 항까지의 운송비는 20 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1,300 불 수준이다.

우리나라를 출발한 화물이 이라크로 반입되기 위해 중간에 주로 활용되는 항구로는 요르단의 아카바항, 튀르키예 메르신항, 아랍에미리트의 제벨알리항 등 3곳이 있었으며, 어느 항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통관시점 상황에 따라 다르다.

2003년 전쟁 직후에는 요르단 아카바항을 이용하는 것이 운임 경쟁력이 있어 운송 지연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되었으나, 2014년 ISIS 사태로 인하여 요르단 및 시리아와의 국경이 폐쇄되어 움카사르항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났다. 이후 두바이 경유 운임이 하향 조정되면서 운송 기간이 짧고, 내륙 운송 시 국경 통과와 번거로움이 없는 두바이-움카사르 루트가 많이 이용되었다. 2017년 10월 개방된 요르단-이라크 국경은 코로나로 일시 중단되었다 2021년 8월 트럭을 통한 운송이 재개되었다.

또한 이라크 정부는 움카사르 항구의 적체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인근 알파우(Al Faw) 지역에 대규모 항만 건설을 위한 기초공사를 추진해 왔었는데 대우건설과 2020년 계약을 체결하고 대형 항만 및 기반시설을 건립 중이다.

공항 현황

국제공항은 바그다드 공항, 바스라 공항, 아르빌 공항, 술래마니아 공항, 나자프 공항, 키르쿠크 공항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항은 바그다드 공항이다.

이라크 공항들은 계속된 전쟁과 UN 경제제재로 인해 노후화되어 정상 운영이 곤란해졌다. 바그다드 공항은 2004년 8월에 관리 권한이 이라크에 이양

했으며, 이라크 국영항공사(Iraqi Airway)가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UAE 등 인근 국가 및 프랑크푸르트 등에 일부 운항을 재개했다. 외국 항공사로는 Royal Jordanian Air와 터키 항공에 이어 MEA, Emirate, Fly Dubai, Qatar Air 등이 운항중이다.

주요운송회사 및 통관서비스 회사리스트

- 회사명: AlMasar Al-Iraqi Co. L.L.C for Shipping & General Transport
전화: +964-771-255-4677, +964-770-492-6113
이메일: operation@iraqilogistic.com
- 회사명: Golden Masts for General Trading & Marine Services
전화: +964-780-139-8406, +964-770-310-5578
이메일: info@goldenmasts.com
- 회사명: AL-BADER SHIPPING & Gen.Cont CO
전화: +964-780-911-6249, +964-780-141-6415
이메일: hazimalali@absc-iraq.com, capt.aziz@absc-iraq.com
- 회사명: RSH Customs Brokerage & Related Services
전화: +964-780-555-5030
이메일: robert.hana@rshcustom.com, info@rshcustom.com

투자 환경

투자 개황

이라크는 8년에 걸친 이란과의 전쟁(1980~1988년), 쿠웨이트 침공(1990년) 및 쿠웨이트 침공 이후 12년간의 유엔 경제 제재, 미국의 이라크 침공(2003년) 및 ISIS 발호(2014년) 등으로 산업 시설이 크게 파괴되고 노후화되어 개발 수요가 매우 큰 편이다.

2003년 연합국 임시 행정처는 CPA 명령 39호(2003년 9월 19일)에 의거, 종전의 투자 관련법 조항을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투자 명령을 공포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2006년 제정되고 2010년 개정된 투자법에 따

라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도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됐으며 외국인이 100% 투자할 수도 있게 됐고, 이라크 투자자와 공동 출자도 가능하게 됐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사를 설치할 수도 있고 과실 송금이나 그밖에 영업과 관련한 정상적인 활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다. 한편 쿠르드 자치정부도 2006년 8월 중앙정부와 별도로 독자적인 투자법을 제정하여 개방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여건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상기 투자법 시행을 담보하는 하위 법령도 제정되지 않았고 투자 지원체 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2003년 미국의 점령에 대항하는 수니/시아 무슬림의 봉기, 그 뒤를 이은 종파분쟁에 이어 2014년 ISIS 사태에 이르기까지 이라크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외국인투자 여건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2018년 경제개발 계획, 2020년 경제백서 등 주요 개혁안에서는 민간투자 등 민간 부문 참여에 최우선적 역할을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부정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 성공 여부에 따라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설립

이라크는 외국기업의 이라크 내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현지법인과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현지법인,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이라크 내에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은 무역부 산하 외국기업 등록처 (Registrar of Company)에 등록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등록방법 및 절차는 형태별로 상이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된다. 다만 이라크 내에서 소매유통업을 하는 외국기업은 일정 금액의 예치금(2022년 현재 10만 달러)을 지정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외국기업이 이라크 내에 투자를 원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류를 국가투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 결과를 통보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대규모 투자

없이 이라크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할 경우에는 외국기업 등록처에 등록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사업여건

이라크는 2006년 12월 투자를 자율화하고 기업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 기본 틀을 갖추었으며, 각종 규제 철폐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민간 제조업 육성을 적극 추진 중이다. 그러나 2020년 세계은행의 국가별 비즈니스 여건 조사(Doing Business Survey)에서 190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172위를 차지하는 등 사업여건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이라크 국내 치안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정정 및 치안 불안 등으로 투자 리스크가 아직도 높은 상황이며 상대적으로 북부 쿠르드 지역 및 남부 바스라 지역은 위험도가 낮아 유전·가스전 개발 및 상하수도, 주택건설,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추진 등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최근에는 유통, 건설 등을 중심으로 인근국의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고 있어 향후 여러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관, 세무, 노동관청의 행정 투명도

2021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조사에서 이라크는 전체 180개국 중 157위로서, 부패 정도가 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투자위험도(신용평가)

OECD는 1996년 이래 2022년 까지 이라크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7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Fitch사는 2022년 1월 경기회복 및 원유 수출 증가 등을 감안하면서도 높은 석유의존도, 정치적 불안정성, 금융 부문 미발달 등을 감안하여 이라크에 대해 투자부적격 등급 중 하위 등급인 B-(장기)를 부여한 바 있다.

투자유치 기관

중앙정부에서는 투자법에 따라 2007년 11월 총리 직속기관으로 설립된 국가투자위원회(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가 투자 유치 및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나자프주, 바빌주, 바스라주, 살라아딘주 등 지방 정부도 주별 투자위원회를 설립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정부 투자위원회는 아직 내부 조직이 정비되지 않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쿠르드지방정부는 2006년 8월 제정된 자체 투자법에 의해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를 구성하여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가투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5년 임기, 내각 추천으로 국회 승인) 및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다. 주로 국가 투자정책 기획, 투자규제 조치, 투자규제 감독, 연방정부의 전략적 투자프로젝트 담당한다.

투자 제한 및 금지 분야

소매 분야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 기간 동안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이라크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석유, 천연가스의 생산과 채굴 분야는 정유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7년) 등에 근거하여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은행업과 보험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라크는 2009년 11월 주택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토지 소유를 허가하는 등 투자법을 개정하였으나, 외국인에 의한 토지 소유 조건은 여전히 까다롭다. 현지 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공동 명의로 토지를 임대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만이 허용된다.

투자 인센티브 제도

이라크 정부는 지원사업 여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정식 사업 등록 절차를 거친 외국기업에 한하여 각종 조세 특혜를 제공한다. 이라크에서의 인센티브 지급 유형은 협상형에 속하며 지급 규모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평가

요소는 정부 추진 핵심사업 여부, 공익 증진성, 외자 지분 비율 등이다. 지급 절차도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해당 외국 투자 기업에는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 주며, 합작 법인일 경우 이라크 파트너의 지분이 50% 초과 시 이라크 파트너의 지분이 늘어남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 준다. 그러나 프로젝트 자산을 이라크 법에 반해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세금(관세 포함)을 추징하고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 고용보조금 등은 제도가 미비된 상태이다.

투자 프로젝트용 수입 자산이 투자 승인 후 3년 내에 수입될 경우 해당 자산의 수입관세를 면제해 주며, 투자 프로젝트의 확대를 위해 수입한 자산은 위원회에 신고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수입할 경우 해당 관세를 면제해 준다. 또한 투자 자산 가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도 수입 관세를 면제해 준다.

투자법 주요 내용

(1) 목적

투자법은 이라크 발전에 기여하는 현대적 기술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 프로젝트 달성에 필요한 외국 투자와 이라크 민간부문 지원, 국내외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 축진을 목표로 한다.

(2) 지원 수단

특혜 조치와 경쟁력 증진 지원 조치 및 각종 관세와 각종 세제의 면제, 부가적 혜택 제공한다.

(3) 절차

- 투자 신청서 접수 후 45일 이내 허가 결정(단, 투자 금액이 25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내각의 승인 필요)
- 구비 서류

- 소정 신청서(application form prepared by the Authority)
- 은행의 재정보증(Financial guaranty from an accredited bank)
- 투자가의 기 투자프로젝트(Projects undertaken by the investor in or outside Iraq)
- 투자프로젝트의 명세서와 경제 효과(Details of the project to invest in and its economic usefulness)
- 프로젝트 추진 일정(Schedule fo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4) 투자가에 대한 혜택과 권한

- 국적에 관계없이 동등한 특혜 부여
- 승인 된 투자프로젝트에 합목적적인 토지·건축물 소유권 보유 가능
- 외국인의 토지 임차 허용
- 투자 자본 반입과 과실 송금 허용(투자법과 이라크 중앙은행의 규정)
- 이라크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주식과 채권 거래, 주식과 채권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국내외 보험회사의 투자 프로젝트 참여
- 보험, 국내외 은행에 이라크 디나르화 외국환 계좌 개설 보장
- 투자 프로젝트에 적합한 이라크 근로자 없을 경우, 외국 근로자 채용
- 투자가와 관련 근로자의 이라크 체재 및 출입국 허가
- 법원 판결 없이 투자 프로젝트의 국유화, 몰수 금지
- 투자법 상의 보장, 면제와 권리들에 대한 소급 적용 배제

(5) 투자가의 의무

- 투자 자산의 도입과 설치, 프로젝트의 사업 시기 등 신고
- 이라크 회계법인에 의해 감사를 받는 상설 계좌 보유
- 프로젝트의 경제 및 기술적 혜택 보고서, 위원회 요청 자료와 서류 제출
- 투자 프로젝트용 수입 물자와 면세 물자에 대한 기록 유지
- 환경 보호와 품질관리시스템 준수

- 임금, 면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이라크 법률 준수
- 차질 없는 투자 프로젝트 수행(6개월 이상 지체 시 벌금이나 허가 취소)
- 이라크 근로자 교육 및 훈련, 이라크 근로자 우선 채용 등

출입국 및 비자제도

예외적 여권사용허가

이라크는 2007년 8월부터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었는바, 입국을 위해서는 여권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득해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영주, 취재 및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에 한하여 이라크 방문 및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만약 외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라크를 방문하고 그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라크 사증 신청 시 반드시 사전에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로부터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증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 목적, 사업 절차, 기업 정보 및 신변 안전을 위한 경호 업체 고용 사실확인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호 서비스를 제공 받을 방안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최초 허가 시
 - 소관부처에 기업진출 신청 및 여권사용 허가신청(신청자)
 - 안전대책 검토(국정원)
 - 허가여부 심의 (외교부 여권정책심의위원회)
 - 신청자에게 심의결과 통보(외교부)
 - 필요 시 안전교육(국정원)
 -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서 교부(외교부)
-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 시
 - 외교부에 여권사용 허가신청(신청자)

- 허가여부 심의(외교부 여권 정책심의위)
- 심의결과 통보(외교부)
- 필요 시 안전교육(국정원)
-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서 교부(외교부)
- 유형별 자체 안전대책 (장기체류)
 - 무장 경호원 확보: 이라크 출장기간 동안 전 일정을 무장 경호원이 동행
 - 이동 시 안전대책:
 - 경호운송수단 확보하고 정부에 신고된 지역으로만 이동
 - 경호원 동행 등 이동 시 안전수칙 수립
 - 숙소, 사무실, 공사현장 안전대책
 - 숙소, 사무실, 공사현장의 안전지역 위치
 - 거주 및 체류 지역 외곽 방어벽 설치 및 경비초소 운용
 - 거주 및 체류 지역 출입통제 관리 (출입자·차량 신원 확인 및 검문)
- 유형별 자체 안전대책 (단기체류)
 - 무장 경호원 확보: 이라크 출장기간 동안 전 일정을 무장 경호원이 동행
 - 이동 시 안전대책: 경호 운송수단 확보 및 사전 신고된 지역으로만 이동
 - 숙소 안전 대책: 안전이 확인된 호텔 등을 숙소로 활용
 - 비상연락망 구축
 - 현지공관과 비상연락망 구축 및 일일 체류현황 보고
 - 진출기업 본사와 정부간 비상연락망 구축 계획
 - 현지정부 및 치안기관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 본사 및 직원간 비상연락망 구성
- 소관기관의 사업타당성 등 검토를 위한 제출자료
 - 여행금지지역 기업진출 신청서 및 서약서: 대표자 1인이 작성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현지정부 및 관련 기업의 초청장 및 안전보장 각서
- 외교부의 허가여부 심의를 위한 제출자료
 -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및 서약서: 방문인원 전원 작성
 - 활동계획서 : 안전대책, 총 여행 인원 정보 포함
 - 재직증명서, 여권사본

비자(사증)

이라크 입국을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단수비자(60일 체류 가능), 복수비자(3개월, 6개월, 12개월 등)가 있으며 기타 트랜짓 비자, 정치 비자, 긴급비자 등이 있다.

한국인의 경우 단기간 방문 시에는 2021년 3월부터 우리나라를 포함 UN안보리 상임이사국(5개국), EU회원국 및 일본, 호주 등 총 36개국 국민에 대해 공항 및 국경지역으로 입국 시 발급되는 도착비자(입국비자)를 활용할 수 있는데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우리 외교부에서 발급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서, 출국항공권, 숙박예약증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라크 내 근로 등 장기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 발주처 등의 협조를 얻어 복수 비자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국방법

(1) 항공편을 통한 입국

바그다드, 아르빌, 바스라, 술래마니아, 나자프 등의 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현재 이라크와의 직항은 없이 두바이, 도하 등 인근 국 공항을 경유해야 한다.

(2) 육로를 통한 입국

이라크 치안 상황으로 외국인들은 주로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으며, 현지인 및 일부 인근국 국민을 제외하면 육로를 통한 입국은 매우 드문 편이다.



이 란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수입정책상의 장벽

개요

이란 정부는 2022년 9월 제7차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2022~26년)까지 지난 1990년부터 경제·사회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나친 석유 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산업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2년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UN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제재를 받은 이란 정부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 핵협상에 임하여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합의하였고, 2016년 1월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2018년 5월 8일 JCPOA 탈퇴를 선언하고, 2018년 8월 7일 자동차 부문 등 제재 복원, 2018년 11월 5일 이란 원유, 향만, 해운 등에 대한 제재 복원 조치를 취했다⁶³⁾.

한국 등 8개국은 6개월간 한시적인 원유 수입 제재 예외국 인정을 받았으나, 2019년 5월 2일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한국은 이란산 원유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원화결제시스템을 활용한 교역이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 거래⁶⁴⁾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해져, 양국간 교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63) 제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sanctionssearch.ofac.treas.gov) 참조

64) 코로나-19 상황에서 미국이 외국기업의 이란과 북한에 인도적물품 교역 허용(2020.2.27. 발표)로 우리기업의 의약품 등 이란 수출이 2020년 4월부터 원화결제시스템을 통해 재개

이란 정부는 자국 제조업 보호 및 육성 차원에서 관세 및 비관세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수입정책의 경우 국내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제품, 기계류, 부품,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5% 이내의 저관세 및 수입완화 정책을 적용하는 반면 완제품, 자국 내 생산 가능한 품목 및 사치성 소비재인 경우 55% 이상의 고율 관세 혹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022년 10월 기준 2,500개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하였다.

◦ 이란의 품목별 관세 적용 비율

관세율	품목비중(20-21)	품목비중(21-22)
5%	29.5%	35.7%
10%	13.1%	20.1%
15%	8.6%	7.1%
20%	10.3%	3.9%
26%	10.3%	1.6%
32%	2.5%	1.6%
40%	2.5%	4.9%
55%	2.6%	3.2%
기타	19.6%	20.6%

자료원 : 이란 관세청

주 : HS코드 기준으로 해당 관세율 적용 범위 비중을 나타냄

- 산업화정책에 부합하는 석유화학, 농업, 광업, 자동차, 철강 산업 관련 기계류의 경우 수입허가 면제
- 국내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원재료 및 시설재 중 일부 품목은 산업광물 무역부 사전 수입허가 면제 품목으로 고시, 수입을 완화
- 한편, 이란 정부는 2016년 하반기 이후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상조치 및 밀수금지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무역제한정책 시행

비관세 정책으로는 주로 산업광물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Mine and Trade) 등 수입허가 부처에서 사전 수입허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란의 산업화에 필수 불가결한 자본재의 경우 수입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수입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입품목

이란 산업광물무역부의 수출입규정(Export & Import Regulation 2021-2022)⁶⁵⁾에 따르면 (1) 일반적인 수출입규정에 따라 수입이 가능한 수입허가 면제품목(Permissible goods), (2) 특별한 수입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조건부 승인품목(Conditional goods), (3) 이슬람법 또는 이란 법률에 의해 수입이 금지되는 수입금지품목(Prohibited goods)으로 구분된다. 포지티브 시스템에 의해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외 품목은 조건부 승인 품목으로 산광무역부를 통해 관계부처의 수입허가를 얻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허가 면제 품목은 산업기자재 등 필수품으로 제한한다.

- 조건부 승인 품목(conditional goods)

- 산업광물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부 등 해당부처가 건별 심사 후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품목으로 화장품 등이 포함되며 일부 수입금지품목 외에 대부분 품목이 이에 해당됨. 해당 부서 수입허가 결정시 동종품목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여부 및 생산량이 고려됨.

- 금지품목(prohibited goods)

- 무기류, 폭발성물질, 마약, 술, 도색출판물, 도박관련물품, 돼지고기, 승용차 완제품 등. 수입금지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2022년 10월 HS코드 6자리 기준으로 2,500개 품목이다.

이란 정부는 수입품목을 Group 1(수입허가 면제), Group 2,3(조건부 수입 승인), Group 4(수입금지) 등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란중앙은행은 의약품, 식료품 등 수입품목 그룹1에 해당하는 필수품에 대해 2018년 8월부터 고정환율(1\$=42,000리알)로 외환구입을 지원하였으나, 2022년 3월 21일부터 정부환율제도를 폐지하였다. 이는 이란중앙은행의 외환

65) 이란 정부는 미국의 경제제재 장기화로 자국산업 육성 외환낭비 방지를 위해 2018년 6월 23일부터 수입 정책을 변경하여 시행중(<http://eng.tpo.ir>)

보유고 유지를 위한 목적이었으며, 필수품에 대한 수입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정부보조금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차액을 보조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그룹별 환율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이란의 외환정책 및 수입규제 효과

구분(품목)	18.6.23 ~ 8.7	'18.8.7 ~ '22.3.20	'22.3.21이후	비고
Group1(필수품)*	\$1=38,000리알	\$1=42,000리알 고정	NIMA 환율	정부환율 폐지
Group2(산업재)	\$1=42,520리알	NIMA 환율		시장환율에 연동
Group3(일반재)	\$1=42,000리알+협상액			
Group4(사치품)	수입불가(1,400개 품목)	수입불가(2,000개 품목)	수입불가(2,500개 품목)	수입금지 확대 중

자료 : 이란중앙은행(CBI), 주 : NIMA 환율('22.10.13일 현재 매매기준율 270,176리알)

수입절차

이란과 상품의 수출입거래를 하려면 이란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상업카드(commercial card)가 필요함. 상업카드는 이란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한하여 부여되므로, 이란에 상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란에 법인을 직접 설립하여 이 카드를 취득하거나 이란 국적의 대리인(에이전트)을 선임하여야 한다. 물품 수입을 위해서는 이 카드와는 별개로 산업광물무역부 등으로부터 수입허가를 얻어야 한다.

① 산업광물무역부에 수입 신청서 제출

- 조건부 승인 품목중 약 80%는 산광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의 별도 수입허가 절차는 필요 없음.
- 조건부 승인 품목중 나머지 약 20%는 산광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접수시 지정하는 관련부서에서 수입허가를 획득해야 함.

② 산광무역부, 보건부 등 해당품목 관할 부서의 수입허가

- 실질적인 수입허가 여부 결정
- 해당부서에서는 건별로 수입허가 여부를 심사

③ 상업은행을 통해 L/C를 개설

- 수입자는 품목 및 수입자의 업체 규모, 신용도에 따라 수입 대금의 최고 60%까지 은행에 사전 예치하고 L/C를 개설

관세정책

이란의 관세제도는 국내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세는 HS 분류 방식을 채택(관세법령 : Export and Import Regulation Law : 1993)하고 있다. 이란은 WTO 비회원국으로 이란력 신년이 되는 매년 3월 21일 기준으로 관세율을 조정하고 있으며, 정책필요시 연중 재조정하기도 한다. 2018년 5월 미국의 포괄적 이란협정(JCPOA) 탈퇴로 미국의 제3자 제재(Secondary sanctions)가 부활되어 이란 정부는 자국산업 육성과 외화낭비를 줄이기 위해 외환과 결부된 수입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2018년 6월 23일부터 수입품목을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세율은 최저 5%에서 최고 55%로 평균 24% 수준인데, 그룹 1의 의약품과 식료품 등은 5-10%, 산업용 필수 원부자재는 5-15%, 그룹2의 중간재재는 10-34%, 그리고 그룹3의 일반 완제품은 15-55%의 높은 관세가 적용된다. 한편 수입금지 품목(그룹4)은 사치품과 이란에서 제조가 가능한 품목으로 계속 늘고 있으며 2022년 10월 HS코드 6자리 기준으로 2,500개 품목이다. 참고로 완성차는 2018년 6월 22일부터 수입금지 품목으로 분류되었으나, 2022년 8월부터 FOB 기준 2만유로 이하 소형 승용차는 수입허용 하였다.

이란을 포함한 이슬람경제공동체(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회원국 간 관세 감축을 위한 ECOTA(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Free Trade Agreement)는 2003년 서명된 이후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이란은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튀니지, 시리아, 쿠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7개국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는 2018년 5월 639개 산업재와 223개 농수산물에 대해 특혜무역협정(PTA) 체결 후, 2019년 1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PTA에 적용되는 평균관세율은 이란 상품의 경우 3.1%, EAEU 상품은 12.9%이다.

기존 특혜관세 대상국인 벨라루스와 키르기즈스탄은 EAEU PTA를 통해 특혜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이란무역진흥청은 이란과 EAEU 간 FTA가 2023년 3월 21일부터 발효하며, 양측 간 교역 품목의 80%가 무관세로 교역될 것이라고 발표(2022.10월)한 바 있으며, 이란과 EAEU간 교역량은 2015년 23억불에서 2021년 기준 50억불로 증가하였고, 이란 회계연도 7개월간(2022.3.21.-10.22) 간 EAEU와 교역액은 18억달러를 초과하였다. 또한, 이란은 2021년 9월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가입 신청 이후, 2022년 9월 정식 멤버십을 획득했다.

이란 관세법은 수입품이 덤핑이나 부당한 혜택 하에 이란에 반입됨으로써 이란의 동종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과거 수입된 수입가격과 P/I상에 명시된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추정가격에 의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반덤핑관세 부과 투명성이 낮았다. 이란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7년 8월 이란 정부내 주요 부처 장관협의 인준에 따라 관계부처 차관 및 국장급으로 구성된 반덤핑 예비조사 협의체를 구성하여, 생산자의 청원이 있을 경우 서류심사, 사실조사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행하고, 이 결과에 따라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반덤핑 예비조사 협의체에 참여하는 부처와 정부기관에는 산업광물무역부, 외교부, 농업부, 조합부, 관세청, 상공회의소, 무역진흥청(TPO) 등이 포함되며, 간사는 TPO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다만, 현재까지 이란 당국이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이란 관세 규정에 의하면 이란의 수출품목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란 정부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이어의 탈세 조장 또는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목적으로 덤핑 또는 비정상적으로 수입품 가격을 조정 인하할 경우, 이란 정부는 동 특정품목에 대하여 관세인상 등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세 환급은 재수출용 원자재 및 부품 수입시 가능하다. 수출 촉진 목적으로 수입되는 기계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며 관세면제 대상

품목은 산광무역부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관세 산정방식은 ‘CIF 가격(US \$)×1달러당 환율(Rial)×해당수입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구체적인 관세율 정보는 이란 무역청(TPO: Trade Promotion Organization) 홈페이지(eng.tpo.i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율은 제품신고시 완제품(CBU: completely built-up), 반제품 (SKD: semi knock down), 반조립제품(CKD: complete knock down)별로 상이하다. 평균 관세율은 완제품을 제외하고는 17~23% 수준이다.

통관절차

수입품은 검수관의 감정 및 평가 절차에 의해 철저히 검사되며 세관신고서에 의거, 신고 되지 않은 품목은 밀수로 간주된다. 수입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허가대상품목으로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한 품목)을 수입한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의 동의하에 수입상은 CIF 가격의 5~25%에 해당하는 벌금(penalty)을 지불하고 상품을 통관할 수 있다. 수입허가 없이 통관이 가능한 경우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가 유일하다. 이란의 통관절차는 상품도착 → 수입물품 보세창고 하역 → 통관수속 → 물품검사 및 선적서류 확인 → 샘플테스트 및 가격확인 → 관세지불 → 통관확인서 발급 순으로 이루어진다.

통관 수속과 관련된 서류는 견적송장(registered P/I), 회사등록증(copy of commercial ID card 또는 company registration), 신용장 또는 송금영수증,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 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선하증권, 검사증명서, 표준증명서 등이다. 유의할 사항은 세관에서 통관확인서(green paper) 발행 후에도 통관증명서 뒷면에 통관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한 특별 스탬프나 도장이 찍혀야만 완전무결한 통관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견적송장(P/I)상 금액과 상업송장 금액에 차이가 나거나 또는 중량 증명서상 중량과 실제 중량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를 보전할 때까지는 통관이 완료된 경우라도 통관확인서(green paper) 뒷면에 최종확인 스탬프가 찍히지 않는다.

수입 통관 시 실중량 측정과 관련, 철강, 종이, 파이프 등 제품의 경우 제품 무게를 측정하여 인보이스에 명기된 중량과 비교하는데, 이란 세관은 국제적

관례로 인정하고 있는 중량의 오차 범위(약 5% 내외)를 인정치 않고 있으며, 고중량 측정저울의 일반적 오차 한계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란은행은 세관에서 측정한 중량이 인보이스에 명기된 중량에 미달할 경우 통관을 지연 또는 거부하고 있다.

수입검사

이란으로의 수출시 선적전 검사와 영사인증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란 정부는 2001년부터 선적전 검사와 선적서류 영사인증을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란은행에서 수입자의 신용에 따라 자체 산정한 금액 이상 수입 시에는 수입자에게 선적전 검사와 선적서류 영사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한국에서 수출시에는 L/C개설 이전에 수입자와 동서류 필요여부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선적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란표준산업연구소(ISIRI : Institute of 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of Iran : www.isiri.com)가 지정한 이란 또는 ISIRI에 등록 허가된 외국검사기관에서 수입검사를 받아야 하며, 한국 내에 ISIRI가 지정 및 허가한 검사기관⁶⁶⁾도 운영 중이다.

원산지 증명제출 및 영사확인

선적서류 영사인증 의무는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어 수입자가 영사인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한국 업체에서 주한이란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란기업이 이란식약처(FDA) 등록 등을 위해 또는 품목별 통관상 필요에 의해 요청할 경우 수출업체는 제고하여야 한다.

위생 안전 허용 기준

위생, 의료 및 의약 관련 품목은 보건부 내의 표준규격심사에 합격해야 하며, 선적전 견본이나 샘플을 보건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이란어로 제품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위생, 안전 허용기준은 보건부에서 정하며 동

66) 관련 정보는 사단법인 한국검수검정협회(cafe.daum.net/kts6934?q=kts6934 ; ☎ 02-737-693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수입이 허용된다. 화장품 등의 경우 현지 공장실사 등이 승인검토 절차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니 품목별 확인이 필요하다.

샘플 통관

해외에서 이란으로 발송하는 샘플 및 카탈로그 통관 시 소액, 소량인 경우라도 현지에서는 통관수수료 및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세관 담당관이 별도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통관 소요기간도 1~2주 정도로, 현지인의 도움 없이는 통관이 불가능하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공항 입국 시 소지하는 견본도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항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통하여 처리하게 되며, 이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표준 인증관련 장벽

이란의 이란표준산업연구소(ISIRI: Institute of Standards & Industrial Research of Iran, www.isiri.com)는 각 제품의 표준규격을 결정하는 이란내 유일한 기관으로 품목별 표준규격을 결정한다. 필수 표준규격 적용대상 품목은 반드시 인보이스에 관련 규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수입상은 반드시 수출상에 표준 규격을 통보해야 하며 만일 규격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통관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위생, 의료 및 의약 관련 품목은 보건부 표준규격 심사에 합격해야 하는데, 선적전 견본이나 샘플을 보건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획득해야 하며 제품 내용은 이란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위생, 안전 허용기준은 보건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수입이 허용되며, 인증등록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 외국기업의 현지 공장 실사 등도 병행하고 있다.

주요 품목별 수입 장벽

2018년 6월부터 수입품목을 4개 그룹(1~4)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세율은 최저 5%에서 최고 55%로 평균 24% 수준인데, 그룹 1의 의약품과

식료품 등은 5-10%, 산업용 필수 원부자재는 5-15%, 그룹2의 중간재는 10-34%, 그리고 그룹3의 일반 완제품은 15-55%의 높은 관세가 적용된다.

한편 수입금지 품목은 사치품과 이란에서 제조가 가능한 품목으로 계속 늘고 있는데, 2022년 10월 HS코드 6자리 기준으로 2,500개 품목이다. 참고로 완성차는 2018년 6월 22일부터 수입금지 품목으로 분류되었으나, 2022년 8월부터 FOB 기준 2만유로 이하 소형 승용차는 수입허용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이란제재에 따른 인도적 품목(의약품, 의료기기)만 수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수출금지 품목이 아닌지 전략물자관리원 (www.kosti.go.kr) 등에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철강

수입 통관시 실제중량 측정을 실시하여 송장상에 기재된 중량과 비교하게 된다. 물품의 특성상 제조업체에서는 일부 특정 물량에 대하여 실제중량(actual weight)을 측정하지 못하고 서류상 중량(theoretical weight)으로 대신해 수출하고 있으나, 이란 세관에서는 실제 물량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특정품목: 판재류, 종이, 철강, 철근, 파이프 등).

서류상 중량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당초 견적송장(P/I)상에 명시된 대로 서류상 중량을 수용하여 분쟁을 방지(대부분 수입자는 이해하고 있으나 이란 세관측에서 문제를 제기해오기도 함)하고 있으며, 통상 서류상 중량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당초 송장(Proforma Invoice) 발행시 반드시 명기하고 있다.

제조상품의 경우, 국제 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중량의 오차 범위(약 5% 내외)를 인정하지 않으며, 고중량 측정 저울의 일반적인 오차한계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전기전자 제품

제품 생산을 위해 CKD(complete knock down) 형태로 부품을 수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품의 30%를 현지화하지 않았다면 완제품으로 간주, 완제품 관

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2017년 7월 이란 통신정보기술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는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 등 21개 기술제품의 수입제한 또는 관세율 인상 등의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⁶⁷⁾

자동차 부품

과거 이란에서는 완성차 및 중고차 수입금지로 공급부족 현상이 초래되었으나, 2004년 이후 공급초과 현상이 나타나 1994년부터 금지되었던 완성차 수입을 2004년부터 허가한 바 있다. 2018년 8월 미국 경제제재 시점에서 또다시 완성차 수입은 금지되었으며 단, 반제품(CKD) 및 반조립(SKD) 방식으로 수입은 가능하다. 현재 CKD 부품은 해당 차종의 현지화 비율에 따라 관세를 20~70%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최근 이란 정부는 자국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외국회사들의 이란내 직접/공동투자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자국내 완성차 업체에게만 외국산 자동차 수입면허를 부여하는 정책을 사실상 추진하고 있다. 외국 브랜드 완성차를 제조하는 업체만이 해당 브랜드 자동차를 CKD 및 SKD 방식에 한해 수입할 수 있다.

섬유·직물류

이란 정부는 자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완제품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섬유직물류 및 기타 완제품 의류 등의 對이란 수출에 제약이 있다. 또한, 이란 내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고급원단 직물류의 경우도 사치재라는 이유로 이란 정부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대부분의 물량이 공식 수입보다는 두바이 등을 통한 비공식 경로로 수입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 상의 제약

이란은 법률(the Constitution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123조)에

67) <http://financialtribune.com/articles/economy-sci-tech/67970/imports-of-21-tech-products-banned>

따라 정부와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국제입찰은 1) 이란내 관련업체가 없다는 증명, 2) 최대한 국산화 제품 사용(비율없음), 그리고 3) 경제부 및 관련부처 승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공사입찰의 경우 발주처에서 입찰공고 이전에 적정 업체와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리 주요 발주처 관계자와의 협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업체가 공사 총액의 51% 이상 지분을 갖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또한 정부 조달시 51% 이상의 품목은 반드시 국내 자재를 조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내 자재가 없는 경우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해외 자재를 조달할 수 있다. 나아가 2017년 8월 이란 산광무역부는 국내 자재 및 서비스 조달 극대화가 요구되는 10개 산업분야(자동차, 섬유, 기계장비, 금속성 광물, 비금속성 광물, 식품건강, 제약, 전자통신, 화학, 소프트웨어)의 구체 품목을 선정 발표하였다. 정부 조달시 발주하는 입찰에는 공개입찰과 제한입찰이 있어 단순 아이템이면서 기술, 사양이 복잡하지 않고 또한 신속성을 요하는 구매의 경우 제한입찰로 발주하고 있다. 현재 정부 구매의 약 80%는 Inquiry Invitation Tender(제한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달리 부처별 조달기능이 있어 개별, 독립적인 조달절차를 보유하고 있다.

투자 장벽

외국인 투자 정책

외국인 직접투자는 자본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매년 약 80만 명에 달하는 신규 노동인력에게 제공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란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2021년 8월 출범한 라이시 정부는 미국의 제재 강화로 인한 이란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란은 외국인투자보장법(FIPPA)에 기초하여 Kish, Qeshem, Chabahar

등 지역에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15개 지역을 설치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업별로 58개의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를 지정하여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이중 14개 지역이 2021년 5월에 신규로 지정되었다.

외국인 투자 분야 및 지분

이란에서의 지분투자를 통한 외국인투자는 3가지 방식으로 허용되고 있다. 첫째, 「외국인투자촉진및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투자허가 취득절차를 거친 후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 둘째, Free Industrial-Trade Zone이나 Special Economic Zone의 특별 규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 셋째, 이란 상법에 근거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이다.

이란은 전 사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대체 사업, 석유화학, 석유, 가스개발,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석유, 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었으나 1996년 이후 Buy-Back방식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해 오다가 2016년 8월부터는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란 석유계약제도(IPC : Iranian Petroleum Contract)를 통해 국제 석유회사들이 지분투자를 통해 이란 원유 및 가스개발 사업에 장기간(20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제도를 발효하였다. 이란 정부는 2017년 7월 프랑스 Total사가 이끄는 컨소시엄(지분구조 : 토탈 50.1%, 중국 CNPC 30.0%, 이란 페트로파스 19.9%)과 이란 사우스파(South Pars) 가스전 개발을 위한 48억불 규모의 대형 계약을 IPC제도로 체결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⁶⁸⁾.

외국인 투자촉진 및 보호법(FIPPA)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는 민간부문의 활동이 허용된 모든 영역에 투자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지분 보유 비율을 제한하지 않는다. 즉 외국인의 투자 허용 분야도 현지인이 투자 가능한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하였다.

68) 다만, Total사는 2018년 8월 미국의 이란제재 영향을 우려, 이란시장에서 철수하였으며, 2019년 10월 이란 석유부장관은 중국 국영석유회사(CNPC)도 투자계획을 철회했다고 발표.

외국인 투자촉진 및 보호법 시행령(Implementing Regulations)에는 투자 방식과 범위, 승인 방식, 외국인 투자 서비스 센터 업무범위, 외국인 자본 유입, 과실송금 등에 관련된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 일반 감면제도
 - 내국인과 동일한 조세 감면제 적용
 - 공장설립 지역별 감면: 테헤란 중심지에서 120km 이상, 이스파한에서 50Km 이상 등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5년간 법인 소득세 면제
 - 투자 장려업종 감면: 테헤란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해 과세 소득의 15% 공제
-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 면세
 - 산업, 광산 및 서비스(병원 및 호텔) 업계의 모든 사업 활동에 대해, 총 과세소득이 등록 자본에 이를 경우 5년간 소득의 50% 세금 면제, 저개발 지역내 산업, 광산 및 서비스(병원 및 호텔)업계의 모든 활동에 대해 총 과세 소득이 등록된 자본의 2배에 이를 경우, 10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등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 Qeshem, Kish, Chabahar 등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 법인 등록 절차의 간소화
 - 20년간 면세 혜택 및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
 - 자유무역지대에서의 모든 생산라인 기계 및 원자재 관세 감면
 - 상품의 재수출이 유리한 기반 환경 조성, 이란 본토로 상품 수출 허용
 - 자본 및 임금에 대한 송장 보장, 100년간 장기 부지 임대 허용, 노동법 적용 완화

- 무비자 출입국 허용 등 각종 편의 제공
- 외국은행 설립 허용

외국인 합작투자 승인절차

- 산광무역부 및 품목별 관련 부처에 투자 의향서 제출
- 투자지원청(OIETAI: Organization for Investment, Economic and Technical Assistance of Iran)에 합작 투자 승인 신청(총 심의기간 45일)
- 구비서류
 - 합작투자 승인신청서
 - 계약서(현지 파트너와의 계약서)
 - 사업개요(Project Summary)
 - 기타(신청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자료도 무방)
- 외국인투자위원회(Foreign Investment Board: 경제관련 차관으로 구성) 심의 및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 승인

현지법인 승인절차

국내법률상 해외지사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해외사무소(연락사무소 : liaison office)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지점(branch)으로 구분된다. 이란 직접세법에서는 별도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는 외국회사의 지점(법률상 연락사무소와 유사)에 대한 과세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양자를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란 상법 등에서도 연락사무소와 지점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란에서는 지점이건 연락사무소이건 설립절차와 법률관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란에 연락사무소 또는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이란등기소에 설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소를 통해 관보 및 지정된 신문에 연락사무소 또는 지점 설치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점의 활동은 마케팅 및 정보수집 활동, 그리고 판매후서비스(A/S) 등으로 국한되며 L/C개설이나 상품매매, 서비스

제공 등 영업활동은 예외적으로 허가되는 사유를 갖추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지점이나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이란내에서 법인 세도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란 내에서는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이나 사무소가 적지 않고, 이란과 관세청도 지점이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영업활동으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서는 지점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란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회사는 이란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법인, 즉 자회사로 하여금 이란내 사업을 영위하게 할 수 있다. 100% 자회사로 설립할 수도 있고, 이란인 또는 이란법인과 합작하여 합작법인으로 설립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국내법인과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현지법인의 매출이 곧바로 본사의 매출로 인식되지 않으며, 현지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현지법인의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법인설립은 상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능하다.

(1) 상법에 의한 법인설립

- 절차: 필요서류준비/제출(등기소) → 회사명 등록(등기소) / 자본금 납입(은행) → 자본금 납입증명서 제출(등기소) → 관보 게재, 법인등록 완료
- 장점: 외투법에 의한 설립에 비해 소요기간이 짧음.
- 단점: 종전에는 이란 상법에 따라서만 법인을 설립할 경우 외국인투자 지분비율이 49% 이하로 제한되었으나, 2008년 12월 관련규정이 변경되어 FTZ나 SEZ가 아닌 이란 본토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도 외국인이 100% 지분보유 가능

다만, 투자분야에 따라서는 이란 정부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설립

- 절차: 투자허가신청(투자청) → 투자위원회 심의 → 투자허가 초안 수령 및 검토 → 투자허가서 발급(투자청) → 필요서류 준비/제출(등기소) → 회사명 등록(등기소) / 자본금 납입(은행) → 자본금 납입증명서 제출(등기소) → 관보 게재, 법인등록 완료
- 장점: 지분 100% 확보 가능하며, 투자허가서에 투자금 보장, 기타 인허가(노동허가 취득 등) 업무를 투자청 협조하에 진행 가능
- 단점: 소요기간 및 필요서류가 상대적으로 길고 복잡
- 참고사항: 각종 인허가 취득 및 등기업무 등 행정절차 시 믿을 수 있는 이란인 업무대행사 필수(법무법인 등 대행시 소요기간 및 비용 증가)

(3) 자유무역지구(FEZ) 또는 특별경제지구(SEZ)를 활용하는 방법

- 이란 정부는 많은 FEZ와 SEZ을 지정하였지만, 현재 15개의 FEZ, 58개의 SEZ들이 운영되고⁶⁹⁾ 있다. 입주기업들에게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면제, FTZ 제조품 이란 본토 반출시 FTZ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면세, 20년간 근거 법률에 따른 법인세 면제, 자유로운 과실송금, 외국인 고용제한 완화, 노동규제 완화, 일부 FTZ의 경우 이란인 및 외국인을 상대로 소매업무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어느 FTZ 또는 SEZ내에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에 따라 그 절차나 혜택이 달라진다.

(4) 유한회사(LLC)/비공개주식회사(Private JSC)로 설립

- 이란 상법의 회사 형태중 외국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형태는 유한회사(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와 비공개주식회사(PJSC : private joint stock company)임.

69) 출처 : <http://freezones.ir/fa/freezones>

-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이란의 경우에도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각종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유한회사 설립이 선호됨. LLC의 경우 2인 이상의 발기인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며, 필수기관으로 이사만 두면 됨. 이사회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이사가 회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다만, 비공개 주식회사(JSC)에 비하여 정부기관 발주에 참여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비공개주식회사(private JSC)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며, 이사회 및 감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함. LLC로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Private JSC로 설립할 것인지 여부는 합작을 할 것인지, 합작을 한다면 소수지분을 취득할 것인지 아니면 지배지분을 취득할 것인지, 현지법인의 주된 활동이 무엇인지(정부기관 발주에 참여할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음.

노동법규

이란의 고용 및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주요 법령은 1990년에 제정된 노동법, 이란 장관회의 및 노동사회복지부에서 발령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란의 노동법 규정 자체는 상당히 근로자 친화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근로관계 관련 분쟁은 노동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이 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고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란 정부는 매년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이란 회계연도 1401년('22.3-'23.3)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7.46% 인상된 41,797,500리알이다. 달러로 환산시 대체로 현지 대졸 사무직 초임은 매년 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지만, 달러환율 대비 리알화의 폭락세(2022.10.27.일 기준 : 33,050리알/1달러) 지속으로 달러 환산액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 고용계약
 - 현지법인의 경우 외국인 1명당 현지인 3명 이상 고용 원칙

- 수습기간: 비숙련공 및 반숙련공 최대 1개월, 숙련공 및 전문직 최대 3개월
- 계약 종료: 피고용인 사망, 퇴직, 사직, 임시직 계약 기간 만료
- 계약에 의한 작업완료
- 퇴직금: 일반적인 경우 근무연수 $\times$ 1개월(최저) 또는 2개월(최대) 급여,
피고용인 사망 시 근무연수 $\times$ 3개월분 급여 $\times$ 근무 연수
- 노동세
 - 외국인 근로자 연소득 30%에 상당하는 노동세(Labor Surcharge) 납부 의무(2008년부터 유예 상태)
- 사회보장제도
 - 피고용인의 급여에 대한 사회 보장세 납부
 - 세율 30%(근로자 7% 부담, 고용주 23% 부담)
 - 한-이란간에는 1978년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이란 주재 대한민
국 국적자에 대한 사회보장세는 감면
- 노조 관계
 -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단체협약 및 계약 체결 가능
 - 당사자 간 합의에 실패하여 파업 및 조업지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재
위원회에서 중재하고, 아예 불응시 중재 법정에서 최종 판결

국산화 의무

국내산업보호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현 외국인투자 허가시 국산화 의무 및 일정 비율의 수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란 내에서 생산된 또는 생산 공급될 수 있는 장비, 자재, 서비스는 모든 정부 부처 및 기관, 은행, 공기업 등의 엔지니어링, 건설공사, 설비, 서비스 수행시 사용되어야 하며, 각 계약의 총 가치중 적어도 51%는 이란내에서 조달(50% content law)되어야 한다.

투자 허가 지연

투자허가 단계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되나,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관련법 개정, 절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 과실송금
 - 「외국인 투자촉진 및 보호에 관한법률(FIPPA)」에 의해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이 보장되어 있으나,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에 대한 행정규제(대차대조표 검사,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의 통지 및 재정경제부장관 승인 등)가 일부 상존하고 있다.
-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 차입상 특별한 규제는 없다.
- 현지 금융조달의 제한
 - 기본적으로 이란 은행은 외국계 업체에게 금융지원을 하지 않으며,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또는 정부조달에는 수주자 측에 Buy-Back 또는 파이낸싱을 요구하고 있다. 현지 금융은 외국은행과 이란 은행의 상호 보증협약이 있을 경우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이란통화의 환전성 결여로 금융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 이란에서 신용카드 사용은 미국의 금융제재로 사실상 불가능하며, 대신 은행의 직불카드(debit card) 발급은 급격히 증가 추세이다. ATM등 자동화기기 보급률도 높아지고 있다.
- 이란중앙은행은 의약품, 식료품 등 수입품목 그룹1에 해당하는 필수품에 대해 2018년 8월부터 고정환율(1\$=42,000리알)로 외환구입을 지원하였으나, 2022년 3월 21일부터 정부환율제도를 폐지하였다. 이는 이란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한 목적이었으며, 필수품에 대한 수입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정부보조금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차액을 보조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이란 기업은 외환거래시스템 (NIMA: Integrated

Transaction System of Foreign Currency)에서 외환 수요(수입자)와 공급(수출자)에 따라 필요한 외환을 구입하여야 한다.

- 이란 정부는 투명한 외환거래를 위해 2018년 4월 온라인 외환거래 사이트(NIMA System)가 개설되었고, NIMA 환율과 시장환율의 차이가 크지 않아 통상 NIMA 환율이 시장환율로 통칭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외국기업을 포함한 이란내 모든 기업이 과세대상이며,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해 이란내에 설립한 법인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지점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인소득세율은 25% 적용된다.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의 소득에 대해 다양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0~25%의 세율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0~30%까지 6등급으로 구분 징세되고 있다. 외국기업 주재원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작성한 기준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부과한다(인정과세).

외국지사는 사무소 형태와 무관하게 영업상 이익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피고용인(이란인)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이란 SSO (Iran Social Security Organization)에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장세는 피고용인 급여의 30%에 해당하며, 고용자 23%, 피고용자 7%를 부담한다.

부가가치세(VAT)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 수입에 부과되며, 2022년 현재 부가세율은 9%이다. 공식 세관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관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 환급받아야 한다.⁷⁰⁾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기업은 이란내에서 영업활동할 수 없고 제재를 받게 된다.

- 지사·사무소 설치 허가 취득 의무화

70) 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84

- 외국 회사가 이란내 지점(Branch)이나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경제재정부 산하 회사 등록청에서 설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설립허가 요건이 강화되었다.

◦ 지사·사무소 설치허가 절차

- 지사·사무소 설치허가 신청서(재정경제부 산하 회사 등록청)
- 설치 예정인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본사의 정관
- 본사의 재무제표
- 지사·사무소 설치 타당성 조사보고서(회사 영업 범위 및 내용, 설치이유, 인력, 운영자금 조달 등 포함)

이란 내 지사·사무소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자국 회계검사를 받은 연간 재무제표를 이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장벽

체류허가 출입국 제한

외국 상사 주재원들에 대해 보통 1년간 유효한 노동허가를 발급하지만, 2022년 현재 3~6개월까지 단축 발급되기도 한다. 갱신 시점에서 인정과제 되는 개인소득세의 완납 및 현지직원 추가 채용 또는 일정 비율이상 수입 등을 점검하며, 제3국 출입국시에는 세금 미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출국허가를 발급한다.

신용장 거래 및 송금

이란과의 교역시, 원화결제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주거래은행(외환창구) 또는 해당금융기관의 신용장 개설 및 송금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0년 10월 현재, 사실상 우리 기업이 이란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도적 품목만 수출이 가능하며, 엄격한 심사하에 원화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란 수출의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에 거래 가능품목 여부와 우리나라 은행 등 원화결제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상표권 등록

많은 해외의 유명상표들이 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란 현지에 진출해 있으나, 이들 상표들에 대한 무단 사용 및 유사 상표 사용으로 인해 현지에서 심각한 상표권 침해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2007년 제정된 「특허·산업디자인 및 상표 등록에 관한 법률(Patents, Industrial Designs, and Trademarks Registration Act)」에 따라 모든 등록 및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권리자들은 보호된다. 그런데, 위 법규정의 해석상 이란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침해에 대해서는 해당 상표의 보유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즉 이란에 등록되지 않은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 단 국제적으로 유명한 상표일 경우는 예외로 둔다. 현지 시장 진출시 자사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스라엘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MFN 관세 및 FTA 관세)

이스라엘의 관세는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따른 세제(MFN 관세)와 FTA 체결국에 대한 세제의 이중체제이다. 이스라엘은 1985년 미국과 FTA를 최초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EU, EFTA, 캐나다, 멕시코, 튀르키예, MERCOSUR, 콜롬비아 등 44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한국은 이스라엘과 2019년 8월 21일에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최종 타결을 공식 선언하였고, 2021년 5월에 정식 서명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12월 발효된다. FTA 체결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MFN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관세분류방식으로는 HS코드를 채택하고 있다.

이웃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또한 이스라엘의 중요 현안으로 관세 및 쿼터 면제 특별구역(QIZ-Qualified Industrial Zone) 설치 협정을 요르단(1997), 이집트(2004)와 체결하였다. 이스라엘이 자유무역협정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시장이 개방된다 하더라도 자국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자국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관세 및 구매세는 재화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된 수단이다. 재화를 정확하게 분류해야 적용할 세율을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과 관련하여 적용해야 할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다양한 허가, 특허, 면허, 기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이스라엘 관세 당국은 요청할 경우 3가지 품목까지 무료로 분류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요청을 할 때는 해당 재화에 대한 정확한 설명,

기술 및 기타 정보에 관한 카탈로그를 포함해야 한다. 그밖에 관세 당국은 원료나 제품의 샘플, 실험실 분석결과, 연구기관 또는 공인된 대행기관의 허가, 수입 면허 및 특정 관세 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011년 여름에 이스라엘에서 발생하였던 대중 시위 이후에 이스라엘 정부는 급격한 물가 인상과 이로 인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식품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edmi 위원회」가 설립되고 동 위원회는 관세율을 더 낮추거나 영세율을 적용할 수백 개의 식품 리스트를 2012년 4월 2일 발표하였는바, 이스라엘 내 경쟁자가 없는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40% 내지 100% 감면하고 현재 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신선 소고기육과 같은 농산품 및 참치, 과일주스 같은 패키지 상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감면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를 토대로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이 2012년 7월 식품 등을 포함한 수백 개의 상품에 대한 관세와 구매세를 감면 혹은 면제하는 부령에 서명했으며 꾸준히 관세 및 구매세 폐지를 추진 중이다.

2017년 4월 재무부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빈부격차 완화 및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Family Net Plan을 발표하였다. 중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및 소득 지원과 휴대폰 등 일부 생활용품 시장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폰 구매세 15%가 4월부터 폐지되었으며 휴대폰 판매가격도 같은 수준으로 인하되었다. 추가적으로 유아의류(6%), 신발(12%)의 관세율도 폐지하였다.

TAMA

이스라엘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TAMA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TAMA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서, 구매세와 연동되어 있다. TAMA의 가산율은 수입업자의 평균수익율과 국내산 상품가격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TAMA 및 구매세는 관세율표에 표기되어 있다.

예컨대, CIF 가격이 100달러이고 이에 대한 TAMA가 50%, 구매세가 10%일 경우, 구매세는 CIF 가격에 TAMA를 가산한 150달러에 대하여 부과되므로 최종적으로 가격은 165달러가 된다.

수입부과금

이스라엘 정부는 수입품의 CIF 가격에 대하여 1.02%를 부과하던 부두 사용료를 지난 2010년부터 폐지하였다.

수입규제

이스라엘 정부는 농산물의 경우, WTO, FTA 또는 기타 조약에 따라 쿼터 없이 무관세를 약속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복잡한 TRQ(Tariff-Rate Quota: 관세율할당)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 공중도덕, 환경, 안보상의 이유로 이스라엘 정부는 아래와 같은 17개 제품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주로 생물, 채소류, 과일류, 식품, 음료수, 가스, 위조지폐/동전, 해적판 동영상물·서적류, 무기, 폭발 물질, 마약 및 제조원료 등 사람의 생명, 보건, 공중도덕, 안보에 관련된 품목이 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자유수입명령(Free Import Order of 2008)의 특정 제품군(동식용육, 약품류, 목재, 다이아몬드, 스크랩(scrap), 자동차, 비행기 등)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허가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 수입허가는 품목에 따라 경제부, 농업부, 보건부, 환경부 등에서 발급된다. 일반적으로 수입허가 발급까지 약 10일이 소요된다.

수입금지품목

- Wine, spirits products and grape juice with incorrect geographical indications
- Matches made from white or yellow phosphorus
- Licentious or indecent films
- Currency note, bank notes or coins which are legal tender in any country or which have been at some time legal tender in any country, whether counterfeit or imitation
- Tickets or publicity items for lottery or gambling
- Sales invoice from that is a form or other paper which purports to be a form which is possible to fill in blank spaces so as to use it as a sales invoice for goods from foreign countries

- Used bags for packaging vegetable material
- Knives, cutlasses, spears and swords having a serrated point or sharp blade, except for knives which are of a kind for professional work or domestic use
- Disruptive instruments of laser special measuring meters
- Firearm resembling a pen, starting pistols, items activated by gas etc
- Nerve gas container resembling a gun
- Games of chance or part of them as defined in the Penal Code
- Goods of all types which carry a false commercial description as defined in the Consumer Protection Law of 1981
- Postal package containing live creatures such as vipers, explosives, inflammable materials and other dangerous packages.
- Used equipment for bee farming
- Goods that can be used as tools for preparing or consuming dangerous drugs as defined in the Dangerous Drug Order
- Goods that can be used to incite violence, terror or racism as defined in Chapter H of the Penal Code

출처: 이스라엘 경제부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가 많으며, 무역 상대국에 관한 제약이 있었다. 과거에는 약 30여개의 아랍 국가들과 외교관계가 없어 이스라엘 제품이 이들 국가로 수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9월 ‘아브라함 협정’ 이후 이스라엘은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 등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현재에도 다수 아랍 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 국가들과 관계 정상화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 국가로의 교역 역시 증가하고 있다.

화장품 수입규제

이스라엘은 2017년 경제계획(Economic Plan Law)을 통해 보건부가 인정한 국가(Recognized Country)에서 유통되는 화장품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화장품을 수입하려는 기업은 수입허가 신청 시 제품이 등록되어 유통되는 인정 국가의 보건관청에서 자유판매증명(Certificate of Free Sales : CFS)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이스라엘 보건부에서 용인하는 인정국가는 EU,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등 총36개국이며 한국은 현재 인정국가에서 제외되어 있음.

2021년 11월 새롭게 통과된 법안으로 인해, 2023년부터는 북미, 서유럽 등 선진국에서 발급받은 FDA 또는 CE 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수입허가 없이 이스라엘 내 수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잠정).

의약품 수입규제

이스라엘 약사규제(Pharmacist Regulations- Preparations- 1986)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수입되는 모든 의약품은 보건부 산하 기관인 제약관리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약관리부는 의약품 수입인증을 위해 제한된 수입 인정국(Recognized Country)를 지정하여, 해당국가에서 생산, 등록, 판매되는 의약품에 한해서 수입을 승인한다.

* 인정국가로는 EU,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이스라엘이며 한국은 현재 제약관리부에서 인정하는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어 있음.

수출통제

수출 금지 품목은 없으나, 일부 식품, 신선농산물,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유대교 문헌 등 일부 품목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수출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령(Free Export Order of 2008)의 제1부속서와 제3부속서에 수출통제가 되는 품목이 적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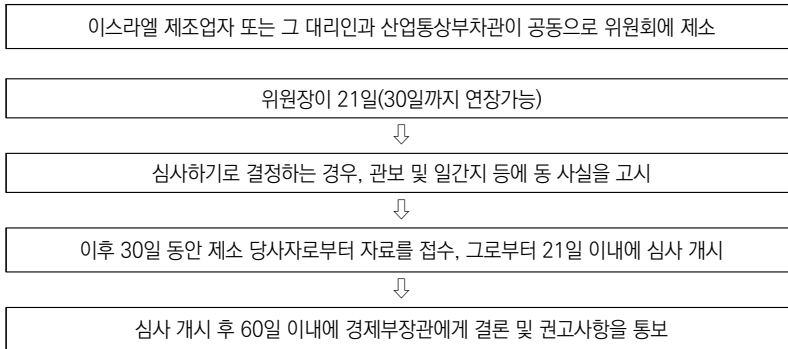
이스라엘은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rrangement) 가입국은 아니나, 군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품목(dual-use item)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부가 발행하는 특별수출허가를 취득해야 한다(2006년 8월 정부령). 특별수출허가 취득 대상품목은 바세나르 협약에 바탕하여 경제부가 작성하며,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또한 적성국 교역령(Ordinance on Trade with Enemy State)에 따라 이란, 레바논, 시리아에 대한 교역이 금지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이스라엘은 1991년 제정된 무역과세법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가 운영하며, 위원회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절차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라벨링 관련 장벽

이스라엘은 매우 엄격한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수입업자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스라엘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소비자보호법(The Consumer Protection Law)은 모든 소비재제품에 부착되어야 할 정보들을 규정하고 있다. 부착 정보는 제품명, 원산국, 생산자나 수입업자의 이름과 ID number, 주소, 제품의 중량, 상표(있을 경우) 그리고 원료 등이다. 2020년부터 이스라엘은 고설탕, 고염분, 고지방 가공식품에 ‘레드 라벨’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라벨은 히브리어로 표시

되어야 하며, 영어로 추가 표기할 경우에는 글자 크기가 히브리어 글자 크기보다 작아야 한다. 물품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표시내용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제품이나 원료가 유전적으로 변형될 경우에 적극적인 라벨링이 요구된다. 독극물, 살충제, 마약, 화기성 물질, 탄약, 폭발물, 파충류, 곤충, 박테리아, 방사능 물질과 같이 위험한 품목을 담은 용기는 명백하게 마킹하여야 한다.

표준, 검사

특정 수입품은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표준원(SII: Standards Institution of Israel)의 검사가 필수적인 데, 4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았다. 2022년 6월 발효된 표준개혁안 등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수입 관련 인증 절차가 크게 간소해졌다.

표준개혁안 발효 이전(~2022년 5월) 분류 및 통관 절차

1그룹	공중보건 또는 안전에 높은 수준의 위험을 미칠 수 있는 품목
	완구, 가전제품, 압력용기, 휴대용소화기 등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해서는 모든 해당 화물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함.
2그룹	공중보건 또는 안전에 중간 수준의 잠재적 위험을 미칠 수 있는 품목
	선글라스, 각종 밸브, 관 이음쇠(pipe fitting), 카펫, 지붕방수시트 등
	한 번 검사를 받은 후에는 수입업자가 그 후의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은 품목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신고하면 검사가 면제됨.
3그룹	공중보건 또는 안전에 낮은 수준의 내재적 위험을 미칠 수 있는 품목
	도제벽 타일 등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규격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수입업자가 신고할 필요가 있음.(수입자 기반 선언 기반)
4그룹	일반소비자용이 아닌 산업용 품목
	전기산업용 부품 등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한 별도의 증명 필요 없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안전규격을 자국의 안전규격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표준원은 최근에 유럽 표준화 위원회(CEN)와 유럽 전기기술 표준화 위원회(CENELEC)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스라엘의 표준화법(Standards Law of 1953)은 이스라엘 표준원이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 제조업자 대표 및 소비자 대표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스라엘 표준원이 제정하는 표준은 모두 임의표준이며,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수렴 및 관보 게재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를 이행이 의무화되는 강제표준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 이스라엘 표준원은 약 3,260여개의 표준을 공포하였는데 이중 550여개는 공식표준이며 200개가 강제표준이다. 2007년부터 표준원은 국제표준을 도입하였다.

이스라엘로 수입되는 제품(산업용 제외)은 환경, 보건, 안전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군(1그룹), 중위험군(2그룹), 저위험군(3그룹)으로 분류되어 통관을 거친다.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소비자 제품이 불필요하게 고위험군과 중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이스라엘 인증획득과 행정적 통관 절차에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표준개혁 발효로 중위험군까지 수입자 선언 기반의 통관 방식이 확대 적용된다. 더 나아가 통관그룹 분류까지도 개편해 고위험군 목록을 대폭 축소시켰다. 위험등급 분류를 재검토해 불필요하게 고위험군으로 지정된 품목을 중위험군이나 저위험군으로 재분류한 것이다. 그 결과, 기존에 고위험군에 속해 있던 품목의 절반 이상이 중·저위험군으로 변경돼 물품검사 없이 선언 기반의 신속한 통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스라엘 산업경제부는 해당 조치로 인해 전체 소비자용 수입품의 약 80%가 시험기관 테스트 면제 등의 수혜를 받고, 수입 비용도 연간 3조원 규모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표준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조치 중 하나로, 이스라엘 국가표준 인증 없이 국제표준에 따른 적합성인증으로 수입 통관이 가능한 경로가 신설됐다.(일명 ‘카시스 트랙’) 카시스 트랙 역시 물품 검사 없는 수입자 선언 기반의

통관이며, 중위험군(그룹2)과 저위험군(그룹3) 중 산업경제부가 정한 positive list에 포함된 표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시멘트, 조명, 건축 자재, 주방기구, 생활용품, 장난감, 산업 안전제품, 가전제품, 광학제품, 의료용품, 유모차와 같은 육아용품, 산업용 개인보호장비, 자전거와 같은 스포츠용품, 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수만 개의 제품이 카시스 트랙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정되는 국 제표준의 종류는 이스라엘 표준마다 다르게 지정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어떤 국제표준이 인정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이스라엘 산업경제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체 표준의 85%가 positive list에 포함됨.)

추가로, 고위험군(1그룹)의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국제표준을 인정하고, 외국 시험기관(ILAC 회원기관)에서 발급한 적합성 인증과 시험성적서도 수입신고 서류로 인정되는 등, 과거 대이스라엘 수출기업들이 겪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6월 표준개혁안 통과에 따른 변경사항 요약

분류	표준개혁 이전	표준개혁안 발효 이후
그룹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라엘 표준 적합 인증서 - 동일모델 확인서(매 선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라엘 표준 적합인증서와 더불어 일부 품목에 대해 ILAC 회원기관 발급 국제표준 적합인증서 - 시험성적서 제출을 추가로 인정(인정되는 국제표준 종류는 제품에 따라 상이) - 동일모델 확인서(매 선택 시)
그룹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라엘 표준 적합 인증서 - 동일모델 확인서(최초 선택 시) - 수입자의 적합성 선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스라엘 표준 트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의 적합성 선언 - 이스라엘 표준 적합인증서(필요 시) 2. 국제표준 트랙('카시스 트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 적합인증서 - 시험성적서 - 수입자의 적합성 선언 - 라벨링 의무 이행 선언(필요 시)
그룹 3	수입자의 적합성 선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스라엘 표준 트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의 적합성 선언 2. 국제표준 트랙(일명 '카시스 트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의 적합성 선언

이에 추가하여, 23년 1월부터는 유럽의 식품 수입규정 도입, 유럽의 화장품 수입규정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 이스라엘로의 수출 장벽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다만, 현재 행정준비 단계로 구체적인 시행 내용 조정 중. 실제 시행 시기 미정)

식품에 대한 코셔 인증서 취득문제

유대교 율법의 음식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른바 코셔(kosher) 인증서는 별도로 유대교 랍비(율법학자)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해외에 있는 외국기업이 이를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육류 및 육류제품의 경우 코셔 인증서가 없을 경우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코셔 인증서가 없는 육류의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하고 있어 외국산 육류에 대한 차별조치를 취하고 있다. 육류 및 육류제품을 제외한 음식물을 이스라엘로 수입할 때 코셔 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수요자들이(식품 소비자의 60%~70%) 코셔 인증서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상 반강제적인 성격이 있다.

통관 절차

통관 서류

이스라엘 통관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보험증권, 포장명세서, 수입 허가서, 원산지 증명서, 특별확인증 등이다.

- 선하증권: 환적 가능하고 도착지 내 에이전트명 및 연락처가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 포장명세서: 필수 서류는 아니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필요하다. 포장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상업 송장에 포장 내용을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상품은 가능하면 팔레트에 포장하거나 컨테이너에 적재하도록 되어 있다. 팔레트나 컨테이너 별 별도 패킹 리스트가 필요하다.

- 수입허가서: 약품류, 목재, 다이아몬드 등 수입허가서 취득이 의무인 품목의 경우 반드시 수입허가서를 사전 취득해야 한다.
- 원산지 증명서: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경우 예는 원산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나 한국은 아직까지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포장 박스, 상품포장 등에 Made in Korea를 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 특별확인증: 산 동물, 주류, 과일, 채소, 광물 합성제품 등 일부 품목에 해당된다.

수입 통관

이스라엘 항구에 도착한 화물은 관세청이 지정한 국가 보세창고나 기타 지역에 보관할 수 있다. 창고료는 10톤 이상의 상품 보관의 경우 10일까지 면제된다 (10톤 이하 30일).

관세청 통관 담당자에게 통관 신고만 하면, 환적 및 재수출 하역도 가능하며 90일 이내 재수출이 되어야 한다.

컨테이너 및 포장용 물품은 다음 항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임시 수입이 가능하다.

- 재수출이 돼야 한다.
- 외국인 공급자(수출자)의 소유물로 최종 귀착(사용료 지불 불문)
- 보관세 징수가 가능해야 한다.
- 12개월 이상 혹은 관세청 연장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없다. (담배원료, 항공 및 여객용 스토어 물품, 특권층이나 특수 집단에게 수여되는 물품→ 외화 낭비 제거 차원)
- 인화성, 폭발성분의 물품은 관세청이 특별 지정한 창고에 보관한다.
- 환적 및 임시 보관용 통관은 사전에 관세청, 통관 당국과 인증 은행의 외환 관리국에 통보해야 하며 하역료, 보험료, 항구세 등을 외화로 지불하지 않고는 재수출이 불가능 하다.

- 수입 시 선박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 상품 표시는 Printing, Engraving, Stamping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라벨 부착이 가능하다.
- 색깔을 달리하여 쉽게 구별 가능해야 하며 각 포장별 상품 표시를 해야 한다.
- Sub packages를 포함한 최종 포장지는 다음의 명세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 Sub packages의 개수와 내용물
 - 총 중량과 순 중량
 - 물품 특성상 중량 손실가능성에 대비 예상 최대치

통관시 유의사항

대 이스라엘 수출 시 유의할 사항은 선박이 이스라엘 항구 입항 전에 이집트와 요르단을 제외한 사우디, 예멘, 리비아 등의 아랍국 항구에 입항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을 목적지로 한 수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중개인을 통해야만 통관되므로, 통관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절충교역

경쟁입찰법(Mandatory Tenders Law, 1992)에 의거하여 공공기업이나 정부 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달은 반드시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공개입찰은 이스라엘에서 발행되는 2종의 신문에 입찰공고 시 게재되고, 정부조달 협정상의 입찰의 경우는 영자신문에도 관련 정보도 게재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WTO 정부조달협정 서명국이나, 국방부의 조달에 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정부조달협정은 절충교역(offset) 계약체결의 반대급부로서 현지 조달, 기술이전, 투자, 구상무역(counter-trade) 등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적

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이스라엘은 WTO 가입 교섭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절충 교역이 인정되었다.

이스라엘은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 조달의 경우, 계약금액의 35%(GPA 서명국일 경우 20%)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 아닌 조달로서 거래금액이 50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방산 물자는 계약금액의 50%, 비방산물자는 35%(GPA 서명국일 경우 28%)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절충교역은 경제부 산하 산업협력청(Industrial Cooperation Authority)이 관할하고 있는데, 외국 기업의 절충교역 의무이행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절충교역은 국제 협력계약을 통하여 이행되며, 동 계약에 따라 외국기업은 이스라엘의 정부조달 사업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이스라엘 산업에 대한 투자,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개발·공동생산,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하청 또는 이스라엘 기업으로부터의 구매의 방식으로 상쇄(offset)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정부조달 입찰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과의 거래가 많은 유럽이나 미국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절충교역 의무이행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나, 이스라엘과의 거래가 많지 않은 한국 기업의 경우 절충교역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자국기업 우대

이스라엘 국회는 1995년 정부의 이스라엘 제품 우대규정(Preference for Israeli Products and Mandatory Business Cooperation Regulation)을 승인한바, 동 규정에 따라 정부조달 입찰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스라엘 제품이 외국산 제품보다 응찰가격이 15% 이내 범위에서 높더라도 이스라엘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투자장려법(Law for the Encouragement of Capital Investment)상의 우선 지역(Priority Area)에 소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의 경우, 5~15%의 추가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이스라엘 제품 우대규정 적용요건

- WTO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 아닐 것
- 이스라엘산 부품 사용비율이 최소 35%일 것
- 가격이 355,000SDR 이하일 것

다수의 정부조달 입찰사업에서 이스라엘 발주처가 무한책임조항(unlimited liability clause)을 삽입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권(Patent)은 특허법(Patent Law of 1967)에 따라 보호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의약품의 경우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허 출원상황은 매월 발행되는 'Patents and Designs Journal'에 게재되며, 제3자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파리조약 가맹국이며, 1996년 6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도 가입하였다. 연평균 약 6,817개의 특허가 신청되며 그중 50% 이상이 등록된다. 특허 신청의 85% 이상이 외국인 신청이고 이스라엘인 신청은 15% 미만에 해당한다(출처 Israel Patent Office 발간자료).

의장권(Design Right)은 특허의장권령(Patent and Designs Ordinance)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 물건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기간은 5년이지만 5년 단위로 최장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연평균 약 1,866개의 신규 의장권이 신청되며 그중 75% 이상이 등록된다(출처 Israel Patent Office 발간자료).

상표권(Trademarks)은 상표권령(Trademarks Ordinance of 1972) 및 상표권규칙(Trademarks Rules of 1983)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7년이며,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한 1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연평균 약 9,474개의 신규 상표권이 신청되며 그중 80% 이상이 등록된다(출처 Israel Patent Office 발간자료)

저작권(Copyright)은 영국통치시대의 저작권령(Copyright Ordinance of

1924) 외에 저작권명령(Copyright Order of 1953)에 따라 보호되었으나, 2007년에 저작권법(Copyright Law of 2007)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후 2011년 7월 28일 개정된 바 있다. 보호기간은 음악 및 예술품의 제작일로부터 50년, 여타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한 후 70년까지다.

투자 장벽

투자 환경

이스라엘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국가 안보 영역의 산업과 일부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외국의 투자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다. 특히 기업의 인수, 합병, 강제매수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나 여과장치가 없다. 외국인 투자자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민영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이나 보험과 같은 규제 산업에 대한 투자는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특정 부문은 정부의 면허가 필요하다. 또한 통상 국가 간 조약에 기초하여 다른 규제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스라엘 재정부는 'Invest in Israel' 부서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 관련 규정 변동을 수시 업데이트하고 있다. (<https://investinisrael.gov.il/>)

외국인 투자 장려책

이스라엘 정부는 1959년 제정된 자본투자장려법(Law for the Encouragement of Capital Investment, 5719~1959)에 따라 인가한 투자안전에 대하여 경제부 투자센터가 제공하는 투자보조금 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제세감면의 투자우대조치를 제공함으로써 국내투자 촉진과 외자도입을 도모하고 있다. 투자우대조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부 투자센터(Israel Investment Center)를 통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동 센터는 이스라엘의 발전된 인프라, 고학력이 근로인력, 개방 경제, 미국 및 유럽과의 유대 등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에서 이용 가능한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안전의 인가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고부가가치 여부, 최소투자액 충족 여부, 이스라엘에서의 회사등록 등이다.

상기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이 된 투자기업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투자보조금 혜택에 중점을 둘 경우, 투자센터로부터 인가기업(Approved Enterprise) 자격을 받고, 제세감면 혜택에 중점을 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선호기업(Preferred Enterprise) 자격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 정부의 투자우대조치 내용은 투자대상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을 우대지역과 그외 지역, 두 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투자 및 개발 촉진의 필요성 정도에 따라 투자우대조치 내용에 차등을 두고 있다

※ 투자우대지역: 갈릴리 지역 북부, 요르단 계곡, 네게브 지역, 예루살렘(하이테크 기업만 해당)

세금혜택은 보조금 수령 여부, 투자지역, 외국인 투자비율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최소 30만 셰켈을 투자우대지역에 투자하면서 보조금 수령 권한을 포기 하는 것을 선택할 경우에는 법인세의 투자지역구분에 따라 2년에서 10년까지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비율 높을수록 세금 감면 비율이 크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비율이 90% 이상 되는 기업의 경우 7년간 23.5%의 세금만 부담한다.(일반 비인가기업의 경우 50.5% 부담)

투자 분쟁 조정

분쟁 조정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은 수정된 영국 회사법(1948년)에 기초하여 문서화되고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상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법은 기업의 파산이나 청산을 규율하는 표준규정을 두고 있다. 개인 파산은 별도의 파산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화폐와 관련된 재판은 항상 현지화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가 간의 투자 분쟁에 대한 국제적 중재의 구속력을 존중한다. 이스라엘은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와 외국중재 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관한 1958년 뉴욕협약의 회원국이다.

이스라엘에는 투자성과에 대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은 없으나 국가와의 구매계약에는 투자요건을 포함한 성과요건이 종종 포함되어 있다. 부문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국민이 기업의 일정 부분을 소유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이

있다. 이스라엘에서 비자와 거주 조건은 다소 까다로운 측면이 있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수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이스라엘은 TRIMS(무역관련투자조치)를 따른다.

외국인 토지거래

이스라엘 토지의 10%만 사유지이며 나머지 90%는 이스라엘 토지청(Israeli Land Administration)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토지의 경우 매매가 아닌 장기임대 방식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다.

외국인 회사는 국내인과 동일하게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토지를 매입하기 전 이스라엘 토지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업

외국은행이 이스라엘에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스라엘 은행법 5741-1981에 따르면 국내의 은행을 불문하고 은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자본 1천만 NIS(약 270만달러)이어야 한다.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와 은행허가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① 허가신청자의 사업계획, ② 주주와 이사회원의 적절성, ③ 이스라엘 정부의 경제정책, ④ 공익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은행이 이스라엘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외국은행의 이스라엘 진출을 위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

- 母銀行이 설립할 은행의 업무 및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고도의 능력 및 시스템을 갖출 것
- 母銀行이 거래액, 안정도, 경영, 평가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리고 있을 것
- 母銀行이 있는 국가가 자국 내에 이스라엘 은행의 지점 설립을 인정하고 있을 것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은행 소유자의 국적은 불문하나, 경영 현지화에 관한 기준이 있다. 그 주요내용은 이사의 2/3가 이스라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CEO는 항구적인 이스라엘 거주자일 것 등이다.

이스라엘은 상업은행 Bank Hapoalim, Bank Leumi 등 16개가 영업 중이며,

외국계 은행으로는 Barclays, BNP Paribas, Citibank, HSBC, State Bank of India 등 총4개 은행이 지점을 개설하고 있다.

보험업

이스라엘은 1981년에 제정한 보험법(Insurance Law)으로 외국기업의 보험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보험회사를 설립한 외국기업은 자본을 해외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내에 투자해야 한다.

1998년에 제정된 보험거래규제(Insurance Transaction Regulation)는 보험 회사의 최저자본액을 생명보험 3,500만세켈, 일반보험(손해보험) 4,000만세켈, 생명·손해보험 6,000만세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광업

이스라엘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의 호텔이나 여행사는 이스라엘 정부에 등록해야만 한다. 또한, 여행사는 이스라엘 정부가 공인한 여행에 관한 전문가를 최소 1명 이상 고용해야만 한다.

출자비율 제한

이스라엘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단, 군수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통신 분야에서는 외국인 지분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자본 거래

이스라엘은 1993년 외화교환규제를 폐지하였으며, 1998년에는 준비기금, 보험 및 연금기금에 의한 외화자본거래 그리고 비거주자와의 거래를 제외한 모든 자본거래규제를 철폐하였다. 나아가 2000년 10월에는 보험회사나 연금 기금도 외화나 외국자산(외국 부동산 및 증권 포함)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비거주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비거주자가 이스라엘에 30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제도 철폐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완화에 따라 외화자본거래는 마지막 규제가 폐지된 2003년 1월 1일에 완료되었다. 이로써 외환 통제는 완전히 폐지되었고 이스라엘 셰켈(Shekel)은 자유롭게 환전가능한 통화가 되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외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스라엘 기업이나 증권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Shekel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이 Shekel 계좌를 외환으로 교환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대부분의 거래는 승인받은 외환딜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승인받은 외환 딜러란 고객을 위해 외환거래를 주선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승인받은 외환딜러는 대규모 외환거래를 외환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윤, 부채 서비스 및 자본이득의 송금에 특별한 제한이나 심각한 지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정부는 2000년 6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의 금융활동작업반 FATA: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이 이스라엘을 돈세탁·부정 방지 비협조국 명단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2000년 8월 돈세탁방지법(Prohibition on Money Laundering Law, 5760-2000)을 국회에서 가결시켜 돈세탁 및 부정 방지를 위한 국제협조체제에 협력하게 되었다. 동법에 따라 2002년 2월 17일부터 출입국자는 출입국시의 자금이동을 아래 기준에 따라 세관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2002년 6월 이스라엘은 OECD의 돈세탁·부정 방지 비협조국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나, 동 신고의무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 이스라엘 출입국시 자금이동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자

- 총 5만셰켈을 초과하는 자금(현금, 은행수표, 여행자수표, 양도성 증권, 무기명 채권, 재충전카드)을 소지하고 있는 자
- ※ △Nitanza 국경, △Taba 국경, △Jordan River 국경, △Yitzhak Rabin 국경, △가자 지구로 연결되는 모든 국경의 국경 검문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1만 2천 셰켈 이상의 자금을 소지할시 신고해야 함.

또한, 시중은행이 아래의 거래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법무부 산하 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방지청(Israel Money Laundering and Terror Financing Prohibition Authority)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 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방지청에 대한 의무적 신고대상

- 5만세켈을 초과하는 외화교환
- 해외로부터 이스라엘로의 100만세켈을 초과하는 송금
- 이스라엘에서 해외로의 100만세켈을 초과하는 송금
- 기타 의심스러운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기타 장벽

외국인의 취업에 대한 규제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취업비자 종류는 단 하나로 (B1) 비자로 불린다. 취업비자 발급 해당 업종으로는 건설업, 농업, 요식업(요리사 자격증 소유자), 전문가(대학 교수 또는 강사, 다국적기업 대표 또는 이사, 연구소 연구원, 의학 전문가 등), 간병이다. 건설, 농업, 요식 간병 업종의 경우 이스라엘 자국민 취업 비중이 낮은 업종으로 분야의 해외 인력을 채우려는 목적에 따라 비자 발급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는 기업은 외국인 전문가에게 최소한 8천 세켈을 월급으로 지불해야 한다. 단,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규정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 관계자, 보건부가 지정하는 의료 관계자, 예술가, 운동선수, 이스라엘 평균 월급(2020년 USD 3539, 출처: 이스라엘 통계청)의 2배 이상을 받는 급여 취득자, 이스라엘에서는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는 특수한 전문분야 종사자, 외국 기업의 매니저 또는 대표자, 언론 관계자, 외국정부기관 관계자, 외국항공사 관계자, 3개월 미만 체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체류허가 및 발급절차

이스라엘에서 노동을 하면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고용주가 내무부 산하기관인 Population and Immigration Authority에서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취업허가 취득 후 비자 발급 요청을 신청하게 된다. 취업허가에서 비자 발급까지 통상적으로 3개월 가량 소요된다. 취업비자의 유효기간은 보통 1년이 부여되며, 최장 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취업비자 신청절차는 신규 및 갱신 모두 관련 서류가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고, 절차가 번잡하면서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이용하여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외국인 전문 인력을 채용한 고용주는 취업 허가 신청 시 수수료로 1인당 1,190세켈을 지불해야 하며, 매년 비자 신청비용 9,500세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 고용을 위한 비자취득 절차 및 비용은 고용주 부담이기 때문에 자국민 노동력이 다소 낮은 업종 또는 특별한 전문성을 지닌 외국인을 제외한 일반 채용의 경우 비용 및 소요기간을 고려해 자국민 고용을 선호한다.

2007년 2월 15일부로 이스라엘 정부는 매니저급 직원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자와 외국인 전문가에 대해서는 취업사증 갱신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정당한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1년 징역 또는 11만 세켈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⁷¹⁾

개요 및 주요내용

2016년 5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3년간 6차례 공식 협상 등을 거치면서 2019년 8월, 협정문 모든 챕터를 합의 하였다. 우리나라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에 합의하였다. 우리의 대(對)이스라엘 수출액

71) 2019년 8월 22일 산업부 보도자료 참조

중 약 97.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이 포함된다. 다만, 2022년 12월 발효시점 기준, 이스라엘 정부는 물가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자동차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및 대부분의 가전에 대한 관세를 이미 폐지한 상태이다. 또한, 대(對)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금액 중 25.4%의 관세가 3년 이내 철폐되며,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 수입금액 중 13.0%의 경우도 3년 이내 철폐됨에 따라, 반도체·전자·통신 등의 분야에서 장비 관련 수입선 다변화가 기대된다. 반면, 민감한 일부 농·수·축산 품목은 기존의 관세가 유지되며, 이스라엘 관심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철폐), 복합비료(6.5%, 5년) 등은 우리측 민감성을 최대한 감안하여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였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하여 세계무역기구 서비스협정(GATS) 이상 수준의 개방을 상호 약속하였으며,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BIT, '03년 발효)을 대체하는 투자 보호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스라엘의 유통·문화콘텐츠 서비스 등을 추가 개방하고, 투자보호범위는 설립 전 단계까지 포함하여 기존 투자보장협정을 개선하였다. 특히, 이스라엘 내 우리 주재원 입국 관련 서류(고용허가·근로면허·비자)의 최초 유효기간(현 1년)과 최대 체류기간 연장(현 63개월) 등을 반영하였다. 현재 최초 고용허가는 1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매년 연장해야 했으나, FTA를 통해 최초 고용허가 시 2년을 부여토록 하여 연장 부담 완화되었다. 최대 체류기간도 63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반영하였다.

원산지, 경쟁, 정부조달 등의 챕터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특히, 원산지는 기업편의를 위해 단순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챕터별 공통원칙)을 도입 및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 허용(OPZ위원회 방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한-이스라엘 FTA를 통해 이스라엘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같이, 영화, 음악

등의 한류 콘텐츠 보호 및 산업재산권 보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확보하였다.

항공, 보건/의약, 가상현실, 빅데이터(Big Data), 재생에너지,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 인공지능(AI),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 확대 한다는 내용도 이번 FTA의 기술협력 분야에 포함되었다. 특히, 양측 간 공동 연구 및 기술이전, 연구인력 교류, 법제도·지재권 등에 대한 정보 교류, 학술 및 교육·훈련 행사 개최, 공동 사업화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국제연합(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이 '67년 이후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등 동 FTA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한-이스라엘 FTA의 의의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의 핵심 국가 중 하나인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하여 이스라엘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이스라엘은 미국('85.8월), EFTA('93.1월), 캐나다('97.1월), 튀르키예('97.5월), EU('00.6월), 멕시코('00.7월), 메르코수르('09.12월)와 FTA 발효 중이며, 요르단·이집트와는 QIZ(Qualified Industrial Zone, 관세 및 쿠틀면제 지역) 협정 체결한 바 있다. 양국은 아시아와 중동의 대표적인 자유무역주의 국가로서 폭넓은 시장 자유화(수입액 기준 상품 자유화율 : 우리 측 99.9%, 이 측 100%)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교역 확대 기대된다. (품목수 기준 자유화율 : 우리 측 95.2%, 이 측 95.1%)

양국 간 FTA는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신재생에너지·항공우주 등 다양한 미래산업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 측면에서 세계 1위를 다투는 국가로서, 한국의 제조업 기반과 이스라엘의 첨단기술이 협력하여 상호 윈-윈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GDP 대비 R&D 투자(OECD) : ('16년) 1위 이스라엘(4.25%) / 2위 한국(4.23%), ('17년) 1위 한국(4.55%) / 2위 이스라엘(4.54%)) 특히,

양국은 한-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개발기금(KOR-IL RDF)을 현행 대비 2배 증액(200만불/년→400만불/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 기업의 산업기술 공동 연구개발(R&D)을 보다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01년 설립된 한-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개발기금은 그간 양국 공동으로 6,500만불을 투자하여 총 181건의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개발, 해외진출, 투자유치, 신사업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이 외에도 '17년 '차세대 수직이륙 무인기'를 개발한 (주)한국카본과 이스라엘 IAI사는 공동 연구개발 결과물을 토대로 사업화 및 제3국 진출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작년 8월 한국항공기술(Korea Aviation Technology) 설립에 합작 투자하는 등 양국간 성공적인 국제협력 사례들이 도출되고 있다. 금번 기금 증액은 인공지능·빅데이터·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 신소재, 재생 에너지 등 첨단 분야에 대한 양국의 연구개발 투자를 가속화하고, 협력의 양상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이스라엘 FTA는 자유무역의 효과가 골고루 확산하는 “혁신적 통상 모델”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1인당 정보기술(IT)기업 창업 수가 높은 창업국가이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독자적 생태계 조성에 성공한 나라로 기술창업을 꿈꾸는 한국의 창업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창업/스타트업에 강점이 있는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FTA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FTA 발효

양국은 2021년 5월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의 정식 서명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에는 이스라엘 비준이 완료, 2022년 9월에는 한국에서 비준이 완료되면서, 2022년 12월 1일부로 발효된다.

코로나19 이후 이스라엘 경제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영역에 걸

쳐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다. 2020년 경제성장률은 -2.4%를 기록하며 마이너스성장에 머물렀고, 2020년 가계소비는 전년대비 9.4% 감소했다. 이스라엘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전국적 봉쇄조치를 시행하여 슈퍼마켓, 병원 등 필수시설 외 대부분의 상업시설 영업을 금지하였고, 외국인의 원칙적 입국금지와 공항 폐쇄 조치까지 단행하면서 관광, 숙박, 요식 업계 등이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2020년 10월 실업률은 18%까지 고조되는 등 실업문제가 이스라엘 경제의 핵심문제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2021년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3차 접종(부스터샷)을 시작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연중 일일 확진자가 1만명이 초과하기도 하였으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며 일일평균 1천명 이내로 안정세를 되찾았다. 22년에는 대부분의 일상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왔고, 관광, 서비스업 등 코로나로 인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업종까지도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 22년 실질성장률은 약 5%로 예상되며, 23년 역시 약 4%로 완만한 경제성장이 전망된다.



이집트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이집트 정세

역사적으로 중동지역의 선도국 중 하나였던 이집트는 1952년 공화정 출범이후 장기간 군부인사의 집권하에 있었다. 2010년 말 튀니지의 민주화 운동으로 촉발된 중동 민주화 바람은 이집트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당시 이집트 국민들은 무바라크 대통령의 30년 독재 아래에서 가난과 실업, 빈부격차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2011년 1월 25일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고 2월 11일 무바라크 대통령이 전격 사퇴하였다.

무바라크 퇴진 이후 정권을 위임 받은 군부는 2012년 5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고, 이슬람교 기반 야권 세력이던 무슬림형제단의 후보였던 호스니 무르시가 51.7%의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실질적인 첫 민선 대통령으로 정통성을 보유한 무르시는 충분한 수권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사실상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군부는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다. 결국 무슬림 형제단의 지지에 기초한 무르시 대통령은 권한 강화를 위한 ‘신헌법’을 제정, 2012년 12월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함으로써 실권을 가진 대통령이 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러나 무르시 정권하에서 이슬람 세력이 신헌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무슬림형제단원들이 주요 정부 요직에 임명되어 이슬람 정책을 추진하는 데다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후 2년이 넘도록 계속된 외환보유고 감소, 실업률 증가, 재정적자 심화, 전력 및 연료 부족 등의 경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자 결국 민심은 무르시 대통령을 뒤로 하게 된다.

반(反) 무르시, 반(反) 무슬림형제단 정서가 고조되면서 야당과 이집트 국민들은 무르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13년 6월 30일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 군부는 무르시 대통령의 사임을 압박하다가 같은 해 7월 3일 결국 무르시 대통령을 강제 축출하게 된다. 이에 반발한 무르시 지지자들의 항의 시위가 시작되었고 이는 반 무르시(세속주의) 세력과 친 무르시(무슬림형제단)간 유혈 충돌로 비화되었다. 양세력간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군부는 2013년 8월 14일부터 나흘간 친 무르시 시위대를 강제진압 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식 집계로만 8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무르시 대통령 축출 후 군부는 아들리 만수르 헌법재판소장을 임시 대통령을 내세워 국정을 운영하면서, 정치 로드맵 3단계(개헌-대선-총선)에 따라 2014년 1월 개헌, 2014년 5월 대선을 실시하여 무르시 정권하에서 국방장관이었던 압델 파타 알시시를 9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된다.

2014년 6월 알시시 정부는 과거 이집트혁명 과정에서 발생한 유혈 사태의 상처를 봉합하고, 군부 및 세속주의 세력,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무슬림 형제단 및 이슬람 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출범하였다. 또한 테러단체로 지정되어 불법단체가 된 무슬림형제단이 무르시 전 대통령의 정통성과 복권을 주장하며 일부는 극단세력화됨에 따라 대테러 역시 신정부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였다.

알시시 대통령은 집권 이후 시나이 반도 대테러 작전 등을 통하여 이집트 내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중동지역 현안들에 대한 이집트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하여 이집트의 대내외 정치적 안정 회복에 주력하였다. 또한 2016년 11월에는 이집트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외환부족, 재정적자 가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IMF로부터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12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변동환율제 시행, 각종 보조금 삭감, 부가가치세 도입과 같은 과감한 경제 개혁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알시시 대통령 집권 하 이집트는 2011년 아랍의 봄 혁명을 겪은 국가 중

유일하게 안정을 되찾았으며, 알시시 대통령은 2018년 3월 실시된 대선에서 97%의 득표율(투표율 41.05%)로 재선에 성공한다. 재선에 성공한 알시시 대통령은 안정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업고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 연임 허용,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였으며, 수차례의 공청회 등 논의를 거쳐, 2019년 4월 개헌안에 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개헌안은 88.83%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하였다.

2019년 9월 스페인으로 망명한 이집트인 건설업자 무함마드 알리의 선동으로 이집트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 반정부 시위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처와 시민들의 참여 저조로 인해 시위는 별다른 충돌이나 희생자 없이 종료되었으며 이후 더이상 확대되지 않았다.

이후 이집트 정부는 반대여론을 더욱 강력히 통제해 나가는 가운데, C형 간염 퇴치, 연금제도 개편, 저소득층 보호제도 강화 등 교육, 보건, 사회분야 개혁에 박차를 가하며 사회 안정 유지에 힘쓰고 있다. 이집트 거시경제 역시 안정을 이루며 5%를 상회하는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이집트 내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거나 특별한 정국 불안 요소가 없는 한 당분간 이러한 안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진자 최초 발생 이후 2021년 10월까지 이집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는 총 336,000여명, 일일 확진자수는 900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 2022년 7월까지 전체 인구의 약 45.5%가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 이집트 역시 관광 부문에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2019~2020년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IMF는 2020~2021년 이집트 경제성장률이 약 5.2%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한바 있다. 다만 2022년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악재가 겹쳐 IMF는 이집트의 2023년 경제성장률을 4.4로 하향조정 하였다.

신규 통관시스템

이집트 정부는 신규통관법 제 207조 39항에 따라, 통관절차를 디지털플랫폼상에서 진행하는 신규통관시스템(ACI, Advanced Cargo Information)을 2021년 10월 1일자로 공식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치는 이집트 통관 안보와 관세 징수를 재고를 위한 조치로 수출업체와 수입업체가 각자의 디지털플랫폼에 계정을 생성하여 이집트발 수출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이후 각 선적에 대해 ACID라는 고유 통관번호가 발급되어, 이집트 세관은 해당 번호를 기반으로 글로벌 통관흐름을 디지털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4월부터 시범운행을 거치면서 2021년 7월 1일로 정해진 최초 정식운영 기간에서 한 차례 연기되어 2021년 10월 1일자로 이집트항으로 출발하는 선박에 대해 ACI를 통한 통관절차 진행이 의무화 되었다.

2023년 1월부터는 기존의 해상화물에만 적용되던 ACI가 항공화물로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이집트의 관세율 조정은 일정 계획보다는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에 따라 품목별로 조정하는 형태를 주로 취하고 있으며, 이집트는 시장개방정책과 WTO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 개방 폭을 확대하면서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자동차, 주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1992년 최고 관세율이 100%였으나 1993년에는 80%, 1994년 70%, 1996년 55%, 1997년 50%, 1998년 43%로 점진적으로 인하하였으며, 2003년 3월에는 공업원료, 생필품 및 일부전자제품, 디지털위성방송 수신기 등 23개 품목에 대해 2~30% 범위로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였다. 중간 생산재 및 산업설비의 경우 수입규제를 완화하고 최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04년 7월 출범, 경제개혁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Nazif 총리 내각은 2004년 9월 6,500개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파격적으로 평균 40% 인하한데 이어 2007년 2월 1,114개 품목의 관세를 25% 인하, 2008년 4월 급등하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주요 생필품과 가정용 가전제품, 의료용품 및 중간재 11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2~30% 인하하였다. 또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성장 촉진 및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으로 2009년 1월 중간재 및 자본재 25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기존 5~10%에서 0~5%대로 인하를 단행하였다.

이집트 정부의 지속적인 관세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40~135%), 화장품과 위스키(최고 3,000%)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40% 이상의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2013년 3월 이집트 정부는 썬글라스, 시계, 비디오게임기, 해산물, 선박 등 100개의 사치 품목에 대해 5~40%의 관세 인상을 취하였다.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심 악화를 우려해 이집트 정부는 관세인상 대상 품목을 이집트 일반 시민에게 필요하지 않는 비필수수입품목으로 한정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수입억제를 통한 무역적자 개선 및 자국 제조업 육성 목적으로 2016년 1월에는 대통령령(No.25, 2016)으로 소비재를 중심으로 관세를 종전 10~30%에서 20~40%로 일괄 인상하였다. 2018년 9월에는 대통령령(No.419, 2018)으로 전체 관세 부과 항목 중 약 40%인 5,791개 항목에 대해 관세율을 조정하였다. 원자재, 자본재 및 식품,약품 등 기초소비재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완제품과 공산품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관세율이 인상되었다.

이집트 관세율은 국내시장 규모 및 산업구조가 비슷한 타 개도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집트는 2020년 9월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최종부품에 사용되는 현지부품 사용비율(local component)에 따라 수입부품 관세 할인율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하였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이집트 투자청(GAFI)에 의하면, 이집트의 총 수입통관 절차 소요기간은 알렉산드리아, 다미에타, 포트사이드 항 14일, 아인소크나 항이 16일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항구들이 평균 24일 및 OECD 가입국가들의 평균 10일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우수한 편으로 평가된다.

이집트 세관 당국은 관세가액 평가 시 송장에 기재된 CIF 가격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과세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송장가격보다 10~30% 정도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집트는 세계관세기구(WCO) 및 WTO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관세과세가격 산출시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제9조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식품 등 대부분의 수입 통관 시 품질조사 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통일된 통관 검사 규정의 미비로 일선 행정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한편, 바이어 평가, 상담용, 전시회 등으로 수입되는 견본품의 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상당 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사원 이삿짐 반입시 상품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자의적인 판정을 남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2009년 6월부터 이집트 세관이 원산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정의 변화는 없으나 규정의 집행이 엄격해진 분야는 △Double Origin의 경우 수입 불가,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등이다. 다만, 2021년 ACI 도입에 따라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원산지증명서의 이집트대사관 공증 절차를 폐지했다. 중국에서 선적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2009년 2월 이집트-중국 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중국내에서 선적 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및 관련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이집트 관계 당국(Egyptian Customs Authority 및 General Organization for Export and Import Control)은 중국 공산품의 이집트 수출 시 Pre-shipment Inspection을 규정한 이집트-중국 간 협정 외에는 통관 관련 변경된 규정은 없고, 원산지 관련 규정도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밝히고 있다.

Double Origin 문제는 원산지 규정상의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집트 원산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품 표면, 선적서류, 원산지 증명서의 원산지가 모두 동일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이 가운데 불일치한 사례가 있으면 Double Origin을 사유로 원칙적으로 통관이 불가하다.

한국에서 선적된 제품의 일부 부품에 타국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부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국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

한편 중계 무역의 경우 그리고 부품 중 일부를 주변국에서 아웃 소싱하는 경우는 Double Origin에 해당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그 동안 Double Origin을 세관에서 지적한 사례는 있었으나, 대부분 현지 수입업체와 세관간의 협상을 통해 큰 문제없이 물건이 통관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건 중 일부부품에 표기된 타국 원산지 표기를 수작업으로 삭제하고 통관한 사례도 있음). 그러나 최근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상의 여지가 없고 ship back이나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원칙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는 주한 이집트 대사관의 인증이 들어간 원본의 제출이 필요하나 그간 사본으로도 통관에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원본 및 대사관 인증이 없는 경우 통관 보류 및 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주한이집트대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쳐야 한다. 특히 이집트 세관당국은 원산지증명서 분실로 인해 당사자에게 다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비용으로 몇 부를 더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신용장 개설 통제

현재로서는 신용장 개설에 관해 정부나 중앙은행의 규제가 없다. 따라서 각 은행은 신용장 개설 의뢰자의 신용을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외환보유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입액의 120% 상당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수입규제

이집트는 1986년 7월 210개의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한 이래 수입금지 품목을 계속 축소하면서 관세율 인하와 함께 수입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질적인 외환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무역적자 해소차원에서 각종 수입억제책이 발표/시행되고 있다. 예를들어 이집트 정부는 2016년부터 모든 수입건에 대한 대금결제시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수입대금의 100% 은행예치, 선적서류의 은행간 송부 의무화, 자국내 제조기반이 있는 소비재 31개 품목에 대한 공장등록제, 수입을 담당하는 회사의 지분 중 51% 이상이 이집트인의 것이어야 한다는 수입업자 등록법(Importer's register Law No.7/2017)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집트는 수출입관리법(Import and Export Law No.118/1975)이 명시하고 있는 수입규제 및 관리품목에 따라 가금류 등 아래 9개 품목에 대한 수입이 금지 되었으며, 101개 품목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 중고 제품의 경우 별도로 수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아래 13개 품목 이외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수입 금지 9개 품목

1. 이슬람 신념에 반하는 디자인이나 상표가 부착된 제품
2. 닭고기 내장 및 다리
3. 가금류 내장
4. Oil Injection 펌프를 장착하지 않은 Two stroke Motor-bike

5. 모든 종류의 석면
6. 석면으로 제작된 브레이크 패드
7. 유전자 조작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참치
8. DDT등 127개 종류의 화학제
 - 농업용 살충제 및 살균제는 농업부 장관 허가를 받은 후 수입 가능
 - 수입금지 살충제 및 화학제 내역은 별도 리스트로 관리
9. 중고 제품
 - 수입가능 중고제품은 별도 리스트로 관리하고 있으며 총 14개 품목 군은 수입 가능

수입가능 중고 품목

1. 중고 생산 라인, 기계 및 부품
 - 가정용 중고 전자제품 및 부품은 수입 불가
 - 컴퓨터 및 부품은 제조 후 10년 이내의 제품만 수입 가능
 - 환자용 침대를 포함한 의료용 기계, 장비는 보건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입 가능
 - 제조과정에서 오존층 파괴 물질이 사용되지 않는 품목이어야 함.
2. 차량 및 부품
 - 중고 오토바이는 수입금지
 - 차량 부품은 특정품목만 제한적 수입가능 : Fenders, doors, engines, gearboxes, body parts, damper, differentials, rims, dashboard, springs
 - 승용차: 제조 후 1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9톤 이하 화물차: 제조 후 1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9톤 초과 화물차: 제조 후 5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특수목적용 차량: 제조 후 5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Road Tractor: 제조 후 7년 이내 제품만 수입 가능
-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차량, 크레인 차량, 콘크리트 펌프 차량은 차령에 관계없이 수입 가능
- 항공기 및 부품은 민간 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의 허가 필요
- 어업용 선박은 교통부 장관의 허가 필요
- 관광·화물용 선박은 교통부 등 주무 장관의 허가 필요

3. 기계, 장비, 스포츠 장비

4. 컨테이너

5. 무기류

- 내무부 장관 허가 필요

6.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

- 이집트 공군이 구입하는 경우만 허용

7. 철로용 Metal 스크랩 및 폐기물

- 철도 차량용 부품에 포함 불가능
- 통관 전에 사용할 예정인 철로가 철거되어야 함.
- 수출 당국으로부터 내용물의 위험성이 없다는 내용의 공식 인증 필요

8. 합성 플라스틱 폐기물, 스크랩

- 환경부로부터 허가 필요

9.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자재 및 제품

- 투자청(General Authority for Investment)의 허가 필요

10. 폐지 및 폐잡지

- Ministry of Information의 허가 필요

11. 섬유를 사용한 밧줄 및 넝마

- Industrial Control Authority의 허가를 필요

12. 예술품

- 문화부 허가 필요

13. 금속 및 목재 기둥 및 지지대

- 이집트 기업의 건설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경우만 가능

14. 전기차

- 2018년 3월 산업부 장관령으로 허용

품질 검사 대상 품목 현황

의약품 및 의료기기, 화장품 등은 별도의 수입승인과 더불어 까다로운 성분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일부 전기, 기계제품의 경우에도 국제공인 인증 규격이나 품질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품질 검사 대상 품목은 총 101개 품목으로 수출입관리기관인 GOEIC의 검사와 검사 수수료를 납부한 후 통관이 가능하다. 의료기기의 경우 CE 인증 및 FSC(Free Sales Certificate) 또는 FDA 인증이 없는 경우 수출이 어려우므로 이집트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이집트 정부는 WTO 무역 체제하에서 외국의 불공정한 수출 관행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선진국의 반덤핑 제재 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덤핑 제재조치법(1998년 6월 11일 발효)을 시행 중이다. 동 법은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불법 수입된 덤핑 상품 및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수출 보조금을 받아 유입되는 상품에 대해 이집트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동 법 집행기관으로서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산하에 반덤핑, 보조금 및 세이프가드 국을 두고 있다. 이집트 기업이 신고하면 우선 조사 개시 여부를 판정하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피 제소업체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자료 검토 후 해당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제재 여부가 판정된다.

동 반덤핑 제재법은 주로 직물, 설탕, 제지, 철강산업 등 분야에서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주요 대상국은 EU, 중국, 브라질(설탕 수입), 인도, 사우디, 리비아, 우크라이나(철강 수입) 등이다. 동 반덤핑제재법의 시행에 따라 금호, 우성, 한국타이어 등 우리나라 타이어 수출업체 제품과 일본 및 EU산 타이어 또한 제소를 당해 1999년 10월 업체별로 덤핑마진 최종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07년에는 한국산 화학제품(D.O.P) 제품이 반덤핑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07년부터 무차별적인 중국 상품의 유입을 겨냥하여 이에 대한 규제 움직임과 함께 동유럽,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등의 저가 철근, 전구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산의 경우 소비자 보호와 자국 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수입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0년 10월 한국타이어 및 우성 타이어(현 넥센)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결되었고 2012년 7월 3일부로 DOP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도 종결되었다. 2020년 11월 기준 현재 이집트의 우리기업에 대한 수입규제는 전체 3건(반덤핑 1건, 세이프가드 2건)으로, 한국산 프탈산디옥틸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건축용 반가공 철강재 및 강철봉은 세이프가드 규제중이며 알루미늄 원재료는 조사 중에 있다. 이집트의 대세계 수입규제는 11개국 15개 품목에 대해 15건(세이프가드가 2건(조사 중 1건), 반덤핑이 13건(조사 중 3건)이 규제 중)의 조치가 시행중이다.

2022년 6월 기준, 이집트의 우리기업에 대한 수입규제는 전체 3건(반덤핑 1건, 세이프가드 2건)으로 2021년 4월 15일자로 알루미늄 원재료 세이프가드 부과 최종 결정되었다. 이집트의 대세계 수입규제는 10개국 17개 품목에 대해 26건(세이프가드가 2건, 반덤핑이 24건이 규제 중)의 조치가 시행중이다.

이집트는 많은 수입품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2014년 12월 기준 검사대상은 101개 품목으로 식료품, 부품, 건설용품, 전자기기 및 많은 소비재들이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집트와의 무역에 있어서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요건이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수입검사제도의 운영 강화

이집트 통상당국 및 세관 당국은 공산품 품질관리 규정에 의하여 수입 배터리 및 타이어에 대하여 규격별 품질검사(quality control tests by size)를 시행하고 있다. 이집트 당국은 이와 같은 품질검사를 함에 있어서 품질검사에 필요한 수량 이상의 배터리 및 타이어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검사용 손실이 과다하다는 관련업계의 불만이 있다.

품질검사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검사자의 자의성으로 검사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검사결과가 신청자에게 즉시 회신되지도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더욱이 일본공업표준(JIS), 독일표준기구(DIN) 규정 등 국제규격에는 Capacity 결과가 95% 이상이면 합격품으로 인정하나, 이집트는 98%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 중 일부 배터리 및 타이어가 품질미달로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그밖에, 1996년 11월 수출입 통계청이 타이어의 품질실험과 관하여 Drum Tester의 미비치를 이유로 외국산 타이어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중지하면서 우리나라 타이어 업체의 수출이 중단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그 후 이집트 관계 기관과의 접촉을 통해 1997년 2월 수입타이어 테스트가 재개되어 우리나라 타이어 수출이 가능해졌지만, 이러한 사례의 재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특히, 2012년 10월부터는 신정부의 정책에 따라 통관 검사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집트 정부는 통관 서류와 L/C 개설 및 은행 송금 등과 연계시킴으로써, 세수 확대 차원에서 외국 기업에 대해 엄격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샘플

관세청은 등록된 수입상의 원료, 중간재, 비내구성 소비재, 엔지니어링의 샘플 통관 시 별도 수입허가를 요하지는 않지만, 가액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수입된 샘플이 1년 이내에 재수출 되거나 수입당시 재수출할 것을 서약할 경우 관세가 환급된다. 간단한 휴대 샘플은 통관이 용이하나 별도로 발송하는 것은 4~5일의 통관절차가 소요되고 잘못 배송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샘플링

수입품 검사 시 샘플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세관당국에서 전량검사를 실시하여 통관경비 과다발생, 물품의 도난 및 파손, 세관원과의 부정거래행위를 유발시키고 있다.

소포우편

소포로 수입된 화물도 동일한 수입절차를 밟으며, 관세 및 기타 세금이 부과된다. 특히, 인쇄물, 전자제품, CD, 서적 등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라벨 규정

식료품, 의약품, 섬유류 및 화장품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나, 그 밖의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상의 요구에 따른다. 2006년부터는 모든 수입품에 수입상의 주소와 전화번호, 제조일자, 수출자 등을 아랍어와 영어로 병기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다.

통관·보세 장치

통관은 하주, 하주의 대리점, 통관사 등에 의해 수속이 이루어지고, 일반화물의 경우 7일간 무료장치가 허용되며 보세창고 또는 냉장시설로 이송도 가능하다. 화물보관 최장기간은 3개월이며, 이후에는 경매처분이 가능하다.

환경관련 규제

환경을 규제하는 기본법으로는 나일강 오염방지법(법 제48호/1982)과 동 시행령(제649호/1982)이 있다. 나일강 유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폐수 방출 가능성이 있는 공장건설이나 건물, 상점, 관광시설 및 기타 상업용 시설 등은 사전에 보건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공공사업 및 수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부는 정기적으로 이들 허가시설이 배출하는 폐수를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준치를 넘을 경우 행정조치 한다.

나일강 오염방지법은 배수시설 설치의 필요성, 공공 배수시설과 사유재산 배수시설간의 연계설치 관련 기본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동 시행령은 폐수 방류 신청방법, 폐기물 종류에 따른 저장탱크 설치규정, 유해물질 방류 금지 및 자재정화 시설 설치 규정 등에 관한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1992년 World Bank의 도움으로 환경보존계획을 만든 이래 1994년 1월에는 새로운 환경보존법(법제4호/1994)을 제정하여 환경문제 전반에 걸쳐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투자프로젝트의 승인절차에 환경청(Egyptian Environmental Affairs Agency)이 관여하여 환경적합성을 심사한다는 규정에 따라 투자자는 환경저촉평가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가기술 미흡으로 강력히 시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품목별 장벽

자동차

승용차 수입관세는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배기량 1,600cc 미만은 40%, 1,600cc 이상은 135% 관세 외에도 승용차 구입 및 소유에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외에도 1,600cc 미만에 부가가치세 14%, 개발세(development fee) 3%, 테이블택스(Tabel Tax) 1%가 부가될 수 있다. 1,600cc 이상 2,000cc 미만에는 부가가치세 14%, 개발세(development

fee) 5%, 테이블택스(Tabel Tax) 15%가 부과될 수 있으며 2,000cc 이상의 승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14%, 개발세(development fee) 8.5%, 테이블택스(Tabel Tax) 30%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면허세의 경우 승용차의 생산지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수입 차량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기아 등 우리나라 이집트 진출 자동차 업체는 소나타급 이상 차량의 대 이집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승용차 생산지 및 배기량에 따라 면허세를 차등 부과한다(수입차량에 높은 세율 적용).

WTO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협정에 따라 국제 수입관세 표준인 0~40% 대로 승용차 관세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집트 정부는 이를 2019년까지 점진적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EU와의 AA(Association Agreement)에 따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유럽산 차량에 대한 관세를 폐지해야 하며 이집트 정부는 EU 수입차량에 부과하는 관세를 해마다 10%씩 관세를 하향 조정해 온 끝에 2019년 1월 1일부터 무관세 조치가 시행되면서 유럽산 자동차들의 이집트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2017년 초부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통합관세율 10% 부과 및 국산부품 비율, 생산량, 수출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일명 자동차 전략, Automotive Directive)을 의회에 제출해 둔 상황이나 EU 및 국내외 자동차업체의 이견 제기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강

이집트 정부는 국내 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철강제품 생산비용의 일부(re-olling, coating 관련 비용의 최대 15%)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하여 한국 제품 수출시 가격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집트 정부는 로컬 제조업체들의 보호를 명목으로 0% 이던 강철봉에 관세를 7.3%를 부과하는 세이프 가드를 발동한 바 있다.

배터리

이집트 정부는 이집트 배터리 제조사인 클로라이드사의 제소로 이집트로 수입되는 배터리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검토하였으나 조사결과 요건 미흡으로 2015년 12월 12일자로 취소하였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국제입찰

이집트에는 별도 입찰 전담기관이 없고 각 정부부서 및 기관별로 입찰 전담부서를 두고 필요시 입찰을 공개 공시하여 조달하는 방식이다. 제조업 관련 국영기업은 117개사로서 제조업 총생산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 국영 기업에서 대부분의 산업용 기계류와 장비를 수입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입찰을 통한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입찰 공고는 계약의 성격에 따라 지역 일간지 혹은 영자신문 등에 게재된다. 이집트는 아직 WTO 정부조달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입찰제도

입찰 법령에 따르면 이집트 정부는 자국 업체 보호를 위해 국제 입찰시 외국 업체가 제기한 최저 입찰 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국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규모 입찰 시 단일 품목보다는 여러 가지 품목을 함께 공고하는 경우가 많아 단일회사가 공급키 어려운 편이다. 이에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응찰하기도 하는데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이 이러한 컨소시엄 형성에 능숙한 편이다.

공공기업은 통상 비중이 큰 자본재 뿐만 아니라 일반상품 구매에서도 신용제공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한데 요구조건을 보면 계약 시 10% 지불, 선적서류를 받을 때

10%, 나머지 80%는 반년 단위로 납기에 따라 분할 지불을 고집하여 구매액이 큰 경우 3년에서 5년간의 분할 상환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공여 조건을 수락할 경우 차후 응찰에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지만 응찰 시 가격, 품질, 인도기일, 이자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처해야 한다. 최저가 낙찰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낙찰 후에 2~3개 업체와 재협상을 하여 보다 값싼 가격을 받아내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낙찰이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집트는 공공입찰(거설중장비, 발전기자재, 의료기기 등)에 있어 미국, 일본, 유럽 등 일부 국가 제품으로 원산지를 제한하거나 원산지에 따른 점수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어, 한국산 제품의 입찰 참여가 원천 봉쇄되거나 입찰 참여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입찰전략

이집트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외국기업이 현지 회사와의 합작 또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입찰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찰시 외국회사는 Project Manager, Cost/Schedule Manager 및 QA/QC Manager 등 일부 기술적인 견해가 필요한 부문에만 인력을 충당하고 실제적인 현장시공과 관련된 인력은 현지 회사를 통해 충당해야 하나, 능력부족으로 인해 공기지연 등의 위험성이 높아, 현지 회사의 능력에 맞게 공정을 조정해 준다거나 공사수행 중 면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현지 회사와 협력하여 참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실력 및 신뢰성 있는 현지 업체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이들 업체 주요인사와의 공적 및 개인적 친분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입찰 공고 전부터 입찰내용을 사전 입수하여 응찰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입찰기관의 주요 인사와도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입찰정보는 Al Ahram 및 Al Gomhuria 등 주로 일간신문을 통해 수집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 구축한 현지 회사의 주요인사(구매담당자)를 통해 입수하기도 한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원조제공,

공급자 신용제공 등의 방법으로 이집트 내에 기반을 착실히 닦아왔기 때문에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우리기업의 경우에는 낙찰을 위해 관련기관에 회사홍보(신뢰성 공사 실적 등)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응찰가격 제시 시에도 과거 유사 입찰 실시결과를 빠짐없이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경쟁적인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기업의 직접 입찰 참여시 현지 행정 절차상의 까다로움이나 언어적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찰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하여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집트는 법적으로 에이전트의 활동이 보장되어 있다(상업 에이전시 법 120항, 1982).

국방부 입찰을 제외한 계약에 참여 희망 해외기업은 현지 에이전트나 중개 업체를 통하여만 가능하다. 공개 입찰 참여 희망 해외 기업이 에이전트와 벤더 등록에 합의를 하면 에이전트는 합의 계약에 동의하여야 한다. 합의서는 에이전트의 종사 분야, 활동에 필요 재화, 서비스, 대행비용, 지불 방법, 지불 화폐, 합의서 용어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에이전트 계약은 공증 절차를 거치는데, 한국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주한 이집트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이집트 회사와 한국 회사의 서명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 후 이집트 에이전트가 이집트 외교부로부터 합의 공증을 받는다. 공증의 절차를 마치면 해당 기업은 이집트 내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국방부 입찰

이집트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연간 약 25억 달러이나 미국의 군사원조까지 합한다면 실질적 국방비 지출 규모는 3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군 병력이 약 45만 명이며, 군수산업 종사자가 약 5만 명에 이르고 있어 방산 시장으로서의 가치는 높은 편이나 대부분의 최신예 장비는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FMS 형식을 통해 도입되거나 합작생산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 시장 진입의 틈새는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된다. 2001년 이후 한국 업체들은 중구경탄 생산기술 이전 플랜트 사업, 이집트 공군의 활주로 조명 시스템, 활주로 청소차, 항공기 급유차, 굴삭기 등 1억 3천만 달러 이상을 수주하였으며, 2012년 이후에는 K-9 자주포의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향후 주목할 점은 항공기, 전차, 함정 등 대형 프로젝트는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고 있어 발주 기회가 희박(미국업체에게 우선권 부여)할 것이나, 이집트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작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육상무기인 화포 및 탄약, △사막지형에 적합하면서도 기동성 있는 차륜형 장갑차, △최신화 된 훈련장에서 사용하는 시뮬레이션과 관련한 컴퓨터 및 커넥터 부품, △야간 감시 장비, △군복이나 군화 등 방산물자 분야 등의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공군 및 방공분야에서는 대부분 미 군원을 통해 전투기, 헬기, 미사일 등을 현대화하는 중이며, 해군분야에서도 잠수함, 함정탑재 헬기 및 미사일 등을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합작하여 현대화하고 있는 중이다. 국방부 입찰 시 주의할 점은 품질 요구 수준이나 가격협상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요구되며,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방부 입찰 추진 절차는 병기국(Armament Authority)으로부터 의향서를 접수→주 이집트 한국대사관 무관부 경유 제안서 제출→1차 기술 평가(3~4개월 소요)→입찰 초청서 접수 후 개별 협상(통상 10회 이상 개별 가격 협상, 조건 합의)→입찰 참가→낙찰 후 가격 재협상 순이다. 따라서 무역관 및 무관부와 긴밀한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다.

조달청 입찰

이집트 정부는 2020년부터 조달청(Unified Procurement Authority)을 신설하여 의료기기 및 의료제품, 방역물품 등에 대한 공공발주를 조달청을 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공공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들은 해당 관청에 등록해야만 하며, 초기 등록비용은 5,000 달러, 연간 연장 비용은 2,000달러이다. 이집트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초기에는 의료 관련 발주만 조달청에서 관할하지만 점차적으로 모든 공공발주를 조달청을 통해야만 가능하도록 조달청의 업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제도 개황

이집트는 특허, 상표, 저작권 관련 국제 협약(TRIPs)에 가입해 있는 상태이나 국내 법규 및 규정이 미비하고 법원의 최종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실제적인 보호 정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불법 도용한 상표나 불법 저작물이 상당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우리기업의 경우 역시 상표권이 도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해결이 쉽지 않아 설득과 협상에 의한 해결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92년 제정된 지식재산권 보호법(제38호)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포함하는 등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1994년 3월 동법 개정이 이루어져 불법 복제보호 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했다. 2002년에는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법(제82호/2002) 제정 하였으며 컴퓨터 프로그램 관할권을 문화부에서 정보통신부로 이관하였다.

2004년부터 이집트 제약회사가 복제 의약품을 생산하며 지적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피해국인 미국 측에서 강력히 침해방지 대책을 요구했으나, 이집트 정부는 국내 영세민에 대한 저가 의약품 공급을 이유로 복제 의약품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집트를 지식재산권 우선 감시 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하면서 지식재산권 준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적절한 피해구제장치가 없어 아직까지 보호수준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2009년 WIPO는 이집트의 특허청을 아랍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국제 특허 기관으로 승인을 하였으며, 이집트는 타국으로부터의 특허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상표권

상표권의 인정기간은 신청 후 10년간이며 보호기간 만료 마지막 연도 내에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보호기간이 10년 연장된다. 등록 후 소유권이 인정되며

상표권 획득 5년 이내에 이전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지속된다. 만약 등록 후 5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제3자가 등록 무효 신청을 제기할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등록비는 각 상표 신청서 50이집트 파운드(LE), 등록 수수료 60이집트 파운드, 출판 50이집트 파운드이며 연장의 경우도 비용이 동일하다.

산업디자인

2002년 법률 개정으로 반도체 설계 디자인도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보호기간은 등록 요구일로부터 10년간이며 보호기간 만료 마지막 연도 내에 연장하는 경우 5년간 추가 연장된다. 등록 비용은 건당 신청서 30이집트 파운드(LE)이며, 관련 부속디자인이 있으면 건당 15이집트 파운드가 추가되고 등록 수수료는 75이집트 파운드이다. 연장 신청의 경우 75~100 이집트 파운드를 지불해야 하며 출판비용으로 30이집트 파운드가 추가로 소요된다.

저작권

예술, 문학, 컴퓨터 프로그램, 영상물, 음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서적과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보호된다. 영상 및 음반은 제작일로부터 50년간 보호되며 응용미술저작물은 창작일로부터 25년간 보호된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5,000~10,000이집트 파운드의 벌금 또는 1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침해가 반복될 경우 10,000~50,000이집트 파운드의 벌금 또는 3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이집트는 저작권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적판을 구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연합(The Software Alliance, BSA)의 세계 불법 소프트웨어 조사 2018에 따르면 불법 소프트웨어의 비율은 59%를 기록하였다.

특허권

특허권은 법으로 보호되고 있으나 특허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보호기간은 15년에서 법규 개정으로 20년으로 변경되었으며, 특허 침해가 심했던 의약품의 경우 특허 보유업체의 정보 및 마케팅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다. 단, 연간 특허 등록비 미납 또는 등록 후 2년 이내 특허권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특허권은 자동 소멸된다.

특허권 침해 시 2만 이집트 파운드 이상 10만 이집트 파운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허권 침해 상품은 몰수되며 하나 이상의 일간 신문에 특허권 침해 사실을 게재해야 한다.

이집트 특허청

- Cairo Egyptian Patent Office, Academy of Scientific Research & Technology
- 주소: 101 Kasr Al Ainy st., Cairo, Egypt P.O. Box 11516
- Tel: +20 (2)2792-1291/2792-1274/2792-1272
- Fax: +20 (2)2792-1272
- 이메일: patinfo@egypo.gov.eg
- 홈페이지: <http://www.egypo.gov.eg>

투자 장벽

투자진출제한 분야

이집트 정부는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외국인 투자 문호를 개방하는 여러 조치들을 취해 왔다. 2000년에는 1997년에 시행한 통합투자촉진법(제 8호/1997)을 개정하며 투자대상 분야를 24개 부문으로 명확히 하였다. 또한, 그동안 36개 정부 관련 부서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분산 담당하던 것을 2004년 3월부터는 ‘투자 및 자유구역청(GAFI)’이 전담토록 함으로써 업무를 대폭 간소화 시켰다. 무르시 전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부장관직을 다시 부활시켰다.

이집트는 투자허용분야를 법규상 명시하는 방법(Positive list)을 사용하고 있어 별도 투자금지품목(Negative list)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투자허용 분야를 제외하고는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국가기간산업 및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의 경우 투자청 승인 전 해당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투자가 가능하다. 이스라엘과 근접한 시나이 반도에 투자할 경우 이집트 보안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투자가 가능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집트는 국제 중재 협정에 가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법원은 국제사회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집트 내에서 분쟁 발생 시 상당한 시일과 과정이 소요된다.

투자청 승인 전 해당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투자진출 허용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집약 프로젝트
2. 알루미늄 원료
3. 메탈합금 프로젝트
4. 담배산업
5. 군수산업(국영 및 관련기업과의 합작은 가능)
6. 시나이반도 내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시추를 제외한 프로젝트

* 시나이반도에서 사업 추진 시, 총리실 산하 시나이개발청장 승인 요망

2000년에 개정되어 시행중인 통합투자촉진법상 24개 투자허용분야는 아래와 같다.

1. 황무지나 사막 개간 및 경작
2. 동물, 가금류 및 생선 품목
3. 공업 및 광업
4. 호텔, 모텔, 하숙집, 관광 마을, 관광 및 교통
5. 운송용 냉장트럭, 농산품 보존 냉동 창고, 공산품 및 식료품용 컨테이너, 곡물저장기

6. 항공교통과 서비스
7. 수상교통
8. 석유 탐사 및 시추, 가스 운송
9. 주거용 주택 사업
10. 식수, 배수, 전기, 도로와 통신 관련 인프라
11. 병원과 클리닉
12. 금융리스 업
13. 안보 유지
14. 위험자본(Risk Capital)
15.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16. 사회발전기금에 의한 프로젝트 펀드
17. 신도시 개발
18. 소프트웨어와 전자 콘텐츠 개발
19. 기술단지 설립과 운영
20. 신용 분류(Credit classification)
21. 공장 가동
22. 강을 이용한 도시 간 물자운송 개척 및 운영
23. 산업 및 유틸리티 프로젝트 수행
24. 쓰레기수거 및 관련 서비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청의 승인을 얻고 상업등기소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지사는 이집트 현지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이집트 회사법규를

따르며, 납세, 사회보장, 노동법 적용 등 지사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가 현지법에 따라 규율된다. 지사는 이집트 회계사가 감리한 재무제표를 매년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사는 외국인 고용 인력을 총 고용원의 10% 이내로 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인건비 비중을 총 지급 임금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이집트 내 영업이익의 20%를 법인세로 납부하고, 순이익의 10% 이상을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의무도 부담한다.

연락사무소 설치의 경우에는 주한이집트대사관으로부터 영사확인을 받은 회사정관, 사무소 설치에 관한 이사회결의서, 책임자 임명에 관한 서류 등과 등록신청서를 이집트 기업 심의국에 제출하고 등록한다.

국산품 사용 규정상의 제약

2011년 10월 이집트정부는 부품 국산화율을 45%에서 60%로 상향조정하여 이집트에 직접투자하려는 외국인기업들에게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이집트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에게는 40~45%가 적용되고 있다. 국산원료 사용 비율에 대한 심사는 투자 프로젝트 승인 시 이루어진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일반적으로 특별한 의무조항은 없으나 외국인 투자금지 분야에 대한 특별 허가 시 재투자 및 수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그동안 36개 정부 관련 부처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분산 담당하던 것을 2004년 3월부터는 '이집트 투자청(GAFI)'이 전담토록 함으로써 업무를 대폭 간소화시키는 등 이집트 정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도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허가업무에도 많은 관리들의 서명확인, 처리 지연 등 종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투자계획서 제출 시 공장부지 위치를 명시하여 투자청에 제출하면 투자청에서 건설 구역을 검토한 후 하자가 없는 한 승인된다. 이집트 문화유적을 피하거나 군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공장 건설지역에 대한 커다란 제한은 없으나 시나이 반도나 국경지역에는 전략적인 중요성을 들어 공장건설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공장부지 불하 승인의 경우는 산업통상부산하 산업개발청(IDA) 소관하는 사항이나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동 인허가권을 투자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 외국인 투자 활동을 위한 토지 및 빌딩 소유 가능(제8호/1997)
 - 농지의 경우 외국인 단독소유 불가능 하며 이집트인 지분 51%이상의 합작을 통해서만 소유가능 (제15호/1963, 143호/1981)
 - 이스라엘과 인접한 시나이 반도의 경우 보안상 문제로 외국인부동산 소유 불가능(제56호/1988)
- 외국인의 부동산 및 토지 소유 가능(토지의 경우 일부 제한 조항이 있음(제230호/1996))
 - 토지의 경우 아랍계 외국인은 시내 토지 소유 가능하나, 비 아랍계 외국인 시내 토지 소유는 불가능
 - 주택 건설용 토지 소유만 가능하며 2개 구역 각 4,000S/M 이내여야 함.
 - 외국인 토지 소유에 대한 제한은 총리 허가를 통해 면제될 수 있음.
 - 토지 획득 후 5년 내 건물을 완공하여야 하며 등록시점부터 5년이 지나야 매각할 수 있음.

금융상의 제한

이집트는 그동안 별다른 외환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나, 통합금융법(제88호/2003) 및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제80호/2002)을 마련, 외환관리 규제 근거법을 마련하였다. 25,000달러 이상 해외송금을 하거나 자금 결재 시에는 거래은행의 신분확인을 거쳐, 중앙은행에 통보된다.

2015년 2월 이집트 정부가 불법적인 암달러 시장을 일소하겠다고 취한 달러 현금 입금제한 조치(월 5만 달러 이상의 달러 현금의 계좌입금 제한)로 암달러 시장을 통해 환전되어, 수입대금 결제에 사용되던 달러화의 통용이 어렵게 되면서 이집트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들은 수출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최근들어 생필품, 의약품, 생산용 원부자재 등에 대해서는 입금제한 조치가 해제되었다.

세제상의 제한

이집트의 주요 세제로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 가치세, 사회보험적 성격의 사회보장세 등이 있다. 이집트는 2005년 6월 전면적 세제 개혁을 통해 32~40%에 이르던 법인세를 20%로 통일하여 대폭 인하하는 대신 기존 투자법에 명시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철폐하였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해 세제 감면폭을 넓히고 최대 세율도 2015년 25%에서 22.5%로 인하하였다. 부가 가치세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종전의 판매세를 대체하여 시행(13%)되고 있다. 이집트의 세제 인하 배경은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탈세 현상이 만연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탈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법인세

2005년 개정된 소득세법(제91호/2005)에 의거하여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ies),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 합작회사(Partnership Limited By Shares) 등은 물론 공공기업, 은행, 외국기업의 현지 지점(Branch) 등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부과하며 특정 업종을 제외하면 외국인 투자 회사와 내국 회사에 20%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특정 업종인 원유 및 가스 개발 생산기업의 세율은 40.55%, 수에즈 운하 수익, 이집트 석유청, 이집트 중앙은행의 세율은 40%이다.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나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내 설립된 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일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의 경우 창고업은 CIF 가격의 1%, 제조업은 FOB 가격의 1%, 서비스업은 이윤의 1%를 납부해야 한다. 특별경제구역 입주기업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이윤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2014년 연소득이 1백만 이집트파운드 이상인 사람에게 5%의 세율을 추가로

거두던 부자세(wealth tax)는 정부의 결정으로 1년 만에 종료됐다. 개인소득세의 범위와 세율 또한 2020년 5월 7일 발표된 대통령령(제 26호/2020)에 의해 변경되었다.

면제를 받는 연소득 범위는 기존의 0~6,500이집트파운드(LE)에서 15,000 LE로 늘어나 저소득층의 혜택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연소득 범위는 400,000 LE로 최대 세율은 25%(부자세가 적용될 경우 30%)이다.

정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이집트 정부는 보조금을 삭감하고 부자세 부과 등을 시행하였으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투자를 높이고자 개인소득세 부과율을 완화하였다고 이집트 정부는 밝혔다.

2020년 5월 7일 대통령령 26호를 발표해 개인소득세 징수구간을 세분화하여 계층별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연간 소득 (이집트 파운드)	세율(%)
0~15,000	0%
15,001~30,000	2.5%
30,001~45,000	10%
45,001~60,000	15%
60,001~200,000	20%
200,001~400,000	22.5%
400,001 이상	25%

주: 2020년 개정 기준 (2022년 11월 기준 가장 최신자료)

이집트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 거주자로 이집트인과 동일한 법적용을 받는다. 한국과 이집트 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이집트에서 연간 183일 이상 체류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집트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83일 미만 체류 시에는 공제 혜택 없이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이집트는 그동안 시행되던 판매세 제도를 2016년 10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 제도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2017/2018 회계연도부터는 14%를 부과하고 있다.

이집트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도입을 지난 2005년 이래 수차례 시도한 바 있으나, 도입시 세수 확대 및 탈세 방지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저소득층의 삶을 더욱 궁핍케 한다는 부정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어 번번히 무산되었다. 그러다가 현정부 들어 외환부족 등으로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을 재추진하게 되었고, 때마침 IMF 및 World Bank의 자금 지원조건으로 동 제도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실현하게 되었다.

사회보장제

의료보험,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 보장제(Social Insurance)를 통합운영하고 있다. 종업원의 정년퇴직, 사망, 실업, 부상, 질병 시 보상을 위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종합보험 성격으로 고용자가 원천 징수 후 납부해야 한다. 이 규정은 이집트인 전일 근무자에게 해당된다.

· 사회 보장제 요율

고용주 및 근로자 부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고용주 부담: (기본급 × 18.75%)
- 근로자 부담: (기본급 × 11%)
- 기본급은 3,000 이집트 파운드까지 인정되며 그 이상은 가변 소득으로 간주
- 기본급 한도액은 매년 회계연도 시작일에 발표
- 2020년, 가변소득 부과 사회보장제는 폐지되었다.

단, 건설회사에 고용되는 임시직은 전체계약가액 중 인건비의 18%를 사회 보장부담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으로 할당해야 한다.

로열티

로열티는 원천징수 되며 세율은 통상 20%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우선하므로 협정 내용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다. 제조업 활동에 기여하는 로열티는 면제 대상이며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은 15%이다.

이자소득세

일반 이자 소득세율은 20%이나 한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부과 세율이 15%이다.

재산세

이집트 정부는 부동산 부분 외자유입과 거래 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대를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2008년 6월 15일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현재 이집트 부동산 관련 세제는 소득세와 보유세로 구분되고 있는데 소득세는 부동산 매도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각 대금의 2.5%를 과세하고 있으며 보유세는 기존의 46%에서 10%로 변경됐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은 도시지역에 국한된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재산세(Property tax) 세율을 기존 46%에서 10%로 인하하며 2,000,000 EGP 이하의 주택은 세금이 면제된다.

이집트는 세금 납부 의식이 희박하고 세무행정의 낙후로 증빙서 보관이 안 돼 종종 납부고지서 재발부로 이중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바, 세금 납부 시에는 반드시 커버 레터와 함께 수표로 납부하도록 하며 은행 명세서 보관 증빙서를 확보해야 한다.

노동시장

임금수준

이집트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낮은 편이다. 일용직이나 단순 노동자의 경우에는 월 1,000 이집트 파운드 내외의 저임금으로도 채용이 가능하다.

노동자 임금은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숙련공과 비숙련공,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간 격차가 현저 기준으로 볼 때는 큰 편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직 종사자의 임금은 아래와 같으며 고용주와 노동자가 월 사회보장보험을 부담해야 한다.

- 임금수준
 - 월 150~200달러(비숙련공)
 - 월 200~350달러(숙련공)
- 일반기업체 임금 평균
 - 월 150~300달러(일반근로자)
 - 월 400~1,500달러(초급 관리자)
 - 월 1,500~5,000달러(고급 관리자, 경영진)

대형 기업이나 외국계 회사 근로자의 경우 일반 기업체보다 월급여가 높은 편으로 이는 10%대의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춘 고급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집트의 대형기업, 외국계 기업 근로자 월급여

직종	월급여
Sales and Marketing Director	L.E 35,000~40,000
Financial Director	L.E 30,000~35,000
Human-resources Director	L.E 30,000
Manager	L.E 15,000~20,000
Production manager	L.E 10,000~12,000
Accountant	L.E 5,000~10,000
Personal assistant to director	L.E 7,000
Secretary	L.E 4,000

주: 2022년 11월 기준 최근 자료

임금 규정

이집트 정부는 2019년 7월월 새로 도입된 공무원법에 의거 공공부문(Public Sector)의 최저임금을 2,000 EGP(약 128 USD)로 인상하였다. 더불어 2021년 6월 28일 이집트 정부는 민간부문 최저임금제 시행을 발표하여, 2022년 1월 1일부로 민간부문 최저임금제는 월 2,400 EGP(약 153 USD)가 될 예정이다.

노동법상 매년 기본임금을 7% 인상할 의무가 있다. 기본임금은 고용주와 종

업원 간 근로계약 시점 상호 합의하에 정하는데, 통상 기본임금은 전체 임금의 70~80%로 정하는 것이 관례이며 사업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인상 강제규정은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편이다.

유한책임회사를 제외하고 순이익의 10% 이상을 근로자 연봉 범위 내에서 이익을 배분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주는 보너스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라마단 종료 후 월급여의 50%를, 연말에 월급여의 50%를 보너스로 지급하고 있다.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사회보장세 미납부자의 경우 근무 최초 5년은 월급여의 50%, 5년 초과 시 월급여의 100%에 근무 연수를 적용해 지급한다. 사용자 측의 사유로 인한 해고 시에는 퇴직금 최저액이 2개월 이상의 월급이어야 한다.

노동조건

이집트는 인건비가 저렴한 편이나 고급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생산성과 노동의욕이 우리나라나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과학적인 노무관리가 필요하다. 외국 투자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방법은 목표 부여제, 철저한 성과급제, 팀 단위 공동연대책임제 등으로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1) 고용조건

시보기간은 3개월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며 고용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무기 계약으로 간주된다. 기간제 고용은 최대 5년을 넘지 못하며 다시 갱신이 가능하다.

(2) 노동시간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8시간이며 1주 1일 이상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해 일 9시간, 주당 54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초과 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초과 근무 수당은 통상 근무 수당에 비해 낮 시간 135%, 밤 시간 170%, 휴일 및 공휴일은 200%를 지급 한다.

(3) 휴가

1년 이상 근무 근로자는 연 21일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1년 미만 근무자는 근속 기간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무 연수가 10년 이상 또는 50세 이상의 근로자는 연간 3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병가의 경우 최장 6개월간 유급으로 주어지며 급여 비율은 75~100%로 결정된다. 출산 휴가의 경우 10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출산 전후로 9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무 기간 중 한 번만 유효하다.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는 성지 순례휴가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 5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 100% 유급 조건으로 1개월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 성지순례 또는 이스라엘을 다녀올 수 있으며 근무기간 중 한 번만 유효하다.

해고

이집트 노동법은 회사의 긴급한 경영상의 위기나 휴업, 폐업 사유 이외의 자의적 해고를 금하고 있다. 따라서 종업원이 부적절한 근무 자세를 보이거나 실책을 저지른 경우에는 서류상으로 책임을 규명하는 증빙 서류를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증빙이 축적된 이후에야 해고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노동법 제69조에 명기된 9가지 해고 사유가 되는 경우 지방 조정 위원회에 해고 결정을 요청하면 15일 내 결과를 통보받는데 실제 해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근로자 해고 결정시 10년 이상 근속자는 최소 90일 전에, 10년 미만 근속자는 최소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노사분규

이집트는 그간 집권층의 정권유지를 위해 노동쟁의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노사관계는 안정적인 편이었다. 2003년 이집트 노동법 개정을 통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평화적인 노동 파업을 인정

하고 있으나, 실제 노동조합과 이집트 정부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과격한 노동 운동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1년 1월 25일 시민혁명이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외국기업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버스 · 철도 등 운송분야 노동자, 의사, 교사, 하급경찰 등 각계각층에서 파업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집트에는 23개의 산업노조가 형성되어 있고, 모두 이집트 노동조합 연합회(ETUF: Egyptian Trade Union Federation) 소속이다. SWP berlin에 의하면 ETUF의 노조원 수는 2012년 기준 약 380만 명에 이르며, 이들 중 대부분이 공기업 근로자다. 1998~2003년 사이 총 노동쟁의 건수는 743건이며 2005년의 경우 시위 16건, 파업 43건, 태업 53건이 있었다.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노동쟁의 건수가 1,137건에 이르는 등 파업이나 노동쟁의 건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형 노동쟁의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기업 민영화를 꼽을 수 있다. 이집트 노동조합 연합회 소속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이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이집트 정부의 민영화 정책 과정에서의 고용 불안이 노동쟁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로자와의 분쟁 해결 방안

이집트는 법규상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보장되어 있지만 해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노동법 시행규칙에 명기된 세부 규정을 적용해 근로자의 월급 일부 삭감, 보직의 이동 등 간접적 방법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한국 투자기업 근무 종업원 중 고용자와의 분쟁으로 기업 회계 서류를 정부 관공서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사례가 있어 기업에 큰 손실을 안겨준 사례가 있는 만큼 간접적 방법 또는 일부 금전적 보상을 통해 이직을 권유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이다.

2011년 1월 시민혁명 이후 이집트 정부의 공권력은 약해진 틈을 이용하여 강성 노조가 부상하면서 이집트 진출 우리 기업 작업 현장에서도 노사분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금융, 보험, 관광, 해운,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주요 국가산업이 국영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1991년부터 2차에 걸쳐 이행되어온 IMF 개혁프로그램에 따라 민영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2004년 7월에 출범한 Nazif 내각은 그동안 민영화에서 보류되어 왔던 은행, 통신 보험 회사를 대거 매각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며, 주요 국영기업들의 지분 매각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많은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이집트 정부는 ‘경쟁 보호 및 독점 금지법’ 및 동 시행령을 제정하여 2005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2011년 들어 이집트 행정법원은 그간 민영화되었던 3개회사(Shebeen Al-Koum Spinning사, Nasr Steam Boiler사 및 Tanta Flax & Oil사)에 대해 민영화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유화 조치 판결을 내렸고, 전 무르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현 정부는 당분간 민영화 사업 추진보다는 민간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취득

주한이집트대사관에서 사전 비자를 취득하거나 관광비자(유효기간 1개월)로 입국 후 1년 유효의 체류비자를 1년마다 갱신 신청할 수 있다.

※ 이집트에서 신청 시 절차: National Security 신원확인서 발급 → GAFI (Work Permission Office)의 Work Permit 발급 → Ministry of Interior (Passport & Visa Section)에 비자신청

이집트는 최근 도착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46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집트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전자비자 포털 (www.visa2egypt.gov.eg)에서 사전에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자비자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전자비자 시스템 안정화와 주재국 방문자들이 전자비자 신청에 익숙해 질 때까지는 현재의 도착비자 제도와 병행하기로 하였다.

운전면허 취득

이집트 정부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어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수월하게 현지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도 있는데, 국제도로표지판의 의미와 차량 부품의 기능에 관해 시험관에게 구두로 설명(영어 가능)하는 이론 시험과, 주차방법 및 시험장내에서의 간단한 주행시험을 통과하면 10년 유효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는다.

국제운전면허증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이집트에 올 경우 유효기간 내에는 사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이집트 진출과 관련된 사항

금융시장 현황

2003년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위한 통합 금융법안이 제정되어 금융 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이 착수되었고, Nazif 총리 내각은 2004년 7월 출범 후 세계은행, IMF,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후원아래 금융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영은행의 민영화 등 은행구조조정과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통합 금융법안에 따르면 이집트계 은행은 최소 자본금을 5억 이집트 파운드(8700만 달러), 외국계 은행은 5000만 달러로 법정 자본금을 대폭 증가시켰다. 아울러 이집트 중앙은행은 이 규정에 따라 각 은행들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제시하고 2005년 7월 14일까지 최소 자본금 이상으로 증자하지 않는 경우 강제합병이나 폐업 등 강경 조치함으로써 이집트 중앙은행에 의하면 67개에 달하던 은행이 2012년 5월 기준 39개로 대폭 축소되어 5개의 국영은행, 27개의 민간은행 또는 합작은행, 7개의 외국은행 지점이 있다. 또한 이집트 중앙은행에 따르면, 당분간 은행 설립에 대해 인허가를 내줄 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외국계 은행 중 우리나라 외환은행 등 시중 5개 은행이 현지 은행과 합작 설립한 극동은행은 Audi 은행에 지분을 매각하여 2006년 이집트에서 철수하였다.

또한, 국영은행의 민영화정책으로 정부는 2006년 10월 4대 국영은행 중의 하나인 Bank of Alexandria의 80%의 지분을 이탈리아계 은행(SanPaola IMI)에 매각함으로써 금융개혁에 가속이 붙었다. 대형 국영은행인 Banque du Cairo도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나 국회, 민간단체, 노조가 대량해고 및 금융의 자주권 수호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적절한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2008년 7월로 연기되었다가 세계경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향후 적절한 시기로 미뤄졌으며 그 후 동 은행의 민영화 추진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상기와 같은 은행개혁과 국영은행의 민영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소형화, 비효율적인 은행 운영시스템과 간섭과 규제를 일삼는 금융행정, 고객이나 수익성을 무시한 은행영업 태도 등이 수익성 추구하고 고객서비스를 본질로 하는 금융 산업의 글로벌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진지한 노력들이 병행되고 실질적인 결과들이 도출되어야 비로소 이집트 금융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이집트 진출과 관련된 사항

이집트 중앙은행은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하면서 신규 금융기관 설립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계 은행이 이집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은행기관의 민영화에 따른 매각지분을 인수하거나, 이집트 은행을 합병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Abu Dahbi Islamic Bank 컨소시엄이 National Bank for Development의 지분 51.3%를 인수한 바 있고, 2008년 4월 쿠웨이트 국립은행이 Al-Watany Bank을 10억 달러에 인수하여 이집트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등 자본이 풍부한 아랍계 은행들이 이집트 진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슬람 금융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자금을 투자 운영하는 이슬람 금융(Islamic banking)의 성장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는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물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것은 가능한데,

이슬람 금융은 율법이 허용하지 않는 사업부분(주류·돼지고기·도박 등)을 제외한 사회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고 거기서 얻은 수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이슬람권의 오일 머니가 급증하면서 급성장하였다. 한편 세계금융 위기로 급속히 위축된 바 있으나 유가가 회복되면서 중동지역의 경기가 서서히 회복됨에 따라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집트에는 Banque Misr을 통해 이슬람 금융 상품이 처음 소개됐으며 Faisal Islamic Bank와 Egyptian Saudi Finance Bank 2개 금융기관이 이슬람 금융을 지배하고 있고 기타 은행들도 이슬람 금융을 취급하고 있다. 3개 국영 은행의 이슬람 금융 비중은 약 10% 정도로 타 이슬람권에 비해 덜 활발한 편이다. 이슬람 금융 상품은 샤리아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상품 판매 이전에 이슬람법 판결기관의 감독을 수시로 받는다.

투자 환경

투자의 장점

(1) 거대시장에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

이집트는 거대 시장인 EU, 오일달러가 넘치는 아랍권, 외부에서 접근이 어려운 아프리카 시장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EU, 아랍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대서양 인도양을 잇는 수에즈 운하 등 물류의 중심으로서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

◦ 이집트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명칭	발효일	주요 내용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COMESA)	1994. 1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최초이자 최대의 경제공동시장(인구 3억 8천 명) - 회원국: 동남아프리카 21개국 - 남아공은 옵서버 - 21개국 중 11개국은 상호 무관세

명칭	발효일	주요 내용
범아랍자유무역 협정(GAFTA)	1998. 1. 1.	- 회원국: 아랍연맹 17개국 - 이집트는 걸프7개국과 별도 협정 체결 - 국가별관세수와 및 면제대상 상이
EU-이집트 연합협정* (EU/EGYPT ASSOCIATION AGREEMENT)	2004. 6. 1.	- 15개 EU회원국과 이집트 간 FTA - 이집트, 대EU 공산품 무관세 수출 - EU 15개 회원국, 2019년까지 4개 품목군에 걸쳐 점진적 인하 및 철폐 * (예) 자동차 관세는 2010~2019년간 매년 10%씩 인하 - 농산품 일부 쿼터해제 및 관세인하 또는 철폐
QIZ 협약 (Protocol on Qualified Industrial Zone)	2005. 1. 1.	- 이집트, 이스라엘, 미국 3국 간 협약 - 이집트가 이스라엘 원부자재 10.5%(11.7%에서 2008년 1월 1일부로 10.5%로 변경) 이상, 국내산 원부자재 35% 이상 사용 시 대미 무관세 수출 가능 - 이집트 내 QIZ 수혜기업은 500여 개, 2011년 이집트 QIZ의 대미 수출액은 103억 달러 - USTR은 이집트 내 3개의 QIZ(카이로, 알렉스, 수에즈)를 지정했고, 2005년 12월 4번째 QIZ로서 중앙델타지역을 지정한 바 있음.
Agadir 협정	2006. 7. 1.	- 회원국: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모로코 - 농산물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 철폐 - EMFTA내에서 남남협력을 통해 EMFTA 통합을 가속화하는 장치로 간주, EU로부터 수혜
이집트-튀르키예 FTA	2007. 3. 1.	- 대 튀르키예 수출: 협정발효 즉시 무관세 - 대 이집트 수출: EU-이집트 FTA에 준해 4개 품목군에 따라 2020년까지 점진적 관세 인하 및 철폐
이집트-EFTA FTA	2007. 8. 1.	- EFTA: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 대EFTA 수출: 16개 품목을 제외하고 발효 즉시 관세철폐 - 대 이집트 수출: 2020년까지 4개 품목군에 따라 점진적 인하 및 관세 철폐
이집트-남미공동 시장(MERCOSUR)	2010. 8. 2. 서명	-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 육류, 밀, 옥수수 등: 대해 즉시 관세면제 - 우유, 산업제품: 4년 내 관세 면제 - 기타 협상 품목: 8~10년 후 관세 면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 (AFCFTA)	2019.5.30	- 2011년 12월 가나 아크라 개최 아프리카 통상장관 회의 시 2017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창설 및 2019년까지 관세동맹 달성 로드맵에 합의 * 이집트는 동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적극적 - 아프리카 대륙 55개국 중 54개국이 서명함('21.6월 기준)

명칭	발효일	주요 내용
이집트-영국 자유무역협정	2021.01.01	- 영국 브렉시트 이후 최혜국 조항이 포함된 이집트-영국 간 FTA가 체결되어 영국은 기존의 EU FTA효과를 유지
아프리카 대 자유무역협정 (African Grand FTA)	논의 중	- COMESA, SADO(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EAC(동아프리카공동체) 간 FTA - 인구 6억 3천 명으로 아프리카 전체인구의 57% - 아프리카 전체 GDP의 58%(1조 3천억 달러) - 10개국 비준/발효 위해 14개국의 비준 필요(21.2월 기준)
중앙 아프리카 경제 통화 공동체 (CEMAC)	논의 중	- CEMAC 국가 : 카메룬,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콩고 - 브라자빌, 가봉 및 적도 기니)
서 아프리카 경제 통화 연맹 (UEMOA)	논의 중	- 2004 년 6 월 이집트는 이집트와 서 아프리카 경제 통화 연합 (UEMO) 간의 기본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음 - UEMOA 국가 : 서 아프리카 8 개국 (베닌, 부르 키나 파소, 코트 디부 아르, 기니 비사우, 말리, 니제르, 세네갈 및 토고)
이집트 - 나이지리아 양자자유무역협정	논의 중	- 이집트-나이지리아 자유 무역 협상 중
이집트 - 탄자니아 양자자유무역협정	논의 중	- 이집트-탄자니아 자유 무역 협상 중

(2) 잠재력 있는 내수 시장

이집트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1억 1,400만 명 중 약 10%는 연 소득 1만 달러 이상의 소득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의 50% 이상이 30세 미만으로 시장 선점 효과가 있는 미래 시장이다.

(3)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사회간접 시설

이집트 통계청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실업률이 9.3%이며, 실제로는 30%를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인력 채용이 용이하고 인건비가 저렴하다. 에너지 및 원자재 조달 요건이 양호하고 에너지 가격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에 조달이 가능하다.

(4) 이집트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

2017년 6월 27일 발효한 신투자법은 인지세, 사업부지 등록세 면제, 투자비용 감면 등 일부 비조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고 10월 28일 공포된 동법 시행령도

외국인 투자자의 거주, 외국인 노동자 고용, 과실 송금 등과 관련하여 완화된 규정들을 마련했다. 2019년 8월 1일 신투자법을 일부 개정하여 특별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는 것이 법 개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2020년 이집트 재무부는 현지 생산업자와 투자자의 이집트 내 현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를 하향 조정하는 2020 년 대통령령 제549호를 발표했다. 동 법령의 발효로 가구, 석유 화학, 가전제품 및 대중교통 차량 생산 요소에 대한 관세가 최대 50%까지 감소했다. 신규 법령이 최소 현지 제조 비율 조건을 30%에서 10%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현지 제조업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커졌다. 동 신규 법령으로 이집트 정부는 국내 생산 비율에 따른 관세할인폭을 확대 및 세분화하면서 국내 제조업자 및 해외 투자자들의 현지제조비율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투자의 단점

(1) 세계 최하위의 노동 생산성 및 까다로운 노동법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세계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에 의하면, 이집트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141개국 중 93위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매년 기본 임금 7% 인상 강제규정 및 근로자 해고가 불가능한 법체제와 관행이 존재하고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를 제외한 주식회사, 지사는 회사 순이익의 10% 이상을 연봉 이하 범위 내에서 종업원에게 배분해야 해야 의무 규정이 있는 등 노동법규가 까다롭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전체 종업원의 1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이집트 노동자 9명 고용 시 지상사 주재원 1명 허용)하고, 취업비자 신청 시 외국인 종업원 수 비율에 따라 한국주재원의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2) 관료적 행정절차

세관절차가 복잡하고, 담당자마다 적용 규정이 상이하며, 각종 행정 절차에

관료주의(Red Tape)가 만연하며 담당 기관별 법적 해석이 상이하고 동일 문제 발생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이 취약하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설립 등 행정절차에서 개선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아직 개선이 미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 이집트 사업 개시 절차 및 기간

소요비용	절차 수	기간
1인당 소득의 40.3%	6.5개	11.5일

자료 : Doing Business 2019

(3) 투자 인센티브 미흡

2005년 세법 개정으로 특정 분야를 제외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전혀 없다. 외국인만을 위한 투자 유치 인센티브가 없고, 모든 투자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일 취급하며 투자 인센티브가 극히 제한적이다. 일반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센티브가 많은 자유무역지대의 경우도 2008년 5월 5일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에너지 집약기업에 대한 혜택을 전면 폐지했다.

◦ 이집트 투자환경 SWOT분석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미국 2대 거대시장 무관세 수출 및 자유무역 협정 체결국 증가 ◦ 지속적 시장개방으로 효율성 증가 ◦ 젊은 층의 높은 인구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효율적 대학교육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수요에 비해 고급인력의 수준 낮음. ◦ 치안불안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아프리카를 잇고 지중해, 홍해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 ◦ 외국인 회사에 호의적인 이집트 정부정책과 법규 ◦ 적극적 정부 민영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정부 투명성 ◦ 낮은 노동생산성과 지나치게 경직적인 노동법규 ◦ 고용과 해고의 어려움

비즈니스 운영 환경

(1) 포스트 브릭스 특징

이집트는 향후 포스트 브릭스로 평가 받을 만큼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LG 경제연구소는 포스트 브릭스의 특징을 아래 5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 다양한 사업 기회
저가 생필품 시장에서 중저가 보급형 시장 및 고급형 시장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자국 특성에 맞는 제조업 발굴 육성 정책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기회가 존재한다.
- 경쟁 격화
시장 선점을 위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BRICS 국가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며 에너지, 건축, 이동통신 분야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 경제 민족주의 확산
자원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자원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유통, 서비스 등도 패키지 딜 투자 방식이 유행한다.
- 투자 리스크 존재
투자환경이 개선 중이나 단기간 경제성장으로 열악한 경제기반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예측에 어려움이 많으며 인프라 부족 등 투자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딪쳐야 할 직간접적 장애 요인이 많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투자환경 개선 노력 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9에 따르면 이집트는 사업개시 소요기간이 11.5일로 여타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MENA) 평균 20.9일에 비해 대폭 단축되었다. 건축허가 취득기간이 173일 수준이며, 재산등록 소요기간도 76일 수준이다.

2019년 세계은행이 평가한 이집트의 사업 환경 지수는 조사 대상국 141개국 중 93위로 나타나 순위가 전년의 94위에 비해 좋아졌다. 이집트 정부가 외자유입 및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방 정부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어 비즈니스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 이집트의 국가 경쟁력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는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4.0 2019 edition」에서 이집트의 국가경쟁력을 종전 94위에서 93위(전체 대상국은 141개국)로 상승시켰다. 이밖에 건강 분야 104위, 거시경제 환경 135위, 상품시장 효율성 100위, 노동시장 효율성 126위, 시장 규모 23위, 혁신역량 61위이다.

동 보고서는 이집트에서 비즈니스하기 문제가 되는 요인으로서 ① 정치적 불안정 ② 인플레이션 ③ 부패 등을 지적했다.



적도기니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경제 개관

중부아프리카 기니 만에 위치한 적도기니는 인구 약 140만명 (2020년)에 영토 면적 28,051km²의 작은 소국이다. 그러나 영토면적 10배 이상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314,000km²)을 보유하고, 1990년대부터 해상에서 석유와 가스를 발견하여 산유국이 되었다.

◦ 적도기니 원유/천연가스 생산량

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원유 생산량 (단위: 1,000 b/d)	160	133	125	117	115
천연가스 시장생산량(marketed production) (단위: million standard cu m)	7.876	8.237	7.751	6.235	6.023
천연가스 수출량 (단위: million standard cu m)	5.587	6.183	5.509	4.679	4.026

출처: OPEC Monthly Oil Market Report(2021.10월)

탄화수소(석유/가스) 생산 수익에 힘입어, 적도기니는 1인당 GDP 가 22,830 달러(2008년, IMF)로 높았으나, 2012년 이후 국제유가하락 및 원유생산량 감소로 인해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추세를 지속하면서 7140달러(2020년, IMF)로 대폭 하락하였다.

적도기니 정부는 “국가 경제/사회 개발계획(PNDES : Plan Nacional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을 수립(2007)하여, 2020년까지 신흥경제국 진입을 목표로 1단계(2008-2012) 교통(도로/항만/공항), 전기 (발전소/

송전망) 및 공공건물(행정부처/학교/병원) 분야의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 단기간 내 팔목할 만한 현대식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2013년부터 2단계 경제다변화 정책에 따라 수익과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5개 분야(농축산, 어업, 석유화학/광업, 관광 및 금융서비스)의 인프라 개발을 통한 석유/ 가스(GDP의 90%에 근접) 절대 의존형 일변도 경제구조 개혁 시도, 외국 투자자본 유치를 위한 국제적 경제 및 에너지관련 포럼 개최 및 참여, 해외상주공관(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튀르키예, 두바이 등) 신설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지만, 내수시장 협소, 인적자원 부족, 부정부패 만연, 대통령 장기집권 체제 40년 이상 유지 등 요소로 인해 경제다변화 정책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일반 국민들의 생활 여건도 높은 실업률로 실질적으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단계 경제다변화 정책 실현에 실패한 적도기니 정부는 2019년 5월 제3차 국가 경제회의를 개최하여 기존의 개발계획 성과 및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고, 차기(2020-2035) 국가 경제/사회개발 계획을 수립에 착수하였으나, 코로나 19 사태로 新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수립 시행이 지연되고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바타 군사시설 대규모 연쇄 폭발 사고(2020.3.7.)가 발생하여 재정난이 가중되자 IMF는 적도기니 정부에서 심각한 경제적 혼란 초래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한 약 670만 달러(Rapid Financing Instrument)를 지원할 것을 2021.9월에 결정하였다.

적도기니는 1인당 GDP 7140달러(2020년)로 중소득 국가로 분류되지만, 빈부격차가 극심하고 빈곤층 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인간개발지수(HDI)는 189개 국가 중 145위(2020년)로 매우 낮고, 부패지수(CPI)는 180개국 중 174위(2020년)를 기록하였으며, 경제 자유지수(IEF)는 178개국 중 163위(2021년)로 경제체제가 억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관세장벽

수입 관세

적도기니는 중부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ommunauté Économique et Monétaire de l'Afrique Centrale/CEMAC)의 회원국으로서, CEMAC에

공통 적용되는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CEMAC의 관세율은 웹사이트에서 참고 가능하다(<http://www.sydonia.cemac.int/>).

그러나 위 공통 관세율과 제도는 적도기니에서 적용되는 과정에 담당기관 또는 담당자들의 불투명한 업무처리 방식과 역량 부족으로 규정과 달리 적용되는 일이 잦다. 이러한 현실이 적도기니 수출입의 큰 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다.

관세 적용 기준에 다음과 같은 관세를 납부한다.

1. 관세: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분류에 따라 납부

- 제1 분류: 생활필수품 5%
- 제2 분류: 장비 및 원자재 10%
- 제3 분류: 중간재(준 가공품) 20%
- 제4 분류: 소비재(최종 생산품) 30%

2. 국고에 입금되는 세금(Impuesto)⁷²⁾

- 부가가치세: 15%(경감세율 6%와 0%)⁷³⁾
- 상업세: 1%
- 특별세: 최대 50%(특정 품목에 한정: 주류, 담배, 개인위생 물품)⁷⁴⁾

3. CEMAC 세금(Tasa)⁷⁵⁾

- 공동체 통합 세금(TCI) 1%
- 통합을 위한 공동체 세금(Contribución)⁷⁶⁾ (CCI) 0.4%

76) 세금(Impuesto): 스페인어에서는 세금을 크게 두 종류로 분류 하는데 'Impuesto'란 반대급부 없이 납부하는 세금을 지칭한다.

77) 경감세율 및 면세 대상 상세 품목은 별첨 1, 2, 3을 참조할 것.

78) 특별세 부과 대상 상세 품목은 별첨 3을 참조할 것.

79) 세금(Tasa): 'Tasa'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혹은 영역의 대가로 납세자들이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을 지칭한다.

80) 세금(Contribución): 'Contribución'이란 정부의 특별한 활동이나 공공 지출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가 이익을 얻었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지칭한다.

세금은 수표나 현금으로 세관에 납부한다. 세관은 CEMAC에 해당하는 세금도 징수하고 중부아프리카 은행(BEAC)에 납입한다.

◉ CEMAC 개요

- 공식 명칭
Communauté Économique et Monétaire de l'Afrique Centrale (중부아프리카 경제 통화 공동체)
- 설립 조약
Traité Instituant la Communauté Économique et Monétaire de l'Afrique Centrale (차드 은자 메나, 1994.3.16) / 2008.6.25 개정(카메룬, 야운데)
- 회원국
6개국(가봉,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 차드, 카메룬, 콩고)
- CEMAC 추구 주요 목표
 - 사람, 재화, 자본 및 서비스의 자유왕래에 기반하는 공동시장 창설
 - 공동통화(XAF)의 안정적 관리확보
 - 경제활동 및 일반적 비즈니스의 안전 환경 조성
 - 국가별 산업정책 규범의 통일

면세 제도

CEMAC 회원국(카메룬, 차드, 콩고 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및 가봉)으로 부터의 수입은 관세가 면제된다.

적도기니 투자법의 특별 제도에 의거하여 관세를 면제받는 회사의 장비는 세금이 면제되며, 또한 적도기니 정부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에 대해서도 관세와 세금이 면제되기도 한다. 탄화수소 분야 회사의 장비도 세금 면제대상이 된다.

비관세장벽

수출입 면허제도

수입 수량 제한, 비관세 보호 및 수출입 면허 제도는 적도기니 정부가 1992년

세계은행이 지지하는 공공 투자 계획을 도입하면서 해제하였다. 적도기니 정부는 몇몇 공영기업을 매각 하는 등 투자에 호의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투자법 또한 고용창출, 직업 훈련, 비전통 수출품의 수출 장려,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혜택을 보장 하고 있다. 무역 규정은 중부 아프리카의 세금 및 관세 개혁법에 맞춰, 수입 수량 제한을 폐지하고 관세 적용범위와 금액을 낮추면서 훨씬 더 자유로워졌다.

임시수입제도

적도기니 수입 세법은 물품의 임시 수입을 허가하며, 관할 세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 사업을 수주한 회사들에게 임시 수입 허가 제도를 통해 수입된 물품들은 관세를 면제 받지만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매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 목적을 이룬 후에는 수출 국가로 반송하여야 한다.

라벨링

라벨링과 패키징 필요조건은 적도기니 무역 규정으로부터 삭제되었으나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로 라벨링 할 것을 권장한다. 적도기니는 CEMAC의 회원국으로서 CEMAC의 세관 법에 의거하여 다른 회원국들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고 회원국들 간의 무역은 무관세이지만 “Vente en la CEMAC”이라는 식별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수입규제

특정 위생 물품, 화학, 독성 폐기물, 특정 화장품 및 식용품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수입 금지 품목은 제외될 새로운 상품이 확인될 때마다 수정될 수 있다.

수출통제

적도기니에서의 수출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5만 XAF 이상의 수출은 허가 받은 은행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입금은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적도기니로의 수입은 표준 컨테이너 당 7가지의 서류와 평균 USD 1055 미화의 비용이 들어, 사하라이남 국가 평균 USD 978미화에 비해 많은 편이며, 서류준비 소요기간은 240시간으로 사하라이남 국가 평균인 96 시간 보다 2배 이상 길다. 적도기니는 무역 편의성에 있어서 190개 조사국가 중 178위(2020년)에 머물며 무역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CEMAC 회원국인 가봉(169위), 중앙아프리카(184위), 차드(182위), 카메룬 (167위), 콩고 공화국(180위)과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적도기니의 실질적인 통관절차는 효율적인 시스템부재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태도 등에 기인하는 장애들로 통관 소요기간(240시간, 사하라이남 국가 평균 약 126시간, OECD 고소득국가 평균 약 9시간)이 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박 및 하역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관련 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

보편적으로는 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 가격과 운송비용을 포함한 총액을 세금 산정 기준 액으로 인정하나, 동 기준 액 설정에 있어서 적도기니 세관원과 소모적인 협상을 해야 할 경우가 잦으며, 하역 이후에도 세관 측 검열 등 규정된 절차 이외의 절차를 외국인에게 적용하기도 하여, 규정 외 비용발생의 원인이 된다.

수출 기간과 비용

수출 절차	기간(시간)	비용 (미화)
서류 작성 및 준비	154	85
통관절차 및 하역/화물취급	132	760
총계	286시간(약12일)	\$ 845

수입: 기간과 비용

수입 절차	기간(시간)	비용 (미화)
서류 작성 및 준비	240	70
통관절차 및 하역/화물취급	240	985
총계	480시간(약20일)	\$ 1055

적도기니의 재정경제기획부는 2020년 4월 통관절차 간소화, 수출입품 데이터 수집 및 통계 구축 등을 위한 관세데이터자동화시스템(ASYCUDA: Automated System for Customs Data)도입을 승인(시행령 11/2020호)하고, 이와 관련된 웹사이트(<http://siduneaeeg.com>)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투자환경

투자 유치 정책 및 규제

적은 인구의 적도기니는 그 내수시장에 대한 매력은 매우 떨어지나 CEMAC, ECOWAS의 회원국이며 “아프리카의 싱가포르”이라고 불리기 위하여 다방면에 걸쳐 노력하는 등 중·서부 아프리카의 경제 허브로서 발전 가능성이 있어 수출/물류 기지로서의 매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적도기니 정부는 석유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 개발을 다양화하고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11월 중장기 경제개발계획(Horizonte 2020)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Horizonte 2020 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Agencia Nacional de Guinea Ecuatorial 2020 기관을 설립하여 이행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2014년 9월 Holding Guinea Ecuatorial 투자청을 설립하여 농업, 축산업, 수산업, 서비스업 분야에 초점을 맞춘 투자 가이드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적도기니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Ley Número.7 1.992/적도기니 내 투자관련 특별법)하여 외국기업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적도기니 내에 외국인이 설립한 기업 또는 적도기니 진출 외국기업의 내국인 지분을 최소 35%를 보장하여야 하고, 또한 이사회 내국인 구성원의 수 관련, 최소 3명에 이사회 구성원의 1/3이상을 보장해야 하는 관계로 그 간 외국인투자의 제약요인이 되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 석유분야 투자 시 외국기업의 내국인 지분 보장 및 이사회 구성원 내국인의 의무적 참여를 철화한 새로운 투자관련 법률(Decreto Número 72/2018)을 2018년 4월 공포

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적도기니 재정수입 90%를 의존하고 있는 석유분야는 여전히 내국인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투자사업허가

외국자본에 금지된 분야의 사업을 제외하고, 적도기니 투자법이 보호하는 모든 투자 사업에 대해서 재정경제기획부는 투자기업이 재정경제기획부 조건에 부합하는 형식으로 신청한지 60일안에 자동적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사업과 발기인을 서술하고 투자자들의 신용보고, 상업 전력 및 도덕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재정경제기획부는 사업에 관여된 해외 투자자의 전력조사를 시행한 이후에 사업의 승인 증명서 혹은 기각 증명서를 발행하며, 승인증명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주어질 혜택과 이익을 명시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의 모든 필요를 묘사하고 확정하며 수입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부동산 세금

1) 농촌 부동산 세(稅)

- 세의 성격: 경작여부에 따라, 농지에 대한 실수익 또는 잠재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모든 자산은 과세 대상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세금은 매 6개월마다 납부
- 세율
 - 고정세율: 1헥타르 당 100 XAF 부과. 반기별로 합산하여, 2/4 및 4/4 분기에 납부
 - 변동세율: 소득에 따라 부과. 자연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통하여 납부
- 세금 면제와 공제
 - 면제: 5 헥타르 미만의 농지, 공공서비스 또는 지자체의 할당된 국가행정 토지, 마을의 공동자산

- 공제: 커피, 카카오, 먹거리 및 팜유 재배용으로 사용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5% 공제

2) 도시 부동산 세(稅)

- 세의 성격: 대지와 건물의 가치에 근거한 도시 자산에 대한 실수익 또는 잠재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매 6개월마다 납부
- 세율: 대지와 건물 가치의 0.4%
- 세금 면제와 공제: 과세표준액이 100만 XAF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2) 법인세

- 세금의 성격: 기업이 적도기니에서의 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세율: 35%
- 세금 면제와 공제
 - 농업분야 회사, 협동 및 노동조합 그리고 그 연맹 (단, 물품구매/조달 협동조합은 예외)
 - 농업상호신용은행
 - 상호지원 조합
 - 제한된 기간의 상품전시회, 전시회, 스포츠행사, 공중 대상 시연행사
 - 과세대상 수익이 세법 192조에 규정된 최소금액 이하인, 개인 또는 가족 특성의 유한책임회사(SRL)
 - 농촌개발 담당하는 공익성이 인정된 기업 또는 조직

(3) 개인 소득세(IRPF)

- 세의 성격 : IRPF는 CEMAC권내에 통일되어있다. 개인이 적도기니에서 얻은 총 순수익(Ingresos globales netos)을 대상으로 부과

- 세율: 과세대상 소득 별 세율은 아래와 같음

과세대상 년 소득	GRAVAMEN (적용세율)	IMPUESTO (원천징수 세금)
0~1,000,000 XAF	면제	면제
1,000,001~3,000,000 XAF	10%	200,000
3,000,001~5,000,000 XAF	15%	500,000
5,000,001~10,000,000 XAF	20%	1,500,000
10,000,001~15,000,000 XAF	25%	2,750,000
15,000,001~20,000,000	30%	4,250,000
20,000,000 이상	35%	

- 세금 면제와 공제: 100만 XAF 미만의 수익. 외교관(상호주의 조건)

(4) 석유/가스 생산관련 로열티

- 로열티의 성격: 탄화수소(석유/가스) 생산량에 부과하는 금액
- 세율: 최소 13%. 일 생산율을 기초로 계약에 의거 로열티의 증액 가능
- 부과기준: 계약서상의 일 생산량 비율이 달성되는 날부터 추출 저장된 탄화수소의 전체 량
- 관련 법: 적도기니 탄화수소법(제58조)

(5) 부가가치세(IVA)

- 세의 성격: IVA는 CEMAC 회원국 통일된 세금
- 세율: 15%. 단, 아래 품목은 예외
 - 세법 부속서 ANEXO II에 명시된 재화: 6%
 - 세법 부속서 ANEXO I 부가 가치세 면제 생활 필수 품목: 0%
 - 세법 부속서 ANEXO I(bis) 부가 가치세 면제 장비: 0%
- 과세대상
 - 재산권의 매각

- 서비스 공급
- 재화와 서비스 소비
- 자연인 또는 법인의 영업활동, 전문직 활동, 개인 활동 및 모든 종류의 추출활동으로 행해지는 모든 거래(* 추출활동: 석유, 가스, 광물 등 채굴 활동을 의미)
- 재화의 수입(輸入)
- 면제: 아래 “바”항 참조

(6) 부가세(IVA) 및 특별세(Derecho Especial)면제 대상

- 1) 농민, 목장주, 어민, 사냥꾼이 취득하고, 그 소유주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1차 상품
- 2) 특정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거래
 - 토양 및 지하로부터 추출되는 재화 판매
 -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닌 개인에 의한 부동산 양도거래로서, 재산양도세 (Impuesto Sobre Transmisiones Patrimoniales) 부과 대상인 부동산 양도거래
 - 외국 차관에 대한 이자
 - 금융 또는 신용기관의 일반 고객의 예금에 대한 이자
 - 여행객의 50만 XAF 를 초과하지 않는 재화의 수입(輸入)
 - 특정 세금의 부과 대상인 은행거래, 보험거래 및 재보험 거래
 - 재산양도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세금 부과대상인 부동산 및 부동산 지분 양도 그리고 영업권 교환(mutaciones de fondos de comercio)
- 3) 부상자 및 환자 수송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유사시설의 의료, 의료진 또는 의료보조자에 의한 의료

- 4) 세법 부속서(Anexo I)⁷⁷⁾ 명시된 생필품
- 5) 공사립 교육기관 또는 유사기관에 의한 교육 분야 서비스 제공
- 6) 학교 또는 대학교 책 수입 및 판매
- 7) 광고수익을 제외한 일간지 및 정기간행물 판매
- 8) 가구가 없는 주택의 임대(료)
- 9) 다음 주체에 의한 국제수송관련 거래
 - 공해에서 산업 또는 무역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또는 배
 - 구난용 배 또는 지원용 배
 - CEMAC의 세관 법(Le Code des Douanes de la CEMAC) 제158조 규정과 제158조 이후 후속 규정에 따른, 국가 간 왕래하는 항공기 및 선박, 이러한 왕래관련 서비스
- 10) 사회, 교육, 스포츠, 문화, 자선 또는 종교적 성격을 갖는 서비스 또는 거래로, 그 운영이 자선적이고 헌신적인 비영리 기관에 의해 그 회원에게 제공되고 그리고 이러한 거래가 그 회원들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 이익을 집단적으로 보호하는 것과 직결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되, 이러한 거래가 민간분야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세금부과
- 11) 세법 부속서(Anexo I bis)⁷⁸⁾에 명시된 자본재
- 12) 관세유예 제도 : 세금부과를 연기하거나 잠정 중지하는 것으로, 광업, 석유 및 산림 분야 기업에 적용가능. 단, 탐사, 시굴, 연구 활동 수행에 꼭 필요한 투자재에 한정

81) 별첨 1 참조

82) 별첨 2 참조

- 13)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공공기관 활동관련은 과세 대상에서 면제 (단, 산업 및 상업분야 거래 시는 과세대상).

투자 인센티브

- 1) 적도기니에 투자 외국기업의 세제 혜택: 1992.4.30 법률(Ley Núm. 7/1.992/적도기니 내 투자관련 특별법)
- 신규고용 창출관련, 과세대상 소득에서 내국인 직원에 지불된 급여의 50%를 공제
 - 내국인 직원교육관련, 과세대상 소득에서 내국인 교육비(급여제외)의 200%를 공제
 - ‘비전통적 상품의 수출(*)지원관련, 적도기니에 있는 은행에 외화로 입금된 비전통적 상품수출의 FOB 가격의 15%에 상당하는 신용증서 수혜(동 신용증서는 세금 또는 관세 지불에 사용)
 - 신용증서: Certificado de crédito
 - * 비 전통상품 수출(Exportaciones no tradicionales):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부가가치를 높인 상품
 - 지역개발관련, 대도시와 떨어진 지역에서 승인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 수혜
 - 지불된 인프라 비용 총액 감가상각. 동 비용 지불 회계 연도에 적용하며, 손실 발생 시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 가능
 - 모든 종류의 납세의무 면제. 단, 소득세, 판매세, 관세 및 회사사업에 적용되는 기타 세금은 제외
 - 내국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회사의 경우, 내국인 보유 회사지분 금액에 계수1%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 2)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순익의 외국송금과 그 자본의 본국 송금이 가능

3) 면세 항구(지역)

가) 위치

- 말라보: K5 Oil Center 항구(석유분야 기업의 보관, 수리, 조달 등 물류 기지)
- Luba: Luba Freeport 항구(석유분야 기업의 보관, 수리, 조달 등 물류 기지)

나) 면세지역의 모든 기업은 아래 세금 면제

- 면세지역에서 사용할 모든 재화 또는 석유분야용 모든 재화에 대한 수입세금 면제
- 법인세
- 부가가치세(IVA)
- 개인 소득세(IRPF)
- 배당금에 대한 세금

* 이러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도기니 정부에 신청필요

정부조달 장벽

정부사업은 관보에 게재하고 공개경쟁 입찰 제도를 통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개의 정부 발주 사업은 적도기니 기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입찰 정보를 제공하여 제한적 경쟁 입찰을 통해 발주하거나, 기업이 인프라 부나 GE Proyectos(국책사업 발주/관리 담당기관)에 제안하고 협상에 따른 수의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자의 요청이나 개입으로 발주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절차와 상관없이 발주가 되는 사례도 있다.

정부발주 사업은 적도기니에 법인 설립이후에 참여가능하며, 동 법인(기업)은 적도기니인 몫의 5~10%의 이익배당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적도기니 재정(財政)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3개년(2014~16) 경제·재정 보완

대책 / Decreto Num. 72/2014 : 2014년 5월 21일자 대통령령은 아래 요지의 “정부 발주, 공사/용역의 수주와 이에 대한 적도기니 정부의 대금 지불관련 내용” 규정하고 있다.

- 세금면제 절차
- 공사/용역수주와 경비지불 조건 : 납세번호(NIF)구비 필수, 국가계약법 절차 준수, 사전타당성 조사필수, 기 수주 공사 중 미 실행 공사 재검토 대상
- 공공투자 공사경비 지불 : 년 3회로 제한

* 위 대통령령 상세내용 : <http://blog.naver.com/sompat/220057498272>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협약 가입

- 베른 협약
- WIPO(World International Property Organization)
- PCT Union(국제 특허 협력 연합)
- OAPI(아프리카 지적 재산권 기구)
- Bangui 협약
- 산업 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조약

OAPI

적도기니는 OAPI 회원국으로, 적도기니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OAPI 등록 필요

지적재산권관련 OAPI 설립협정의 10개 부속서 개요

- 부속서 I : 발명특허
- 부속서 II : 실용신안(實用新案)권
- 부속서 III : 상표와 서비스표
- 부속서 IV : 산업디자인

- 부속서 V : 상호(商號)
- 부속서 VI : 지리적 표시
- 부속서 VII : 문예저작권
- 부속서 VIII : 부정경쟁방지
- 부속서 IX : 집적 회로(集積回路) 배치설계
- 부속서 X : 식물신품종보호(2006년 1월 1일 발효)

지식 재산권 보호 현황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협약과 관련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담당기관(CICTE/적도기니 과학기술연구위원회)을 1987년 설립, 제도적인 틀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 부재로 인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결여와 행정역량의 부족으로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통제가 이뤄 지지 않고 있으며, 약품,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등 불법 복제품이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다. 서적의 경우 출판사의 부재와 공급의 어려움으로 불법적인 복사가 만연하다.

기타 장벽

지사 설치상의 제약

적도기니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외국 회사의 지사 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적도기니 국내에서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외국 회사는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지사는 무역부령으로 면제받지 않는 한, 지사 설립 2년 이내에 적도기니의 법에 의한 법인등록을 하여야 한다(OHADA 관련 규정 참조)

- OHADA 관련 규정: “회사와 경제이익그룹 관련 통일법 (ACTE UNIFORME RELATIF AU DROIT COMMERCIAL)제120조
- 적도기니 포함 아프리카 17개국에 적용되는 규정

법인 설립 제약

기업 활동에 내국인 참여 강화하는 보완규정 관련 대통령령(Decreto Núm 127/2.004)에서는 적도기니에 설립되는 외국인 회사에 대한 적도기니 국적인의 최소 참여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외국회사의 독단적인 법인 설립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2018년 4월 비 석유분야 투자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내국인 참여 없이 단독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석유분야 투자는 내국인 참여 의무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회사 지분: 적도기니 국적인의 지분이 최소 회사자본의 35%로 규정
- 주주: 적도기니 국적인 최소 3인
- 이사회 구성: 전체 이사회 의 최소 1/3 이상

법인 설립 절차상의 제약⁷⁹⁾

적도기니의 법인 설립 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증인이 말라보에 1인, 바타에 1인 소재하며, 부재 중일 경우가 많아 예상 소요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공증 비용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기존에 가장 중요한 절차였던 총리실로부터의 회사 설립 허가는 최소 기간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소요되었는데 법인 설립이 적도기니 진출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었다. 한편, 적도기니 정부는 총리실 허가절차를 철회하여 기존 법인설립 소요기간이 135일에서 56일로 대폭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17개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인절차 간소화 목적으로 2017년 9월 12일 기업원스톱창구(Ventanilla Única Empresarial)설립 법령(Decreto Número 67/2017)을 제정 공포하여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이나 전반적으로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의 법인설립 편의성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190개 국 중 적도기니는 183위(2020년)를 기록하면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83) 별첨 5, 6 참조

비자 및 거주 증

적도기니 입국을 위해서는 입국비자 혹은 입국허가서(Autorización de Entrada)를 소지하여야 한다. 적도기니 입국비자는 주 중국 적도기니 대사관에 비자 발급 신청해야하며, 적도기니 입국허가서는 적도기니 내 초청기업 혹은 단체에서 피초청인을 위한 입국허가서를 적도기니 국가안보부에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적도기니 1개월 단수 비자 공식 수수료는 50,000XAF(약 100USD)이나, 현실적으로는 대행비용을 포함하여 약 500~1,500 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입국허가서는 피초청인이 적도기니 입국 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고, 비자공식 수수료 50,000XAF를 지불하면 도착비자(체류허가기간 1개월)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법 제 21조에 의하면 적도기니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 노동 및 거주비자(Visado de Trabajo y Residencia)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노동비자나 장기체류비자는 일반적으로 발급하지 않는다. 이에 적도기니 진출 기업이나 현지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경우 현지에서 체류비자(Permanencia)혹은 거주증(Permiso de Residencia)을 국가안보부에 신청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부에 노동허가를 (Permiso de Trabajo)신청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으며, 노동허가는 거주증 신청 시 구비해야할 필수요건 중 하나이다.

2012년 8월부터 적도기니 정부는 합법적 체류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외국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자에게는 체류자격 미비 근로자 1인당 5천만XAF의 과태료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외국인 근로자수 제한 (Expat Quota)

적도기니 내 일반 민간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전체 근로자의 10%까지 제한되어 있으며, 탄화수소, 광업, 농업분야 종사 기업의 경우 노동고용촉진 사회보장부에 사전허가 신청으로 30%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 세법 부속서 ANEXO I 부가 가치세 면제 생활 필수 품목

1	인슐린과 그 결정성 분말
2	키니네와 그 결정성 분말
3	항생제
4	제약(의약품)
5	비료
6	치과용 왁스
7	방사선 판 및 테이프
8	방사선 필름
9	살충제
10	고무 재질 위생 및 의약 제품
11	(외과)수술용 장갑
12	교과서
13	안경 렌즈
14	실험실(연구소)의료-외과용 소독기
15	휠체어와 기타 장애인용 이동수단
16	휠체어와 기타 장애인용 이동수단의 부품
16	보정 렌즈
17	의료-외과용 기구
18	치과용 의자
19	기타 의학·수술용 기구들
20	기타 농업 소비재

◦ 세법 부속서 ANEXO I (bis) 부가 가치세 면제 장비 목록

7308	주탑, 교각, 교량 등 철골 구조물과 그 자재
84021100	시간당 45톤을 초과하는 증기를 생산하는 다관식 증기 보일러
84021200	시간당 45톤을 증기를 생산하는 다관식 증기 보일러
84021900	혼합식 보일러를 포함한 기타 증기 보일러
84022000	"온수 보일러"로 칭하는(알려진) 기타 보일러
84031000	기타 보일러
84051000	가스 발전기
84061100	선박 추진을 위한 증기 터빈
84061900	기타 증기 터빈
84071000	항공기용 모터
84072910	10,000kg 혹은 그 미만의 선박의 피스톤 (연소) 엔진(선외 엔진제외)
84072920	10,000kg 이상 선박의 피스톤 (연소) 엔진
84081091	10,000kg 혹은 그 미만 선박의 디젤 엔진(선외 엔진 제외)

84081092	10,000kg 이상 선박의 디젤 엔진
84091000	항공기용 양수기
84101200	1000에서 10,000kw의 동력을 지닌 수력 터빈과 수차
84101300	10,000kw를 상회하는 동력을 지닌 수력 터빈과 수차
84111100	25kn를 넘지 않는 터보제트엔진
84111200	25kn를 초과하는 터보제트엔진
84112100	1,000kw의 동력을 초과하지 않는 터보 추진기
84112200	1,100kw의 동력을 상회하는 터보 추진기
84118100	5,000kw의 동력을 초과하지 않는 기타 가스 터빈
84118200	5,000kw의 동력을 초과하는 기타 가스 터빈
84122100	터보제트엔진 이외에 반동추진엔진
84122900	수평 운동 유압 엔진
84122900	기타 유압 엔진
84123100	수평 운동 공압 엔진
84123900	기타 공압 엔진
84128000	기타 엔진과 원동 기계
84131100	주유소와 수리공장(정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 공급을 위한 펌프
84131900	주유 측정 펌프
84132000	841311 혹은 841319외에 레버 핸들 펌프
84133000	스파크 혹은 압축 점화 엔진에 필요한 연료, 오일 혹은 냉각수 펌프
84134000	콘크리트 펌프
84135000	기타 왕복식 펌프
84136000	기타 다른 회전식 펌프
84137000	기타 원심 펌프
84138100	기타 액체 펌프
84138200	해당 번역 없음
84141000	진공 펌프
84143000	냉동 장비에 사용되는 컴프레서
84144000	이동식 에어컴프레서
84161000	액체 연료 연소기(소각기)
84132000	혼합을 포함한 기타 연소기
84163000	자동 전구
84171000	광물과 금속 제련 전기로
84172000	제빵과 제과용 비 전기 오븐
84178000	기타 비 전기오븐
84191100 부터 84198900 까지	조리(요리)나 볶음과 같이 온도의 변화가 필요한 작업용 기구와 장치
84201000	압착 인쇄기와 박판기
84211100	원심 분리기; 액체의 정련이나 여과를 위한 기구
84213900	혹은 가스의 정련이나 여과를 위한 기구(상동)

84223000	병, 용기, 자루(saco)에 내용물을 채우고, 봉하고 대조하거나 라벨을 붙이기 위한 기계나 기구, 음료 탄산가스 혼합기
84221000	상품 포장 기계나 기구
84241000 부터 84248990 까지	기타 방출, 분산, 분쇄기 류
84251100	전기 모터 기구
84251900	기타 기구
84252000	경도 내의 이동 칸(jaula)과 광차의 상하 이동을 위한 핸드원치
84253100	핸드 원치와 전기 원치
84253900	기타 핸드원치와 원치
84254100	정비소용 차량 리프트
84254200	기타 잭과 유압잭
84254910	기타 잭과 기압 잭
84261100 부터 84269900 까지	견인기(견인차)와 기증기
84271000 부터 84279000 까지	지게차와 운반차
84281000 부터 84289000 까지	적재, 선적 혹은 운반을 위한 기계와 기구
84291000 부터 84295900 까지	굴착기, 그레이더, 불도저, 로드 롤러차
84031000 부터 84306900 까지	기타 토지의 절성토 및 운반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
84331900 부터 84336000 까지	농산물을 수확 혹은 탈곡 기계
84341000 부터 84342000 까지	착유기 및 착유장의 기계 및 기구
84351000	인쇄
84361000 부터 84368000 까지	농업, 원예 조림과 양계에 필요한 기타 기계와 기구
84371010 부터 84378000 까지	밀가루 제조 혹은 곡물 가공 기
84381000 부터 84388000 까지	음료 및 식품 제조기
84391000 부터 84399100 까지	섬유 재질 펄프나 종이나 판지 생산기계 와 기구
84401000	제본기
84411140 부터 84418000 까지	기타 종이나 판지의 펄프 작업과 관련된 기계
84421000 부터 84423000 까지	인쇄판 생산기

84431100 부터 84433600 까지	인쇄기
84440000	섬유 방직기
84451100 부터 84459000 까지	직물기 (섬유추출, 방적, 직물)
84471100 부터 84479000 까지	니트 기계
84490000	펠트 또는 비 직물의 생산기나 재봉기
84514000	세탁, 표백, 드라이 클리닝을 위한 기계
84515000	직물을 되감고 절단하고 부수기(빨기?) 위한 기계
84518000	기타 방직기
84522100 부터 84522900 까지	가정용 이외의 재봉기(84521000제외)
84531000 부터 84538000 까지	가죽의 생산이나 무두질 혹은 작업을 위한 기계
84541000 부터 84543000 까지	금속가공과 제강 및 정련에 필요한 기계, 변환기
84551000 부터 84553000 까지	금속 압연기
84561000 부터 94569000 까지	레이저 혹은 초음파로 작동되는 기계나 도구
84571000 부터 84573000 까지	금속 가공을 위한 복합 공작 기계
84581100 부터 84589900 까지	고철 처리 크레인
84591000 부터 84597000 까지	금속 천공, 신축, 가공기 등
84601100 부터 84609000 까지	금속 마무리 작업 기계
94611000 부터 84619000 까지	금속 광택, 절단 기계
84621000 부터 84629900 까지	기계(금속을 단련하거나 모양을 가하기 위한 것을 포함)
84631000 부터 84639000 까지	기타 금속 가공기계
84641000 부터 84649000 까지	요업 제품의 석재 가공을 위한 기계
84651000 부터 84659000 까지	목재, 경질 고무, 플라스틱 재질 작업 기계
84681000 부터 84688000 까지	용접기계
84702100	프린터 전자회로기

84741000 부터 84748000 까지	선별, 구별, 분쇄 및 분말기 혹은 기구
84751000	형광등 조립기
84752000	유리 제조 혹은 가열기
84771000 부터 84778000 까지	플라스틱 원자재 고무 작업 기계
84781000	담배 조제 기계
84791000	공공사업과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계
84792000	오일을 추출하거나 조제하는 기계나 기구
84793000	입자 패널 생산 압착기
84794000	전선 기계
84798100	기타 금속 가공 기계(권선기 포함)
84798200	기타 혼합, 분쇄 기계
8480	거무집

6%의 부가가치세 적용 상품 품목

1	육류 및 식용가금류
2	우유 및 설탕이나 감미료 첨가 되지 않은 크림
3	우유 및 설탕이나 감미료가 첨가 된 크림
4	빵
5	쌀
6	어린 아이들의 영양 섭취를 위한 것들
7	책 혹은 교과서

특별세 적용 상품

장, 관, 항	제품 설명	CATEGORIAS 범주	특별세	CEMAC 기여금
2203.00.00	품목 20.90의 주스류를 제외한 기타 무알콜 음료	IV	20%	15%
2203.00.00	6.5%이상의 알콜량을 포함한 맥주와 품목 2203.00.90의 맥아음료	IV	25%	15%
2204.10.10 2204.10.90 2204.21.10 2204.21.20	스파클링 와인과 기타 와인. 그 용기의 용량이 2리터를 초과하는 2204.29.20 과 22.04.29.330항목의 경작 포도주 및 다양한 포도주	IV	40%	30%

장, 관, 항	제품 설명	CATEGORIAS 범주	특별세	CEMAC 기여금
2204.21.30 2204.29.10				
2205.90.00 2207.10.90 2208.00.00	베르무트와 다른 포도주 및 기타 주류. 발효주(사이드); 에틸알코올 혹은 변성 알코올. 그 함유량이 80%나 그 이상인 약용 주류 생산용(식수, 포도 독주, 위스키, 럼주, 비 변성 에틸알코올 함유량 80%, 아니스 증류주와 기타 15% 알코올 함량의 주류)	IV	50%	35%
2401.00.00	가공되지 않거나 제초되지 않은 담배, 담배 잔재	II	50%	25%
2402.00.00	시가, 담배/ 큰 담배 혹은 담배 대용품	IV	50%	25%
2403.00.00	기타 담배와 담배 대용품	II, III, IV	50%	25%
3301.00.00	정유, 합성수지, 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	II	20%	10%
3202.00.00	향 물질 혼합물과 이 물질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물질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하위 생산품	II	20%	10%
3303.00.00	향수 및 화장수	IV	32%	25%
3304.00.00	미용 제품 혹은 화장품, 의약품이 아닌 피부 미용 제품, 태양열 차단 제품과 태닝제품, 매니큐어 혹은 페디큐어 제품(모든 하위 품목)	IV	32%	25%
3305.00.00	모발 제품(샴푸, 파마제품, 헤어 스프레이 및 기타)	IV	32%	25%
3306.00.00	구강과 치아 위생 관련 상품과 치아 청결을 위한 크림(모든 하위 품목)	IV	32%	25%
3307.00.00	면도제품 또는 아프터셰이브, 방취용 화장품, 제모용품, 크림, 바디로션과 기타 향수 제품 혹은 살균제 포함 여부에 상관없는 화장품 및 기타 (모든 하위 품목)	IV	32%	25%
7101.00.00				
7116.00.00	진주, 장신구, 보석 혹은 준보석, 귀금속과 그 세공품 모조 보석, 경화 (모든 하위 품목)	IV	20%	
8521.10.00	동영상 촬영 및 재생기기 혹은 자기 테이프	IV	20%	
8521.90.00	기타 동영상 촬영 및 재생기기			
8525.30.00	텔레비전 카메라	II	20%	
8528.10.10	컬러 모니터 및 비디오 영사기	IV	20%	
9006.40.00	플래시 장착카메라	IV	20%	
9006.51.00	35mm를 넘지 않는 영화용 카메라	IV	25%	

장, 관, 항	제품 설명	CATEGORIAS 범주	특별세	CEMAC 기여금
9006.52.00	35mm미만 영화용 카메라	Ⅳ	25%	
9006.53.00	35mm 영화용 카메라	Ⅳ	25%	
9006.59.00	기타 카메라	Ⅳ	25%	
9007.11.00	길이 16mm 혹은 더블8mm 미만 영화용 카메라	Ⅳ	25%	
9007.19.00	기타 카메라	Ⅳ	25%	
9007.21.00	장편영화 영사기	Ⅳ	25%	
9007.29.00	기타 영화 영사기	Ⅳ	25%	
9008.10.00	영사기	Ⅳ	25%	
9008.30.00	기타 고정 영사기	Ⅳ	25%	
9008.40.00	확대 및 축소 카메라	Ⅳ	26%	
9301.a9307	무기, 탄약 및 부속품	Ⅳ	27%	

◉ 적도기니 법인 등록 구비 서류

1. 모회사의 정관 공증 사본, 스페인어 공증 번역본.
2. 모회사 이사회의 적도기니 내 법인 설립 결정 관한 의사 결의안 사본, 스페인어 공증 번역본.
3. 적도기니 내 법인장 선임에 관한 모회사 이사회의 의사 결의안 사본, 스페인어 공증 번역본 - 주의: 본 법인장은 현지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제시하여야 하며 모든 필요 서류에 대해 서명을 해야 한다.
4. 변호사 혹은 법률 회사를 회사 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권한을 위임 한다는 스페인어 위임장(모회사가 변호사/법률회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모회사에서 1차적으로 지사장에게 위임장을 주고 지사장이 변호사/법률회사에게 재차 위임 가능함.)
5. 적도기니에서 제공할 영역 목록
6. 회사의 기술이나 집행 능력에 대한 기술서류(전년도Financial Report 등)
7. 적도기니 법인장 및 이사들의 여권 복사본
8. 적도기니 은행 계좌 번호
9. 적도기니에서의 투자 계획 안(간략하게 작성 가능)
10. 회사에서 고용할 외국인 및 내국인 수(남녀 구분)
11. 내국인 고용안과 양성계획안
12. 지사장의 여권사진 8매
13. 분할하여 지급 할 자본금(> XAF 10,000,000)

◉ 적대기니 법인 설립 절차 및 예상 소요 시간

절차	절차 내용	예상소요시간	예상비용
1	공증인이 회사 정관을 공인한다. (법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관례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회사 정관을 작성한다. 법으로 공증인이 회사 정관을 공증해야 하고 공증증서를 발급하며 공증인은 말라보에 1인, 바타에 1인 주재) 기업원스톱창구(V)에서 공인 가능	9일	자본의 1%
2	상업 등기소에 회사 정관 (공증증서)을 등록 (등록을 위하여, 사업자는 회사정관 공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유일한 회사명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전조회를 하지 않고 해당회사명이 이미 존재한다면 상업등기소에서 등록 신청을 거절한다.)	2일	1,000,000 XAF
3	법인 계좌 개설 및 은행 지불 증명서 발급 (법적으로는 회사등록 이전에 최소자본을 예금해야 하지만 법인구좌를 열기위해서는 공증정관과 등록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1일	-
4	지불능력증명서(Certificate of Solvency) 발급 (지불능력증명서는 재정경제기획부에서 발급받는다.)	2일	XAF 10,000 ~ 15,000 (수입인지)
5	통상중소기업진흥부의 비즈니스민간투자자에 등록 신청. 연 납부금은 회사에 따라 변동	1일	XAF 100,000
6	* 통상중소기업진흥부의 상무과에 등록 신청. 연 납부금은 회사에 따라 변동	1일	XAF 150,000
7	* 세금 등록 신청: 재무청(Public Treasury) 혹은 기업원스톱창구(Ventanilla Unica Empresarial)에서 신청가능 - 회사 설립 허가서와 회사 공인 정관 사본 첨부해야 한다. - 납부금은 재무청(Public Treasury)의 구좌에 입금해야 한다. - 재무청으로 부터 납부금 입금 확인증을 받은 후 세금등록관 할당국에서 납세자번호를 취득한다. - 모든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허가 신청 혹은 신고한 후 해당 납입금을 입금하고 재무청의 입금 확인 발급 받아 각 관계 부처에 제출하고 최종 허가를 받는 방법이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1일	자본의 2%
8	* 노동고용촉진사회보장부에 운영 개시 신고 - 운영을 개시하면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임금의 1%, 피고용인은 0.5%를 노동자보호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 표기된 납부금은 공식적인 납부금으로 실제로는 더 높을 수 있다.	1일	XAF 300 (서식) XAF 6,750 (소규모) - XAF 12,500 (중)
9	재무청의 구좌로 납입금 입금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납입금은 민간은행을 통해 재무청 구좌로 직접 입금해야 한다.	1일	7~8번 절차에 포함

절차	절차 내용	예상소요시간	예상비용
10	*재무청으로부터 납입금 확인증 수령	4일	-
11	*통상중소기업진흥부의 비즈니스민간투자국에 납입금 수령증을 제출하고 허가증을 취득	14일	-
12	*통산중소기업진흥부에 납입금 수령증을 제출하고 허가증을 취득	14일	-
13	*납세자 번호 취득: 재정경제기획부 혹은 기업원스톱창구에서 취득	2일	7번 절차에 포함
14	*노동고용촉진사회보장부에서 등록번호 취득	1일	8번 절차에 포함
15	*피고용인 사회보장번호 취득	1일	-
16	* 사회보장(INSESO) 등록 - 기업은 사회보장기관(INSESO)에 종업원 첫 급여 지급 월에 사회보장 등록을 해야 하며, 사회보장납부금은 고용주 피고용인 월급의 21.5%를, 피고용인이 월급의 4.5% 부담한다.	1일	페이지당 300XAF

주: * 표는 동시에 진행 가능



카메룬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경제 개관

공식국명	카메룬(Cameroon)
수도	야운데(Yaoundé)
면적	475,442km ²
인구	2790만명(2021년, UN 기준), 인구성장률 2.5%
주요도시	Douala 186만명, Yaoundé (수도) 227만명, Garoua 114만명, Bamenda 170만명, Maroua 255만명, Bafoussam 184만명, Ngaoundéré 68만명, Bertoua 71만명
언어	프랑스어, 영어
종교	천주교/기독교(45%), 이슬람교(22%), 토속종교(25%) 등
기대수명	(2021년) 남성 59세, 여성 62세
인터넷 사용율	38%(2020년)
건국일	1960.1.1 카메룬 공화국 수립
정부형태	공화제
국가원수	폴 비야 대통령
입법부	양원제 280의석 (상원 100명, 하원 180명), 임기 5년
기후	○ 남부에서 북부로 올라갈수록 열대우림기후에서 사바나, 사하라 사막성 기후로 바뀜 ○ 야운데: 건기(6-9월, 11월말-3월), 우기(4-5월, 9월말-11월)
시차	- 8시간 (한국시각 오전 9시가 현지시각 오전 1시)

주요 경제 지표

기초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 452.4억 달러 (2021년, World Bank) ○ 경제성장률(GDP) : 3.5% (2021년, World Bank) ○ 구성(GDP 대비) : 농업 17.1%, 제조업 23.8%, 서비스 51.6% (2021년, INS) ○ 1인당 GDP : 1,667달러 (2021년, World Bank)
정부부채	GDP대비 45.5% (2021년, IMF)
소비자물가	2.3% (2021년, IMF)
화폐단위	CFA Franc
환율	1EURO = 655.957CFA (유로화 고정)
외환보유고	89억 달러(2021년, BEAC)
수출비중	GDP대비 18.2% (2021년 IMF)
교역액	102억 달러 (2021년, IMF)
수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수출 41억 달러, 수입 61억 달러) ○ 2020년 (수출 40억 달러, 수입 58억 달러) ○ 2019년 (수출 53억 달러, 수입 56억 달러) ○ 2018년 (수출 58억 달러, 수입 56억 달러) ○ 2017년 (수출 52억 달러, 수입 52억 달러) ○ 2016년 (수출 49억 달러, 수입 49억 달러) ○ 2015년 (수출 60억 달러, 수입 73억 달러)
주요수출품	원유, 원목, 코코아, 목화, 커피 등
주요수입품	석유류, 기계류, 전기장비, 중고자동차, 식료품 등
주요수출국	덴마크(22.6%), 중국(15.8%), 인도(9.7%), 미국(6.7%), 이태리(6.0%), 스페인(4.8%), 벨기에(4.7%), 프랑스(4.0%) (2021년, IMF)
주요수입국	중국(23.9%), 프랑스(7.2%), 러시아(7.0%), 인도(5.6%), 나이지리아(4.8%), 인도(5.0%), 네덜란드(3.8%)(2021년, IMF)

한-카메룬 경제 관계

무역

(1) 최근 교역 추이

카메룬은 주로 원자재와 농산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1차 산업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도 미미하여 수출 98백만 달러, 수입 75백만 달러(2021년 기준, 한국무역협회) 수준에 불과하다.

◉ 對카메룬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21	98	206.3	75	33.9
2020	32	41.6	56	47.5
2019	23	-51.5	38	1319.7
2018	47	72.7	3	-95.4
2017	27	14.3	58	1,890.1
2016	24	-22.6	3	-93.1
2015	31	-35.6	43	659.1
2014	48	9.9	6	-43.2
2013	44	-19.5	10	-7.2
2012	54	-22.8	11	-74.6
2011	70	45.4	42	316.8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석유제품, 의약품, 합성수지, 전자응용기기 등이며, 주요 수입품으로는 2020년 이후 2022년 3분기까지 천연가스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외 철강판, 연제품, 목재류 등이 수입되고 있다.

카메룬은 최근 전력접근성 제고를 위해 발전시설 및 송배전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바, 전력설비 및 부품 관련기업의 진출이 유망해 보인다. 반면 자원개발 분야는 진입장벽이 높고, 특히 금,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수출관련 사기 및 허위

업체가 다수 존재하므로 동분야 진출이나 거래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카메룬 수입시장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20% 내외를 꾸준히 점유하면서 중국의 對아프리카 대규모 투자와 연계하여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카메룬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중국	17.3	18.9	20.1	23.0	23.9
프랑스	9.8	8.7	9.2	8.6	7.2
러시아	2.6	2.5	2.5	2.9	7.0
인도	3.6	2.8	4.0	4.4	5.6
나이지리아	4.9	5.0	4.8	4.6	4.8
미국	3.5	3.8	4.0	3.5	2.3
태국	5.8	3.5	5.0	2.8	2.0

자료: IMF

(2) 수출입 품목

◦ 주요 수출 품목(MTI 4단위 기준)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20		2021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경유	-	0.0	40,860	-
2	의약품	10,256	546.2	13,320	29.9
3	합성수지	3,490	-8.8	12,204	249.7
4	기타석유화학제품	3,089	-1.0	5,712	84.9
5	의료용전자기기	211	239.2	5,688	2,599.2
6	기타석유제품	1,979	-23.8	2,257	14.0
7	철구조물	2,411	716.4	1,967	-18.4
8	승용차	1,479	18.3	1,918	29.7
9	X선및방사선기기	214	53.8	1,287	500.2
10	건설중장비	14	-97.8	868	5,976.3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요 수입 품목(MTI 4단위 기준)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20		2021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천연가스	51,043	0.0	70,861	38.8
2	연괴및스크랩	378	-51.3	921	143.8
3	열연강판	0	0.0	831	0.0
4	인쇄회로	0	-100.0	464	0.0
5	제재목	116	-51.3	173	49.8
6	기타기계류	47	0.0	148	212.4
7	무선전화기	480	3,285.2	135	-71.8
8	계측기	2	-25.3	131	6,439.5
9	커피류	45	-55.9	128	185.8
10	무선통신기기부품	98	0.0	118	20.2

자료: 한국무역협회

우리기업의 투자 진출

(1) 우리나라의 대 카메룬 투자진출 현황

2021년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법인 현황에 따르면 카메룬내 국내 투자 진출법인수는 총 6개사이나, 이중 한국자원투자개발(KORID)을 제외한 5개사는 2017년 이후 카메룬내 법인세 납부실적이 없어 실제 활동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국자원투자개발(KORID)이 2014년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주식·금 광업권을 인수하면서 신규로 진출했으며(약 80만불 규모, 신고액 기준), 2016년 이후 국내 기업 진출은 전무한 상황이다.

202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법인 현황

현지법인명	현지법인주요품목	최초신고일자
KOCAM MINING INC S.A.	금, 사파이어	2008.09.17.
KORPEC CAMEROON	건축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	2009.03.30.
AK MINING AND SHIPPING COMPANY	금, 다이아몬드 및 기타 광물	2010.06.04.
IBG CAMEROON	목재	2012.05.08.
한국자원투자개발(KORID)	주석, 우라늄	2014.11.07.
G.N.S SARL	모래 및 자갈	2015.05.14.

○ 對카메룬 투자진출 현황(202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법인 현황)

투자	'10 이전	'11	'12	'13	'14	'15	'16	'17이후	누계
신규법인수	3	0	1	0	1	10	0	0	15
투자액(천USD)	391	0	40	0	806	940	330	0	2,507

(2) 대 카메룬 투자진출 부진 사유

카메룬으로의 투자 부진은 부정부패, 정치적 불안정 등 투자 유인 요인이 부족함에 기인한다. 2021년도 기준 카메룬의 부패지수 순위는 전체 180개 국가중 144위로 순위는 상승했으나 지수는 25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조세제도 등 기업 운영에 많은 불투명성이 존재한다. 아울러 정부 관료의 비공식적 행정비용 요구도 많아 기업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세계은행 그룹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에 따르면 카메룬은 전세계 190개 국가 중 167위 아프리카 54개 국가중 39위를 기록했다. 또한 2018년도에 7선에 성공하며 당선된 현 대통령의 고령화 및 건강악화 문제, 북서부주와 남서부주 영어권 분리독립주의자들의 소요사태로 인한 정세불안 요인도 국내기업의 투자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카메룬의 부실한 인프라 및 열악한 생활 환경도 부진 이유로 들 수 있다. 카메룬은 전력 수요 대비 공급이 매우 부족한 국가로, 전력 접근성은 가구수 기준으로 69.1%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지방의 경우 발전소 및 계통연계가 열악하여 전력접근성은 22%에 그친다. 전력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 약 70%에 이른다. 도로 포장율(2022년 5월 기준)도 전체 121,679 km 중 6.0%에 불과한 7,275km만 포장되어 있어 물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카메룬내 철도망(2019년)은 1,925km에 이르나 협궤로서 목재 등 화물 운송에 주로 사용되며, 승객 이동용으로는 사용율은 낮으며 매년 감소추세이다.

카메룬 경제 동향

경제 개요

카메룬은 농업에 유리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고, 각종 광물, 석유·가스,

산림 등 천연자원도 풍부하다. 카메룬 경제는 농산물 및 천연자원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1차 수출품의 국제가격 등락은 카메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카메룬의 경제개발은 정부의 관리 미숙, 부패의 만연 등과 같이 비우호적 기업환경으로 인해 부진한 상태이다. 카메룬은 세계은행의 연례 국별 기업환경 여건조사 (Ease of doing Business)등에서 세계 최하위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정부의 부패 문제가 늘 지적되고 있다.

2010년대 초 카메룬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산유량 증가 및 국제 고유가로 인해 연평균 5%대의 성장률을 이루었으나, 이는 당초 이 기간 중 기대했던 연평균 5.5%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2016년도에는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해 4.45% 성장에 그쳤으며, 2017년도에는 2010년대 들어 최하인 3.18%를 기록하였다. 2018년도부터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2019년에는 3.9%까지 회복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부문 타격이 커 0.73% 성장에 그쳤다. 그러나, 코로나19 중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유가 상승과 방역 조치의 점진적 완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2021년 GDP 성장률이 3.5%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반등하여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카메룬은 독립 후 25년여간 아프리카에서 가장 풍요로운 국가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카메룬의 주요 수출품인 원유, 코코아, 커피, 면화 등의 국제가격 폭락, 통화가치의 과대평가 문제, 경제관리 실패 등의 제 요인이 겹쳐 10년 이상의 장기 불황을 경험했다. 1986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 중 실질 GDP가 무려 60% 이상 감소하였으며, 반면 경상수지 적자, 재정 적자 및 대외 부채는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카메룬은 1980년대 후반부터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를 시행해야 했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며, 1994년 1월에는 카메룬을 중심으로 한 CEMAC 국가들이 사용하는 세파프랑(XAF) 가치가 50% 절하되었고 1995년에는 공무원 봉급이 65% 삭감되는 일까지 있었다. 2005.10월 IMF가 승인한 3년 기한의 빈곤감소 및 성장프로그램(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PRGF)은 2008년말 종료되었다. 그러나 2017년 정부부채가 GDP의 30%를 상회하면서 경제구조 개혁을 조건으로 IMF로부터 다시 6.7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으며, 대외부채 축소, 세수 확대 및 재정 건전성 확보등 긴축 정책을 추진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2020년 6월 종료되었다. 2021.7월말 IMF는 새로운 경제 및 금융 프로그램을 개시하여 2022년 2월 기준 약 4.9억 불의 지출을 통해 카메룬 정부의 성과 지표 개선을 위한 개혁을 지원중으로, 공공재정관리, 부채, 공기업과 채무관리 영역에서 더디게나마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카메룬 정부는 구조조정 및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 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나,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기에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IMF 통계상 2022년 인플레이 상승률은 4.6%로 예상된다. 이는 CEMAC이 권고한 인플레이션 상승율 최대치인 3%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카메룬은 그간 2019년 이후 2021년까지 3년간 2.5% 미만으로 물가수준을 유지해왔으나, 러우전쟁 발발과 급격히 상승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카메룬 물가수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은 취약 계층을 강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 온 국영기업의 민영화 역시 부진한 상태이다. 2007년 국영수도회사(National Water Utility: SNEC) 민영화를 위해 수도 인프라를 관장하는 CAMWATER와 수도물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하는 SNEC로 분리하여 SNEC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모로코수도회사(Moroccan Water Utility)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인 ONEP의 관리 부실로 2018년 민영화 계약이 종료되고 정부소유인 CAMWATER가 수도부분을 총괄하고 있다.

국영항공사 CAMAIR 및 국영통신회사 CAMTEL을 민영화하려는 계획은 이 분야의 정치적 민감성과 외국 투자자들의 카메룬내 부패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CAMTEL은 우정통신부 감독 하에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CAMAIR는 공식적으로 사망선고를 받고 2008년 5월 모든 취항을 중단했다가 2009년도에 Camair-Co를 재설립하여 2011년 3월부터 취항을 재개했다. 그러나 Camair-Co는 현재까지 끊임없는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쳐 운항을 4개월간 중단한 바 있으며, 자구책으로 지분의 51%를 민간 사업자에게 이양했다.

카메룬의 대외교역에 있어서 프랑스 등 유럽연합국가들이 전체수출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아프리카 진출로 중국과의 교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은 최근 카메룬 중·저가 공산품 시장을 석권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카메룬산 목재를 대량 수입해 감으로써 카메룬의 신흥 교역 상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타 지역 주요 무역상대국으로는 나이지리아, 미국, 태국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가 주요 교역국으로 급부상 중이다. 미국은 카메룬의 주요 투자국으로서 차드-카메룬 송유관 등 에너지 분야 및 플랜테이션 농작물 재배(Del Monte)에 진출해 있다. 카메룬은 천혜의 농업환경 및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인해 아프리카에서 자연조건이 가장 유리한 국가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유리한 농업환경 여건에도 불구하고 탈곡기술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인 쌀 부족으로 태국으로부터의 쌀 수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카메룬 정부는 선진국의 외채 탕감 또는 상환기간 연장, 민영화 정책 지속 추진, 부패방지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장기간 누적되어 온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외국인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되어 온 정부의 비능률적인 경제관리, 관료주의와 부패, 대외부채의 증가 등을 향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부가 카메룬 경제·사회 발전의 관건이다. 최근에는 IMF가 경제구조 개혁 일환으로 대규모 차관도입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중국등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여 추진하기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대부분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편, 당초 2019년도에 개최 예정이었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축구대회 개최는 준비 부족과 코로나19 발생으로 대회가 지연되기도 했으나 축구대회 개최 위해 경기장, 도로, 호텔, 병원등 인프라 시설 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결과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카메룬 정부 예산

카메룬의 2021년 예산은 4조 8,652억 세파프랑으로 전년보다 5% 증가했고

2022년 예산은 카메룬의 2022년 예산은 5조 7,524억 세파프랑으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 증액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 경제구조 전환 및 통합적 사회발전 등을 위한 공공투자예산을 증액한 데 기인한다.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2020년에는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면서 마이너스 성장(-1.66)을 보였고 국제기구 등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차관 지원으로 부채규모는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1년 코로나19 중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유가 상승과 방역 조치의 점진적 완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2021년 GDP 성장률이 3.5%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반등하였다. 한편, 러우전쟁 등 세계적인 혼란으로 인해 투자 및 교역조건 악화, 급속한 인플레이션 등 경제발전 전망은 기대에 못미치는 3.6% 수준으로 예상된다.

◦ 카메룬 GDP 성장률 추이(IMF)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망)
5.0	5.1	4.45	3.18	4.0	3.9	-1.66	3.5	3.6

◦ 카메룬 주요 수출입 품목(2020)

구 분	주요 수출품목(비중 %)	주요 수입품목(비중 %)
상 품	원유 (35.1) 코코아 (13.8) 목재 (13.8) 면화 (6.2) 알루미늄(2.8) 커피 (0.9)	석유 및 윤활유 (15.7) 공작 및 전기기계 (12.0) 곡물 (11.7) 산업용식료품(8.0) 금속제품(7.5) 수송장비 (5.7)

카메룬 경제는 원유·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대외 환경변화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유럽 및 중국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당초 예상한 경제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카메룬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를 통한 산업구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전력, 도로 등 기본 인프라 구축 및 영농 분야 기계화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중이다. 한편 2016년 12월 IMF총재가 중앙아프리카 경제공동체(CEMAC) 6개국⁸⁴⁾ 정상과 회담을 갖고, 6개국 공통화폐(세파프랑)에 대한 평가절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6개국 정상들의 강력한 반대로 해당 결정을 보류하였다. IMF는 유가하락으로 CEMAC 경제가 급속 악화되고 있어 원활한 해외투자 등 친기업적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세파의 평가절하를 권고하였으나, 각국은 물가상승과 정국불안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였다. 최근 UN의 아프리카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카메룬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추진 사업에 대한 해외 원조 및 투자자금을 적극 유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카메룬이 부가가치 제품 생산 및 글로벌 가치사슬내 편입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설 기반확충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조언한 바 있다.

경제 악화에 따른 IMF 구제금융 지원

IMF는 2017년 6월말 경제혁신을 조건으로 카메룬에 약 6.7억 달러 경협 차관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IMF는 매년 2회의 경제개혁 실사 평가 및 IMF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3년간 총 7회에 걸쳐 ECF(Extended Credit Facility) 차관을 분할 지원하기로 하고, 당초 2020년 6월 종료하기로 한 지원 프로그램을 3개월 연장하여 2020년 9월 종료하였다. IMF 실사단의 평가에 따르면 카메룬의 경제개혁 프로그램 이행성과는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부문의 합리적 지출을 위한 정책과 채무감축계획 수립등은 긍정적인 요소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정부 부채규모와 아프리카네이션스컵 축구대회 연기로 인한 경기부양효과 감소등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1) IMF 경제 평가 및 전망

IMF는 카메룬이 국제유가 하락 및 보코하람으로 인한 테러 위협으로 인해 2014년 이후 경제성장률 하락뿐 아니라 대외부채 증가 및 외환보유고 감소와

84) 카메룬,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가봉, 적도기니

같은 부정적인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IMF는 향후 카메룬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확보 ▲대외부채 감소 ▲석유 판매수익 이외의 재정수입(non-oil revenue base) 확대 ▲우선순위에 따른 공공인프라 건설 ▲합리적인 재정지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카메룬이 IMF가 제시한 경제혁신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지출의 효과성을 최대한 제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조만간 내년도 예산안이 작성되면 IMF 권고 사항들(긴축재정 및 세수기반 확대 등)이 동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경제위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외부채 증가규모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IMF 차관이 지원되는 3년간(2017~20) 대외부채 증가규모는 최대 2조 세파프랑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공분야 부채와 관련해서는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간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은행을 통해 민간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를 조속히 변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2020년 코로나19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IMF는 2020년 5월 카메룬에 대해서도 226백만 달러의 긴급신속차관(Rapid Credit Facility)(무이자, 상환기간 10년) 지원을 결정하였다. 카메룬 정부는 동 차관을 주로 코로나19 대응 및 저유가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며, IMF는 동 차관 지원을 통해 정부의 과도한 재정적자를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1.7월말 IMF는 새로운 경제 및 금융 프로그램을 개시하여 2022년 2월 기준 약 4.9억불의 지출을 통해 카메룬 정부의 성과 지표 개선을 위한 개혁을 지원중으로, 공공재정관리, 부채, 공기업과 채무관리 영역에서 더디게나마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카메룬 정부는 구조조정 및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 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나,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기에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

(2) 카메룬 경제 주요 현안

(정국 불안 가능성) ▲최북단 지역의 보코하람 테러, ▲중앙아프리카 난민 유입, ▲서부 영어권 지역의 소요사태 등은 매우 가시적인 불안요소들이며, 특히

서부 영어권 지역의 소요사태는 동 지역의 경제활동을 마비시켜 주재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구조 혁신) 정부재정을 건전화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규세원 발굴 및 대외부채 규모 축소 등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2017~20년 동안 IMF가 구제금융 지원조건으로 정부 지출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한 바, 카메룬 정부의 경제구조 개혁프로그램 이행 성과는 양호한 편이나 대규모 프로젝트의 차관 도입 제한, 공공기관 부채규모 축소 등 많은 과제를 제시하였다.

(화폐 평가절하 가능성) IMF가 제시한 경제혁신 방안에는 카메룬의 화폐 평가절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세파프랑의 평가절하는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며, 관련국들은 평가절하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이 다원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화폐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국민 생활경제에 엄청난 고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IMF와 카메룬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 및 대외부채 경감 등 경제구조 혁신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산업발전 전략

(중장기 발전방안) 카메룬 정부는 중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전력망 구축 등 기본 인프라 건설에 주력할 뿐 아니라 기업환경 개선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카메룬내 풍부한 수력발전 잠재력(DR콩고에 이어 아프리카내 2위) 및 재생에너지 자원 등을 활용하여 전력수급률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현재 총 발전규모 1.3GW의 1%(약 14MW)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규모를 2035년까지 25%로 확대한다는 방침하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등을 확대 추진중이다. 또한 현재 수도 야운데에서 북동쪽으로 65km 떨어진 Sanaga 강 유역에 Nachtigal 수력발전소를 건설중으로 2021~22년 사이 완공시 카메룬 전력수요의 상당부분(30% 이상 예상)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발전 전략) 카메룬 정부는 원자재 및 1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계획을 수립 시행중이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산업별 육성전략(National Industrial Master Plan)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농업연관 산업, 에너지·자원 산업 및 디지털 정보통신 산업 등 3대 산업분야를 중점 육성함으로써 연관 산업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카메룬이 2035년까지 신흥국 진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Vision 2035” 정책은 2021년까지 총 GDP의 24%를 제조업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으며, 2020년 기준 14.4%를 달성하였다.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

(환율) CFA 프랑은 €1=CFAfr655.957의 고정환율로 유로화에 연동되어 있다. 최근 유로화 약세의 영향은 유로화에 연동되어 있는 현지화폐에도 영향을 미쳐 현지화폐가 평가절하되고 있는 상황으로 (2021년 상반기, 1\$당 533 CFA 전후 → 2022년 9월말 기준, 1\$당 685 CFA이상), 2021년 5월 이후 달러화가 지속 상승하여 2022년 하반기동안 1\$당 630CFA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물가) 카메룬 정부는 물가수준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으나 매년 전체 수입액의 10~15%인 5~6억 달러 가량이 쌀과 밀, 어류 수입에 쓰이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 품목의 국제시세에 따라 물가가 크게 좌우되고 있다. 또한 환율 하락은 수입 상품 가격을 상승시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켰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곡물가격의 상승은 카메룬 경제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준바, 2008년 이후 처음 밀과 빵 가격 인상을 결정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2년 러우 전쟁, 세계 인플레이션 급등 등 국제 경제·정치 상황으로 인해 2022년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작년대비 5.8% 인상되었다. 이에 카메룬 정부 당국은 석유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소비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세, 선적전 검사 프로그램의 유예 등의 조치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카메룬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AfCFTA) 카메룬은 2018년 3월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제10차 African Union(AU) 총회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에 서명하였다. AfCFTA 협정은 2019.5.30. 일부로 공식 발효되었으며, 카메룬도 2019.7.19. 일자로 동 협정에 대한 비준을 완료하였다. 카메룬은 당초 2020.7.1. 일자로 공식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6개월 연기되어 2021.1.1. 일자로 공식 개시하였으며, 협정 이행을 위해 수출진흥원(Export Promotion Agency) 설립을 발표했으나 아직 계획 단계이다. 한편 AfCFTA 발효후 1여년 이상 AfCFTA에 따라 상업적으로 의미있는 거래가 시작되지 않았던바, AfCFTA 사무국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2년 10월 파일럿 이니셔티브인 Guided Trade Initiative (GTI)를 추진하였다. 카메룬은 상품에 대한 관세양허안이 완전히 승인되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국가로서 GTI 시범국가 8개국에 선정되었다. 그 결과 카메룬에서 2022년 10월 6일 AfCFTA 우대세율에 따른 첫번째 수출이 이뤄진 바 있다.

(기업환경 및 국가경쟁력 최하위권) 카메룬은 세계은행그룹이 매년 실시하는 기업 환경 평가에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167위(전체 190개국)를 기록하는 등 하위권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카메룬 국내 기업환경뿐 아니라 국경간 무역을 위한 제도기반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다. 예컨대, 수출과 수입을 위한 절차에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수출에 평균 11일 소요되고, 수입에는 평균 18일이 소요되어 OECD 국가 평균 4일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한 컨테이너 당 수입화물의 경우 지불되는 비용이 2,256달러로 OECD 평균인 1,100달러 보다 2배이상 높은 수준이다. 2019년 World Economic Forum 보고서에 따르면, 카메룬의 국가경쟁력은 2018년도보다 2단계 더 하락하여 전체 140국중 123위로 이는 낙후된 인프라, 부족한 전기, 교육 및 일자리 부족, 열악한 기업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코하람) 카메룬 최북부지역과 인접한 나이지리아내 이슬람 반군인 보코하람에 대해 2017년 3월 주재국은 나이지리아 정부군과의 연합작전으로 보코하람 테러리스트 60명을 사살하고 인질 5천여명을 구출하는 등 보코하람 세력에 대한 군사작전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코하람은 단순한 테러에 따른 치안 불안을 넘어 카메룬과 차드 및 나이지리아의 국경 무역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중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치안이 안전한 지역으로 꼽혔던 카메룬이 치안 불안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른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카메룬은 중앙아프리카경제통화동맹(CEMAC) 회원국 가운데 최초로 1994년 관세 및 투자법령을 시행한 바 있는데, 새로운 법령은 수입에 대한 수량제한을 없애고 비관세 보호장치와 많은 수입면허요건을 철폐하였으며, 관세산정 방식을 단순화하였다. 이에 따라 이론상으로는 1998년 1월부터 CEMAC 회원국 간 교역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철폐되고 부가가치세(VAT)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 달성은 지연되고 있어서 CEMAC 회원국에 대해서도 관세와 VAT가 모두 적용되고 있다.

카메룬의 관세는 수입품목의 CIF 가격에 대해 부과된다. 카메룬에서는 관세 사기가 팽배하며 SGS(수출입품검사기관)의 산정 대상이 되지 않는 수입품목의 가격을 둘러싸고 세관원과의 시간을 오래 끄는 협상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

카메룬 정부는 2001년 7월 관세 산정에 관한 WTO 협정을 2001년 7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1994년 지역재정개혁프로그램(Regional Fiscal Reform Program)은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6가지 관세 및 세금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공동대외관세(Common External Tariff), 일반화된 특혜관세(Generalized Preferential Tariff), 잠정적인 추징금(Temporary Surcharge), 물품세(Excise Tax),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기타 서비스세(Service Tax)

공동대외관세(불어 약자로 TEC)는 대상 상품을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5~20% 사이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카테고리	내용	TEC 세율
I	필수품목(장관령에 의해 정하며, 필수식품, 의약품 등과 같은 품목임.)	5
II	원료 및 기구	10
III	중간재 (반가공제품)	20
IV	최종제품 (소비재)	30

부가가치세(VAT 또는 불어로 TVA)는 소비세이며, 카메룬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의 CIF 가격에 관세를 더한 것으로서 위의 카테고리 I에 속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19.25%의 비율로 부과된다.

간접세로서 25%를 부과하는 물품세는 장관령이 정하는 리스트에 포함된 사치성 물품에 부과되며, 마지막으로 지역통합세(Regional Integration Tax: 불어 약자로 TCI) 1.0%가 부과됨. 물품세와 지역통합세는 수입품의 CIF 가격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이러한 관세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므로 카메룬에 수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관세청(Customs Administration) 또는 카메룬 정부를 위해 하적 이전의 화물을 검색하고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을 받는 즉시 수입신고서를 발급하는 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SGS: 화물의 선적 또는 제조 물품의 성능에 관련된 전통적인 검사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기업)를 접촉해야 한다.

수입 정책

수입 면허

1994년부터 카메룬 정부는 수입면허 취득 절차를 단순화하였다. 수입업자는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에 등록하고 가액이 200만 CFA 이상되는 모든 수입품을 SGS에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특별 수입허가가 부여된다. 수입업자는 재무부 세무국(Tax Department)으로부터 납세자카드(Taxpayer's card)를 받아야 하며, 공공사업과 관련된 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건설업자는 동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동 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의 일부로 간주될 경우에는 재무부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EMAC은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역 면허 제도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임시 수입허가는 카메룬 시장에서 판매하기를 원하는 몇 명의 대형 수입업자에 대해서만 부여되는데 최장 1년간 보관이 허용되며, 보통 보증금이 요구된다.

보관료는 화물이 상륙한 날부터 산정되며, 수입업자는 전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보관물품이 나갈 때마다 관세를 지불한다. 정부는 임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창고를 제공하며, 일부 몇 대형수입업자와 화물 운송회사도 임시수입을 위해 정부가 감독하는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과 같은 내륙국가로 보내는 물품은 카메룬 세관에 가액을 바탕으로 산정한 수입세를 재수출의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화물 운송업자의 창고에 보관되어 물품이 행선지로 발송되기 위해 창고에서 반출될 때 보증금은 반환된다.

수입 허가 관련 서류

카메룬에서의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상업견적서(commercial invoice)와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을 제시해야 한다. 선박번호와 번호는 견적서와 물품에 표시된 것과 부합해야 한다. 육상운송을 위해서는 견적서 3부가 필요하며, 항공운송을 위해 견적서가 4부 필요하다.

수입물품 가액이 200만CFA를 초과할 경우에만 은행 거래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SGS로부터 검사 결과 이상한 점이 없음을 요구하는 선적 이전 검사합격증을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고의류와 같은 특정 수입품의 경우에는 미감염 증명서(certificate of non-infestation)가 요구되기도 한다. SGS는 중고 자동차 수입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 수수료를 도입하였다.

특정한 범주의 수출의 경우에는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다. 커피와 코코아 수출의 경우에는 2개의 정부가 인정하는 품질검사회사 가운데 한 곳으로부터 품질 등급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금과 다이아몬드와 같은 “전략적” 제품과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품목(예를 들어 살아있는 동물 및 약용식물을 포함한다. CITES 협약에 규율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면허가 필요하다. 한편 카메룬 정부는 환경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몇 가지 형태의 임산물 수출은 금지하고 있다.

2000년 12월부터 통관 절차를 한 군데에서 전부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선박 도착 48시간 이전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처음

에는 이러한 혁신적인 조치가 서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주었으나, 세관 관리들의 부패로 인한 절차 지연으로 정상적인 처리가 계속 방해를 받고 있다. 국제해사 취급촉진위원회(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Facilitation Committee)는 세관과 관련된 지연을 어떻게 하면 더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수입 규제

수입 제한 분류

카메룬은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 자유화가 되어 있으나 내수 산업 보호 또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 제한 또는 전면 수입 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카메룬에 수입되는 품목은 제한 정도에 따라 3개 분류로 구분된다.

- 1) 수입 자유화 품목: 제한이 전혀 없음
- 2) 수입 부분 제한 품목: 수입시 사전 승인이나 허가증 필요
- 3) 수입이 완전히 금지되어있는 수입 금지 품목

선적전 검사 제도 운영

카메룬은 원칙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을 수출국에서 선적하기 전에 수입검사기관(SGS)을 통해 품질, 수량, 가격을 사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FOB 기준 2,000,000CFA 미만일 경우에는 선적전 사전검사도 면제하고 있으나, 전체 수입 승인액이 2,000,000CFA 이상이고 이중 일부만이 수입되어 2,000,000CFA 미만이 된 경우에는 사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액 2,000,000CFA 미만으로서 SGS의 선적전 검사가 면제되는 품목으로는 귀금속, 예술품, 살아있는 동물, 철 스크랩, 신문, 중고차를 포함 개인 생활용품, 6개월 이상 사용된 관광용 중고차, 상업용 샘플, 석유시추용 장비 및 물품, 외국기관 수입물품, 기부용품, 군에 의한 수입물품, 자유무역지대 수입물품 등이 있다.

수입 제한 품목

- 고체 비누로 규정에 맞지 않는 것
- 담배-건강 손상 문구 및 니코틴 함유량 등을 삽입해야 함
- 의약품-사용법과 사용 증상을 영어와 불어로 동시 표기해야 함
- 수의약품-수의사를 통해서만 수입 가능
- 식용 육류
- 바다 생선 또는 양식 어류
- 의약용 비누
- pyrotechnic articles, beacon rockets 등 폭발물
- 전파 송수신기
- 무기와 탄약
- 귀금속 물질(금, 플래티늄, 사파이어 등)
- 우라늄, 토륨, 드레늄 등 방사선 물질과 방사선 요소를 포함한 장비
- 이소다인을 최대 100ppm 함유하거나 또는 100mg/kg 포함한 소금
- 밀가루: 성분 검사 강제
- 녹화된 비디오테이프

수입 금지 품목

- 모조품
- “IBERO” oil and “Turkey Brand” vegetal oil
- “McRAY SCOTCH Whisky”
- 유독성 또는 산업 폐기물
- 비 이소다인 소금

- 나이지라로부터의 밀 수입
- Bovine meat of European origin
- intetrix p granules 포함 의약품
- phenolphthalein 포함 의약품: MUCINUM, PURGANOL
- 아시아로부터 우유 수입
- 비누류
 - Jabiru antiseptic soap germicidal
 - HG 12 germicidal soap
 - Mipipo germicidal soap
 - Roberts Medicated soap
 - skingard antiseptic soap
 - crusader Medicatd Soap
 - Tropex Medicated Soap
 - Bicu Soap
- 소독용 살충제

Cock brand, double cock brand, DDT를 함유한 cock brand superior
-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농업용 살충제

Captafol, Binapacryl, Cyhexatin, Haipen, Merpafol, Chemox general, Dapacryl, Endosan, Octalox, Octalene, Aldrex, Aldrite, Drinox, Subitex, Vertac, Ambox, Caldon, Phenotan, Basanite
- 하기의 스킨 트리트먼트 크림

Mipipo Medicated Cream, IKB Medicated Cream
 IKB Medicated Extra Cream, MIC Medicated Cream
 Crusader Skin Toning Cream, Elegance Skin Toning Cream
 Symbi Cream, Skin clear Cream, Nice Super Cream
 Tura Medicated Cream, Amba Cream

통관

카메룬에서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에 등록하여 납세번호(Tax Payers Card Number)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 후 통상 2~3일이 걸린다.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항공화물의 경우 최대 이틀, 해상화물은 2~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통관지체가 심해 통상 2주 내외 기간이 소요된다. 특히 2014년도의 경우에는 항구에 누적 장치된 컨테이너로 인해 화물의 선적 발송에 최소 3~4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수출선적기일 미준수가 빈번해지고, 수입물량의 하적도 지연된 바 있다. 또한 10~12월 중 도착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화물 적체로 인해 통관에 소요되는 시일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음. 수입상 또는 수입 에이전트는 상품 도착 72시간 전까지 SGS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Commercial Invoice
- List of parcels
- Import declaration and payment receipt
- Insurance Certificate
- Certificate of origin
- Fumigation certificate
- Copy of Bill of lading

통관 절차는 납세번호 발급 → 전산 등록 → 화물 x-ray 검사 → 체크아웃으로 진행이 되며, 통상적으로 납세번호 발급 및 전산등록에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최초 수입의 경우에 납세번호 발급에는 적게는 2일에서 많게는 10일 이상 소요되기도 하므로 화물 도착 전에 납세번호 발급 등 필요서류를 미리 구비해야 통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015년 9월 4일, 카메룬 관세청은 우리나라 관세청과 MOU를 맺고, 우리나라의 전자통관시스템 (UNI- PASS)을 도입하기로, 향후 3년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후 12년간 유지보수하기로 하였다 (총 2억 3천만 달러 규모). 이에 따라 카메룬 정부와 우리 국가관세총합정보망 연합회(CUPIA)는 2017년 1월부터 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 진행하여 2020

년 6월 카메룬 전역의 세관에서 카메룬 전자통관시스템(CAMPASS)이 운영에 돌입하였다. 우리 UNI-PASS 시스템 도입으로 카메룬의 통관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관세수입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양국간 관세행정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관세 시스템뿐 아니라 그 동안 축적된 관세 행정 노하우까지 전수함으로써 카메룬 관세행정 선진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운송

카메룬에는 각 주별로 총 10개의 민항기 취항 공항이 있으나, 국제공항은 두알라, 야운데, 가루아 등 3개이며, 두알라와 야운데 공항이 외국 취항 항공 노선 거점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카메룬에는 Douala, Limbe, Kribi 등 3개의 항구가 있으며, 상선의 90% 이상이 두알라항을 통해 입항하며, 두알라항을 통해 연간 800만톤 이상의 화물이 처리되고 있다. 두알라 항은 11개의 선석을 보유하고 있고, 컨테이너 처리가 용이하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수심이 6미터로서 매우 얕아 3만톤 이상의 대형 선박 입항이 불가하여 수심이 깊은 Limbe항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카메룬까지의 해상 운송 비용은 보통 1 컨테이너 당 4,000달러 수준이며, 운송 소요 기간은 50~60일 정도 소요되나 운송 비용 등 옵션에 따라 소요기간이 10여일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카메룬은 세계지적재산기구의 회원이며 회원국과 협력하여 특허 및 상표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17개국으로 구성된 아프리카지적재산기구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불어약자로 OAPI) 회원국이자 동기구의 본부 소재지이다. 카메룬에서 특허는 처음에는 10년간 유효하다. 동 특허가 OAPI 회원국 가운데 적어도 한 나라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매 5년마다 갱신된다. 계속 사용되지 않으면 강제적인 허가는 3년 후에 할 수 있다. 상표보호는 처음에는 20년간 유효하며, 그 후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저작권의 경우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동안 보호받게 된다. 카메룬은 또한 공업재산에 관한 파리협약,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당사국이나, 작은 시장규모,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정부 관리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부족, 일반인들의 지식재산권 존중의식 부재 등 때문에 카메룬에서 지식재산권은 실질적으로 준수되고 있지 못하다. 카메룬은 WTO의 TRIPs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상표와 저작권 침해는 통상적으로 볼 수 있다. 미국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카메룬 정부 관리들은 지적재산,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abelling 및 표시 요건

카메룬에 수입되는 통조림 제품의 상표 붙이기와 표시 요건은 제조일자와 만료 일자를 깡통 위쪽에 새겨 넣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고 명료하게 읽을 수 있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포장하여야 한다. 또한 영어 및/또는 불어로 언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소비해야 하는지 명기하여야 하는데, 라벨에는 불어와 영어로 원산지, 제조자의 성명 및 주소, 상품명, 미터법에 의한 중량, 및 사용 원료 등을 명기하는 것이 권장된다. 추가적으로 카메룬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의무적으로 미리 라벨을 붙여야 하는데, 수입인지와 같은 형태의 이 라벨비용은 담배 선적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에 수입업자가 미리 지불해야 한다. 담배갑에는 “흡연은 당신의 건강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한편 카메룬에서 판매되는 어떠한 유전자조작식품(GMO)이라도 전부 그런 사실을 밝히는 방식으로 포장하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동 라벨을 붙인 상품을 찾을 수는 없어 아직 엄격하게 시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품질 표준 및 규제에 대한 사항은 2009년에 설립된 ANOR(Cameroon Standards and Quality Agency)가 관할을 하고 있으며, 다관 식품에 대한 것은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서 관할하고 있다.

규제시스템의 투명성

카메룬의 사업 관련 법은 이론적으로는 명확하나, 이러한 법의 이행은 단순하지가 않다. 현재와 같은 사법제도 하에서 국내외 투자자가 계약상의 권리를 이행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으며 영터리 같은 제소에 대항해서 자신을 방어해 나가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카메룬은 2000년 아프리카에서 사업 관련 법률을 조화시키기 위한 기구(OHADA) 규정을 도입하였다. 프랑스어 사용지역에 대한 투자자는 OHADA 지침의 유용성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OHADA 규정을 영어사용 지역에서 이행하는 데는 문제가 많으며, 카메룬에서는 아직도 OHADA 규정을 해석하는 데 이견이 있다.

카메룬 투자 여건

강 점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서부 아프리카 공략의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 풍부한 자원 - 강력하고 안정된 정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설립에 많은 경비와 장시일 소요 - 취약한 조세 및 관세 시스템 - 만연한 부정 부패 - 열악한 인프라

카메룬내 기업 운영 여건

카메룬은 World Bank가 조사한 「Ease of Doing Business in Cameroon」에서 2018년 보다 1단계 하락한 167위에 랭크되었다. 이는 납세 부분을 제외한 전 지표에서 등급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부패지수도 2016년도에 145위, 2017년도 153위, 2018년도 152위에 이어 2019년도에도 153위를 기록하는 등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또한 World Economic Forum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카메룬의 국가경쟁력은 전체 140개국 중 123위로 평가되었으며, 2018년 121위보다 2단계 하락하였다. 전반적으로는 지난 몇 년간 카메룬의

순위는 큰 변동없이 최하위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만성적인 전기 부족, 낙후된 인프라 수준, 교육기관 및 직업의 부족, 열악한 기업환경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 Ease of Doing Business in Cameroon

분 야	2018년 순위	2019년 순위	순위 변동
전체	167위/190개국	166위/190개국	↓1
창업 환경	92	104	↓12
건축 인허가	132	154	↓22
전력 확보	129	133	↓4
자산 등록	176	175	↓1
신용 확보	73	80	↓7
투자자 보호	140	157	↓17
납세	182	181	↑1
국경간 무역	186	186	-
계약 체결	166	167	-
분규 해결	127	129	↓2

자료: World Bank : 최신 보고서에 접근 불가하여 수정 못함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현재 양국간 투자보호에 관한 조약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 공화국간의 투자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발효(2018.4.13.) 중이다.

투자 관련 법령

- Investment Code 1990
 - 카메룬 투자의 기본법령
 -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국인의 소유권에 한도 규정
- Investment Charter
 - Investment Code의 후속 절차로서 2002.4월 채택하였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Investment Code와 달리 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규정 삭제
- 2002년 투자헌장의 효력발생시 외국인 투자승인은 3가지로 분류가 예정되나 어떤 종류의 투자에 어떤 절차가 적용될 것인지 불확실
 - automatic regime: 정부의 사전 승인절차 없이 투자를 허용
 - returns regime: 투자 신청 후 별도의 거부 없이 2일 경과시 투자를 허용
 - approval regime: 투자 신청 후 15일이 경과할 경우 투자를 허용
- 분야별 투자 관련 부속 법령
 - 투자헌장이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분야별 시행령을 입안할 23개의 위원회를 설치함
 - Forestry Sector Code(1994), Petroleum Sector Code(1999) 및 Mining Sector Code(2001) 등 몇 가지 시행령은 이미 채택이 되었음
- 대형 투자자 사전 고지
 - 투자금액: 1억CFA 이상 직접투자자
 - 고지기관: 기획재정부(MINEFAT)
 - 고지시기: 실제 투자 신청 30일 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 지분 소유 제한 없음
 - 외국인 100% 지분 소유 회사 설립 가능
- 외화 송금 자유
 - 투자자본, 이익금 및 청산 잔액의 해외송금 자유
- 투자기업 생산 재화 수출 면세
 - 카메룬내 생산된 제품(반제품)의 수출시 세금, 보험료, 운송료 면제
- 조세 혜택
 - 카메룬내 투자기업은 설립 후 2년 동안 세금 면제

- 노동법 적용 일부 배제
 - 노동법에 따르지 않고 직원 채용시 계약 자유권 부여
 - 다만, 최저 임금(28,215CFA) 수준은 준수해야 함

산업자유지대 (IFZ: Industrial Free Zone)

(1) 지정 지역

- 1990년 1월 29일에 제정된 법(Free Trade Regime)에 규정
-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Industrial Free Zone의 입주 조건을 갖춘 기업 입주지역을 말함

(2) 입주 자격

- 카메룬에서 생산된 제품 중 80% 이상을 카메룬 이외에 수출하는 기업

(3) 입주 절차

- i) IFZ 신청서를 관할 기관인 NOIFZ(National Office for Industrial Free Zone)에 신청
- ii) NOIFZ에 의해 완성된 신청서가 소관부처 장관에 의해 30일 이내에 승인을 받으면 IFZ로 인정. 30일내에 별도의 결정통보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
- iii) IFZ 승인 서류
 - Developer's Permit/Oprator's Permit, Certificate of Compliance

(4) 입주시 혜택

- * IFZ 승인이 이루어지면 입주 혜택 자동 부여
- 행정 절차 간소화
 - 신청일로부터 30일내 각종 인허가 완료 원스톱 서비스
 - 수출입 화물 현장 세관 검사 및 수화물 항구 직통 연결

- 영업 통제 완화
 - 수출입 관련 면허, 쿼타 제한 배제, 승인 면제
 - 가격 및 마진 통제 면제
 - 연간 생산량 중 일부를 현지 기업에 관세와 세금을 내고 판매 가능
- 세금 혜택
 - 10년간 세금 부과 없음(tax holiday)
 - 11년차부터 이익의 15%에 대한 일괄 세금 적용
- 재무적 혜택
 - 현지 은행에 외환계좌 개설 보유권 부여
 - 외환 매도수 및 환전 자유
- 무역관련 혜택
 - 수출증명 프로그램 적용 배제
 - 로칼 구매제품을 활용 생산제품에 대한 판매세 등 면제
- 고용 관련 혜택
 - 노동법상 임금 기준 테이블 적용 배제
 - 고용주와 노동자간 고용 협상 자유권 부여
 - 가동 5년후 전체 근로자의 20% 이내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노동허가권 자동 부여
 - 현지 국민연금관리공단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체 플랜 적용 가능

(5) NOFIZ (National Office for Industrial Free Zone)

- 기능: Industrial Free Zone 관리 심사 기관

투자 관련 지원 기관

(1) API (Investment Promotion Agency)

- 설립년도: 2010년 1월 22일

- 기능

- 카메룬 투자 환경 홍보
- 투자유치 활동 전개

(2) SNI (The National Investment Corporation of Cameroon)

- 설립년도: 1964년
- 기능: 저축 촉진, 국내 자본과 해외 자본의 연결 기능 수행

(3) APME (SME Promotion Agency)

- 설립년도: 2013년 9월
- 기능: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기능 수행

(4) Le Comitee Paritaire (투자모니터위원회)

- 설립년도: 2013년
- 기능: 국무총리실 산하 자문기관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분석

외국기업의 투자 진출 현황

연도별 카메룬에 대한 외국의 직접 투자 금액

구분	2017	2018	2019	2020
순투자유입(백만 달러)	814	765	782	488
누적투자액(백만 달러)	7,237	7,652	8,434	8,922
그린필드 투자액 (백만 달러)	603	329	1,188	
GDP 대비 누적투자액 비율(%)	20.7	19.8	21.6	

자료: UNCTAD

주요 외국 투자 진출 기업

투자국	투자자
프랑스	Orange : 통신 (Orange)

투자국	투자자
	BOLLORE : 철도 (CAMRAIL) CASTEL : 음료 (CASTEL) COMPAGNIE FRUITIERE : 설탕제조 Vilgrain : 식품 TOTAL : 정유 (TOTAL) PERENCO : 정유 (PERENCO) LAFARGE GROUP : 시멘트 CFAO : 물류 SGBC/CREDIT LYONNAIS/BICEC : 금융 AXA/AGF/GRAS SAVOYE/SOSUCAM : 보험 VINCI/BOUYGES/RAZEL/SCET : 건설
미국	COLGATE : 생활용품 (COLGATE-PALMOLIVE) GEOVIC Mining Corporation : 자원개발
영국	ACTIS : 전력 (ENEO) Globelec : 전력
독일	Allianz : 보험 Autohaus Volkswagen : 자동차
스위스	Nestle : 식품 Barry Callebaut : 식품
남아공	MTN : 통신 (MTN) Tiger Brands : 식품
중국	Sinosteel/China Harbour Engineering Company : 건설 China Petrochemical Corp/sinochem : 화학 Huawei : 통신 CNMEC/CNEEC/Sinohydro : 전력·기계
베트남	Viettel : 통신 (NEXTEL)

투자 결정시 유의 사항

◦ 투자 타당성 분석시 투자수익률

해외투자는 기본적으로 각종 정보와 수치를 기반으로 투자수익률을 따져 투자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합당하나 카메룬을 비롯 아프리카에서는 다양한 외부변수는 물론 예상치 않은 비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익률은 보수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제도와 운영은 별개

카메룬도 각종 관세제도 및 조세체계를 갖추어져 있으나 이들 제도에

따라 반드시 운영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제도와는 전혀 별개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시스템을 벗어난 상황 발생에 따른 시기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

◦ 비정상적인 위험요인 고려

아프리카는 다양한 기업운영상 위험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들 요인들은 언제 기업 운영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카메룬 투자시 고려해야 할 위험요인으로는 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 카메룬내 활화산인 몽카메룬의 폭발, 기타 각종 제도의 급작스런 변동에 따른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소요사태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여야 한다.

투자 절차

투자 법인 형태 및 특징

◦ 법인 형태 및 특징

법인 형태	Societe Anonyme (S.A)	Societe a Responsibilite Limitee (S.A.R.L)
투자가 책임한도	무한책임	납입 자본내 유한책임
최소 파트너/주주 수	2인	7인
최소 자본금	1,000만세파프랑	100만세파프랑
주식 액면가	10,000세파프랑	5,000세파프랑
설립시 출자금액	최소 자본금의 1/4	최소자본금 전액 출자

현지 법인 설립 절차

□ 구비서류

- 국내 서류: 모든 서류는 영문 공증 필
 - 본사(법인)정관
 - 비파산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년도 회계 증명서
- 현지법인설립 결정의사록
- 범죄기록증명서
- 현지 서류
 - 현지 법인 정관
 - 이사회 명단(신분증/여권 사본 첨부)
 - 현지법인설립 위임장
 - 현지은행 계좌 개설(본사 명의)
 - 자본금 납입증명서 등

□ 설립절차

- 1) 서류 공증 및 자본금 입금 계좌 개설
 - 현지 공증인(변호사 등)에게 위 구비서류의 공증을 받고 자본금 입금을 위한 임시 계좌(창업중 회사 계좌) 개설 신청서 작성
- 2) 자본금 납입 및 영수증 발급
 - 법인 형태에 따른 최소 자본금 납입 후 영수증 확보
- 3) 정관 작성 및 서명
 - 현지 공증인(변호사 등)을 통해 정관과 해외법인 설립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소요비용 130,395세파프랑)
- 4) 대표자의 범죄경력증명서 징구
 - 최근 3년간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징구함(소요비용 5,000세파프랑)
- 5) 법인 등록
 - 필요 서류

- 해외법인설립결의록: 각면 정부 인지 부착(인지대 각 1,000세파프랑)
- 정관: 각면 정부 인지 부착(인지대 각 1,000세파프랑)
- 현지화 계획서 및 부동산 계약서
- 이사진의 범죄 경력서
- 결혼증명서와 사진
- 등록 기관: 관할 법원 법인 등록센터
- 등록 비용

자본금 규모	등록비
750,000세파프랑 이하	2%
750,001~1,500,000세파프랑	1.5%
1,5001~3,000,000세파프랑	1%
3,000,001~5,000,000세파프랑	0.5%
5,000,000세파프랑 초과	0.25%, 최대 2,500,000프랑

6) 법인 설립 공고

- 게재 일간지: Cameroun Tribune
- 소요비용:
 - 공고비용: 76,000세파프랑
 - 신문 게재비용: 50,000~97,000세파프랑

7) 사업자 등록증 발급

- 납부 기관: 관할 세무서
- 소요 비용: 67,200세파프랑
 - 등록세는 예상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

8) 납세증 발급

- 발급 기관: 관할 세무서
- 소요 비용: 1,500세파프랑

- 소요 기일: 14일

9) 지방 노동청 등에 법인설립 통보

10) CNPS(연금 및 고용보험공단)에 직원 등록

- 직원별 급여액수에 따라 CNPS에 매월 보험료 납부
(사용자 부담분: 기본급의 16.2%)

□ 변호사 및 공증 비용

- 현행 제도하에서는 자본금이 1천만세파프랑인 주식회사의 경우, 비용은 공증인 및 변호사 비용(업무대행료)이 약 250만세파프랑,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시 80만세파프랑이 소요됨.

공장 설립 절차

(1) 토지 대장 입수

- 발급처: 법원 지적과(Cadastre)
- 소요비용: 1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21일

(2) 토지 등기부등본 입수

- 발급처: 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 소요비용: 2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21일

(3) 도시계획서 입수

- 발급처: 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 소요비용: 2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21일

(4) 지질 평가서

- 발급처: 평가 인증 회사(Labogenie, Geofor, Apave 등)
- 소요비용: 1,20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2일

(5) 건축 허가

- 관할기관: Urban Council
- 소요비용: 3,92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45일(공식적인 소요기간은 최장 90일)
- 필요 서류
 - 허가 신청서
 - 소유권 증명서
 - 도시계획증명서
 - 위치도

(6) 현장 실사

- 실사 기관: 관할 지역 Urban Council
- 소요비용: 15,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1일

(7) 정확조 시설 검사

- 실사 기관: Hygine Department
- 소요비용: 15,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1일

(8) 건축계획서 최종 제출

- 제출 기관: Ministry of Public Works
- 소요비용: 15,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1일

(9) 준공 검사

- 검사 기관: Ministry of Public Works
- 소요비용: 15,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45일

(10) 전화 가설

- 가설 기관: Camtel
- 소요비용: 30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15일

(11) 전기 신청 및 개통

- 해당 기관: AES-SONEL
- 소요비용: 45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52일

(12) 용수 연결

- 검사 기관: CAM WATER
- 소요비용: 40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75일

토지 구입 절차

(1) 토지 명부 입수 소유권 확인

- 발급처: 법원 부동산 등기과(Services des Domaines)
- 소요비용: 10,000세파프랑
- 소요기간: 21일

(2) 공증인을 통한 매매계약서 작성

- 소요비용

자산 가격	공증료
1백만~3백만세파프랑	4.5%
3백만~10백만세파프랑	3.0%
1천만~2천5백만세파프랑	1.5%
2천5백만~5천만세파프랑	0.75%
5천만세파프랑 초과	0.5%

- 소요기간: 3일

(3) 매매계약서 세무서 등록

- 등록처: 관할 세무서(Centre divisionnaire des Impots)
- 소요비용: 자산 가격의 15%
- 소요기간: 7일

(4) 자산 소유권 이전

- 등록처: 법원 부동산 등기과(Services des Domaines)
- 소요비용: 자산 가격의 2%
- 소요기간: 60일

OHADA(the organization for the harmonization of business laws)법

- 아프리카 불어권내 기업 운영을 위한 기본법으로 1997.4월에 제정
- 노사관계는 물론 회계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카메룬에서도 OHADA 법이 내국 상법에 우선
- 관련 사이트: <http://www.ohada.com>

조세 제도

□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12월 31일

□ 법인세

- 법인세율: 38.5%(순수 법인세 35% + 법인세율의 10%)
- 과세대상: 카메룬내 발생 법인 소득에서 해당 경비를 공제한 이익
- 경비공제: 현금으로 100만세파프랑 이상 집행액은 경비 불인정
- 최저한세: 이익에 대해 38.5%를 적용한 금액이 연매출액의 1.1% 보다 작은 경우에는 연매출의 1.1%를 법인세로 부과

□ 개인 소득세

- 대상소득: 급여,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연금 등
- 과세대상: 소득 총합계에서 500,000세파프랑을 공제한 금액
- 소득세율: 소득별 4단계 누진세제

자산 가격	소득세율
0~2,000,000세파프랑	10%
2,000,001~3,000,000세파프랑	15%
3,000,001~5,000,000세파프랑	25%
5,000,001세파프랑 초과	35%

- 거주자-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 비거주자-카메룬내 발생소득만 과세
- * 거주자(레지던스): 개인(1년에 183일 이상 카메룬 거주)

□ 기타 제반 세금

- 배당/이자소득세: 소득액의 16.5%(비거주자는 원천징수)
- 부가가치세: 19.25%
- 재산세: 재산가액의 0.11%, 매년 납부

고용 및 근로 조건

- 노동법 주요 내용
 - 법정 근로시간 : 주 40시간, 농업분야는 48시간
 - 연간 휴가 : 월 1.5일
 - 최저임금 : 28,246세파프랑/월
 - 복지 경비 : 고용주는 국민연금공단에 기본급의 12.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주 부담분으로 매월 납부

외환 송금

카메룬의 통화정책은 인플레이 통제 및 CFA 프랑의 유로에 대한 고정 관리 등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역할을 하는 지역중앙은행인 중앙아프리카 국가은행(BEAC)에 의해 결정된다.

투자 과실 송금정책은 배당금, 투자이익, 이자, 외채 원금, 임대료, 로열티, 관리수익, 청산수익 등은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만 해외 직접투자의 청산은 30일 이전에 재무부와 BEAC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1억 세파프랑 이상의 사업거래를 위한 상업적 외환 송금을 위해서는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1억 세파프랑을 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이 송금을 하기 전에 이러한 거래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투자 및 재정관련 규정을 준수할 경우에는 통상 승인되며, 단지 처리하는데 12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한편 BEAC은 전자거래를 위해 새로운 중앙집중식 전산화 시스템 (SYGMA)을 도입하여 2007년 9월부터 US\$ 20만 이상의 거래를 취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상업은행의 보상금을 감독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또한 승인이 떨어진 때로부터 실제 송금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24시간 또는 하루 이내로 단축시켰다.



카타르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개관

카타르 경제개황

구 분	내 용
위 치	아라비아 반도 동쪽에 위치한 반도 국가
면 적	11,581km ² (우리나라 경기도와 비슷)
인 구	302만 명(2022년 10월, 카타르계획통계청)
수 도	도하
언 어	아랍어
GDP	1,795.7억 달러 (2021년, 세계은행)
1인당 GDP	61,276달러 (2021년, 세계은행)
GDP 성장률	1.5% (2021년, 세계은행)
물가상승률	2.3% (2021년, 세계은행)
수출입	수출: 872억 달러 (2021년, LNG, 원유 등) 수입: 280억 달러 (2021년, 식품, 운송장비 등)
외환보유고	429억 달러 (2022년 8월, 카타르중앙은행)
외채	604억 달러 (2021년, 재정부)
환율	USD 1 = 3.64 카타르 리알 (고정환율제)

자료 : 세계은행, 카타르중앙은행, 계획통계청, 재정부 등

카타르는 세계 제2위 LNG 생산국이자 제3위 보유국으로 풍부한 에너지 자원이 국부의 원천이다. 현재 카타르 정부는 300억 달러를 투자해 북부가스전 확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연간 LNG 생산량을 2025년까지 현 7700만 톤에서 1.1억 톤으로, 2027년까지 1.26억 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카타르 정부는 2022년 정부 예산을 561억 달러로 책정했으며, 이는 배럴당 55달러라는 보수적인 유가 책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지출 증가, 카타르 월드컵 개최 준비 등으로 인해 23억 달러의 적자를 예상했다. 하지만 2022년 카타르 경제는 유가 상승, 코로나19 방역 성공 및 백신 접종으로 인한 내수 회복, 작년 1월 알 올라 선언에 따른 주변국의 봉쇄 해제 등으로 인해 견고한 성장세가 예상되며, 재정 수지는 상당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카타르중앙은행과 시중 은행이 실시한 민간부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향후 몇 년간 카타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가스 및 석유 수익은 전년 대비 26.6% 증가한 423억 달러로 예상되지만, 동 예상액 역시 보수적인 유가 책정액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2년 실질 GDP 성장률은 4%로 전망되며, 수출은 5.6%, 정부지출은 4.8%, 민간소비는 4.5%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무디스는 2022년 11월 카타르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3,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S&P도 'AA,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IMF는 카타르의 2022년 경제성장률을 3.4%로 전망하였으며, 2023년 2.4%, 2024년 1.7%, 2025년 2.8% 경제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9월 누적 기준 한국의 카타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한 3.4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3.8%로 증가한 120.3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 카타르로부터 천연가스, 원유, 석유제품, 알루미늄, LPG, 정밀화학원료, 합성수지, 동광, 질소비료, 기초유분 등을 주로 수입하고,

카타르는 한국으로부터 건설광산기계, 자동차, 전력용기기, 기타 정밀화학제품, 철강관 및 철강선, 합성수지, 원동기 및 펌프, 건전지 및 축전지, 고무제품, 석유제품 등을 주로 수입한다.

○ 우리나라의 對카타르 교역동향

(단위: US\$백만,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1~9
수출	536 (-20.5)	435 (-18.7)	526 (20.8)	357 (-32.1)	339 (-5.0)	420 (23.9)	339 (15.1)
수입	10,081 (-38.8)	11,267 (11.8)	16,294 (44.6)	13,040 (-20.0)	7,560 (-42.0)	11,611 (53.5)	12,033 (58.8)
무역수지	-9,545	-10,832	-15,768	-12,683	-7,221	-11,191	-11,694

* ():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KITA)

수출입 일반 및 수입정책 상의 장벽

관세 및 절차

카타르는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이 합의한 공동관세율을 2003년부터 채택, 적용(Law No.41/2002)하고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카타르에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업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카타르상공회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가능하다.

- 카타르 기업이며 카타르 정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를 받고, 수입 라이선스에 명시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법(Law No. 13/2000)에 명시된 영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으로서, 카타르 정부와 계약을 맺고 계약 수행에 필수적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공동관세율

카타르는 GCC 관세동맹국들이 합의한 공동관세율을 2003년 1월부터 채택,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식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제품에 CIF 송장 금액에 5%의 증가 관세를 부가한다. 철근 등 철강제품 및 시멘트는 20%, 요소는 30%, 약기류는 15%, 술과 담배, 돼지고기류는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 면제

카타르를 포함한 GCC 국가들의 면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살아있는 동물, 채소류, 해산물, 밀가루, 쌀, 향신료, 종자, 분유 등을 포함한 400여개의 상품
- 외교 및 영사 소요 물품
- 군사 및 안보, 민간 항공 소요 물품
- 개인소유물 및 가재도구
- 승객 소지 물품
- 자선단체 필요품
- 승객 수송을 위한 선박
- 정부 주도 프로젝트 및 카타르개발은행(QDB)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기계 및 원자재

관세장벽

카타르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 예외적인 관세장벽은 GCC의 결정을 따르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GCC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일례로 GCC는 2017년 4월 23일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 12~2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나 카타르는 여전히 통상적인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원산지증명서를 한국 업체에게만 차별적으로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 카타르 세관은 수입통관 시 필요한 제출서류로 원본 인보이스와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수출업체는 상공회의소의 웹 인증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C/O)를 신청, 승인 받은 후 자체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카타르 세관 측은 스탬프가 직접 날인된 원본서류만을 인정하며, 전자 원산지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주카타르 한국대사관은 카타르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카타르 당국은 전자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세관업무 담당자의 미숙지로 인해, 원산지증명서 원본미비의 사유로 통관이 거절된 사례가 종종 있다. 이 경우, 바이어 측에서 주카타르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인터넷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공증을 받은 이후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카타르는 2011년 9월부터 차량부품 수입 시, 원산지에서 발행한 증명서 첨부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증명서는 카타르 표준청(Qatar Standard)이 공고한 품질표준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이외에, 타이어 수입 시에도 GCC 표준 준수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더불어 2013년 4월, 카타르는 통관 규정을 강화하여 원산지표시가 제품에서 제거 가능한 방법(스티커 부착 등)으로 표기될 경우 원칙적으로 통관을 거절하고 있다.

수입규제

카타르 내 수입쿼터제 등 수량 제한, 수출 이행 의무 부과 등은 없다. 다만 국영기업이 생산하지 못하는 특정품목을 수입할 경우 세관이 동 국영 기업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 사례: 2008년 카타르 D 건설의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특정규격의 철근(BS4449 2005 Grade 500C)의 경우, 카타르 내 철근 독점생산 기업인 카타르 철강회사(QASCO)가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인 바, 당 품목 수입 추진 과정에서 세관은 먼저 QASCO의 수입동의서를 취득하라고 요청했다.

카타르는 2016년 5월 1일부터 75W, 100W 범주의 백열전구 수입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였으며, 2016년 11월 1일부터 40W, 60W 범주의 백열전구 수입 및 판매도 금지하였다.

또한, 카타르 자치행정부(Ministry of Municipality)는 2016년 7월 1일부터 에어컨 제품에 대해 지정 인증기관의 표준화 인증 테스트, G-Mark 부착, 에너지 효율등급표시(Star Rating)라벨 부착을 의무화 하였다. 이에, 에너지효율등급 8.5(별3개) 미만인 에어컨 제품은 카타르에서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었다.

식품 및 농산물 수입 규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식품 및 농산품은 원산지 표기에 따라 반송되거나 2주 내로 파기될 수 있다.

일반 비닐봉지(폴리에틸렌)는 수입 규정에 어긋나며, 포장재의 두께는 최소 40 마이크론 이상(GS 654/1998, GS 839/2001, GS 1024/2001)이어야 한다.

식품 및 농산물 수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상업송장
- 물품 상세서
- 적재 화물 운송장
- 원산지 증명서
- 원산지로부터의 신선도 확인서
- 향신료: 농약과 제초제 0% 증명서
- 밀가루, 곡물, 씨앗: 식물 위생 증명서
- 소고기와 가금류를 포함한 모든 수입 육류: 수출 국가가 발행한 해당국의 인가된 이슬람 센터가 발행한 ‘(할랄)’ 도살증서

라벨 또한 식품 수입 시 중요한데, 식품 내용 표시 위반(라벨 변경, 유실, 손상·오기 되었거나 덧붙여진 생산/만기 날짜)은 수입 거부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카타르 검역관들은 무작위로 식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서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상품은 압수조치 되어 수입자에게 연락 후 파기한다.

큰 규모의 호텔, 식당과 기관으로 식품이 바로 이송되는 경우 라벨 규제는 더욱 엄격히 적용된다. 하지만 식품이 처음부터 기관이나 사용자에게 의해 직접 수입되

는 경우 아랍어 라벨 표기는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오리지널 라벨은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아랍어를 포함한 2개 언어로의 표기는 허용된다. 다른 모든 정보 또한 기본적으로 아랍어 표기를 요구한다. 육류 및 가금류의 경우 살모넬라 성분이 20%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수입이 거부된다.

일반 식품의 경우 공공보건부 식품규제국(Food Control Department)의 승인이 필요하며, 현지 수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품목별 요구 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다이어트 및 건강식품은 공공보건부 의약규제국(Pharmacy and Drug Control Department)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100그램을 기준으로 한 상세한 성분 표기가 필요하다.

카타르는 약 75개의 식품에 유통기한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걸프기준 No.150/1993에 명시된 유통기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생산일자/유통기한(P/E)날짜는 반드시 오리지널 라벨 또는 물품에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변조방지용 잉크를 사용하여 표기되어야 한다. 스티커 부착을 이용한 표기나 U.S. 바코드는 규정에 어긋난다. 여러 개의 P/E 날짜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과일, 야채, 빵에 대해서는 P/E날짜 표기가 요구되지 않는다.

개인소유물 및 수입제한

카타르 거주 외국인이 무관세로 개인 소유물을 수입하는 것은 허용되나 주류, 무기류(장식용 포함), 마약 및 유독 화학품, 폭발물, 방사능물질, 오존 파괴물, 약품, 압호기기, 돼지고기, 음란물, 무선 송수신기, 상아로 만들어진 물품 등은 수입이 제한된다.

여행객의 휴대화물 면세한도는 3,000 리얄(약 825달러)이며, 5만 리얄(약 13,736 달러) 이상의 현금 및 금품, 물품을 보유할 경우 공항에서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모든 의약품은 반입 시 의사 처방전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수입 시 필요한 세관서류

카타르 내 수출입을 위해서는 명확한 원산지표기와 카타르 대사관의 인증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수입업자는 수입 시 세관당국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이후 세관은 유효한 수입면장을 발급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카타르에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업자로 등록한 후, 추가적으로 카타르 상공회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 시 아래와 같은 세관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품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2011년 5월 11일부터 카타르로 발송되는 모든 비서류 물품에는 상업송장과 원산지증명서 상에 주한 카타르대사관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을 경우 수취인에게 상업송장 인증료가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 세관서류

서류	비고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적지 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원산지증명서(CoO)	선적지 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품목별 HS코드 명시
선하증권(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한국 기업이 카타르에 수출할 경우 상업송장 금액별 주한 카타르 대사관의 영사인증(카타르 외교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아래와 같이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상업 송장 수수료

송장 금액(USD)		인증료(KRW) C/I & C/O & C/S <Total>
1	4,121	296,000
4,122	27,473	481,000
27,474	68,681	1,036,000
68,682	274,725	1,961,000
274,726	이상	영사과 문의

자료: 주한 카타르대사관 (2021.04월 기준)

카타르 외교부의 인증은 원칙적으로 수출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수입자가 카타르 현지에서 직접 수행할 수도 있으며, 인증 수행주체나 인증료 지불 등은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인증료 금액이 다소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출자-수입자 간 종종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바, 수출 직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출자-수입자 간 꼼꼼한 협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계약서나 L/C상에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시수입

설비를 포함한 특정 품목에 대한 임시 수입이 가능하나, 세관 담당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기간은 보통 6개월이지만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정규 수입관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은행보증 또는 수표를 관세청에 예치해야 한다.

수입업자 제한

현지법인을 두고 수입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만이 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 외국법인은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의 형태로 적법하게 카타르에 등록한 경우 수입할 수 있다. 수입업자는 세관에 수입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매, 리스, 대리인 협정서, 또는 수입업자와 외국 공급업자 간 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업자 또는 관세사만이 세관신고를 할 수 있다.

수입면장

수입업자는 세관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수입면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관세사 및 운송대리인

수출입 및 환적 시 세관신고는 물품의 소유주, 세관장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인가 받은 대리인, 세관에서 허가한 관세사가 수행할 수 있다.

제출 서류의 형태

만드시 원본이 필요하다. 세관 허용 시 일부 서류는 복사본 또는 팩스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나 세관은 기업 또는 관세사가 통관 후 90일 이내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물품 결제수단

결제 통화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나 카타르 리얄 이외의 통화로 결제할 경우 관세사에게 이를 공지하여 세관신고 가격결정 시 정확한 환율로 계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카타르는 통화, 자금의 국내외 이동, 신용장이용 등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품목분류

카타르는 GCC 관세율표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고 있으며, 동 관세율표는 세계 관세기구(WCO)에서 제정한 HS(Harmonized System) 품목분류를 적용하고 있다. 카타르는 GCC 관세협약에 따라 8단위의 품목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목분류는 97 챕터, 21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Labeling

라벨링은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카타르 세관은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는 제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식품 라벨링은 GSO 9/2013 규정을 따르고 있는바, 제품의 포장지에 제품명, 영양 분석 정보를 아랍어와 영어로 표기해야 한다. 추가 공정을 위해 수입되는 식품의 원료나 신선 야채, 과일, 생선, 도축된 동물은 라벨링 부착을 요구하지 않는다.

환경관련 규제

화학제품, 화학폐기물, 유독물질 및 유해물질 수입 시 선적에 필요한 세관서류 및 안전수치 자료 등을 관세사와 협의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인화물질, 방사능물질, 무기 및 폭발물,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에 반하는 물품, 마약류 수입 시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있다.

정부보조금

카타르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은 없으나 보건 부문 투자에 대한 장려금은 존재한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는 대부분의 상품과 용역의 최종 수요자이며, 정부 조달 계약은 Law No.26/2005에 따른 입찰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단, 국방부, 경찰 및 카타르에너지공사(QE)는 자체규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다.

정부의 표준조달 입찰절차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백만 리알(약 274,725달러) 이상의 조달은 재무부 정부조달규제부서(Government Procurement Regulatory Department, Monaqasat)에서 관장한다. 그 이하의 소규모 조달은 현지 업체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며 각 부서 내 입찰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재무부장관은 CTC의 제안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며, 입찰 규모가 5백만 리알(약 137만 달러)을 초과하는 계약은 총리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CTC의 관장 하에 있지 않은 국방부는 방산물품 구매를 관장하고, QE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분야의 프로젝트를 관장한다.

2015년 11월 24일 공고(공고 후 6개월 후 발효)된 입찰에 관한 규정 (Law No.24/2015)에 따르면 총리는 각 정부부처에 소속된 5인에서 7인으로 구성된 입찰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대규모 구매 프로젝트의 경우, CTC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 선정을 위해 입찰자격 심사(Pre-Qualification) 서류를 받는다. 입찰자격을 통과한 업체는 주어진 입찰일에 기술(Technical) 입찰서 및 상업(Commercial) 입찰서를 각각 제출하며, 기술입찰서가 통과된 업체만을 대상으로 상업입찰서를 심사해 최저가 입찰을 제출한 회사에 일반적으로 낙찰한다. 하지만, 최저가뿐만 아니라 GCC 내 경험 역시 고려 대상이다.

정부 입찰 시 은행보증서 혹은 신용장(L/C) 형태의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입찰보증서 금액은 입찰 조건에 금액으로 명시되며, 이행보증서 금액은 10%선이 일반적이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보증금액의 비율이 이보다 높을 수 있다. 입찰 및 계약체결 단계에서 현지 에이전트 이용 의무는 없으나 현지 경험이 없어 실정에 어두운 경우, 현지 에이전트 이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경우, 입찰을 취소하거나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다.

- 단독 입찰인 경우(여러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타 업체들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단독 입찰이 된 경우도 포함). 단, 재입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경우, 충분한 이유를 첨부하여 단독 입찰자로 추천되는 것도 가능
- 기술적으로 최고점수의 입찰자 금액이 시장가격을 초과 할 경우
- 모든 입찰자 혹은 대부분 입찰자가 조건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정부와의 계약서에 별다른 규정이 명기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서상의 모든 분쟁은 카타르의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자(시공자)는 프로젝트 수행대금으로 은행에 무조건부 보증서를 제출한다는 조건 하에 우선 계약금의 일정비율(입찰조건에 주어짐)을 선수금으로 지불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프로젝트의 진전 상황에 기초하여 표준 지불계획표에 따라 추가대금 결제가 이루어진다. 표준 지불계획표는 대부분의 경우 정부 측에 프로젝트가 완결된 후까지 대금 지불을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허

용한다. 또한 대금지불이 연기되더라도 이자가 가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추가적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될 경우 최고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발주처는 총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을 설계변경(Variation Order)하여 임의로 추가 발주 혹은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자재조달 관련, 현지 법령 Law No.6/1987 (정부 조달 시 National Products와 GCC Products of National Origin에 우선권을 주는 통일된 규칙)에 따라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National Products)에 가격 측면에서 유사 외국제품 대비 10%의 우선권을 주며, GCC 회원국 중 하나에서 제조된 모든 제품(GCC Products of National Origin)에 대하여는 5%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자국 및 GCC 국가 생산 제품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타우틴(Tawteen) 프로젝트

카타르는 2019년 2월부터 에너지 공급망 현지화 및 공급자 개발을 위해 타우틴(Tawteen)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 내 발주 사업에 현지 재화 및 서비스의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국내가치(ICV: In-Country Value) 인증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에는 주관기관인 QE를 비롯하여 카타르가스공사(QG), QAPCO(비료회사), Qatar Steel, ORYX GTL, QEWC, Total 등 총 15개 에너지 분야 발주처가 참가하고 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동 프로젝트로 인해 에너지 분야 입찰 시 의무적으로 ICV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계약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ICV는 ICV 계획과 ICV 스코어 카드로 구성된다. ICV 계획은 일회성 계약이 아닌 다회성 계약에 요구되는 사항으로 현지 재화 및 서비스 활용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구매기관 또는 지정 인증기관을 통한 감사가 필요하다. ICV 스코어 카드는 QE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발급된다. 스코어가 높다고 해서 계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스코어와 함께 기술 및 상업적 평가요인이 함께 고려된다. ICV 산정 방식은 재화, 서비스, 인력 교육, 공급자 개발, 자산 투자 등의 총 합산 비용을 카타르에서 얻은 총 수익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권

2006년 특허법(Law No.30/2006)에 따라 특허권은 20년간 보호된다. GCC 특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있는 특허청에서 부여 받을 수 있다. 동 특허청은 2011년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하여 2012년부터 PCT 출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015년 9월부터는 ePCT 출원 시스템을 통한 PCT 출원 작업도 수행하고 있다.

상표권

상표권은 카타르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형태의 권리이다. 등록된 상표는 상표 공보에 공표되며, 이의 제기는 공표 후 4개월 이내 가능하다.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10년간 상표권이 등록되며, 추가 10년 동안 갱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5년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법원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상표권 소유자는 등록 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그 권리는 상표권의 독점을 상징하며, 이에 따른 법률위배 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저작권

2002년 저작권법(Law No.7/2002)에 따라 문학작품, 예술품, 컴퓨터소프트웨어, 비디오 및 오디오 테이프 원본 등의 저작권은 보호받으며, 저작권은 저작사후 50년 후 소멸된다. 저작권법 위반 시 3만 리알에서 10만 리알의 벌금 부과 또는 최소 6개월 최장 1년까지 구금될 수 있다.

투자환경

투자 및 영업환경

카타르는 외국인투자법을 통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

고 있다.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에 사용될 원자재 및 반제품 등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며, 세금면제위원회(Tax Exemption Authority)가 국가 및 사회적으로 유익하다고 판단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외국인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15년 8월 카타르 정부는 기업법(Commercial Companies Law)을 개정하여, 신규 진출기업에 대한 법정최소자본금(20만 리알) 조항을 삭제하는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투자진출

카타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는 2019년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는 법을 발표했으며, 2019년 1월 8일부터 발효되었다. 동 법안은 해외자본 유치, 모든 상업 활동 분야 개발, '카타르국가비전 2030'을 통한 산업다각화를 목표로 한다. 외국인 투자법 개정 전에는 일부 산업만 외국인의 100% 지분 투자가 가능했으나, 개정 후 모든 경제 분야에서 외국인의 100% 지분 투자가 가능하다.

주요 내용

과거	개정
<p>[Law No. 13 of 2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자는 최대 49%까지 지분 소유 가능함. 다만, 내각의 결정이 있으면 49%에서 100%까지 지분 소유 가능 (허가분야 : 농업, 산업, 보건 의료, 교육, 관광, 천연자원의 개발, 에너지 및 채굴, 컨설팅 및 기술서비스, 정보기술, 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 외국인 투자자는 내각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 보험 분야에 투자할 수 없음. - 외국인 투자자는 카타르 주식거래소 상장기업 지분의 25%를 초과 소유할 수 없음. 	<p>[Law No. 1/2019(Law No. 13/2000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자는 모든 경제 분야에서 최대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동 개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에 따름. - 49% 이상의 지분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관련 부서는 15일 내 신청서를 검토함. 15일 내 승인여부에 대해 공지 받지 못 할 경우 승인 거절로 간주할 수 있음. 승인이 거절 된 경우, 15일 내 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장관은 30일 내 해당내용을 재심사하며, 동 단계에서도 승인여부에 대해 공지 받지 못할 경우 최종 거절로 간주할 수 있음. - (a) 외국인 투자자는 내각의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금융, 보험 분야에 투자할 수 없음. (b) 상업 에이전시에 투자할 수 없음. (c) 기타 내각이 정하는 분야에 투자할 수 없음.

- 외국인 투자자는 통상산업부의 허가에 따라, 카타르 주식거래소 상장기업 지분 49%까지 소유 가능
- 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자의 회사 설립에 필요한 기계류 및 장비 수입에 대해 관세 면제
- 카타르 시장에서 조달이 불가능한 원자재 및 반제품(Semi-Manufactured Items) 수입에 대해 관세 면제

자료: 카타르법령포털 알미잔(Al Meezan), Ernst & Young Qatar, 주요 일간지(Gulf Times, Peninsula, Qatar Tribune)

외국인투자자의 조직설립

외국인투자자는 아래와 같은 형태의 조직만 설립할 수 있으며, 인정된 형태 이외의 조직 운영 시, Law No.25/2004에 의거하여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받는다.

- 장관령 획득 후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지사 설치
- 카타르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이때,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은 자본금의 49%를 초과하지 못함)
- 100% 외국인 자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에서 회사 설립(이때, 투자프로젝트는 통상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영업개발 및 마케팅 수행 대표사무소 설치(대표사무소는 무역이나 계약을 할 수 없음)

지사, 사무소 설치

외국인투자법에 의거, 외국 기업은 통상산업부 장관령에 따라 카타르에 지사를 설립, 지정된 분야에 투자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원자재(비슷한 품목이 카타르 시장에 없을 경우)를 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젝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이익을 수행하는 하청기업도 지사 설립이 가능하다. 지사는 보통 프로젝트 수행에 소요되는 기간만 설치, 운영될 수 있다.

지사운영을 위해 카타르 국적의 대리인(스폰서)과 함께 할 필요는 없으며,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의 임무는 비자 및 인허가 취득 지원, 노동력 및 숙박시설 제공 등에 한정된다.

지사 설립 시 프로젝트 계약서, 법인등록증, 회사정관 등이 필요하며, 본사 위임을 받은 대표자는 적법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위임장, 주계약자의 편지 등을 통상 산업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아랍어 공증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법인등록증, 정관, 위임장 등은 주한카타르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소유 및 투자제도

카타르 정부는 2019년 3월 외국인 부동산 규제법(Law No.16/2018)에 의거하여 외국인 투자자, 부동산 펀드 등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소유 및 투자제도를 마련하였다. 소유(Ownership) 가능 지역 9개, 이용(Usufruct) 가능 지역 16개 등 총 25개 지역을 외국인이 소유 또는 이용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여 주거 단지, 쇼핑몰 내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일정한 조건하에 외국인이 개별적으로 소유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2020년 10월 카타르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 및 투자제도(Law No. 28/2020)’를 발표했다.

◦ 외국인 부동산 투자 가능지역

소유 가능 지역 (freehold)	99년간 임대 가능한 이용 가능 지역
West Bay, The Pearl, Al Khor Resort, Al Dafna(area no. 60, no. 61), Onaiza, Lusail, Al Kharaij, Jabal Thuaileb	Msheireb, Fereej Abdul Aziz, New Doha, Al Ghanim Al Ateeq, Al Riffa, and Al Hitmi Al Atiq, Al Salata, Fereej Bin Mahmoud 22, Fereej Bin Mahmoud 23, Rawdat Al Khail, Al Mansoura, Fereej Bin Dirham, Najma, Umm Ghuwailina, Al Khulaifat, Al Sadd, Al Mirqab Al Jadeed, Fereej Al Nasr, Doha International Airport area.

카타르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촉진의 일환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부동산 투자자의 경우 본인과 가족 모두가 거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3만 리얄(2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투자 시 고용주의 스폰서 없이 거주 허가(Residence Permit) 취득이 가능하며, 365만 리얄(백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투자 시 자국민에게 부여되는 의료, 교육, 상업 활동 등의 혜택이 포함된 영주권(Permanent Residency) 취득이 가능해 진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부동산 규제 위원회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및 소유 등의 제반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주재국 법무부 웹사이트 내 별도의 전용 온라인 페이지를 2020년 10월 개설하였다.

금융상의 제한

외환규제는 없으며 카타르에서 발생한 지분, 대부금 및 모든 소득의 송금 역시 제한이 없다. 다만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매년 발생된 이익금의 10%씩을 자본금의 50%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영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금 부족 시 카타르 또는 GCC 은행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투자이익금의 송금이나 관련된 자금에 이동상의 제한은 없다. 또한 이익금, 부채 지불, 자본, 자본 이익금 등의 송금에도 제한이 없다. 현지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 비용은 기업 신용도에 따라 다르나, 한국 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다.

세제상의 제한

카타르의 소득세 제도와 세금 신고 절차는 Law No.11/1993에 명시되어 있다. 상기 법에 따르면 카타르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 활동(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직업, 서비스, 무역 및 계약의 실행 등)은 과세 대상으로 간주된다. 소득세는 카타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개인, 파트너십 및 외국기업에만 부과된다.

과세 제도의 경우 외국인 소유 기업에는 과세하고 카타르인 소유 기업에는 과세하지 않는 등 차별이 있다. Law No.9/1989에 의거, GCC 국민들은 소득세 측면에서 자국민 대우를 받고 있어 GCC 국민 소유 외국기업들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카타르에서 지급되는 임금에는 대인세, 사회 보험료 또는 기타 법적 공제액이 없다. 1995년 4월에 발표된 소득세 실무지침에 따라 법무, 컨설턴트 및 자영업

영위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간 순수익의 10%를 필요 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고, 공제 한도는 연간 2만 리알(약 5,500 달러)까지이다.

카타르 관세청은 2020년 7월 신규 세금 온라인 포털(Dhareeba)을 출범하였으며, 모든 기업은 의무적으로 동 포털에 등록해야한다. 이를 통해 세금 계산 및 납부 과정이 간소화되고 신속해질 전망이다.

(1) 법인세

소득세는 카타르에서 아래와 같은 활동으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소득에 부과된다.

- a) 카타르에서 수행된 모든 프로젝트에서 실현된 수익
- b) 회사 자산의 판매로부터 실현된 수익
- c) 대행약정 또는 중개에서 비롯된 수수료
- d) 컨설턴트, 중재 또는 전문기술 및 관련 서비스에 지불된 요금
- e) 부동산 임대
- f) 판매, 임대, 양허 및 상표권, 디자인, 노하우 또는 저작권 사용으로 받은 금액
- g) 채무로부터 받은 금액
- h) 청산으로 실현된 수익

이외에도, 납세자가 카타르 국외에서 수령한 이자 및 카타르 내 활동에서 비롯된 은행 수입의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민간 기업을 설립했을 경우 과세소득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적용받는다. 과세소득은 원자재 및 서비스 구매비, 노동자 임금 및 임대료, 보험료, 기부 및 선물 비용 등을 제외한 소득에 과세되며, 카타르인 지분은 제외한 외국인 지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농업이나 어업은 세금이 면제되며 석유, 가스 사업과 관련된 분야는 35%의 세금이 적용된다.

납세자는 사업자 등록 이후 30일 내 관세청(General Tax Authority)을 통해 세금 카드(Tax Card)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가 끝나고 다음해 4월 30일까지 반드시 세금신고를 끝내야 한다. 회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일 100리얄(약 27달러)씩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36,000리얄(약 9,89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회계기간이 더 필요한 기업은 조세 당국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조세 당국의 판단 하에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는 해외 지사와 법인에도 적용된다. 상장 기업은 카타르 사회공헌기금(문화, 체육, 자선 분야)으로 수익의 2.5%를 특별 펀드에 제공해야 한다.

(2) 세율

카타르 정부는 2009년 11월 신소득세법(Law No.21/2009)을 공포하였다. 신소득세법의 핵심은 종전의 누진세제(0~35%)를 사용하던 법인세를 10% 단일 법인세로 조정,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2010년 1월에 발효되었다.

아울러 정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담배, 에너지드링크에 대해 100%, 탄산음료에 대해 50%의 특별소비세를 도입했다. 특별소비세 도입에 따라 말보로 담배 한 갑의 소비자 가격은 11리얄(3달러)에서 22리얄(6달러)로 올랐으며, 에너지드링크 레드불 250mL의 소비자 가격은 4.75리얄(1.3달러)에서 9.5리얄(2.6달러), 탄산음료 펩시콜라 355mL 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1.5리얄(40센트)에서 2.25리얄(60센트)로 상승했다.

한편, GCC 국가들은 2015년 7월 부가가치세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2020년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에서 5%의 세율로 부가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카타르는 당초 2020년부터 시행하려던 부가세 제도를 연기했으며 2022년 11월 기준 여전히 관련 입법이 진행 중이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최 이후에 부가가치세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3) 세금면제

카타르는 특정한 조건 하의 특별 프로젝트에 대하여 세금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세금면제 적용 여부는 세금면제위원회에서 평가한다. 세금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제조업, 법률, 농업, 의료, 바이오, 교육, 관광, 신재생 에너지, 첨단기술 산업에 지원에 기여하는 프로젝트, 또는 카타르에서 필요로 하고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이나 계약
- 국가 개발 계획 및 경제 목표에 부합하고 관련 정부의 승인을 얻은 프로젝트
- 아래 사항을 고려, 국민경제에 공헌할 수 있는 프로젝트
 - (a) 상업적 수익성
 - (b) 타 프로젝트를 보완하는 범위
 - (c) 국내생산 자재 활용 정도
 - (d) 무역수지 균형에 미치는 영향
- 첨단기술 사용 프로젝트
- 자국민 고용창출 프로젝트

세금면제 기간은 재정부 장관 단독 승인 시 5년까지, 내각 승인 시 10년까지이다.

(4) 과세 조약

카타르는 한국, 알제리, 아르메니아, 중국,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요르단, 파키스탄, 루마니아, 러시아, 세네갈, 스리랑카, 시리아, 튀니지, 튀르키예, 불가리아, 파나마, 세이셸, 베네수엘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벨라루스, 예멘,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레바논 등 64개국과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발효 중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 기관 및 경제자유구역

(1) 외국인 투자유치진흥기관(Investment Promotion Agency, IPA)

카타르는 2019년 7월 17일 투자유치진흥기관인 IPA를 출범, 자문이사회 구성을 발표했다. IPA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단일 창구 역할을 하며,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완전한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고, 투자 목표와 특정 분야의 투자진흥 의제 설정과 함께 정책 개발 자문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자문이사회는 의장, CEO 및 4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IPA는 KOTRA 내 Invest Korea와 유사한 조직으로, 그간 카타르경제자유구역청, QFC 등에 분산돼 있던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단일 창구화하여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카타르경제자유구역청(Qatar Free Zones Authority, QFZA)

카타르는 100% 외국인 지분으로 입주 가능한 경제자유구역을 조성 중이며, 경제자유구역은 2018년 설립된 외국인 투자유치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인 QFZA에서 관할한다. 카타르는 2019년 하마드항구와 하마드국제공항 인근에 경제자유구역 일부를 개장하여 운영 중이며, 부지 개발 및 인프라 조성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법인세 및 수입관세 면제, 저렴한 유틸리티 비용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 특별경제구역 개발 현황

움알하울(Um Alhoul)	라스부폰타스 (Ras Bufont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하마드공항 근교(4.01km²) - 중점유치분야: 보건의료, 자동차, 항공우주산업, 물류, 비즈니스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하마드항구 근교(34km²) - 중점유치분야: 해양산업, 식음료, 건설기자재, 금속가공 및 기계, 석유화학, 물류
투자인센티브 및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00% 외국인 지분 허용 ② 20년간 법인세 면제 ③ 수입관세 면제 ④ 자유로운 영어 구사 환경(아랍어, 영어 통용) ⑤ 다양한 인재풀(저임금 단순노무-전문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⑥ 저렴한 유틸리티 비용(산업용 전기 4센트/Khw, 산업용 수도 1.48달러/㎥, 휘발유 48센트/리터) ⑦ 편리한 물류환경(1일 운항 여객기 230건, 화물기 29건, 해운직항노선 15개)

(3) 카타르 과학기술단지(Qatar Science and Technology Park, QSTP)

2009년 카타르 정부는 첨단기술 개발·연구 목적으로 QSTP를 설립하였으며, QSTP는 에너지, 환경, 보건, IT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QSTP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개발 및 전수 수행, 50% 이상의 인력이 기술 개발에

종사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QSTP 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 기업은 100% 지분 투자가 가능하며, 입주기업에는 면세가 적용된다.

(4) 카타르금융센터(Qatar Financial Center, QFC)

QFC는 Law No.7/2005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외국계 금융기관 및 다국적 기업이 카타르 내에서 국제금융, 금융서비스, 보험 등의 분야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요 유치 분야는 투자은행,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 보험, 자산관리, 컨설팅, 법률자문, 리크루팅, 프로젝트 관리, 설계, 교육, 세무회계, 광고홍보 등이다. 일반 무역 및 건설 등 단순 노무직 노동자 고용률이 높은 사업 분야의 경우 QFC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다. Law No.7/2005에 의거, 금융센터의 영업 허가를 받은 외국기업은 2008년 5월 1일까지 3년간 법인세 면세 혜택을 받아왔으나, 신소득세법 시행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는 1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카타르 금융센터에는 2021년 12월 기준 1,283개 이상의 회사가 등록되어 있다.

QFC의 허가를 받은 기업 및 기관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 국유화, 몰수, 또는 개인 소유 제한으로 부터의 보호
- 이윤 본국송금 자유
- 자유로운 직원 고용
- 100% 외국인 소유

노동법 개정

2020년 9월 행정발전·사회노동부(현 노동부)는 신규 노동법 관련 후속 조치로 △ 최저임금법 계약서 명시, △ NOC 제도* 폐지 관련 온라인 등록 절차, △ 노동분쟁위원회 증설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발표하였다. 최저 임금법 (Law No.17/2020)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난 후 2021년 3월 20일부터 발효되었다.

* No-Objection Certificate(NOC) 제도는 현고용주의 이직동의서로 동 동의서가 있어야 아직 가능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월 최저 1,000리얄(275달러)의 기본급과 식사 및 주거를 제공해야 하며, 식사와 주거를 제공하지 않을 시 300 리얄의 식비와 500 리얄의 주거비를 지급해야 한다. 최저 임금 미지급 시 1년의 징역 및 만 리얄(2,7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NOC 폐지법(Law No.18/2020) 관련, 근로자가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 계약 최초 2년간은 최소 1개월 전, 2년 이후로는 2개월 전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근로자 및 고용주는 노동부로부터 고용변경확인을 SNS로 수신 받아야 한다. 신규 고용주는 노동부 디지털 인증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의 전자고용 계약서를 등록(인증 비용 60리얄)해야 하며, 계약서 인증 시, 신규 고용주는 내무부에 신규 카타르아이디(QID)를 요청해야 한다. 상기 절차가 완료될 경우 신규 근로자는 업무를 개시할 수 있으며, 신규 고용주로부터 신규 카타르아이디 및 보건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수습기간 내 근로자가 이직을 희망할 경우 고용주에게 최소 1개월 전 통보해야 하며, 고용주에게 채용, 편도 항공권료 등으로 지출된 비용을 2개월 간 최저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지불해야 한다.

경쟁 정책

카타르 정부는 1971년 독립 이후 석유, LNG의 생산과 정제, 석유화학 산업 및 통신 등 핵심 경제 부문을 통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카타르 정부는 특정 사업부문 개발의 소유권과 책임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전하는 등 투명한 정책을 채택해 오고 있다.

1995년 7월 3일 도하증권시장(주식거래소)의 설립을 승인하는 법령이 발표되었다. 1997년 5월 공식 영업을 시작한 주식거래소는 자국 공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하면서 민영화를 촉진하였다.

2003년 5월, 카타르 정부는 Industries Qatar Q.S.C. 주식 30%의 초기 공모를 완료하였다. Q.S.C.는 지주회사로서 카타르 석유화학, 비료 및 철강 산업분야 회사들의 대주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또한 최근 수 년 동안 전기 및 수도, 통신, 석유 제품의 유통을 포함한 상당수의 핵심 부문들을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Ooredoo, QAFCO, QAPCO, QCHEM 등 여타 다수 부문들도 점차 민영화할 계획이다. 전력 및 담수 분야의 경우, 1990년 전력부문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로 QEWC(Qatar Electricity & Water Company)는 과거 카타르수전력부가 보유하고 있던 발전/담수화 시설을 이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카타르수 전력청(Kahramaa)에 전력과 담수를 공급하고 있다.

카타르는 국가전체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립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보건 부문 민간 투자에 대한 장려금을 도입하였다.

통상산업부는 국가개발계획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농업, 제조업, 의료, 교육, 관광, 에너지, 자연자원, 채광산업)에 투자하는 외국 회사에 대해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사업을 위해 수입해 오는 기계·장비 및 지역 시장에서 구매 할 수 없는 사업에 필요한 반가공품과 수입품에 대한 관세 역시 면제하고 있다.

또한 통상산업부는 외국인 투자 허용 분야를 농업, 산업, 여가, 관광, 건강, 교육, 천연자원 개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확장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카타르 과학기술단지에 투자할 경우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카타르 정부의 장기 전략은 외국 기업이 자유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카타르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 관행과 규정은 아직도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기타 장벽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출입국 관련 지침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카타르 한국대사관, KOTRA 도하무역관을 통해 여행 정보를 참고하고, 사전에 카타르 항공, 하마드국제공항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입국

카타르는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하마드국제공항을 통해, 항구는 도하항, 메사 이드항, 라스라판항, 루와이스항, 육로는 아부 삼라 국경을 통해 입국할 수 있다.

출입국 심사는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여행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편이다. 통관 심사도 원활하나 이슬람 국가인 카타르는 종교 교리에 위배되는 품목은 반입 금지 및 제한품목으로 규정하고,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2022년 11월부터 카타르 정부는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해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행객의 경우 입국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구비, 사전 Ehteraz 입국허가 신청 등의 절차가 해제되었으며,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도 받을 필요가 없다. 거주자(QID 소지자)의 경우도 입국 후 24시간 내 코로나 19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입국후 의료시설 이용시 18세 이상 방문객은 건강상태 확인 모바일 어플 Ehteraz 앱을 설치 및 활성화하여 초록색 Ehteraz 바코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 되었으나, 공공 의료시설 이용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비자

카타르에 근로목적으로 거주하려는 자는 고용주의 스폰서십으로 비자를 발급 받은 뒤, 입국 후 거주허가증(Residence Permit, RP)을 발급받아야 한다.

관광 및 단기체류(90일 이내*)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다만 여행 전 주카타르 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출입국 관련 최근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한-카타르 양국은 2022.8.17.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고, 사증없이 최대 90일 체류를 허용기로 함.

** 카타르 정부는 2022.11.1.-2022.12.23 기간 모든 카타르 방문객(QID 소지자 제외)은 Hayya Card(비자 대체) 의무 신청, 카타르 월드컵 기간 동안 Hayya Card로 출입국 비자를 대체한다는 방침

취업자의 경우, 카타르 현지에 있는 스폰서를 통해 비자 발급을 진행 한 뒤, 출국 전 주한 카타르대사관에서 입국비자를 수령할 수 있다. 카타르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인은 6개월 이상 유효한 복수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상용비자(2주 유효, 2주 간 연장가능)는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카타르 방문자에게 발급되며, 유효한 여권과 왕복 티켓을 소지해야 한다. 동 방문이 비즈니스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카타르 스폰서가 서명한 진술서를 도착 48시간 전에 공항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6개월까지 유효한 방문비자는 카타르에 거주하는 스폰서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취득할 수 있으며, 스폰서가 반드시 카타르인일 필요는 없다. 다만 반드시 왕복항공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유효한 GCC 국가 거주허가증을 지닌 사업 또는 전문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인은 방문비자가 필요 없으며 카타르에 도착하면 2주 동안 유효한 입국비자를 교부 받게 된다.

1~5년간 유효한 거주비자는 카타르 고용 계약 소지자에게 허가되며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회사가 스폰서가 된다.

거주 및 가족 방문비자 발급을 위해 한국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가족관계등록증명서, 혼인관계등록증명서, 기본증명서, 대학졸업장,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는 영문 번역 후 우리나라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주한카타르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거친 다음, 카타르 외교부 영사과의 영사 확인 후 카타르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대 소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보유한 외국인과 직계 가족은 해당 소유지에 대한 소유권 기간 동안 스폰서 없이 갱신이 가능한 5년간의 거주 허가 자격을 갖는다. 또한, 외국인투자법에 규정된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도 투자 기간 동안 갱신할 수 있는 5년간의 입국비자와 거주허가 자격을 갖는다.

거주허가(Residency Permit, RP)

외국인 근로자는 RP를 받아야 하며, 우선 노동허가가 필요하다.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카타르 국적의 스폰서가 필요하며, 스폰서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거주 노동허가는 카타르 내에서 노동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부여된다. 최대 3년간 유효하며, 매년 천 리얄(약 27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카타르 도착 후 현지 스폰서가 이민국에 근로자의 거주허가증(QID)을 신청하며, 보통 6주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일반적으로 스폰서가 제반 서류작업을 수행하며 수수료 납부를 부담한다. 동반 가족 역시 카타르에서 취업한 가족 구성원의 스폰서 하에 거주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방문 및 거주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강 검진 및 지문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취업 비자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카타르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단, 취업을 목적으로 받은 비자가 아닌 경우에는 거주 권한이 없다.

근로자의 노동허가는 고용주 또는 스폰서가 갱신해야 하며, 가족의 거주 허가는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다. 가족 거주 허가는 여권, QID, 사진1장과 수수료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면 3일 이내에 갱신 발급된다. 필요한 서류는 고용주의 동의서 및 월급 증명서, 월급명세서, 결혼 및 출생증명서, 학위증명서, 노동계약서, 전기요금 납부영수증이다. 과거에는 출국을 위해 근로자가 스폰서에게 출국비자를 요청해야 했지만 최근 법령 개정에 따라 사전 통보 후 출국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은 출국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거주허가증(Qtar ID, QID)

카타르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자들은 거주할 권한이 주어지며, 비자를 가지고 카타르에 입국 후 고용주를 통해 거주허가증(QID)을 발급받을 수 있다. 거주허가증은 보편적으로 ID 카드라고도 불리고 있다. 거주허가증 내에는 ID 번호, 생년월일, RP 유효기간, 국적, 고용주, 이름, 증명사진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카타르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거주자들은 카타르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거주허가증 취득 후 여권사진 2장을 지참하고 안과에서 시력검사 후 시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운전면허신청서, 사진3매, 여권원본 및 사본, 운전면허증 원본 및 번역본 (면허증 영어번역 대사관 공증, 비용 현금 16리얌)을 교통국(Traffic Department)에 제출하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카타르 교통국 방문 시, 절차 진행 신속성을 위하여 아랍어가 가능한 직원 동행을 추천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주재국 도착 후 6개월 간 주재국 운전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국제면허의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시)하나, 일선 경찰 및 보험회사, 렌트카 회사 등에서 사고 발생 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바, 주재국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단, 카타르 RP를 취득한 자는 반드시 카타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만 운전이 가능하다.

개정된 신 스폰서법 (Law No. 21/2015 및 Law No. 1/2017)

카타르 정부는 카타르 스폰서법이 노동자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일자 2015년 10월 27일 출국허가 및 이직과 관련된 조항 등을 개정하여 ‘입국, 출국 규제 및 외국인 거주에 관한 법(Law No. 21/2015)’을 공포하였으며, 이는 2016년 12월 발효되었다.

기존에는 노동자들이 여행 및 모국방문 등을 위해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노동자들은 고용 계약에 기반하여 고용주에게 사전 통보 후 출국할 수 있게 되었다.

헬스카드(Health Card)

외국인 거주자들이 하마드의료법인(Hamad Medical Corporation) 및 보건소(Primary Health Care Corporation)와 같은 공공 진료서비스를 받으려면 헬스카드가 필요하다. 신분증, 증명사진 (여권용), 전기수도요금고지서

(Kahramaa Bill)를 지참해 거주지에서 가까운 진료소(Health Center)를 방문, 100 리얄(약 27달러)을 카드로 결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의 카타르 진출과 관련된 사항

금융 시스템

카타르 중앙은행(QCB)은 카타르의 통화 정책을 담당하고 상업 금융시스템을 감시하는 정부 기관이다. 또한 국제금융기관을 상대하며, 정부 은행으로서 화폐를 인쇄, 발행한다. QCB는 개별 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준수 여부 감독 등 카타르의 모든 국내의 은행 활동을 감독한다. 카타르에서 영업 중인 모든 은행은 QCB가 공표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동 회계 기준은 국제재무보고기준(IFRS)과 일치한다. QCB의 지속적으로 고정 환율 정책을 시행중이며, 일반은행들 또한 보통 QCB에 의해 결정된 환율 기준으로 영업한다. 그러나 몇몇 일반 은행들은 공공 거래 시 QCB 고정 환율 금액의 0.24%를 추가로 부가하기도 한다.

카타르에는 총 20개의 은행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12개가 국립 은행(이슬람 은행 4개), 8개가 외국계 은행이다. 정부 소유이자, 카타르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카타르 개발은행(QDB)은 프로젝트 초기자금 대여 및 맞춤형 프로젝트 거래조건 등을 제공한다.

카타르는 또한 이슬람 금융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다. 카타르 기업들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나 상거래에 투자한다. 샤리아는 이자를 금지하며 이윤을 분배(또는 손실 분배)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 전통 상업 은행들은 독자적 이슬람 지사를 설치, 이슬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법상 특별 제한이 있으며, 동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다.

증권시장

1997년 5월에 개장한 도하 증권 시장에는 카타르의 공공 지주회사들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장기업 발행 주식 자본금의 최고 49%까지 투자할 수 있다.

카타르 내 주식거래는 카타르주식거래소(Qatar Stock Exchange, QSE)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카타르금융시장위원회(Qatar Financial Markets Authority)가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은 QSE에 상장된 기업 지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2022년 11월 기준 QSE에 상장된 기업은 총 47개다.

상장기업

구분	기업
은행 및 금융 서비스	QNB, Qatar Islamic Bank, Commercial Bank of Qatar, Doha Bank, Ahli Bank, Intl. Islamic Bank, Rayan, Lesha Bank, National Leasing, Dlala, Qatar Oman, Inma
소비재	Zad Holding Company, Qatar German Co, Med, Salam International, Baladna, Medicare, Cineman, Qatar Fuel, Widam, Mannai Corp., Al Meera
산업	QAMCO, Ind. Manfi. Co., National Cememt Co., Industries Qatar, The Investors, Electricity & Water, Aamal, Gulf Internateional, Mesaieed, Estithmar Holding
보험	Qatar Insurance, Doha Insurance, QLM, General Insurance, Alkhaleej Takaful, Islamic Insurance
부동산	United Dev. Company, Barwa, Ezdan Holing, Mazaya
통신	Ooredoo, Vodafone Qatar
교통물류	Qatar Navigation, Gulf Warehousing Co, Nakilat



케냐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개관

○ 케냐 경제개황

구 분	내 용
위 치	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동북부는 소말리아, 서북부는 에티오피아 및 남수단, 서부는 우간다와 접경)
면 적	569,259km ² (한반도의 약 2.7배)
인 구	5,092만 명(2021년)
수 도	나이로비(Nairobi, 인구: 약 440만, 해발고도: 약 1,700 m)
언 어	스와힐리어(국가어, 공용어), 영어(공용어)
GDP	1,100억 달러 (2021년)
1인당 GDP	2,000 달러 (2021년)
GDP 성장률	5.5% 전망 (2022년)
물가상승률	6.1% (2021년)
수출입	수출: 6.7억 달러 (2021년, 원예작물, 차 등) 수입: 198억 달러 (2021년, 기계류, 석유제품 등)
외환보유고	72억 달러 (2022년 11월 기준)
공공부채	670억 달러 (2021년 12월 기준)
환율	USD 1 = 121.61 케냐실링 (2022년 11월 기준)
외국인직접투자 (FDI)	4.5억 달러(2021년)

자료 : World Bank, IMF, UNCTAD

케냐는 사회주의 정치·경제체제를 채택한 주변 아프리카 국가와 달리 1963년 독립 이래 친서방 외교노선과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 1980년대 말까지 안정된 정치·경제체제를 유지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들어 엘니뇨에 따른 농작물 피해, 제조업 분야 위축, 나이로비 미국대사관 폭발 사건 등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으며, 2000년에는 독립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경제성장(-0.3%)을 기록하였다.

2004년 이후 관광산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의 호조, 정보통신산업 발전 등으로 2007년에는 7.0%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2007년 12월 27일 대선 이후 2개월여 간 계속된 종족 간 폭력사태로 인한 교통·수송망 등의 인프라 파괴, 관광산업 부진, 고유가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었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립정부 형태로 정치안정이 이루어지면서 2008년 1.7%, 2009년 2.6%, 2010년 5.8%, 2011년 6.1%의 경제회복이 이루어졌다. 2013년 평화적인 정권이양으로 다시 5.7%, 2014년 5.3%, 2015년 5.6%를 기록하면서 호조세를 보여왔으나, 2017년 대선 결과가 대법원에서 무효화된 후 재선거 등 내부 혼란이 지속되며 경제성장률이 하락해 2017년 2분기 기준 5%를 기록하였다. 대선으로 인한 갈등이 2018년 여야간 정치적 타협으로 봉합되면서, 2018년 경제성장률은 6.3%를 기록하였고, 2019년은 5.7%를 기록하며 다시금 안정세를 회복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2020년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하였으나 2021년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7.5%로 반등하였다. 한편, 2022년 경제성장률은 대선 전 정국불안 등의 요인으로 5.5%로 잠점집계 중이다. 고물가, 식량난, 실업률, 대외부채 등 경제난 해결이 신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케냐는 2030년까지 연평균 10%의 경제성장 및 중진국 진입을 골자로 하는 케냐 중장기 국가성장전략인 'Kenya Vision 2030'을 발표(2008년 6월)하여 각종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핵심 경제개발 계획인 Big 4(제조업 활성화, 식량안보 달성, 보편적 의료보장 실현, 안정된 주거 확립)를 발표하고 핵심역량을 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2022년 출범한 신정부 역시 이전 행정부에서 추진하던 프로젝트들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주요 수출품(차, 화훼, 커피 등)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 농업부문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농업 외 중소기업 지원, 주택건설, 보건, 디지털 경제를 5대 핵심 부문으로 선정하였다.

2021년 한국의 대케냐 수출은 2억 5,800만 달러, 수입은 약 4,700만 달러이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화학 제품, 합성수지, 정밀화학원료 등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기호식품, 동제품, 금속광물, 의류이다. 한국의 대케냐 수출액은 2017년 2억 494만 달러, 2018년 2억 3,959만 달러, 2019년 2억 5,112만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은 2019년 4,360만 달러 대비 5.5% 증가한 수치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및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참여 동향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3국이 중심이 되어 1967년 창설되었다. 1970년대 중반 각국의 국내사정 등으로 EAC가 중단되었으나, 2000년에 다시 부활된 후 2007년 브룬디와 르완다가 가입하였고, 2016년 남수단이 가입하는 등 동아프리카 경제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2021년 기준 소비인구 약 2억 8,370만 명, 총 GDP 약 3,053억 달러). 2022년 4월 DR콩고가 공식 가입하였으며, 소말리아도 2022년 5월 신정부 출범 이후 가입의사를 밝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EAC 사무국은 탄자니아 아루샤에 소재한다. EAC는 2006년 1월 1일자로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2010년 7월 공동시장(Common Market)을 출범시켰으며, 2013년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단일화폐 통합추진을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화폐통합 및 궁극적으로는 회원국간 정치연맹(Political Federation of the East African States)을 추진하고 있다.

EAC 관세동맹은 역내외 국가를 구분하여 관세를 적용하는데, 역내 국가 간

거래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며, 역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원자재는 0%, 중간재는 10%, 완제품은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역내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2년 5월 유제품, 육류, 곡물, 철, 식용유, 과일, 견과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최대 35% 관세 적용에 합의하였다.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도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제조업 부문의 고용 및 수입 증가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케냐는 전체 약 5억 8,600만명 인구의 21개 아프리카 국가가 참여하는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COMESA는 1994년 출범했으며, 2000년에는 역내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창설하여 회원국간 무역장벽을 철폐했다. 역내 원산지 규정도 단순화하여 회원국에서 35%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특혜관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WTO 등의 기준을 고려한 개정을 지속 추진 중이다. 2009년 6월 13차 COMESA 정상회의에서부터 3년간의 경과규정을 두고 COMESA 회원국 간 관세동맹을 출범기로 하였으며(일부 회원국들 유보적 입장 표명), 완전한 관세동맹 이행을 위해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지연되고 있다.

2020년 기준 COMESA를 통한 케냐의 수출은 약 17억 7,500만불로 케냐의 수출의 27% 이상을 차지하였고, EAC는 약 14억 4,000만불로 22%를 차지함에 따라 역내 경제통합 심화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EAC와 COMESA,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를 통합하는 TFTA(Tripartite Free Trade Area)가 추진 중으로 2022년 11월 기준 11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나 발효를 위한 14개국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3개 지역 공동체 회원국들은 비준 및 이행을 위한 절차 완료를 촉구하고 있다.⁸⁵⁾

85) 2018년 1월 30일 기준 27개 회원국 중 22개국이 TFTA 추진에 동의하는 합의서에 서명을 완료하였다. 당초 2016년 6월까지 1단계로 원산지 규정 및 관세동맹에 대한 동의안 도출, 2단계로 서비스 관련, 지적재산권 등 비관세 무역장벽 합의 등을 해결코자 했으나,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여 서비스 무역 관련 2차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향후 TFTA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아프리카 27개국, 약 6억 3,000만 명의 인구가 포진해 있는 시장에 최대 85%에 해당하는 품목을 관세 제약 없이 수출입할 수 있게 된다.

TFTA를 아프리카 전체로 확대하는 개념으로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가 2018년 3월 출범하여 GDP 규모 총 3.4조 달러, 13억 소비시장을 보유한 세계최대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예정이며, 역내 상품 90%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앤 뒤 전면 철폐하겠다는 방침이다. 케냐는 AfCFTA 비준서의 최초 기탁국이 되는 등 결성을 주도해왔다.

케냐는 2022년 7월 AfCFTA 시범무역 실시국가(7개국: 케냐, 르완다, 카메룬, 이집트, 모리셔스, 탄자니아, 가나)로 선정되었으며,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케냐의 교역국을 서부 및 중앙 아프리카까지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저개발국 경제 개발 지원의 목적으로 2000년에 시행된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은 2015년 3차 개정되어 2025년까지 연장되었다. AGOA를 통해 케냐의 적용 품목들은 대미 수출시 무관세, 무쿼터 적용을 받는다. 2022년 신정부는 AGOA를 적극 활용하여 케냐의 수출품목을 의류에서 고부가가치 농산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2025년 AGOA 종료 계기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2월 케냐와 미국은 FTA 협상 의향서를 체결하고 7월부터 협상을 개시했다. 당시 미국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FTA를 시도함에 따라 동 협정이 향후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참여 중인 EAC 및 AfCFTA의 틀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 2022년 7월 케냐와 미국은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을 출범하고 농산물 무역, 부패방지, 디지털 무역, 환경 및 기후변화, 규제환행, 중소기업 지원, 여성권리 및 보호 증진, 여성 및 청년들의 무역참여 지원, 관세 절차, 표준화 부문의 로드맵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25%의 수입관세와 16%의 VAT를 부과하며 주요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수입세율은 EAC 공동역외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에 따라 0%, 10%, 25%이며 민감품목에 대해 별도의 관세를 부과한다.

모기장 및 모기장 제조용 자재, 파종을 위한 씨앗, 교육용품 및 자료, 유엔이나 구호기관 등의 긴급 구호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면세품목은 지속적으로 변동됨에 따라 사전에 관세청(www.kra.go.ke)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케냐 관세청(KRA)은 2019년 통합관세관리시스템(iCMS: Integrated Customs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21년 10월부터 본격 시행 증인데 오히려 수출입 절차에 혼란을 가중시켜 전체 절차가 지연되는데 부정적으로 기여한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2022년 8월 인접국에서 생산한 식품(차)이 몸바사 항구에서 통관되기까지 2주 이상이 소요되며 결국 환불사태가 발생한 사례가 발생하여 향후 비관세 장벽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수입품의 가격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수입품의 케냐시장 점유율이 현저하게 높아지거나 케냐의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반덤핑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품목별로 상이하다. 반덤핑 사례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17년 8월부터 무역구제법(Trade Remedies Act)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부족, 덤핑 혐의를 받는 국가에 대한 자료 부족, 동 분야에 대한 전문가 부족으로 역내 국가들과 빈번한 무역분쟁을 겪고 있는 케냐로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수입품 통관 시에는 관세청에 등록된 대리인을 거쳐야 하는데, InfoTradeKenya 웹사이트(infotradekenya.go.ke)를 통해 대리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수입신고서(IDF: Import Declaration Form) 등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통관절차는 케냐와의 무역 시 가장 커다란 애로사항의 하나로 절차가 느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규정 적용이 매우 자의적이며 부정부패에 노출되어있다.

자동차 수입 관련 규정

케냐 표준청(Kenya Bureau of Standards)의 품질규정에 따라 생산된 지 8년 이상 된 차량은 수입할 수 없다. 생산연도와 관련 이를 5년으로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 수입 시에는 25%의 관세(CIF 기준), 20% 소비세(CIF+관세 기준), 16% 부가세(CIF+관세+물품세 기준), 2% IDF 비용, 1.5%의 철도개발부담금 등 차량가격의 64.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중고 자동차 수입 시에는 선적지(주로 일본)에서 검증을 마쳐야 하며, 일본품질검사서비스(Quality Inspection Services Japan)로부터 취득한 인증서를 통관 시 제출해야 한다. 우측핸들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다.

표준, 검사, Labeling 관련

케냐 표준청은 2005년 9월부터 수입품이 케냐의 기술규정 및 의무표준, 승인된 규격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적전수출적합자격검사(PVoC: Pre-Export Verification of Conformity)를 수행해왔다. 표준청 웹사이트(www.kebs.org)에는 요건, 검사절차, 면제물품 등이 기재되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무역부는 2019년 의약품에 대해 3개월간 PVoC를 면제하는 등 규정 적용이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기준을 파악하여 통관 시 문제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표준청에서 일부 저가, 저품질 수입품 유입에 따른 제한조치로 수입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 제품과 관련된 사례로는 ① 케냐 표준청에서 라면에 대한 별도의 규격/성분기준이 없어 파스타 기준을 적용하여 판매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적이 있고, ②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의 수입통관 시 표준청에서 한국표준 준수 마크 미표기를 사유로 케냐 품질규정에 미달한 것으로 판정하여 환적한 사례가 있으며, ③ 2003년 한국의 젤타입 볼펜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현지 경쟁업체들의 사주를 받고 한국산 젤에 대해 여러 이유를 들어 기준 미달 처리한

사례가 있다. ④ 2017년 케냐 정부가 비현실적인 에너지효율기준을 설정하여 한국 기업 제품을 포함한 에어컨 수입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상기와 같은 사례는 향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수출업체들은 현지 수입상과 거래 시 수입상을 통해서 표준청으로부터 품질 및 규격 승인 절차를 확인, 요청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2014년부터 동아프리카 국가들은 역내의 물류통관을 단일화하는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System) 도입을 추진해왔다. 케냐는 케냐국가전자통관단일창구(KNESWS: Kenya National Electric Single Window System)를 구축하여 2015년 7월 1일부로 몸바사항 물류시스템 이용자에게 모든 통관 절차의 전산화를 완료하였다. 케냐에서의 모든 물류통관은 KNESWS의 관리하에 케냐 관세청, 무역청, 보건당국 등 약 25개의 관계 부서로부터 라이선스, 무역허가 등을 일괄 취득하게 되었다.

중국이 건설한 표준궤 철로 몸바사-나이로비 구간이 2017년부터 개통되었다. 그동안 한국에서 몸바사까지 해상운송 시 최소 4주간 소요되었으며, 몸바사에서 나이로비까지 육로의 경우 길게는 1주(통관 및 운송 포함)이상 소요되었으나, 표준궤 철로 개통 이후 4시간 30여분으로 상당 시간 단축되었다. 그러나 20ft 컨테이너 운반시 도로운송 비용은 평균 650달러가 소요되는 반면 표준궤철로 이용 시 741~767 달러까지 소요되어 이용이 저조한 편이다. 케냐 정부는 2020년부터 표준궤 철로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몸바사항에 도착한 화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표준궤 철로를 이용하여 나이바샤 내륙항으로 이동, 통관을 거치도록 지시하였으나, 2022년 9월 신정부 출범 이후 몸바사에서 통관절차 등 주요 항만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시를 되돌렸다.

환경관련 규제

케냐 환경법은 모든 국민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환경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은 기업에 오염 활동을 중지하고 원상회복 및 복구를 명할 수 있다. 환경법에는 오염자 부담원칙,

자연보호지역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광산, 도시개발, 수송망, 농업, 전기 및 제조업 분야의 투자 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케냐는 2017년 6월 말부터 케냐 내 환경보호를 위해 비닐 포장지와 비닐 쇼핑백의 사용을 전면 금지 조치하였다. 케냐환경관리국(National Environment Management Authority)은 본 규정을 위반하는 개인 및 제조기업에 대해 최대 4만 달러의 벌금 또는 4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발표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

케냐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의 회원국이다. 케냐는 관련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무역관련지식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서명국이며, 지용신안(Utility Models),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s), 합리화모식 재산권보호 관련법인 상표권(Trade Mark), 특허권(Patents), 저작권(Copyrights), 식물육종가권(Plant Breeders Rights), 산업재산권법에 따른 기술혁신(Technovations under the Industrial Property Act),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Act), 영업비밀(Trade Secrets),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

각종 지식재산권은 산업통상기업개발부(Ministry of Industrialization, Trade and Enterprise Development) 산하 케냐산업재산권 사무소(Kenya Industrial Property Office)가 관리하고 있으며, 범죄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과 관세청에서도 상기 지재권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권한을 수행하고 있다.

케냐의 지식재산권법은 지식재산권 침해 시 최대 5,000 달러 벌금 및 3~5년의 징역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위해 2006년 케냐산업재

산업기구(Kenya Industrial Property Institute) 산하에 집행담당부서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케냐인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당국의 법률 집행은 매우 미약한 편이나 최근 케냐 정부가 불법 복제품, 모조제품 및 기준 미달 상품의 자국시장 진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케냐를 비롯한 남아공 등 일부 국가들은 특정 조항들로부터 면제를 요구하며 코로나 19 백신, 치료 및 테스트 관련 데이터,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기를 요청한바 있으나,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거부 의사를 표명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투자장벽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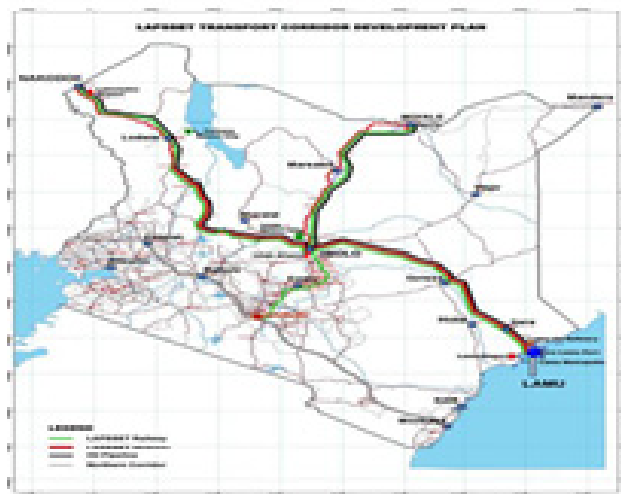
케냐는 1963년 12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아프리카 국가 중에는 상당히 일찍부터 농공병진과 교육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그동안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내국인 투자 및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해 왔다. 특히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발달한 산업기반과 인프라 시설을 보유하는 등의 장점이 있어 많은 외국계 기업이 동아프리카 진출 거점으로서 케냐를 투자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다. 케냐를 통해 인근국인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소말리아, 남부 에티오피아 및 남수단, 동부 콩고 시장까지 상권을 형성할 수 있다.

케냐는 세계은행 산하기관인 다자간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및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회원국으로서 투자에 대한 안전 장치를 보장하고 있다.

물류 인프라에 있어서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2022년 기준 전체 도로 망 246,757km 중 161,055km가 등급이 매겨진 도로(Classified)이다. 열악한 도로망은 2009년 전체의 59%에서 37%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대규모 투자를 통한 도로 정비가 필수적이다. 또한 인도양에 위치한 몸바사항은 케냐 뿐만

아니라 중·동부 아프리카의 수송거점이지만, 부족한 화물 처리 시설, 부정부패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라무항 개발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케냐가 추진하는 항만, 철도, 도로, 정유소, 송유관, 리조트 건설 등 약 200억 달러 규모의 LAPSET(Lamu Port-Southern Sudan-Ethiopia Transport)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더디게 진행되어 2021년 5월 이래 32선석 가운데 3선석이 완공된 상태이다.

○ LAPSET 프로젝트



자료: LAPSET CORRIDOR DEVELOPMENT AUTHORITY

케냐는 전력사정이 매우 열악한데, 케냐의 전력 단가는 2022년 3월 기준 가정용은 약 0.208 달러/Kwh, 산업용은 약 0.146/Kwh이며, 주변국들에 비해 높은 가격과 공급불안정은 제조업 해외투자 유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다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케냐는 탄자니아 등 주변국 대비 부진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청(KenInvest) 산하에 One Stop Center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법인설립기간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케냐는 1964년 외국인투자 보호법(1976년, 1981년, 1988년, 1994년, 2009년 소폭 개정)을 제정하고, 헌법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권 침해 금지조항을 두는 등 외국인 투자 보호 및 유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오고 있다. 케냐 정부는 최근 녹색에너지, 인프라, 농업, 석유 및 가스, 정보통신 부문의 투자유치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제한이 있는 부문은 항공, 보험, 통신, 부동산, 금융, 광산 등에 국한된다. 예를 들어 항공 부문에서는 기업 의결권의 51%를 케냐 정부와 케냐국민이 보유해야 하며, 통신부문에서는 면허 발급 후 3년 이내 최소 20%의 지분을 현지인에게 발행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허가는 1986년까지 상공부와 재무부에서 관장하여 투자절차가 번거로웠으나 1987년 투자진흥센터(Investment Promotion Center)가 설립되어(2005년부터 Kenya Investment Authority로 변경) 외국인 투자자에게 각종 상담 및 투자허가 등을 일체 지원해 주고 있다. 2002년부터 해외 직접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종전의 50만 달러 이상이던 투자인정 최소금액을 약 10만 달러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2004년 말부터 종전의 23여 가지 서류 처리가 필요하던 투자승인절차를 단 1개의 서류로 일괄 처리하도록 간소화시켜 해외 투자유치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케냐는 1986년 보세가공무역(Manufacturing Under Bond)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보세가공 생산품은 100% 수출의 경우에만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세가공제도는 케냐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유치 및 수출활성화를 위해 1990년 수출가공지대(EPZ: Export Processing Zone)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EPZ 입주기업은 최초 10년간 법인세 및 원천징수세가 면제되며, 다음 10년간은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최초 10년간은 외국인 고용자에 대하여 소득 및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감면되며, 기계류 및 원자재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고, 외환송금에 대한 규제도 없다. 2020년 초 기준 전국 74개 EPZ 내 137개 기업이 6만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

고 있으며 케냐 경제에 7억 1,300만 미불을 기여하였다. EPZ의 54%가 미국과의 AGOA 아래 의류수출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50% 이상의 기업이 인도계가 대다수인 외국인들의 소유이며, 나머지는 케냐 현지인 혹은 합작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는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과세이익의 30%, 외국계 지사에 대해서는 37.5%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VAT)는 현지법인, 외국계 지사 공히 16%가 부과된다.

케냐 정부는 2015년 9월부로 경제개발특별구역법(Special Economic Zone Act 2015)을 발효하였다. SEZ법은 “SEZ 내 제조품에 대해서 최소 50%(일반품목) 이상 최대 100%(Industrial Park Scheme 등을 통한 투자시)까지 현지 시장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현지시장’은 EAC 회원국 시장을 모두 포함하는바, 케냐에서 원산지 증명을 받으면 동아프리카 소비시장에 제조품의 50% 이상이 무관세로 진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아티리버 수출자유공단이 섬유산업 특화 SEZ로 지정되었으며, 몸바사에 자유무역항 조성(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Dongo Kundu SEZ 건설 예정), 키수무(Kisumu) 지역에 농업 및 수산물 특가공 수출 단지 조성 사업이 행정적, 재정적으로 힘을 얻게 되었다. 그 외에도 가축산업특화단지, ICT 특화단지(Konza IT 신도시), 대규모 농업단지(현재 갈라나(Galana) 지역에 2만 에이커 농업단지 조성 중)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케냐는 보험, 정보통신, 전력·항만 등 인프라, 언론 분야를 제외하면 자국민의 일정 지분 소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보험, 정보통신 분야는 외국인 지분이 각각 66.7%, 70%까지 제한되어 있으며, 나이로비 주식시장에 상장된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75%까지 허용하였으나, 2015년 외국인 소유한도를 75%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100%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였다.

전력, 통신 등 공익산업과 농업용 토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규제되며, 기존

협동조합과의 유통망진출, 케냐기업 인수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외국기업이 직접 소매상과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허가받은 도매상을 통해 내수판매만 가능하다.

금융상의 제한

1995년 6월 외환에 대한 완전자유화 조치를 시행하여 투자원금의 본국송금, 이익금 및 배당금 송금 등은 완전 자유화되어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외환 구좌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공공수용 및 허가 철회

케냐법은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자산을 보호하며, 공공수용은 공공이익 및 국가안보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케냐는 1963년 독립 이래 외국인 소유 자산을 수용한 사례가 없다.

2004년 제정된 투자증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은 투자 라이선스 신청 시 거짓 정보 및 진술을 제공하였거나 투자증진법 규정에 위배될 경우, 또는 케냐투자청에 허위로 대표를 등록할 경우 투자 라이선스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취소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민·노동법 관계

케냐는 케냐에서 7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한다. 케냐에서 사업을 하거나 현지법인 및 지점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사증(Work Permit)을 취득해야 한다. 취업사증은 보통 2년 단위로 발급된다. 이 중 기업 취업에 필요한 Class D의 취득비용은 연장시 약 2,000달러이며, 개인 사업을 위해 필요한 Class G는 매년 약 1,000달러가 소요된다. 하지만, 이민국 직원들의 부정부패로 상기 공식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비공식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취업사증 취득에 평균적으로 6개월 전후가 소요된다. 케냐정부는 중간관리자 및 기술직을 케냐 현지인으로 채우도록 독려하는 정책을 쓰고 있으며, 자국민들의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들의 취업사증 취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취업사증 발급건수는 2020년 5,851건에서 2021년 7,332건으로 증가했으며, 연장건 수도 2020년 11,395건에서 2021년 11,973건으로 늘었다.

케냐 노동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를 6개월 기간 동안 수습생(probationary) 자격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수습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에 노동자 해고 시에는 7일의 통지기간이 있으며, 동기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통상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며, 1개월 상당의 보수, 연가보상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법은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분쟁을 중재하거나, 중재자를 지정하거나, 산업법원(Industrial Court)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일단 분쟁이 중재 등에 회부되면 파업은 불법이다.

케냐 정부는 2007년 말 ‘고용법(Employment Act)’, ‘노동관계법(Labor Relations Act)’, ‘산업재해보상법(Work Injury Benefits Act)’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노동법은 여성들에 대한 의무적인 3개월 출산휴가, 남성들에 대해서도 2주간의 육아 휴가를 도입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산업재해보상법은 영구 장애 발생시 월소득의 96개월분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일 이상 업무능력에 지장을 주는 장애가 발생한 노동자는 임금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고, 상기 임금 보전은 12개월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에 대해 응급처치뿐만 아니라, 의료 시설, 교통수단, 치료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자가 작업장에서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부양가족들은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최대 32.5%를 청구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정부, 고용주, 노동자가 참여하는 임금결정위원회가 매년 5월 1일 최저임금을 결정하나 실제로는 직장별 고용주 연합과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으로 결정된다. 2021년 기준 케냐의 최저임금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케냐 최저임금 현황 (2021)

(단위: 케냐 실링)

직업	나이로비-몸바사-키수무		기타 주요도시		그 외 지역	
	월급	시급	월급	시급	월급	시급
1. 일반 노동자 (청소부, 정원사, 유모, 가정부, 마사지사)	13572.90	121.30	12522.70	110.90	7240.95	67.80
2. 광산 노동자, 요리사, 웨이터	14658.85	132.10	13005.70	112.40	8366.35	75.60
3. 야간 경비원	15141.95	136.55	14038.00	124.30	8636.30	79.365
4. 기계 관련 보조, 빵집 점원	15383.45	141.75	14315.30	125.50	11602.90	104.30
5. 기계 숙련공, 트럭운전수	17561.00	157.60	16428.30	132.10	13431.30	121.30
6. 인쇄공, 기계관련 도구 직공	18319.50	164.90	16907.90	150.40	13975.30	880.30
7. 점원, 전화교환수	20904.90	188.30	19112.05	151.40	16295.95	146.30
8. 재봉사, 운전수 (중간 크기의 차량)	23039.40	205.10	21175.15	188.60	18881.21	169.25
9. 염색공, 트랙터 운전수, 외판원	25435.20	228.60	23731.80	212.60	21418.50	188.85
10. 관리인(건물)	28147.60	253.25	26283.30	235.80	24485.10	218.90
11. 출납원, 운전수 (대형 장비)	30627.45	275.95	28822.10	260.55	27023.95	243.05
12. 예술가	18319.50	164.90	16907.90	150.40	13975.55	124.05

자료: 케냐 노동부

사회보장기금(NSSF: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과 국민의료보험(NHIF: National Hospital Insurance Fund)은 케냐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NSSF는 2013년에, NHIF는 2015년에 납입료와 대상을 전면 개편하여, 고용인 및 피고용인 양측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2013년 이전에는 최대 400실링(4달러)을 고용인이 50%, 피고용인이 50%를 각각 분담하였으나 개편 이후, 총 월 소득의 12%를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각각 50%씩 분담, 최대 2,160실링(22달러)까지 부과한다.

NHIF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종전 보험료는 공식부문 근로자는 소득에 따라 월 30~320실링(0.3~3.2달러) 차등 납입,

비공식부문 종사자는 월 160실링(1.6달러)의 정액을 납입토록 했으나 개정된 NHIF는 케냐인의 소득을 반영함과 동시에, 세세한 소득 구분을 통한 공정한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여, 고소득자의 경우 320실링(3.2달러)에서 1,700실링(17달러)으로 5배 이상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였다.

연간 공휴일은 12일이며 연간 법정 유급 휴가 일수는 최소 21일이다. 하루 법정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평일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급여에 1.5배를 더하여 지급하고, 공휴일 또는 휴일 근무 시는 1일 급여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1주당 노동시간은 최대 52시간이나 실제로는 45시간 수준이며, 2주당 최대노동시간은 초과근무를 포함 120시간(야간근무자 144시간)이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케냐의 토지는 정부(공유지, 전체의 약 20%), 신탁(Trust Land, 전체의 60%로 County Council 소유), 개인소유 3가지로 분류되며, 소유권의 종류에는 소유(Freehold), 임차(Leasehold, 99년 한도), 전통적 보유(Customary Tenure, 지역 및 종족에 따라 상이) 3가지로 나누어진다. 정부소유 토지는 99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며, 임차권은 공공경매를 통해 획득할 수 있으나, 부패로 인해 일시적으로 추첨방식이 사용되기도 했다. 토지법에 따르면 케냐인 및 케냐인이 주주인 주식회사만이 커피 및 원예 농업 등에 필요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유할 수 있다. 대통령은 기본 농산물 재배를 위해 토지가 필요한 농업제품 가공회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외국인의 농지소유를 허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 및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케냐법은 모든 재산권(토지, 건물, 저당 등)의 취득 및 처분을 보호하고 촉진한다고 규정하지만, 실제로 토지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렵고 불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케냐의 토지등록부 대장 관리 상태는 매우 열악하며, 투자자들이 정당한 거래를 했더라도 관리대장이 전산화되지 않아 토지대장 등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2019년부터 전국 토지정보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였으며 나이로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기준 시스템 불안정 등의 요인으로 실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무역장벽

케냐의 ICT 부문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모바일 시장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2021년 기준 모바일보급율이 이미 131.88%에 도달하며 전자상거래 기업(Amazon, Alibaba, Jumia, Masoko)과 차량공유서비스(Little Cab, Uber, Bolt) 등 국내외 기업들이 동 부문의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자상거래 참여를 위한 추가적인 조건은 없다.

2018년 이미 국세청은 디지털 경제에 세금을 부과하여 과세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2019년 11월 대통령은 디지털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재정법(Finance Bill, 2020)을 승인하였다. 재무부는 2021년 1월부터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도입하여 케냐 디지털 시장에서 파생되거나 창출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 총거래가치의 1.5%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3%로 추가 인상 방안도 모색 중이다.

케냐는 2019년 11월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9)을 통과시켰으며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보호 감독관직 설치,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 등록 규정 도입, 개인정보주체 권리강화 등을 포함한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은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가 감독관에게 개인정보보안 및 보호와 관련하여 적절한 보호장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하지만 관련 절차의 세부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당분간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동법은 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 과태료 부과 등의 광범위한 권한을 감독관에게 부여한다. 허가받지 않은 자가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취득한 경우, 정보주체에 실질적인 위협의 위험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관리자는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5만 달러,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정부조달

케냐에는 2018년 현지조달법안(Local Content Bill)이 통과되는 등 현지조달을 규정이 있으며 국내산업활성화를 위해 점차 강화하는 추세이다. 케냐 정부는 동 법안으로 국내기업이 생산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및 국제 시장으로 확대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공공조달 및 자산처분법(The Public Procurement and Asset Disposal Act, 2015)은 케냐 국민이 소유한 기업과 케냐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다, 특히 Buy Kenya, Build Kenya 정책은 각 정부조달의 40%를 현지 조달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조달 주체가 외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 상품을 조달할 경우 증거를 상세히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조달의 최소 30%가 여성, 청소년, 장애인이 소유한 기업에 낙찰되어야 하며, 주정부의 경우 조달 입찰의 20%를 해당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 낙찰하도록 한다.

동식물 위생과 검역

모든 식물 수입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케냐식물위생검사국(KEPHIS: Kenya Plant Health Inspectorate Service)이 발행한 수입허가서에 명시된 조건들의 적용을 받는다. 케냐는 1999년부터 식물의 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의 회원이다. 케냐 내에서 유통되기 전에 종자인증은 필수이며 이 과정은 최대 3년이 소요될 수 있다. 해충방제위원회(PCPB: Pest Control Products Board)는 지정된 연구기관의 테스트를 거쳐 케냐에서 수입하거나 유통되는 모든 농약을 등록토록 요구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투자환경 일반

코트디부아르는 2011년 와타라 대통령 취임 이후 점차 안정되고 있는 국내 정세를 기반으로 2012년 2012~19년 연평균 8.6%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20년 및 2021년 각각 1.8% 및 6.5%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2011~2015년간 4천억 프랑세파(약 7억 달러) 예산의 대통령긴급계획(PPU)을 실시하여 지난 10여년의 내전으로 파괴된 상수도·보건·교육·전력·도시위생 시설을 긴급 복구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내전시기 튀니지로 임시 이전했던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본부가 아비장으로 복귀하는 등, 코트디부아르는 과거 내전을 딛고 점차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2년 IMF와 세계은행의 과다채무빈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y) 결정으로 국가 채무의 일정 부분을 탕감 받게 되었으며, 2012~15년간 11조 760억 프랑세파(약 181억 달러) 규모의 제1차 국가개발계획(PND) 및 2016~20년 30조 프랑세파(약 490억 달러) 예산 규모의 2차 국가개발계획(PND)에 이어, 2021~25년간 59조 프랑세파(약 960억 달러) 규모의 제3차 국가개발계획을 실시 중에 있다. 또한, 투자법 개정, 투자청(CEPICI) 단일창구(Single-window) 개설, 상사법원 신설 등을 통해 특별히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평가에서 2015년 세계 147위, 2016년 142위, 2017년 139위, 2018년 122위, 2019년 110위 등 순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도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인정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창업과 기업금융 제도에 가장 많은 개혁을 이룬 10개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관세·통관 장벽

코트디부아르 통관 업무는 관세청(DGD)과 수탁 민간회사 Webb Fontaine 사가 맡고 있으며, 통관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단일창구(GUCE)⁸⁶⁾가 신설되어 있다.

관세

코트디부아르는 WTO(세계무역기구), UEMOA(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 ECOWAS(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회원국이다. 공동대외관세(CET)가 1998년 UEMOA 차원에서 발효된 데 이어 2015년에는 ECOWAS 차원에서도 적용되면서, 서아프리카 지역 경제 통합이 진전되고 있다. ECOWAS 공동대외관세 제도에 따르면, 수입품은 △사회적 생필품(면세), △필수재화·원자재·자본재(5%), △중간재(10%), △완제품(20%), △경제개발을 위한 특수재(35%) 등의 5가지 대역으로 구분되어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관세가 △수산물(5~20%), △쌀(5~20%), △주류(7~35%), △담배(23~35%), △시가(30~35%), △일부 직물(20%), △석유제품(5~20%) 등에 부과된다.

코트디부아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HS 분류 및 해설과 해당 세율은 주재국 정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 주재국 정부 관세청: www.douanes.ci

※ 종류별 해설:

www.douanes.ci/?page=Profes.TARIF.RechTAR.ListChap&rub=tarif_douanier&typrub=srub

86) <https://guce.gouv.ci>

수입 부과금

UEMOA 공동부과금(PCS), ECOWAS 공동부과금(PCC), 통계수수료(RSTA) 등이 별도 징수된다. PCS는 UEMOA 기금 조성을 위해 1%가 부과되며, △재수출용 물품, △통과용(transit) 물품, △국제협약에 따른 인도적 목적의 원조 물품 등은 면제된다.

PCC는 ECOWAS 회원국 중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말리 등 CET 관세 징수가 불가능한 내륙국에 대한 보상기금 조성을 위해 0.5%가 부과되며, RSTA가 무역자료 정보화 기금 조성 목적에서 1%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TVA)

부가가치세가 모든 수입품에 대해 CIF 가격, 관세, 수입 부과금 등의 합산액 기준에서 18%가 부과된다.

수입 규제

수입 금지·제한 또는 사전허가가 필요한 품목으로는 석유 제품(petroleum products), 동물 부산물(animal products), 식물·종자, 무기, 플라스틱 가방, 종류 기구, 음란물, 사카린, 마약류, 폭약, 불법 약품, 독성 폐기물 등이 있다.

또한, 최소수입가격제도(MIPs)가 식용류, 시가, 설탕, 현옷, 농축 토마토 페이스트, 파쇄미곡, 성냥, 제본 서적, 티슈, 폴리프로필렌 가방, 주류, 우유 등의 상품에 적용되고 있다.

2021년 5월 기준, 한국 대상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규제는 없으며, 전 국가를 대상으로 19건의 위생검역(SGS) 조사 진행, 15건의 수량제한(QR)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한편,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 문제 완화를 위해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2017년 12월부터 중고차량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차종과 용도에 따라 연식 5년~10년 사이에서 차등을 두어 실시하고 있다.

※ 승용차 5년, 미니버스 7년, 소형트럭 7년, 대형버스 10년, 대형트럭 10년

화물위치추적서(BSC)

코트디부아르 등 프랑스어권 서아프리카 국가는 통관 절차에서 화물위치추적서(BSC)를 특별히 요구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 해운청(OIC)에 온라인으로 선하증권(B/L), 세관신고서, 원산지 증명서, 포장명세서, 화물정보, 상업송장 등을 제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후 BSC를 발급받을 수 있다.

※ BSC(Bordereau de Suivi de Cargaison)는 영어로 Cargo Tracking Note 또는 Loading Certificate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개별 국가마다 명칭이 다소 상이

※ 코트디부아르 관세청(DGD) www.douanes.ci

※ 코트디부아르 해운청(OIC) www.oic.ci

수출선적인증서(VOC)

2018년 7월부터 코트디부아르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수출업자는 물품 선적 전 서류 확인 검사를 통해 수출선적인증서(VOC)를 발급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일정 가액(FOB 100만 프랑세파, 1,525유로 상당) 초과 물품은 모두 심사대상이 되나 귀금속, 무기, 동·식물, 정기간행물, 지폐, 수표, 여권, 중고차량, 상품견본 등 일부 품목은 심사가 면제된다. 발급은 코트디부아르 상업부 위탁업체의 한국 국내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 Vérification de la Conformité는 영어로 Verification of Conformity(VOC) 혹은 Certificate of Conformity(COC)로 표현

※ 코트디부아르 상업부 위탁업체 : Bureau VERITAS, COTECNA, INTERTEK, 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SGS)

통관 절차

1) 일반 통관(regime douanier)

일반 통관은 아래의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일반적 경우의 통관을 의미한다. 일반 통관이 아닌 경우는 경제적 사유의 통관(regime douanier économique)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다.

○ 보관(stockage)

- 상품의 최종 목적지가 결정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보세구역 창고 내에 보관하는 경우
- 보관 기간은 신청자의 자격에 따라 다름(18개월~3년).

○ 가공(admission temporaire pour transformation)

- 허가를 받은 기업이 원재료나 중간재 등을 보세구역에서 재가공, 재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반입되는 경우
- 해당 기업은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 일반적 일시적 양허(Admission Temporaire Ordinaire)

- 전시회, 공사, 시험용, 견본 등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가하는 경우
- 단, 담보를 제시하거나 혹은 ATA 수첩을 사용해야 한다.

○ 경유(transit)

하역 후 최초 보세구역을 통해 국내 혹은 국외 보세구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2) 통관 세부 절차

○ 통관신고

- 상업송장
- 하역비 지불 영수증
- 보험증서
- 품목 확인서
- (경우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 (경우에 따라) 수입허가서

○ 검사 및 반출

- 반출신고 및 등록
- 검사자 지정 및 물품검사
- 반출통제 및 비자
- 각종 비용 지불 정산
- 반출증 발부

표준·인증 관련 장벽

코트디부아르 표준인증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기기 통관시 적절한 요건에 부합하는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통신기기는 통신규제국(ARTCI)에서, 기타 전기·전자 제품은 표준원(CODINORM)에서 발부한 안전기준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코트디부아르 국내 자체적으로 기술 시험소를 운영하지 않는 관계로, 대체적으로 국제 공인 기관의 시험 결과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수입 전 위생·방역·안전 등의 이유로 해당 정부 부처의 인가(authorization)*를 수입 시마다 받아야 한다. 살아 있는 동식물, 의약품, 음성, 영상 등 매체, 총기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입 전 육류, 가금류, 어류 등은 정부 부처 간에 허가(agreement)**를 받아야 한다.

* Authorization은 매번 사안마다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 Agreement는 일정한 기간, 예를 들어 1년 또는 특정 기간별로 승인을 받거나 갱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수입품에는 원산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가공 식품의 라벨은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유통기한(일-월-연)이 함께 명시되어야 한다.

※ 코트디부아르 통신규제국(DGD) www.artci.ci

※ 코트디부아르 표준원(CODINORM) www.codinorm.org

2018년 7월 17일부로 코트디부아르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자는 모든 제품에 대해 선적 전 검사를 시행하여 수출선적인증서(Vérification de la Conformité: VOC, COC라고도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 (발급절차) 코트디부아르 상업부에서 위임한 4개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 선적 전 검사업체에서 파견한 검사원이 컨테이너 내용을 확인
 - 선적서류 일치 여부 및 불량품, 수량 등을 검사
 - 이상 없음이 확인되면 VOC를 발급해주며, 해당 문서를 바이어에게 송부 해주면 완료
- (발급기관) 4개 공인검사기관은 한국에 지점을 두고 지역마다 여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 공인검사기관 : Bureau VERITAS, COTECNA, INTERTEK, 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 (SGS)

VOC 발급 대상 수출품에 한해서 해당 문서가 누락된 경우 CIF(Cost Insurance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 가격의 5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추가로 인증제도는 아니나 일부 제품의 경우 제품등록을 통한 수입이 허가되는 경우가 있다. 의약품이 대표적인 사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현지 기관에 제품등록을 마쳐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이를 제품등록은 수입업자 이전에 프로모터로 불리우는 일종의 에이전트 현지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부조달제도 관련 장벽

코트디부아르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비서명국이지만 2020년 7월 동 협정에 옵저버로 참여하는 등 자국 정부조달시장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향상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을 위해 2009년 4월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공개입찰 방식 의무화, △계약 서명기간 명시 등 관련 절차 명확화, △공공조달 감독 전담기구 신설 등의 제도를 구축한 바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대체로 분권화된 정부조달체제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각자 자체적으로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부처는 현지 언론을 통해 정부 조달 입찰을 공고하거나 국제적인 신문과 잡지를 통해 입찰 공고 하기도 한다.

개발기술연구원(BNETD)은 국제기구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기술 평가, 감리 등을 맡고 있으며, 재정경제부 산하 조달국(DMP)은 국제적 입찰 관행에 부합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달 과정이 공개되어 있음에도 일부 외국 기업들이 정부부처 담당자들과의 인맥을 통해 내부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입찰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체 계약 중 수의계약에 따른 계약의 비중이 과거 정부에 비해 줄어들지 않았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 코트디부아르 개발기술연구원(BNETD) www.bnetd.ci

※ 코트디부아르 조달국(DMP) www.marchespublics.ci

지식재산권 관련 장벽

코트디부아르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 회원국으로, 비록 미국 재산권연대(PRA) 국제재산권지수(IPRI)는 세계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나(2019년 세계 131개국 중 97위, 아프리카 28개국 중 12위),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3차 개헌(2016년 10월)을 통해 지적 재산권 보호 관련 내용을 헌법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예술·학술 등 전문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산업부 산하 지적재산청(OIPI)은 특허, 등록상표, 산업디자인, 상호 등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저작권보호청(BURIDA)은 음악 등 예술 재산권, 영상물, 서적 및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에서 발명은 방기 협정에 의거하여 특허와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된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춘 발명에 대해 특허가 부여되며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방기 협정은 특허권 부여에 대한 제3자의 이의 제기를 위한 별도의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특허 출원

은 특허권 허여 또는 거절 전에 실용신안 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 반대로 마찬가지로이다.

특허받은 발명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출원일로부터 4년 이내 또는 특허권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강제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다.

디자인권의 보호대상은 선 또는 색상의 배치가 해당 배열을 통해 산업용 제품에 특별한 외관을 제공하는 경우이며, 디자인은 출원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5년 연속 2번의 갱신이 가능하다.

상표권의 보호대상은 식별력이 있고 기만적이지 않은 상표 및 다른 거래자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상표이다. 상표 등록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수수료 납부 후 10년 동안 갱신할 수 있다.

저작권은 상표 및 특허권과 달리,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는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발생한다.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된다.

서비스 장벽

보건, 여행업, 법률,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분야 회사의 경우 외국인이 과반 이상 지분을 취득할 수 없어 코트디부아르 국적 회사와의 제휴관계가 필요하다. 이외의 분야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지분 취득 제한은 없다.

특정 분야에서는 국적에 따른 제한이 존재한다. 회계사의 경우 외국 국적자는 일정 기간 동안 코트디부아르 국적 회계 법인에서 근무하지 않고는 코트디부아르 회계사협회에 가입할 수 없다. 또한, 변호사 등록 및 법정대리 업무 수행을 위해서도 코트디부아르 국적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투자법에 따르면 운송업·무역업·건설업·공기업 및 금융계를 제외한 1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자에게는 최초 3년 동안은 면세·감세, 관련 기자재 수입 부가세 면제, 토지 불하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투자청(CEPICI)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금융시장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회사 설립부터 정리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단일 창구 설립을 통하여 간소화였으며, 필요시 투자자들이 정부 및 관련 기관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투자청(cepici) www.cepici.gouv.ci

특히,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2012년 투자법(Code des investissements)을 개정, △투자권역을 기존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 △지방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 연장, △대규모 투자에 대한 토지세 감면, △중소기업 특혜 강화 등을 통해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투자법을 재차 개정, △생산적이고 친환경·친사회적 투자 유치 활성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국내시장의 경쟁력 강화, △혁신적 기술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코트디부아르 투자법(Ordonnance N°2018-646 du 01 août 2018 portant sur le Code des investissements, Décret relatif aux modalités d'application de l'ordonnance N°2018-646)

그 결과 2012년(8.11%)에 비해 2019년 전체 GDP 중 민간투자비율이 22.8%까지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0년 아프리카 CEO 포럼의 '아프리카에서 투자매력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코트디부아르가 선정되기도 하였다.

디지털무역 장벽

코트디부아르는 디지털경제부를 통해 디지털, ITC 분야를 총괄하고 있으며 디지털경제부 산하 정보통신규제청 ARTCI(Autorite de Regulation des Telecommunication/TIC)가 해당 분야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디지털 거래와 관련해 2013년 디지털 거래 관련법이 신설되었으며 거래의 일부분이 코트디부아르에서 이루어지거나 코트디부아르 온라인망에서 사용자들이 해당 서비스에 접근 가능할 경우 코트디부아르 법이 적용된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2013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채택해 개인정보보호를 다루는 일의 경우 정부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보호 이전이나 의학·과학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사용 등의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 검열과 관련된 제도는 따로 없으나, 2017년 개정된 미디어법(게시 방법과 상관없이, 폭력, 방화, 절도 등을 부추기는 글을 게시한 자는 징역 1~5년형, 30~300백만 세파의 벌금형에 처한다)에 따라, 2018년 온라인에 폭력적인 행동을 선동하는 글을 올린 남성이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기타 장벽

외국 투자 기업들은 코트디부아르 투자에 있어 제일 큰 장벽으로 부패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2013년 11월 민관합동 ‘부정부패 방지 선정최고위원회(Haute Autorité pour la Bonne Gouvernance et pour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창설 등을 통해 부정·부패 근절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ICP) 순위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는 2011년 세계 154위에서 2016년 108위, 2018년 105위, 2019년 106위, 2020년 104위, 2021년 105위 등으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참고자료 출처 : KORTA 국가지역정보 - 코트디부아르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com/index.do?MENU_ID=220#



DR콩고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일반 동향

DR콩고 진출 여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은 면적 235만km²(한반도의 11배, 알제리에 이어 아프리카 대륙에서 두 번째 크기)의 광활한 국토에 2021년 기준 9,334만 명(UN 추정치)의 인구를 갖고 있는 사하라 이남(SSA: Sub Saharan Africa) 중 서부아프리카 지역의 자원부국이다. 코발트, 다이아몬드, 구리 아연 등 비철금속 자원의 보고이며, 콩고강 유역의 풍부한 강수량으로 “아프리카의 물 저장고”, 비옥한 땅으로 “아프리카의 곡창”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 제2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DR콩고는 1960년 식민 종주국 벨기에로부터 독립할 당시 우리나라는 물론, 남아공보다 더 부유한 나라였으나 32년에 걸친 모부투(Mobutu) 독재정권의 부정부패와 실정, 1990년대 들어서는 모부투 정권의 몰락과 함께 내전이 발발하면서 5백만명 이상의 사망자, 2천만명 이상의 난민을 발생시켰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참사로 내전을 거치면서 경제 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국가 행정서비스 및 산업기반이 무너졌고, 도로망은 90% 가량 망실되었다.

하지만 국제 광물시장에서는 DR콩고에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구리, 금, 다이아몬드가 여전히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2차 전지의 필수 재료인 코발트, 콜탄 등 총 50여 종류의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잠재력으로 따지면 DR콩고가 단연 글로벌 최대 수준이지만, 현재 개발 중인 것은 7종에 그치고 있다. 특히 DR콩고 남부 카탕가주 지역의 구리, 코발트, 우라늄 개발에 국제적인 자원개발기업들의 투자가 재개되고 있다.

조셉 카빌라(Joseph KABILA) 前대통령은 2006년 12월 집권한 이래 수도 킌사사를 중심으로 국가 재건을 위한 안정적인 정치·경제적 기반을 조성해 온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2011년 11월 실시된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한 뒤 서구 및 중국 등에 의한 자원개발 및 인프라 건설 분야 진출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었다. 이후 대통령 선거가 두 차례 연기되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기도 하였으나, 2018년 12월 30일 마침내 대선이 실시되고 야당 후보인 펠릭스 치세케디(Felix TSHISEKEDI)가 새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DR콩고 역사상 최초이자 아프리카에서 보기 드문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치세케디 대통령 집권 이후 대통령 소속 정당 CACH는 카빌라 진영인 FCC와 합의에 따라 연립정부를 수립하고 FCC는 총선을 통해 상하양원을 장악하며 내각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후 진영간 갈등이 점차 노골화되던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선관위원장 임명 등의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었다. 치세케디 대통령은 2020년 11월 주요 정치·사회 인사들과 정치협의를 진행하였고 2020년 11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CACH-FCC 연정 종료를 선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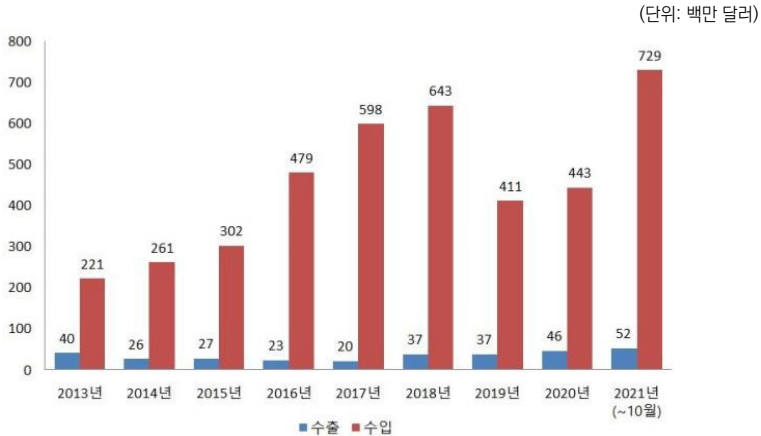
뒤이어 2021년 초 새로운 집권 연정인 “신성한 연합(Sacred Union)”이 구성되며 안정을 찾는 듯하였으나 2023년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원장 임명, 선거법 개정 등 등 주요 정치적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면서 親치세케디-反치세케디간 분열이 선명해지고 있어, DR콩고 정세는 당분간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DR콩고는 2021년 기준 GDP 548억 달러, 1인당 GDP 593달러(IMF) 세계 최빈 개도국이면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과 함께 유엔의 3대 아프리카 원조국이다. 향후 DR콩고는 국가경제 발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여 경제적 성장 지속을 위해 정치 불안정 극복, 동부 지역의 정세 안정, 인프라 재건, 공공분야 구조개혁, 부패 방지,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증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요 경제상황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8.5%, 9.0%의 유례없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세계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해 광물자원 의존도가 높은 DR콩고는 2015년 경제성장률이 6.9%로 낮아진 이후 지속 하락하여 2017~2018년에는 2~3%대로 급감하였다. 2018년에 5.8%로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9년 4.4%로 다시 하락하였고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1% 이하까지 하락한 뒤 2021년 4.9%대로 회복하였다. 2022년 DR콩고의 경기 회복 여부는 새로운 광산 개발 및 세계무역 회복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한국의 대DR콩고 수출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9년 기준 DR콩고의 주요 상품 수출·수입 대상국

(단위: %)

순위	수출대상국	비중	순위	수입대상국	비중
1	중국	25.3	1	중국	41
2	미국	21.3	2	탄자니아	11.8
3	남아프리카공화국	9.2	3	잠비아	8.8
4	잠비아	4.9	4	남아프리카공화국	7.7
5	인도	4.7	5	싱가포르	7.2
	기타	34.6		기타	23.5

자료: 한국무역협회

세수 확보가 저조한 여건에서 무리하게 도입된 부가세(세율 16%)는 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 2011년에는 1년간 평균물가상승률이 14.9%까지 증가했지만, 점차 안정되면서 2014년 1.2%, 2015년 0.7%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6년부터 카빌라 대통령의 연임과 대선 실시를 둘러싸고 폭력 시위 등 정치 불안이 점차 심해지며 다시 상승하다가 정정 불안이 극도에 달한 2017년에는 평균물가상승률이 약 36%로 폭등하였다. 2018년 12월 대선 이후 정국이 안정되면서 2019년 평균물가상승률은 4.7%로 잠시 감소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11.5%로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소폭 감소하여 9%대를 기록하고 있다.

평균 환율은 2014년 US\$ 1=FC 910에 이어 2015년 US\$ 1= FC 915로 안정적인 상황이었으나, 국제 광물 자원가격의 지속 하락, 이에 따른 생산량 감소, 광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경제의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외국인 투자 부진 등 악재가 겹치면서 2016년부터 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하였다. 2020년 초반까지 1달러당 1,700FC 이하로 유지되던 환율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1년 3월부터 점차 약세를 보이던 하반기 2,000FC를 돌파하였으며, 2021년에는 1달러당 1,980~2,000FC대의 높은 환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DR콩고는 전통적 수출산업인 광업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전통적 광업중심지 Haut-Katanga주와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구 Oriental주(현 Haut-Uele주, Bas-Uele주, Tshopo주, Ituri주) 광업 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Tenke Fungurume 구리-코발트 광산과 Katanga Mining (Haut-Katanga주), Kibali Gold Mine(Haut-Uele주) 금 광산의 생산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outh-Kivu주 Twangiza에서 금 생산이 개시됨에 따라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금수출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영세업자들을 통해 정부에 신고 없이 이루어지는 금 수출 관행은 계속될 것이고, 물량은 연간 수천 온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광물부문은 DR콩고 GDP의 약 22%를 차지하며 수출의 경우 코발트는 총 수출의 약 43%, 구리는 약 38%를 차지한다. 광산개발은 DR콩고에서 잠비아까지 연장되어 있는 코퍼벨트가 위치한 동남부 지역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

DR콩고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물(구리, 코발트) 가격 상승 및 생산 증가로 2018년부터 무역수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1 기준 DR콩고의 수출액은 194억 달러, 수입은 171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DR콩고는 예산·투자·인프라가 절대적으로 열악하고 이에 따른 산업발전의 저하가 전체 국부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경우 풍부한 자원 및 노동력을 기반으로 견실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DR콩고의 경제 잠재력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각한 인프라 부족, 열악한 행정·사법 체계 및 만연한 부정부패 등으로 잠재력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2020년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2020) 조사 결과에 따르면 DR콩고는 조사대상 190개국 가운데 183위, 국제투명성기구의 2021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조사 결과 180개국 가운데 170위,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1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조사 결과 178개국 중 165위를 차지하는 등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DR콩고 정부는 2030년까지 신흥경제국 진입, 2050년 선진국 대열 합류라는 목표를 내걸고, 국부의 증가, 인플레이션 하락, 화폐 가치 안정,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자체 재정 확보, 인프라 시설 확대 및 농업·광업 분야 현대화 등의 경제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DR콩고는 광업 부문의 투명성 문제로 인해 2012년부터 IMF와의 협력관계가 중단되었으나 2019년 치세케디 대통령 취임 후 IMF와의 관계가 재개되었다. 이후 IMF는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 완화를 위해 신속 차관제도(RCF: Rapid Credit Facility)를 통해 DR콩고에 약 3억 6,650만불을 지출하였다.

동시에 DR콩고 정부는 IMF와의 중기 차관 프로그램 협정 추진을 위해 IMF의

권고사항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1년 6월 IMF 집행이사회는 포용적 성장 증대 및 빈곤 감소를 목표로 DR콩고에 3년간 15억불 규모의 경제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DR콩고의 신뢰도 제고 및 인프라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 차입 및 외국인 투자 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력보급 증대를 위한 DR콩고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는 기존 Inga1,2를 재건하고 댐 6개를 신규 증설하는 그랜드 잉가(Grand Inga) 프로젝트의 시행이다. 그랜드 잉가의 1단계는 콩고강 Bundi 계곡 12km 구간에 Inga 3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인프라 부족, 자원조달 문제 등으로 수년간 지체되었으나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재정지원 결정으로 가속도를 내고 있으며, 1단계 예상 발전용량은 4,800MW이다. 발전소 건설비용으로 최대 120억달러 투입이 예상되며, Inga 3 발전량 4,800MW 중 남아공 정부가 2,500MW를 구매하고 나머지는 DR콩고 카탕가주 300개 광산을 비롯하여 현지의 부족한 전력을 충당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DR콩고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명목 GDP(백만 달러)	38,019	46,831	50,401	49,869	52,168
경제성장률(%)	3.7	5.8	4.4	0.8	4.8
1인당 GDP(달러)	466.6	560.81	580.7	543.83	593.56
소비자물가상승률(%)	33.0	29.3	4.7	11.1	9.2
환율(달러당 FC)	1,464.4	1,622.5	1,647.8	1,851.1	1985.7
경상수지(백만 달러)	-1,241	-1,672	-1,693	-1,095	-973
총 외채(백만 달러)	5,084	4,956	5,618	6,137	8,210
외환보유액(백만 달러)	695	665	1,194	748	4,817

출처: Economic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DR Congo" (2021.11월)

주: 1. * 추정치

2. 1인당 GDP는 World Bank Data 참고

관세

DR콩고는 WTO(세계무역기구), ECCAS(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 COMESA(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ECGLC(대호수지역경제공동체), SADC(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 가입 회원국이다.

COMESA, SADC, ECCAS는 자유무역지대 창설이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으며, 2015년 6월 10일 3개 공동체 대표가 회원국을 대표하여 TFTA(3자 자유무역지대)에 서명했다. TFTA는 3개 공동체 26개 회원국간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시차를 두고 점차 관세를 낮춤으로써 종국적으로 회원국간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DR콩고는 또한 아프리카연합(AU) 54개국이 참여하고 2019년 5월 공식 발효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에 가입하였으나 아직 비준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이다. 2020년 1월 치 세케디 대통령이 아프리카연합(AU) 의장직을 수임하면서 협정 비준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한편 AfCFTA는 2021년 9월 기준 서명국 54개국 가운데 38개국이 비준을 완료하였다.

DR콩고의 관세는 HS 2012에 기초하고 있고, 모든 관세의 기준은 CIF 가격 기준으로 5%(원자재, 농자재, 의약품, 동물용품, 용기자재), 10%(중간재, 식료품, 병원 관련 품목) 및 20%(옷, 가구, 담배 및 완제품)로 분류된다. 영세율은 우표 등에 적용되고, 5% 세율은 자본재, 원료, 농업에 필요한 물자, 약품, 부속 및 액세서리, 반조립품, 우유 및 육아 준비물, 디지털회선용 기기 등, 10% 세율은 반조립 부품, 대량 소비용 식품, 장비 부품 등, 20% 세율은 기타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관세는 100%가 상한이며, 단순 평균 최고관세율은 2019년 기준 96.0%로 농산물 97.8%, 비농산물은 95.7%이다.

2019년 기준 MFN 실행관세율 평균은 11%로 2010년 실행관세율 평균 대비 하락하였으나, 광업 및 채석, 공산품 등에 대한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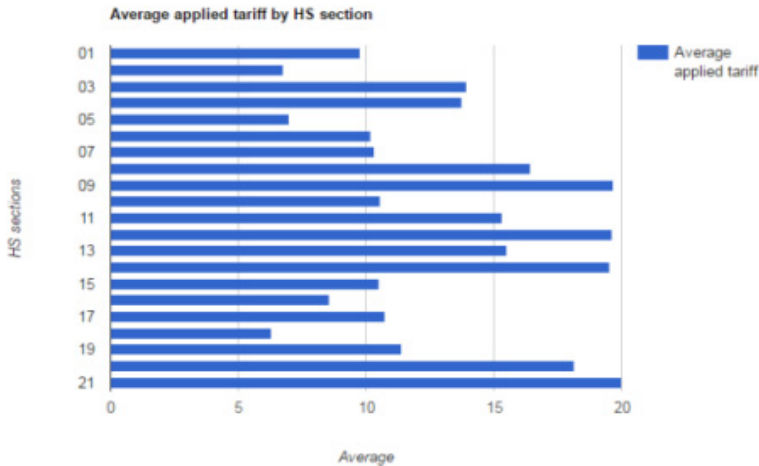
수입품종별 관세율 현황

(단위 : %)

	양허관세율(U/R)(OCC)	2010 실행관세율 평균(OCC)	2019 MFN 실행관세율 평균(WTO)
농산물	30.0	11.2	11.0
비농산물	15.2	11.3	10.9
광업 및 채석	0.0	7.1	10.8
공산품	26.3	11.4	12.4

출처: OCC 및 WTO

HS 2012 기준 섹션별 실행관세율 평균



출처: 유엔산하국제무역센터(ITC)

콩고에 투자되는 장비의 부품가격이 원장비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동 부품에 대해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중고 중장비 차량, 선박과 항공기의 수입은 완전 면세가 허용되고, 면세되는 자본 및 수입장비는 최소 5년 동안 DR콩고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관세와 세금이 면제되는 품목은 CIF 가격에 5%의 행정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밀수가 DR콩고의 수입시장을 교란하는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는데 밀수

품은 수입시장의 70%까지 점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R콩고의 국경이 워낙 길어서 정부의 밀수 통제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보따리상들이 직접 반입하는 수입품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DR콩고 관세 행정은 보따리상들이 고가의 제품을 반입하면서 통관 과정에서 일정한 뇌물만 주면 쉽게 통관이 가능할 정도로 허술하다.

그러나 2013년 르완다, 브룬디, 콩고공화국, 우간다 등과 개별 협정, 2014년 DR콩고-앙골라 협정, DR콩고-탄자니아 협정, 2015년 체결된 DR콩고-잠비아 협정 등 DR콩고가 주변국과 체결한 국가별 1:1 협정은 양국 무역 증진과 밀수 예방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 DR콩고는 협정을 통해 주변국과 관세를 낮추고, 상대방과 자본, 상품, 노동력 이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밀수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수입규제

DR콩고의 수입통관 관련 기관은 관세청(DGDA: 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et Accises), 수출입통제국(OCC: Office Congolais de Contrôle), 국가항만국(ONATRA: Office National des Transports), 상선운영국(OGEFREM: Office de gestion de Fret Maritime), 산업진흥기금(FPI: Fonds de Promotion de l'Industrie) 등이 있다.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이외 영업세, 산업증진세 등 다수의 세금이 부과되며, 수입품에 대한 추가 부과금은 수입 경로에 따라 5~40% 수준에 달한다.

수입품 통관을 위해서는 수입허가증을 구입(수수료 12불)해야 하며, 물자의 항구 도착시 △DGDA의 통관요금(CIF 금액의 1%), △OCC 검사비용(CIF 2,500달러 초과 금액의 2%, 2,500달러 미만은 금액의 1%), 하역요금(1톤당 5달러), △FPI의 산업증진세(CIF 금액의 2%), △OGEFREM의 커미션(CIF 금액의 0.595%) 및 수수료(0.59%), △ONATRA의 하역수수료(톤당 20달러) 및 항만사용료(톤당 32달러), 지방세(20피트 기준 컨테이너 1개 당 135달러) 등이 부과된다.

DGDA는 DR콩고 정부의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면세품목 수입자들은 통관 비용으로 최종가격의 5%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수입품, 자국 생산품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에는 2012년 1월부터 기존의 소비세(ICA)를 대체하여 부가가치세(VAT) 16%가 부과되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료는 선적 무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마타디-킨샤사 구간은 컨테이너당 1,500~3,000달러가 소요된다.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품목

DR콩고 무역법 제13조에 따르면 건강에 위험하거나 도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금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DR콩고에서 총기류, 탄약, 부레옥잠 및 음란물은 상업적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동전, 기념주화, 지폐 및 중고물품은 상업적 수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수입 전 관세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허가 및 통제

국경무역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수입에 허가가 필요하다. 자동 수입허가는 통제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비자동 수입허가는 관세규정에 따라 수입제한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허가를 취득하는데 보증금이나 수수료가 불요하며, 물품 수입 또는 특정국가로부터 수입량 한도가 없을 경우, 수입업자의 편의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법인은 자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거부될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기타 관련 정보는 관보에 게재된다.

덤핑 및 반덤핑

DR콩고는 상품의 수입 통제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No 0011, 1997년 1월 22일)에 의거 WTO 기본원칙에 따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DR콩고는 아직 WTO 규정에 따른 자국 산업 보호체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통관절차

DR콩고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복잡하고 난해한 규정, 다수 기관의 개입 중첩, 책임 기관 부재 및 관료의 무능과 부패다.

특히 수출입업무와 관련, 규정상 다수의 기관이 관여하고 있어 행정업무 처리의 지연, 기관간 정보 공유 및 조율의 부재로 인해 통관 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통관업체의 능력에 따라 통관기간이나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2013년 콩고의 OHADA(아프리카 비즈니스 법률조화기구) 가입 이후 통관 부문에서도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통관과 관련, 크게 달라진 점은 통관 절차 간소화인데, 통관 작업을 대부분 전산화함으로써 현재 자동차 통관에 3일, 컨테이너 통관에 5일이 소요되며 여러 종류의 세금 및 비용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고 있어 편리해졌다.

다만,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BOMA나 MATADI항이 협소하여 선박이 몰릴 경우 해상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급행료 명목의 뒷돈 요구 등 세관 공무원의 부패가 여전하며, 간혹 전산 장애가 발생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이외에 간혹 발생하는 마타디 항구 주변의 운송노조 파업도 물류 마비에 일조하고 있다. 2013년 1월 발생한 운송노조 파업으로 마타디-킨샤사 구간의 컨테이너 운행이 3주간 전면 금지되어 물류에 피해를 입는 등 매년 2~3회 가량 파업, 시위 등으로 물류에 지장을 초래되고 있다.

정부조달

2002년부터 도입된 DR콩고의 공공행정 개혁으로 인해 외국 사업자들의 정부 사업에 입찰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 조달 사업의 계약이 때때로 국제 기준에 맞지 않게 불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4월 새로이 제정된 정부조달 법률은 프로젝트의 준비, 정부조달 계약

체결, 집행 및 감독과 정부조달 관련 분쟁 해결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정부조달 법률은 국가, 지방, 국영기업 및 정부기업이 조달하는 작업, 공급, 서비스 및 지식서비스의 조달에 적용되며, 차별을 철폐하고 경쟁을 조장하며 정부조달에 있어 사기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중앙조정실(BCeCo: Bureau Central de Coordination)이 정부조달 계약과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도록 정부조달과 공공서비스 권리 부여 칙령 No. 10/27(2010.6.28)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제 입찰 또는 국내 입찰 후 총리와 예산담당 장관이 조달을 승인한다.

정부조달 계약은 입찰 초청 또는 단독 입찰의 방법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단독 입찰 방식은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사항이다.

입찰방식은 공개입찰, 제한입찰, 경쟁입찰이 있고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가 및 지역 우선권이 부여되며 입찰 모집시 명시되어야 한다. DR콩고 기업에 대한 용역, 서비스공급 또는 계약의 총가액 30%를 하청하거나 DR콩고 출신 전문가를 40% 이상 사용할 계획인 외국 입찰자에게도 우선권이 부여된다.

세계은행의 후원과 지원으로 제정된 DR콩고 정부조달 법률은 예산부의 관할 하에 집행되며 2010년 4월 공포되었다. 동 법은 DR콩고 현지 기업 및 투자진출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한편 DR콩고는 WTO 정부조달 협정 조인국은 아니다.

이러한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찰은 비공식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배후에는 비공식적인 힘이 작용하는 등 입찰 부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조달 외에 UN 산하기구가 원조를 목적으로 조달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DR콩고 정부를 거치지 않고, 현지 기업 또는 NGO기관을 통하여 조달업무를 추진하므로 비교적 공정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달의 경우 경쟁이 심하다.

투자법

2002 투자법은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재정, 관세 및 일반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법은 특별 입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광업, 석유, 은행 등을 포함한 부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법상 특혜로 기계류, 도구, 신장비 및 필요 부품에 대해 5%의 행정수수료를 제외한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중고 중기계,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는 완전 면제하고 있다.

특혜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은 기획부 산하 투자진흥청(ANAPI)에 승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ANAPI 검토에 따라 장관령으로 승인된다. 특혜기간은 3~5년으로 지역에 따라 차등화되며, 수도 킨샤사 권역에서 멀수록 특혜기간을 길게 부여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한다. 2005년에 투자자들이 사업체 설립을 위한 모든 절차를 신청, 완료할 수 있는 단일 창구가 ANAPI에 마련되어 있다. 특혜제도 적용 기간은 투자지역에 따라 좌우되며 갱신될 수 없다.

기존에는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개월간 11단계의 설립프로세스를 거쳐야 하고 서류제출 창구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었으나, 기업설립을 위한 One-Stop Shop 서비스(GUCE: Guichet Unique de Création d'Entreprise)를 통해 3일 안에 3단계의 설립 프로세스를 거쳐 DR콩고에 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설립을 위한 제출 서류로는 법인의 경우 정관 4부 및 관보게재용 파일, 자본금 지분 공증서류, 기업명명의 은행구좌 사본, 대표이사의 서명 사본, 대표이사 및 이사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범죄기록증명서, 정관, 사업장 주소, 사업 활동 보고서, 신분증 사본 등이다.

투자유치진흥기관

DR콩고 정부는 내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2002년 투자진흥청(ANAPI: Agence Nationale pour la Promotion des Investissements)을 설립하여 공공, 민간 분야 투자 유치 증진을 담당하고 있다. ANAPI는 투자분야 입법, 규정 등 홍보, 투자 관련 절차를 쉽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 행정 장애 제거, 국내외 투자 증진, 투자자 유치 노력, 투자자가 행한 약속의 이행 여부 감시, 지역별 다양한 부문의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투자현장에서는 투자관련 인프라(도로, 전기, 통신 등) 구축 등 상당한 부문을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추진하고 있어 아직 ANAPI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승인 절차

투자법이 규정하는 혜택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ANAPI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는 미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단일창구로서 ANAPI는 투자법에 따라 승인된 투자계획을 접수, 심사, 승인에 관한 결의를 한 후 기획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 송부하며 부처간 명령에 의해 승인 또는 거부된다.

투자승인 기준

투자승인 자격을 얻기 위해 투자자가 충족해야 할 기준은 현지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에 대한 투자이어야 하고, 20만달러 이상의 투자 및 창출되는 부가가치 비율이 35%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자에게 승인 결정을 통보하는 시간은 신투자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로 축소되었고, 정해진 시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승인되지 않는 모든 결정은 어떠한 이유로 투자 신청이 투자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ANAPI는 권한 있는 기관과 협의하여 투자를 감독하며, 이행 약속을 지키지 못

한 투자자에 대한 승인 철회에 관한 의견을 듣고, 투자 승인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게는 통상의 법률체계가 적용되어 투자법에 의해 부여된 혜택이 박탈된다.

투자저해 요인

DR콩고의 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요인은 정치 불안과 공무원의 심각한 부패, 인프라 부족, 쉽게 해고하기 어려운 고용문제 등이 거론된다. 또한 법인설립 후에도 계속해서 다수 부처의 갖가지 명목으로 소위 ‘뇌물 상납’을 요구하고, 노사분규에 따른 쟁송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2015년부터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공무원들이 외국기업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DR콩고를 떠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신규 투자 검토 기업도 투자진출을 망설이고 있다.

이외에 은행 대출의 까다로움, 만연한 부패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부대 비용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여전히 고충으로 자리잡고 있다.

투자환경 개선

DR콩고는 UN 부패방지협약 가입, 2004년 부패방지법 및 돈세탁방지법 채택, 회사설립절차 간소화, 무역등록 등기 수수료 인하, 주민등록번호 부여 소요 시간 단축, 건축허가비와 부동산 이전 등록세 인하 등 다양한 친기업 성향의 정책을 통해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광업, 산림, 농업 및 인프라 등 개발 잠재력이 큰 부문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법 체계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DR콩고는 2013년 OHADA(아프리카 비즈니스법률 조화기구)에 가입한 이후 강한 국가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투자유치 부문에서도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반 노력을 하고 있다. 콩고의 OHADA 가입은 기업 경영 및 국가간 상거래에 있어 변화를 가져왔고, OHADA 프로그램은 금전 거래, 회사 경영 권리, 회사 이윤 창출 권리, 회계 권리, 사법 중재 법정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개선된 분야는 기업설립 관련 절차의 단순화 및 관련 창구의 일원

화, 건축허가 소요기간 단축, 세금 및 관세 조정, 불법 국경무역 근절, 투자자 보호제도 등이다.

치세케디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2019년 4월 미국 방문에서 美국무장관, IMF 총재 등과 면담하여 미국 투자 유치를 위한 미국의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2020 년도에는 부패방지 및 퇴치기구(APLC)를 설립하는 등 부패 퇴치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투자 유의사항

법적, 행정적, 물류 및 재정적 측면을 중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믿을 만한 변호사 등 법무법인, 국제 비즈니스 경험이 있는 물류업자 등 현지기업과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적, 법적, 세무 등 분야별 위기관리에 있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지 파트너를 최대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성공적인 외국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민간 부문의 진지한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으로 현지 파트너는 고객 및 정부와의 관계 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현지 파트너, 고객 및 행정당국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맺는 것도 사업의 성공과 위기관리의 관건이다. 현지 문화는 계급에 대한 존경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콩고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가능한 융통성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경제특구 개발현황

DR콩고는 2013년 6월 민간부분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5개 특별경제구역(SEZs) 창설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승인했다. DR콩고에는 경제특별구역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5개 특별경제구역으로 남부 Katanga주, 중앙 Kasai주, 서부 Maluku, 북부 Kisangani 및 동부 Kivu주에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계획 단계로서 수도에 인접한 Maluku 시범지역의 성공 여부가 타 특별경제구역의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특구의 목적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과 외국기업의 유치, 외국기업의 투자 및 기술 이전을 통한 자체 제조업 육성이다.

Maluku 시범지역은 콩고강에 인접한 만큼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DR콩고와 세계은행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다. 2021년 5월 산업부장관은 중국 업체가 Maluku 임시 경제특구에 주재국 생산(Made in Congo) 차량 조립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동 조립 공장 설립은 최소 3,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양해각서 서명 등 절차 완료 후 향후 6개월~1년 내에 공장이 가동되어 DR콩고 최초의 차량 생산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경제구역에 기업을 설립할 국내외 투자자들은 최초 10년 동안 모든 세금을 면제받는다. 동 특별경제구역은 정부가 아닌 사기업에 의해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로, 전력, 수도 등 인프라 건설이 지연되고 있고 낮은 인적 역량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다.

광업법 특혜제도

광업법은 특혜적인 관세 및 재정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혜 제도는 광업권 또는 토석 채취권 소유자, 광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방계 회사, 광업권 소유자와 서명한 계약이 있는 광업 활동에 종사하는 하청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다국적기업의 자원개발에 유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던 DR콩고의 2002년 광업법은 이들 기업의 이익이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지 못하고 국가재정 수입의 악화를 가져왔다는 내부 반발이 증가하였고, 2012년에 보다 보호주의적이고 정부주도적인 신광업법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다국적기업들의 압력과 로비로 인해 6년여 간 지체되었고 2018년 1월 상하원 의결을 거쳐 3월 조셉 카빌라 당시 대통령이 신광업법을 최종 공포하였다.

신광업법은 개발업체의 재정부담 증가(세금 및 부담금 대폭 인상) 및 개발업체에 대한 행정적 규제(면허 및 장비통관 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동

법에 따르면 코발트 수출업체에 부과하는 세금이 2%에서 5%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코발트 등이 “전략적 광물”로 분류되어 로열티가 기존의 2%에서 10%로 대폭 인상되었다.

그리고 △전략물자(코발트, 리튬 등 희귀금속)에 대해 10% 과세 △초과이익(25% 이상)에 대해 40% 과세 △지역개발 기여금(전체 매출의 0.3%) 등 기업의 재정적 부담 및 △탐사 및 채굴 면허기간 축소(탐사면허 이전 2회에서 1회 갱신으로 축소, 채굴 허용기간 이전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 면허 갱신 기간 최대 15년으로 제한) △신규 현지법인 설립시 콩고인 참여 지분 최소한 10% 이상 △가공과정 없는 원자재의 직접 수출 금지 등 행정 부담 또한 강화되었다.

한편, DR콩고의 구리 생산은 2015년 1,020천톤에 이어 2016년 910천톤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 1,090천톤, 2018년 1,200천톤, 2019년 1,290천톤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DR콩고는 코발트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서 세계 연간 코발트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한다. 코발트 생산은 2017년 7만3천톤, 2018년 9만톤, 2019년 10만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 제약

DR콩고는 최혜국 대우 예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규정상 제약은 없으며, 다만 귀금속(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황옥 등) 및 반귀금속(금, 은, 이리듐, 팔라듐, 라듐, 백금, 바나듐 등)의 특정 광산물의 수출은 광물 성분 분석기관인 귀금속·반귀금속 감정평가센터(CEEC)의 원산지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DR콩고는 중부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CAS),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등 지역협정에 따라 특혜적 원산지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WTO에 통보했지만 아직 각 협정에서 규정한 특혜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표준 및 여타 기술적 규제

DR콩고는 수입품 규제 관련 자체 제정 표준 법령이 없으며, 다만, DR콩고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WTO, ISO) 및 지역기구(COMESA, SADC, ARSO) 회원국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표준 규제 및 상품 평가에 관한 주무 부처는 산업부로서 표준 규정의 집행은 수출입통제국(OCC)에서 담당하고 있다.

OCC는 DR콩고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 및 수출입품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 상품의 표준 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상품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표준은 국가표준화위원회(CNN: Comité National de Normalisation)에서 채택하고 있다. OCC는 DR콩고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적용되는 기술규제집을 배포하고 있으며 수출 및 수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동 규제집을 참고해야 한다.

2009년 도입된 법령에 따르면 OCC는 제3자 적합성 평가 즉 검사, 증명, 시험 또는 분석, 도량형 및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표준에 관한 기술적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국가표준화위원회 기술사무국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OCC에는 기술통제 및 도량형국이 있으며, 독일 도량형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ISO 17025 공인 과정을 갖추고 있다.

DR콩고에는 산업부 장관령으로 식료품, 철, 측량, 산림, 시멘트 등 품목에 대한 217개의 표준이 공표되어 있으며, OCC내 인력 및 검증 시설의 제약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수입품이 특별한 검증 절차 없이 반입되고 있다.

한편, 광물 자원을 수출할 경우에 관할 부처인 광업부가 마련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데, 모든 광물 자원 수출시 귀금속·반귀금속 감정증명센터(CEEC)의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3T(주석, 탄탈륨, 콜탄)와 금은 DR콩고 정부의 광업법, 광업규칙 및 대호수지역 국제회의 지역 인증 관련 광업부령 N°0057/CAB.MIN/Mines/01/2012(2012.2.29)에 따라 CEEC가 원산지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하고 있다.

DR콩고에는 산업부 장관령으로 식료품, 철, 측량, 산림, 시멘트 등 품목에 대한 217개의 표준이 공표되어 있으며, OCC내 인력 및 검증 시설의 제약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수입품이 특별한 검증 절차 없이 반입되고 있다.

한편, 광물 자원을 수출할 경우에 관할 부처인 광업부가 마련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데, 모든 광물 자원 수출시 귀금속, 반귀금속 감정증명센터인 CEEC의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3T(주석, 탄탈륨, 콜탄)와 금은 DR콩고 정부의 광업법, 광업규칙 및 대호수지역 국제회의의 지역 인증 관련 광업부령 N°0057/CAB.MIN/Mines/01/2012(2012년 2월 29일)에 따라 CEEC가 원산지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

검역

DR콩고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Joint FAO/WHO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회원국으로서, 위생 및 검역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DR콩고의 식물 및 동물 검역은 농촌개발부 주관으로 2005년 11월 설립된 국가인증기관인 동식물검역서비스(SQAV: Service de Quarantaine Animale et Végétale)에서 전담하며 사람과 관련된 문제는 보건부와 협의하여 수행하고 있다. SQAV는 식물의 종자, 원목, 농산물 및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물품, 축산물, 동물, 비료, 살충제 등에 대한 수출입 검역 및 증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에 있어 OCC(수출입통제국)의 품질 적합성 업무와 SQAV의 검역 업무 관련 농축수산물 관할 부처인 농촌개발부, 공공보건 관할 부처인 보건부 간 업무가 중복되어 있어 통관시 검역 지연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OCC의 활동은 주로 품질 및 적합성 관련 업무에 집중되고 있고, 농촌개발부는 동물 및 식물 검역에 관한 권한이 있다.

OCC Matadi 사무소가 수입품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2주 이내 수입 업체에 통보해야 하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식물 위생검사

콩고의 법률에 따르면 모든 식물위생 제품은 수입, 포장, 국내시장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물, 식품제품, 동물 또는 광물을 원천으로 수입하는 식품의 수입에는 농업부에서 발급하는 수입허가가 있어야 한다.

모든 농산물, 종자 등 식물 및 동물과 관련된 식품 등 수입 물품에는 원산지 국가의 식품위생증명서 또는 수출 국가의 원산지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농촌 개발부가 시행하는 식물위생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식물 관련 수입물품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물건을 분리, 처리, 거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는 결정을 내린다. 환경부는 유전자 변형 관련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유전자 변형생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연구 목적의 수입은 허용하고 있다.

콩고는 자국의 식물 보호를 위해 숙주로 기생하는 생물도 수입 금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케냐산 커피의 DR콩고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우간다 카사바류의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 등 우려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검역인증서(certificat phytosanitaire) 발급수수료는 건당 50FC (콩고프랑)이며, 수입품 검역비는 100톤이하 1킬로당 0.005FC, 100톤이상 1킬로당 0.002FC, 수출품 검역비는 100톤이하 1킬로당 0.001FC, 100톤이상 1킬로당 0.002FC이다. 수입 식료품 검역비는 100톤이하 1킬로당 0.003FC, 100톤이상 1킬로당 0.002FC이다.

라벨링 및 포장

상품의 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규제는 ISO 및 국제포장기구(WPO)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교통부 산하 포장표준국(DNE: Direction de la Normalisation d'Emballages)에서 관할하고 있다.

모든 상품에는 원산지(국내 생산품 또는 수입품 여부), 상품명, 생산자, 유통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명, 그리고 중량이 표시되어야 하며, 특정 상품에 대한 DNE측 요청시 기업은 15일 이내 라벨 및 포장의 적용 규격 준수 여부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기관

DR콩고의 금융기관은 중앙은행(BCC)과 18개 민간은행으로 구성되는데 민간은행은 모두 외국계 은행이다. 외국계 은행의 주 업무는 콩고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이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신업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DR콩고정부가 외국계 은행의 진출을 자유화하고 있는 만큼 콩고의 경제규모가 커지면 외국계 은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현지 대부분 상업은행들의 활동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단기대출, 외환시장 활동과 수출입 서비스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DR콩고의 민간은행으로는 1937년 벨기에 식민시대에 설립된 BCDC를 비롯하여 RAWBANK, TMB, Ecobank, Equity Bank등이 전국에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는 비교적 큰 은행들이다. 다만 민간 개인들은 은행에 저축하려 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금융 감독은 불충분하고, 특히 채권회수 및 담보 문제에 있어서 법적 체계도 미비하다.

현지 상업은행은 은행계좌 개설에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은행은 개인 및 기업에 대해 최소한 100달러 이상의 저축을 요구한다. 시티은행과 스탠다드은행은 기업 및 기관만을 대상으로 거래하며 은행계좌 개설을 위해 최소 2,500달러의 저축을 요구한다.

콩고중앙은행은 2012년 기존의 500FC(Congo Franc) 보다 큰 1,000FC, 5,000FC, 10,000FC, 20,000FC 지폐를 신규로 각각 발행했으며, 동전은 현재 유통되지 않고 있다. DR콩고 시장에서 5달러 이상 거래시에는 주로 달러가 사용되고 있으며, FC가 시장에서 달러와 함께 유통되고 있으나 가치가 큰 달러화가 우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DR콩고 정부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입법을 개선하고 이행을 위한 역량 배양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현지에서는 지식재산권이 법적으로 보호되나 지식재산권 규정의 이행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현지 법률시스템과 공공행정은 지식재산 규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실정이다.

저작권 및 권리보호 업무는 1986.4.5일자 법령 No.86-033에 따라 문화예술 부내 저작권 권리관리청(ONADA)에 위임되어 있으나 실존한 적은 없으며, 2011년부터 저작권관리협회(SOCODA)라는 조합 형태의 기관을 통해 DR콩고내 저작권 및 관련 권리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관세청(DGDA), OCC 및 콩고 경찰(PNC)도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여하고 있다.

특허는 소유자에게 잠정적인 개발 독점권을 부여하고, 법률은 발명특허, 수입특허, 개선특허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발명특허의 보유기간은 20년이며, 약품에 관련된 발명특허는 15년간 보호된다. 특허는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특허가 부여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발효되어야 하며, 공업소유권은 산업 중소기업부의 특허청이 관장하고 있고, 상표, 특허 및 발명을 보호한다.

지식재산권은 2006년 헌법을 통해 DR콩고에서 완전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있지만, 동 규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해적판 도서와 음원, 그리고 영상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킨샤사의 개인 운영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상영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미국 영화를 상영하는 사례 등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DR콩고로 유입되는 해적판 재화의 배급과 판매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나, DR콩고 정부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과 그 실행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DR콩고의 노동법은 2002년 국제협약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에 합치하도록 아동 노동 보호, 노동 강요 금지, 모자 보호, 고용에 있어 여성 등 차별 금지, 노조활동 보장 등에 관한 8개 조항의 노동 규정을 개정했다. 노동법은 노동관행의 엄격한 감독을 규정하고 채용, 계약, 여성 및 아동 고용, 일반적인 노동조건 등을 정하고 있다.

엄격한 노동법은 고용주의 해고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동일 노동에 대해 고향, 성, 나이에 상관없이 동일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노동법은 여성이 남편의 허락 없이 집 밖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고용주는 의료 및 사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대기업은 현장에 의료진과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회사의 의무도 증대한다.

고용주는 가족수당과 근무기간에 따라 유급 공휴일 및 연차 휴가를 제공해야 하고, 근로자를 위해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대중교통 수단이 운행되는 곳에서는 교통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부 산하 외국인고용위원회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파업할 권리는 인정되며 노동법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경우 화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법은 모든 기업 및 기관이 노동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 혜택 분야는 치과 치료, 내·외과 치료 및 수술, 약값, 입원비, 병원 통원 교통비, 안경, 의족 등이며,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의료기구도 가능하고, 의료기구의 혜택은 보건부가 정하는 금액에 준하여 받을 수 있다.

모든 노동계약은 고용주나 근로자의 제안으로 해지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노동조합 가입 또는 미가입, 근무시간 이후 또는 고용주 승인 하에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참여 활동
- 근로자 대표 임무를 청원하거나 수행
- 입법조항 위반을 사유로 고용주를 고소, 소송 참여 또는 관할 행정기관 청원
- 인종, 피부색, 성별, 혼인상태, 가족 부양책임, 임신, 출산, 종교, 정치적 견해, 조상의 국적, 사회 계층, 종족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무한정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근로자는 복직 권리가 있으며,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법이 정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은 근로자가 받은 최종보수의 36개월 치를 상회할 수 없다.

고용주가 해지 예고를 하는 경우 예고 기간은 통지일 익일부터 14일 이하가 될 수 없고, 근속연수당 7일씩 증가된다. 고용주는 근로자를 6개월까지 수습계약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최대한 2년간 임시계약이 가능하나 2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영구계약으로 인정된다.

DR콩고 진출 장벽

열악한 기초인프라 및 높은 물가

지난 수십 년에 걸친 내전, 정부 기관의 무관심, 정비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도로, 전력, 상수도 등 사회 기초 인프라가 열악하여 물자 운송비, 사무실 유지비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수도 킨샤사 및 루분바시를 중심으로 주택 및 생필품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물가가 매우 높다.

불확실한 법집행

세계은행에 따르면 DR콩고는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계약의 의무를 강제해야 하는 사법부의 무능과 사법 절차를 집행하는데 소요되는 높은 비용에 따른 것이다.

카탕가주내 외국계 광산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법적 비용으로 연 평균 약 500만 달러가 지출되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약 50만 달러, 캐나다의 경우 약 20만 달러 등 타 국가보다 훨씬 높다.

아울러, DR콩고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은 기업 당국의 무원칙적인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반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이와 같은 DR콩고 당국의 행태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

언어 장벽

DR콩고의 낮은 교육 수준으로 공무원 또는 기업인 사이에서 영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고 현실적으로 불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비불어권 투자자 입장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특히 불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지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현지인들은 불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어를 사용하는 인구의 경우에도 자국민간 대화에서는 링갈라어를 비롯한 토착어를 사용하거나 불어와 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들에게 언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필요한 의사결정 구조 및 만성적 부패

장기간에 걸친 독재와 유혈 분쟁으로 권력에 대한 불신과 공포, 열악한 통신 환경으로 인한 정보공유 부재 등 사유로 DR콩고 사회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생계형 부정 및 권력형 부패도 만연해 있다.

정부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역할이 불분명한 공무원 또는 중개인으로부터 크고 작은 뇌물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인 만큼, 투자자들은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취약한 행정능력 및 안전상의 리스크

수십 년간 독재와 민간에 대한 강제 자산 수탈로 인해 정부의 행정 능력은 매우 취약하며, 심각한 정보 부재로 인해 관할 관청의 담당 공무원조차 특정 사안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수도 킨샤사 또는 루분바시와 같은 주요 도시 외의 지역에 대한 정확한 실상 파악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치안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혁정책 추진

DR콩고 정부는 사법제도 등 제반 시스템 낙후가 기업의 발전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2013년초 아프리카 비즈니스법률 조화기구(OHADA: Organisation pour l'Harmonisation en Afrique du Droit des Affaires)에 가입했다.

OHADA 가입 이후 DR콩고는 여러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행정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투명화와 함께 행정기관 및 경찰 등 권력기관의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외에 비현실적으로 높은 법인세 및 관세의 현실화, 투자인프라 구축, 밀수 방지책 도입 등이 있다.

그동안 넓은 국경을 통한 밀수품 교역은 정상적인 대외교역을 방해하고, 국내 경제 질서를 어지럽혀 왔다. 특히 동부 및 북부 국경지대를 통한 광물의 불법거래는 국부의 심각한 유출을 초래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 부문의 대표 성과중 하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3일로 단축한 것이다.

투자 장벽

DR콩고는 여전히 비즈니스에 비우호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 미개발된 인프라와 낮은 신용도, 동부지역의 불안정 지속, 지적재산권 보호 부재, 행정 비효율 및 관료주의 병폐, 부패 만연, 법의 비효율적 시행과 규제 등이 민간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현지어로 Guichet Unique라고 불리는 One-Stop Shop 서비스는 2013년 투자진흥청(ANAPI)에서 시작되었으며,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한 기관으로 일원화하여 기업 설립 편의성을 제고했다.

그러나 One-Stop Shop 서비스는 사업 허가 등 행정 결정에 있어 권한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통상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일이 걸리는 단계는 대통령령을 확보하는 것이다.

투자 진출 유의사항

외국인투자기업은 DR콩고 정부 기관의 회계 감사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다. DR콩고에서는 정보 부재, 열악한 생활 여건, 부정부패 등으로 인한 사기 피해 가능성이 언제나 잠재되어 있다. 충분한 사전 조사 등을 통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징후로 현지 사업 관련 고위층과 연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과거 고위직을 역임한 사람들과 각별한 친분이 있음을 강조하거나, 현지 기업의 광물 등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준다고 제안하는 경우, 현지 사업 진행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처음에는 소액의 금액을 요구하고, 일단 주고 나면 갖가지 명목을 들어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활동비 명목 또는 계약금 명목(구매 금액의 일정 부분)으로 소액송금을 우선 요청하여 급히 송금치 않으면 거래가 무산된다고 현혹하거나, 활동비를 받고 나면 주재국 사정으로 사업이 연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도 있다.

DR콩고에서 자원-인프라 건설 연계사업은 수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광물 수출도 반드시 허가받은 자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공문서 위조 가능성이 상존하며 사업자등록 등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기업체의 등록 여부 등의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한 점 등도 조심해야 한다.

또한 최근 DR콩고산 광물 수입과 관련 DR콩고 원산지 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우리나라 기업에 제시하고 대금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DR콩고산 광물의 원산지 증명서 등 서류 위조 여부 판별에 대한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위조 여부는 DR콩고 원산지증명서 발행 기관인 광업부 산하 귀 금속 반귀금속 감정증명센터(CEEC)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쿠웨이트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최근 경제 통상 환경

쿠웨이트는 세계 6위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중동의 대표적인 산유국이다. 70년대 말까지 걸프만 최북단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걸프 지역의 중개무역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80년대 이란과 이라크 전쟁 및 1990년 이라크 침공 이후 UAE, 카타르 등에 지역 경제중심지로서 선도적 위치를 내주었다. 그러나 2006년 이라크 사담 후세인 사망이후에는 국가 개발 및 투자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하였으며, Kuwait Vision 2035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경제와 산업의 대부분을 원유 생산 및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쿠웨이트 경제는 국제 원유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한 전형적인 석유의존형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GDP의 약 50%, 정부재정수입의 약 90%를 석유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저유가 현상과 함께 공무원 임금, 각종 정부보조금 등 경상지출 증가에 따라 8년간 연속으로 재정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고유가에 힘입어 회계연도 22/23년에는 재정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유가 급락에 따라 2020년 -8.9%를 기록하였으나, 쿠웨이트 경제가 다소 회복되면서 2021년에는 1.1% 성장으로 전환되었고, 2022년에는 8.5%의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쿠웨이트에 대해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다. 무디스는 Aa2에서 A1으로, S&P는 AA에서 A+로,

피치는 AA에서 AA-로 하향조정했다. 2022년 현재 기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2020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제 유가 수준이 \$80이상으로 유지될 경우 2022~2023년에는 재정 흑자가 예상되며, 향후 재정 조달원 다변화 및 경제 다각화, 비석유 부문 적자 축소 등 포괄적인 구조 개혁을 시행한다면 등급 상향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쿠웨이트는 지나치게 석유 의존적이고 정부주도적인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16년 전기세와 수도세 인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유류보조금을 삭감하여 쿠웨이트 내 석유가격을 인상하였다. 또한 각종 정부보조금 축소, 외국인에 대한 공공분야 의료비 인상, 국내 및 외국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 부가가치세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 인건비와 복지 예산의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세출액의 75%이상을 차지하는 점은 정부 경제구조 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쿠웨이트 정부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고 걸프지역의 금융, 물류, 무역 중심지로서 지도적 위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Kuwait Vision 2035'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2010년부터 2035년까지 5차례의 5개년 국가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제1차 국가개발계획 2010-2015와 제2차 국가개발계획 2015-2020에 따라 국제공항 사업,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 연육교 사업, 사가야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정유공장 현대화(CFP) 사업 등 주요사업들을 정상 추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제3차 국가개발계획 2021-2025 수립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 중에 있다. 한편, 2017년 1월 쿠웨이트 최고계획개발위원회(SCPD)는 국가개발 비전인 'New Kuwait 2035'를 발표하며 국가개발계획 실행에 박차를 가한 바 있다.

한편, 쿠웨이트는 1976년 설립 후 지속적인 성장으로 현재 세계 4위 규모의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2022년 10월 국부펀드국제포럼 기준, 쿠웨이트 국부펀드는 7,084억불로, 쿠웨이트 경제 안정성 부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쿠웨이트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2013년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유치촉진청(KDIPA; 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을 설립하고, One-stop shop 서비스 및 외국인 100%

지분 회사 설립허용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쿠웨이트 제1호 민자사업(노스 알주르 1단계 민자담수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민간역량 활용, 민간부문 활성화 등을 위하여 발전, 담수, 철도, 메트로, 폐기물처리, 폐수처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책사업을 민간투자사업(PPP Project)으로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쿠웨이트는 북부 부비얀 섬의 무바라크 항만 및 실크시티(Silk City)를 개발하여 이 일대를 북걸프지역의 금융, 물류 허브로 육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쿠웨이트시티와 북측 수비야 곶을 잇는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을 2019년 5월 완공·개통하였다. 실크시티의 관문인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은 쿠웨이트시티와 수비야 곶을 잇는 메인링크와 쿠웨이트시티와 도하항만을 잇는 도하링크로 구성되어 있고, 메인링크와 도하링크의 교량연장을 합할 경우 48km에 달해 세계 최장교량중 하나이다. 자베르 해상교량의 완공으로 북측 개발도 점차 가속화될 전망이다.

쿠웨이트는 입헌군주정 체제를 채택 하고 있으나, 군주정 체제의 다른 중동국가와는 다르게 권한을 가진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의회는 실질적인 법률제정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50명의 선출직 의원과 15명 내외 당연직 의원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의회가 국왕에 대한 견제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의회와 국왕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국가차원의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국가경제의 대부분이 국가소유의 석유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만큼 정치적 상황이 경제상황에 큰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어, 쿠웨이트에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정치상황 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무역동향

ITC Trade Map 자료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2021년도 수출액은 572억 달러, 수입액은 230억 달러로, 약 341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었다. 코로나19 완화와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2021년도 총 수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무역

수지의 흑자의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2022년 이후는 지속적인 고유가와 석유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무역흑자 규모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쿠웨이트의 교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출	54,985	71,941	64,482	40,149	57,233
수입	33,569	35,866	35,530	27,884	23,050
교역규모	88,554	107,807	100,012	68,033	80,283
수지	21,416	36,075	30,952	12,414	34,183

출처: ITC Trademap

2021년 기준 쿠웨이트의 10대 수입국은 1위 중국(19%), 2위 미국(13.3%), 3위 사우디아라비아(6.8%), 4위 일본(6.4%), 5위 인도(5.3%), 6위 독일(5.2%), 7위 이탈리아(4.8%), 8위 영국(3.1%), 9위 프랑스(2.8%), 10위 스위스(2.3%) 순이다. 쿠웨이트의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17위이다.

◉ 2021년 쿠웨이트의 10대 수입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금액	수입시장 점유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체	23,050	100	-4
1	중국	4,368	19	8
2	미국	3,061	13.3	-12
3	사우디아라비아	1,656	6.8	-8
4	일본	1,457	6.4	-2
5	인도	1,230	5.3	-5
6	독일	1,196	5.2	-6
7	이탈리아	1,117	4.8	-5
8	영국	708	3.1	-6
9	튀르키예	691	3	10
10	네덜란드	646	2.8	1

출처: ITC Trademap

우리나라와 쿠웨이트의 교역규모는 2022년 2분기 기준 약 9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완화와 유가상승으로 교역규모가 약 86억 불 수준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은 2분기에 이미 전년도 교역규모를 넘어서며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대쿠웨이트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전력용기기, 철강판, 기타플라스틱제품, 합성수지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나프타, 선박, LPG, 동괴및스크랩, 석유화학중간원료 등이다. 자동차를 제외한 주요 수출 품목은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기자재들이 차지하고 있는 바, 대형 프로젝트에 추진현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수입액은 국제 정세 및 글로벌 공급망에 따른 유가 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 우리나라의 對쿠웨이트 교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2 Q
수출	1,132	1,975	925	1,405	1,162	1,253	956	660	349	237
수입	18,725	16,892	8,973	7,260	9,606	12,794	10,771	5,827	8,253	8,983
합계	19,857	18,867	9,898	8,665	10,768	14,047	11,727	6,488	8,602	9,220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의 對쿠웨이트 원유수입동향

구분	연간 총수입물량 (천배럴)	일평균수입량 (배럴/일)	수입금액 (천달러)	평균수입단가 (달러)
2021년	101,721	279천	7,289,080	71.66
2020년	129,699	355천	5,435,258	41.91
2019년	150,587	413천	9,943,145	66.03
2018년	162,005	444천	11,358,074	70.11
2017년	160,368	439천	8,353,302	52.09
2016년	159,273	436천	6,365,006	39.96
2015년	141,856	389천	7,188,853	50.68
2014년	136,546	374천	13,489,063	98.79
2013년	139,853	383천	15,051,273	107.67
2012년	137,647	377천	15,351,807	112
2011년	117,370	322천	12,549,763	107

구 분	연간 총수입물량 (천배럴)	일평균수입량 (배럴/일)	수입금액 (천달러)	평균수입단가 (달러)
2010년	103,079	282천	8,048,563	78.08
2009년	100,090	274천	6,220,261	62.15
2008년	104,593	287천	9,761,625	93.33
2007년	94,031	258천	6,383,996	67.89
2006년	92,620	254천	5,598,494	60.45
2005년	79,679	218천	3,905,338	49.01

자료 :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 평균수입단가 CIF 금액

수입정책상의 장벽

쿠웨이트로의 상품 수출은, 정부 승인이 필요 없는 일반 공산품의 경우 수입상을 통한 직접 수출이 가능한 반면, 의료, 소방 등의 특수장비는 에이전트를 통해 수입승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쿠웨이트에서의 수입면허는 쿠웨이트 기업 및 개인에게 발급되며 합작투자기업을 제외한 외국회사와 외국인에게는 발급되지 않는다.

쿠웨이트 시장수요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정부 조달시장은 폐쇄적인 편으로, 쿠웨이트 기업 또는 개인을 에이전트로 내세워야만 참여가 가능하며, Oil & Gas 분야 프로젝트 등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를 통한 벤더 등록을 선행하거나 또는 PQ에 통과하여야 한다.

관세 장벽

대부분 수입상품은 CIF 가격(cost, insurance, freight 포함 가격) 기준 5%의 단일 관세율이 부과되나, GCC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별도의 서류 절차를 통해 무관세로 통관되고 있다.

농산물 및 기본생필품 등 417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반면, 담배에 대해서는 100%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쿠웨이트 업체가 생산하는 공산품과 경쟁이 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자국 상품의 보호를 위해

CIF 가격 기준 25%까지의 보호관세가 부과되고, 쿠웨이트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없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선적 서류 도착 후 통관에는 약 2주가 소요된다. 컨테이너 등의 수입품에 대하여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한 물품검사를 하며, 엄격한 통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물품을 위장하였거나 서류를 위조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구류형과 벌과금을 동시에 적용한다.

세관은 화물손상, 배달지연,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쿠웨이트 현지의 수입업체는 통관 시 수입허가증(Import License) 및 제반 통관 필수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Full Container Load(FCL)과 Less Than Container Load(LCL)을 포함한 쿠웨이트의 모든 수입품은 팔레트화(Palletized) 되어야 하며, 이를 미 준수한 화물은 통관 중지 및 검사를 받으며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규정상의 장벽

쿠웨이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업 송장, 선하 증권이나 항공 화물 수령증의 복사본 3장, 원산지 증명서, 화물 명세 리스트 등 4가지 법적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의 부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지만 중동국가들은 원산지 증명에 대한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즉 제3국의 자재를 수입할 경우 해당 Invoice 및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 당사국에 있는 쿠웨이트 상공회의소나 쿠웨이트대사관에서의 공증을 받아 송부하여야만 현지에서 통관이 가능하다.(상공회의소 등의 실사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당사국에 관련 기관이 없을 경우는 GCC 국가의 대사관 또는 기타 아랍 국가 대사관의 공증을 요구)

송장과 기타 서류들은 상품이 쿠웨이트에 도착하기 전까지 반드시 쿠웨이트

수입업체에 송부되어야 하며, 서류가 미리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상품의 통관이 불가하다.

쿠웨이트의 개인 회사들은 보통 쿠웨이트의 시중 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발급 받아 대금을 지불하나, 국방부(Ministry of Defense)를 제외한 쿠웨이트의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은 쿠웨이트 중앙은행(The Central Bank of Kuwait)을 통해 신용장을 발급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수출 관련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상품에 대한 자세한 명세서
- 총가격과 단위량
- 실증량과 총증량(미터법 사용)
- 포장 방식
-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주소와 성명
- 적하 목록에 표시된 상품의 상표와 개수
- 운송수단, 선적인의 항구와 원산국
- 정식인가기관에 의한 송장의 증명

수입 규제

수입 쿼터제 등에 의한 공식적인 별도 규제는 없다. 다만, 총포류, 약품 등의 반입 시에는 특별한 수입허가증이 필요하고 특수 화학물품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아랍국가 금지규정(Arab Boycott Rules)을 적용,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은 반입이 금지되며, 이슬람 교리에 따라 돼지고기 제품 및 주류, 미풍양속을 해치는 품목의 반입이 금지된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쿠웨이트는 미국, 유럽의 품질검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식료품의 경우 내용물, 제조일자 및 폐기일자 등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초 수입 되는 식료품의 경우 보건당국 실험실의 사전검사를 요구한다.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쿠웨이트는 표준제도와 관련 모든 수입 제품은 KS(Kuwait Standard) 및 ICCP(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에 부합되어야 한다. 특히 쿠웨이트는 아래 제품군에 대하여서는 쿠웨이트 적합성 인증 프로그램 (KUCAS: Kuwait Conformity Assurance Scheme)을 적용하고 있다.

- 전자장난감(1개), 가전기기 및 가스기기(43개), 자동차(3개), 화학제품(2개), 기타 제품(2개)
- KUCAS 우리나라 인증승인검사 기관 :
Intertek 전화 02-775-5255, 팩스 02-775-5266,
전자우편 info.seoul@intertek.com

아울러 가전제품 및 전력 기자재는 TER(Technical Evaluation Report), TIR(Technical Inspection Report)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KUCAS 인증 외에도, 쿠웨이트는 GSO(걸프 표준화 기구)에서 발급하는 G-Mark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인증을 보유한 제품들은 KUCAS 인증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해당 인증은 저전압 전기기기 및 장난감에 적용되고 있다.

- 한국 내 G-Mark 인증승인검사 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환경관련 규제

쿠웨이트 내 환경관련 주요 규제들은 다음과 같다.

- 석면(Asbestos) 제품 생산 및 수입 금지
 - 석면원료, 석면 파이프, 석면 시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수입 전면 금지
- Nylon Fishing Net 사용 전면 금지
 - 쿠웨이트 농수산청은 해양 환경 및 자원 보호를 위해 쿠웨이트 영해에서 트롤선, 어선 등이 Nylon Fishing Net을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Natural Fiber Fishing Net(Cotton Fishing Net) 사용을 의무화

- 중고 중장비 수입규제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트럭, 버스, 트랙터, 포크리프트 등 중형 중고 중장비 수입 시 생산된 지 5년 이상 된 차량은 수입 금지

품목별 장벽

- 담배 생산 금지 및 수입 엄격 제한
 - 담배 생산을 금지하고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연구 목적이 아닐 경우 쿠웨이트 내에서의 잎담배(Tobacco) 및 제조담배(Cigarettes)의 생산과 담배 종자 및 묘목의 수입 금지
 - 제조담배, 잎담배, 담배 종이, 기타 담배 제조 관련 원 · 부자재는 보건부가 명시한 조건 충족 필요
 - 21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금지 및 담배 판촉을 위한 광고나 출판물 인쇄도 금지
- 인공감미료(Cyclamate) 사용 식품 수입금지
 - 쿠웨이트 상공부는 Cyclamate 및 파생품을 사용한 식품의 수입 전면 금지
- 플랜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기계 및 부품
 - 사전 벤더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정부조달 관련 장벽편 참조)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국내산 의무조달 비율 (국산품 특혜 제도)

입찰법에는 국내산이 수입물품과 품질이 동일하고 국내산 가격이 수입품에 비해 높지만 20% 이내 일 경우, 해당 국내산 물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산은 동일 현지 제조 물품에 비해 가격이 20% 이상 저렴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벤더 등록제도 운영

정부조달 등 공공부문에 참여코자 하는 외국업체들은 쿠웨이트 발주처에 벤더로서 사전 등록이 필수적이다.

다만, KOC(Kuwait Oil Company), KNPC(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등 국영기업 발주처는 벤더등록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VEC: Vendor Evaluation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으나, MEW (Ministry of Electricity & Water) 등 정부 부처는 별도의 전담부서 없이 해당분야 차관보(Asst. Under-Secretary)가 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등록분야는 국방·보안·안전·위생·식품·화학 등이며, 등록대상 업체는 해당품목 제조업체에 국한하고 있다(단순 무역업체 등록 불가).

벤더등록 희망업체는 쿠웨이트 내 적격업체를 발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후 동 에이전트를 통해 해당 발주처에 벤더로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주처에 따라서는 동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신청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나 KOC는 1년에 2회(1월, 6월)로 국한하고 있으며, 기간은 통상 6개월~1년이 소요된다.

중앙입찰위원회(CAPT)에서 일정 금액 이상 사업의 발주를 전담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기업이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직접 중앙입찰위원회 벤더에 등록하고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찰 이외에 사업 수행을 위해서 현지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쿠웨이트는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Oil & Gas 플랜트 프로젝트, 민자담수발전 사업, GCC연결철도, 메트로 등 대형 국책프로젝트가 향후 진행될 예정이므로 프로젝트의 추진과 연계한 사전 벤더등록이 필요하다.

정부 발주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외국기업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으나 외국기업이 석유개발 및 생산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쿠웨이트화(Kuwaitization)정책에 따라 쿠웨이트 업체의 공사가 가능한 주택 및 도로건설 공사 등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 대해서는 쿠웨이트 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이 이뤄지기도 한다.

조달관련 법규 개요 및 특징

쿠웨이트는 중앙입찰위원회(CAPT; Central Agency For Public Tenders)라는 특별한 기관을 통해 정부부처 및 국영기업 등에 소요되는 물품 및 용역을 조달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일정금액(KD 5,000(약 16,500달러 상당, 1KD=3.33달러 기준))을 상회하는 모든 입찰 건은 거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입찰위원회 (CAPT; Central Agency For Public Tenders)에서 관장하고 있다 (국방부, 보안대를 포함한 내무부 등은 CAPT관할에서 제외됨). 낙찰방법은 PQ심사를 거쳐 Short-list에 포함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쿠웨이트 국적의 에이전트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하거나, 외국회사가 직접 CAPT에 등록하면 된다.

물품과 용역의 제반 입찰 절차는 동일하나 입찰 참가자격 부여 및 컨설팅 용역 입찰 소관 부서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CAPT는 단독입찰의 경우 CAPT 규정상 동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하게 되어 있으며, 긴급한 경우 단독입찰을 내각의 결정을 거쳐 승인할 수 있다.

KNPC, KOC 등 석유화학 시설의 경우, 고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물품 공급자는 사전에 심사를 거쳐 벤더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CAPT를 통해 소관 정부 부처 혹은 공공기관의 사전자격 심사(PQ)를 통과해야 한다.

한편, 보건부 입찰의 경우에도 의료장비, 의약품 등에 대한 사전 심사 및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 보증금은 2.5~5%, 이행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서 건설 공사, 물품, 일반 용역 시에도 적용된다(반드시 쿠웨이트 현지에 진출한 은행 보증서만 효력 있음).

건설업 허가 및 등록상 제약

건설업 허가는 쿠웨이트 업체만 받을 수 있는 바, 외국 건설업체는 쿠웨이트 파트너, 에이전트, 스폰서를 통해서 쿠웨이트 당국에 등록이 가능하다.

현지인(기업) Partner 또는 Agent, Sponsor 등을 통해 현지 당국에 등록을 필한 외국 건설업체만이 국제입찰 통과 후 쿠웨이트에서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부여된다. 현지 건설업체는 CAPT에 업종별로 1~4등급까지 업체별 등록이 되어 있다.

매 건설공사 입찰 시마다 사전 자격심사(PQ: pre-qualification)를 통과하고 등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소개서, 재무보고서, 건설경력 특히 중동지역 건설참여 경력서류 등 해당 입찰 참여 적격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외국 건설업체는 국제입찰에 부쳐진 사업만 수행 가능하며, 응찰 시 5~10%의 입찰보증서(bid bond), 계약체결 후 10%의 사업수행보증서(performance bonds)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완료 후 유보금의 지불 불이행 또는 지연사례가 종종 있으며, 공공발주 사업 관련, 쿠웨이트 정부는 자재 수송 시 쿠웨이트등록 선박 또는 항공기 이용과 건설인력의 쿠웨이트 항공(KAC) 또는 해당국가 국적기 이용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발주 공사 현지 재투자제도 (오프셋 프로그램)

쿠웨이트는 정부 발주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계약금액 중 역외부분(offshore portion)의 최대 35%까지 쿠웨이트에 재투자할 것을 의무화하는 오프셋(offset)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으나, 2014년 6월부터 운영이 중지되었고, 2015년 8월 24일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No.1212 of 2015에 따라 오프셋 프로그램은 폐지되었다.

보증 등 요구

외국 업체가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경우, 발주처는 입찰 보증(bid bond)으로

5~10%(계약금액 대비, 이하 같다)를 시작으로 이행 보증(performance bond) 10% 및 하자 보증(retention bond) 10% 정도를 발주처가 지정한 은행의 보증서와 함께 수출입은행 등의 보증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등 복보증 요구가 일반화되어 있다. 현지 보증 수수료는 대략 1~2%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쿠웨이트는 WTO회원국으로서 WIPO(World International Property)에 1998년 4월 가입하였으나, 산업소유권(특허 및 상표)보호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Patent and Trademark)과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Copyright)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1999년 5월 국왕칙령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법안이 제정/발효되어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등의 보호되고 있다. 현재 특허권, 상표권 등은 대부분 10년 단위로 등록하고 있다. 저작권자는 TRIPs 협정에 따라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의 보호기간을 향유한다.

서비스 장벽

건설분야

건설공사는 통상 현지 Agent를 통해 영업(P/Q, 입찰, 시공 등)을 하고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인력수입·송출 및 장비·자재 수출입등도 모두 Agent를 통하여야 한다.

주요 건설자재의 쿠웨이트 제조업체의 독(과)점이 허용된다. 현지(혹은 GCC 국가) 생산가능 제품의 가격이 수입가격보다 20%(혹은 10%)보다 비쌀 경우에만 외국제품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 인력의 자국인력 대체, 민간부문 자국인력 고용촉진을 위해 업종별, 규모별로 각 회사의 쿠웨이트 자국인 인력 고용 최소비율을 정하여 위반회사에 대하여는 입찰참여제한, 벌금부과 및 외국인력 채용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2003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아래 사항은 현지인(기업)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GCC 국적인(기업)에게만 허용된다.

- 정부조달 계약 참여(단, 국제입찰 계약은 제외)
- 부동산소유(단, 제한적이거나 외국인에게 어떤 특정사업수행과 관련한 예외적 경우가 있음)
- 쿠웨이트에 등록된 회사로서 자국인 또는 GCC 국가의 국민이 100% 소유한 회사에 대한 소득세(income tax) 면제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2000년부터 쿠웨이트는 은행을 제외한 쿠웨이트 주식시장 상장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외국인간접투자법을 시행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외국인이 50%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쿠웨이트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2004년에 철폐되어 외국인도 쿠웨이트 은행의 10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 쿠웨이트는 외국인직접투자법을 제정하여 석유산업을 제외한 인프라 분야에 외국인의 100% 지분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쿠웨이트 정부는 외국인의 투자 및 기업 활동에 대해 승인 또는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천연자원인 석유 생산(특히 원유 개발)에 외국기업의 독자적인 참여는 불허하고 있다.

2013년 쿠웨이트 정부는 6월 16일 자 쿠웨이트 관보(Kuwait Al-Youm,

Issue No.1136)를 통해 기존의 2001년 8번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는 新 외국인 투자법(Law No.(116) of 2013)을 공표하고, 기존의 Kuwait Foreign Investment Bureau를 폐지하고, 외국인투자촉진청(KDIPA: 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을 설립하는 한편,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했다. KDIPA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대상 기준에 따르면 아래 10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센티브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 1) 기술, 선진경영, 마케팅 기법의 이전
- 2) 제품 및 서비스의 금액 및 질
- 3) 쿠웨이트 및 걸프지역에 산업다각화 기여 정도
- 4) 국가적 수출 증가 기여도
- 5) 일자리 창출, 자국민 교육 훈련 정도
- 6) 투자대상지역의 개발 기여도
- 7) 환경친화 여부
- 8) 투자프로젝트가 해당 분야 외에 미치는 서비스 제공 정도
- 9) 쿠웨이트 내 생산제품 구매 정도
- 10) 쿠웨이트 내 기술,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 구매 정도

노동법규

고용주는 직원 고용 시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연 단위로 고용 현황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한다. 쿠웨이트는 법적 미성년자를 1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고용 불가하다.

외국인 직원이 쿠웨이트에서 일하려면 취업 허가가 필요하며 고용주가 받아야 한다. 노동 허가증은 내무부 및 사회부에서 처리하며 외국인 직원이 도착 시 공항 보안국에 제시해야 한다.

민간 부문의 노동 및 고용은 2010년 법률 제6호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서명 일자, 효력 발생 일자, 급여, 계약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고용 계약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로 규정하되,

계약 종료 후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갱신 가능하다. 모든 계약서는 아랍어로 작성하고 외국어 번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상충 시 아랍어 계약에 대한 해석이 항상 우선 적용 한다. 계약 기간 중, 급여 삭감은 불가하며, 비쿠웨이트인의 고용 계약은 내부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최저 임금이 시행되지 않는다. 기본급, 커미션, 인센티브, 의무 상여금, 제3자로부터의 사례금, 주거 및 교통 수당과 같은 직원 복리후생이 보수에 포함 된다.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 주 48시간 또는 일 8시간으로 제한하며, 라마단(Ramadan) 기간 중 근로 시간은 주 36시간으로 제한 된다. 6일 연속 근로 시 하루(24시간)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연속 5시간 근로 후 최소 1시간의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휴식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장근로수당은 평일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시간당 1.25배, 주중(금·토요일)에 근무하는 모든 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시간당 1.5배, 공휴일에 근무하는 모든 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시간당 2배를 적용한다. 초과근무는 1년에 최대 90일까지만 허용되며, 추가로 1일 2시간, 1 주 6시간, 1년 180시간으로 제한 된다. 직원은 초과 근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6월~8월 중 혹서기에 휴게공간이 없는 곳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현장 근로자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의 근무 할 수 없다. 단, 실내 근무자의 경우,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

모든 직원은 2010년 법률 제6호 제70조에 따라 30일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여성이 70일의 기간 내에 출산하는 경우 다른 휴가에 포함되지 않은 70일의 유급 출산 휴가를 받게된다. 출산휴가 종료 후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기를 돌보기 위한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직원은 의료 보고서에 따라 병가를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직원은 15일의 완전 급여, 10일의 75% 급여, 10일의 50% 급여, 10일의 25% 급여, 30일의 무급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의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 가능하다: 근로자의 범법 행위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실추된 경우, 근로 현장에서 공중 도덕해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동료

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노동법 및 근로 계약에 명시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의 업무 지시를 반복적으로 어길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7일 또는 연중 20일 결근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고 가능하다. 근로자의 병가가 2개월 이상 지속되면, 고용주 판단에 따라 해고 가능하다.

노조관계

헌법상 노조활동이 보장되어 있으며 1967년에 최초의 근로자노조가 결성된 바 있다. 쿠웨이트 내 최대 노조는 “쿠웨이트 근로자 총연맹(General Federation of Kuwaiti Workers)”이며 대부분 정부부문과 석유산업 부문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가입 회원수는 12,000명 정도이다.

2011년 들어 정부부문을 중심으로 한 파업이 확산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주로 임금인상 및 복지혜택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장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쿠웨이트 고용주는 월 보수의 11.5%, 피고용인으로서 월 보수 2,250쿠웨이트 디나르(7,325달러 상당) 이하 보수를 받는 쿠웨이트 자국민에 대하여만 월 보수의 10.5%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 납부의무를 진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가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치료비, 약값 및 교통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부상당한 근로자는 치료기간 중에도 통상 임금을 받으며 치료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완치 또는 사망 시까지 통상 임금의 50%를 받는다. 요양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보건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보건부의 중재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사회노동부는 직업병의 종류를 공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직업병에 걸렸거나 그러한 징후가 있을 경우 산업재해의 경우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고용주가 변경된 이후 직업병이 발생할 경우, 전고용주도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금융상의 제한

쿠웨이트 금융당국의 외환통제는 거의 없으며, 지분이나 주식매각대금, 대여 자본(loan capital), 이자, 배당, 자유무역지대에 설립된 지사의 이윤(branch profits), 로얄티, 경영 및 기술서비스료, 개인예금 등은 제한 없이 자유로이 환전, 국외로 송금이 가능하다. 과실 송금의 경우에도 아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은 연간 영업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보자금으로 적립 필요(납입자본금의 50%에 이를 때까지)
- 주식회사인 경우, 매년 연간 영업이익의 1%를 쿠웨이트 과학진흥재단(Kuwait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s)에 기부
- 순자산이 50만 쿠웨이트 디나르(165만달러상당)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 상기 기부금 외에 매년 연간 순이익의 2.5%를 자국인 고용촉진기금(National Labour Force Fund)에 기부
- 주식회사인 경우, 이익금의 1%를 이슬람세(Zakat)/국가예산공헌금(CSB)로 납부

세제상의 제한

쿠웨이트인이 전체 지분을 소유한 회사(기업)와 GCC 국가 국민이 전체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쿠웨이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회사(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만 기업소득세가 부과된다.

외국인(기업)의 경우, 쿠웨이트에서의 기업활동 결과 취득한 소득(상기 적립금,

기부금, 출연금을 공제한 기업이윤 중 외국투자자에게 해당되는 배당금, 이자, Rent, Royalty등)에 대해 일정세율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외국 기업 소득세 이외에 일체의 국내 조세는 없으며 동 세금은 외국기업이 쿠웨이트에서 상업 활동 결과 취득한 소득(배당이윤, 이자, Rent, Royalty 등) 금액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적용, 징수하고 있다. 소득세율은 당초 55%까지였으나, 2008년 2월 9일 쿠웨이트 국회는 15% 단일 세율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2009년부터는 우리업체들의 기업소득세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고 있다. 한편, 쿠웨이트 정부는 아래에서 예시한 것처럼 외국 법인의 장부상 비용을 부인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관행이다(인정과세 시도).

- 해외 수입 기자재: 수입 기자재 비용의 일정 비율까지만 인정(손실은 불인정)
 - 본사 제작: 관련 공사 수입의 85% 까지 인정
 - 관계사 구매: 관련 공사 수입의 90% 까지 인정
 - 제3자 구매: 관련 공사 수입의 95% 까지 인정
- 국외 발생 설계비
 - 본사 발생: 관련 공사 수입의 75% 까지 인정
 - 관계사: 80% 까지 인정
 - 제3자 외부: 85% 까지 인정

우리 건설업체가 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해외 기자재 구입, 본사에서의 엔지니어링 설계 등 해외발생(offshore) 비용에 대해 쿠웨이트 세무당국이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부당과세로 인한 세금부담 및 행정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 또한, 우리 업체가 건설공사 입찰시 향후 세금 부담액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므로 입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 업체의 플랜트 공사 시 해외발생 비용은 전체 비용의 50~70% 정도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은 이중과세방지협약 의정서를 체결하여 동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발생(offshore) 비용에 대한 부당과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그간 한-쿠웨이트 이중과세방지 협정 의정서 개정을 추진

하여 왔으며, 2007년 10월 2일 양국이 동 개정안에 대해 정식 서명하였고, 양국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쳐 2010년 12월 27일 동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로써 2011년 1월 1일 부터는 동 협정에 따라 이중과세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고 있는 것은 물론, 세금관련 리스크도 감소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보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과세방지 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쿠웨이트 현지 바이어는 한국 수출업체와의 계약에서, 이중과세 조약을 근거로 쿠웨이트 내 세금부과 의무를 수출업체에 전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지에서 마케팅 및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한국 제조 수출업체는 이중과세 조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약서 내 세금부과 의무 항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건설업체가 Joint Venture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한 경우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도 불구하고, 쿠웨이트 정부가 우리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여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중과세 등 관련 쿠웨이트 정부의 과세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며, 현지에서 협의가 어려울 경우 우리나라 국세청을 통해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를 진행할 수도 있다.

경쟁 정책

에이전트 제도

쿠웨이트 내에서 외국 기업이 물품 공급, 용역, 건설 공사 수주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기업을 에이전트로 두어야 하며, 에이전트 계약 하에 발주처 등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에이전트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많은 커미션을 요구하거나 협력업체 추천 등을 하는 사례가 있으며, 자칫 불성실한 에이전트와 관계가 이루어 질 경우 오히려 수주활동 등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진출 외국기업과 에이전트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쿠웨이트 정부는 2016년 에이전트 법(Law No.13 of 2016, CAL:Commercial Agencies Law)를 개정하였다. 기존 독점

에이전트의 권리를 제한하고, 에이전트 계약관계 내 외국기업에도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며, 외국기업이 다수의 에이전트를 선임하여 마케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골자이다.

에이전트로 인한 분쟁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쿠웨이트 에이전트와 계약시 일정기간의 에이전트 계약기간(예: 3년)이 종료되는 경우 에이전트 관계가 자동폐기되도록 하고, 상호합의하에서만 에이전트 계약이 연장되도록 계약서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프로젝트 수행 시 쿠웨이트인 최소 고용의무

쿠웨이트를 비롯한 중동국가에서는 자국민 고용활성화 및 재정확충을 위해 자국민 우선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국민을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우리 기업들이 쿠웨이트로 진출하는 데 일정부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부처 및 국영기업(군, 석유 부문 모두 포함) 프로젝트 수행 시 쿠웨이트 국무회의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 이상의 쿠웨이트 국적자 고용 의무가 있다. 2014년 이전에는 의무고용비율이 2%였으나, 2015년부터는 의무고용비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으므로(의무고용비율은 사업종류에 따라 상이함), 사업추진시 해당 프로젝트의 의무고용비율을 확인하고, 의무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은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급하는지 여부를 미리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기타 장벽

운전면허 교환 및 발급

운전면허 교환발급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우리 건설사 근로자들의 애로가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쿠웨이트 교통당국과의 오랜 협의를 거쳐 2006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이 같은 운전면허 상호 인정은 강행사항이 아니라 양국 부처의 호혜적인 인정에 의한 것으로서, 2012년 이후 쿠웨이트에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고 자국 국민 대비 외국인 운전자

비율이 현격하게 높아지면서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교환발급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

쿠웨이트 슈웨이크에 있는 내무부 교통국 본부에서만 교환발급을 하고 있으며, 거주 비자 유형이 학사학위 이상의 매니저, 엔지니어급인 경우에만 심사과정을 거쳐 교환발급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운전면허 교환 발급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비용이 수반된다.

- 운전면허 교환 신청서
- 주쿠웨이트 한국대사관은 (한아)번역 번역본에 대해 번역공증하고 쿠웨이트 외교부가 영사 확인한 한국 면허증의 아랍어 번역문
- 유효한 거주 비자(Residency Permit, RP)
- 여권 및 Civil ID 사본
- 신체검사 결과(시력검사)
- 대학졸업증명서(외교부 및 주한쿠웨이트대사관의 영사확인 필요)
- 사진(4매) 및 수수료

동 면허 교환 발급은 쿠웨이트 거주비자가 나온 이후에 가능하므로, 국제면허증을 국내에서 발급받아 거주비자 수령 전 사용하고, 거주비자가 발급된 이후 기존의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것은 금지된다.(무면허운전에 해당) 쿠웨이트에 새로이 파견되는 건설사 직원 또는 가족은 대학졸업 증명서 등을 외교부 및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의 공증을 거쳐 미리 준비해 오는 것이 편리하다.

운전면허 교환 발급의 방법이 아닌, 쿠웨이트에서 면허시험을 통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이상 보유, 월 600KD 이상의 고정급여, 쿠웨이트 거주 기간 2년 이상 등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거주비자 발급

업무상으로 상용비자(Business Visas)를 발급받아 입국하고자 할 경우, 입국하기 전 단계에서 쿠웨이트 현지의 스폰서나 사업 파트너, 에이전트 등의 사전 협조 및 초청장 발급이 필요하며, 건설사 주재원 등 중장기적인 취업 체류

활동의 경우에는 노동허가 및 거주허가가 필요하다. 쿠웨이트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대학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60세이상 국외 거주자의 비자는 갱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거주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문을 채취하고 혈액검사나 결핵병력 검사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 쿠웨이트는 전체 인구의 70%가 외국인인바, 특히 제3국 근로자의 체류자격 심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행정 및 절차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인력투입 계획 수립시 참고하여야 한다.

◦ 거주비자 발급 절차

- ① 쿠웨이트 내 지사나 스폰서 측이 노동부에 WP(Work Permit: 취업허가서) 발급신청
- ② 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상기 취업허가서를 내무부 이민국에 제시, NOC (No Objection Certificate) 발급을 신청
- ③ 내무부 이민국으로부터 발급받은 NOC를 국내 해당인에게 국제특송으로 송부
- ④ 해당인은 동 NOC를 주한 쿠웨이트대사관에 제시하고 워크 비자 신청
- ⑤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
- ⑥ 동 병원에서 발급받은 신체검사증을 제출, 동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아 쿠웨이트에 입국
- ⑦ 쿠웨이트에 입국한 후 노동부에 스폰서쉽 증명서 발급신청(동시에 의료보험 가입)
- ⑧ 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쿠웨이트 내 현지병원에서 신체검사(재검) 및 지문채취 후에 내무부 이민국에 거주허가 발급 신청
- ⑨ 거주허가 발급 후 1개월 내 내무부에 외국인 신분증(Civil ID) 발급 신청

통상 NOC 발급에는 3~4주, 거주허가는 신청 후 3~4일이 소요되며 거주허가는 도착 후 2개월 내 발급 받아야 하고, Civil ID는 거주허가 발급 후 1개월 내 신청해야 한다(동 기간 경과 시 벌금 부과).

일반 방문 또는 입국비자로 입국 후, 취업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므로 증장기 취업 체류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상기 ④, ⑤ 과정을 마친 후 쿠웨이트에 입국해야 한다. 보통 취업 및 거주허가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이며 연장이 가능하고, 취업 허가는 다른 고용주(sponsor)에게 이전(transfer)될 수 있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건설공사 수행 시 한국으로부터 각종 자재 반입을 위해 쿠웨이트 국적의 항공 및 해상 운송편 이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 건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대부분 인도, 이집트, 파키스탄 등 외국인 노동자 고용함, 쿠웨이트인은 전무) 고용 시 외국인은 스폰서 제도에 의해 쿠웨이트 국적자를 스폰서로 내세워야 한다. 이 경우 스폰서에게 스폰서 fee를 제공하여야 하며, 절차가 번거로운 경우가 일반적이다.

금융기관의 쿠웨이트 진출과 관련된 사항

쿠웨이트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쿠웨이트가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걸프지역의 금융허브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특히 최근 고유가로 인해 안정적인 재정수입과 효율적인 금융감독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 이슬람계 은행, 외국계 지사 등을 합쳐서 20여개의 은행이 영업 중에 있으며 인구 450만 명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다. Kuwait Finance House와 같은 전통적인 이슬람계 은행이 그동안 우위를 선점해 왔으나 점차 일반은행과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각 은행들도 기존 업무 영역을 넘어서 투자, 자산관리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쿠웨이트 은행이 외국계은행과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외국 은행의 쿠웨이트 진입을 매우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 2004년 8월 외국은행으로서 최초로 BNP Parisbas의 지점이 쿠웨이트에 개설되었다. 외국은행의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자본금 1,500만 디나르(5,150만 달러)가 있어야 하고, 50% 이상 인력을 쿠웨이트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현재 BNP Parisbas, National Bank of Abu Dhabi, Citibank, HSBC, Qatar National Bank,

Bank of Bahrain and Kuwait, Doha Bank, Mashreq Bank 등 외국은행 지점이 쿠웨이트에서 영업 중이다.

최근 통상환경 변화 및 특징

쿠웨이트의 통상환경은 대체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비록 쿠웨이트가 포브스지가 선정한 2019년 기준 “Best Country for Business”에서 조사대상 총 161개국 중 71번째를 기록하였고, 아랍지역에서는 7번째로 랭크되었다고 보도된 바는 있으나, 통상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상당히 더딘 편이다. 한편, 최근 월드뱅크에서 조사한 Doing Business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순위는 83위로 인근 GCC 국가 중에서도 가장 기업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UAE는 16위, 카타르는 77위, 사우디는 62위, 오만은 68위를 기록하였다. 쿠웨이트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KBC (Kuwait Business Center)를 설립하여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국민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프셋제도 중지, 회사설립 최소 자본금 축소 등 각종 규제 및 제한을 완화하며 외국 투자자들의 유치하기 위한 통상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 속도가 느린 편이다.

최근에는 3국인 유입증가에 따른 인구 증가, 교통 체증 및 혼잡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쿠웨이트 정부는 2018년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2025년까지 300만명에서 160만명까지 줄일 것을 목표로 하는 쿠웨이트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을 제외한 3국인 잉여인력에 대한 대규모 감축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 거주(근로) 비자 발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상호인정을 통한 운전면허증 발급 등이 일선 행정 창구에서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UN 쿠웨이트 CCA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민간분야에서는 276,000명, 정부분야 14,000명, 가사도우미 94,000명이 감축되었고, 6,300명의 부양가족 비자가 거부되었다. 따라서 프로젝트 수행시 필요한 인력투입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현지 경제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쿠웨이트 정부는 2010년 쿠웨이트 Vision 2035를 발표하고, 쿠웨이트를 물류 및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5년 단위의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제3차 국가개발계획 2021-2025가 국회심의 중에 있다. 제3차계획은 국가개발 우선순위에 따라 5개 주제(특별경제구역, 지식기반 경제, 정부역량 제고, 지속가능한 번영, 시민중심), 8개 프로그램(북부지역 잠재력 개발, 민간 부문활성화,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투명하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정부 개발, 통합 관리 인프라 구축, 살기 좋고 조화로운 환경 구축, 건강과 삶의 질 개선, 국제사회기여)으로 구성되어 있다.

쿠웨이트의 비전 및 국가개발계획은 석유 의존적 경제를 탈피하기 위한 쿠웨이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핵심 경제정책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신도시 건설, 보건의료분야, 친환경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므로, 쿠웨이트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 장벽

쿠웨이트는 아직 디지털 무역에 대한 규제, 법령, 행정규칙 등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쿠웨이트 역시 급격히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며, 근래 들어서야 쿠웨이트 의회 및 CITRA 등 관련기관 등이 관련 법령의 중요성을 실감하여 필요한 규제와 법령을 제정하고자 하나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디지털 분야에 대한 쿠웨이트 정부의 명확한 규제 법령은 크게 2가지로, Law No. 20 of 2014 The E-Commerce Law와 Law No. 63 of 2015 The Cybercrime Law이다.

The E-Commerce Law의 경우 사실상 개인정보보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의 고객 관련 데이터를 당사자나 법원의 승인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령은 단순히 전자상거래 분야에 그치지 않고, 공공, 민간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다.

The Cybercrime Law의 경우 자국의 중요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혹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정보통신분야 규제기관인 CITRA에서 그들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이트 혹은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검열을 수행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그간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이 더뎠고, 해외 ICT 기업들의 진출 케이스도 많지 않아, 주변 국가들 대비 관련 법령 및 규제의 수립이 늦은 편이다.

동 분야에 대한 규제와 법령이 아직 미비한 실정으로,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보수적인 쿠웨이트 문화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장에 단독으로 진출하기 보다는 쿠웨이트 정부 및 디지털 시장에 정통한 현지 파트너와 함께 진출하는 방향이 추천된다.



수입 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튀니지는 WTO 회원국으로 현재까지 60여개국과 무역협정이나特惠무역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며⁸⁷⁾, 농산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품목에 한해 주요 교역 대상인 EU(제휴협정), 일부 아랍국가, 유럽자유무역연합(AELE: Association Européenne du Libre-Échange)의 7개 회원국 및 튀르키예로부터의 수입품목에 대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튀니지의 주요 교역상대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로서 튀니지 수출의 74.2% 및 수입의 49.9%를 점유하고 있다⁸⁸⁾. 이러한 현실에는 지경제화적인(geo-economic) 여건도 작용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EU와의 공산품 대상 FTA 협정, 즉 제휴협정(Accord d'association / 1998.3.1 발효) 체결로 2008.1월부터 쌍방 간의 공산품에 대하여 관세가 철폐된 결과 EU 회원국 상품들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된 데 기인하기도 한다. 한국은 튀니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튀니지가 지역협력체 및 여타 인근 국가들과 체결한 아래의 대외무역 협정들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일종의 관세장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87) 튀니지는 1994.4.15 마라케시 설립협정의 서명국(95.3.29 협정발효)으로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수혜국인 동시에, WTO 협정에 따른 법령(덤핑 및 보조금 등 불공정수입행위 방지 법안, 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법률, 지적재산권관련, 저작권보호 기관 설립, 관세평가협정관련 등)을 정비중임. 제2차 튀니지 무역정책에 검토회의(05.10월, 제네바)에서는 과거 10년간의 튀니지의 경제성장을 검토하고, 무역절차간소화 및 수입의 양적제한 관련 튀니지의 노력을 평가한 바 있음. WTO의 2016.8월 「튀니지 통상정책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튀니지는 2008년 발효된 이란과의特惠무역협정을 제외하고는 2005년 이후 다른 나라와 무역협정을 체결한바 없음.

88) 2020년 EU는 튀니지 수출의 74.2%, 수입의 49.9%를 점유하였으며,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이 수출의 61.1%, 수입의 38.1%를 차지함. 2020년 튀니지 총수출액은 38,705.9백만 디나르, 총수입액은 51,463.7 백만 디나르였음.(튀니지 통상수출진흥부) 2020년 튀니지는 한국에 18백만불 수출, 547백만불 수입함.(IMF 세계통계)

○ EU와의 공산품 대상 FTA 협정

- 제후협정(Accord d'association / 1998.3.1 발효)

- 2008년 1월 1일부터 “공산품”의 관세 철폐

※ 튀니지는 2015년부터 EU측과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임.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은 표기 언어에 따라 DCFTA(영어 표기)나 ALECA(불어 표기)를 사용함.

○ 유럽자유무역연합*과의 공산품 대상 자유무역협정

- 2008년 1월부터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

* 유럽자유무역연합 : EFTA(영어), AELE(불어).

○ GAFTA 협정(범아랍자유무역협정)

- 2005년 1월부터 GAFTA(범아랍 FTA) 18개 회원국 간 ‘농산품 및 공산품’에 대해 관세철폐

- 관세철폐 제외 상품 : ‘회원 18개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협정 비적용 대상물품 목록’ 상의 물품, 회원국이 특정 하는 기간의 특정 농산품, 회원국의 면세지역에서 제조된 상품

- 관세면제 대상 상품의 조건 : 협정상의 ‘아랍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으로, 협정상의 ‘직교역 조건’ 충족 필요

아랍 원산지 규정	아랍 직교역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1국에서 완전히 얻어진 상품 ○ 상품생산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가치의 최소 40% - 조립산업의 경우 최소 20%가 협약 당사국에서 부가된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아랍 중개인의 개입이 없는 회원국가 간의 직접교역 ○ 교역과정상 중간 기착지가 있는 상품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 기착국의 세관 당국의 감독 하에 있던 상품으로, - 보관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가공이나 변화되지 않은 상품은 예외적으로 직교역 상품으로 인정

* GAFTA 회원 18 개국 :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 수단, 시리아, UAE,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 아가디르(Agadir) 협정

- 2007년 3월 27일부터 EU와 제후협정이 체결된 4개국(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요르단) 간 ‘농산품 및 공산품’을 대상으로 관세와 기타 세금 전액면제

- 유로-지중해 원산지 규정(règles d'origines Euro-Méditerranéennes)

도입, 유로-지중해 증명서(certificat Euro-Med) 도입, 협정이행 실무 점검팀(요르단 암만 소재) 운영

- 이슬람협력 기구(OIC) 회원국 간의 특혜무역협정
 - 2002년 회원 10개국의 서명 및 비준으로 발효.
- 양자협정: 튀르키예(2005.7월_이하 발효일), 모로코(1999.3월), 리비아(02. 2월), 이집트(1998년), 시리아(2005.10월), 요르단(1999년)과 FTA를 체결했고, 알제리(2014.3월), 모리타니아(1964.9월/추가협정으로 1988. 7월 개정), 이란(2008.5월)과는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함.
 - 터 키: 모든 공산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제한된 물량의 일부 농산품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대추야자의 경우 5천 톤)
 - 모로코: 2007년 12월 종료된 이행기간 동안, 양국 교역상품에 대해서 관세 및 세금을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호혜적으로 철폐하며, 상호 합의된 상품목록 상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 17.5%를 적용
 - 리비아: 양국간 모든 교역상품에 대해서 관세 및 세금을 완전히 호혜적으로 면제
 - 이집트: 기종료된 이행기간 동안, 양국 교역상품에 대해서 관세 및 세금을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호혜적으로 철폐(단, 합의된 수입제한 품목상의 상품은 제외)
 - 요르단: 기 종료된 이행기간 동안, 양국 교역상품에 대해서 관세 및 세금을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호혜적으로 철폐
 - 알제리: 특혜협정(Preferential agreement)으로 양국 교역상품에 관세 및 세금을 호혜적으로 완전 면제를 규정
 - 이 란: 합의된 2개의 공산품 목록(튀니지, 이란 각 1개) 제품대상으로, 원재료 50 %, 반제품 40 % 및 완제품 30 %의 관세 인하

한편, 튀니지는 관세인하 및 면세조치 추진 차원에서 2015년 재정법 개정⁸⁹⁾을 통해 1차 원료, 반제품, 장비 수입 시 최고 관세율을 기존 30%에서 20%로,

89) 튀니지 재정법 41조(<https://www.droit-afrique.com/uploads/Tunisie-LF-2016.pdf>)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리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최고 관세율을 10%로 각각 인하 조치하고, 상기 장비 제조에 필요한 주원료에 대해서는 면세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2012.1.1일부터는 관광차, 버스, 트럭 등의 특정 차량용 타이어에 대해 수입관세율을 15%로 인하하고 농업원료로 취급되는 특정 종자 및 식물을 면세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러나 주류, 자동차, 사치품과 같은 소비재에 대해서는 관세와 별도로 수입 쿼터제를 실시하거나 높은 소비세(일반 품목은 200%, 사치 품목은 700%까지)가 부과되어 수입 장벽은 여전히 높게 존재하는 실정이다. 엔진 용량이 큰 자동차의 경우, 휘발유 엔진의 경우 최대 277%까지, 디젤 엔진의 경우 최대 360%까지 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2022년 재정부 개정⁹⁰⁾을 통해 휴대폰(0%→20%) 및 냉장고, 세탁기 등 각종 전자제품(30%→43%)의 수입 관세를 인상하였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튀니지는 무역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고 수입통관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을 위해 통관 전자화(No paper) 시스템 도입 외에도 관세 수취에 전자서명 및 전자결제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세관신고 전자화(TTN, Tunisie Trade Net 및 Liasse Unique 시스템)를 추진하여 세관신고서 및 수입품목에 대한 기술검사 서류 등의 전자 수·발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⁹¹⁾. 수출입 관련 모든 정보를 자동 처리하는 시스템은 ‘통관절차 자동화 정보 시스템(SINDA, Système d'Information Douanier Automatisé)’이며, 상기 TTN 및 Liasse Unique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

수출입 품목이 세관을 경유하는데 소비되는 시간은 평균 3.8일(2015년 기준)이며,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0.75일이다. 수입품목에 대한 기술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튀니지 통상부의 기준에 따르면 48시간(관련서류가 완전히 구비된

90) 튀니지 재정부 57조(<http://www.finances.gov.tn/sites/default/files/2022-01/LF2022.pdf>)

91)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EU 및 프랑스개발청은 튀니지 세관의 조세형식간소화 프로젝트를 지원, 2016.3월부터 일부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문서 30개를 삭제하는 등 기존 형식의 77%를 간소화함. 한편, 우리나라 관세청도 2020년 튀니지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을 실시함.

경우)이다. 또한, 튀니지 관세청은 모든 세관서비스를 유료화(2016년 기준 관세의 3%에 해당)한 바, 신고서 1장당 전산화 처리 명목으로 6디나르(2021년 11월 현재 환율 기준 2,508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한편, SINDA의 문서(기술규제에 부합하는 제품의 안정성, 소비자의 건강, 수입품목의 성향 및 가격, 원산지 및 수입업자 등에 대한 정보) 판독 결과, 기술검사(controlle technique)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을 녹/주/홍의 3색 목록으로 분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제품은 총 관세품목의 약 11%에 해당한다. 기술검증 대상 품목은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 유통이 금지되며, 공업, 농업, 관광 부문과 관련하여 수입업자가 사용하는 원자재 및 반제품, 수입품 샘플, 일반 홍보용 물품, 전시용 상품, 외교단 및 적십자사의 수입품, 행정기관이 주문하는 선물용품, 반송품 등은 2010.7월부터 기술검사 면제 대상이다.

- Couloir Vert(녹색 리스트) : BAE(Bon a enlever) 카테고리로 통관 직후 즉시 접수가 가능하다. 튀니지 관세청에 따르면 동 카테고리 분류된 품목은 총 수입품의 71%에 해당(2015년 기준)됨.
- Couloir Orange(주황 리스트) : 상품의 안정성이 중간으로 평가되는 품목들로 규격인증서 등 문서상의 검증을 위주로 한다.
- Couloir Rouge(적색 리스트) : 상품의 안정성이 매우 낮음으로 평가된 품목들로 상품에 대한 직접검증(X-ray, 포장 개봉)을 실시하며, 2015년 기준 총 수입품목의 8.75%가 이에 해당되었다. 직접검증 대상 품목은 수취허가증 및 소비허가증이 발부될 때까지 세관 창고에 보관되며, 통상적으로 11일 소요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추가 기술검증이 요구된다.

튀니지 정부는 밀무역 근절 및 수입품목 가격의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수입업자가 준수해야할 신규 세관수칙을 2017.9.28 발표(2017.10.30부터 적용)한 바, 모든 수입품목 특히, 식료품, 화장품 및 공업용 자재류의 통관절차를 위해서는 수출국 쪽에서 작성된 세관신고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관세청은 수출품목의 실질가치를 파악하여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관세율,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이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튀니지 정부는 2022.10.17.부터 수입품목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 수입업자가 수출 공장 발행 송장, 수출 공장 법적 지위 및 운영 허가 증명서 및 기타 튀니지 정부가 수입 제품 품질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문서들을 제출하도록 함.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1) 원산지 일반규정

다른 나라에서 제조를 거친 제품의 수입 시 제품의 원산지는 초기 제조국이다. 그러나 타국에서 부분 및 완전가공을 거친 경우 가공한 나라가 원산지가 되며 가공이 불완전할지라도 가공 후 제품의 관세가 가공 전 제품의 관세보다 높을 경우 가공한 나라가 원산지가 된다. 튀니지는 교토협약 개정안(the Revised Kyoto Convention)의 부속 K에 의거하여 제정되어 09.2월 공포된 세관법에 따라 가공이 완료되었거나 상당부분 가공이 이루어진 나라를 원산지로 규정한다. 원산지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에 따라 결정된다.

(2) 원산지 특별규정

튀니지는 1996년부터 자국과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모리타니아,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요르단, 쿠웨이트)이나 범아랍자유무역협정 체결국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규정을 적용(가공제품 공장도 가격의 최소 40%를 지역부가가치세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 국가들을 원산지로 인정하여 수출입 시 감세 및 면세혜택(회원국간 누적 가능)을 적용한다. EU, EFTA, 아가디르 협정국(모로코, 이집트, 요르단), 튀르키예와의 자유무역협정의 경우에는 1995년부터 적용 대상이 확장된 PAN-EURO-MED(범유럽·지중해) 방식을 활용, 품목마다 원산지 특별규정을 적용하여 관세율이나 지역부가가치세에 변화를 주고 있다.

수입규제

튀니지는 1994년 제정된 수입 금지법에 의거하여 수입이 전면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목을 엄격히 관리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다. 튀니지 디나르화 및 총기류, 폭약(2013.12.20부터 국내 생산, 판매, 수입 전면 금

지), 투견 등 치안 및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품목과 마약류와 같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미풍양속 및 관습을 저해하는 품목과 동식물군 및 문화재 보존에 위배되는 품목 등이 수입금지 품목(총 관세품목의 7.2%)에 해당된다⁹²⁾. 단, 전량수출기업은 상기 수입금지 품목에 제한을 받지 않고 생산 및 투자에 필요한 모든 재화를 수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농산물, 자동차, 섬유제품, 전문 음향기기, 위성전화, 측량 및 측정기기 등 전체 수입 품목의 약 3%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서(Import license)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수입허가서 신청은 무역 계약서(Pro forma) 및 계약 당사자, 수입품목, 원산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인증개사를 통해 통상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통상부가 발부하는 수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허가 결정일로부터 1년이고 양도는 불가능하다. 수입허가증 발부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상품목의 민감성에 따라 다소 격차가 있는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1998.1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입보호조치에 따라 △시기적으로 농산물 등 대량수입에 의해 국내 생산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품목 △국내 시장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소비재 △정부보조금 혜택이 부여되는 품목에 한해 수입제한이 적용된다. 이 경우 통상부나 관계 기관에 대상 품목에 대한 수입 신청서를 제출한 후 통상부의 적격심사(통상적으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개월 이내이며 예외적으로 2개월 연장 가능)가 실시된다. 수입 보호조치는 수량제한이나 관세 인상의 형태로 적용되며 일시적 조치에 해당 하는바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한편, 수입쿼터를 통한 외국기업의 시장 진입 규제가 있다. 일례로, 자동차의 경우 주재국 통상부는 공식 업체를 통한 수입쿼터를 약 60,000대를 기준으로 전체 규모를 책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자동차 업체에게 1년 단위로 할당하고 있는 바, 쿼터할당 교섭은 자동차업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공식 업체를 통한 자동차 수입가격은 공식 업체의 세금부담 등으로 개별수입(주재국 재외국민에 의한)을 통한 판매가 보다 10-30% 정도 비싼 바, 주재국

92) 이스라엘산 제품은 전 품목이 수입 금지되어 있음.

자동차 시장의 당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높은 소비세, 2011년 혁명 이후 확대 추세를 보이는 개별수입 규모(2015년 기준, 약 8만 대) 및 “개별수입에 대한 혜택 확대 조치” 등이 가중되어 튀니지 내 외국자동차 수입업체들은 시장개방, 쿼터제 폐지, 개별수입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 튀니지 자동차 판매시장 동향

- 튀니지육상교통기술청(ATTT, Agence Technique des Transports Terrestres) 통계에 따르면 주재국 자동차시장의 연 평균 증가 규모는 7~8만대이며, 개인승용차 이용률은 11%(인구 9명 당 자동차 1대 소유에 해당)이다*.
- * 튀르키예 11%, 루마니아 20.3%, 프랑스 48.2%
- 경자동차의 경우, 구매가격 상승(유료 및 달러 대비 튀니지 디나르의 가치하락), 휘발유가격 인상,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래 지속적인 수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외국산 자동차 수입은 공식 공급업체와 밀무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식업체의 수입 외제차량 판매율은 총 판매량의 96%를 차지한다. 특히, 신형 자동차 판매의 경우 20여개 공식업체(30여개 브랜드 판매)가 경쟁을 하고 있으며, 총 1만여 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 한편, 신형 자동차 수입 쿼터 감소와 맞물려 중고 자동차 수입은 밀무역 거래를 통해 규모가 증가하면서(ATTT 집계에 따르면, 번호판을 재발급 받은 중고차 수 증가), 2016년 말 기준 주재국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36%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 튀니지내 판매되고 있는 외국산 자동차의 2021년 판매량(1~3분기 차량등록 기준) 분포를 보면 현대(5,119대), 기아(4,640대), Toyota(3,395대), Renault(3,257대), Peugeot (3,169대), Fiat(2,998대), Volkswagen(2,724대), Suzuki(2,662대) 등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품목의 가격이 원산지국의 덤핑 및 보조금 조치로 인해 정상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어 튀니지 시장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조사는 통상부 장관령에 의해 18개월 이내에 취해지며, 잠정적 반덤핑·상계관세는 조사 착수 60일 이전에도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명백한 손해 발생이 입증될 경우 최종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되며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표준

수출경쟁력 강화 및 품질 향상 차원에서 튀니지 정부는 국제표준화 달성에 주력하여 표준화정책을 추진 중이다. 튀니지의 표준 및 기술규격 관련 법규는 1983년에 제정, 2009년에 개정되었다. 튀니지 내 유일 표준 담당기관은 1982년 설립된 산업부 산하 INNORPI(Institut National de la Normalisation et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로 튀니지표준(NT, Normes Tunisiennes)의 등록과 공표를 주관한다.

표준 분야 관련 튀니지 국제협약 비준 및 국제기구 가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기술장벽관련협약(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제표준협회(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국제전자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아랍표준기구(Arabe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아랍공업개발·광산기구(AIDMO:Organisation Arabe de Développement Industriel et des Mines)
- 아프리카표준기구(Africain Regional Organis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법정계량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 유럽표준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 유럽전자기술위원회(CENELEC: 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 Electrotechnique)

튀니지에서 표준은 크게 ‘임의표준’과 ‘의무표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임의표준은 제품과 관련된 정부부처(주로 의약품, 농식품, IT장비 등)가 규정하는 표준으로 제품의 표준화가 증명된 경우에 INNORPI에 등록이 가능하다. 의무표준의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술장벽관련협약 (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추가조항 1에 제시된 기술지침과 SPS 협정(위생·식물병충해 방제에 대한 국제 표준)에 적합하다는 공식승인이 필요하다. 표준 승인이 의무화되어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표준 관련 법규 내에서 기준 및 참조 조항으로 활용될 가치가 있는 경우
-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 공공이익, 보건, 의학, 안전, 시민보호 및 환경 분야
- 분쟁 해결에 활용될 수 있는 경우

튀니지표준의 생성과정은 국제표준의 생성과정과 거의 유사하며, 2015년 말 기준 INNORPI에 등록된 튀니지 표준의 96%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튀니지 표준화 절차는 표준화 제안을 INNORPI에 제출하면, 기관에서 지명한 심사위원 그룹에 의해 서류상의 기술심사가 진행되며, 이어 기관 내 실험실에서 임상실험을 거쳐 최종 결과에 이르며, 동 결과를 바탕으로 INNORPI 청장이 표준화 승인 및 거부를 결정 2018.12.31 기준 INNORPI에 등록된 튀니지표준(Normes tunisiennes)은 17,719개로 경제 전 분야에 분포되어 있다.(기계 18.9%, 전기 16.4%, 화학 16.3%, 건설자재·세라믹·유리산업(IMCCV) 15.9%, 농식품 9.7%, IT 6%, 보건 6%, 치안 3.5% 등)⁹³⁾

검사 및 인증

튀니지 관세청은 2010년부터 기술검사가 필수인 일부 품목(총 관세품목의 약 11%에 해당하는 양탄자, 의류, 음료, 제분품 및 일부 조리공정품 등)을 제외하고는 48시간 이내에 수입품목의 통관 완료를 위해 수입품목에 대한 기술검증 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에 있다.

수입 시 기술검증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크게 세 종류로 다음과 같다.

- List A: 철저한 기술검증이 요구되는 품목으로 2015년 현재 1,900여 개의 관세품목을 포함 (총 관세품목의 11%)하며 주로 농경재, 화장품, 가전제품 등임. 농업·수자원·어업부, 산업·에너지·광산부, 통상수출진흥

93) INNORPI(<https://www.innorpi.tn/fr/la-normalisation-en-chiffres>)

부 및 보건부 산하 검증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함.

- List B: 규격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품목으로 주로 의류, 식물, 종이, 판지, 철강제품, 기계 및 전자제품(현지생산품도 포함) 등임. 세관에서 검증 실시함.
- List C: 수입허가서에 제시된 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증명해야 하며, 주로 농·식품 및 광물 등으로 일정량의 저장고 확보(옥수수과 대두의 경우, 연간 수입량의 1/6을 저장·유지)가 필요하고 운송자재의 경우에는 애프터서비스 이행이 필요함.

동·식물성 제품은 위생검사를 필요로 하며 수입 시에는 특별허가서가 요구된다. 동물, 육류, 원피, 야채류, 식품첨가물, 동물사료(동물사육용 식료품과 식품 수입에는 비 방사능오염 증명서 또한 첨부), 음료 및 기타 식품 등은 보건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가, 식물성 제품은 식물보건 증명서가 요구되며 벌과 꿀 수입에는 원산지증명서 및 무해성증명서가 필요하다. 농업용 살충제의 제조, 수입, 제조, 포장, 판매 및 배포는 농학기사, 화학공학자격증 소지자, 약사 내지는 농업학교의 공중보건학 수료증 소지자에 한하여 인증서가 발부된다.

환경관련 규제

튀니지에는 비인체분야에 대한 유전공학 실험이나 유전자변형유기체(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활용 관련 법규나 규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GMO 문제와 관련하여, 튀니지는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과 생물·기술학적 위험성 예방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에 서명한 바, 유전자변형 규제를 법률상으로 제도화하고 생물 안전성을 감시·관리하는 국가위원회의 발족을 검토 중이다.

환경분야 국제협약에 따라 튀니지는 유해폐기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및 야생 동·식물 수입 등을 철저히 관리·규제하고 있다.

환경분야 관련 튀니지의 국제협약 비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과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유해폐기물의 아프리카 반입 금지에 대한 바마코협약(Bamako Convention on the Ban of the Import into Africa)
 - 튀니지는 동 협약에 따라 유해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튀니지는 동 협약에 언급된 화학물질(aldrine, chlordane, dieldrine, heptachlore, hexachlorobenzène, mirex, toxaphène, polychlorobiphényles(PCB), etc)의 생산, 사용, 수입 및 수출을 금지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대한 로테르담협약(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정(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동 협약의 첨부서1에 수록된 동·식물의 수입은 농산부의 수입허가서 취득 후 가능
-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 동 의정서 관련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는 품목들은 튀니지 국립환경보호청(ANPE, Agence Nationale de Protection de l'Environnement)에서 발부하는 수입허가증이 필요

석유, 중합체, 원심분리기, 건전지·배터리, 축전지 등은 수입 및 판매 시 5%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튀니지 국립환경보호청이 관리하는 “공해방지기금”(FODEP, Fonds de Depollution)과 “환경미화보호기금”(FPEE, Fonds de la protection de l'esthetique de l'environnement)에 각각 70%와 30%씩 적립된다.

보조금 및 불공정 무역정책

2017.4.1 발효된 튀니지 신규투자법(Nouveau Code de l'Investissement)⁹⁴⁾은 민간투자 장려,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수출 능력, 기술력 증진, 우선순위분야 개발,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역량강화, 통합적 지역개발 및 지속가능개발 등의 주요 정책 추진을 핵심 목표로 책정하고 있다. 특히 튀니지 측은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그간 정부 인허가가 필수였던 분야의 일부에 대해 면제 조치를 취하고, 인허가 획득이 필요한 경우에도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시간지연을 방지토록 노력 중이다. 해외투자자의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사법권 및 중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자본의 해외송금 허용, 투자계획 실행 초기단계(3년간)에 한해 기업 간부직의 30%까지 외국인 채용을 허용한다.

투자 장려 차원에서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은 ①투자장려금(지역개발 계획, 우선순위 분야 및 지역개발 차원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지출비용), ②농수산 장려금(동 분야에 대한 대규모 및 소규모 프로젝트 투자비용에 대해 각각 15%와 30%까지 지원하며 최대 1백만 디나르까지 지급), ③수익증대장려금(신기술 습득 및 생산력 증진 차원의 장비 구매, 연구 및 개발 목적의 무형투자, 직원 교육 및 역량강화), ④고용능력증진 장려금(튀니지인을 고용(첫 고용)하는 경우, 기업측의 사회보장기금 분담 지원), ⑤지속가능개발장려금(수질관리 및 대기 오염방지, 친환경·무공해기술 분야 관련 장비 구매 시 총 투자비용의 50%(최대 30만 디나르)까지 지원) 등으로 분류하여 지급한다.

94) 튀니지 신규 투자법(<http://blog.naver.com/sompat/220919388054>) 및 관련 시행령(<http://blog.naver.com/sompat/220979988195>) 전문이 상기 웹사이트에 한국어로 비공식 번역되어 있어 참고 가능함.

튀니지는 조세압력 감소와 분야별·기업별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14년 1.1부터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35%에서 25%로 감세 조치했으나, 일련의 보조금 누적 혜택을 허용하기 때문에 국고에 타격이 크며,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는 기대치 이하인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보조금의 가장 큰 수혜자는 ‘비상주전량수출기업’으로 환전의 자유, 과실송금, 중대한 감세혜택 등이 주어진다. 튀니지는 기업 조세압력 완화정책 일환으로 2021년 개정 재정법 14조 통해 법인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었다.

- ‘전량수출기업’은 수출로 얻은 수입이 기업 총 매출의 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부분수출기업”으로 분류됨.
- ‘비상주기업’(Offshore)은 국내에 상주하지 않는 기업으로 환전이 가능한 외환을 투자하여 기업지분의 최고 66%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비상주기업은 주로 전량수출기업의 형태, 즉 비상주전량수출기업의 형태로 존재한다.

수출기업의 형태에 따른 조세 혜택과 과실송금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으며, 정부보조금 혜택 외에도 비상주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를 국내외 여타 비상주 기업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각종 조세 및 관세 면제가 허용되며, 환전의 자유도 보장된다. 단, 상기 나열된 혜택은 상주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혜택	비상주완전수출기업	상주완전수출기업	상주부분수출기업
과실송금 의무	아님	의무	의무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년간 면세 • 14년 1월부터 수출 이윤의 10%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년간 면세 • 14년 1월부터 수출 이윤의 10%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년간 면세 • 14년 1월부터 수출 이윤의 10% 부과
생산원료 및 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세	면세	2016년 재정법에 따라 장비 수입에 한해 면세
상기 생산원료 및 장비에 대한 입항세,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면세	면세	장비 수입에 한해 면세

튀니지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에 유통업(도소매 모두 포함) 접근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업활동의 경우에도 “외국인영업허가증”(carte de commerçant étranger) 취득이 필수인데, 이는 공공조달, 1차원료 추출, 자동차 연료 유통 및 환전거래 부문 종사자에도 적용된다. 단, 알제리와 모로코 국적자에 한해서는 상기 외국인영업허가증이 불필요하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튀니지 정부의 사전 승인 하에 건설분야(건축 및 설계, 토목 공사, 인프라, 부동산) 관련 업체 지분의 극소수 수준에서만 소유가 가능하다. 한편, 2015년부터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49개 분야(운송 및 교통, 철도, 해운, 항만, 통신, 교육 및 직업훈련, 부동산, 예술품 제작 및 출판, 세미나·회의·포럼·전시회 조직, 상업광고 및 경비업체서비스 등)에 대해 튀니지기업의 외국인 지분소유를 50% 이상, 최대 66.66%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총리실 산하 투자고등위원회(CSI, Commission Supérieure des Investissements)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갱신은 불필요하다. 반면, 상기 49개 분야 관련 외국인이 유가증권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는 튀니지기업 지분의 최대 50% 까지만 소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투자의 경우 전량수출기업 형태를 제외한 대다수의 영업활동은 모두 튀니지 정부의 사전 승인을 전제로 한다.

외국인직접투자에 제한이 없는 분야는 주로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 부문(금융업, 보험 및 관광업)이나 제조업의 경우 정유, 의약품제조와 수출이 아닌 국내수요 충당을 위한 제조업(카펫 제작, 주류(맥주 및 와인) 제조, 제분업, 식용유 정제, 철근 제작, 생사, 담배 제조 등)의 경우,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수출장려 차원에서 조성된 비즈니스 파크(Parc d'activités économiques)를 활용할 경우(※ 아래 도표 참고)⁹⁵⁾, 단지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전량수출 기업은 조세, 금융 및 관세 혜택을 부여 받으며, 영업활동에 필요한 품목 수입 및 수입 시 기술검사도 면제된다.

95) 이 외에도 기타 경제특구가 구축되어 있으며, 관련 정보는 한국어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sompat/220924832656>)에서 참고 가능함.

위치	관련 분야	면적 규모 (ha)	고용자/기업 수 (2020년 기준)
Zarzis (남부)	노동집약도가 높은 산업 및 기술 관련 산업, IT 서비스, 자동차 정비, 농수산물가공업, 기계전기 부품사업, 플라스틱 제조 등 생산 관련 서비스업	60	320명/43개 기업
Bizerte (북부)	기계·전자·전기, 조선 및 마리나, 제약, 플라스틱, 직조, 섬유 및 피혁, 기타 무역서비스	100	5,000명/69개 기업

통상부 산하의 수출진흥공사(CEPEX, Centre de Promotion des Exportations)는 수출지원 정책 및 방안의 파급효과 검토, 무역 데이터 관리(Tasdir Net), 무역 분야 종사자 교육 및 각종 엑스포, 전시회 조직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 “수출 진흥기금”(FOPRODEX, 1985년 정부가 설립)을 운용, 보조금이나 융자(상환 기간 3년, 거치 1년, 평균이자율 조건) 형태로 수출업자 및 기업에 지급한다⁹⁶⁾. 농산물 수출의 경우, 운송비(해운 1/3, 항공 1/2) 지원, 수공업품의 경우 운송 수단에 관계없이 운송비의 25%를 분담한다. 또한 CEPEX는 수출기업들의 대졸자 고용 장려차원에서 이들의 임금(첫 해 50%, 2년차 40%, 3년차 30%) 지불을 분담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수출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출시장접근기금”(FAMEX II, Fonds d'Acces aux Marches d'Exportation)은 개인(최대 10만 디나르), 기업(50%) 및 전문협회(70%)의 수출전략수립 비용을 분담하고, 해외판로 개척 성공 사례의 경우 최대 보조금 15만 디나르를 지급한다. 세계은행에서는 튀니지 수출증대 지원 차원에서 “수출 경쟁력·개발 지원기금”(TASDIR+, Fonds d'Appui a la Competitivite et au Développement des Exportations)을 마련하여 제약, 보건 및 교육서비스, 전기전자산업, 자동차, 항공우주산업 등 고부가가치창출 분야 종사자에 보조금을 지급, 이들의 재화 및 용역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 바, 2015-2020간 지원 규모는 2200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1984년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된 튀니지 무역보험공사(COTUNACE, Compagnie Tunisienne pour l'Assurance du Commerce Extérieur)는 수출에 필요한 보험 및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96) 2015년 기준, 수출진흥기금 예산은 1900만 디나르(CEPEX총 예산의 63%에 해당).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튀니지는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 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에 가입하지 않은 바, 4대 개별협정 중 하나로 내국인 대우와 무차별 원칙을 기본으로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상의 투명성에 초점을 두는 정부조달협정(GPA :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단, 1995년 체결한 EU와의 제후협정 범위 내에서 정부조달 분야의 점진적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튀니지는 2014.3.13자 총리령(Decree)에 따라 입찰규정서에 명시된 ‘응찰 자격요건 충족 시 최저가격 낙찰’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기술요건이 증시되는 재화나 설비조달, 디자인 계약의 경우에는 가격보다는 품질을 우선순위로 두고 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상기 총리령은 발주처(정부, 지역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포함)가 아래 금액 이상(세금 포함)의 계약체결을 할 경우 공공조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5조).

- 토목공사(20만-50만 디나르)
- 컴퓨터 및 통신기술 분야 재화 및 서비스 공급과 감정(10만-20만 디나르)
- 기타 부문의 재화 및 서비스 공급(10만-30만 디나르)
- 기타 부문의 감정(5만-10만 디나르)

상기 금액 미만의 경우에도 공공조달 관련 절차는 밟지 아니하되 공공자금 운영 및 효율성을 보장하는 투명성의 원칙을 토대로 서면절차에 따라 경쟁의 대상이 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KOICA 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13.1월 튀니지전자조달 시스템(TUNEPS, Tunisian e-procurement system)을 발족, 정부 4개 부처

(총리실, 교육부, 정보통신기술·디지털경제부, 인프라·주택·국토정비부)와 6개의 국영기업 등 총 10개 기관을 시범 사례로 사이트를 구축하여 공공조달 즉 공공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에 활용하고 있다. TUNEPS는 User management, e-building system, e-contracting system, e-catalogue system, e-shopping mall system의 5대 핵심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입찰 건에 대한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준수 여부는 조달감독원(Commission de contrôle des marchés compétente)에서 검토한다. 국가 공공조달 정책 수립 및 분석 등 법적·행정적 범위, 관련 향상방안 등은 국가공공구매위원회(Conseil Nationale de la Commande Publique)가 담당하며, 하위조직으로 공공구매고등위(Haute Instance de la Commande Publique), 공공조달 고등감독·감정위(Commission Supérieure de contrôle et d'audit), 공공조달 조사·후속조치위(Comité de suivi et d'enquête des marchés publics) 등이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조달시장을 감독한다.

2018년 전자조달 의무화가 총리령으로 발효됨에 따라 2018년 9월 1일 수도인 튀니스 내 전자조달이 의무화되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이러한 튀니지의 전자조달 확대를 지원하고자, KOICA 2차 기술협력으로 「튀니지 전자조달시스템 확대·개선사업(2019-2022/250만불)」을 지원하고 있다.

◦ TUNEPS 튀니지 온라인 전자조달 시스템의 중요성

KOICA는 2011-2013간 570만 달러(약 65억 7천만 원)를 지원, 튀니지 총리실 산하 공공조달고등위원회(HAICOP)와의 협업으로 튀니지 온라인 전자조달 시스템 TUNEPS Tunisian e-procurement system) 구축에 기여했다. 튀니지 공공조달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와 기회균등을 원칙으로 구축된 동 시스템은 공공조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5.10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유엔의 '열린정부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회의에서도 아중동지역 공공서비스 개선 분야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는 등, 튀니지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서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공공조달의 투명성이라는 대의 아래,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두텁게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으며, 이는 튀니지 민주화 진전의 원동력 중의 하나인 사회면 대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 TUNEPS 이용 관련 주요 통계

- 공공부문 발주처 : 1,348 개 기관
- 공급자 등록 : 12,422 건
- 전자 입찰 게재 : 18,842 건

◦ TUNEPS 기술 향상 경과

- 2016.12.23 법령에 의거, 전자 장외구매 절차 개발
- 2014.3.13(2014-1039) 법령(공공조달 규제 관련)에 의거, 사전 선정에 따른 전자입찰절차 개발
- 콘소시엄 조성 관련 법률 도입
- 튀니지 은행 전체와의 외부링크 연결 및 이의 일반화, 추가 링크 구축
- 인프라·주택·국토정비부와 데이터베이스 인증을 위한 외부 링크 연결(추진 중)
- TUNEPS의 공공온라인구매시스템 이용 일반화
- 튀니지 조달청 내 구축된 인프라 여건과 가상화 전환시 기존 HW 등의 정보자원 재활용 가능
- TUNEPS 모바일 이용에 필요한 인증 체계로 ANCE가 모바일 인증 모듈 시제품 개발
- 가상화 서버 구축으로, 개발과 모니터링, 모든 요소를 가상화 서버로 이동 (2023년 예정)
- HAICOP 자체적으로 오픈소스 기반의 TUNEPS 전용 암호/복호화 시스템 개발 (2023년 예정)
- TUNEPS 모바일을 웹과 앱 방식 모두를 제공 (2023년 예정)

외국 업체의 입찰참여

2014년 신규 제정된 총리령에서도 튀니지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대한 우대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즉, 튀니지 기업이 제시한 공사가격이나 튀니지 제품의 가격이 외국기업이 제시한 가격(관세 및 각종 세금 포함) 대비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입찰 경쟁상 우대조건이 될 수 있으며, 산업분야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전문분야 입찰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은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응찰해야 한다. 튀니지 공공조달 시장에서 외국기업의 낙찰비율은 2011-12년 4%에서 2014년 33%로 급증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튀니지는 1975년부터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회원국이며, 아래와 같은 다수 국제협약을 비준한 상태이다.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특허협력조약(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 의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Deposit of Industrial Designs)
- 표장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 원산지명 보호 및 국제 등록에 관한 리스본조약(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
- 상표의 상형요소 국제분류에 관한 비엔나협정(Vienna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he Figurative Elements of Marks)
-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 연주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Rom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튀니지의 지식재산권 담당 기관은 INNORPI와 문화부 산하 튀니지 저작권 및 예술인 권리보호단체(OTDAV, Organisme Tunisien des Droits d'Auteur et des Droits voisins)이다. 튀니지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저작권 및 유사 분야 : 저작권의 포함범위는 문학·영화작품, 음원, 사진, 소프트웨어와 전통문화표현물을 분류하여 보호기간은 각각 저작권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과 70년이다.
- 사전 동의 없이 예술품을 이용할 경우, 1천-5만 디나르의 벌금형이 적용되며, 재발 시에는 벌금액을 2배로 가중 부과
- 상표(제조, 판매, 서비스) : 등록은 10년 주기로 갱신할 수 있으며, 재등록은 무한 가능하다.
- 국가 위조품 퇴치 방안의 일환으로 위조품 적발 시 벌금형 5천-5만 디나르, 위조품 검사 거부 시 5천-2만 디나르 상당의 벌금형과 1-6개월의 금고형 적용
- 원산지 표기 : 국가명 및 지방명 표기는 자연적 구성요소(토양, 수질, 식물군 및 기후)와 인적 구성요소(생산, 제조, 변형 및 특수처리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상품의 가치측정에 도움이 된다. 현재 튀니지에서 원산지 표기가 되는 상품은 포도주(7개의 라벨)뿐이나 향후 모든 농산품, 자연·가공식품(동·식물성 모두 포함)으로 표기분야를 확장할 예정이다.
- 디자인 및 공업용모델 : 등록자의 선택에 따라 5년, 10년, 최대 15년까지 등록이 유효하다.
- 특허 : 기술 관련 모든 분야의 발명품에 해당되며, 유효기간은 20년이다. 단, 국민보건(인체 및 동물의 건강 관련 검진, 치료, 수술 기술 등) 분야는 특허화 가능 분야에서 제외된다.
- 튀니지에서는 특허권의 국제소멸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특허상품 내지는 특허절차를 거친 상품이 특허권 소유자의 동의하에 시장판매될 경우, 튀니지 내에서는 동 상품의 제공, 수입, 소유 및 사용에 특허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관광, 통신, 운송 및 기타 전문서비스 분야

튀니지는 다자 및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서비스 분야 개방을 미루고 있는 바, 동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장벽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남아 있으며, 소수의 자국 서비스기업들의 내수시장 독점으로 서비스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도 지연되고 있어, 소비자 후생이나 생산성 제고에도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

유통업의 경우 대다수가 튀니지 기업이므로 외국자본의 경쟁은 석유제품, 부속품 및 건축자재 유통 등의 소규모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나 2009.8월 유통법 개정 이후 유통서비스 규율의 현대화, 상업분야 수준 향상 및 관련 업체들간의 불평등 해소를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신규 유통법에서 주목할 점은 점진적 자유화 추세와 더불어 도입된 ‘프랜차이즈’ 사업 및 ‘쇼핑센터’ 분야로의 시장개방이라 할 수 있으며, ‘수직 조치’로 인해 외국투자가 투자고등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튀니지 기업지분의 50% 이상 소유가 가능하고, 전량수출 기업의 경우에 외국인 직원 고용이 30%까지 가능하다.

관광산업

관광사업은 튀니지 경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관광부와 관광청(ONTT : Office National du Tourisme Tunisien)에서 관할한다. 국적에 상관없이 개인이나 법인이 호텔, 오락시설, 관광사, 온천관광, 학술관광 전문 튀니지 기업이나 호텔 및 오락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지분의 50% 이상 소유가 가능하다. 단, 외국인의 경우 여행사 지분의 50% 이상 소유는 투자고등위원회, 관광부지 구매는 관할 지역 도지사의 승인을 각각 필요로 한다.

※ 2019년 튀니지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830만명, 관광수입은 50억 디나르였으며, 2021년 9월까지 튀니지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160만명, 관광수입은 16억 디나르였음.

튀니지 정부의 관광분야 투자 규모

(단위: 백만 디나르)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투자금	240.1	297.8	241.9	200.2	261.1	447.2	216.3	196.2

출처: 튀니지관광청(2012-2018년 통계) 및 통계청(2019년 통계)

튀니지 관광산업 규모⁹⁷⁾

(단위: 백만 디나르)

연도	2014	2015	2016	2018	2019	2020
관광수입	3,625.6	2,414.7	2,322.9	4,141	5,628	2,030
전체 숙박일	29,107,239	16,177,556	17,880,034	27,074,650	30,018,511	2,817,951
입국자	7,163,437	5,359,309	5,724,021	8,299,040	9,429,049	2,012,371

출처: 튀니지 중앙은행 및 관광청

지역개발장려지대(Zones d'encouragement au développement régional)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프로젝트의 경우 첫 10년간 수입세 100% 면세, 이후 10년간 50% 삭감, 피고용인들을 위한 주택자금 출자의 50% 면제(5년), 직업훈련 비용 면제, 사업 부지구매 비용을 제외한 총 프로젝트 투자액의 8%에 해당하는 상여금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광산 재개발 지대 대상의 프로젝트 투자는 관광청 건의와 관광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총 투자액(부지구매 비용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지불된다. 관련분야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사용 기간 7년 이상) 중 현지에서 제작되지 않는 제품을 수입할 경우, 무관세 및 부가가치세 12% 적용(2015-2016년의 경우에는 특별히 6% 적용)의 혜택이 부여되며, 현지에서 제조되는 장비를 구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외의 지역 대상 관광서비스 영업에 대해서는 호텔세와 직업훈련세가 각각 기업소득의 2%씩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12%가 적용된다.

한편, 사하라사막 지역 대상 관광프로젝트 지원차원에서 정부는 튀니지인을

97) 튀니지 입국자 통계는 관광목적의 방문객을 포함한 전체 입국자 규모인 바, 관광 관련 통계는 관광수입 및 숙박일 등 여타 통계의 추가적 분석을 필요로 함. 일례로, 2015년-16년간 입국자 규모는 증가(6.8%) 하였으나, 관광 수입은 감소함(-3.8%). 튀니지 경우 리비아 등 인근 정세불안 지역에서의 입국자 증가 등 정세적 측면의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용하는 기업에 한해 고용주측이 분담하는 사회보장기금(CNSS)을 대신 분담(첫 10년간)하기도 하며, 지역개발장려지대의 경우 5년간 정부가 대신 분담한다.

여행사 영업용 차량 수입의 경우, 관세 및 소비세 면제 외에도 부가가치세 12%(기본 18%)적용 등의 혜택이 있으며 여행사나 호텔의 영업용 대형 차량(운전자 좌석 포함, 좌석 수 30개 미만) 수입의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현지 제작 대·소형 버스 구매 시 튀니지정부는 부가가치세 면제(프로젝트 창안의 경우)나 부가가치세 10% 적용(프로젝트가 실행 중인 경우)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통신산업

통신산업은 튀니지의 연간 GDP 11%를 차지하는 중요 성장분야로서 통신서비스(유선전화, 텔렉스, 인공위성 및 임차전신)는 국영기업인 Tunisie Telecom에서 독점권을 갖고 있다. 통신서비스 가격은 공식적으로는 튀니지 정보통신기술·디지털경제부의 권한에 속하지만 실질적으로는 Tunisie Telecom에서 모든 통신서비스가격을 결정하고 있다⁹⁸⁾. Tunisie Telecom은 유선통신의 경우 76.3%(이용자 1,215,434명, 2021.1분기 현재), 무선통신의 경우 31.9%(4,790,586명, 2021.1분기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2021.1분기 기준, 튀니지 무선통신 사용자는 총 15,039,314명이며, 제 1 무선통신사업자는 시장점유율 43.0%를 기록한 Ooredoo(카타르의 Qtel 이 90%, 튀니지 정부가 10% 지분 소유), 2위는 상기 Tunisie Telecom(튀니지 정부가 65% 지분 소유), 3위는 Orange Tunisie(튀니지 정부가 61% 지분 소유)로 시장점유율 23.6% 순이다.

튀니지 3G 및 4G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1분기 현재 Ooredoo Tunisie(40.3%), Tunisie Telecom (31.5%), Orange Tunisie(28.2%) 순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반면, 3G/4G 모바일 시장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고속인터넷(ADSL) 이용자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98) 유·무선통신 및 고속인터넷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튀니지 정부는 2009.6월 France telecom-Orange를 튀니지의 제2유선 및 제3무선 사업자로 선정했고, 2012.3월 Tunisiana를 제3 유선 및 3G 모바일통신 사업자로 선정하바 있음.

있으며, 2021.1분기 현재 Topnet(55.3%), Globalnet(14.0%), Tunisie Telecom(10.0%), Orange Internet (9.7%), Hexabyte(5.0%), Bee Internet (2.8%), Ooredoo Internet(1.9%) 등의 공급업체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2020년 3G 및 4G 모바일 서비스 수익금은 32억 디나르에 달하였고, 2021년 1분기 통신가입률은 전분기 대비 3.8% 상승하였다. 2020년 회사별 수익금 규모는 Tunisie Telecom(1,138백만 디나르), Ooredoo Tunisie(1,226백만 디나르), Orange Tunisie(656백만 디나르) 등 기타 통신사 순이었다.

튀니지의 모든 인터넷통신은 Tunisie Telecom의 통신망 임대를 기본으로 하며, 국영기업인 튀니지 인터넷 관리청(ATI Agence tunisienne de l'Internet)이 관할한다. 또한, 통신시장 수요를 조절하고 통신서비스 공급업체들 간의 건전한 경쟁 보장을 담당하는 역할은 국가통신위원회(INT, Instance Nationale des Telecommunications)의 소관이며, 통신법을 위반한 업체에는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통신서비스는 Tunisie Telecom을 통한 국가 독점률이 상당히 높은 분야인 바, 외국사업자의 경우 법인 지분의 49% 이상 소유가 불가능하며, 법인세 25%, 수출세 10%가 부과된다.

3G/4G의 5G 통신으로의 전환국면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고자 튀니지 정부는 2022년 5G(5세대 모바일통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Tunisie Telecom, Ooredoo Tunisie 등 주요 통신기업들이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음.

우편서비스

우편서비스는 체신청(Office National des Postes/Poste Tunisienne)을 통한 국가독점사업이다. 우편물수거 및 배달, 국·내외 발송(44%)과 자체금융 서비스(40%), 신속배달우편(Rapid-Poste) 등의 신규서비스(16%) 등을 전담하며, 약 1만 여명을 고용(전국에 분포된 우체국은 1,114개)하고 있다.

외국 민영기업이 튀니지에서 신속배달우편 서비스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튀니지체신청 산하 Rapid-Poste EMS사와의 합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튀니지 체신청은 보통예금, 적금구좌 관리 및 우편환, 환전업무 등의 금융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튀니지 금융서비스시장의 주체이기도 하다.

교통서비스

튀니지는 2001년 해상·육상교통서비스의 경쟁력 증진 관련 중대 개편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는 지속가능개발형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튀니지 교통정책은 인프라 및 도시고속철도망 개발,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저공해·고효율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육상교통수단으로의 전환, 그리고 이를 통한 도시교통망 개선 등을 주요 목표로 한다. 또한, 정부의 디지털경제 구축을 위한 교통시스템 개발을 위해 교통물류부는 통신기술부와 협업을 하고 있다.

(1) 해운서비스

해운서비스는 튀니지 교역의 주된 수단(98%)으로 유럽(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과의 무역에서 핵심역할을 맡고 있다. 튀니지정부는 2005년부터 컨테이너 이용요율 인하, 민간선주 및 다용도운송전문 국제기업 참여 장려, 물류보급지대 개설 등을 통한 경쟁력강화 계획 수립에 착수, 2009년 해운법을 마련하였다. 튀니지 물류교역의 89-91%는 외국선박이 담당하고 있고 국영선박회사인 튀니지해운공사(CTN : Compagnie Tunisienne de Navigation)는 4개의 민간선박회사(Africa Marine Company, Gabes Marine Tankers, Metal Ship, MTL Feeder)와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활동영역은 석유별크 운송 사업이다. 튀니지의 해운서비스 시장은 1992년부터 개방되어 가격은 선주들의 자유의사로 결정되고 있으나 연안 항해 부문은 여전히 튀니지 해운공사에서 관할하고 있다. 따라서 튀니지 해안 및 항구 내에서 발생하는 예선작업 또한, 특별요청을 제외한 경우 튀니지 해운공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항만서비스

튀니지 무역의 98%가 해운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8개의 주요무역항(Radès, Sfax, Bizerte, Gabès, Sousse, Zarzis, La Goulette, Skhira 항)과 2030년 건설 완료 목표인 Enfidha 심해항이 있다. 그리고 연간 물류 이동량은 2800만 톤 이상이다. 총 물류운송의 22%가 수도권 소재 국내최대규모의 컨테이너

항인 Radès항을 통하고 있다. 튀니지의 무역항 관할은 튀니지항만청(OMMP : Office de la Marine Marchande et des Ports)에서 담당하고 있다.

(3) 육상운송서비스

1996년 개혁(국제 육상운송서비스업을 위한 튀니지국적소유 조건 폐지) 이후, 육로를 통한 물류운반은 전면 개방되어 대부분이 국내 민간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기업이 동 분야 영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튀니지 투자 고등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한다(기업 지분의 50% 이상을 튀니지인이 소유하고, 경영인도 튀니지 국적자에 한함). 단, 국제육상운송서비스업체의 경우, 튀니지 국적 요건은 불필요하다. 민간기업의 시장 참여에도 불구하고 일반육상운송서비스(철도, 시내 및 고속버스 운행) 관련 국영기업들의 독점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철도운영의 경우, 2개의 국영기업인 튀니지철도회사(SNCFT : 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Tunisiens)와 튀니스 운송회사(STT : Société de Transport de Tunis)에서 각각 전국(일반 철도 이용자 및 물류수송 포함) 및 수도권 운영을 분담하고 있다. 최근 들어 튀니지 고속철도망(RFR : Réseau Ferroviaire Rapide) 구축사업(총 투자 규모 30억 디나르)을 위해 Société Tunisienne du Réseau Ferroviaire Rapide가 설립되어 동 철도망의 제1구간(Tunis-Manouba, Tunis-Ezzouhour 연결), 점차 D선(Tunis Barcelone-Gobâa연결) 11.3km, E선(Saida Manoubia-Bougatfa - Sidi Hassine) 6.3km와 남북중단노선(Bir El Kassa- Bourjel 연결) 115.5km를 구축, Tunis 교외선을 확장 중이며, Sfax 경전철 및 고속철도망 구축사업도 입찰 준비 중이다.

튀니지 정부는 철도운송을 다용도운송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3월부터는 Radès 항구에 입항한 컨테이너의 전국 대도시 운송에 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튀니지 철도운송정책의 우선과제는 다용도운송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철도망의 전동화 및 품질개선, 수도권 내 고속철도망 확장(교통 체증 완화, 도로안전 향상, 온실가스배출 감소 목적) 등이며 동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009.12월 EU와 Don de la Facilité d'Investissement pour le Voisinage(FIV)를 체결한바 있다.

국제육상운송서비스(TIR : Transport International Routier) 관련, 튀니지 정부는 체결된 국제협정에 의거하여 협정 체결국들과의 육로접근에 대한 양자 간 허용 시스템을 개설했고 상호간 통관 허용 및 면세를 시행 중이다. 국제육상운송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튀니지인은 소수이며 물류 수송량도 매우 적은 수준이다. 튀니지회사의 참여가 적은 주된 이유는 영업을 하기 위한 비자 취득이 어렵고 유럽표준에 적합한 운송자재가 적으며 실제 국제 육상운송업자들의 활동영역은 자국 내에서의 외국 세미트레일러 견인 정도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육상운송시장 점유율 증가 및 국제육상운송투자 개발을 위해 튀니지정부는 국제 육상운송용 차량 수입 시 관세 및 수입세 면제, 수입 물량제한 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4) 항공서비스

항공서비스는 튀니지 경제개발 전략분야 중의 하나로 연간 외환 수입이 GDP의 2%를 차지하며 1만5,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2004년 민간항공법 개정으로 민간기업의 항공서비스 분야 참여는 개방된 상태이다. 튀니지 정부는 국내 운항 및 화물항공기 활용을 통한 수익증대와 민간항공사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튀니지에는 Tunis-Carthage, Tabarka, Enfidha, Monastir, Sfax, Djerba, Tozeur, Gafsa, Gabes 등 9개의 국제공항이 있으며, 2009년 말에 개항한 Enfidha 공항(튀니스에서 남쪽 100km 위치)과 Monastir 공항(민간기업 TAV이 운영)을 제외한 나머지 공항들은 모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Tunisiar는 튀니지대표 국영항공사로 튀니지항공서비스 시장의 48%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70여 개국으로 정기국제선을 운항하고 있지만, 혁명 이후 누적되어온 재정적자(과도한 간부·행정직 고용 및 임금 체불, 노사분규 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Tunisiar의 자회사인 Tunisiar Express(기존의 Sevenair)는 국내선 및 인근지역의 국제선(이탈리아 남부(팔레르모, 나폴리), 몰타 운항) 운항을 담당하며 Nouvelair Tunisie(패키지여행 전문) 등의 민간항공사와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에는 Freejet와 Syphax Airlines, 2개의 민간항공사가 국가민간항공위원회의 영업승인을 받은바 있으나, Syphax Airlines은 2015.7월 영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다.

기타 전문서비스

튀니지는 회계, 감사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많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튀니지 회계표준은 국제회계표준(IFR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매우 근접한 수준이며 대략 2000개의 감리회사(엔지니어링 및 건축분야)가 있다.

투자장벽

튀니지의 경제성장 침체와 디나르화 약세(유로화 대비) 등에도 불구하고, 튀니지 내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추세에 있었으나, 2020에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전년대비 26% 감소한 1834.4백만 디나르를 기록한바, 특히 서비스 분야 외국인 직접투자는 169.1백만 디나르로 전년대비 44% 감소함.⁹⁹⁾ 튀니지 정부는 투자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 시민혁명 이후 5년에 걸쳐 마련된 튀니지 신규투자법이 2017년 4월 1일 발효되었다.

2020년 9월 기준, 튀니지에는 약 531개의 외국기업(에너지분야, 합작기업 제외)이 진출해 있고, 13,20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외국투자비율이 가장 큰 분야는 관광서비스업(18억 디나르), 제조업(7억9000만 디나르), 서비스업(2억8000만 디나르), 농·수산업 순이다. 외국자본의 54% 이상이 Greater Tunis, 21.5%가 북동부 연안 지역에 투자되었다.

◉ 튀니지 투자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디나르)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포트폴리오	122	88.4	356.9	87.8	116.2	124.1	169.1	51.5
FDI	1373.5	1308.8	1408.7	1901	2131.9	2742.1	2749.1	1,834.4

99) 튀니지 투자진흥청,

(FIPA)(http://www.investintunisia.tn/Fr/telecharger_publication.php?code_doc=209&langue_d oc=fr)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에너지	819.9	700	730.2	796.4	810	910	909.4	620.5
산업	359.6	373	442.3	801.4	975	1129.5	1249.1	1,026.8
서비스	183.8	229.6	227.3	281.7	321.3	626.1	302	169.1
농업	10.1	6.2	8.9	21.9	25.6	76.5	18.6	17.9
총계	1495.5	1397.2	1765.6	1989.2	2248.1	2866.3	2648.2	1,885.9

출처: 튀니지 투자진흥청

튀니지 정부는 2011년 시민혁명 발발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지역격차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를 고려하여, ‘우선지역’에 대한 외국 및 민간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은 북서부 및 중남부 전역으로, 수도 튀니스 및 연안지대 고소득층 밀집지역, 공업지대인 Sfax, 리비아 국경지역인 Medenine 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국이 해당된다.

한편, 튀니지의 1인당 GDP는 3,319달러(2020년 기준)로 세계은행이 분류하는 소득별 국가분류에서 중소득국(MICs)에 해당된다. 2017년 10월 튀니지 정부는 2개 지역(Saaida, Kalla Kobra)의 대규모 댐 건설을 목적으로 이슬람개발은행으로부터 7,200만 유로 규모의 차관을 조달했다.

투자진출분야, 지분소유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1994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민영화 프로그램 추진에도 불구하고 광산, 에너지, 국내상거래, 금융서비스 등의 분야에는 특별투자법이 적용되며 사업허가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동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종류가 있다.

- 외국투자가 가능하나 활동조건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며 금융업이나 투자회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보험업, 부동산관리, 외판업, 주식중개업, 운송업, 해운업 분야 등에 외국투자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튀니지에서는 기계·전기·전자, 항공우주, 섬유·의류, 피혁·신발 등의 분야는 외국인도 사업지분의 100%까지 별도의 승인 없이 소유할 권리가 보장되지만

서비스업 분야(운송, 통신, 관광, 교육, 토목공사, 부동산, 전산서비스 등)에서 전량수출기업의 형태가 아니고 외국자본 참여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 투자자들의 튀니지 기업지분 획득을 승인·관할하는 총리실 산하 투자고등위원회(CSI)의 승인이 필요하다. 농경지 경작, 수산·양식업(튀니지 북부)등의 농수산업 분야의 경우, 외국투자는 기업지분의 66%까지 허용된다.

투자 인센티브

튀니지는 통신, 우편, 도·소매 유통, 전기, 가스, 수도 등, 정부 및 국영기업이 독점권을 행사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투자자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일반 인센티브와 특별 인센티브로 구분된다.

- 일반 인센티브 : 총 투자액수의 15-25%(최대 100-150만 디나르)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자재 수입의 경우, 입항세,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특별 인센티브 : 전량수출기업과 지역개발권장지역(‘우선’, ‘2차’, ‘1차’ 지역으로 구분)에 진출하는 기업(농업개발, 관광 및 중소기업 진흥 등)에 대해 총 투자액수의 30%(최대 200만 디나르), 인프라 구축비용의 85%까지 정부보조금 지급
 - 전량수출기업 : 10년간 수출수익에 대한 면세, 10년 이후부터는 10% 감세, 재투자에 따른 수익에 대한 면세,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제품 운송장비 등), 1차 원료, 반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면세, 납세를 전제로 생산된 산업제품이나 농산제품의 30%까지 현지시장 판매 가능
 - 지역개발권장지역 : 투자수익 재투자에 대한 면세, 지역에 따라 제조업, 관광, 중소기업 등의 이익에 대해 5-10년간 100% 면세, 운전 자금을 제외한 투자액의 8%(32만 디나르까지), 15%(60만 디나르까지), 25%(100만 디나르까지)의 보조금(premium) 지급
 - 농업개발 : 투자수익 재투자에 대한 면세, 10년간 운영비용에 대한 면세, 튀니지 비생산 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최초 투자액의 7%에 달하는 보조금 지급, 기후악조건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추가로 투자액의

8%의 보조금 지급, 광산지역인 Gafsa에 대한 투자액에 대해서는 25%까지 추가 보조금 지급

- 환경보호¹⁰⁰⁾ : 투자수의 재투자에 대해 50% 면세, 투자수익에 대해 10% 감세, 투자액의 20% 보조금 지급, 특수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인프라 구축 비용 : 우선개발지역, 2차 개발지역, 1차 개발지역 순으로 각각 85%, 75%, 25%의 인프라구축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

아울러 튀니지는 투자 계획 신고, 회사 설립, 튀니지 투자환경 관련정보 제공에 필요한 다단계의 행정절차 및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24-48시간)하기 위하여 'Guichet Unique'(One-Stop Shop)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튀니지는 'OECD 투자보호 및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비준했고, 세계 54개 국가와는 '상호투자 보호에 대한 양자간 협약'에 비준했다. 또한, OECD의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2012.5월)에 가입했으며, EU와는 완전·심화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1989.11월),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1975.11월) 등을 체결한 바 있다.

수출진흥정책과의 연계성

튀니지 경제정책의 핵심은 고용창출, 사회·지역·세대·계층 간의 공정분배인 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가 수출진흥정책이다. 민간자본투자 장려책(민영화, 양도, 기업창설절차 간소화 등) 개발은 국가 우선사업 중의 하나이며 주요 관련분야는 제조업 및 관광산업이나 이외에도 안전성과 자급자족 생산을 도모하는 농업정책, 자국민 및 정부가 주도하는 서비스업 정책도 수출전략 분야로 전환 중이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이 튀니지 농경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외국인이

100) 2015년 말 기준 국가환경보호청(ANPE)은 510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보조금(3300만 디나르)을 지급

튀니지 법인 지분의 66%까지 소유하고 튀니지 동업자를 갖춘 경우, 영업활동에 필요한 공업용 부지 구매는 허용된다.

금융상의 제한

부분수출 상주기업의 경우, 수출로 획득한 수익전액의 과실송금 및 튀니지은행에 위탁해야할 의무는 지속되나, 최근 외환시장의 개방조치에 따라 수익금 전액(2005년 이전에는 70%)의 외환구좌 예치가 가능하다.

경쟁정책

가격경쟁 제한 분야

2015년 도입된 신규 가격경쟁법은 모든 재화 · 용역의 가격이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책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미 가격에 정부보조금 혜택이 포함된 '1차 필수품', 국가가 독점권을 행사하는 서비스업(통신, 은행, 금융시장 및 보험), 경쟁력이 미진한 분야 등은 자유경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불공정 가격경쟁 사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기업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튀니지정부의 가격통제 분류는 다음과 같이 크게 3등급으로 나뉜다.

- A등급 (생산공정부터 유통과정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가격 및 가격변동을 정부에서 사전 결정하는 등급) : 1차 생필품(빵, 밀가루, 국수, 식용유, 설탕, 우유, 차, 커피; 종이, 교과서, 학습지; 휘발유, GPL; 전기, 가스, 수도 사용료; 교통비; 의약품 및 진료비; 우편 및 통신 사용료; 담배, 성냥, 주류; 향만이용료) 등
- B등급 (생산과정에서 동일가를 책정하는 등급) : 소금, 베이킹파우더, 맥주, 금속포장 및 철통, 자동차, 석회, 시멘트 콘크리트 원단 등, 경쟁력이 미약한 제품
- C등급 (유통비용을 정부가 책정하는 등급) : 쌀, 과일(오렌지류, 포도, 대추야자 등), 채소(감자, 토마토, 고추, 양파 등), 닭고기, 계란, 제분

품목 및 버터, 토마토 농축액, 각설탕, 효모균, 인공시멘트, 자가용 차량, 트럭, 버스, 전인차, 학습용 잉크 및 공책, 압축가스 등

상품·서비스 시장에 대한 튀니지 사업자의 독점

경쟁의 자유 및 정당한 상업활동 보장방안으로 가격표 명기의 의무 및 손해판매·판매거부·최저가강요·차별대우·반경쟁행위(독점권, 영향력 행사, 비밀거래) 등의 부당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튀니지 정부의 독점 분야가 많은 이유로 민간 기업들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국가에서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는 분야로는 농업, 농식품, 화학, 인프라 및 주택, 광산, 상업, 건축자재, 통신, 에너지, 기계 및 전자산업, 서비스업(전기, 수도, 통신, 철도, 버스, 전철, 케이블카, 보트, 항공이용, 공항관리, 항공운항 컨트롤, 항만, 우편서비스) 등이며, 성냥, 담배, 트럼프카드, 화약 등의 제품 수입도 국가가 독점권을 행사하는 분야이다.

국영독점기업은 다음과 같다.

- 튀니지통상청(OCT : Office du Commerce de Tunisie) 독점 : 설탕 수입을 독점하고 있으며 수입 품목이 아닌 차, 커피, 감자 등의 1차 식료품에 한해서는 도매 유통권을 갖는다.
- 튀니지곡물청(Office des Céréales) : 국영기업으로 밀과 보리를 독점 수입하며 옥수수과 사료용 대두는 민간 기업에게도 수입이 개방된 상태이다.
- 튀니지석유회사(ETAP : Entreprise Tunisienne des Activités Pétrolières) : 원유 및 석유제품, 천연가스 및 GPL(Gasoil) 등을 독점수입하며 튀니지 정유회사(STIR : Société Tunisienne des Industries de Raffinage)에 일차 공급하고 남은 원유는 재수출한다. ETAP과 STIR는 석유제품 생산 및 국내 상권 독점기업이다.
- 튀니지중앙약국(PCT : Pharmacie Centrale de Tunisie) : 의약품 및 기타 제약품의 수입독점권을 행사한다.

- 튀니지주류공단(Régie Nationale des Alcools) : 주류 수입독점권을 보유,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 기업에 독점권을 양도하기도 한다.
- 튀니지 전기·가스회사(STEG : Société Tunisienne de l'Electricité et du Gaz) : 튀니지 전기 및 가스의 생산, 유통, 공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독점권을 지닌다.
- 튀니지 국립철도회사(SNCFT : 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Tunisiens) : 튀니지 전국 철도 운행권(철도 이용자 및 물류 운송)에 대한 독점운영권을 소유한다.
- 튀니지 국립운송회사(SNTRI : Société Nationale de Transport Interurbain) : 국내 및 국제 육상여객운송에 대한 독점권을 소유하고 있다.
- 튀니스 도시운송회사(TRANSTU : Transport Urbain de Tunis) : 수도권 내 버스 및 전철 이용에 관한 독점권을 소유한다.
- 튀니지 체신청(La Poste Tunisienne) : 우편·및 관련금융서비스에 대한 독점운영권을 소유하고 있다.

민영화 정책

튀니지가 민영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은 1987년부터이며, 2020년 기준 국영 기업은 110개(정부가 소유하는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은 이중 65개)이다.¹⁰¹⁾ 주요 분야는 통신, 에너지, 교통 및 관련서비스, 금융, 농식품, 화학, 인프라 및 주택, 광산, 무역, 건축자재, 관광 등의 분야에도 상당한 국가 소유 지분이 존재한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기업의 생산수단과 관리절차의 현대화,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등의 긍정적 변화는 있었으나 고용창출이나 금융시장 활성화 분야에서는 큰 파급효과를 얻지 못했다. 그간 민영화정책으로 튀니지 정부가 획득한 양도수익은 60억 디나르에 달하며, 민영화의 90%는 외국자본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2011년 시민혁명 이후, 민영화 부문에서 귀추가 주목되는 문제는 그간 누적

101) 튀니지 재정부(http://www.finances.gov.tn/sites/default/files/2020-05/annexe_n_09_01_1.pdf)

되어온 튀니지 주요 국영기업들이다¹⁰²⁾. 이 기업들의 막대한 부채(2019년말 기준 70억 디나르 규모)는 정부 보조금이나 부채전환으로는 더 이상 개선이 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바, 구조적 개혁, 투명성 제고 외에도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민영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기타 장벽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동 면허증의 아랍어 공식 번역문 또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지참한 경우, 튀니지 도착후 1년동안 한국운전면허증으로 튀니지내에서 운전할 수 있다.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동 운전면허증의 아랍어 공식 번역문을 첨부하여 튀니지 도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한 튀니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튀니지 교통부의 한국운전면허증 진본 검증을 거치거나 동 운전면허증이 진본임을 증명하는 한국관공서의 증명서를 제출하면 튀니지 운전면허 시험을 거치지 않고 튀니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교환신청서 제출후 1년내 튀니지 정부로부터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 한국운전면허증이 진본임을 서약하는 서약서 제출 및 튀니지 실기 시험 합격 후 튀니지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교환신청은 l'Agence Technique des Transports Terrestres에서 발급한 교환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전면허증 사본 2부,
- 동 운전면허증 아랍어 공식 번역문,
- 튀니지 체류증 사본,
- 튀니지 입국 사실 확인서.

튀니지 교통부의 한국운전면허증 진본 검증 후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증명사진2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 취득에 문제가 있는 장애나 질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발급일 3개월내 건강확인서 .

102) Tunisair, El Fouladh 종합제철소, 튀니지전력가스공사, 튀니스 운송회사, 튀니지 해운공사, 튀니지 화학그룹 등

튀니지 금융시장 현황

보험업계를 제외한 튀니지의 주요 대출은행으로는 튀니지 중앙은행(Banque Centrale de Tunisie)을 비롯하여 22개의 상주 은행 및 7개의 비상주은행, 9개의 장기신용임대차은행(Etablissements de leasing), 3개의 기업은행(Societes de factoring), 2개의 투자은행(Banques d'affaires) 등 총 43개 은행 및 튀니지 체신청과 같은 재정관련 기관이 13개 존재한다.

국가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국영은행은 주택은행(BH), 튀니지은행(STB), 농업은행(BNA), 연대은행(BTS), 중소기업은행(BFPME)이며, 민간 소유 지분이 50% 이상인 민간은행은 아랍은행조합(ABC), 튀니지아랍은행(ATB), 튀-프랑스은행(BFT), 아티자리은행(Attijari), 튀니지은행(BT), 아멘은행(AB), Citibank(offshore), 튀니지아랍국제은행(BIAT), 지투나은행(BZ), BTK(Banque Tuniso-Koweïtienne) 등이 있다.

이외에 증권시장 관리와 안전보장을 담당하는 튀니스유가증권거래소(Bourse des Valeurs Mobilières de Tunis), 금융시장 관리와 증권투자 보호를 감독하는 튀니지 금융시장위원회(Conseil du Marché Financier), 유가증권예탁원(Société Tunisienne Interprofessionnelle pour la Compensation et le Dépôt des Valeurs Mobilières) 등이 있다.

보험 분야는 관련 법규가 매우 엄격하고 시장개방을 기피하는 성향으로 인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매우 약한 편이었으나, 2008년 보험법 개정 이후 외국자본 참여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규 보험법은 기존에 49%로 제한되어 있던 외국자본 참여율 제도를 폐지했고 3개의 비상주 생명보험회사와 3개의 이슬람보험(Takaful) 회사 활동을 허용했다. 튀니지 정부는 2016년부터 보험서비스 품질개선, 보험업계 재정 강화 및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 향상, 자동차보험의 재정상태 제고 등을 목표로 일련의 개혁방안을 마련 중이다. 튀니지에는 22개의 보험 및 재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5개, 재보험회사 1개) 및 6개의 비상주 보험회사가 있다.

금융시장 진출 장벽

튀니지 정부는 외환관리법에 따라 상주기업(개인 및 법인 포함)의 외환송금 및 입금, 해외금융서비스 구매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으며, 비상주기업은 동 제한에서 제외된다.

비상주기업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7개의 비상주은행에는 특별법이 적용된다. 동 특별법은 비상주은행과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비상주기업에도 적용되며, 후자의 경우 주식회사나 튀니지 중앙은행 및 재무부가 비상주기업임을 인정한 기업 등이 해당되며, 특별법이 제시하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비상주 은행과의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비상주은행과 상주기업 간의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는 기업의 지분 참여, 중·장기적 재정지원(외환자본, 수입·수출 거래, 현지화(디나르) 자본, 튀니지 내에서의 수익, 무역거래)이며 해외차용 자본으로 상주기업의 상거래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상주기업이 비상주은행을 통해 외국자본을 차용할 시 외환 차용액에는 통상적으로 제한이 있으나 차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며 연간 1000만 디나르 이상인 경우에는 자유거래가 가능하다. 은행예치도 총 예치액의 1.5% 한도내에서는 자유거래가 가능하며 2002년부터는 신용저당서비스 또한 허용되고 있다.

외국자본의 튀니지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는 튀니지 중앙은행과 재정부의 승인 기준(외국투자자의 기술·재정적 능력 및 활동계획)에 따라 허용되며 외국자본의 유가증권 중개업 투자는 튀니지 금융시장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증권 중개상(개인 및 법인)은 법적으로 협상가 신분 및 유가증권 등록 권한을 취득한 튀니지 국적 소유자에 한해서 허용된다.

디지털 무역장벽

튀니지 전자 상거래 현황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여파로 튀니지내 전자상거래가 급증한바, 전자상거래

사이트 수는 2020년 2,182개를 기록, 전년대비 17% 증가했으며, 시장가치는 2020년 3억 4,670만 디나르로 전년대비 28% 증가했다.¹⁰³⁾

다만, 튀니지 신용카드는 디나르 이외의 통화로 거래가 승인되지 않으므로 국제 전자 상거래 사이트를 통한 구매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국제 전자상거래 발전에 대한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여 통신기술 부는 ‘디지털 기술 카드(carte technologique internationale)’를 도입¹⁰⁴⁾, 동 카드 소지자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웹 서비스 및 출판물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인 사용자는 연간 1,000디나르(약 \$344), IT 기업의 경우 최대 10,000디나르(약 \$3,440)까지 사용 가능하다. 2018년 9월 튀니지 의회는 적격 기업이 ‘디지털 기술 카드’를 사용하여 외화로 최대 100,000 디나르(\$34,400) 상당의 외국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스타트업 법을 통과시켰다.

사이버 보안

튀니지는 2004.2.5.자 법률을 통해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보안청(ANSI: Agence Nationale de la Sécurité Informatique)을 창설한바, 동 기관은 전반적인 시스템 보안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의 기술 감시 및 특정 보안 표준을 정의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¹⁰⁵⁾ 튀니지의 사이버 보안은 각종 법률, 규제에 의한 제한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평가도 있으나, 튀니지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 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순위가 2018년 76위에서 2020년 45위로 상승하였다.

103) http://www.commerce.gov.tn/Fr/presentation-de-lenvironnement-du-e-commerce-en-tunisie_11_187

104) https://www.mtc.gov.tn/index.php?id=119&L=0&tx_ttnews%5Btt_news%5D=2894&cHash=d271a27667039878e2e3dab998954ec7

105) https://www.mtc.gov.tn/index.php?id=428&L=0&uid_etab=2



가봉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개관 및 경제지표

공식국명	가봉 공화국(République Gabonaise)
수도	리브르빌(Libreville)
면적	267,667km ² (한반도의 1.2배)
인구	226.6만명(2020년 세계은행 추산)
주요도시	포르장티(Port-Gentil, 제2도시, 수출입항), 프랑스빌(Franceville)
언어	불어(공용어), 토착어 (Fang, Bakota, Myene 등)
인종	Fang(32%), Mpongwe, Mbede, Punu 등 50여 종족
종교	기독교(천주교 포함) 82%, 이슬람교(9.8%), 토속신앙 등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입법부	양원제(하원 143석, 상원 67석)
국가원수	Ali BONGO ONDIMBA 대통령
GDP	191억불 (2021년)
1인당 GDP	8,975불 (2021년)
성장율	1.2%(2021년)
수출입	수출: 52.4억불, 수입: 20.3억불 (2021년)

경제일반

가봉은 사하라이남 중부 아프리카에 속하고, 약 2백26만 명의 인구에 비하여 한반도의 1.2배(267,667km²)의 광활한 국토를 보유한 국가이다. 고온 다습하고 연평균 1,800mm의 높은 강수량을 가진 적도 열대 기후를 나타내며, 국토 85%가 열대우림이며 콩고 분지(Congo Basin)에 속해 있다. 가봉은 북쪽으로 적도기니, 카메룬과 접해 있고, 동남쪽으로 콩고와 2,251km의 국경선을 접하고, 서쪽으로 기니만(Gulf of Guinea)에 속한 885km의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가봉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8,975달러(2021년 기준, World Bank)로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소득 수준이 높고, 석유(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제4위 석유생산국), 망간(세계2위 망간수출국), 철광석, 목재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원 개발 및 원자재 가공 수출을 통한 경제 발전 잠재력이 크다. 196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석유 생산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1997년에는 일일생산량 371천 배럴로 절정기를 맞이하는 등 석유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2016년 원유 생산량이 227천 배럴/일에 그치는 등 최근 유정의 노후화로 인한 원유 생산량 감소와 2014년부터 시작된 국제 유가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맞이하였다. 이에 가봉 정부는 2017년에 IMF 지원을 받아 3개년(2017~19) 경제회복계획을 추진하였고, 가봉 정부는 재정 확충, 정부 지출 통제, 국영기업의 경쟁력 제고, 기업 환경 개선, 산업 다변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 중이다. 또한 석유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다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목재, 망간 등 천연 자원의 단순 수출을 지양하고 자원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여서 수출하는 방식을 장려하고 Nkok 지역에 목재 가공 기업 위주의 특별 경제구역(SEZ)을 조성하여 제조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2014년 세계적 유가 하락으로 인한 충격에서 2019년까지 점진적인 회복 추세에 있었으나,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실질 GDP가 마이너스 1.8% 성장을 기록했고, IMF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299.61

백만 불의 긴급재정 금융(Rapid Financing Instrument)과 향후 3년간 새로운 확대 신용 공여 제도(Extended Fund Facility)를 연장하기도 하였다. 다만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의 악화, 유가 회복 및 원유 생산 증가 등의 전망되어 2022~2024년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점차 회복이 예상되며, 2021년도 성장률은 1.2%를 달성하였다

경제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2021년 1월 정부는 2021-2023년간의 3개년 경제 개발 프로그램인 전환가속화계획(TAP: Transformation Acceleration Plan)을 발표하여 2025년까지 석유의 GDP 비중을 현재 33%에서 20%로 줄이고, 식품의 5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며, 빈곤선 이하의 인구 비중을 현재 35%에서 2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것을 공표하였다

가봉은 중부아프리카 경제통화공동체(CEMAC) 및 중부아프리카 국가 경제공동체(ECCAS)의 회원국으로서 경제·통상(수입, 관세 등), 외환정책 등에 대해 CEMAC 법률을 따르고 있다. CEMAC 회원국은 가봉,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등 6개국이고 EECAS 회원국은 CEMAC 회원국 6개국 및 앙골라, DR콩고,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부룬디 등 총 11개국이다.

가봉의 시장경제 특성

가봉의 시장경제는 아프리카 국가보다 미국과 유럽 시장과 더 연계되어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카메룬과의 교역이 활발한 편이다. 가봉 경제는 다른 사하라 이남 국가와 비슷하게 과거 식민통치 국가인 프랑스와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와 외국 기술자들에게 크게 의존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아울러 운송 시장 등은 주변 아프리카 국가 출신의 수천 명의 외국 노동자들에 의존하고 있다

가봉의 1인당 GDP는 8,975달러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상위 소득 국가로 분류되며, 일반적인 생활수준은 아프리카의 평균 지역수준보다 높고 공무원 등 공공분야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탄탄한 중산층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높은 GDP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인구의 1/3 가량이 빈곤선 이

하이고, 저소득층은 노천 시장, 키오스크와 같은 비공식 채널을 주로 이용하여 비공식 경제 의존이 높다

가봉의 소비지출 중에서는 식량과 생필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3번째로 삼페인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이며 맥주 소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주요 소매유통업체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중으로 공식 유통채널은 3개의 그룹 Ceca-Gadis, Prix Import, Sodigab이 지배하고 있으며 이중 Ceca-Gadis가 가봉에서 가장 큰 유통업체이고, 기타 소매점과 아웃렛(outlet)은 수도인 리브르빌(Libreville)과 제2의 도시인 포르장티(Port-Gentil)에 집중되어있다

가봉의 인구 밀도는 매우 낮은 편이지만, 국토의 대부분이 열대우림으로 인구의 약 9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 리브르빌에 45%이상 거주하고 있다

교역 동향

대외교역 현황

가봉의 2021년 총수출은 약 52.4억 달러, 총수입은 약 20.3억 달러로서 가봉의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이고, 다음으로 망간 및 목재제품 순으로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품목은 식품, 의약품, 자동차, 기계류 등이다. 현재 가봉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 중국, 프랑스, 대한민국, 호주, 스페인이며, 2021년 기준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인도,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었고, 주요 수입국은 프랑스, 중국, 레바논, 벨기에, 콩고공화국이다. 전통적인 교역국인 프랑스의 수입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과 가봉의 교역관계

양국은 석유, 망간 등 가봉의 풍부한 원자재¹⁰⁶⁾ 중심으로 교역을 지속해 왔으며,

106) (석유) 아프리카 내 석유 매장량 8위(20억 배럴, 2020년), 생산량 7위(2021년),

(망간) 전세계 망간 매장량 5위(전세계 매장량의 4.7%, 21년) / 한국은 제철 분야 주요자원인 망간을 가봉

코로나로 감소했던 양국간 교역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한국은 중국(비중 약 39%), 인도(약 18%)에 이어 가봉의 제3위 수출대상국(비중 8%)이며, 가봉은 2021년 기준 우리 원유도입량의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64개 원유도입국 중 15위, 아프리카 원유도입국 중에선 알제리(0.9%)에 이은 2위의 원유도입국이다.

한-가봉 교역현황

《단위:백만불, ()는 증감률% / 출처:한국무역협회》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교역액	409 (38.1)	313 (△23.4)	110 (△64.8)	572 (420.0)	336 (△41.6)	175 (△47.9)	611 (249.1)
수 출	24 (33.9)	15 (△39.2)	11 (△27.6)	12 (11.0)	11 (△7.0)	10 (△8.7)	8 (△21.2)
수 입	385 (△40.2)	298 (△22.6)	99 (△66.8)	560 (465.4)	325 (△41.9)	165 (△49.4)	603 (266.2)
무역수지	△361	△283	△88	△548	△314	△155	△595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KOEXIM

* 가봉으로부터 주요 수입품은 석유, 망간제품이며, 가봉으로의 주요 수출 품목(자동차, 기타석유화학제품), 수입 품목(원유, 기타금속광물, 목재류)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가봉은 CEMAC 관세율을 적용한다. 관세당국은 상품 수입시 공동대외관세(TEC: Tarif Extérieur Commun), 일반특혜관세(TPG: Tarif Préférentiel Généralisé), 지역 통합을 위한 공동체 세금(Taxes Communautaires), 부가가치세(TV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소비세(DA: Droit d'Accise) 등을 부과하고 있다.¹⁰⁷⁾ 관세는 수입품목의 CIF 가격에 대해 부과한다.

에서 수입 중

- 한국의 가봉 망간 수입 현황 : 2,158만불('21년), 전체 망간 수입금액 비중의 7%(남아공,호주에 이어 3위)

107) TEC는 1993 년 6 월 21 일 법률 n ° 7 / 93-UDEAC-556-SE1로, TPG는 1994 년 12 월 19 일 법률 n

(1) 공동대외관세(Droits de douane – Common External Tariff)

공동대외관세(TEC)는 CEMAC 외부로부터의 수입제품에 적용하며, 아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카테고리 1(생활필수품 등/예: 우유, 크림, 쌀, 밀가루): 5%
- 카테고리 2(원자재 및 자본재 등): 10%
- 카테고리 3(중간재 등 /예: 냉동육류, 가공식품 등): 20%
- 카테고리 4(모든 다른 제품): 30%

CEMAC 회원국들이 부과하는 대외관세의 평균치는 18.1%이며, 가봉의 평균 관세는 16.93%(World Finance 통계) 또는 17.7%(WTO 통계)이다.

(2) 일반특혜관세(TPG – Generalized Preferential Tariff)

- CEMAC 회원국에서 생산된 수입제품의 관세는 면제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원국들이 예외 조항을 사용하여 회원국의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3) 공동체 세금(Taxes Communautaires)

- CEMAC 공동체 통합세(Taxe Communautaire d'Integration: TCI): 1% (CEMAC 외부로부터의 수입제품에 적용)
- ECCAS 공동체 통합 기여금(Contribution Communautaire d'Integration: CCI): 0.04% (ECCAS 외부로부터의 수입제품에 적용)
- OHADA 부과금: 0.05% (OHADA 가입국 외부로부터의 수입제품에 적용)

* OHADA(Organization for the Harmonization of Corporate Law in Africa)는 법률적, 사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투자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목적으로 2010년부터 중·서부 아프리카의 17개 국가에서 채택한 경제 분야 법률 시스템으로, 초 국가적 사법 시스템과 프랑스의 영향력을 통해 단일한 기업 관련 법률의 적용과 법적 해석의 일치성을 확보하고자 함

° 5/94-UDEAC- 556 – CD56에 의해 각각 수정·채택되었음.

(4) 부가가치세(TVA) 및 소비세(DA)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수입품이나 자국 생산품에 관계없이 부과한다. 소비세는 CIF 가격에 TEC를 더한 값에, 부가가치세는 수입품목의 CIF 가격에 TEC 및 소비세를 더한 값에 세율을 곱하여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 18%
- 소비세: 25~32%(특정품목에 한정 : 향수, 화장품, 캐비어(caviar), 푸아그라(foie gras), 연어: 25%, 맥주, 와인: 30%, 샴페인, 담배: 32%)

※ (관세행정 협력) 2018년 우리 관세청이 가봉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 사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컨설팅 사업을 진행함(사업명 :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수입규제

가봉은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이 자유화되었으나, 국민의 안전과 공중보건, 국내산업 보호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을 수입 금지하고 있다.

수입이 금지된 품목은 무기, 폭발물, 탄약류, 마약, 음란물, 모조품, 설탕, 5~6년 이상된 중고차량(승용·승합차는 5년 이상, 버스·트럭은 6년 이상) 등이다. 추가로 2017년 7월 국내 시멘트 산업 보호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시멘트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가봉으로 수입되는 품목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CEMAC 원산지 품목은 관세가 면제된다. CEMAC 원산지는 주로 산업제품에 부여하며, CEMAC내 원재료(raw material)의 총가치가 전체 가치의 40% 이상 또는 역내 부가가치 기준 30% 이상일 경우, CEMAC 원산지로 간주한다. CEMAC 이외 지역에 대한 관세우대는 없다.

통관 절차

가봉은 통관업체가 통관절차를 대행하고 있다. 가봉 수입품은 해상 운송시 선박 도착후 24시간 내에 적화목록(Cargo Manifest), 항공운송은 도착 즉시 적화목록을, 육상 운송은 도착시 수입품 목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출업체는 통관업체와 운송업체를 미리 선정하여 통관을 진행해야 한다. 통관 수속을 위해 세관에 품목 도착 후 72시간 이내에 수입통관서류(모두 붙어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관 제출서류는 송장(Invoices), 선하증권(B/L), 운임영수증, 원산지증명서, 보험증명서, 포장명세서, BIETC (Electronic Cargo Tracking Note)이다.

통관업체는 세관에 서류제출, 통관수속, 관세·세금 결정 등 절차를 수행한다. 수출업체는 세관이 결정한 관세·세금을 납부하고, 운송회사를 통해 수입 품목을 반송하게 된다. 물품 도착 후 항구에 11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보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가봉은 수도 리브르빌에 국제공항이 있으며(현재 리브르빌 외곽의 Nkok 지역에 별도의 신공항 건설을 진행중), 해상운송은 대부분 리브르빌 인근 Owendo 항을 이용해 진행하고 있다.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항공화물의 경우 최대 2일, 해상화물은 7일 정도가 소요되나, 해상화물의 경우에는 Owendo 항의 하역 사정에 따라 통관이 지체되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보조금

가봉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유류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2015년 1월 유가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2016년 2월부터 가솔린과 경유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였으며, 가정용 등유와 부탄가스에 대해서는 유류 보조금을 유지하고 있다.

표준, 검사 및 라벨링

가봉은 2007년 표준, 검사, 인증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가입하였고, 2014년 6월 법 n°0227/PR/MIMT에 의해 광물산업부 산하에 설립된 국제표준기구(AGANOR: Agence Gabonaise de Normalisation)가 표준, 적합 및 인증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봉은 2015년 국가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PROGEC)을 제정하여, 2016년 2월부터 수입하는 건설재료, 기계·전기설비·전자제품·유무선통신기기·화장품·의료기구·장난감 품목에 대해 통관서류로 적합성 증명서 (conformity certificate)를 세관을 통해 AGANOR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적합성 증명서는 AGANOR과 계약관계에 있는 SGS, Bureau Veritas, Intertek의 3개 국제적 시험인증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해야 한다. 시험인증 증명서가 없이 수입하는 경우 AGANOR에 직접 신고해서 서류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1회에 한하며, 그 경우 2백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인증서는 각 항목마다 붙어와 영어가 동시에 표기되기 때문에 작성에 어려움은 없다. 수입 제품은 불어로 라벨링이 되어야 하고, 기타 특별 라벨링이나 표기 제한은 없다.

위생규제

위생 규제는 수입 식품과 국내 생산 식품에 모두 적용된다. 농식품·식물을 수입할 경우 농축산부 산하 식품안전기구(AGASA)에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sanitary certificate) 및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모든 식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을 수입하려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및 조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법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가봉에 있고 AGASA의 관할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위생 요건을 충족하고 수입 제품 및 식품의 저장을 위해 AGASA의 승인을 받은 건조 또는 냉장 창고가 있어야 함.
- AGASA에서 발행한 특별 수입 허가(ASI)가 있어야 함

아울러 식품을 수입할 때마다 수입업체는 ①공식 수의사 검사관이 발행한 건강 또는 수의 진단서 원본, ②제품의 원산지증명서 원본 및 ③선하증권을 AGASA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수입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중금속, 히스타민, 아황산염, 독소에 대한 분석 결과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며(수산물 수입의 경우), 위생 정보 또는 위생 위험이 있는 경우 AGASA는 식품이 도착하는 즉시 식품 안전 기준에 따라 실험실 분석을 위해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Public Procurement)은 국제입찰과 국내입찰로 나뉘며 입찰 절차는 동일하다. 입찰 공고는 공공조달저널 또는 L'union 일간지에 게재하고, 해외 참여자를 위해 Jeune Afrique 등 국제지에 게재하기도 한다. 입찰조건은 공고문에 제시되며, 자세한 입찰문서는 참가비(국제경쟁입찰: 50만 세파프랑, 국제제한 입찰 및 국내입찰: 30만 세파프랑)를 납부한 자에 한해 제공한다. 입찰방식은 경쟁입찰과 제한입찰(후보자를 미리 한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한 입찰의 경우는 공고하지 않고 관계회사에 입찰내용을 전달(편지 형태)하고 웹사이트에 공지한다.

경제부 산하 정부조달청(DGMP)은 정부입찰 전담부서로 공공계약을 총괄한다. 각 정부부처에서는 필요에 따라 입찰을 일부(예산의 10% 한도내) 실시하고 있다.

정부 발주 사업은 기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입찰 정보를 제공하여 제한적 경쟁 입찰을 통해 발주하거나 정보통신인프라청(ANINF), 공공인프라공사청(ANGTI) 등 각 부처청이 기업으로부터 프로젝트 제안을 받아 협상에 따른 수의 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발주사업 완료 후에 정부의 세수 부족 등 예산 사정 등의 이유로 용역대금의 지불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찰 참가시 예산 및 재원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투자/서비스 환경 및 제도

투자담당부처

가봉 정부는 2014년 9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청(ANPI)을 설립하였고, ANPI는 투자유치 및 수출장려, 기업 설립 및 성장 지원, 민관협력(PPP)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019.6월 정부조직 개편시에는 투자 진흥, 민관협력 사업(PPP) 및 기업환경 개선을 담당하는 부처인 투자진흥부를 신설하였다.

투자유치정책

(1) 투자법

가봉 정부는 1998년 외국기업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투자법((Loi n° 15-98 du 23 juillet 1998)을 발효하였으며, 동 투자법은 가봉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에게 국내 기업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고, 외국투자자가 민간 유한책임회사나 공공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사업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봉 정부는 투자법 제1조에 따라 특정 활동 분야에 대한 규칙을 준수하며 가봉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자연인 혹은 법인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 국적에 관계없이 생산 활동, 서비스 제공 및 무역 활동의 자유
- 토지, 건물, 장비 및 이동 가능한 재산, 증권, 특허, 기타 산업 및 지식 재산과 관련한 재산권
- 토지 배정 및 취득, 토지 등기권 발행을 위한 절차의 실사
-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자본과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본국 송금
- 아프리카상법조정기구(Organisation pour l'Harmonisation en Afrique du Droit des Affaires:OHADA) 조약에 따라 상법의 공정·투명한 적용
- 중부아프리카은행(Banque des Etats de l'Afrique Centrale: BEAC)의 규제 안에서 외화 접근 및 자본 이전의 자유

(2) 투자보증

투자법 제2조에 따르면, 가봉 정부는 투자자들의 일반 원칙과 기본권 통합을 위해 국제 투자보증 제도를 준수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투자를 아래와 같이 보호한다

- 다자간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투자를 보장하고 투자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가봉의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보장 제공
- 투자 분쟁 시에는 가봉이 가입해 있는 국제투자분쟁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additional Facility, 뉴욕중재협약(New York Arbitration Convention) 및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보호
- 또한 아프리카상법조정기구(Organisation pour l'Harmonisation en Afriquedu Droit des Affaires: OHADA)를 통한 지원 가능

투자 인센티브

- o 가봉에 투자 외국기업의 투자 혜택
석유법, 광물법, 농업법, 특별경제구역법 등에서 투자관련 인센티브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석유 및 광물 분야의 경우 수입 설비 및 기계에 대한 관세 면제되고, 관광 분야는 최초 영업일부터 5년간 수입 관세 면제된다. 또한 수출 지향 활동 및 천연자원 분야의 연구 활동에 대하여는 임시 허가 형태의 관세 중단 혹은 관세 면제 제도 가있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출 기업의 투자 및 운영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하며, 첫 3년간 법인세 면제 제도가 있다
- o 특별경제구역(SEZ) 투자 인센티브
가봉 정부는 2011년 7월 수도 리브르빌 인근에 은콕 특별경제구역(Nkok SEZ)을 설립하고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신속한 행정절차 수행 및 각종 지원을 위해 Nkok SEZ내 행정절차 단일창구(single window)인 행정청(AAN)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인증된 ‘탄소중립 산업 지대’로서 가봉 내 6,5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820,000m² 목재(2020년 기준) 등 월 평균 1,600개 이상의 컨테이너(2021-2022년)를 통해 매년 2억 6500만 달러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함께 2022.7월 기준 Nkon SEZ에는 22개 산업 부문에서 운영되는 20개국 86개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목재분야가 가장 많고, 철강·화학·농산업·제약 기업 등이 입주해 있다. 특히 한국 목재기업 FTC가 2017년 Nkok에 등록하여 포르장띠 면세구역에 1호 업체로 입주하여 사업을 운영 중이다.

- 입주후 10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그리고 다음 5년간 법인세 10% 부과
- 부가가치세: 25년간 면제
- 배당세·자본이득세·영세업자 원천징수세: 25년간 면제
- 원재료 및 사업기자재(수입설비, 기계, 소모품) 수입품에 대한 관세, 세금, 로열티, 수수료에 대해 모두 25년간 면제

회사설립

(1) 회사법

가봉의 대표적인 회사 형태는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가 있으며, 법인은 상장이 가능한 주식회사/공개유한회사(société anonyme: SA), 설립은 용이하지만 상장은 할 수 없는 유한책임회사(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SARL), 상장은 할 수 없지만 설립요건이 완화된 단순주식회사(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SAS) 형태로 구분되며, 주식회사 형태는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사용된다.

주식회사/공개유한회사(SA)의 경우 1명의 주주와 1명의 이사로도 설립이 가능하고 만약 회사의 주주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는 의장과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최소 자본금은 1,000만 세파프랑(약 2만 달러)이며, 회사는 매년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한다

유한책임회사(SARL)는 가봉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할 때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방법으로 설립 요건은 1명 이상의 주주와 100만 세파프랑(약 2천 달러) 이상의 최소자본금이 필요하고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1) 자본금 1,000만 세파프랑(약 2만 달러) 이상, 2) 연매출이 2.5억 세파프랑(약 50만 달러) 이상, 3) 직원이 50명 이상 일 경우 반드시 감사 선임이 필요하다

연락사무소는 설립이 가장 용이한 형태로, RCCM에 등기하면 된다.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정보 수집 등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지사는 CDE에 설립 신청서(설립결의서, 모회사 정관)를 제출한 후 RCCM 설립 등기 및 세무서 등록을 마치고, 관보 게재후 절차가 완료되며, 절차는 3주 가량 소요된다. 지사의 존속기한은 2년(1회에 한해 2년 추가연장 가능), 자본금은 없다.

회사 설립 형태

	지사	유한책임회사 (SARL)	주식회사(SA)	단순주식회사 (SAS)
설립자본금	없음	1백만 세파프랑	10백만 세파프랑 (기업공개시 1억 세파프랑)	정관에 따름
주식 액면가	-	5,000 세파프랑	10,000 세파프랑	제한 없음.
주주/파트너 수	-	제한없음 (최소 1명)	제한없음 (최소 1명)	정관에 따름
책임한도	본사 책임	납입 자본내 유한책임	납입 자본내 유한책임	납입 자본내 유한책임
존속기한	2년	99년	99년	99년
이사회	-	없음	이사(최소3명, 최대12명)	정관에 따름
대표자	법적 대표	Manager (1명/다수)	이사회 의장	President(1명)
감사	-	감사 선임	감사 선임	감사 선임
자산	-	125백만 세파프랑 이상	-	125백만 세파프랑 이상
매출	-	250백만 세파프랑 이상	-	250백만 세파프랑 이상
정규직수	-	50명 이상	-	50명 이상

회사설립절차

(1) 개요

가봉은 투자진흥청(ANPI) 소속 기업센터(Centre de Développement des

Entreprises: CDE)가회사 설립에 대한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단일창구(single window)임

(2) 설립 절차

- ① 법적으로 필요한 자본을 은행에 예치 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회사설립자 또는 공증인이 초기 자본을 은행에 예치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며 소요 기간은 2일이고 관련 비용은 없다
- ② 상호 중복확인 및 상호 예약:
회사 설립자는 필수적으로 산업재산센터(Centre de Propriété industrielle du Gabon:CEPIG)에서 상호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상호를 예약해야 하는데, 소요 기간은 1일이고 관련 비용은 35,000 세파프랑(약 70달러)이다
- ③ 상호등록 및 법인설립 관련 공고문 발행 요청:
회사의 상호는 반드시 투자진흥청(Agence Nationale de Promotion des Investissements:ANPI)에 등록되어야 하는데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면 당일 등록이 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SARL)는 30만 세파프랑(약 600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들고 주식회사(SA)는 50만 세파프랑(약 1,000달러)이다. 상호등록 관련 비용을 모두 납부한 후 영수증을 보관하고, 등록 시 회사는 ANPI가 관리하는 공식 저널(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Gabonaise)에 법인 설립 관련 공고문 발행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때 소요 기간은 1일(긴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이며 관련 비용은 고정비 15만 세파프랑(약 300달러)+상업 등기비용 2.5만 세파프랑(약 50달러)+인지세 장당 500 세파프랑(1달러)+ 긴급서비스 이용 시 30만 세파프랑(약600달러)정도가 필요하다
- ④ 세금식별번호(Numéro d'Identification Fiscal: NIF) 발급:
신규회사는 반드시 세금식별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설립자 혹은 회사의 법률 대리인이 국세청 소속 등록사무소(Bureau des Immatriculations de la Direction Générale des Impôts)에서 직접 발급받고 소요 기간은 5일이며 관련 비용은 없다
- ⑤ 사회보장국(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et de Garantie

Sociale: CNAMGS)에 직원등록:

신규 회사는 반드시 직원을 사회보장국(CANMGS), 사회보장기금(CNSS), 그리고 국민보건사회복지기금(CNAMGS)에 등록해야 하며 소요 기간은 1일이고 (위 ④ 단계와 동시 진행) 관련 비용은 없다

⑥ 근로감독청(Inspection du travail)에 고용신고서 제출:

고용신고서를 근로감독청에 제출하며 소요 기간은 1일(위 ④, ⑤ 단계와 동시 진행) 이고 관련 비용은 없다

고용 및 체류 비자 발급

비즈니스 목적(방문기간: 3개월 미만)으로 가봉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비즈니스 비자를 가봉대사관으로부터 발급 받아야 한다. 가봉내 단기근로(3개월 미만)를 원하는 외국인은 비즈니스 비자 또는 단기입국 승인(short-term entry authorization)을 신청해야 한다. 가봉은 입국시 황열병(yellow fever) 예방 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단기 근로 목적으로 입국시, 가봉정부 대사관을 통해 미리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 받거나 가봉에 도착해 출입국관리소에서 단기(1~3개월) 입국 승인을 위한 입국(Entry) 비자를 발급받고, 가봉에 체류하면서 출입국관리소에 단기입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수비자의 경우 6개월을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며 연장은 불가하나, 순환비자(circular visa)로 발급받는 경우 만료후 1회 갱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 출장 목적으로 3개월 이내 가봉 체류 시, 가봉 내 인증 여행사를 통해 입국 서류를 준비한 경우와 인증 여행사가 필요한 입국 승인을 출입국관리소로부터 획득하는 경우 입국 승인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가봉에 체류 목적을 증명하고 체류 동안의 연락처를 통보해야함 한다.

장기근로(3개월 초과) 정규직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국가노동 사무소에서 해당 직무에 적합한 가봉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인에 대한 2년 기간 고용허가(Work permit)을 발급받으며 고용허가는 갱신 가능하다. 고용허가 후 노동부로부터 15일 이내 고용계약 (계약기간은 2년 초과 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주는 출입국관리소에 거주증(Residency Card)을 신청하고, 거주증은 2년 유효하며 갱신 가능하다. 외국인 고용인은 노동부에 외국근로자증 (Foreign Worker Card)을 발급받아야 하며, 2년 유효하며 갱신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제한

가봉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는 80%이상 가봉 내국인을 고용해야 한다. 가봉 최저 임금은 월 15만 세파프랑이다.

가봉 노동법 관련 유의사항(내·외국인 공통 사항)

가봉 노동법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이를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봉 노동법상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이내로서 1회에 한해서만 갱신이 가능하며(노동법 제23조), 고용주와 근로자 간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지속되는 경우 그 근로계약은 무기 계약으로 전환된다(노동법 제24조).

또한 한국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만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하고 있으나(제26조), 가봉 노동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년퇴직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른 일정 기간 전에 고용주가 서면으로 퇴직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동법 제64조, 제65조). 해당 예고기간 전에 퇴직을 예고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만큼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동법 제69조).

부동산 취득

소유 부동산은 토지등기소(Land Property Conservation Office, 경제부 산하)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후 15일 이내 관보에 게재되고, 부동산 권리증서는 68일 이내 발행된다.

환율 및 외화송금

가봉 외환 정책은 CEMAC 외화 환율 및 조절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가봉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 통제 및 CFA 프랑의 유로에 대한 고정 관리 등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아프리카국가은행(BEAC)에 의해 결정된다.

가봉 화폐는 CEMAC내 공동화폐인 fCFA(세파프랑, the franc of the Communauté Financière Africaine)로서, 유로(Euro)에 연동(1유로 = 655.957 fCFA)된 고정 환율로 운영되며, 세파프랑 대비 달러는 500 ~ 600 세파프랑 범위에서 매일 변동되고 있다.

투자이익, 배당금, 이자, 로열티, 외채 원금, 임대료, 관리수익, 청산수익 등은 해외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가봉 외부로의 외환송금은 1억 세파프랑을 초과할 경우 경제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제부 신고후 30일간이 소요된다. 1억 세파프랑을 넘지 않는 거래는 은행에 거래를 증명한 후 송금가능하다.

투자장에 요인

(1)정치적 불안정

오마르 봉고 전 대통령은 1967년부터 2009년까지 42년간 가봉을 통치했으며, 그 뒤를 이어 아들인 알리 봉고가 대통령이 되어 2016년 재선까지 성공하면서 부자세습과 부정선거 논란이 있고 고위층의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등으로 향후 정세불안 가능성이 존재한다. 2019년 가봉의 부패 인식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100점 만점 중 31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전체 180개 국가 중 123위를 기록

(2) 인프라 부족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글로벌 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에 따르면 가봉은 141개 국가 중 119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교통 인프라가 취약하고 금융 시스템의 발달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취약한 교통 인프라와 에너지 인프라로 인하여 물류비용도 매우 높은 편이다

금융

가봉내 은행은 CEMAC 법규를 따르고 있다. 가봉은 BEAC 회원국이고, BEAC 산하 금융위원회(COBAC)가 CEMAC내 은행을 허가 및 감독하고 있다. BEAC는 금융기관 설립을 허가하고, 대출기관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러한 대출 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중부아프리카은행(BEAC) 홈페이지: www.beac.int

가봉의 외환 정책 또한 CEMAC 외화 환율 및 조절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데 가봉의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 통제 및 세파프랑(CFA francs)의 유로에 대한 고정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BEAC에 의해 결정되고 가봉 화폐는 CEMAC 공동화폐인 세파프랑으로, 유로에 연동된 고정 환율로 운영되며(1유로 = 655.957세파프랑), 세파프랑 대비 달러는 500~600 세파프랑 범위에서 변동되고 있다.

가봉의 은행부문은 7개의 상업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규모가 가장 큰 은행 3곳은 전체 은행 대출과 예금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석유 부문의 자금조달은 주로 외국계 은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도시를 제외하고 은행 이용은 아주 제한적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가봉은 아프리카 지적재산권기구(OAPI),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베른협약(Bern Conven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국제특허협력 연합(PCT Union), Bangui 협약(1999년) 등에 가입해 있다. 또한, WTO 회원국으로 TRIPs 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정, 2006년)에 가입되어 있다.

가봉은 지식재산권에 대해 OAPI 규정을 채택하고, 발명특허, 실용신안권, 상표와 서비스, 산업디자인, 상호, 지리적 표시, 문예저작권, 부정경쟁방지, 집적회로 배치설계, 식물신품종 보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가봉내 투자진출 업체는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OAPI 또는 무역부 산하 가봉산업재산권센터(CEPIG)에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을 등록해야 한다. 보호기간은 특허 20년, 상표 10년(10년마다 갱신), 산업디자인 5년, 저작권은 작가 사후 70년이다. 등록비는 특허당 59만 세파프랑, 상표당 40만 세파프랑, 산업디자인당 11.5만 세파프랑(단순) 및 18만 세파프랑이다.

경쟁정책

경쟁정책은 CEMAC 규제(1999년)에 의해 시행되고, 기업간 불법적 경쟁제한 행위, 시장 독점 지배 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한 시장 경쟁을 금지한다. 경쟁 정책은 경제부 권한 하에서 조정된다.

환경

환경법(Environment Code)은 폐기물(처리, 재활용, 폐기 등) 관리, 천연자원의 보호 및 보존, 환경오염 방지, 유해물질사용 등을 다루고 있다. 공해방지법에 따라 산업 및 생산 시설 설치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부 허가후 3년내 시설이 가동되지 않거나 2년 연속 운영되지 않은 경우 승인은 취소된다. 폐수 투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기름 및 윤활유, 세제 (detergent) 및 농가 폐수 투기는 엄격히 금지된다.

모든 산업 시설은 건설 개시전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Study) 승인을 거쳐야 한다. 석유가스 탐사,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항만건설, 공장이 공시설 등 산업활동, 광산 탐사, 공항건설, 도로철도 건설 등 프로젝트의 경우, 환경부의 환경영향조사(EIS)를 받아야 하며, 프로젝트 설명, 사전평가, 환경영향조사, 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환경부가 최종 승인한다. 또한, 2009년 산림법 개정으로 통해 원목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가봉 디지털 무역 관련 법규

가봉 내 전자상거래, 디지털 상의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 등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2011년에 제정된 데이터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2018년에 제정된 전자통신법(The Electric Communications Act), 2018년에 제정된 사이버보안규정(Cyber Security Order) 등이 있다.

국가간 개인정보 데이터 전송

가봉은 다른 국가가 적절한 수준의 개인 정보 보호장치 (해당 국가에 존재하는 개인정보관련 법적 조항, 시행 된 보안 조치, 데이터의 성격·출처·목적지 등 정보 내용)가 없으면 국가간 개인정보 데이터 전송을 금지한다. 다만 ①데이터 주체가 데이터 전송에 명시적으로 동의, ②생명구조, ③공익보호, ④법정에서의 변호권 보장, ⑤계약이행 의 경우 데이터를 전송이 가능하다. 또한 매우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건 부문 조사 목적으로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 데이터의 국제적 전송이 불가능하다.



오 만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22

오만 경제구조 및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

오만은 2022년 예산안 기준 원유·가스 판매 재정수입이 전체 예산 수입의 약 68%를 차지하는 등 세계 유가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형적인 에너지 자원 수입 의존 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석유 매장량 21위(전 세계 매장량의 0.3%), 천연가스 매장량 27위(전 세계 매장량의 0.4%)로 주변국 대비 에너지 원 보유량이 적다. 2020년 코로나19 및 저유가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국가 재정 회복을 위해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긴축재정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오만 정부는 석유·가스 의존도를 낮추고 비석유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다각화 이니셔티브인 Vision 2040을 통해 민관 협력 프로젝트 강화 및 비석유 산업 성장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Vision 2040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 해외투자 유치 및 자국의 수출지원, 국가 고용 증대의 세 가지 핵심 영역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제조업, 관광업, 물류, 수산업, 광업, 신재생 에너지원 확보 등을 통해 경제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다. 단, 코로나19, 저유가 등으로 인해 경제 다각화 정책이 지연되어 2023년 오만 경제는 계속해서 원유·가스 수출 수입(收入)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고유가로 인한 재정 흑자는 긴축재정 조치에 따라 채권 환매, 차관 조기상환 등 공공부채 규모 축소에 우선하여 사용되었으며, 재정 적자 폭 감소와 함께 2015년 이후 최초로 오만 국가 신용등급이 소폭 상승하는 등 오만 경제는 고유가와 함께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만 정부는 2022년 외국인 부동산 보유 규정을 완화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했으며, 같은 해 3월부터 오만 합

자 주식회사의 100% 외국인 지분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향후 더 많은 해외 자본유입 및 투자유치가 기대된다.

무역동향

오만은 지리적으로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해상무역에 유리하다. 사우디, UAE, 예멘 3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란, 파키스탄, 인도 등과 인접해 있다. 또한 유럽, 아프리카로의 수출도 용이한 전략적 위치를 보유하고 있다

2021년 오만의 주요 수출 품목은 원유, 천연가스, 요소 및 광물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자재와 보일러, 자동차와 부품, 철광석 등이다. 오만 경찰청(세관 업무를 병행)의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2021년 오만의 전체 수출금액은 약 398억 달러로 이 중 석유·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수출금액 중 약 71.7%이다. 정부 수입의 석유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경제 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고유가로 인해 석유·가스 수출 수입 비중은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중국은 오만의 최대 원유 수출대상국으로 오만산 원유의 약 84%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한국은 오만 천연가스의 약 48%를 수입하고 있다. 2021년 오만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 인도, 한국, UAE, 사우디 순이다.

오만의 연도별 주요 자원 수출

(단위: 백만 리알,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금액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원유	7,555.9	5,053.5	△33.1	7,184.8	42.2
정제유	929.1	632.1	△32.0	1,182.1	87.0
가스(LNG)	1,710.1	1,310.7	△23.4	1,664.6	27.0
총계	10,195.1	6,996.3	△31.4	9,531.5	36.2

자료원: 오만 통계청 (National Centre for Statistics & Information)

오만의 2021년도 최대 수입 대상국은 인근의 UAE로 전체 수입 금액의 약 38%를 UAE를 통해 수입하는 등 UAE 수입 의존도가 높다. 그 외 주요 수입국은 중국, 브라질, 인도 순이며 한국은 전년도 10위에서 하락한 24위를 기록했다. 중국의 대오만 수출 주요 품목은 기계류, 전자기기류, 철강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동차, 철강, 기계류, 인도는 곡물, 철강 제품, 전자기기류 등의 수출 비중이 높다.

2021년 오만의 주요 수입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금액	비율
1	UAE	9,322	37.8
2	중국	1,873	7.6
3	브라질	1,491	6.0
4	인도	1,376	5.6
5	사우디	1,046	4.2
6	일본	887	3.6
7	미국	747	3.0
8	카타르	703	2.9
9	바레인	595	2.4
10	튀르키예	494	2.0
24	대한민국	202	0.8

자료원: 오만 경찰청 (Royal Oman Police)

2021년 우리나라의 대오만 수출액은 3.88억 달러로, 오만은 우리나라의 제72위 수출대상국이다. 2021년 우리나라의 대오만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화학합성원료, 열연강판, 승용차, 합성수지 등이다. 2021년 대오만 수입금액은 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7.8% 증가했다. 수입금액 증가의 주원인은 에너지 수입금액의 증가로, 천연가스와 원유 수입 금액이 전체 2021년 대오만 수입금액의 약 92%를 차지한다. 오만은 한국의 주요 에너지 교역국으로, 2020년 에너지 수입 가격의 하락에 따라 해당 연도 무역적자 금액은 1999년 이후 최저치인 15.6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대오만 수출은 프로젝트 시장 중심으로, 2021

년 재정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오만의 긴축재정 조치에 따라 필수 프로젝트 외 프로젝트 대부분이 취소 또는 중지되었다. 그 결과 2021년 대오만 수출이 감소하며 2021년 무역적자는 26.1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증가했다.

2022년에도 오만의 긴축재정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4개의 필수 프로젝트 외 신규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한국이 기수주한 필수 프로젝트 관련 물품이 2020년~2021년 대부분 수출이 완료되어 2022년 프로젝트 관련 품목 수출이 부진하다. 2022년 10월 기준 대오만 수출은 2.85억으로, 2022년 전체 교역규모는 에너지 수입금액 증가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대오만 수출 규모는 전년과 비슷하거나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의 對오만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수출	643	△4.7	613	△4.7	388	△36.7
수입	2,675	△3.6	2,177	△18.6	3,001	37.8
수지	△2,032	3.2	△1,564	23.0	△2,613	△67.1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관세와 통관제도

관세

오만은 대부분의 수입 상품에 대해 CIF 기준 종가세를 실시하며, 종량세는 없다. 2003년 1월 1일부로 GCC 국간 관세동맹 조약이 발효되면서 오만뿐 아니라 GCC 국 6개국이 공히 특별관리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제품에 대해 5%의 통일된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왕실, 정부, 외교사절 목적으로 수입하는 상품이나 병원, 자선단체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과 원산지가 GCC 회원국인 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이다. 일반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상품으로는 주류(100%), 담배(100%, 또는 케이스당 80 오만 리알

중 큰 금액으로 부과), 돼지고기(100%), 말린 레몬 및 라임(100%), 바나나(25%), 대추야자(20%) 및 레몬(15%) 등이 있다. 필수 소비재, 농업 장비 및 정 부조달 물품은 무관세를 적용한다.

통관절차

오만은 영사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상업 송장 및 원산지 증명서에 주한 오만 대사관의 영사 인증취득 또는 아포스티유 절차에 의해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오만의 관세 업무는 오만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온라인 통관 단일창구인 Bayan 웹사이트에 바이어가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서, 선하증권 등을 사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상품 수입자/수출자(또는 에이전트)가 Bayan 시스템을 통해 제품 수입을 사전 신고하게 되며, 관련 제품 수입 라이선스가 있는 업체만이 수입 자격이 있다.

오만 세관이 수입품의 통관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는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다.

- 수입상의 상업등기부 유효사본 또는 해당 서류가 없으면 수입허가서
- 수입상의 오만 상공회의소 등록서류 유효사본
- 제조업체의 인증서 사본
- 유효한 견적서
-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화물 적하목록
- 배송대행업체로부터의 인도 허가
- 통관담당자의 종합 서면 허가
- 원산지 증명서
- (수입제한품목일 경우) 관련 부서의 허가서

유효한 견적서(Purchase Invoice) 또는 제조업체의 인증서 사본이 없는 경우 오만 경찰청에서는 통관에 20리알(US \$52)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오만 정부는 1천 리알(US \$2,600) 이상의 수입품목에 대해 상업등기부 유효 사본, 상공회의소 등록서류 사본, 상업 송장, 선하 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품목 수입에 필요한 관련 인증서 또는 허가서를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 물류 전략의 디지털 혁신 이니셔티브에 따라 오만 관세청은 전자 배송 및 전자 화물 출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페이퍼리스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수입규제

오만은 자유경쟁 원칙에 입각한 개방형 시장경제 체제를 표방한다. 이에 따라 일부 포르노성 잡지나 테이프, 위조수표 등 수입금지품목이나 돼지고기, 담배, 무기와 탄약, 불꽃놀이용 화약, 주류, 일부 농산물 등의 특별수입 허가 품목(special license)이나 제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자유롭다. 하지만 국가의 경제, 환경, 안전, 종교, 도덕적 관점에 반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을 금지 및 규제하고 있으며, 수입금지와 규제품목은 대체로 GCC 세관 규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식품류는 통관 시 다소 까다로운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약품 등은 사전에 보건부에 등록된 회사의 제품만 수입통관이 허용된다. 사전 등록이 안 된 제품은 비록 샘플일지라도 통관이 불가할 수 있다. 의료기기의 수출입은 오만 보건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이외에 화학제품의 경우 일반 건강 관련 화학제품은 사전에 환경부에 등록만 하면 수입 시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으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화학제품은 사전 등록 이외에 별도로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수입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수입할당을 받아야 한다.

오만은 2004년부터 동식물 검역에 관한 GCC 법을 적용하고 있다. 농림수산자원부 검역과에서는 동식물의 수입, 수출, 국내 생산을 검사 및 감독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수출에 앞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 동식물 위생(SPS, Sanitary-Phytosanitary) 검사 및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살아있는 동물, 육류 및 육

류제품, 달걀 및 달걀 제품, 유제품, 냉동·냉장·통조림 생선, 동물 사료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와 수입 사전 허가를 요구한다. 유제품의 경우 무(無) 방사선 인증서, 육류 및 육류제품의 경우 할랄 인증서가 필요하다.

2021년 GSO(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1943 표준 시행에 따라 오만은 화장품과 개인 관리 제품에 대한 추가 수입 요구 사항을 도입했다. 여기에는 제3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적합성 인증서 획득서 및 라벨링 요구 사항이 포함된다. 또한 수입 승인 프로세스 범위에 개인위생 용품 항목을 추가했다. 하이드로퀴논이 함유된 화장품 판매를 위해서는 보건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수은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판매 전 오만 상공투자촉진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수입금지품목

오만에서는 이슬람의 가르침을 부정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출판물·유화·사진·잡지·조각상 등 종교적으로 금지되는 물건, 오만 국가 상징 및 국왕의 얼굴이 들어간 제품, 위장 패턴이 들어간 제품, 담배 광고가 들어간 의복이나 담배 모양의 과자, 사라지는 잉크 펜, 마약류, 위폐, 전자담배나 전자 물담배, 입담배와 코담배, 석면, 폐유, 폐타이어, 코끼리 상아, 방사능 오염 물품, 이스라엘 제조품 및 이스라엘 로고가 있는 제품, 우핸들 운전 차량, 도박 관련 제품, 아랍어 표기가 없는 식품 등은 수입이 금지된다.

2022년 4월부터 반경화유 및 반경화유가 사용된 식품의 생산, 수입 또는 마케팅을 금지하고 있으며 2022년 7월부터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틸리알)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과 개인 위생용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는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의 수입이 금지될 예정이다.

추가로 주로 보건위생상의 이유로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권고 및 오만 농수산부의 결정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으며 주로 살아있는 가금류와 관련 제품들이 이에 해당한다.

인증제도

오만은 국제 표준화 기구 회원국으로, 일부 기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걸프 지역 표준화 기구(GSO: Gulf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에서 마련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 기준을 자국 생산제품과 수입 상품에 차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특히, 식료품이 아닌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물품을 반입할 때 적합성 평가인증서(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e)의 신고만으로 자동 반입이 가능하며, MR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샘플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오만은 소수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라벨에 반드시 아랍어 표기가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육류나 가금류의 라벨에는 아랍어를 포함한 2개 국어 표기, 원산지, 유통기한, 할랄 인증서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오만 수출을 위한 자체 인증제도는 없으나 에어컨 제품과 화장품 수출의 경우 GSO의 인증제도 숙지가 필요하다. 2019년 7월 25일 오만 상공투자촉진부는 에어컨 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라벨 발행을 위한 오만 자체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MEPS)를 시작했다. GSO 2530:2016에 기준을 둔 이 새로운 제도는 전자 및 전기 폐기물, CO2 배출량 감소,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며, 창문형 에어컨, 냉방 콘덴서를 사용하는 스플릿 시스템 에어컨, 가정용, 상업용, 공업용 냉난방 장치에 적용된다. 별 개수로 전력 소비 정도를 나타내는 Energy Efficiency Labeling System이 의무화되었으며 GSO와 상공투자촉진부를 통해 등록된 제품은 <https://dgsm.gso.org.sa/eer/>에서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오만 상공투자촉진부는 2019년 7월 28일 화장품과 개인 위생용품에 걸프 표준 규격(GSS, Gulf Standard Specification)을 오만 표준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결정으로 기존 조항들이 통합되어 오만 수출 인증 시 기존 걸프 표준 규격인증을 보유한 제품들의 오만 내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GCC 표준화 기구는 화장품 및 개인 위생용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체외 부위 (피부, 모발, 손톱, 입술, 외부 생식기) 및 치아와 구강 치아 및 점막에 접촉하는 세정, 방향, 외모 변화, 보호, 유지, 제취 목적의 물질 또는 혼합물

오만에서는 돼지고기 및 알코올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성분 검사가 까다로우며, 제조업체에서 영문으로 표기된 성분 분석표를 첨부시켜 샘플 테스트를 통과해야 판매할 수 있다. 오만으로 육류, 가공육이 포함된 가공식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수입 승인을 위한 할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동국가 중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편으로, 돼지고기의 수입도 일부 허용된다.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자국 산업 보호 차원의 관세 및 수입 규제 외에도 오만은 GCC 차원의 수입 규제에 동참하고 있다. GCC 차원의 최초 수입규제 조치로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HS 850710)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2017년 6월 25일부터 5년 동안 약 12%에서 2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19년 6월 21일부로 연간 수입 규모 250,354톤을 초과하는 시멘트·모르타르·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HS 382440)에 3년간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동 세이프가드 조치도 1차 연도 221달러/톤에서 시작하여 3차 연도 177달러/톤으로 최초 부과 후 점진적으로 경감될 예정이다.

디지털 무역장벽

오만의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Law, PDPL)이 국왕령 6/2022에 따라 2022년 2월 13일 관보에 공포되었으며, 1년 뒤인 2023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만 교통통신정보기술부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행정 규정과 조항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적용되면 EU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수준의 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적용 이후 기업이 개인 식별 정보를 보유하거나 처리하기 전 개인으로부터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기업은 오만 교통통신정보기술부의 승인 취득이 필요하다.

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0조는 개인정보 취급 당사자가 개인정보 데이터 주체의 동의가 없이는 개인 데이터 처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데이터 주체의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단, 국가 보안이나 공익, 범죄 방지, 국가의 경제 및 재정적 이익 보호, 권한을 취득한 단체에 의한 연구 목적 등의 경우 해당 규정에서 제외된다.

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민감한 개인정보(Sensitive Personal Data)”와 “개인 데이터의 특수 범주(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와 관련한 별도의 정의가 없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조건 또는 특정 안전장치가 없다. 대신 오만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전자 데이터, 생체 데이터, 건강 데이터, 인종 기원, 성생활, 정치 또는 종교적 의견, 철학적 신념, 범죄 유죄 사실 및 보안 조치와 관련된 개인 데이터 처리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의 승인이 없는 한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오만 정부는 특정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거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검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비판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오만 통신 규제국(TRA: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은 음성 및 화상 인터넷 통화에 사용되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원거리 화상통신의 중요성이 증가하자 한시적으로 일부 원격 교육 어플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조달

오만 정부는 1972년 정부조달과 프로젝트 조달을 위한 텐더 보드(Tender Board)를 설립하였다. 전자정부 이니셔티브의 하나로 오만 정부는 전자 입찰 플랫폼인 eTender Board를 도입하였다. 오만 정부조달은 전자 입찰플랫폼을 통해 고지되며, 보통 일반 공개 입찰(Open or General Tender)과 제한 입찰(Limited Tender), 현지 입찰(Local Tender), 국제 입찰(International Tender)로 나뉜다. 일반 공개 입찰의 경우 국내 및 해외 업체를 포함하고, 제한 입찰의 경우 국내외 기업 등급에 따라 입찰 참여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현지 기업은 유효한 텐더 보드 등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외 업체는 수주

후 한 달 내 tender board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국내 입찰의 경우 해외 업체의 직접 입찰이 불가능하며 오만에 등록된 회사만 참여할 수 있다. 국제 입찰의 경우 모든 국제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국제 기업은 계약 체결 후에 한 달 이내에 tender board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입찰자가 오만에 거주하거나 현지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부처, 정부 기관과 공기업은 1만 오만 리알(US \$26,000) 이상의 모든 구매에 대해 공개 입찰을 요구하며, 정부 부처는 1백만 오만 리알(US \$260만) 미만의 프로젝트는 내부 tender board를 통해 수여할 수 있다. 현지 중소기업들의 경우 10%의 가격 차액 내에서 정부 입찰 우선권을 부여받으며, 항상 최저가격 입찰자가 수주하는 것은 아니다. 수주 통보 후 정식 계약 이전에 세부 내용 협의의 위한 최종 협상이 이루어진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부채 부담이 가중되자 오만 정부는 정부 지출 통제를 목적으로 2020년 9월부터 모든 정부 부처의 입찰서 발행 및 수여, LOI(Letters of Good Intent) 발행, 기업 배정을 위해서 오만 재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치했다.

여타 중동국가와 마찬가지로 석유·가스 분야 플랜트 발주가 많은 오만 정부는 2013년부터 국내가치(ICV, In-Country Value)창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오만 ICV의 주요 목표는 자국민 고용의 증대 및 노동력과 기술 개발과 현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내 지출 증가에 있다. 오만 ICV는 크게 ① 고정 자산투자, ② 현지인 고용, ③ 현지인 고용 훈련, ④ 현지 제품 구매, ⑤ 현지 하도급 이용, ⑥ 국가 공급자 육성, ⑦ 국가 훈련, 교육, 연구개발 기관 개발 등의 일곱 가지 평가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ICV를 달성하면 가산점이 부여되며, 의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정부 계약 가치의 최소 10%를 오만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오만은 1996년 제74호 국왕령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하

였고, 1998년에는 국왕령 제63호에 따라 산업재산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에 가입하였으며 1999년에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베른조약에 가입하였다. 또한 오만은 마드리드 의정서와 헤이그 협약, 특허 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의 가입국이다.

1992년 12월에 개최된 제13회 GCC 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에서 GCC 특허법을 가결함으로써 GCC 특허청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설립하고 GCC 특허법을 통해 GCC 회원국에 유효한 특허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오만은 1993년부터 특허권에 대하여 GCC 특허법을 도입 및 시행하다 2000년 자체적으로 특허법을 제정하였다. 오만은 2000년 WTO 가입 이래 지식재산권 관련 많은 법이 제·개정되면서 지식재산권 제도에 있어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는데,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법률들이 각각 제정되었다가 2008년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산업재산권법(Royal Decree 67/2008: Industrial Property Right Law)으로 통합되었으며,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Royal Decree 65/2008)을 개정하였다.

오만의 지식재산권은 오만의 지리적, 종교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들과 비교되는 성격이 있다. 예를 들자면, 오만은 중동 지역 중에서도 페르시아만만 산유국인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중 하나로 걸프협력이사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의 회원국으로서 회원국 상호 간의 정치, 경제, 치안 등에 있어 서로 협력하고 있다. 오만의 지식재산권 보호에서도 GCC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GCC가 1981년 창설된 이래 회원국 간의 경제, 정치, 문화,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에 대한 추진의 일환으로 1992년 12월에 개최된 제13회 GCC 수장 회의에서 GCC 특허법을 가결함으로써 GCC 특허청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설립하고 GCC 특허법을 통해 GCC 회원국에 유효한 특허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오만 상공투자촉진부에 특허권을 보호받기 위한 등록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보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있는 GCC 특허청에 특허가 등록되는 경우가 더 흔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GCC 특허청에서는 GCC 특허법을 기반으로 한 특허 제도만 주로 다루고 있으므로 실용신안 및 디자인,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오만 상공투자촉진부에 직

접 그 권리에 대하여 보호받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2017년도 GCC 상표법이 오만에서 비준되었고 그 적용 범위 및 세부 규제 사항들도 점차 널리 시행될 것으로 보여 여전히 두 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종교적 측면에서 차별되는 점은 특허법 제2조에 의하면 공공질서 또는 도덕에 반하거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이슬람 샤리아 규정에 반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취득한다고 하여도 샤리아 규정에 반하여서는 그 권리가 보호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종교적, 문화적 사유로 인하여 근무 시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조기에 출원 절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상표법(Trademarks)

GCC Trademark Law에서 정의하는 상표는 이름(Names), 단어(Words), 서명(Signatures), 글자(Letters), 모양(Figures), 그래픽(Graphics), 로고(Logos), 칭호(Titles), 특징(Hallmarks), 날인(Seals), 그림(Pictures), 패턴(Patterns), 음각(Engravings), 포장(Packs) 또는 기타 마크(Marks) 등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되기 위해 의도된 모든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공공질서나 도덕성에 반하는 상표는 등록에서 제외된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상표권 소유자는 다른 회원국에 1회 상표출원 후 오만을 지정하면 오만에서도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를 등록하려면 오만 상공투자촉진부의 지식재산부서(IP)에 상표출원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상표 등록에 필요한 상표 설명과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오만 영사 확인을 받은 위임장과 회사등록증, 상표 사본, 상표 등록을 원하는 회사명 및 주소,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니스분류(Nice Classification) 등이 필요하다. 신청서 제출 후 IP 부서가 절대 및 상대적 근거로 신청서를 심사하며, 심사 후 상표의 발행 진행, 반려 또는 수정 요청이 있을 수 있다. 등록에는 최대 6개월이 소요되며, 반려 또는 수정 요청, 제3업체의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항소가 가능하다. 오만에서의 상표 등록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 비용은 50 리알(US \$135),

관보 및 상공투자촉진부의 상표 게재 100 리알(US \$265), 일간 신문에 상표 게재 통상 40 리알(US \$104), 상표 인증서 발급 50 리알(US \$135)로 알려져 있다. 상표의 소유자는 민사 또는 형사소송 제기 전이라도 상공투자촉진부의 상표 등록 공식 증명서를 첨부한 탄원서를 통해 상공투자촉진부에게 물품, 포장, 라벨 등의 압류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상표권 침해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리알(US \$5,200)의 벌금에 처하며 승소 시 위조 제품 폐기가 가능하다.

저작권법(Copyrights)

오만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저작권은 작품의 가치, 종류, 표현 방법 또는 목적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문학(Literary), 예술(Artistic), 과학(Scientific Work) 분야의 원저작물을 보호하며, 별도의 형식적인 등록이 필요 없다. 책, 기사, 컴퓨터 프로그램, 강의, 그림, 스케치, 음악 및 작곡 등을 포함하며, 별도의 사전 합의가 없는 한 공동 저작물의 창작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저작물의 정당한 소유자로 동등하게 간주한다.

오만 저작권법은 저작권 소유자에게 경제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를 부여한다. 오만에서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작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작가의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단 응용미술, 익명 저자 작품은 발표 후 90년, 미발표작품은 완성 후 120년까지 보호된다. 작품 완성 후 25년 이내 출판 또는 발표되지 않은 작품은 미발표작품으로 고려된다.

저작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① 대중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호된 저작물의 단락 인용, ② 교육 기관에서 설명 또는 교육 목적의 사용 ③ 직간접적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작품의 재생산 등의 경우 사용이 허가된다. 저작권법을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금전적 보전을 요구하는 민사 책임이 존재한다. 또한 검찰은 저작권법 조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3개월 최대 3년간의 징역 및/또는 최소 2,000리알에서 최대 10,000리알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범의 경우 두 배의 처벌이 적용된다. 또한 누구든지 저작권 침해에 관련하여 법원의 명령을 위

만하면 최소 7일 최대 1개월의 징역 또는 최소 100 리알 최대 1,000리알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허법 및 의장법(Patents/Industrial Design)

오만의 특허법 및 의장법도 산업재산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허법에 따르면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산업적으로 적용할 가치가 있다면 오만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질서나 도덕을 침해하거나(public discipline or etiquette),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undermine national security), 샤리아법과 양립할 수 없는 특허(be incompatible with Sharia Law)는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의 업무에서 특허가 발생한 경우, 발명자는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특허의 소유주는 고용주가 된다. 오만 특허법이 있으나 사우디의 GCC 특허청에도 특허를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CC 특허청에 등록하면 오만뿐만 아니라 GCC 회원국 전체에 걸쳐 소유자 보호를 제공하게 된다. GCC의 특허 규정은 오만의 특허 규정과 거의 같다. 특허권은 통상 20년간 보호된다.

의장법은 제품의 모양이나 표면과 같은 3차원적 특징과 패턴, 선 또는 색상과 같은 2차원적 특징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의장법은 기술 및 의료기기에서 시계, 보석 및 기타 사치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및 수공예 제품에 적용된다. 의장법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 신청일 이전 대중에게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하며, 전 세계 어디에서나 구별될 수 있는 개성 있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통상적인 의장법 보호 기간은 5년이며 최대 1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등록 디자인의 소유자는 일부를 복사한 디자인을 포함하거나 묘사한 상품을 다른 사람이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다. 해당 권리는 상업적 사용에만 적용되며, 비 상업적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환경

투자 여건

오만은 국내 자본 및 기술 축적이 부족해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및 기

술 습득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특히, 국가경제의 석유 부문 의존도 완화 및 산업구조 다변화에 필요한 SOC 확충, 기간산업 개발 및 중소형 공업화 프로젝트 등 제조 부문 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관련 사항은 “The Foreign Capital Investment Law”와 “Oman Commercial Law”에서 규정하고 있다. 2019년 7월 오만은 외국인 자본투자법, 민영화법 개정안 및 민관파트너십 법, 파산법 등 신법을 발효하고 민영화파트너십청(Public Authority for Privatisation and Partnership)을 신설하는 국왕 칙령 (50/2019)을 공포하였다. 민영화파트너십청은 2020년 국왕 칙령 110/2020을 통해 오만 재무부로 모든 권한이 이관되었다.

이 중 외국인 자본투자법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상공투자촉진부를 중심으로 해외자본투자 담당 관청을 일원화하고, 전략 분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투자 외국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외국인 100% 소유 허용 조항(100% foreign ownership)이 포함되어 일부 산업 분야를 제외하고 100% 외국인 법인소유가 가능해졌다.

대외환경

오만 내 특기할 만한 투자 제한제도는 없다. 회수 자본금, 수익금 및 로열티 송금 등 자본 유출입과 태환,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롭다. 오만 정부는 외국인 지분을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직허가서 제도 폐지 등으로 노동 시장 유연화와 투자진출 환경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 및 특별경제구역에서도 100% 외국인 자본 소유가 가능하며 2019년 7월 논의된 외국인 자본투자개정안이 2020년 1월 발효되어 법인 설립 시 최소자본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번역, 인쇄업, 차량 수리, 부동산업 등 일부 사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지만, 최초 자본금 비율에 따라 사업등록비가 다르게 책정되며, 회사 등급이 정해지게 된다. 사업등록비(Commercial Registration fee)는 인상되어 3천 리알(약 US \$7,800)부터 시작이다.

오만 정부는 2021년 10월 3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최대 10년 기한의 장기 거주비자 발급을 시작했다.

다른 중동국가와 마찬가지로 오만 역시 자국민의 노동시장 참여가 낮은 수준이며, 민간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에서부터 거리청소인력에 이르기까지 외국인이 진출해 있고, 정부 기관에도 기술력을 요구하는 직무는 외국 인력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높은 자국민 실업률 해결을 위해 오만 정부는 자국민 의무 고용 제도(오마니제이션, Omanisation)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외국인 노동 인력을 자국민으로 대체하여 자국민 노동시장 참여율을 지속해서 증가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국민 고용 촉진의 일환으로 학력에 따른 자국민 최저 임금제도를 폐지했으며, 자국민 의무 고용 비율을 미달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및 정부 지원 수혜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강화되고 있어 사업 부문 및 업무 직종에 따른 자국민 의무 고용 조항 숙지가 필요하다.

오만은 2000년 11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다. 현재 GCC 차원의 FTA는 범아랍 자유무역협정(1998년 1월 발효, GAFTA), GCC 관세동맹(2002년 1월 발효, GCC Customs Union), 싱가포르(2013년 9월 발효, GSFTA), EFTA(2014년 7월 발효) 등이 있으며, 오만과 미국은 별도 FTA를 체결(2009년 1월 발효)한 바 있다.

회사 유형 및 설립조건

2020년 1월 외국인 자본투자법개정안(FCIL)이 발효되며 일부 사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해졌다. 외국인 소유가 불가능한 분야는 통·번역, 인쇄업, 의상 제조판매, 차량 수리, 부동산, 주유소, 식수 배달 등이다. 기존에는 오만인, GCC 국민 또는 미국인의 지분 30% 이상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가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EPC 업체들은 유한책임회사(LLC) 형태의 회사를 갖거나 지점(Foreign Branch) 형태의 회

사를 갖춘다고 할 수 있다. 프로젝트를 수주받거나 수주업체의 하도급을 받아 오만 현지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는 지점의 형태가 아닌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지점의 경우는 정부 계약 등 특정한 경우에만 설립이 허용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 (Joint Stock Company, SAOG 또는 SAOC)

주식회사의 경우는 3인 이상의 개인이나 기관이 투자하는 형태이며 역시 회사 자본금만큼만 책임을 지는 우리의 주식회사(Corporation)와 유사한 형태이다. 다만 우리의 주식회사가 상장사와 비상장사로 나누어지듯이 회사 지분의 40% 이상이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되면 공개주식회사(General Joint stock company (Societe Anonyme Omanaise General, or SAOG))로 불리고, 주식의 일반에게 공개가 안 된 경우 비공개주식회사(Close Joint Stock company(Societe Anonyme Omanaise Closed, or SAOC))로 불린다.

- 설립조건
 - 최소 3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유한 책임을 부담하여 주주로 참여해야 한다. (최대 주주의 인원 제한은 없다.)
 - 오만 투자자의 주식 보유량이 최소 30%를 충족시켜야 한다.
- 법정 준비금
 - 자본금의 3분의 1까지 매년 순이익의 10%를 법정 준비금으로 보유해 놓아야 한다.
 - 법정 준비금은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없다.
 - 발기인은 최대 출자 총액의 60%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인당 20% 이상의 주식 소유는 불가하다.
- 형태
 - 공개주식회사(General Joint Stock Company(SAOG))와 비공개주식회사(Close Joint Stock Company(SAOC))가 있다.
 - 공개주식회사(SAOG) 설립에 필요한 최소자본금은 약 520만 달러, 비공개주식회사(SAOC)는 약 130만 달러이다.

- 주식 소유권 관리기관

- 공개주식회사(General Joint Stock Company(SAOG))의 주식 소유권 관리기관은 무스카트 증권시장(Muscat Securities Market)이며, 비공개 회사(Close Joint Stock Company(SAOC))는 오만 중앙은행(Central Bank of Oman, CBO)이 관리한다.

- 특징

- 최초 회사 설립 시는 비공개주식회사(SAOC) 형태로는 설립할 수 있어도 공개주식회사(SAOG) 형태로는 설립할 수가 없다. 공개주식회사(SAOG)가 되기 위해서는 비공개주식회사(SAOC)나 유한책임회사(LLC) 혹은 합명회사(Partnership)에서 최소 1년간 회사를 운영한 뒤, 재정 상태가 좋을 때만 주식공개상장(IPO: Initial Public Offering)과 함께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전력, 에너지, 수도, 가스 등의 사업 부문은 정부 규제 업종이기 때문에 최초 법인 설립 시 SAOC(비공개주식회사)로 설립해야 할 수 있으며 오만 정부가 추후 주식공개상장(IPO)으로 SAOG(공개주식회사)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주주들이 뽑은 이사회에 의해 사안을 결정하며, 정기 주주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 프로젝트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프로젝트 자본이 최소 약 1.3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 오만 상공투자촉진부 장관의 승인 후 회사 자본금의 100%까지 외국인 지분 참여가 허용된다.

(2)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유한책임회사(LLC)는 현재 오만에 설립할 수 있는 회사 유형 중 가장 적은 규제가 적용되는 사업구조로 설립과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신속하므로 오만에 진출하는 해외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회사 구조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요건 및 규제로 인해 합작회사(Joint Venture)로 가장 많이 쓰인다. 유한책임회사(LLC)는 최소 1인 이상 최대 50명 이하의 자본 투자자로 구성된 민간 유한책임회사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새로운 상업회사법 (The

New Commercial Companies Law) 도입으로 기존 최소 2명이 필요했던 자본 투자자 조항이 폐지되어 단독 주주 설립이 가능하다.

- 설립조건

- 최소 1인 이상 50명 이하(기존 40명에서 증가)의 개인 또는 법인이 상거래를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자본 투자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기존에는 오만인, GCC 국적인 또는 미국인이 최소 30%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했으나 2019년 7월 외국인 투자법 개정으로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 대표적으로 외국인 100% 지분 소유가 불가능한 업종으로는 통·번역, 수선과 세탁, 자동차 수리/세차 관련 직종, 식수 배달, 인력사무소, 운전 교습 및 택시 운송업, 수산업 관련업, 장애복지 관련 직종 등 총 70개 업종이다. (2022. 11. 기준)

- 법정 준비금

- 자본금의 3분의 1까지 매년 세후 순이익의 10%를 법정 준비금으로 보유해 놓아야 한다.
- 법정 준비금은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없다.

- 최소자본금

- 기존 약 5만 2천 달러였던 최소자본금 규정이 외국인 투자법 개정으로 없어졌으나 금액 일부분은 회사 설립 시 자본증명에 필요하며 자본금에 따라 회사 등급(grade)이 정해지게 된다.
- 회사 등급(Grade)에는 Excellent, 1~4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Grade 4의 자본 요구 사항은 20,000 오만 리알(약 \$52,000), Grade 1은 150,000 오만 리알(약 \$39만), Excellent Grade의 경우 250,000 오만 리알(약 \$65만)이다. 등급에 따라 회사 활동 영역 및 자국민 고용 비율(Omanisation)이 결정된다.

- 법인세

- 모든 법인에 대해 2017년 초부터 15%로 법인세가 인상됐다.

- 단, 자본금 13만 달러, 총수입금액(gross income) 26만 달러, 피고용인 15명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재무부의 승인이 있을 시 3% 세율이 적용된다.

- 책임

- 투자가는 보유 지분 한도 내에서만 회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그러나 소득 분배에 관해서는 각각 투자가들의 소유 지분에 따를 의무는 없으며, 투자가들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 특징

- 정기 주주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한 대기업으로부터 재 하도급받은 경우는 민간 계약에 해당하여 지점(Foreign Branch)이 아닌 현지 법인(주로 유한책임회사(LLC))을 설립해야 한다.

(3) 개인사업자

일반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는 오만인 또는 GCC 국민만 이용할 수 있는 사업 형태로, 그 외 국적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4) 합작회사

- 설립조건

- 최소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오만 국적자가 최소 51%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

- 법정 준비금

- 정해진 법정 준비금 규정은 없다.

- 최소자본금

- 정해진 최소자본금 규정은 없다.

- 특징

- 외국기업들이 오만 내 법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 합작투자는 오만 내에서 법적 성격이 없는 비법인 회사로 이에 따라 어떠한 허가서나 등록 요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3자가 제기한 문제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작 투자회사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합작투자는 상업등기에 등록되지는 않으나 세금 부과 목적인 별도의 회사로 간주한다.

(5) 지점 (Branch)

- 설립조건
 - 정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또는 오만 각료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될 경우, 외국기업은 오만에 지점 설립이 가능하다. 참고로 정부 프로젝트에는 정부에서 직접 발주한 프로젝트는 물론, PDO (국영 석유개발공사), Oman Refinery, Oman LNG 등 정부산하 기관이 발주한 프로젝트도 포함된다. 오만 각료회의가 인정하는 영역은 현지 서비스가 어려워 외국 업체들이 수행해야 하는 은행, 보험, 법률 및 회계 컨설팅 등의 분야에 국한된다.
- 법정 준비금
 - 정해진 법정 준비금 규정은 없다.
- 최소자본금
 - 정해진 최소자본금 규정은 없다.
- 특징
 - 금융기관 및 보험사의 지점 운영을 위해 오만 정부로부터 허가받아야 한다.

(6)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설립조건
 - 정보 수집이나 마케팅 및 판촉 활동 등 영업을 보조하는 행위, 판촉 목적으로 샘플을 가져오는 것을 제외한 모든 상업 활동은 할 수 없다.

- 법정 준비금
 - 정해진 법정 준비금 규정은 없다.
- 최소자본금
 - 정해진 최소자본금 규정은 없다.
- 특징
 - 오만 상공투자촉진부와 오만 상공회의소에 등록이 필요하다.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FTZ) 법안에 따라 오만 정부는 자유무역지대 내 외국계 기업 지사 설립 및 운영을 장려하고 있다. 오만 내 자유무역지대 및 특별경제구역은 3개(소하르, 살랄라, 알 마주나)와 특별경제구역(두쿰) 1개가 있다.

이 지역들에선 100% 외국인 지분 소유, 10년 이상 세금 면제, 자국민 의무 고용 비율 10% 하향 적용, 무관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만 내 제조업이나 물류기지 또는 사무공간이 있어야 하는 수출입 업체들에 적합하다. (*오만 평균 법인세율 15%)

(1) 알 마주나 자유무역지대 (Al-Mazunah Free Zone)

알 마주나 자유무역지대는 1999년 11월에 설립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 예멘 국경 근처 오만 남서부 도파르(Dhofar) 행정구역에 있으며 살랄라(Salalah)로부터 260km, 알 게디아(Al Ghedia)로부터 245km, 예멘 세이윤(Seiyun) 지역으로부터 500km 떨어져 있다. 무역, 경공업, 서비스 부문 관련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세 면제 혜택 덕분에 무관세 상품 수입할 수 있으며, 오마 니제이션 기준은 20%이다. (자유무역지대 이외의 경우 업종에 따라 상이하나 주로 30% 이상)

- 인센티브
 - 오만 남서부 도파르 지역에 위치

- 무역, 경공업, 서비스 부문 관련 투자유치 목표
- 100% 외국인 소유 가능
- 완화된 오마니제이션 비율(20%) 적용
- 소득세 면제 기간: 최대 30년

(2) 살랄라 자유무역지대 (Salalah Free Zone)

살랄라 자유무역지대는 남부 살랄라 지역에 있는 오만 최초의 자유무역지대로, 2005년에 설립되어 오만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Salalah Free Trade Zone이라는 회사에 의해 총 19km²의 규모로 활발히 개발 중이다. 살랄라 항이 인접해 있어 물류 접근성이 뛰어나 인도, 이라크 등 외국 투자가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오만 항공과 Salalah Port Service와의 협력으로 새로운 해상 및 항공화물 회랑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화학, 재료가공, 제조, 조립 관련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항구 및 공항 접근성과 저렴한 노동력, 인프라 비용 절감 혜택 등으로 화학, 재료가공, 제조업, 물류 등의 업종에 적합하다.

- 인센티브
 - 오마니제이션 비율 10%
 - 소득세 면제 기간: 최대 30년
 - 관세 및 법인세 면제
 - 자본, 이익 본국 송금 제한 없음
 - 100% 외국인 지분
 - 최소자본금이 요구되지 않음

(3) 소하르 자유무역지대 (Sohar Port and Free Zone)

소하르 자유무역지대는 2010년 하반기에 왕령(Royal Decree No 123/2010)으로 설치가 법제화되었으며, 오만 정부와 네덜란드 Port of Rotterdam의 50:50 합작투자 회사로 설립되어 Sohar Industrial Port Company(SIPC)의 관리하에 있다. 공사는 4,500헥타르 규모로 소하르항구 건설과 연계돼 총 5단

계에 걸쳐 진행되며, 소하르항, 소하르 산업단지와 인접하여 금속 및 철강, 식품 및 물류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인센티브

- 100% 외국인 자본 소유 보장(조건: 최소 2명의 주주)
- 법인세 10년간 면제(오마니제이션 목표 수준 달성 시 최대 25년까지 연장)
- 수입 및 재수출 관세 면제
- 개인 소득세 면제
- 통관 단일 창구 (Single-window) 서비스 제공
- 최소 오마니제이션 수준 15% 적용(차후 설립 기간에 따른 오마니제이션 비율 달성 시 법인세 면제 기간 연장)
- 10년: 25% 달성, 15년: 35% 달성, 20년: 50% 달성
- 미국-오만, 싱가포르-GCC FTA 활용 가능

(4) 두쿰 특별경제구역 (Special Economic Zone at Duqm)

2011년 10월 국왕칙령(Royal Decree No 119/2011)에 따라 The Special Economic Zone Authority at Duqm(SEZAD) 설치가 법제화되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었다. 총면적은 약 2,000km²며, 60km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다. 두쿰 특별경제구역은 중동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특구이며, 다양한 메가 프로젝트 수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두쿰은 무스카트와 살랄라 중간에 위치하며, 아시아, 아프리카 시장과 근접하여 중동, 북동부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허브이자 GCC 지역의 해상 관문의 역할을 한다. 저렴한 토지임대료와 30년 소득세 면제 및 통관세 면제 혜택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GCC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특구이자 수산,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석유 가스 개발지역과 가까워 관련 업종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이다.

- 인센티브

- 30년간 개인 소득세 및 통관세 면제

- 저렴한 토지임대료
- 창고 및 물류단지
- 장기 임대 및 할인율
-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 없음
- 최소 투자 자본금 필요 없음
- 법인세 면제 및 감면
- 오마니제이션 수준 10% 적용

정부 기관 사업 인허가

오만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특정된 제3의 정부 기관으로부터 목적하는 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사 업 활 동	인허가 담당기관
은행, 환전, 금융 컨설턴트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Investment Promotion, Central Bank of Oman
보험	Om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Investment Promotion
산업 활동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Investment Promotion, Environment Authority
병원, 사립클리닉, 의료실험, 약품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Investment Promotion, Ministry of Health, Local municipality
자동차 렌탈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Investment Promotion, Royal Oman Police, Om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미디어 관련 활동(광고, 온라인 거래, 홈쇼핑, 인쇄, 방송 등)	Om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Investment Promotion, Ministry of Heritage and Tourism,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Youth
회계감사, 외국기업 지사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Investment Promotion, Om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사 업 활 동	인허가 담당기관
육아, 간호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Investment Promotion,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노동 서비스	Ministry of Labour, Royal Oman Police
식물재배, 농장, 가축 거래, 종자 거래, 검역, 수의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Water Resources
종교 관련 활동	Ministry of Endowments and Religious Affairs
법률 회사	Ministry of Justice and Legal Affairs
사립학교, 유치원, 체육관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항공운송, 항공화물	Civil Aviation Authority, Ministry of Transport,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통신장비	Ministry of Transport,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엔지니어링, 건설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Planning, Local Municipality

회사 설립 절차와 소요 시간

오만 내에서 해외 업체 설립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유한책임회사(LLC)의 설립에 필요한 절차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다.

① 회사명 예약

오만 법에 따라 오만 상공투자촉진부에 회사명 예약을 위한 신청서 제출

② 법인 설립 문서 제출

회사명이 예약 및 승인되면 주주 서류와 회사 정관 초안 등을 작성하고 공인서명서와 은행 증명서를 발급받아 상공투자촉진부에 제출

③ 오만 상공회의소 등록

오만 상공투자촉진부에 등록한 후 오만 상공회의소(OCCI)에 등록

④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승인 취득

비즈니스 종류, 규모 및 활동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정부 승인 취득이 필요하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취득이 필요한 내역들이다.

- 세무 등록 (Tax registration)
- 오만 경찰청 등록 (Registration with the Royal Oman Police)
- 오만 노동부 등록, 노동 허가 및 비자 신청 (Registration with the Royal Oman Police)
- 지방자치단체 면허 취득 (Municipality Licence)
- 해당 시, 수출입 면허 취득 (Import/Export Licence, if required)
- 산업, 환경 및 기타 관련 허가 및 면허 취득 (Industrial, environmental and other permits and licenses)

⑤ 법인 인감 도장 제작

회사 등록에 필요한 서류

오만 내에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다.

- 업체등록양식(Company registration form)
- 회사의 주주나 서명인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Copy of valid ID of the shareholders and authorized signatories of the company)
- 회사 서명인의 서명과 이름이 포함된 공인 서명 양식(An approved authorised signatory form, with the signatures and names of the authorized signatories of the company)
- 회사 정관 (Company statutes)
- 상공회의소 회원 증명서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ffiliation certificate)

- 은행 최초자본예금증서 (Certificate of initial capital deposit at bank)

조세 제도

(1) 일반 환경

오만은 2019년 6월 15일부로 특별소비세(Excise Tax)를 도입(2020년 10월 추가 도입)했으며 2021년 4월 16일부로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었다. 2022년 11월 기준 개인 소득세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오만의 법인세는 15%이다. 오만 국세청(Tax Authority)은 20.7.1.(수)부로 조세 카드(Tax Card)를 공식 도입했다. 이에 따라, 주재국 내 모든 납세자(taxpayers)에게 고유의 조세 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가 부여되며, 이를 부여받은 개인은 향후 모든 거래, 영수증(invoices) 등에 해당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모든 정부 부처·공공기관·국영기업이 납세자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수증을 발부하는 등 여하한 형태의 거래를 진행할 시 해당 개인의 조세 카드 사본을 반드시 보관토록 의무화하여 오만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사업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 숙지가 필요하다.

(2)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담배·에너지음료·탄산음료)

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부 품목 및 서비스를 제외하고 5%의 세율이 일괄 적용된다. 2022년 11월 기준, 기존 예정되었던 93개 품목에서 확대된 513개의 기초 식자재 품목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그 외 운송업, 교육, 의약품 등 국민 생활 필수 품목 및 서비스의 경우 면세 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등록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회계 기록 보관, 납세신고서 제출 등 오만 세법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오만 부가가치세법은 자발적 등록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오만 내 거주하며 상업, 산업, 전문 또는 기타 활동 수행을 통한 연간 공급가액이 1만

9,250 오만 리알(약 5만 달러)이 넘거나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오만에 거주하며 오만 내 수행되는 상업, 산업, 전문 또는 기타 활동과 관련된 지출 비용이 연간 1만 9,250 오만 리알이 넘거나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발적 등록이 필요하다. 자발적 등록은 2021년 오만의 경우 과세 대상자가 별도의 책임자(Responsible Person)를 지정해 국세청에 보고하게 돼 있으며, 보통 사업주 또는 관리자 직급의 직원이 책임자로 지정된다. 책임자라는 개념은 오만 이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다른 GCC 3개 국가에서는 없었던 개념으로, 오만 부가가치세법은 해당 책임자에 대한 특정 의무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책임자는 오만 국세청에 관련 내용 보고 및 대체 책임자 선정 없이 회계연도 내 90일 이상 해외 체류가 불가하다.

영세율, 면세 및 환급 제도

구분	내용
영세율 (zero rated)	원유, 석유 파생상품, 천연가스, 특정 식품, 특정 의약품 및 의료 장비, - 투자목적의 금, 은, 백금, 물품 또는 승객의 국제 또는 GCC 역내 수송, 이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 상업적 목적의 물품이나 승객 수송을 위한 항공, 해상 및 육상 운송 수단, 관련 물품 및 서비스, 구조 비행기, 구조 및 원조선
면세 (exempt)	금융 서비스(수수료는 면세에서 제외), 의료 서비스 및 관련 상품과 서비스, 교육 서비스 및 관련 상품과 서비스, 주거용 부동산의 재판매 또는 임대, 나지(bare land), 국내 승객 운송 등
환급 (refund)	외국인 관광객 등

부가가치세 등록증은 본사, 지점, 매장 등 전 영업장에 명확히 전시돼야 하며, 영업점의 개수 또는 사업 활동 수(Business activities)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자는 하나의 부가가치세 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된다. 과세 대상자는 세금계산서 및 과세 대상자가 발급한 기타 서류에 부가가치세 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관련 기록 관리 기간이 평균 5~6년이지만, 오만의 경우 10년(부동산 관련 직종의 경우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만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등록이 가능하다.

②특별소비세

오만의 특별소비세는 담배 및 관련 상품(100%), 에너지 음료(100%), 주류나

돼지고기 제품(100%), 탄산음료(50%)의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며 관련 제품 판매자들은 오만국세청 특별소비세 E-Service 포털에 등록해야 한다. 주류의 경우 시행 초기에는 50%의 낮은 세율이 대신 적용되었으며, 2020년 7월부터 본래의 100% 세율이 적용되었다. 이어 오만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설탕 및 감미료를 포함한 음료에 50%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주스, 과일 음료, 스포츠음료, 카페인 음료 및 차 등이 부과 대상이며, 100% 천연 과일 주스, 우유 및 75% 이상 우유를 함유한 유제품 음료, 영양제, 식이요법용 제품, 의료용 음료 등은 세금에서 제외된다.

(3)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

① 개인 소득세

2022년 11월 기준 오만 내 개인 소득세는 없으나 오만 경제부 Dr Said Al Saqri 장관은 2024년을 목표로 고소득자 대상 개인 소득세 도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② 법인세

법인 소득세(income tax on business entities)는 오만 국민이 소유 또는 이용하는 상업 및 산업조직, 오만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회사 및 조직 등에 부과된다. 100% 오만인 소유회사, 외국인 투자회사, Public Joint Stock Company(SAOG) 등 모든 형태의 법인에 대하여 30,000 오만 리알(7만 9,500달러)을 초과한 과세소득에 대해 2017년 1월부터 법인 소득세 15%를 적용한다. 한국과 오만 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 상태이다.

(4) 기타

① 관세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GCC 회원국 간의 관세동맹에 따라 오만 및 GCC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그 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CIF 기준 5%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오만 자

유무역지대 내 수입 또는 수출되는 상품은 면세이다. 일반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상품으로는 주류 100%, 담배 100%(혹은 case 당 80 오만리알 중 큰 것으로 부과), 돼지고기 100%, Dried Lemon/Lime 100%, 바나나 25%, 대추야자 20% 및 레몬 15% 등이 있으며 필수 소비재, 농업 장비 및 정부조달 물품은 무관세이다.

② 사회보장 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장기금

사회 보장법 국왕령 72/91에 따라 사회보험공단(Public Authority for Social Insurance, PASI)이 설립되었다. 사회 보장법은 노년, 장애, 사망, 업무상 상태 및 질병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여 피보험자와 그 부양가족의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 보장법은 오만 내 고용된 오만 국적 피고용인에게만 적용된다. 고용주는 PASI에 근로자 총급여의 10.5%를 사회 보장기여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추가 1%를 산재보험 명목으로 지급해야 한다.

왕령 82/2020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고용보장기금(Job Security Fund)이 신설되었다. 오만인만 해당 기금 대상자로 2021년 1월부터 고용주는 오만인 피고용인의 월 급여에서 1%(또는 100리알당 1 리알)를 공제하여 PASI에 납부하고, 고용주도 같은 1%의 기여금을 PASI에 내야 한다.

- 사회보장 연금: 고용인(10.5%), 피고용인 (7%)
- 산재보험: 고용인(1%)
- 고용보장기금: 고용인(1%), 피고용인(1%)
- 외국인을 위한 규정은 없음

③ 기타 세금

지방정부세(municipality tax)는 호텔(5%), 일부 식당(5%), 부동산 임대료(3%), 레저 시설 및 극장(10%), 전기료(0.5%~2%) 등에 대해 무스카트, 살랄라, 일부 지역에서 부과하고 있다.

오만 관광부는 2020년 1월부터 프랜차이즈 식당 및 카페, 관광지에 있는 식당, 호텔 내 식당에 관광세(4%)를 부여하고 있다.

(5)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Treaty)

오만은 한국과 2005년 9월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한-오만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 및 오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5%의 제한세율로 과세하고, 한국 거주자가 오만 과세소득을 오만에서 취득하는 경우 당해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할 오만의 조세는 당해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단 공제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 전에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한국기업이 오만에 제공하는 산업, 상업 또는 학술 장비의 사용, 사용권의 대가로 받는 금액, 저작권, 특허권 등의 사용료 소득은 한국 법률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사용료의 소유자가 오만 거주자면 부과되는 세금이 사용료 총액의 8%를 초과할 수 없다.

노무관리

(1) 노무 환경

오만의 경우 오만 자국민 의무 채용 정책인 오마니제이션 제도를 1988년부터 도입하였으며 1990년 중반부터 실질적으로 적용되었다. 해당 정책에 따라 산업별로 준수해야 하는 오만인 의무 채용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민간부문 오마니제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산업 직종의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또한 해당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 부과 및 추가 고용 허가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다만 숙련된 현지인이 부족하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노무관리가 외국인 직원 대비 어려워 해외 기업들은 오만인 대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선호하고 있다. 이렇듯 기업이 외국인 직원을 선호함에 따라 오만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오만 정부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만 노동법(Omani Labor Law, OLL)은 2003년 국왕 칙령 35/2003로 제정되었다. 노동법에서는 근무 시간, 휴가, 임금, 노동시간, 미성년자와 여성의

고용, 산업안전, 근로계약 등 기본적인 노무자나 사용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1월부터는 기존 오만 내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위해 필요했던 이직허가서(NOC, No-Objection Certificate) 제도를 폐지하여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당 법안 도입 전에는 오만 내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 종전 고용주로부터 이직허가서를 발급받거나 2년간 오만 국외 거주가 필요하였다.

오만인이 아닌 외국인의 고용해지 시, 해당 피고용인이 다른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는 이상 고용주는 해당 피고용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의무를 지닌다.

(2) 노동법의 주요 내용

① 고용 계약서

오만의 고용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기 계약(Fixed Contract/Limited Duration)과 만료 기한이 없는 무기 계약(Unlimited/Indefinite Contract)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모든 고용계약은 무기 계약으로 체결되며, 월 단위로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최소 30일 그 외의 경우 최소 15일의 통지를 주고 계약 종료가능하다.

고용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1) 고용주의 이름, 사업장 및 주소, 2) 근로자의 이름, 생년월일, 자격, 직업, 거주지 및 국적, 3) 업무의 성격 및 종류, 4) 계약기간, 5) 근로조건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 혜택, 임금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6) 계약 해지를 위한 통지 기간 7) 기타 법률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 등이 있다. 오만 노동부는 2021년 4월부터 민간부문 회사는 모든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의 전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으며, 계약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노동부 웹사이트에 등록해야 한다. 월급을 받는 직원은 최대 3개월간, 그 외의 경우 최대 한 달간 수습 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동일 고용주로부터 두 번의 수습 기간은 가질 수 없다. 수습 기간 중 일방의 계약 해지 통지 기간은 7일로 한다. 고용주는 1) 고용인의 이름, 나이, 사회적 지위, 거주

지 및 국적, 2) 직업, 경력 및 자격, 3) 근무 시작일, 임금, 관련 변경 내용, 4) 연차, 병가, 특별 휴가 사용 내용 및 부과된 벌금(Penalties), 5) 근무 종료 사유 및 일자를 고용 종료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오만 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근무 규정을 사업장 내 비치해야 한다.

② 노동조합

오만 노동법은 노동자의 이익 보호, 권리 방어, 사회적 지위 향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 결성을 허용하고 있다.

③ 임금

임금은 기본임금(Basic Salary)과 각종 주거, 교통비 등을 포함한 보조금(Allowance)을 포함한 전체임금으로 나누어진다.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오만인의 최저임금은 325리알(기본급 225리알 + 기타 보조금 100리알)로 정해져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④ 법정 근무 시간

최대 1일 9시간 또는 1주일에 45시간을 넘지 못한다. (라마단 기간 중 이슬람 교도 근무자에게는 최대 6시간 또는 1주일 30시간) 또한 6시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최소 1회 이상의 식사·휴식 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휴식 시간은 최소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근무의 성격상 휴식 시간 없이 연속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결정하는 경우 허용된다. 이와는 별개로, 오만 노동법 16조 항에 따르면 기온이 가장 높은 기간인 6월부터 8월 말까지 건설업 공사 인부와 같은 야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12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정오 휴식(Mid-day break)이 주어지며, 고온의 날씨가 지속되는 이 시기 동안에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에게 햇빛 가림막과 물 등의 물품을 지급해줘야 한다. 또한 이 기간동안 야외작업은 8시간으로 제한된다.

노동법 81조 항에 따라 여성 근로자는 별도의 노동부 승인이 있지 않은 이상 아침 6시 이전 또는 저녁 9시 이후의 근무가 금지된다.

2021년 MD115/2021을 통해 15세 이상 미성년자의 시간제(Part time)근무가 허용되었다. 시간제근무는 오만인으로만 제한되며, 시간제근무는 하루 4시간 또는 일주일에 25시간을 넘을 수 없다. 시간제근무의 최소 시급은 3리알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⑤ 초과근무수당

표준 주당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작업은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며, 연장 또는 휴일 근무의 일일 최대 근무 시간은 1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주중 근무 시간 내에는 기본급의 125%, 야간 근무 시간(저녁 9시~새벽 4시)에는 150%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된다. 직원의 휴일 또는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고용인과 합의하여 대체휴일을 제공하거나 두 배의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⑥ 휴가

노동법 71조 항에 따르면 5일 연속 근무 후 최소 이틀의 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입사 후 근무 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최소 30일의 유급 휴가(전체임금) 및 6일간의 비상 휴가(Emergency leave)를 허용하고 있다. 연차에 관한 사항은 고용계약 시 포함하여 체결하는 것이 관례이다. 연차는 최대 1년간 이월할 수 있으며, 2년 이내 최소 2주 이상의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 근로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였을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대신 지급할 수 있다. 대부분 하기 시즌에 휴가를 1개월 주고 있으며, 휴가 기간 본국행 항공권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병가의 경우 1년에 10주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의사의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다. 1~2주는 기본급 전액 지급, 3~4주는 기본급의 3/4 지급, 5~6주는 기본급의 절반 지급, 7~10주는 기본급의 1/4을 지급한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50일의 출산휴가(산전, 산후)를 근무 기간에 3회에 한하여 낼 수 있으며 의사 소견에 따라 필요시 추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가족상 및 순례(이슬람교도의 경우) 등을 위한 특별 유급 휴가(Special Leave)가 있다.

결혼식의 경우 3일, 2촌 이내 가족 사망 시 3일, 친척(3촌) 사망 시 2일의 휴가가 주어지며 이슬람교도 순례(Al-Haj)의 경우 15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또한 학생 신분인 오만인을 고용하면 시험을 위한 15일의 특별 휴가가 주어진다. 이슬람교도 여성의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130일간의 특별 휴가가 주어진다.

⑦ 업무상 재해

오만 노동법 내 산재 방지 규정은 노동법 및 MD 286/2008 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Health & Safety)에 따른다. 사용자는 작업장에 있는 근로자의 안전을 적절히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주는 주요 사고 및 발생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전반에 대해 24시간 이내 노동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오만인 근로자 산재 발생 시 사회보험공단(PASI)에 통보해야 한다. 50명 이상의 고용인을 고용한 기업의 경우 회사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주기적인 통계를 매년 2회 제출해야 한다.

노동법 33조 항에 따라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치료비용 지급 의무가 있다. 오만인의 경우 고용주의 사회보험공단(PASI) 가입이 의무이다. 오만 정부는 근로자와 관광객의 의무 보험 가입 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⑧ 계약 종료

고용계약은 별도의 서면 통지 기한을 계약서에 언급하지 않은 한, 상호 합의 또는 일방이 최소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를 한 경우에 종료될 수 있다. 통지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은 그대로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이 통지 기간에도 고용계약은 유효한 상태이므로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통보 기간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해지통보를 한쪽이 통보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 (노동법 37조) 또한 직원의 휴가 중 또는 공휴일에 발급된 고용계약해지통보는 휴가 및 휴일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그 외의 계약 종료는 노동법 43조에 따른다.

⑨ 무 통지 즉결 해고

근로자가 노동법 40조에 열거된 행동을 하여 고용주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를 제공하였을 때 사전 통지 및 퇴직금 지급 없이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반대로 고용 상황이 노동법 41조에 해당하면 고용인도 고용계약을 별도 통지 절차 없이 종료할 수 있다.

불공정 해고의 경우 결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직 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해 해당 해고가 불공정하다고 판결이 났을 경우 해당 직원을 복직시키거나 근로자의 최종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3개월분 임금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⑩ 퇴직금 지급

1년 또는 그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1) 고용 기간 처음 3년은 매년 최종 월급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 (2) 고용 기간 4년 이상의 경우 (1) + 이후 근무연수마다 최종 월급에 상당하는 금액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기본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된다.

⑪ 노동계약 기간 연장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특정한 일의 종료 후에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갱신된 계약은 그 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⑫ 사회보장제

사회보험법(Social Insurance Law, SD 72/91)에 따라 오만 국민이나 GCC

국민 근로자 중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금을 제공하고, 노동법 39조 항에 따라 해당 사회 보장법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고용인이 사회보장 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장기금을 포함하여 총지급해야 하는 부담금은 고용인 임금의 12.5%이며, 피고용인이 8%를 부담한다.

⑬ 분쟁 조정

오만 분쟁 조정은 민간 및 상업 분쟁 중재법(Arbitr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Disputes, 79/47)에 따르며 분쟁 조정 기관 또는 노동법원에 회부된다. 민간 및 상업 분쟁 중재법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 상업 기관, 건설 계약, 엔지니어링 또는 기술 전문지식 관련 계약, 엔지니어링 또는 기술 전문지식 관련 계약, 산업 및 관광 면허의 허가과 같은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민원 및 고충처리절차를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2주 이내 양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주 이내 관할 법원에 회부해야 한다.

⑭ 노동법 비적용 대상

군, 공안기관, 국가 행정기구 및 정부 기관 근로자나 고용주 가족 구성원들, 가정 도우미(가정부, 요리사, 운전기사) 등에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⑮ 급여 수준

일반적으로 오만 자국민의 임금은 외국인 대졸자 임금의 2~3배 수준이며, 경력, 국적, 언어 능력 등에 따라 상이하다.

⑯ 최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은 없다. 오만인의 경우 고졸의 경우 325 리알,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425 리알, 대학 졸업자의 경우 600리알이었으

나, 2020년 10월 법 개정으로 인해 오만인의 최저임금은 학력과 무관하게 325리알(\$845)이다.

참고로 외국인 근로자가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의 비자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월급이 600리알 이상이어야 하며, GCC 기준상 고위직(Senior Job)에 있어야 한다.

⑰ 정기 급여 이외의 보상

정기 급여 이외에 통상적으로 연간 100~200%의 상여금(판매직의 경우 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함) 및 1년에 1회 이상 피고용자의 본국까지의 왕복항공권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다.

중재와 청산 제도

(1) 중재 (Arbitration)

오만의 중재법은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국제 중재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Arbitration)에 기초한 민사 및 상업 분쟁 중재법(Civil and Commercial Disputes Arbitration Law, the Arbitration law, 47/1997)에 따르며 해당 법은 국왕령 03/2007에 의해 개정되었다. 오만의 중재법은 여러 면에서 국제 규범을 준수하지만,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아랍어로 절차를 진행한다. 오만 정부는 2018년 국왕령 26/2018을 통해 오만 상공투자촉진부 산하의 오만상업 중재센터(Oman Commercial Arbitration Center, OCAC)를 설립하였다.

당사자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중재법은 여러 가지 채무 불이행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재 당사자는 중재재판소가 채택하는 절차에 합의할 자유가 있다. 공정한 청문(fair hearing) 권리, 편견 방지 규정 등 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중재 당사자들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각각의 당사자들에게 그들의 주장을 제시할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중재 절차는 당사자들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청구인으로부터 중재 통지를 받은 날로부

터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며, 중재 절차의 기본 언어는 아랍어이다. 중재 시작 시 당사자와 중재자가 변론 제출 일정, 변론 날짜 등을 포함하여 중재 절차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에 합의하는 것이 국제적 모범 규정이며, 그렇지 않으면 중재법의 기본 조항이 적용된다.

중재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할 수 있는 중재법의 기본 기간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 절차를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다. 당사자 간에 합의되거나 기간이 준수되지 않으면 일방 당사자가 오만 법원을 통해 최종 판결을 요구하거나 중재 절차 종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재 판결은 중재인이 한 명 이상이면 과반수 득표로 통과된다.

소송 절차와 달리 패소인은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승소 가능성이 있는 판결 무효 신청은 중재법 제53조 항에 따르며, 패소인은 90일 이내 판정 취소를 위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승소인은 90일의 기간이 만료된 후 판정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오만에서 내려진 판정은 외국중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에 가입한 계약국에 자산이 있는 모든 국가에서 시행될 수 있다. 또한 패소인이 오만 내 자산이 있는 경우 외국 판정이 오만에서 집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 판정의 집행은 중재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오만에서 내려진 판결의 집행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청산(Liquidation)

오만 내 청산은 개정된 상업 회사법(Commercial Companies Law 18/2019)을 따른다. 오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인 청산이 가능하다.

-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 관련 활동을 중단했거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운영 기한이 정해진 법인의 운영 만료의 경우
- 오만 내에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경우
- 회사의 모든 지분 혹은株式이 1명의 파트너로 이전될 경우
- 회사의 파산 또는 자본 소진으로 더 이상의 자본 유지가 힘들 경우

- 법인 청산에 대해 파트너들이 동의한 경우
- 위의 경우 혹은 기업의 목적 달성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이유가 발생하면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당국에서 법인의 철수를 결정할 수 있다.

청산인은 관할 당국의 인가를 받은 공인회계사와 감사인 이어야 한다. 개정안으로 인해 청산인은 회사의 자산과 부채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철수가 결정된 이후, 법인은 오만 상공법과 법인설립계약서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우선 오만 상공투자촉진부를 방문하여 법인 철수 및 청산에 대한 서한을 제출해야 한다. 오만 상공투자촉진부는 별도의 철수 신청서를 발급하며, 오만 노동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오만 상공투자촉진부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이러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만의 PRO, 파트너, 또는 오만에 진출한 한국 법인이 직접 오만 상공투자촉진부를 방문하는 것이 권장된다.

2022 외국의 통상환경 - 아프리카·중동 -

◆ 인 쇄 | 2022년 12월

◆ 발 행 | 2022년 12월

◆ 발행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 나모기획 (044-998-6998)